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lassics of Marxis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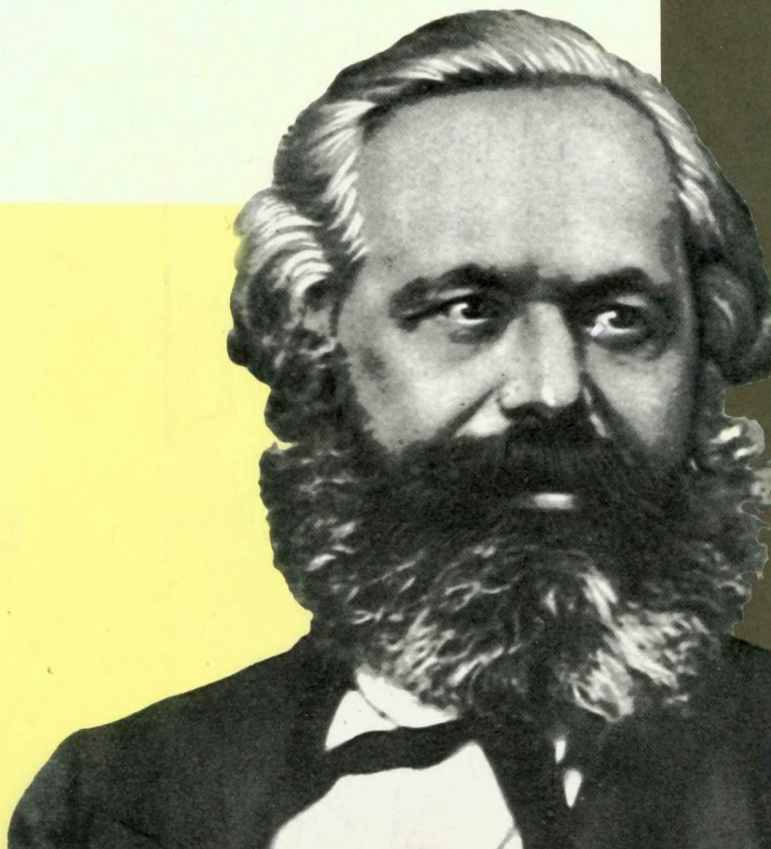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칼 맑스 자본론

제 3권 (2)

서
문
白
衣



K. 맑스

자 본 론

정치경제학비판

제 III 권(2)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F. 엥겔스 엮음

도서
출판 백의

차례/제Ⅲ권 (2)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제5편 이자와 기업이득으로의 이윤의 분할

이자불는 자본(계속)

제29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573
제30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 (1)	589
제31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 (2)	611
제1절 화폐의 대부자본으로의 전화	611
제2절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로의 자본 또는 소득의 전화	620
제32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 (3)	623
제33장 신용제도하에서의 유통자본	643
제34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의 은행입법	679
제35장 귀금속과 환자시세	703
제1절 금예비의 운동	703
제2절 환율	714
제3절 아시아와의 환율	717
제4절 영국의 무역균형	738
제36장 전자본주의적 관계	739
제1절 중세기의 이자	759
제2절 이자의 금지와 교회에 주는 이득	764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화

제37장	765
제38장 차액지대, 개론	797

제39장 차액지대의 첫째 형태(차액지대 I)	807
제40장 차액지대의 둘째 형태(차액지대 II). 개론	835
제41장 차액지대 II. 첫째 경우—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	849
제42장 차액지대 II. 둘째 경우—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859
제43장 차액지대 II. 세째 경우—생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결론	877
제44장 가장 나쁜 경지에서조차 생기는 차액지대	909
제45장 절대지대	921
제46장 건축부지지대. 광산지대. 땅값	949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사	959
제1절 서론	959
제2절 노동지대	967
제3절 생산물지대	972
제4절 화폐지대	975
제5절 분익경리 및 농민의 분할지 소유	981

제7편 소득과 그 원천

제48장 삼위일체의 공식	997
제49장 생산과정의 분석	1017

제50장 경쟁의 외관	1041
제51장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1069
제52장 계급	1077

回F. 엥겔스 「자본론」 제Ⅲ권에 대한 보충 1081

回주 1109

回인명색인 1121

回문헌색인 1139

回내용색인 1165

제5편

이자와 기업이득으로의 이윤의 분할 이자 붙는 자본

제21장 이자 붙는 자본

제22장 이윤의 분할, 이자율, 이자의 자연율

제23장 이자와 기업이득

제24장 이자 붙는 자본형태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표면화

제25장 신용과 자본의본

제26장 화폐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그 영향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제28장 유통수단의 자본, 투크와 플라톤의 견해

제29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제30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1)

제31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2)

제32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3)

제33장 신용제도하에서의 유통자본

제34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의 은행입법

제35장 귀금속과 환자시세

제36장 전자본주의적 관계

제 29 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그러면 이제는 은행자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방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플라톤과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또 금의 유출을 문제로 삼는 한에서는 세계화폐로서의) 화폐 사이의 차이를 유통수단(currency)과 자본 사이의 차이로 바꾸어놓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이 경우에 노는 독특한 역할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즉 계몽된 경제학이 화폐는 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꼼꼼히 타이르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은행업자의 정치경제학은 사실상 화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본이라는 것을 꼼꼼히 타이르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 화폐자본은 이자 붙는 자본이라는 의미에서의 화폐자본과 혼동되고 있는데 첫째 의미에서는 화폐자본은 언제나 자본의 하나의 과도적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의 다른 형태들인 상품자본이나 생산자본과 구별되는 것이다.

은행자본은 1) 현금인 금이나 은행권과 2)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을 우리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상업증권인 어음——이것은 떠돌아다니는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만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할인하는 것이 은행업자의 본래의 업무이다——과 공적 유가증권, 예컨대 국가증권, 국고증권, 온갖 종류의 주식들, 간단히 말해서 이자 붙는 증권——그러나 어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으로 나눌 수 있다. 저당증권도 여기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물적 구성부분들로 이루어지는 자본은 다시 은행업자 자신이 넣은 자본과 그의 은행자본 즉 그의 대부자본을 이루는 예금으로 나뉜다. 발권은행의 경우에는 여기에 또 은행권이 덧붙는다. 예금과 은행권은 당분간 제쳐놓기로 하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은행업자 자신의 자본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금 즉 다른 사람의 자본인가 하는 데 따라 은행자본의 실제적 구성부분들 즉 화폐, 어음, 이자 붙는 증권 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은행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자기 자신의 자본만을 가지고 운영하든, 자기에게 맡기는 자본만을 가지고 운영하든 자본의 구분은 여전히 같다.

이자 붙는 자본의 형태로 말미암아 일정하고 규칙적인 화폐소득——이것이 자본에서 생겨나건 그렇지 않건 간에——은 어느 것이나 다 이 자본의 이자로 나타나게 된다. 우선 화폐소득이 이자로 전화되고 다음에 일단 이자가 있게 되면 화폐소득의 원천인 자본도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자 붙는 자본과 함께 모든 가치액은 그것이 소득으로 지출되지 않는 한 자본으로, 즉 이 가치액이 낳을 수 있으며 또는 실제로 낳는 이자와 대립한 본전(principal)으로 나타난다.

사태는 간단하다. 평균이자율이 한 해는 5%라고 하자. 그러면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금액이 이자 붙는 자본으로 전화되면 해마다 25파운드 스텔링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25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확고한 한 해 소득은 각각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에 대한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25파운드 스텔링의 소득의 원천——이것이 단순한 소유명의 또는 채무청구권이든 또는 예컨대 토지와 같은 실제적 생산요소든 간에——이 직접 이전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전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쳐놓고는 순전히 환상적인 관념이다. 실제로 국채와 임금을 들어보자.

국가는 자기의 채권자들에게 해마다 대부자본에 대한 일정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자기의 채무청구권 즉 자기의 소유명의를 팔 수 있을 따름이다. 자본 그 자체는 국가가 소비하였고 지출하였다. 자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채권자로 말한다면 그는 1)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국가의 채무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2) 이 채무증서에 의하여 예컨대 5파운드 스텔링 또는 5%의 범위에서 국가의 한 해 소득의 일정한 부분 즉 한 해 세금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얻으며 3) 이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채무증서를 어느 누구에게나 다 팔 수

있는 것이다. 이자율은 5%이고 국가의 지불능력이 확실하다면 소유자 A는 보통 채무증서를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B에게 팔 수 있다. 왜냐하면 한 해에 5%로 100파운드 스텔링을 꿔주면 100파운드 스텔링의 지불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5파운드 스텔링의 공물을 해마다 보장받겠 B로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자본——국가의 지불이 이 자본의 결가지(이자)로 인정되는 그러한 자본——은 여전히 환상적이며 의제적인 자본이다. 그것은 국가에 꿔준 금액이 이미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때문만이 아니다. 이 금액은 결코 자본으로서 지출되고 투하되게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으로 투하됨으로써만 자체를 유지하는 가치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원래의 채권자 A의 경우에 매해의 세금 중 그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그의 자본에 대한 이자를 대표하는데, 이것은 고리대업자의 경우에 낭비자의 재산 중 그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그의 자본에 대한 이자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이 두 경우에 꿔준 화폐액은 자본으로서 지출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국가의 채무증서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은 A의 경우에는 본전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B로 말한다면 그의 사적 견지에서 볼 때 그의 자본은 이자 붙은 자본으로서 투하되고 있다. 사실상은 B는 A를 대신하였을 따름이고 국가에 대한 A의 채권을 산 것이다. 이러한 거래가 아무리 늘어났다 하더라도 국채라는 자본은 여전히 순전한 의제적인 자본이며 그리고 채무증서가 팔리지 않게 되는 그때부터 이 자본의 외관마저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의제자본은 고유한 운동을 한다.

국채자본에서는 마이너스가 자본으로 나타나는데——일반적으로 이자 붙는 자본은 왜곡된 모든 형태의 모체이므로 은행업자의 관념에서는 빚이 상품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국채라는 자본에 대립시켜 이제는 노동력을 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 임금은 이자라고 보며 따라서 노동력은 이러한 이자를 낳는 자본이라고 본다. 예컨대 한 해 임금이 50파운드 스텔링이며 이자율이 5%라면 한 해 동안의 노동력은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과 같다고 본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황당한 점이 여기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것은 자본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노동력의

착취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력 자체가 그러한 신비한 물건인 이자 붙는 자본이라는 것으로써 노동력의 생산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기에는(예컨대 페티의 경우) 이것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관념이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는 속류경제학자들이, 또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주로는 독일 통계학자들이 이 관념을 신중하게 이용하고 있다.¹⁾ 여기에는 유감스럽게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 표상을 불쾌하게 논박하는 두 가지 사정이 있다. 첫째는 노동자는 이러한 이자를 얻기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자는 그의 노동력의 자본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화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력의 한 해 가치는 그의 한 해 평균임금과 같으며 그가 자기의 노동력을 사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노동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바로 이 가치에 이 가치가 늘어난 부분인 잉여가치를 더한 것이다. 노예제도하에서는 근로자는 자본가치 즉 구매가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를 꾸는 경우에는 곧 사람은 첫째로 그 구매가격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또 그 밖에 해마다 자본의 마멸분을 보상해야 한다.

의제자본의 형성을 자본화라고 한다.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소득은 어느 것이나 다 그것이 평균이자율에 따라——이 이자율로 꾸주는 한 자본이 낳을 소득으로서——계산됨으로써 자본화된다. 예컨대 한 해 소득이 100파운드 스텔링이고 이자율이 5%라면 100파운드 스텔링은 2,000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한 해 이자일 것이며 그리고 이 2,000파운드 스텔링은 이제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한 해 소득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명의의 자본가치로 간주될 것이다. 이 소유명의를 산 사람에게는 100파

-
- 1) “노동자는 자본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는 노동자의 한 해 수입의 화폐가치를 이자소득이라고 본다면 규정할 수 있다. …만일…평균 하루수입을 4%로 자본화한다면 한 남성농업노동자의 평균가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독일계 오스트리아에서는 1,500탈리, 프러시아에서는 1,500탈리, 영국에서는 3,750탈리, 프랑스에서는 2,000탈리, 중앙 러시아에서는 750탈리이다”(폰 레덴, 『문화의…비교통계』, 베를린, 1848년, 434페이지).

운드 스틸링이라는 한 해 소득은 사실상 그가 넣은 자본에 대한 5%의 이자이다. 이리하여 자본의 현실적인 증식과정과의 온갖 연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며 자본이란 자동적으로 자체를 불어나게 하는 가치라는 개념이 종국적으로 확립된다.

유가증권인 채무증서가 국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환상적인 자본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증권의 자본가치는 순전히 환상적인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업은 연합자본을 만들어낸다. 증권은 이 자본을 나타내는 소유명의로 된다. 철도회사, 광산회사, 기선회사 등의 주식은 실제적 자본 즉 이러한 기업에 투하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자본 또는 주주들이 이러한 기업에 자본으로 지출할 목적으로 선대한 화폐액을 표시한다. 이 경우에 주식이 단순한 사기를 표시하는 일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자본은 이중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 번은 소유명의인 주식의 자본가치로 또 한 번은 위에서 든 기업들에 실제로 투하되어 있거나 또는 투하되어야 할 자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오직 이 두번째 형태로만 존재하며 그리고 주식은 자본이 실현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비례적인 소유명의에 지나지 않는다. A는 명의를 B에게 팔 수 있으며 또 B는 그것을 C에게 팔 수 있다. 이러한 거래로 하여 사태의 본질이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A 또는 B는 자기의 명의를 자본으로 만드는데, C는 자기의 자본을 주식 자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잉여가치에 대한 단순한 소유명의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명의들의——국가증권 뿐만 아니라 또 주식의——가치의 자립적 운동으로 하여 그러한 소유명의들이 아마도 그것으로 대표되는 자본이나 청구권과 함께 실제적 자본을 이루는 듯한 환상이 확고하게 된다. 즉 이 소유명의들은 상품으로 되며 이 상품의 가격이 독특한 운동을 하고 또 독특하게 확정된다. 이 소유명의들의 시장가치는 실제적 자본의 가치변동과는 관계없이(비록 이 가치가 불어나는 것과는 관련되지

* 이 권, 제1분책, 530~531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만) 그것들의 명목가치와는 다르게 규정된다. 한편 소유명인들의 시장가치는 소득——이에 대한 권리는 소유명인에 의하여 주어진다——의 크기와 확실성에 따라 동요한다. 만약 주식의 명목가치 즉 주식이 원래 대표하였던,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100파운드 스텔링이고 또 기업이 5%가 아니라 10%를 받게 되었다면 다른 사정들이 모두 같고 이자율이 5%인 경우에는 주식의 시장가치는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난다. 그것은 주식이 5%로 자본화되면 이제는 200파운드 스텔링의 의제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 주식을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사는 사람은 이 투자에서 5%의 소득을 얻는다. 기업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 이러한 증권의 시장가치는 부분적으로는 투기적이다. 그것은 이 시장가치는 실제적 소득에 의하여 규정될 뿐만 아니라 또 기대할 수 있는, 미리 계산된 소득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 자본의 가치증식이 달라지지 않는 조건에서는 또는 국채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자본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마다 소득이 법에 의하여 확정되고 일반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하면 이러한 유가증권들의 가격은 이자율의 운동과는 반대방향으로 오르내릴 것이다. 만약 이자율이 5%에서 10%로 오른다면 5파운드 스텔링의 소득을 보장하는 유가증권은 5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밖에는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자율이 $2\frac{1}{2}\%$ 로 떨어진다면 같은 유가증권은 2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을 표시한다. 유가증권의 가치는 언제나 자본화된 소득 즉 현재의 이자율에 따라 환상적 자본에 대하여 계산된 소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시장이 곤경에 빠진 시기에는 이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것은 첫째로는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화폐로 실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이 많이 시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러한 증권이 그 소유자에게 보장하는 소득이 국가증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게 되며 또 유가증권이 표시하는 실제적 자본의 증식이 산업기업들의 경우와 같이 재생산과정의 교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도 보게 된다. 이 마지막 경우에는 위에서 든 가치감소에 또 새로운 가치감소가 덧붙을 따름이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이러한 유가증권시

세는 그 유가증권이 실패한 기업 또는 사기업업을 표시하지 않는 한에서는 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오른다. 유가증권의 가치감소는 공황시기에는 화폐자산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²⁾

이러한 증권들의 가치감소 또는 가치증대가 그것들이 표시하는 실제적 자본의 가치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한에서 국민의 재부는 이러한 가치감소 또는 가치증대 이후에도 그 이전과 똑같다.

“1847년 10월 23일에 공적 유가증권과 그리고 운하와 철도의 주권은 이미 114, 752, 225파운드 스텔링이나 가치가 떨어졌다”(1847~1848년의 상업곤궁에 관한 보고서의 잉글랜드 은행총재 모리스의 진술(제3800호)).

이 유가증권의 가치감소가 생산의 실제적 정지나, 철도와 운하의 교통의 실제적 정지나, 또는 이미 시작한 기업의 중지나, 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업들에 대한 쓸데없는 투자를 표시하지 않는 한 국민은 명목적인 화폐자본의 이러한 비누거품이 터졌다 하여 그것 때문에 한푼도 더 가난해지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증권은 사실상 장래의 생산에 대한 축적된 청구권, 권리명의로 지나지 않으며 이 청구권, 권리명의로의 화폐가치 또는 자본가치는 국채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자본도 표시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표시하는 실제적 자본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조절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든 나라에서는 방대한 양의 이른바 이자 붙는

2) {2월혁명 직후 파리에서 상품과 유가증권의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고 전혀 팔리지 않았을 때 리버풀에 살던 한 스위스 상인 R. 쾰텐바르트 씨는(그가 나의 아버지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될 수 있는 것은 다 화폐로 바꾸어 현금을 가지고 파리로 가서 로트쉴드를 찾아가 공동으로 투기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로트쉴드는 짧아지게 그를 보더니 그에게로 다가와서 그의 두 어깨를 움켜쥐었다. “당신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작님.” “응, 그렇다면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멋진 투기를 하였다. —F. E.}.

자본 또는 화폐자본이 이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화폐자본의 축적이란 대부분은 생산에 대한 이 청구권의 축적, 이러한 청구권의 시장가격——환상적 자본가치——의 축적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런데 은행업자의 자본의 일부는 이 이른바 이자 붙는 증권에 투하되어 있다. 이 부분 자체는 실제적인 은행업무에서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예비자본의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이 유가증권은 어음 즉 산업자본가 또는 상인의 지불계약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돈을 찌주는 사람에게는 이 어음은 이자 붙는 증권으로 된다. 즉 그는 이 증권을 살 때 지불기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의 이자를 뺀다. 이것이 이른바 할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음이 표시하는 금액에서 얼마나 빼는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이자율에 달려 있다.

끝으로 은행업자의 자본의 마지막 부분은 금이나 은행권으로 이루어진 그의 화폐예비로써 이루어진다. 예금은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을 정하여 계약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예금자가 찾아낼 수 있다. 예금은 끊임없이 들락날락 한다. 그러나 예금은 한 사람이 찾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보충하는 만큼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는 평균적 크기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은행의 예비금은 평균적으로는 언제나 퇴장화폐로 있는 화폐량을 표시하며 이 퇴장화폐의 일부는 다시 금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지도서인 증권——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자체 가치도 없다——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은행업자의 자본의 대부분은 순전히 의제적인 것이고 채무청구권(어음), 국채증권(과거의 자본을 표시하는 것) 및 주식(장래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도서)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은행업자의 금고 속에 들어 있는 이 증권들이 표시하는 자본의 화폐가치는 그러한 증권이 확실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도서(국가증권과 같은)인 경우에도 또는 실제적 자본에 대한 소유명의(주식과 같은)인 경우에도 전적으로 의제적인 것이며, 또 이 화폐가치는 위에서 든 증권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실제적 자본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조절된다는 것이며, 또는 이러한 증권이 자본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단순한 청구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소득에 대한 청구권은 늘 변동되는 의제화폐자본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은행업자의 이 의제자본은 대부분이 그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이자가 불거나 불지 않거나 간에 은행에 예금하는 공중의 자본이라는 것이다.

예금은 언제나 화폐인 금 또는 은행권으로 또는 화폐를 받을 수 있는 지도서로 실시된다. 실제적 유통의 수요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 예비금을 제쳐놓는다면 이러한 예금은 실지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그 예금으로써 자기들의 어음을 할인받으며 대부를 받는 산업자본가와 상인들의 수중에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유가증권 거래업자들(증권중개업자들)의 수중이거나 또는 자기들의 유가증권을 판 개인들의 수중이거나 또는 정부(국고증권과 새 공채의 경우)의 수중에 있다. 예금 그 자체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예금은 이미 위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이자 붙는 자본으로서 뒤주고 따라서 은행의 금고 속에는 없으며 다만 은행의 장부상에서 예금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는 예금자들의 호상청구권이 그들의 예금에 대한 수표에 의하여 상쇄되고 서로 제하게 되는 한에서는 예금은 그러한 단순한 장부상의 금액으로서만 기능하는데 이 경우에 예금들이 같은 은행업자에게 있고 그리하여 이 은행업자가 예금자들의 계좌 호상간에서 매든가 또는 이것이 자기들의 수표를 서로 교환하고 차액만을 지불하는 서로 다른 은행들에 의해서 실시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아무래도 좋다.

이자 붙는 자본과 신용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같은 자본이나 심지어는 같은 채무청구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모든 자본은 2배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배로까지 보인다.³⁾ 이 화폐자본의 대부분은 완전히 의제적인 것이다.

3) {자본이 이렇듯 배로 되거나 3배로 되는 현상은 근년에 와서 더욱 크게 발전하였는데 예컨대 런던의 증권거래소 보고 중에서 이미 특수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트러스트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 일정한 종류의 이자 붙는 증권 예컨대 외국의 국가채권, 영국의 도시채권 또는 미국의 공채증권, 철도주식 등을 사들이기 위한 회사가 생긴다. 예컨대 200만 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이

예비금을 제쳐놓고는 모든 예금은 은행업자의 채무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현금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예금이 환치거래에 쓰이는 한에서 은행업자가 그것을 꾸준 다음에는 그 예금은 은행업자에게서는 자본으로서 기능을 한다. 은행업자들은 이러한 채무청구권을 서로 결제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예금들에 대한 지도서들을 서로 지불한다.

화폐대부에서 자본의 노는 역할에 관하여 A. 스미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화폐대부업에서까지도 화폐는 그 소유자에게는 쓸 데가 없는 자본을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기는 하나의 지도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자본은 그것을 옮기는 도구로 되는 화폐액과는 거의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커질 수 있다. 즉 같은 화폐가 차례차례로 서로 다른 수많은 물건을 사는데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꾸주는 데도 쓰인다. 예컨대 A는 W에게 1,000파운드 스텔링을 꾸주고 W는 곧 이것을 가지고 B에게서 1,000파운드 스텔링 어치의 상품을 산다. B 자신은 그 화폐를 쓸 데가 없으므로 그것을 X에게 꾸주며 X는 이것을 가지고 또 곧 C에게서 1,000파운드 스텔링 어치의 상품을 산다.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이유에서 C는 자기의

주식모집에 의하여 마련된다. 증역회는 해당한 유가증권을 사들이거나 또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 유가증권으로 투기를 하며 한 해 이자에서 비용을 뺀 것을 배당금으로 주주들 사이에 분배한다. 또한 일부 주식회사에서는 흔히 보통주를 두 종류 즉 우선주(preferred)와 일반주(deferred)로 나누어 놓는 습관이 생겼다. 우선주는 물론 기업의 총이윤에 의하여 허용되는 조건에서는 예컨대 5%라는 고정이자를 얻는다. 그 다음에 더 남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일반주가 얻는다. 그리하여 우선주에의 건실한 투자는 본래의 의미의 투기——보통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온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100만 또는 수백만 파운드 스텔링을 이 기업들의 주식에 투하하고 이어서 이 주식의 명목가치만큼 새로운 주식을——그러나 절반은 우선주로 절반은 일반주로——발행하는 회사들이 서게 되었다. 이 경우에 본래의 주식은 새로운 주식발행의 기초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배로 되는 것이다. —F. E.).

화폐를 Y에게 쥐주며 Y는 또 그것을 가지고 D에게서 상품을 산다. 그리하여 같은 화폐 즉 같은 금화 또는 지폐가 며칠도 안되는 사이에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대부되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품을 사는 데 쓰이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각각 가치로 보아 이 화폐 전액과 같다. 세 사람의 화폐소유자 A, B, C가 세 명의 낀 사람 W, X, Y에게 넘겨준 것은 오직 이렇게 사들일 수 있는 힘뿐이다. 이 힘 속에 바로 이 대부의 가치와 효과가 있다. 세 사람의 자본가가 쥐준 자본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가치와 같으며 이렇게 사들이는 데 쓰이는 화폐의 가치의 세 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대부는 완전히 확실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낀 화폐로 사들인 상품은 때가 되면 그 가치에 금화 또는 지폐로써 이윤을 붙여 돌려보내도록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화폐는 자체 가치의 3배 심지어 30배에 이르는 가치의 여러 가지 대부의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차례차례로 그러한 대부를 상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 (제2부, 제4장).

같은 화폐는 그 유통속도에 따라 몇 차례로 서로 다른 상품을 살 수 있으므로 그것은 또한 몇 차례의 서로 다른 대부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입은 화폐를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기는 것이며, 대부는 구매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고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화폐를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개개 판매자의 경우에 화폐는 그의 상품의 전화된 형태를 표시한다. 온갖 가치가 자본가치로 표현되는 오늘날에는 화폐는 서로 다른 대부에서 차례차례로 서로 다른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화폐가 서로 다른 상품가치를 차례차례로 실현할 수 있다는 위에서 확정된 명제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화폐는 물적 자본을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기기 위한 유통수단으로 쓰인다. 대부의 경우에는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쥐주는 사람의 손에 화폐가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의 손에서는 화폐가 유통수단이 아니라 그의 자본가치의 존재형태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쥐줄 때에는 화폐를 이 형태로 제3자에게 넘겨준다. 구매라는 매개가 없이 A가 화폐를 B에게 쥐주고 B가 그것을 C에게 쥐준다면 이 화폐액은 세

개의 자본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자본을, 오직 하나의 자본가치를 표시할 것이다. 화폐가 몇 개의 자본을 실지로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자주 서로 다른 상품자본의 가치형태로 기능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A, 스미드가 대부 일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예금에도 들어맞는데 예금은 사람들이 은행업자에게 주는 대부의 특수한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화폐가 몇 차례건 예금하는 도구로 될 수 있다.

“오늘 한 사람이 A에게 예금한 1,000파운드 스텔링이 내일에는 다시 지불되어 B에게서 예금으로 된다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 후 그것은 B가 다시 지불하여 C에게서 예금으로 되는 등 이렇게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 1,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는 여러 차례 옮겨감으로써 몇 갑절되어 절대로 규정될 수 없는 예금액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합왕국의 전체 예금의 9/10는 은행업자들의 장부에 기입된 해당한 장부금액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스코틀랜드에서는 유통화폐량이 300만 파운드 스텔링을 넘어본 적이 결코 없었는데 예금액은 2,700만 파운드 스텔링이다.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몰밀듯이 은행으로 밀려드는 일이 없다면 이 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역시 규정될 수 없는 금액을 매우 쉽게 다시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어떤 사람이 소상인에게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이 내일은 소매상인이 도매상인에게 빚을 갚는 데 쓰이며 모레는 이 도매상인이 은행에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등 끝이 없는 것이므로, 이 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그리고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돌아다니면서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예금액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통화이론…』(에딘버러, 1845년), 62, 63페이지).

그리고 이러한 신용제도에서는 모든 것이 배로, 3배로 되어 단순한 환상물로 되는 만큼, 이것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 무슨 확실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예비금에도 들어맞는다.

다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모리스 씨의 말을 들어보자.

“개인은행의 예비금은 예금형태로 잉글랜드 은행에 있다. 금의 유출은 우선 잉글랜드 은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금의 유출은 같은 정도에서 다른 은행의 예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금의 유출은 다른 은행들이 우리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비금의 일부의 유출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의 유출은 모든 지방은행의 예비금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산업곤궁』, 1817~1848년. [제3639~3642호]).

그리하여 결국 이 예비금은 잉글랜드 은행의 예비금에 용해된다.” 그

- 4) (그 후 이러한 일이 얼마나 광범히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은 1882년 12월 15일자 『매일소식』²⁾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공식자료 즉 1802년 11월 현재 런던의 15개 대은행의 예비금에 관한 공식자료가 보여준다.

은행 이름	부채 (파운드 스텔링)	현금예비금 (파운드 스텔링)	백분율
시티.....	9, 317, 629	746, 551	8. 01
캐피틀 앤드 카운티스.....	11. 392. 744	1, 307, 483	11. 47
임페리얼.....	3, 987, 400	447, 157	11. 22
로이즈.....	23, 800. 937	2, 966, 806	12. 46
런던 앤드 웨스트민스터.....	24, 671, 559	3, 818, 885	15. 50
런던 앤드 사우스웨스턴.....	5, 570, 268	812, 353	14. 58
런던 조인트 스톡.....	12, 127, 993	1, 288, 977	10. 62
런던 앤드 미들랜드.....	8, 814, 499	1, 127, 280	12. 79
런던 앤드 카운티.....	37, 111, 035	3, 600, 374	9. 70
내셔널.....	11, 163, 829	1, 426, 225	12. 77
내셔널 프로빈 시알.....	41, 907, 384	4, 614, 780	11. 01
파스 앤드 더 얼라이언스.....	12, 794, 489	1, 532, 707	11. 98
프레스코트 앤드 컴퍼니.....	4, 041, 058	538, 517	13. 07
유니온 오브 런던.....	15, 502. 618	2, 300, 084	14. 84
윌리엄스, 디콘, 앤드 맨체스터 앤드 컴퍼니.....	10, 452, 381	1, 317, 628	12. 60
계.....	232, 655, 823	27, 845, 807	11. 97

러나 이 예비금도 또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부의 예비금은 이 은행이 유통중에 있는 은행권의 양 이상으로 발행할 권한이 있는 은행권의 초과량과 같다. 법률에서 제정된 은행권 발행의 최고한도는 1,400만 파운드 스텔링(이를 위해서는 금속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 은행에 대한 국가의 부채액과 거의 같다)에 이 은행의 귀금속준비액을 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준비액이 1,400만 파운드 스텔링이라면 이 은행은 2,8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며 이 액 중에서 2,000만이 유통중에 있다면 은행부의 예비금은 800만이다. 이 경우에 이 800만이라는 은행권은 이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은행자본인 동시에 이 은행의 예금에 대한 예비금으로 된다. 이제 금의 유출이 시작되어 금속준비가 600만만큼 줄어든다면——이 경우에 이 은행은 이 액만큼 은행권을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은행부의 예비금은 800만에서 200만으로 떨어진다. 한편으로 이 은행은 자기의 이자율을 훨씬 올리게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은행과 또 다른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하는 예비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1857년 런던의 4대 주식은행은 만약 잉글랜드 은행이 1844년의 은행법을 정지할 데 대한 정부의 지시가 나오게 하지 못한다면⁵⁾ 그들은 자기 예금을 찾아낼 것이라고 위협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부는 파산할 것이다. 이와같이 발행부에는 유통은행권의 태환보증으로서 수백만(예컨대 1847년에는 800만)이 있는데 은행부는 1847년의 경우와 같이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발행부의 이러한 보증도 또한 환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거의 2,800만의 예비금 중에서 적어도 2,500만이 잉글랜드 은행에 예금되고 있으며 15개 은행 자체의 금고 속에 현금으로 들어 있는 것은 기껏해야 300만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부의 현금예비금은 같은 1892년 11월에 온전히 1,600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F. E. J.

- 5) 1844년의 은행법의 정지로 하여 잉글랜드 은행은 은행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준비로 보증하지 않고 임의의 양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종이 의제화폐자본을 임의의 양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으로써 은행과 이음중개업자들에게 또 이들을 통하여 상인들에게도 선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업자 자신에게는 직접 수요가 없는 예금의 대부분은 빌브로커(billbroker——문자 그대로는 어음중개업자인데 본질에서는 은행업자이다)의 손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그 대신에 자기들에게 준 선대의 담보로서 그들이 이미 런던이나 지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할인해 준 상업어음을 은행업자에게 대준다. 빌브로커는 은행업자에 대하여 이 화폐를 요구만 있으면 곧(money at call)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조작은 큰 규모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잉글랜드) 은행의 현충재 니브 씨는 자기의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한 중개업자가 500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800만 내지 1,000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은 400만을, 또 한 사람은 350만을, 다른 또 한 사람은 800만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예금은 중개업자의 손에 들어간 예금이다”(『은행법위원회 보고』, 1858년, 5페이지, 제8호).

“런던의 빌브로커들은… 아무런 현금예비금도 없이 거래의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뒤따라 만기가 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음에 대한 입금을 타산하였으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들이 할인한 어음을 담보로 하여 잉글랜드 은행에서 선대를 얻을 가능성을 타산하였다”(같은 보고, 8페이지, 제17호). “런던의 두 빌브로커 상회가 1847년에 지불을 그만두었다. 그 후에 두 상회는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1857년에 그들은 또 지불을 그만두었다. 한 상회의 자본은 1847년에 180,000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부채는 대략 2,683,0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그의 부채는 1857년에는 5,300,000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자본은 아마도 1847년의 자본금의 1/4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 상회는 부채는 두 경우에 다같이 300~400만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으며 자본은 45,000파운드 스텔링을 넘지 않았다”(같은 보고, 21페이지, 제52호).

제 30 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 — I

신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비할 바 없이 곤란한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래의 화폐자본의 축적, 이 축적은 어느 정도까지 자본의 실제적 축적의 즉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의 표식이며 또 어느 정도까지 그렇지 않은가? 이른바 자본의 과잉(plethora)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자 붙는 자본 즉 화폐자본에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것은 산업과잉생산의 특수한 표현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산업과잉생산 이외의 특수한 현상을 이루는 것인가? 이 과잉, 화폐자본의 이 과잉공급이 경제상태에 있는 현재의 화폐량(덩어리금, 금화 및 은행권)과 일치하는가, 그리하여 실제적 화폐의 이 과잉을 대부자본의 그러한 과잉의 표현 및 발현형태라고 볼 수 있는가?

또 둘째로, 화폐의 결핍 즉 대부자본의 부족은 어느 정도로 실제적 자본(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부족을 표현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화폐로서의 화폐의 부족 즉 유통수단의 부족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이제까지 우리는 화폐자본 및 화폐재산 일반의 축적의 독특한 형태를 보아온 한에서는 축적의 이 형태는 결국 노동에 대한 소유의 청구권의 축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 국채라는 자본의 축적은 이미 명백히 된 바와 같이 세금 총액 중에서 일정한 액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채권자라는 계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⁶⁾ 채

6) “국가증권은 세입 중에서 빚을 갚기 위한 부분을 표시하는 상상적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한 자본은 낭비되었는데 이 자본은 차입금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증권은 이 자본을 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본은 이미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재부는 산업노동이 만들어내야

무의 축적조차도 자본의 축적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신용제도에서 일어나는 왜곡이 가장 완전히 드러난다. 맨 처음에는 낡은 것으로 이미 오래 전에 지출된 자본에 대하여 발행된 이 채무증권, 이미 없어진 자본의 이 종이 부분은 그것이 팔릴 수 있는 상품이며 따라서 자본으로 다시 될 수 있는 한에서 그 소유자에게는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하긴 우리가 또한 이미 본 바와 같이 회사기업, 철도, 광산 등에 대한 소유명의는 사실상 실제적 자본에 대한 명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자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 자본을 끌어낼 수는 없다. 그 소유명의는 실제적 자본이 차지해야 할 잉여가치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줄 따름이다. 그러나 이 명의도 또한 실제적 자본의 종이 부분으로 된다. 그것은 발송증권이 화물 자체와는 따로 그리고 화물과 동시에 가치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명의는 존재하지 않는 자본을 명목상으로 대표한다. 왜냐하면 실제적 자본은 그것과는 따로 존재하며 따라서 이 부분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실제적 자본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이다. 그 명의는 이자 붙는 자본의 형태로 된다. 그것은 그 명의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자본가치처럼 상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권의 축적이 철도, 광산, 기선 등의 축적을 표현하는 한에서 그것은 실제적 재생산과정의 확대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예컨대 동산에 대한 과세표의 확대가 이 동산의 증대를 표시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팔릴 수 있고 따라서 자본가치로서 유통하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소유명의는 환상적인 것이며 그 가치액은 소유명의로 표시되는 실제적 자본의 가치운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르내릴

하는데 해마다 이 재부의 일부분은 낭비된 재부를 짊어진 사람들의 것으로 미리 예정된 것이다. 이 부분은 조세에 의하여 재부의 생산자들에게서 징수되어 국가의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 경우에 일정한 나라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자본과 이자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상상적 자본이 가정되는데 그 크기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한 해 임료를 낼 수 있는 자본과 같다”(시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제2판, 파리, 1827년), 제2권, 229~230페이지).

수 있다. 그 가치액 즉 증권거래소에서 그 시세는 이자율이 떨어짐에 따라 반드시 오르는 경향을 가지는데 그것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이 화폐자본의 독특한 운동과는 관계없이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의 단순한 결과인 한에서 그러하다. 그리하여 이 한 가지 원인만으로도 벌써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이 의제적 채부는 일정한 본래의 명목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의 해당부분의 가치가 늘어남으로써 불어난다.”

이러한 소유명의를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보며 그리고 철도왕 등의 손에 이 소유명의를가 집중된 것은 사태의 본성으로 보아 더욱더 하나의 도박의 결과로 되는데 이 도박은 이제는 자본소유의 시초적 획득방식으로서의 노동을 대신하여 나타나며 또한 직접적 폭력을 대신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의제화폐재산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들의 화폐재산 뿐만 아니라 은행업자의 자본의 매우 큰 부분을 이룬다.

이 문제를 빨리 끝맺기 위하여 말해줄 따름이지만 화폐자본의 축적이라는 것은 사적 화폐자본가들을 한편으로 하고 국가, 공동체 및 재생산적 채무자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 두 편 사이의 매개자로서의 은행업자들(직업적인 대부자들)의 손에 채부가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신용제도의 모든 방대한 확장, 신용제도 전체가 이 은행업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사적 자본으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자들은 자본과 소득을 언제나 화폐의 형태 또는 화폐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 계급의 재산축적은 실제적 축적과는 매우 다른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으나 여하튼 이 계급이 실제적 축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좁은 테두리에 국한하자. 국가증권, 주식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은 뺄줄 수 있는 자본 즉 이자를 낳기로 되어 있는 자본을 위한 투자분야이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그러한 자본을 뺄주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증권 자체가 그것들에 투하되는 대부자

7) 뺄투기로 되어 있는 축적된 화폐자본의 일부는 사실상 산업자본의 단순한 표현이다. 예컨대 영국이 1857년에 미국의 철도와 또 다른 기업에 8,000만

본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용이 재생산과정에서 직접적 역할을 노는 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산업가나 상인이 어음을 할인받거나 대부를 받으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식도 아니고 국가증권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화폐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방식으로 화폐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가증권을 저당잡히거나 또는 파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이 대부자본의 축적인데 그것도 특히 대부할 수 있는 화폐자본의 축적이다. 집, 기계, 기타 고정자본의 대부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가와 상인들이 재생산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상품으로 서로 실시하는 선대도 또한 문제가 아니다. 하긴 이 점도 미리 더 자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매개자로서의 은행업자가 산업가와 상인들에게 실시하는 화폐대부이다.

그러면 먼저 상업신용 즉 재생산과정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서로 주고 받는 신용을 분석하여 보자. 상업신용은 신용제도의 기초이다. 상업신용을 대표하는 것은 어음, 일정한 지불기일이 있는 채무증권, 지불연기증권(document of deferred payment)이다. 누구나 다 한 손으로 신용을 주고 다른 손으로 신용을 받는다. 우리는 당분간 은행신용은 제쳐놓기로 한다. 그것은 이 은행신용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계기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어음들이 상인 자신들 사이에서 한편으로부터 다른 편으로의 양도서명에 의해서 다시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하는 한에서는——그러나 이 경우에 할인은 중간에 끼우지 않는다——이것은 A에서 B로 채권이 옮겨가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연관을 절대로 변경시

파운드 스틸링을 투자하였을 때 이 투자는 미국 사람들이 전혀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영국상품의 수출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수출업자들은 이 상품들에 대하여 미국 앞으로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이 어음은 영국의 주식용모자들이 사서 주가가치에 대한 지불로 미국에 보냈던 것이다.

키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들어설 따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폐가 중간에 끼우지 않고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방적업자 A는 목화중개업자 B에게, 또 이 B는 수출업자 C에게 어음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C가 동시에 실을 수출하기도 한다면——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C는 어음으로 A에게서 실을 살 수 있고 방적업자 A는 C에게서 지불로서 받은 B 자신의 어음으로써 중개업자 B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이 경우에 화폐로 지불해야 할 것은 기껏해서 차액뿐이다. 이 경우에 모든 거래는 목화와 실과의 교환을 매개할 따름이다. 수출업자는 방적업자를, 목화중개업자는 목화재배업자를 대표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런 순전한 상업신용의 순환에 관해서는 두 가지 계기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러한 호상채권의 청산은 자본의 환류에 즉 연기되어 있을 따름인 W—G라는 행위에 달려 있다. 방적업자가 옥양목직조업자에게서 어음을 받았다면, 옥양목직조업자는 시장에 내놓은 자기의 옥양목이 지불기일 이전에 팔린다면 지불을 할 수 있다. 알곡투기업자가 자기의 대리업자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대리업자는 그 동안에 예상가격으로 알곡을 팔았을 때 화폐를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불들은 재생산——즉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신용은 호상성을 띠므로 한 사람의 지불능력은 다른 사람의 지불능력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어음 발행인은 자기의 어음을 발행할 때 그 자신의 기업에서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에 기대를 걸 수 있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에 그에게 어음을 지불해야 할 제3자의 기업에서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에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되돌아오는 데 대한 타산을 제쳐놓는다면 지불을 다만 예비자본——즉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에 어음발행인이 자기의 지불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비자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이 신용제도에 의해서 현금지불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출의 대부분은 언제나 현금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즉

임금, 세금 등. 또한 예컨대 C에게서 현금지불 대신에 어음을 받은 B는 이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자신 D에 대한 만기어음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B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화재배업자로부터 방적업자이로 또 그 반대로 위에서 전제한 바와 같은 재생산의 완전한 순환은 오직 예외일 따름이고 실지는 언제나 여러 곳에서 중단되지 않을 수 없다. 재생산과정을 연구할 때(『자본론』, 제2부, 제3편*)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생산자들은 부분적으로 불변자본을 자기들 사이에서 교환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어음은 어느 정도 서로 상쇄될 수 있다. 생산의 상승선에서 예컨대 목화중개업자가 방적업자 앞으로, 방적업자가 옥양목직조업자 앞으로, 옥양목직조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아마도 다시 목화수입업자)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래들의 순환은 없으며 따라서 또 청구권 계열이 동그라미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직조업자에 대한 방적업자의 청구가 기계제작업자에 대한 석탄공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적업자는 그의 기업상으로는 기계제작업자에 대하여 결코 대응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방적업자의 제품인 실은 결코 기계의 재생산과정에 요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화폐로 결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업신용의 한계는 그 자체로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가와 상인들의 채부 즉 자본이 더디게 되돌아오는 경우에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비자본, 2) 자본이 되돌아오는 그 자체.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이 잠시 늦어질 수도 있으며 그 동안에 상품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시장의 경기가 나빠서 상품이 갑자기 팔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어음의 기한이 길면 길수록 첫째로 예비자본은 더 크지 않으면 안되며 가격이 떨어지거나 시장에 상품이 차넘침으로써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이 줄어들며 더디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본래의 거래가 상품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질 것을 예견하는 투기에 의하여 제약되면 될수록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하게 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 이 책, 제Ⅱ권(2), 466~46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노동생산력이 발전하고 따라서 또 대규모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1) 시장은 확대되고 생산지에서 멀어지며, 2) 따라서 신용은 더욱 장기간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3) 거래에서 투기적 요소가 더욱더 심하게 지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의 생산과 먼 시장을 대상하는 생산은 모든 생산물을 상업에 내맡긴다. 그러나 국민의 자본이 배로 늘어 상업 자체가 자체의 자본으로 국민적 생산물 전체를 사들여 다시 팔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용은 불가피하다. 이 신용의 양은 생산의 가치량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며 그 기간은 판매시장이 멀어짐에 따라 늘어난다. 여기에서는 호상작용이 일어난다. 즉 생산과정이 발전하면 신용이 확대되며 또 신용은 산업과 상업의 조작들을 확대시킨다.

이 신용을 은행업자의 신용과 따로 떼어 본다면 그것은 산업자본 그 자체의 크기에 따라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은 이 경우에는 같은 것이다. 대부되는 자본은 종국적인 개인적 소비를 위한 상품자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본의 불변적 요소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자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부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자본 즉 재생산과정의 일정한 단계에 있으나 그러나 매매를 통하여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며 그것에 대한 등가는 후에, 미리 약정된 기일에 비로소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그러한 자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목화는 어음과 교환되어 방적업자의 손으로 넘어가며 실은 어음과 교환되어 옥양목직조업자의 손으로, 옥양목은 어음과 교환되어 상인의 손으로, 또 이 상인의 손에서 어음과 교환되어 수출업자의 손으로, 수출업자의 손에서 어음과 교환되어 인도의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며, 이 인도의 상인은 그것을 팔고 그 대신 인디고를 사들인다. 등등.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목화는 옥양목으로 전화하며, 옥양목은 결국 인도로 실려가서 인디고와 교환되며, 인디고는 구라파로 실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생산과정에 들어간다. 재생산과정의 여러 가지 단계는 이 경우에 신용에 의하여 매개되며 그리하여 방적업자는 목화의 값을, 옥양목직조업자는 실의 값을, 상인은 옥양목의 값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다. 이 과정의 첫 행위들에서는 목화라는 상품은 생산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 이행은 신용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런데 목화가 생산에서 상품으로서의 마지막 형태를 가지게 되자 이 같은 상품자본은 또 여러 상인들의 손을 거칠 따름인데 상인들은 그것을 먼 시장으로 실어가며 마지막 상인이 드디어 그것을 소비자에게 팔고 그 대신 소비과정에 들어가거나 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 다른 상품을 사들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기간을 갈라볼 필요가 있다. 첫 기간에는 신용은 일정한 물건을 생산하는 현실적인 순차적 단계를 매개하며, 둘째 기간에서는 한 상인의 손에서 다른 상인의 손으로의 이행——수송도 포함하는——을 즉 $W-G$ 라는 행위를 매개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품은 언제나 적어도 유통행위에 있으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한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쥐주는 것은 결코 없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손에서 자체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이며 그 소유자에게는 단순한 상품자본 즉 다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것도 우선 적어도 화폐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자본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신용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은 상품의 형태변화인데 그것은 $W-G$ 뿐만 아니라 또 $G-W$ 와 실제적 생산과정이다. 은행신용을 제쳐놓는다면 재생산순환 안에 신용이 많다는 것은 꺾줄 그리고 유리한 투자처를 찾는 높고 있는 자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많은 자본이 재생산과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용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은 1) 산업자본가를 두고 본다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산업자본의 이행이며 서로 종속되고 서로 얽혀있는 생산분야들의 연관이며, 2) 상인을 두고 본다면 화폐를 받고 상품을 최종적으로 팔거나 또는 다른 상품과 교환할 때까지의,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의 상품의 수송과 이행이다.

이 경우에 신용의 최고한도란 산업자본이 생산에 가장 완전히 사용된다는 것 즉 소비의 한계와는 관계없이 그 자본의 재생산력이 극도로 긴장된다는 것을 말한다. 소비의 이 한계는 재생산과정 자체의 긴장에 의하여 늘어난다. 즉 이 긴장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들에 의한 소득의 소비를 증대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생산적 소비의 긴장과 같은 것이

다.

재생산과정이 원활하고 따라서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이 계속 보장되어 있는 동안은 이 신용은 지속되고 또 늘어나며 그것이 늘어나는 것은 재생산과정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이 더디며, 시장에 상품이 지나치게 많으며,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정채상태가 닥쳐 오기만 하면 산업자본의 과잉이——그것도 산업자본이 자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의 과잉이——나타난다. 많은 상품자본이 있으나 팔리지 않는다. 많은 고정자본이 있으나 재생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놓고 있다. 신용이 줄어드는 것은 1) 이 자본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형태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자체의 재생산의 한 단계에서 멎고 있기 때문이다. 2) 재생산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는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3) 이 상업신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기의 생산을 줄이고 창고에 팔리지 않은 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방적업자는 신용으로 목화를 사들일 필요가 없다. 상인은 그렇지 않아도 상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신용으로 그것을 사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재생산과정의 이러한 확대에 또는 이 과정의 정상적인 긴장에만이라도 교란이 생긴다면 그와 함께 신용에서도 결합이 나타난다. 상품을 신용으로 얻기가 더 힘들게 된다. 특히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신용으로 파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산업경기순환 중 파국 다음 단계의 특징이다. 누구나 다 팔려고는 하지만 팔 수 없으며 또한 지불하자면 팔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공황 때에는 놓고 있으며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자체의 재생산과정에 억눌려 있는 자본이 바로 신용부족이 가장 심한(따라서 은행신용에서는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 가장 많다. 이미 투하된 자본은 이 경우에는 사실상 대량적으로 놓고 있는 자본이다. 그것은 재생산과정이 멎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은 폐쇄되고 원료는 쌓이고 완성된 생산물은 상품시장에 넘쳐흐른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생산자본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릇된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생산자본은 부분적으로는 재생산의 정상적인 그러나 순간적으로 줄어든 규모에 비하여, 또 부분적으로는 소비가 줄어

든 데 비하여 남아 돌아가게 된다.

모든 사회가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자. 또한 다음과 같은 가격변동 즉 총자본의 많은 부분이 그 평균비율로 보장되지 못하게 하며 그리고 재생산과정의 여러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이것은 특히 신용으로 말미암아 발전된다——조건에서 일시적인 전반적 정체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가격변동은 제쳐놓기로 한다. 신용에 의하여 조장되는 가짜기업과 투기거래도 또한 제쳐놓기로 하자. 그 경우에는 공황은 오직 여러 부문들에서의 생산의 불균형과 그리고 자본가들 자신의 소비와 축적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사태에서는 생산에 넣은 자본의 보상은 주로 비생산계급들의 소비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한편 노동자들의 소비능력은 부분적으로는 임금의 법칙에 의하여 제한되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동안만 사용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한된다. 모든 실제적 공황의 마지막 원인은 언제나 대중의 빈궁과 그들의 소비의 제한인데 이 제한은 마치 사회의 절대적 소비능력만이 생산력발전의 한계인 것 같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충동에 반작용하는 것이다.

적어도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민족의 경우에 생산자본이 실지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되는 식량이나 또는 가장 중요한 산업원료들이 전반적으로 흠작을 이룬 경우뿐이다.

그런데 이 상업신용에 본래의 화폐신용이 덧붙는다. 산업가와 상인들의 호상선대는 그들이 은행업자와 화폐대부자들에게서 받는 화폐선대와 엉켜 있다.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선대는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조업자는 자기의 생산물을 어음을 받고 팔고 이 어음을 어음중개업자(billbroker)에게서 할인받는다. 사실상 어음중개업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의 신용을 선대할 따름이며 이 은행업자는 이번에는 자기에게 예금을 하는 산업가와 상인 자신들 또한 노동자들(저축은행을 통하여) 그리고 지대를 받아먹는 차들과 또 기타 비생산계급들의 화폐자본을 어음중개업자에게 선대한다. 그리하여 모든 개별적 제조업자나 상인이 충분한 예비자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자본이 실지로 되돌

아오는 것에 얼마일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나 또 한편 부분적으로는 단순한 어음사기로 말미암아 또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어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상품거래로 말미암아, 전체과정은 매우 복잡해지며 그리하여 영업이 매우 안정되고 자본이 원활하게 되돌아오는 듯한 외관은——사실상 자본은 이미 오래 전에 부분적으로는 속은 화폐대부자들, 부분적으로는 속은 생산자들을 희생으로 해서만 되돌아오게 되었지만——오랫동안 평온하게 존속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업은 언제나 파국 직전에는 지나치게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은 예컨대 1857년과 1858년의 「은행법에 관한 보고」이다. 이 보고에서는 은행의 모든 중역들, 상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오버스톤 경을 위수로 하여 전문가로 불려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업이 번영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서로 축하하였는데 이것은 1857년 8월 공황이 폭발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투크는 그의 저작인 「가격사」에서 하나하나의 공황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놀랍게도 또다시 이러한 환상에 빠졌다. 갑자기 붕괴가 시작될 때까지 영업은 계속 극히 건전하며 일은 매우 잘 되어간다.

이제는 화폐자본의 축적을 다시 보기로 하자.

빼줄 수 있는 화폐자본이 늘었다 하여 그것이 다 자본의 실제적 축적이나 또는 재생산과정의 확대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황을 겪고난 직후의 산업경기순환의 단계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는 대부자본은 대량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생산과정이 줄어들고(1847년 공황 후 영국의 산업지구에서는 생산이 1/3 줄어들었다) 상품가격이 최저점에 떨어지고 기업정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순간에는 이 자원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데 이것은 바로 산업자본이 줄어들고 마비된 탓으로 대부자본의 양이 늘었다는 것을 말해줄 따름이다. 상품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적어지고 임금에 지출하는 자본이 줄어들에 따라 물론 유통수단은 보다 적은 양밖에 필요치 않다는 것, 또 한편으로 부분적으로는 금이 흘러나감으로써 또 부분적으로는 파산에 의하여 대외채무가 청산된 후에는 세계화폐의 기능을 할 추가적 화폐는 필요치 않다는 것,

끝으로 어음할인업무의 범위는 그러한 어음 자체의 수와 액이 줄어들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이 모든 것은 볼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부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유통수단을 위한 것이든, 지불수단을 위한 것이든 간에 줄어들며(새로운 투자는 아직 문제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자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대부화폐자본의 공급도 이러한 사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늘어난다.

그리하여 1847년 공황 이후 “거래는 줄어들고 화폐는 대과잉”(『상업론』, 1847~1848년, 증언, 제1, 644호) 상태에 있었다. 이자율은 매우 낮았는데 그것은 “거래가 거의 완전히 없어지고 화폐를 투자할 가능성도 거의 완전히 없어진”(같은 책, 45페이지[제231호], 리버풀 왕립은행의 중역 호지슨의 진술) 탓이었다. 이 양반들이(호지슨은 그래도 그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황당한 말을 꾸며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다.

“곤란한 형편이(1847년의) 이루어진 것은 나라의 화폐자본이 실제로 줄어든 탓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부분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의 수입을 금으로 지불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유동자본(floating capital)이 고정자본으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같은 책, 39페이지, 제466호).

유동자본이 고정자본으로 전화되면 어떻게 나라의 화폐자본이 줄어들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예컨대 당시 자본이 주로 고착되었던 철도부설에서는 구름다리¹⁾와 레일에는 재료로서 금화나 화폐는 사용되지 않았고 철도주식을 사기 위한 화폐는 그것이 이 주식을 사기 위해 예금된 한에서는 은행에 예금된 다른 모든 화폐와 똑같은 기능을 하였고 또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화폐자본의 양을 잠시 늘어나게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가 실제로 철도부설에 지출된 한에서는 그것은 국내에서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하였다. 유동자본이 고정자본으로 전화됨으로써 화폐자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정자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며 따라서 수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이 권, 577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수출품의 대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본도, 따라서 현금이나 덩어리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어지는 한에서 만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수출품도 외국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창고에 많이 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맨체스터와 기타 지방들의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정상적인 영업자본의 일부를 철도주식에 고착시켰으며, 따라서 자기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곧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유동자본(floating capital)은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결과를 견뎌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을 거기에서 끌어내서 철도에 넣지 않고 예컨대 광산——그 산물인 철, 석탄, 동 등은 그 자체가 유동자본(floating capital)이다——에 넣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홍작, 알곡의 수입, 금의 수출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폐자본이 실제로 줄어든 것은 철도투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거의 모든 상사들은 화폐를 철도에 넣음으로써 자기의 사업범위를 막대한 줄이기 시작하였다”(같은 책, 42페이지). “이 상사들은 철도에 너무나 방대한 투자를 하였으므로 그들은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매우 많은 자본을 은행에서 꾸어 이 자본으로 자기자신의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같은 호지슨, 같은 책, 67페이지). “맨체스터에서는 철도투기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제1부, 제13장, 제3절, 3과* 기타 부분에서 여러 번 인용된 R. 가드너, 진술서, 제4884호, 같은 책).

1847년 공황의 주되는 원인은 시장의 방대한 상품과잉과 동인도 상품 거래에서의 무제한한 투기였다. 그런데 다른 사정들도 또한 이 부분의 매우 부유한 상사들을 파산케 하였다.

“그 상사들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

* 이 책, 제I권(2), 52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자본은 모리셔스 섬에서의 토지소유 또는 인디고공장들과 사탕공장들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50만 내지 60만 파운드 스털링이나 되는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음을 지불하기 위한 아무런 유동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결국 자기들의 이음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신용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다”(동인도를 상대로 하는 리버풀의 대상인 C. 터너, 같은 책, 제730호).

또한 가드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같은 책, 제4,872호).

“중국과의 조약이 맺어진 직후 우리 나라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크게 확장된 전망이 커졌으므로 많은 대공장들이 전적으로 중국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면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건설되어 이미 있는 우리 나라의 많은 공장에 첨가되었다.” (제4,874호)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파멸로 끝났다. 나는 1844년과 1845년에 중국에 수출한 총액 중에서 2/3 이상의 금액이 회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는 우리가 대신 싣고 오는 주되는 물품이며 또 우리는 이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조업자들인 우리는 차에 대한 관세가 많이 떨어지리라 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에 영국의 제조업자들의 특징적인 신조가 소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시장과의 무역은 상품을 사들이는 외국시장의 능력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우리 나라에서 우리의 공업제품 대신에 받는 생산물을 소비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제한된다.”

(영국과 무역을 하는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은 물론 얼마든지 영국제품의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부유한 영국은 자기의 수출품 대신에 받은 생산물을 소화할 수 없다).

(제4,876호) “나는 처음에 약간의 나의 상품을 수출하였는데 그것은 약 15%의 손실을 보고 팔렸다. 그런데 나는 나의 대리업자가 차를 사서 그것을 그곳

에 가져다 판다면 큰 이윤을 내서 그 손실을 메울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나 이윤은 고사하고 때로는 25%, 심지어는 50%의 손실까지 보았다.” (제4, 877호) “제조업자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수출하는가?” “주로 그렇다. 상인들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금방 깨달은 것 같다. 그들은 제조업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이 일에 참여하느니보다 오히려 위탁판매를 하라고 권고하였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1857년에는 주로 상인들이 손실을 보고 파산을 당하였다. 그것은 이번에는 제조업자들이 상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책임지고 외국시장에 상품을 가득차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폐자본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은행업이 확대됨에 따라(아래의 입스 위치 지방의 실례를 보라. 거기에서는 1857년 직전의 몇 해 동안에 차지 농업가의 예금은 4배로 되었던 것이다*) 전에는 개인의 퇴장화폐이거나 또는 주화저장이었던 것이 일정한 기간 대부자본으로 전화되기 때문이다. 화폐자본의 이러한 증대는 생산적 자본의 장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컨대 런던의 주식은행들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한 이후 그 은행들에서의 예금의 증대가 생산적 자본의 장성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증대는 생산적 자본에 비하여 대부화폐자본이 많아지게 할 따름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재생산과정이 지나친 긴장상태에 앞서는 변형상태에 다시 이르게 된다면 상업신용은 매우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본이 쉽게 되돌아오며 생산이 늘어나기 위한 건전한 토대가 사실상 마련된다. 이러한 사태에서 이자율은 최저한도 이상으로는 오른다 하더라도 아직은 낮은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이자율이 낮으며 따라서 대부자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산업자본이 실제로 늘어나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 이 권, 613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있는 유일한 시기이다. 상업신용이 늘어남과 관련하여 자본이 쉽게 규칙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의 공급은 보장되며 또 이자율은 오르지 않게 된다. 또 한편 이제야 비로소 예비자본없이 또는 어떠한 자본도 전혀 없이 사업을 하며, 따라서 전적으로 화폐신용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돈벌이 기사들이 큰 역할을 놀기 시작한다. 이 뿐만 아니라 온갖 형태의 고정자본이 많이 늘어나며 수많은 새로운 대기업들이 일을 시작한다. 이자는 이제는 평균적 높이에까지 오른다. 새로운 공황이 폭발하고, 신용이 갑자기 정지되고, 지불이 멎고, 재생산과정이 마비되고 또 위에서 든 예외는 있지만 대부자본의 거의 절대적인 부족도 함께 늘고 있는 산업자본의 과잉이 닥쳐오자 이자는 다시 최고한도에 이른다.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은 대부자본의 운동은 대체로 산업자본의 운동과는 반대방향으로 나간다. 아직 낮기는 하나 최저한도를 넘는 이자율이 공황 후의 개선 및 신뢰의 증대와 일치하는 국면 그리고 특히는 이자율이 평균적 수준 즉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중심에 이르는 국면——이 두 계기만이 풍부한 대부자본과 많이 늘어난 산업자본과의 일치를 표현한다. 그러나 산업경기순환의 시초에는 이자율이 낮은 것이 산업자본이 줄어든 것과 일치하며 경기순환의 마지막에는 이자율이 높은 것이 산업자본의 과잉과 일치한다. 개선과 일치하는 낮은 이자율은 상업신용이 아직도 제 발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행신용을 적은 양으로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산업경기순환을 두고 본다면 일단 첫 충격을 주면 같은 순환이 주기적으로 재생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⁸⁾ 불경기상태에서는 생산은

8) (내가 이미 다른 곳에서(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5~36페이지를 보라)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의 전반적인 대공황 이후 이 점에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10년을 두고 한번씩 닥쳐온 경기순환의 주기적 과정의 날카로운 형태는 보다 만성적이고 오래 끌며, 서로 다른 공업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교체에, 개선은 비교적 짧고 미미한데 침체상태는

그 전 경기순환에서 기록된 수준 이하로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있는 기술적 기초에 해당하는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번영기——중간시기——에는 생산은 이 기초 위에서 더 발전한다. 과잉생산과 투기의 시기에는 생산은 생산력을 극도로 긴장시키며 심지어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한계를 넘어선다.

공황기에 지불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어음의 형태변화가 상품 자체의 형태변화를 대신하는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는 다만 신용에만 의거하여 사업하는 상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1844~1845년의 법률과 같은 무식하고 불합리한 은행법은 이러한 화폐공황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은행법도 공황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비교적 길고 해결을 보지 못하는 교체에 자리를 양보한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아마도 문제는 경기순환의 기간이 증가된 것뿐일 것이다. 1815~1847년의 세계무역의 유년기에는 공황과 공황의 사이는 약 5년이었다. 1847~1867년에는 경기순환은 10년마다 반드시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격렬한 새로운 세계적 파국의 준비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 점으로 보아 그런 것 같다. 1867년의 최근의 전반적 공황 이래 큰 변동이 일어났다. 교통수단이 방대하게 늘어남으로써——대양의 기선, 철도, 전신, 수에즈 운하——세계 시장은 비로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에 공업을 독점해온 영국 외에 수많은 공업국들이 경쟁자로 나타났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구라파의 과잉자본이 침투하기 위하여 비할 바 없이 넓고 다양한 영역들이 열려졌으며 그리하여 자본은 훨씬 광범히 퍼지고 지방적인 지나친 투기는 더 쉽게 극복된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이전의 수많은 공황의 근원과 공황발생의 동기는 없어졌거나 매우 약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카르텔과 트러스트 앞에서 물러서고 한편 외국시장에서의 경쟁은 보호관세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영국을 빼놓은 모든 대공업국들은 이 보호관세의 장벽을 둘러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호관세 자체는 세계시장의 재패문제를 견정해야 하는 마지막 전면적 공업전쟁의 전투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낡은 형의 공황이 되풀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하나의 요소에는 앞으로 닥쳐올 훨씬 더 심한 공황의 싹이 들어 있는 것이다. —F. E.}

재생산과정의 모든 연관이 신용에 발붙이고 있는 그러한 생산체계에서 신용이 갑자기 멎고 현금지불만이 효력을 갖게 된다면, 명백히 공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불수단에 대한 심한 요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모든 공황은 신용공황과 화폐공황으로서만 나타난다. 사실상 문제로 되는 것은 어음을 화폐로 만드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어음은 많은 경우에 실제적 매매를 표시하는데 결국 사회적 수요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실제적 매매의 확대가 모든 공황의 기초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이러한 어음 중에서 많은 양은 단순한 투기적 거래——이것은 이제는 백일하에 드러나서 파탄된다——를 표시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자본으로 일하다가 실패한 투기를 표시하며, 끝으로 가치가 줄었거나 심지어 전혀 팔릴 수 없게 된 상품자본을 표시하며, 또는 이제는 결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을 표시한다. 재생산과정을 강력하게 확장하는 이 모든 인위적 제도는 물론 다음과 같은 것으로써는 치료할 수 없다. 즉 그 무슨 은행 예컨대 잉글랜드 은행이 그의 지폐로 모든 투기업자들에게 부족한 자본을 그들에게 제공하며 또 가치가 줄어든 모든 상품을 그 전의 명목가치대로 사는 것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여하튼 이 경우에 모든 것은 이그러져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지폐의 세계에서는 실제적 가격과 그 실제적 계기들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오직 덩어리금, 금속화폐, 은행권, 어음 및 유가증권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은 특히 나라의 모든 화폐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중심지들 예컨대 런던에서 나타난다. 모든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생산의 중심지들의 형편은 그러한 정도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공황기에 드러나는 산업자본의 과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상품자본은 잠세적으로는 동시에 화폐자본 즉 상품의 가격으로 표현된 일정한 가치액이다. 상품자본은 사용가치로서는 일정한 양의 일정한 사용대상이며 이것은 공황시기에는 남아 돌아간다. 그러나 상품자본은 화폐자본 그 자체로서는, 잠세적인 화폐자본으로서의 끊임없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 공황의 전야와 공황중에 상품자본은 잠세적 화폐자본이라는 속성에서는 줄어든다. 상품자본은 그 소유자

와 그의 채권자들의 경우에는(또 어음과 대부의 담보로서도) 그것을 사들인 때와 그것에 기초하여 할인을 하며 저당거래를 한 때에 비하여 더 적은 화폐자본을 표시한다. 만약 이것이 한 나라의 화폐자본은 곤궁의 시기에는 줄어든다는 주장의 뜻이라면 이것은 상품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여하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전에 가격이 오른 것을 상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비생산적 계급과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은 과잉생산 및 지나친 투기와 병행하는 가격동귀의 시기에는 그 대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비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그와 함께 재생산 총액 중에서 정상적으로는 그들의 소비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보상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그들의 수요는 명목상 여전히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는 떨어진다.

수출·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나라가 꼬리를 물고 공황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모든 나라가 지나치게 많이 수출·입을 하며, 따라서 치불균형이 모든 나라에서 역차로 되며, 또 그리하여 공황의 원인은 사실상 지불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은 금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영국은 지나치게 많이 수입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모든 나라가 영국상품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도 또한 지나치게 많이 수입하였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수입되었다(물론 신용으로 수출하는 나라와 신용으로는 얼마밖에 수출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수출하지 않는 나라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둘째 경우의 나라들은 그 대신 신용으로 수입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품을 위탁판매로³⁾ 이 나라들에 보내는 경우만이다). 공황은 우선 신용을 가장 많이 주고 가장 적게 받는 나라인 영국에서 폭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일반적인 무역균형은 순차이지만 지불균형 즉 만기가 되어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불균형은 역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무역균형이 순차라는 이 사정은 부분적으로는 영국이 주는 신용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외국에 퍼준 자본의 양에 의하여 설명되는데 그 때문에 본래의 무역거래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많은 상품이 흘러 들어온다(그러나 때로는 공황이 또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이 영국의 신용 즉 무역신용과 자본신용을 받고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폭발하였다). 금의 유출로 시작되며 또 금의 유출을 동반하는 영국에서의 파국은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수입업자들의 파산(이점은 나중에 말하려 한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상품 자본의 일부를 낮은 값으로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유가증권을 팔고 영국의 유가증권을 사는 등에 의하여 영국의 지불균형을 청산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차례다. 이 나라에서는 일시 지불균형이 순차였다. 그런데 이제는 평시에 볼 수 있는 지불균형과 무역균형 사이의 간격은 공황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거나 또는 여하간 줄어든다. 모든 지불은 한꺼번에 결제되어야 한다. 같은 일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되풀이된다. 이제는 영국으로는 금이 흘러 들어가고 다른 나라에서는 금이 흘러 나간다. 한 나라에서 과잉수입으로 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과잉수출로 되며 또 반대인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그러나 과잉수입과 과잉수출은 모든 나라에서 다 일어났다(여기에서는 흥작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공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즉 신용과 이에 따르는 가격의 전반적 등귀에 의하여 촉진된 과잉생산이 일어났다.

1857년에 공황은 미국에서 폭발하였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이 흘러 나갔다. 그러나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몇자 영국에서 공황이 일어났으며 미국에서 영국으로 금이 흘러 나갔다. 이와 같은 것은 영국과 대륙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전반적 공황의 시기에는 지불균형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적어도 상업이 발전한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역차였다. 그러나 이 역차지불균형은 언제나 차례로 사격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불순서가 됨에 따라 처음에는 한 나라에서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게 된다. 그리고 공황이 일단 어느 한 나라 예컨대 영국에서 폭발하면 그것으로 하여 이 지불기환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 압축된다. 그 경우에는 이 모든 나라는 지나치게 많이 수출한(따라서 지나치게 많이 생산한) 동시에 지나치게 많이 수입하였다(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무역을 하였다)는 것. 또 모든 나라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신용이 지나치

게 팽창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된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붕괴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금이 흘러 나가는 현상은 모든 나라에서 순차로 나타나며 그 일반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1) 금이 흘러 나가는 것은 공황의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며 2)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이 흘러 나가는 순서는 그 개개 나라가 총결산을 하는 차례가 언제 오는가, 이 나라들에서 공황기가 언제 시작되고 공황의 잠재적 요소들이 언제 폭발하게 되는가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의 특징은——그런데 1830년 이후에 나온, 언급할 만한 경제학적 문헌은 주로 통화(currency), 신용, 공황에 관한 문헌이다——다음과 같다. 즉 그들은 전적으로 영국의 입장에서 출발하며 공황기의 귀금속의 수출을——환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순 국민적 현상으로 보며, 또 잉글랜드 은행이 공황기에 이자율을 높인다면 다른 모든 구라파의 은행들도 똑같이 하며, 또 오늘 영국에서 금이 흘러 나가는 데 대해서 통곡하면 내일에는 미국에서, 모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 소리가 때아리친다는 사실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847년에는 “영국이 지고 있는 채무(주로는 곡식을 위한 채무)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불행하게도 그 대부분은 파산에 의하여 청산되었다(부유한 영국이 파산에 의해서 대륙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파산에 의해서 결제되지 않은 채무는 귀금속의 수출에 의하여 청산되었다”(『은행법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 1857년).

그리하여 영국의 공황이 은행입법에 의하여 더 심해지는 한에서 이 입법은 기근 때에는 곡식을 수출하는 나라들을 속여서 처음에는 그들의 곡식을, 그 다음에는 그들의 곡식의 대금을 빼앗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곡식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가 물가등귀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곡식수입에 의하여진 채무를 파산에 의하여 청산하려는 잉글랜드 은행의 이상과 같은 계획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수단이다. 그 경우에 곡식생산자들과 투가업자들

로서는 영국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위에서 말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황시기와 일반적으로 침체 시기에는 상품자본은 잠재적 화폐자본을 표시한다는 속성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외제자본인 이자 붙는 증권에 관해서도——그 자체가 화폐자본으로서 증권거래소에서 유통하는 한에서는——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자가 오르면 이 증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 가격은 또한 신용이 전반적으로 부족되는 탓으로도 떨어지는데 이 신용부족으로 하여 이자 붙는 증권의 소유자들은 화폐를 얻기 위하여 증권을 대량적으로 시장에서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주식이라는 증서에 의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주식이 대표하는 기업들이 매우 자주 사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공황시기에는 이 외제화폐자본은 매우 줄어들며 그와 함께 그 소유자가 그것을 담보로 하여 시장에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러나 이 유가증권의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이 유가증권이 대표하는 실제적 자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나 반대로 그 소유자들의 지불능력에는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제 31 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 — II

(계속)

대부화폐자본의 형태로 있는 자본의 축적이 어느 정도로 실제적 축적 즉 재생산과정의 확대와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다 이야기되지는 않았다.

화폐가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화하는 것은 화폐가 생산적 자본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것을 구별해야 한다.

- 1) 화폐가 단순한 대부자본으로 전화하는 것.
- 2) 자본이나 소득이 대부자본으로 전화하는 화폐로 전화하는 것.

두번째 조건에서만 산업자본의 실제적 축적과 일치하는, 대부자본의 적극적 축적이 생길 수 있다.

제1절 화폐의 대부자본으로의 전화

이미 본 바와 같이 생산적 축적과 관련되는 대부자본의 퇴적, 과잉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퇴적, 과잉이 생산적 축적과 반비례하는 한에서만이다. 산업경기순환의 두 단계에서 그러하다. 즉 첫째로는 산업자본이 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이라는 두 형태에서 줄어들고 있는 시기 따라서 공황 후의 경기순환의 초기에 그러하며, 둘째로는 개선은 시작되었으나 상업신용이 아직 은행신용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시기에 그러하다. 첫째 경우에는 전에 생산과 상업에서 사용되었던 화폐자본이 늘고 있는 대부자본으로서 나타나며, 둘째 경우에는 화폐자본이 더욱더 많이 사용되지

만 그 이자율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제는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가 화폐자본가에게 조건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대부자본의 과잉은 첫째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높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며, 둘째 경우에는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이 원활하며 신용기간이 짧으며 또 주로 자체 자본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상업신용이 은행신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다른 사람의 대부자본을 타산하는 투기업자들은 아직 출동하지 않았으며 자체 자본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일에서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첫째 단계에서는 대부자본의 과잉은 실제적 축적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표시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대부자본의 과잉은 재생산과정의 새로운 확대와 일치하고 이것을 동반하지만 그 원인은 아니다. 대부자본의 과잉은 이미 줄어들고 있으며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수요에 비해서만 과잉이다. 두 경우에 다 실제적 축적과정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다. 즉 낮은 이자——첫째 경우에는 낮은 가격과 일치하고, 둘째 경우에는 천천히 오르는 가격과 일치한다——때문에 이윤 중 기업이득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사정에 의한 것이다. 최고의 번영기에 이자가 그 평균수준으로 오르는 경우에 더욱 그러한데, 그것은 이자가 물론 늘어나지만 이윤과 같은 정도로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편 이미 본 바와 같이 대부자본의 축적은 어떤 실제적 축적도 없이 순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컨대 은행업의 확대와 집적, 유통예비금의 절약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의 예비금의 절약——이 예비금은 이러한 절약에 의하여 끊임없이 짧은 기간에 대부자본으로 전환된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떠도는 자본(floating capital)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대부자본은 언제나 짧은 기간만 대부자본의 형태를 유지하지만(또 이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만 할인될 수 있다) 그 대신 그것은 끊임없이 들락날락한다. 한 사람이 그것을 끌어내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대부화폐자본의 양은(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해에 걸치는 대부가 아니라 어음과 저당에 대한 단기대부만이다) 사실상 실제적 축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늘어난다.

『은행위원회』, 1857년, 질문 제501호, “당신이 말하는 떠도는 자본(floating capital)이란 무엇인가?” (잉글랜드 은행 총재 웨겔린 씨) “그것은 짧은 기간 화폐대부에 쓸 수 있는 자본이다. …(제502호). 잉글랜드 은행과… 지방은행들의 은행권과 국내에 있는 화폐액이다.” {질문 제503호 “만약 당신이 말하는 떠도는 자본이 능동적 유통수단(즉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을 의미한다면 이에 관해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에 의하여 판단할 때 이 능동적 유통수단에는 매우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가?” {그러나 이 능동적 유통수단을 선대한 것이 누구인가, 즉 화폐대부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 자신인가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이다. 웨겔린의 대답} “나는 떠도는 자본에 변동이 심한 은행업자의 예비금을 포함시킨다.”

따라서 이것은 예금 중 은행업자들이 대부에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예비금으로서——그런데 그 대부분은 예금을 받는 잉글랜드 은행의 예비금으로서——나타나는 부분에 큰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이 양반은 떠도는 자본이란 불리온(bullion) 즉 덩어리금과 금속 화폐라고 말한다(제503호). 화폐시장에서의 신용에 관한 이러한 잡꼬대에서 정치경제학의 모든 범주의 의미와 형식이 이처럼 왜곡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서는 떠도는 자본은 유통자본(circulating capital)을 표시하는 표현이며——이것은 사실상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또 화폐(money)는 자본(capital)이며 또 덩어리금(bullion)도 역시 자본(capital)이며 또 은행권은 유통수단(circulation)이며 또 자본은 하나의 상품(a commodity)이며 또 채무는 상품들(commodities)이며 또 고정자본(fixed capital)은 팔리기 어려운 증권에 투자된 화폐이다!

“런던의 주식은행들은…그 예금이 1847년에는 8,850,774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1857년에는 43,100,724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다. …위원회에 있는 자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이 방대한 금액의

대부분은 전에는 이 목적에 이용될 수 없었던 원천에서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은행업자에게서 돈자리를 열고 예금을 하는 습관이 전에는 이렇게 그들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던 수많은 계급들에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지방개인은행들(주식은행들과 구별되는)의 협회의 회장이고 위원회 앞에서 진술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파견된 로드웰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임스위치 지방에서는 이러한 습관이 최근 그 지구의 차지농업가들과 소상인들 사이에 4배로 늘었으며 거의 모든 차지농업가들이, 심지어는 한 해에 50파운드 스텔링의 차지료밖에 물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제는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예금은 물론 사업에 사용되며 특히 상업활동의 중심지인 런던에 집중되어 거기에서 우선 어음의 할인과 그리고 런던의 은행업자들의 고객들에 대한 다른 대부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금 중 은행업자들 자신에게 직접 필요가 없는 상당한 부분은 중개업자의 손에 들어가며 중개업자는 그 대신 런던과 지방의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이미 한번 할인한 상업어음을 은행업자들에게 준다”(『은행위원회』, 1858년, 5페이지).

은행업자는 중개업자가 이미 한번 할인한 어음에 대하여 이 중개업자에게 대부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는 어음을 또 한번 재할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어음들 중 많은 것은 이미 중개업자들 자신이 재할인한 것이며, 또 은행업자가 중개업자의 어음을 재할인하는 데 쓰는 그 같은 화폐로 중개업자는 새로운 어음을 재할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늘어난 의제신용은 융통어음과 담보없는 신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주식은행들의 실천에 의하여 훨씬 쉽게 되었다. 이 은행들은 이러한 어음을 할인하고 이어서 그것을 런던시장에서 중개업자들에게 재할인하게 하였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은행의 신용능력에만 의거하고 어음의 다른 모든 질에는 전혀 고려를 돌리지 않았던 것이다”(같은 책, 21페이지).

이러한 재할인에 대하여 그리고 대부화폐자본이 이렇듯 순 기술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신용투기가 조장된 데 대하여 쓴 『이코노미스트』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흥미가 있다.

“나라의 일부 지방에서는 여러 해 동안 자본{즉 대부화폐자본}은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축적되었는데 다른 지방들에서는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본 그 자체보다 더 빨리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농업지대의 은행업자들에게는 그들의 예금을 그들 자신의 지방에서 유리하고 확실하게 투하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산업지대와 상업도시의 은행업자들에게는 자본에 대한 수요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컸던 것이다. 여러 지방의 조건이 이렇듯 서로 다른 결과에 최근 몇 해 동안에 자본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새로운 부류의 상사들이 생기고 매우 빨리 늘어났다. 이 상사들은 흔히 중개업자의 상사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인 것이다. 이러한 상사들이 하는 일이란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이자로 과잉자본을 그것이 이용되지 않는 지방의 은행들에서 또 일시 높고 있는 자금을 주식회사와 대상사들에서 받아서는 이 화폐를 자본에 대한 수요가 보다 큰 지방의 은행들에 흔히 이 은행들의 고객의 어음을 재할인하는 방도로 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롬바드 거리⁵는 높고 있는 자본을 그것이 유리하게 이용될 수 없는 한 지방에서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다른 지방으로 옮겨놓는 큰 중심지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지방에 대해서나 또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개개인에 대해서나 다같이 들어맞는다. 원래 이러한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보통의 은행담보로 꾸거나 꾸주는 데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자본이 빨리 늘어나고 또 은행들이 창설됨으로써 더욱더 절약됨에 따라 이러한 할인상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금은 매우 커졌으며 그리하여 그 상사들은 처음에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증권, 다음에는 아직 전혀 도착하지도 않은 상품을 표시하는 발송증권에 대하여——이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이미 어음이 상품중개업자 앞으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대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천으로 하여 곧 영국의 거래의 모든 성격이 달라졌다. 그리하여 롬바드 거리에서 제공되는 편의는 민싱 거리⁶의 상품중개업자의 지위를 매우 든든하게 하였으며 상품중개업자들은 이번에는 다시 모든 유리한 지위를 수입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주었다. 수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이 유리한 지위를 널리 이용하였으며 그리하여 25년 전이라면 상인이 자기의 발송증권이나 심지어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증권으로 융자한다는 것은 그 상인의 신용을 완전히 떨어뜨렸을 것인데 이제는 이러한 관례는 전반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것

은 이미 하나의 통제로 되고 25년 전과 같이 드문 예외로 되지는 않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널리 보급된 나머지 룬바드 거리에서는 머나먼 식민지에서 아차 차라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발행한 어음으로 많은 돈을 꾸고 있다. 그러한 신용상 편의의 결과로 수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그들의 대외거래를 확대하였으며 전에는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자기의 떠도는 자본을 식민지의 재배원에——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나쁜 기업이며 그들이 거의 통제할 수 없거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업에——고착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러 신용이 직접 엉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농업지대들에서 모은 지방의 자본은 조금씩 예금으로서 지방은행에 들어가고 룬바드 거리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집중된다. 그러나 자본은, 첫째로 우리의 광업과 산업지방의 은행들에서 어음을 재할인하는 방법으로 그 지방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둘째로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증권과 발송증권에 대한 대부에 의하여 외국의 생산물을 수입하는 사람들에게 큰 특전을 주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그리하여 외국거래와 식민지거래에 종사하는 상사들의 정당한 자본은 풀려나오며 그리하여 해외의 재배원에서 가장 나쁜 종류의 기업에 사용될 수 있었다”(『이코노미스트』, 1847년 [11월 20일], 1334페이지).

신용들이 훌륭하게 엉켜 있는 형편은 이러하다. 농촌의 예금자는 다만 자기의 은행업자에게 예금을 한다고 생각하며 또 은행업자가 대부분 한다면 그것은 은행업자가 잘 알고 있는 개인에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이 은행업자가 자기의 예금을 런던의 증권중개업자의 처분에 맡기며, 이 중개업자의 사업은 예금자나 은행업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대규모의 공공기업들 예컨대 철도부설로 하여 일시적으로는 대부자본이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은 주주들이 지불한 금액이 실제로 사용될 때까지는 언제나 일정한 기간 은행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대부자본의 양은 유통수단의 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여기에

서 유통수단의 양이란 한 나라에 있는 유통하는 모든 은행권과 그리고 귀금속 덩어리를 포함한 모든 금속화폐의 총액이다. 이 양의 일부는 크기가 끊임없이 달라지는 은행예비금을 이룬다.

“1857년 11월 12일(1844년의 은행법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된 날짜)에 모든 지점을 포함한 잉글랜드 은행의 총예비금은 580,751파운드 스텔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시기의 예금 총액은 2,250만 파운드 스텔링이었으며 그 중 약 650만 파운드 스텔링은 런던의 은행업자들의 것이었다”(『은행법』, 1858년, 57페이지).

이자율의 변동(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동과 여러 나라에서의 이자율의 차이는 제쳐놓는다. 첫째 것은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에 의하여, 둘째 것은 이윤율과 신용발전에서의 차이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다)은 대부자본(다른 모든 사정들 예컨대 신뢰의 정도 등은 같다고 하면) 즉 금속화폐와 은행권 등 화폐형태로 대부되는 자본——이것은 산업자본으로서 상품형태로 상업신용에 의하여 재생산의 당사자 자신들 사이에서 대부되는 산업자본과는 구별된다——의 공급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이 대부자본의 양은 유통하는 화폐의 양과는 다르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예컨대 20파운드 스텔링이 하루에 다섯 번 대부된다면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화폐자본이 대부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이 20파운드 스텔링이 적어도 네 번 구매수단이나 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구매와 지불의 매개적인 역할이 없었고 따라서 20파운드 스텔링이 적어도 네 번 자본(노동력도 포함하는 상품)의 전화된 형태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20파운드 스텔링은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개 20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5개의 청구권을 이루게 될 따름이기 때문이다.

신용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대부거래에 쓸 수 있는 모든 화폐자본은 예금형태로 은행과 화폐대부자의 손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적어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한 본래의 투기가 아직 선

행하기 전의 호경기에는 신용을 얻기가 쉽고 신뢰가 커가는 조건에서 유통기능의 대부분은 금속화폐 또는 지폐의 매개없이 그저 신용이 옮겨 감으로써 수행된다.

유통수단이 비교적 적은 조건에서 많은 예금액을 가질 수 있는 단순한 가능성은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달려 있다.

1) 같은 화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구매와 지불의 횟수.

2) 같은 화폐가 예금으로서 은행에 되돌아가는 횟수. 여기에서 이 화폐가 지불수단과 구매수단으로서 되풀이 되는 기능은 그 화폐가 다시 예금으로 전화됨으로써 매개된다. 예컨대 소매상인은 한 주일마다 자기의 은행업자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예금하며, 은행업자는 이것으로 제조업자의 예금의 일부를 지불하며, 제조업자는 이것을 자기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노동자는 이것으로 소매상인에게 지불하고, 소매상인은 이것을 다시 은행에 예금한다. 그리하여 소매상인이 예금한 100파운드 스텔링은 첫째로는 제조업자의 예금지불에, 둘째로는 노동자에 대한 지불에, 셋째로는 소매상인 자신에 대한 지불에, 네째로는 같은 소매상인의 화폐자본의 새로운 부분을 예금하는 데 쓰였다. 그리하여 소매상인 자신이 은행에 예금한 화폐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면 20주일이 지나면 그의 예금은 같은 100파운드 스텔링에 의하여 2,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될 것이다.

이 화폐자본이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은행의 예비금이 흘러 나가고 흘러 들어오고 하는 데서만 표시된다. 이로부터 잉글랜드 은행 총재 웨즐린 씨는 1857년에 잉글랜드 은행의 금은 유일한 예비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1258호) “나의 의견에 의하면 할인율은 사실상 국내에 있는 높고 있는 자본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 높고 있는 자본의 액은 사실상 금의 예비인 잉글랜드 은행의 예비금에 의하여 표시된다. 따라서 금이 흘러 나가면 국내의 높고 있는 자본의 액은 줄어들고 그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의 가치는 늘어난다.” (뉴마치) (제1364호)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는 사실상 중앙예비 또는 현금예비이며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 …이 예비

또는 저수지는 언제나 대외환율의 영향을 받는다”(『은행법에 관한 보고』, 1857년).

실제적 자본 즉 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의 축적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되는 것은 수출·입 통계이다. 수출·입 통계를 보면 언제나 알 수 있듯이 10년을 주기로 하여 운동하는 영국산업의 발전기(1815~1870년)에는 공황 전의 마지막 번영기의 최고한도는 매번 그 다음 번영기의 최저한도로 다시 나타나며 그 다음에 훨씬 더 높은 새로운 최고한도로 올라간다.

번영의 해였던 1824년에 대영제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출된 생산물의 실제가치 또는 신고가치는 40,396,3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이어서 1825년의 공황이 닥쳐오자 수출액은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지고 한 해에 3,500만과 3,900만 사이를 오르내렸다. 1834년에 번영이 회복되자 수출액은 전의 최고수준을 넘어서 41,649,191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으며 1836년에는 53,368,571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새로운 최고한도에 이르렀다. 1837년에는 그것은 다시 4,200만으로 떨어지고 그리하여 새로운 최저한도는 이미 전의 최고한도보다 높아지고 이어서 5,000만과 5,300만 사이를 오르내렸다. 다시 번영이 회복되어 1844년에는 수출액이 5,850만으로 뛰어올랐고 또 다시 1836년의 최고한도를 훨씬 넘었다. 1845년에는 수출액이 60,111,082파운드 스텔링으로 되었고 이어서 1846년에는 5,700여 만으로 떨어졌으며, 1847년에는 거의 5,900만, 1848년에는 5,300만이었고, 1849년에는 6,350만으로 늘어나고 1853년에는 거의 9,900만, 1854년에는 9,700만, 1855년에는 9,450만, 1856년에는 거의 1억 1,600만이었고 1857년에는 1억 2,200만이라는 최고한도에 이르렀다. 1858년에 수출액은 1억 1,600만으로 떨어졌으나 이미 1859년에는 1억 3,000만으로, 1860년에는 거의 1억 3,600만으로 늘었고 1861년에는 1억 2,500만에 지나지 않았고(이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최저한도는 전의 최고한도 이상이다) 1863년에는 1억 4,650만이었다.

이와 똑같은 것은 물론 시장의 확장을 보여주는 수입에 대해서도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산의 규모만을 문제로 삼는다.

{이것은 영국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산업독점시기에만 들어맞는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세계시장이 아직도 확대되고 있는 동안은 일반적으로 근대적 대산업을 가진 모든 나라에 대하여도 들어맞는다. — F. E. }

제2절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로의 자본 또는 소득의 전화

여기에서는 화폐자본의 축적이 상업신용의 운동에서의 정체를 표현하지 않는 한에서 또는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는 유통수단이건 재생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예비자본이건 간에 그것의 질약을 표현하지 않는 한에서 그 축적을 연구한다.

이러한 두 경우를 제쳐놓는다면 화폐자본의 축적은 금이 비상이 많이 흘러 들어오면 생길 수 있는데 1852년과 1853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금광이 발견된 결과에 이러한 축적이 생겼던 것이다. 이 금은 잉글랜드 은행에 예탁되었다. 예금자들은 그 대신 은행권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것을 곧 은행에 다시 예금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통수단의 양은 비상이 늘어났다(웨젤린의 진술, 「은행위원회」, 1857년, 제1329호). 잉글랜드 은행은 할인율을 2%로 낮춤으로써 이 예금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1853년의 6개월 동안에 이 은행에 쌓인 금의 양은 2,200만 내지 2,300만으로 늘어났다.

화폐를 쥐주는 모든 자본가의 경우에 축적은 직접 화폐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데 산업자본의 실제적 축적은 이미 본바와 같이 흔히 재생산자본 자체의 요소가 늘어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용업이 발전하고 대은행에 화폐대부사업이 굉장히 집적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실제적 축적과는 다른 형태인 대부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다. 대부자본의 이러한 빠른 발전은 그것이 재생산과정의 발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 축적의 결과인 것이며, 이러한 화폐자본가들의 경우에 축적의 원천으로 되는 이윤은 재생

산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짜내는 잉여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동시에 다른 사람의 저축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자본은 동시에 산업가와 상인들을 희생으로 하여 축적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산업경기순환의 불리한 단계들에서 이자율은 매우 높아져서 특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일부 부문들의 이윤을 일시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국가증권과 기타 유가증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한 시기에 화폐자본가들은 가치가 떨어진 증권을 대량적으로 사들이는데 이 증권의 가격은 그 다음 단계들에서 곧 다시 정상적 수준으로 또 그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다. 그때에 이 증권을 다시 내다팔며 그리하여 사람들의 화폐자본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 증권을 사들인 자본가들의 손에 아직 남아 있는 증권은 그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가져다주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증권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자본가들이 얻어서 다시 자본으로 만드는 모든 이윤을 그들은 우선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화시킨다. 따라서 비록 실제적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실제적 축적과는 구별되는 대부화폐자본의 축적은 우리가 화폐자본가들, 은행업자들 등만을 고찰하는 경우에는 벌써 이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의 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축적은 재생산과정의 실제적 확대와 함께 진행되는 신용업의 확장에 따라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자율이 낮다면 화폐자본의 이 가치감소는 주로 예금자들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지 은행의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은행이 생겨나기 전에는 영국에서는 전에 예금의 3/4은 이자없이 은행에 예금되었다. 현재 예금에 이자가 붙는 경우에도 이 이자는 그날의 이자율 수준보다 적어도 1%는 낮다.

나머지 부류의 자본가들의 화폐축적을 두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자 붙는 증권에 투하되고 이 형태로 축적되는 부분은 제쳐놓는다. 우리는 대부화폐자본으로서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만을 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 우선 들어야 할 것은 이윤 중에서 소득으로서 지출되지 않고 축적되기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나 산업자본가들 자신의 기업에서는 당분간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이윤은 직접 상품자본으로 존재하고

상품자본의 가치의 일부를 이루며 상품자본과 함께 화폐로 실현된다. 이제 이 이윤이 상품자본의 생산요소들로 다시 전화되지 않는다면(상인은 당분간 제쳐놓고 다음에 따로 이야기될 것이다) 그것은 잠시 화폐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이윤의 양은 이윤율이 떨어지더라도 자본 그 자체의 양이 늘면 늘어난다. 소득으로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은 점차 소비되지만 그때까지는 예금으로서 은행업자의 대부자본을 이룬다. 따라서 소득으로서 지출되는 이윤부분이 늘어나는 것까지도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점차적인 대부자본의 축적으로 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축적되어야 할 다른 이윤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신용업과 그 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소득의 장성 즉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의 소비의 장성까지도 대부자본의 축적으로서 표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로 소비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옳으며 따라서 지대, 더 높은 형태의 임금, 비생산적 계급들의 소득 등에 대해서도 옳다. 모든 소득은 일정한 기간은 화폐소득의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예금으로 전화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대부자본으로도 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소비를 위한 것이든 축적을 위한 것이든, 그것이 그 어떤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화폐로 전화된 상품자본의 가치부분이며 따라서 실제적 축적의 표현 및 결과이지 생산자본 그 자체는 아니라는 명제는 모든 소득에 다 들어맞는다. 한 방적업자가 자기의 실을 목화와 교환하였고 소득을 이루는 부분을 화폐와 교환하였다면, 그의 산업자본의 실제적 존재는 이제는 직조업자의 손에 또는 아마도 개인소비자의 손에 넘어간 실일 것이며, 그것도 이 실이 재생산을 위한 것이든 소비를 위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자본가치 및 거기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존재이다. 화폐로 전화되는 잉여가치의 크기는 실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크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화폐로 전화되지만 하면 이 화폐는 이 잉여가치의 가치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 화폐는 대부자본의 요소로 된다. 그렇게 되자면 화폐가——그것이 그 소유자 자신에 의하여 대부되지 않은 경우에는——예금으로 전화되지만 하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자본으로 다시 전화되기 위해서는 화폐의 양이 이미 일정한 최저한도에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

제 32 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 — III

(끝)

이와같이 자본으로 다시 전화되는 화폐의 양은 대량적인 재생산과정의 결과이지만 그 자체로 보면, 대부화폐자본으로서는 재생산적 자본의 양 그 자체는 아니다.

이상의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중 소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의 증대는(이 경우에 노동자의 소득은 제쳐놓기로 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소득이 가변자본과 같기 때문이다) 우선 화폐자본의 축적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축적에는 산업자본의 실제적 축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의 요소가 들어간다. 그것은 한 해 생산물 중 소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결코 자본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해 생산물 중의 다른 한 부분은 자본을 즉 소비품의 생산자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로 자본으로 전화되는 한에서 이 불변자본의 생산자들의 소득의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소득을 대표하며 소비의 단순한 매개자로 되는 같은 화폐는 일반적으로 잠시 동안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이 화폐가 임금을 표시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동시에 가변자본의 화폐형태이며 또 이 화폐가 소비품의 생산자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그들의 불변자본이 일시 취하는 화폐형태이고 보상되어야 할 그들의 불변자본의 현물적 요소를 사들이는데 쓰인다. 이 화폐의 양은 재생산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 화폐는 첫째 형태에서도 둘째 형태에서도 그 자체로서는 축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화폐는 잠시 대부될 수 있는 화폐 즉 화폐자본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 볼 때 화폐자본의 축적은 언제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자본의 축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소비의 확장은 그것이 화폐의 매개에 의하여 실

현되는 만큼 실제적 축적을 위하여, 새로운 투자분야를 열어주는 화폐를 위하여 화폐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화폐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화폐자본의 축적은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표현할 따름이다. 즉 산업자본이 자체의 순환과정에서 전화되는 모든 화폐는 재생산 당사자들이 선대하는 화폐가 아니라 그들이 꾸는 화폐라는 형태를 취하며, 그리하여 재생산과정에서 진행되는 화폐의 선대는 사실상 대부된 형태의 선대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표현할 따름이다. 사실상 상업신용의 기초 위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꾸주는 화폐는 재생산과정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화폐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즉 은행업자가 재생산 당사자의 한 부분에게서 화폐를 뺏아지고 이번에는 이 화폐를 재생산 당사자의 다른 한 부분에 꾸주며——이 경우에 은행업자는 복을 주는 자로서 나타난다——동시에 이 자본에 대한 처분권은 전적으로 중개자로서의 은행업자에게 있는 그러한 형태를 취한다.

이제는 화폐자본의 축적의 몇 가지 특수한 형태를 더 들어야 하겠다. 예컨대 생산요소들인 원료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자본이 풀려나온다. 만약 산업가가 직접 자기의 재생산과정을 확장할 수 없다면 그의 화폐자본의 일부는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서 순환에서 밀려나와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이 밖에도 특히 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이 중단될 때 화폐형태의 자본이 떨어져나온다. 만약 상인이 일련의 거래를 한 다음에, 이러한 중단 때문에 후에 가서야 비로소 새로운 일련의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면, 실현된 화폐는 상인으로 보면 퇴장화폐 즉 과잉자본을 표시할 따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화폐는 직접 대부화폐자본의 축적을 표시한다. 첫째 경우에 화폐자본의 축적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재생산과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전에는 없매어 있던 자본의 일부가 실제로 풀려나온 것을 표현하며 따라서 같은 화폐자본으로 재생산과정을 확장할 가능성을 표현한다. 이와는 반대로 둘째 경우에는 거래의 흐름이 단순히 중단된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두 경우에 다 화폐는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화되며 이 자본의 축적을 표시하며 화폐시장과 이자율에 똑같

이 영향을 미친다. 물론 그것은 첫째 경우에는 실제적 축적과정을 촉진시키며, 둘째 경우에는 그것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끝으로 화폐자본의 축적은 자기 지위를 매우 튼튼히 한 다음에 재생산분야에서 물러서는 사람들의 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산업의 경기순환 중에 이루어지는 이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아진다. 이 경우에 대부화폐자본의 축적은 한편으로는 실제적 축적(그 상대적 크기의)을 표현하며, 또 한편으로는 산업자본가가 순전한 화폐자본가로 전화하는 크기만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윤 중 소득으로서 소비하기로 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그것을 만들어낸 생산분야에서 직접 사업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이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즉 일정한 생산분야가 이미 자본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또는 축적된 액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자면 우선, 일정한 기업에서의 새로운 투자의 양적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크기에 이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축적된 액은 우선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화되고 다른 분야들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자본으로 다시 전화되어야 할 이윤의 양은 생산된 전체 이윤의 양에, 따라서 재생산과정 자체의 확장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축적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서 곤란에 즉 투자분야의 부족에 부딪힌다면 따라서 생산부문에 투자가 지나치게 가득차고 대부자본의 공급과잉이 생긴다면, 대부화폐자본의 이러한 과잉은 자본추의적 생산의 제한성을 증명할 따름이다. 그 후의 신용투기는 이 과잉자본을 사용하는 데서 아무런 적극적인 장애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자본이 불어나는 법칙 때문에 생기는 장애, 자본이 자본으로서 불어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생기는 장애는 존재하는 것이다. 화폐자본 그 자체의 과잉은 반드시 과잉생산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또는 자본투하 분야의 부족조차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자본의 축적이란 단순히 화폐가 대부될 수 있는 화폐로서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화폐가 자본으로 실제로 전화하는 것과는 매

우 다르며 그것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는 상태에서 화폐가 축적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축적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실제적 축적과는 매우 다른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다. 실제적 축적이 끊임 없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화폐자본의 축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실제적 축적이 늘어나는 결과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실제적 축적이 늘어나는 데 따르는,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요소들의 결과일 수 있으며, 끝으로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실제적 축적이 중단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적 축적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에 따르는 요소들에 의하여 대부자본의 축적이 늘어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기순환의 일정한 단계들에서는 언제나 화폐자본의 과잉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과잉은 신용이 발전함에 따라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과 함께 또한 생산과정을 그 자본주의적 한계를 넘어서 확대할 필연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과잉거래, 과잉생산, 과잉신용이 생겨난다. 동시에 이것은 항상 역운동을 일으키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지대, 임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화폐자본의 축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쓸 데 없는 일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계기만은 강조되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정에서의 분업으로 말미암아 실제적 저축과 금융(화폐퇴장자들에 의한)이라는 일은 그것이 축적의 요소를 제공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요소의 최소량을 받으며 예컨대 은행이 파산된 경우의 노동자들과 같이 흔히 자기들의 저축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맡겨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산업자본가는 그 자신이 자기의 자본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다른 사람의 저축을 지배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화폐자본가는 다른 사람의 저축을 자기의 자본으로 만들며, 재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서로 주고 받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는 신용을 자기의 개인적 치부의 원천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마치 자본이 자체의 노동과 저축에 의하여 생겨나는 듯한 자본주의제도의 마지막 환상은 깨어진다. 이윤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가동시키며 착취하는 수단인 자본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루어지며, 화폐자본가는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산업자본가의 처분에 맡기고 그 대신 자기는 산업자본가를 착취한다.

대부자본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지적해야 하겠다.

같은 화폐가 얼마나 자주 대부자본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달려 있다. 즉

1) 같은 화폐가 몇 번이나 판매과정이나 지불과정에서 상품가치를 실현하며 따라서 자본을 옮겨놓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으며 또한 그것이 몇 번이나 소득을 실현시키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같은 화폐가 자본이든 소득이든 이에 관계없이, 실현된 가치로서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가는가 하는 것은 명백히 실제적 거래의 크기와 수에 달려 있다.

2) 그것은 지불의 질약에 달려 있으며 신용업의 발전과 조직에 달려 있다.

3) 끝으로 그것은 신용이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그 신용이 활동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것으로 하여 같은 화폐가 한 곳에서 예금으로서 가라앉으면 다른 곳에서는 곧 다시 대부로서 나타난다.

대부자본이 존재하는 형태가 전적으로 실제적 화폐인 금이나 은—— 즉 그 소재가 가치척도로 되는 그러한 상품——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화폐자본의 대부분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가치기호와 꼭 마찬가지로 의제적인 것 즉 가치에 대한 명의를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화폐가 자본의 순환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한 이 화폐는 일정한 순간이기는 하지만 화폐자본을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는 않고 생산자본의 요소들과 교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을 실현할 때 유통수단으로서 지불되며 따라서 그것이 소유자를 위하여 다시 대부자본으로 전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자본으로 전화되고 같은 화폐액이 되풀이되어 대부자본을 표시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한 점에서만 금속화폐로 존재하며, 다른 모든 점에서는 자본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청구권의 축적은 전제에 의하면 실제적 축적에서 즉 상품자본 등의 가치가 화폐로 전화하는 데서 생겨난다. 그렇지만 이러한 청구권 또는 가치에 대한 명의를 축적 그 자체는 이 축적

을 낳는 실제적 축적과도, 화폐를 대부함으로써 매개되는 장래의 축적(새로운 생산과정)과도 구별된다.

처음에는 대부자본이 언제나 화폐형태로 존재하지만⁹⁾ 후에는 화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대부자본은 원래 화폐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화폐는 이제는 실제적 화폐형태로 곧 사람의 손에 있기 때

- 9) 『은행법』, 1857년, 은행업자 트윈스의 진술. (제4516호) “은행업자로서 당신이 거래하는 것은 자본인가 그렇지 않으면 화폐인가?”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화폐다.” (제4517호) “예금은 당신의 은행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화폐로 들어온다.” (제4518호) “예금은 어떻게 지불되는가?” “화폐로 지불된다.” (제4519호) “그리면 예금은 화폐와 무슨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릴 수는 없다.”

오버스톤(제26장을 보라)은 자본과 화폐를 늘 혼동하고 있다. 화폐의 가치란 그의 경우에는 이자도 의미하는데 이자가 화폐량에 의해서 규정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자본의 가치는 이자가 생산자본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또 이 자본이 낳는 이윤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이자율 의미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4140호) “자본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제4148호) “영국에서 금이 흘러 나간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화폐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말해서 화폐시장에서(따라서 그의 의견에 의하면 자본시장에서가 아니다.) 수요가 늘어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제4112호) “화폐가 한 나라에서 나가는 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화폐량은 줄어든다. 한 나라에 남는 화폐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 화폐의 가치는 오른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원래 이것은 유통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화폐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에 비하여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오른 것,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유통화폐량은 가격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조차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통수단으로서 화폐량이 줄어들면 이자 붙는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가치가 오르며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화폐가 더 흘러 나가는 것을 막으며 그리고 균형을 회복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화폐량이 되돌아올 때까지 계속된다.” 오버스톤이 빠지고 있는 그 밖의 모순들은 후에 말하려 한다.

문이다. 꺾준 사람으로 보면 대부자본은 화폐에 대한 청구권으로, 하나의 소유명의로 전화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실제적 화폐가 매우 여러 가지 양의 화폐자본을 표시할 수 있다. 단순히 화폐는 그것이 실현된 자본을 표시하는 실현된 소득을 표시하는 간에 하나의 대부행위에 의하여, 화폐의 예금으로의 전화에 의하여——발전된 신용제도에서의 일반적 형태를 고찰하는 경우에——대부자본으로 된다. 예금은 예금자로 보면 화폐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은행업자의 손에서는 이 자본의 소유자의 금고 속에 있지 않고 은행업자의 금고 속에서 놓고 있는 잠재적 화폐자본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⁴⁰⁾

-
- 10) 그런데 여기에서는 은행업자측의 지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예금이나 은행업자의 손에 있는 예탁된 화폐나 다같이 화폐라는 혼란이 생겨난다. 은행업자 트웰스는 1857년 은행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내가 1만 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나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5,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나는 상품을 사서 그것을 창고에 넣는다. 나머지 5,000파운드 스텔링은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고 은행업자에게 맡긴다. 그런데 전액 중에서 5,000파운드 스텔링은 예금 또는 화폐의 형태로 있지만 나는 그래도 전액을 나의 자본이라고 본다”(제4528호).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논쟁이 생긴다. (제4531호)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5,000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가?” “그렇다.” (제4532호) “그러면 그 사람은 5,000파운드 스텔링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 (제4533호) “그런데 당신도 5,000파운드 스텔링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두말 할 것도 없다.” (제4534호) “다른 사람도 5,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가지고 있고 당신도 5,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이다.” (제4535호) “그러나 결국 그것은 화폐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다.” 이러한 혼란은 부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 5,000파운드 스텔링을 예금한 A는 이것에 대하여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아직도 그가 이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그의 경우에는 잠재적 화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그만큼(pro tanto) 그의 예금액은 줄어든다. 그가 은행에서 실제적 화폐를 찾아내는 경우에 그의 화폐가 이미 다른 데 대부되어 있다면 그는 그 자신의 화폐로써

물질적 부가 장성함에 따라 화폐자본가계급이 장성한다. 한편으로는 사업에서 물러선 자본가들 즉 금리생활자들의 수와 재부가 늘어나고, 둘째로는 신용제도가 더욱 발전되며 이에 따라 은행업자, 화폐대부자, 금융업자 등의 수가 늘어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폐자본이 발전함에 따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자 붙는 증권인 국가증권, 주식 등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것은 이러한 증권으로 투기거래를 하는 증권투기업자들이 화폐시장에서 주되는 역할을 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권의 모든 매매가 실제적 투자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매매는 대부자본의 수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해도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A가 그의 증권을 판다면 그는 B가 그 증권에 넣는 만큼의 화폐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권은 물론 있지만 그 증권이 원래 표시한 자본은(적어도 화폐자본으로서) 이미 없어진 경우에도 이 증권은 언제나 그러한 화폐자본에 대한 그만큼(pro tanto)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한다. 그러나 여하튼 이것은 전에는 B가 지배하였고 이제는 A가 지배하는 화폐자본이다.

『은행법』, 1857년, (제4886호) “할인율은 시장에 있는 자본 즉 다른 종류의

지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은행에 예금한 화폐로써 지불을 받는 것이다. 만약 그가 거래하는 은행업자 앞으로 발행한 수표로써 B에게 채무를 지불하며 B는 이 수표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 예금하고 그리고 예금자 A의 은행업자가 또한 예금자 B의 은행업자 앞으로의 수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은행업자들이 수표를 교환하기만 하면 된다면 A가 예금한 화폐는 두 번 화폐기능을 한 것이다. 즉 첫째번은 A가 예금한 화폐를 받은 자의 손에서, 둘째번은 A 자신의 손에서 화폐기능을 한 것이다. 둘째번 기능에서는 채권은(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 대한 A의 채권과 B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 대한 앞의 은행업자의 채권) 화폐의 매매 없이 상쇄된다. 이 경우에 예금은 두 번 화폐로서 기능한다. 즉 한 번은 실제적 화폐로서 기능하며 또 한 번은 화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기능한다. 화폐에 대한 단순한 청구권은 채권의 상쇄에 의해서만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

유가증권과는 달리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자본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내가 말할 때 할인을 규정하는 원인을 옳게 지적하였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채프만} “아니다. 이자율은 쉽게 화폐로 전화될 수 있는 모든 유가증권(all convertible securities of a current character)의 영향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를 어음할인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심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정리공채를 {저당}으로 하여 또는 심지어는 국고증권을 담보로 하여, 그것도 상업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화폐를 얻으려는 수요가 크다면 우리 상업계가 이러한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우리 상업계는 이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제4890호) “은행업자들의 옹당한 인정을 받는 확실하고 잘 통용되는 유가증권이 시장에 있고 그 소유자들이 그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려고 한다면 상업어음이 그러한 것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의 화폐를 정리공채 등을 담보로 하여 6%로 꾸줄 수 있을 때에 그 화폐를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여 5%로 나에게 꾸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영향은 우리도 받게 된다. 내가 6%로 나의 화폐를 꾸줄 수 있다면 아무도 5%로 자기의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나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4892호) “확실한 투자로 보고 2,000파운드 스텔링, 5,000파운드 스텔링 또는 10,000파운드 스텔링 분의 유가증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화폐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우리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질문이 정리공채를 {저당}으로 하는 대부에 대한 이자율 문제라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수십만의 금액을 거래하는 사람들, 이른바 증권투기업자들이다. 이들은 거액의 공채에 응모하거나 그것을 시장에서 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증권을 유리하게 팔 수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화폐를 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용업이 발전함에 따라 런던과 같은 집중된 큰 화폐시장들이 마련되는데 이 시장들은 동시에 이러한 증권거래의 중심지이다. 은행업자들은 사람들의 화폐자본을 대량적으로 이러한 상인들의 무리의 처분에 내맡기며 그리하여 이러한 도박자들의 무리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화폐는 흔히 그 어디보다도 늑다”라고 1848년에 당시의 잉글랜드 은행 총재(제임스 모리스)는 상원비밀위원회에서 말하였다(『상업곤궁』, 1848/185

7년, 제219호).

이미 이자 붙는 자본을 연구하는 데서 말한 바와 같이 평균이자율은 어느 정도 오랜 세월을 두고 볼 때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이윤의 평균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지 기업이득——이 자체는 이윤에서 이자를 뺀 것에 지나지 않는다——의 평균율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업이자——상업계에서 할인과 대부에 대하여 화폐대부업자가 계산하는 이자——의 변동에 있어서도 상업경기 순환과정에서는 이자율이 그 최저한도를 넘어서中间的의 높이(이자율은 그 후에 이것을 넘어선다)에 이르는 단계가 오며 이 경우에 이 운동은 이윤이 늘어나는 결과인데 이것도 이미 이야기된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연구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의 두 가지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자율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높다면(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나라 예컨대 영국에서의 이자율인데 이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오랜 기간에 걸쳐中间的의 이자율이 계속되며 이 이자율은 장기대부에 지불되는 이자——사적 이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이 기간에 이윤율이 높다는 증거로는 되지만 반드시 기업이득의 율도 높다는 증거로는 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차이는 주로 자체 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없어진다. 이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만큼 높은 이윤율을 실현한다. 높은 이자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여기에서는 본래의 곤궁의 단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다——이윤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이 이렇게 높다 해도 높은 이자율을 빼내면 기업이득의 낮은 율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 이윤율은 계속 높지만 기업이득의 율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일단 시작되면 그것은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대부분이 순 신용자본(다른 사람의 자본)에 의해 진행된다. 그리고 높은 이윤율은 때로는 순 투기적인, 예견적인 것일 수 있다. 이윤율이 높으면 기업이득이 줄어도 높은 이자율이 지불될 수 있다. 높은 이윤율은 이윤

* 이 권, 제1분책, 454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에서가 아니라 쏜, 다른 사람의 자본 자체에서 지불될 수 있으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투기시기에 그러하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둘째로, 이윤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따라서 이자율도 늘어난다는 명제는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고 하는 명제와 같은 것은 아니다.

공황기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 따라서 이자율도 최고한도에 이른다. 이윤율, 따라서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다시피 된다. 이러한 시기에는 사람들은 지불하기 위해서만, 이미 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만 돈을 쏜다. 이와는 반대로 공황 후의 새로운 활기증진의 시기에는 대부자본은 사기 위해서와 화폐자본을 생산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된다. 그리고 그 경우에 대부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산업자본가이거나 또는 상인이다. 산업자본가는 그것을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사는 데 지출한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이자율이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결코 이자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될 수는 없다. 임금이 더 높아진 것은 그것이 비록 산업경기순환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이윤이 더 높아진 결과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 원인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는 것은 노동을 특히 유리한 조건에서 착취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노동력에 대한, 따라서 가변자본에 대한 수요가 느는 것은 절대로 이윤을 불어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윤을 그만큼(pro tanto) 줄어들게 한다. 그렇지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가변자본에 대한 수요 따라서 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으며 따라서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노동력의 시장 가격이 그 평균수준 이상으로 오르며 평균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며 동시에 이자율은 높아지는데 그것은 이러한 사정 밑에서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 상품이 비싸지며 그 가격이 오르지만 이윤은—— 이것은 바로 이 상품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주로 기초하

고 있다——늘지 않는다. 그러나 전제된 사정 밑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 동시에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화폐자본가가 그의 화폐를 뒤흔들 대신에 산업가로 된다 하여도 그가 노동에 대하여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는 사정은 절대로 그의 이윤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줄어든게 할 것이다. 형편에 따라서는 그래도 그의 이윤이 늘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가 노동에 대하여 비싸게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든 사정은 그것 때문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기만 한다면 이자율을 높이는 데 충분하다. 다른 점에서는 불리한 형편에서 그 어떤 원인으로 해서 임금이 오른다면 이러한 임금성장으로 해서 이윤율은 떨어지겠지만 이자율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오를 것이다.

노동을 제쳐놓는다면 오버스톤이 자본에 대한 수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상품에 대한 수요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그 수요가 평균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이건 공급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이건 상품가격을 올린다. 예컨대 산업자본가 또는 상인이 전에 10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한 같은 양의 상품에 대하여 이제는 15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면 될 것을 150파운드 스텔링이나 꾸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이자율이 5%인 경우에 이자로서 전에는 5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하였는데 이제는 $7\frac{1}{2}$ 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곧 자본의 양이 늘기 때문에 그가 지불해야 할 이자의 양이 많아질 것이다.

오버스톤 씨의 시도는 전적으로 대부자본의 이해관계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같은 것으로 묘사하려는 데 있는데, 한편 그의 은행법은 바로 이 두 자본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화폐자본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을 타산한 것이다.

상품의 공급이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보다 더 많은 화폐자본을 뺏아들이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상품의 총가치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은 전과 같거나 심지어 전보다 적을지도 모르나, 같은 금액에 대하여 받게 되는 사용가치의 양은 이제는 전보

다 적다. 이 경우에 상품의 수요는 상품의 공급에 비하여 늘어나며 따라서 상품의 가격도 오르지만 대부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전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이자율은 오르지 않는다. 이자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부자본에 대한 총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만이고 위에서 이야기된 전제 밑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예컨대 알곡, 목화 등이 흉작인 경우와 같이 어떤 상품의 공급이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그것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을 노리고 투기가 진행되기 때문인데 가격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수단은 공급의 일부를 잠시 시장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사들인 상품을 팔지 않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어음조작에 의하여 화폐를 얻는다. 이 경우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며 그리고 이자율은 일부러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때문에 오를 수 있다. 그 경우에 이자율이 높아진 것은 상품자본의 공급을 일부러 줄였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물건의 공급이 늘었고 또 그 가격이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전과 다름이 없으며 심지어 전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같은 액의 화폐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유리한 시기를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또 부분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여 투기적으로 예비를 조성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과잉예비를 조성하는 데 자본이 지출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품자본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 그런 대부자본의 수요만을 연구한다. 산업경기순환의 여러 국면에서 재생산과정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대부자본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시장이자율은 (대부)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평범한 명제를 오버스톤은 교활하게도 대부자본은 자본 일반과 같은 것이라는 그 자신의 가정과 뒤섞어 놓고, 그러므로써 고리대금업자를 유일한 자본가로 또 고리대금업자의 자본을

유일한 종류의 자본으로 만들려고 한다.

공공기에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 이 경우에 이자율은 실제적 자본 즉 생산자본과 상품자본이 남아 돌아가든 모자라든 이에는 관계없이 매우 높이 오를 수 있다.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상인과 생산자들이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에서는 화폐로 전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요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담보가 없는 한에서는 따라서 지불수단의 선대가 그들에게 화폐형태를 줄 뿐만 아니라 지불을 하는 데서 그들에게 부족되는 등가물——형태는 어떻든지 간에——도 주는 한에서는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이다. 이 점이야말로 유행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두 의견의 지지자들이 공황문제에서 다같이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한 점이다. 지불수단이 부족할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확실한 담보의 소유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이조각을 발행함으로써 파산된 투기업자들을 모두 지불능력 있는 건실한 자본가들로 만들 의무와 힘이 은행에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본이 부족할 따름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단순한 말의 희롱을 일삼는 자들이거나——왜냐하면 사실상 이러한 시기에는 과잉수입과 과잉생산에 의하여 화폐로 전화될 수 없는 자본이 언제나 아주 많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신용의 기사들 즉 사실상 일을 꾸려나가는 데 쓸 다른 사람의 자본을 더는 얻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며, 따라서 은행이 잃은 자본을 보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투기를 계속할 수 있게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신용기사들뿐이다.

화폐는 가치의 자립적 형태로서 상품에 대립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환가치는 화폐에서 자립적 형태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정한 상품이 재료로 즉 그 가치로 다른 모든 상품을 재는 재료로 됨으로써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이 일반적 상품으로, 모든 다른 상품에 대립하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품으로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신용조작에 의하여 또 한편으로

는 신용화폐에 의하여 화폐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신용이 줄어들거나 또는 전혀 없어지는 곤궁기에는 화폐는 갑자기 유일한 지불수단으로서, 가치의 진정한 존재로서 모든 상품에 절대적으로 대립한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상품을 화폐로 즉 상품 자체의 순전한 환상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 힘들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용화폐 그 자체는 그것이 자체의 명목가치액에서 절대적으로 실제적 화폐를 대표하는 한에서만 화폐인 것이다. 금이 흘러 나감에 따라 신용화폐가 화폐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실제적 금과의 신용화폐의 동일성은 의심스럽게 된다. 그리하여 금과 교환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올리는 등의 강제적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릇된 입법에 의하여 즉 그릇된 화폐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화폐거래업자들인 오버스톤 따위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국가에 강요된 입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극단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신용화폐의] 기초는 생산양식 자체의 기초와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다. 신용화폐의 가치감소는 (물론 신용화폐의 상상적인 가치감소는 아니다) 현재의 모든 관계를 뒤 흔들어 놓을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화폐에서의 이 가치의 환상적이며 자립적인 존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생된다. 상품의 가치는 화폐가치로서는 일반적으로 화폐 그 자체가 보장되어 있는 동안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과 2~3백만의 화폐를 얻기 위하여 몇 백만인지 모르는 상품이 회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불가피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매력의 하나이다. 종전의 생산양식들에서는 이러한 것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생산양식들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좁은 토대 위에서는 신용도 신용화폐도 발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상품이 존재하는 화폐적 형태로서, 따라서 실제적 생산 밖에 있는 물건으로서 나타나는 동안은 실제적 공황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는 실제적 공황의 첨예화로서 나타나는 화폐공황은 불가피하다. 또 한편으로는 은행의 신용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동안은 이 은행은 그러한 경우에 신용화폐의 양을 늘림으로써 파국을 완화시키지만 신용화폐를 걷어들이면 파국을 격화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근대산업의 전역사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내의 생산이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속은 사실상 국제무역의 균형이 일시 파괴되었을 때에 국제무역의 경계를 위해서만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제는 벌써 금속화폐가 필요없다는 것은 비상시에는 언제나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여기는 이른바 국립은행의 은행권 태환정지라는 사실이 잘 말하여준다.

두 개인의 경우에 그 호상거래에서 이 두 사람이 다 서로 역차의 지불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채무자이며 또 채권자라면 그들의 청구권이 상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 차액만큼 한편이 다른 편의 채무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그리고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 국가의 무역균형은 결국 상쇄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지불균형은 그 나라에 순차 또는 역차로 될 수 있다는 명제를 내놓음으로써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지불균형은 일정한 기간에 지불되어야 할 무역균형이라는 점에서 무역균형과 구별된다. 그러나 공황은 무역균형과 지불균형의 차이를 짧은 기간으로 줄인다. 그리고 공황에 부닥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지불기한이 닳쳐온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정한 현상도 결제기간을 이렇게 줄이게 한다. 첫째로는 귀금속이 실려 나가며, 이어서 위탁상품이 팔리며, 상품을 팔거나 그 상품으로 국내에서 화폐를 대부받기 위하여 상품을 수출하며, 이자율이 오르며, 신용을 회수한다는 것이 예고되며, 유가증권의 시세가 떨어지며, 외국의 유가증권이 팔리며, 가치가 떨어진 이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며, 끝으로 많은 청구권을 청산하는 파산이 생긴다. 이 경우에 공황이 폭발한 나라에 금속을 보내는 일도 자주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 앞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화살치 못하며 금속으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믿음직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또 아시아에 대하여 말한다면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동시에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아시아의 채무자라는 사정이 덧붙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유관국가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자 곧 이 나라에서도 금과 은이 수출되기 시작하며, 요컨대 지불기한이 닳쳐오며 그리고 같은 현상들이 되풀이 된다.

상업신용에서는 신용가격과 현금가격의 차액인 이자는 어음의 유효기간이 보통보다 더 긴 때에만 상품의 가격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각 사람이 한 손으로는 이러한 신용을 받으며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 F. E.} 그런데 할인료가 상품의 가격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이 할인료는 상업신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시장에 의해서 규정된다.

오버스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자율을 규정하는 화폐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실제적 자본의 수요와 공급과 같은 것이라면, 서로 다른 상품을 고찰하는 데 따라 또는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같은 상품(원료, 반제품, 완제품)을 고찰하는 데 따라 이자는 동시에 낮기도 하며 높기도 해야 할 것이다. 1844년에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은 4%(1월부터 9월까지)와 11월부터 연말까지의 2½%~3% 사이를 오르내렸다. 1845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2½%, 2¾%, 3%였으며 마지막 두 달 동안에는 3% 내지 5%였다. 질 좋은 오를리언스 목화*의 평균가격은 1844년에는 6¼페니였고 1845년에는 4¾페니였다. 리버풀의 목화예비는 1844년 3월 3일에는 627,042작이었는데 1845년 3월 3일에는 773,800작이었다. 목화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1845년에는 이자율은 낮지 않으면 안되었고 사실상 이 해의 대부분에 걸쳐 낮았었다. 그러나 실의 가격으로 미루어 보면 이자율은 높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윤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1845년에는 한 파운드 당 4페니의 목화에서 4페니의 방적비를 들여 실(40번수의 상, 제2호 물 연사)을 방적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실에 방적업자는 8페니를 들였는데 1845년 9월과 10월에는 그는 이것을 한 파운드 당 10½페니 내지 11½페니로 팔 수 있었다(아래에 나오는 윌리의 진술을 보라).

모든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화폐대부자가 전혀 없고 그 대신 대부자본가들이 기계, 원료 등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현재 집들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산업자본가——그들

* 미국목화의 한 종류. 편집부.

자신이 이러한 물건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들에게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만 대부자본의 수요와 공급은 자본 일반의 수요와 공급과 일치할 것이다(물론 자본 일반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은 불합리하다. 산업가나 상인의 경우에 상품은 그의 자본의 한 형태이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자본으로서의 자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특수한 상품으로서의 이 상품만을 요구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상품——알곡 또는 목화——으로서 사며 그 값을 지불하는데 그 상품이 그의 자본의 순환에서 돌아야 할 역할과는 관계없이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대부자본의 공급은 산업자본가의 경우에는 생산요소의 공급과 일치하며 상인의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꿰주는 사람과 꾸는 사람 사이에서의 이윤의 분배는 우선 전적으로 대부받은 자본과 자본을 사업에 사용하는 사람의 소유를 이루는 자본 사이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리라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웨겔린 씨의 말에 의하면(『은행법』, 1857년) 이자율은 높고 있는 자본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며(제252호)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높고 있는 자본의 양의 지표일 따름이다(제271호). 후에 이 높고 있는 자본을 떠도는 자본(floating capital)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제458호) 이 떠도는 자본이라는 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과 국내의 다른 유통수단 예컨대 지방은행들의 은행권과 국내에 있는 주화……나는 떠도는 자본에 은행의 예금도 포함시킨다”(제502호, 제503호). 그리고 후에는 덩어리금으로 되어 있는 금도 포함시키고 있다(제503호). 이 웨겔린은 말하기를 “우리(잉글랜드 은행)가 사실상 높고 있는 자본의 대부분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제1, 198호) 시기에는 잉글랜드 은행은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지만 한편 위에서 이미 든 오버스톤 씨의 말에 의하면 잉글랜드 은행은 자본을 위한 장소는 아니다. 계속하여 웨겔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할인율은 국내의 높고 있는 자본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높고 있는 자본의 양은 사실상 금예비인 잉글랜드 은행의 예비금에 의하여 표시된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예비가 줄어들다면 국내의 높고 있는 자본의

양도 줄어들며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의 가치는 늘어난다”(제1, 285호).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제2, 102호).

“잉글랜드 은행은 그 은행부의 지불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은행부의 예비금을 보충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은행은 예비금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확보해야 하며 할인업무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가증권을 팔든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은행부만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예비금은 전적으로 예금을 위한 예비금이다. 오버스톤의 의견에 의하면 은행부는 은행권의 자동적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은행업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곤궁의 시기에는 잉글랜드 은행은 은행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부의 예금과는 관계없이 금속예비의 상태에 매우 날카로운 눈초리를 돌리게 되며 또 파국을 면하려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속예비가 없어지는 데 비례하여 은행권으로 이루어지는 예비금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오버스톤 씨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는 1844년의 그의 은행법에 의하여 이것을 그렇게도 현명하게 처리하였던 것이다.

제 33 장 신용제도하에서의 유통수단

“유통속도를 크게 조절하는 것은 신용이다. …화폐시장에서의 심한 곤궁과 유통수단이 가득 차는 일이 어째서 흔히 일치하는가는 이것으로써 설명된다”(『통화이론』, 65페이지).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으로 유통수단을 절약하는 방법은 모두 신용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컨대 500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을 들어보자. A는 오늘 이것을 어음의 지불을 위하여 B에게 내주고 B는 그날로 이것을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 예금한다. 은행업자는 또 그날로 이것으로써 C의 어음을 할인한다. C는 이것을 그가 거래하는 은행에 지불하며 이 은행은 이것을 어음중개업자에게 선대한다. 등등. 이 경우에 은행권이 구매와 지불에 복무하면서 유통하는 속도는 그 은행권이 되풀이하여 예금형태로 어느 누구에게 되돌아가서는 다시 대부형태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옮겨가는 속도에 의하여 제약된다. 유통수단의 단순한 절약은 만기가 된 어음의 교환만이 실시되고 화폐는 주로 초과분만을 청산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어음교환소에서 최고도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어음의 존재 자체는 또한 산업가와 상인들이 서로 주고 받는 신용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신용이 줄어들면 어음 특히 장기어음의 수가 줄어들며 따라서 또 지불청산방법의 효과도 줄어든다. 그리고 절약은 유통에서 화폐를 배제하는 데 있으며 또 전적으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것은 또한 신용에 기초하고 있다——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약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이러한 지불을 집중시키는 어느 정도 발전된 기술은 제쳐놓기로 한다). 즉 어음과 수표에 의하여 대표되는 호상채권은 같은 은행업자에 의해서 청산되든가——이 은행업자는 한 사람의 돈자

리에서 다른 사람의 돈자리로 청구권을 환치할 따름이다——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은행업자들이 그것을 서로 청산하든가 한다.¹¹⁾ 800만 내지 1000만의 어음을 예컨대 오버랜드, 거니 상회와 같은 한 사람의 어음중개업자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지불청산의 규모를 지방적으로 넓히는 주되는 수단의 하나였다. 이 절약에 의하여 유통수단의 효과가 커지는데 그것은 전보다 적은 양의 유통수단이 전적으로 차액을 결제하는 데 요구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또 한편으로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화폐의 운동속도(이것으로써도 절약이 이루어진다)는 전적으로 매매가 잘되는가 못되는가에 달려 있거나, 또는 지불이 연달아 화폐에 의하여 실시되는 한에서는 이 지불의 연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신용은 유통속도를 매개하며 그림으로써 유통속도를 높인다. 예컨대 하나의 화폐의 원래의 소유자인 A는 B에게서 사고, B는 C에게서, C는 D에게서, D는 E에게서, E는 F에게서 사며 따라서 그 화폐가 실제적 매매에 의해서만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이 화폐는 다만 다섯 번 유통할 수 있을 따름이며 신용의 매개없이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비교적 오랜 기간 개개인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B가 A에게서 지불 받은 화폐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 예금하고 이 은행업자는 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이것을 C에게

11)

은행권이 유통 중에 있던 평균일수

년	5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	10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	20~100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	200~500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	1,000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
1792	9	236	209	31	22
1818	148	137	121	18	13
1846	79	71	34	12	8
1856	70	58	27	9	7

(잉글랜드 은행의 출납원 마살이 제출한 표, 『은행법에 관한 보고』, 1857년, 제2권, 부록, 300~301페이지.)

내주며 C는 D에게서 사며 D는 다시 이것을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 예금하며 이 은행업자는 이것을 E에게 대부하고 E는 F에게서 산다면, 단순한 유통수단(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운동속도 자체가 이 경우에는 몇 차례의 신용조작에 의하여 즉 B가 자신의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 하는 예금, 이 은행업자가 C에 대해서 하는 할인, D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 하는 예금, 이 은행업자가 E에 대해서 하는 할인에 의하여 즉 4회의 신용조작에 의하여 —— 제약된다. 이러한 신용조작이 없었더라면 이 화폐로 이 기간에 연달아 다섯 번이나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화폐가 실제적 매매를 통하지 않고 —— 예금으로서와 어음할인에서 ——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 수많은 실제적 매매행위에서 이 화폐가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빨리 옮겨갔던 것이다.

방금 본 바와 같이 같은 은행권이 서로 다른 은행업자에게서 예금으로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은행권이 같은 은행업자에게서 서로 다른 예금으로 될 수 있다. 은행업자는 A가 예금한 은행권으로 B의 어음을 할인하고, B는 C에게 지불하며, C는 그 같은 은행권을 발행한 같은 은행업자에게 그것을 예금하는 것이다.

단순한 화폐유통(「자본론」, 제1부, 제3장, 제2절)을 고찰하는 데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유통속도와 지불에서의 절약의 정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실제로 유통하는 화폐의 양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같은 법칙은 은행권의 유통에서도 작용한다.

다음 표(「은행법」, 1858년, XXVI페이지)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잉글랜드 은행권의 연평균액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5~10파운드 스텔링 권과 20~100파운드 스텔링 권과 높은 200~1000파운드 스텔링 권의 액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총유통액 중에서 이러한 개개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금액의 단위는 1,000파운드 스텔링이

* 이 책, 제 I 권 (1), 141~143, 165~16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며 그 이하는 버린 것이다.

년도	5~10 파운드 스털링의 은행권	백분율	20~100 파운드 스털링의 은행권	백분율	200~1,000 파운드 스털링의 은행권	백분율	총 계
1844	9,263 파운드 스털링	45.7%	5,735 파운드 스털링	28.3%	5,253 파운드 스털링	26.0%	20,241 파운드 스털링
1845	9,698 "	46.9 "	6,082 "	29.3 "	4,942 "	23.8 "	20,722 "
1846	9,918 "	48.9 "	5,778 "	28.5 "	4,590 "	22.6 "	20,286 "
1847	9,591 "	50.1 "	5,498 "	28.7 "	4,066 "	21.2 "	19,155 "
1848	8,732 "	48.3 "	5,046 "	27.9 "	4,307 "	23.8 "	18,085 "
1849	8,692 "	47.2 "	5,234 "	28.5 "	4,477 "	24.3 "	18,403 "
1850	9,164 "	47.2 "	5,587 "	28.8 "	4,646 "	24.0 "	19,398 "
1851	9,362 "	48.1 "	5,554 "	28.5 "	4,557 "	23.4 "	19,473 "
1852	9,839 "	45.0 "	6,161 "	28.2 "	5,856 "	26.8 "	21,856 "
1853	10,699 "	47.3 "	6,393 "	28.2 "	5,541 "	24.5 "	22,653 "
1854	10,565 "	51.0 "	5,910 "	28.5 "	4,234 "	20.5 "	20,709 "
1855	10,628 "	53.6 "	5,706 "	28.9 "	3,459 "	17.5 "	19,793 "
1856	10,680 "	54.4 "	5,645 "	28.7 "	3,323 "	16.9 "	19,648 "
1857	10,659 "	54.7 "	5,567 "	28.6 "	3,241 "	16.7 "	19,467 "

그리하여 유통은행권의 총액은 1844년에서 1857년까지의 기간에——수출·입의 숫자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업거래는 2배 이상으로 되었으나——몹시 줄어들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10파운드 스텔링의 낮은 액의 은행권은 1844년의 9,263,000파운드 스텔링에서 1857년에는 10,659,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당시의 금융통의 심한 증가와 때를 같이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높은 액의 은행권(200~1,000파운드 스텔링)은 1852년의 585만 6,000에서 1857년에는 3,241,000

파운드 스텔링으로 줄어들었다. 즉 250만 파운드 스텔링 이상이나 줄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54년 6월 8일에 런던의 개인은행업자들은 어음교환소의 사업에 주식은행들이 참가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후 곧 최종적인 무현금결제¹⁾가 잉글랜드 은행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그날그날의 결제는 여러 은행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자리에서의 환치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에는 은행들이 서로 결제하는 데 이용되던 높은 액의 은행권은 쓸데없이 되었다” (『은행법』, 1858년, V 페이지).

도매업에서 화폐의 사용이 얼마나 최소한의 적은 액으로 줄어드는가 하는 것은 『자본론』 제1부, 제3장, 주 103)*에 있는 표에서 알 수 있다. 이 표는 소매상인이 필요한 온갖 종류의 상품예비를 모두 살 수 있는 그러한 런던의 대상사의 하나인 모리슨, 딜론 상회가 은행법에 관한 1857년 하원위원회에 제공한 것이다.

은행법에 관한 1857년 하원위원회 앞에서 한 W. 뉴마치의 진술(『은행법』, 1857년) 제1,741호에 의하면 다른 사정들도 또한 유통수단의 절약에 도움이 되었다. 그 사정이란 값싼 우편료, 철도, 전신 등 한마디로 말해서 연락수단의 개량이다. 따라서 잉글랜드에서는 현재 은행권 유통액이 거의 같은 조건에서 전보다 5~6배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원인들로 하여 10파운드 스텔링 이상의 은행권이 유통분야에서 더욱 밀려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1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마저 유통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은행권 유통액이 약 31%나 증가한 데 대한 자연적 설명으로 된다고 뉴마치는 보고 있다(제1,747호). 연합왕국의 은행권 총유통액은 1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도 포함하여 3,900만 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제1,749호). 금의 유통액은 7,000만 파운드 스텔링이다(제1,750호). 스코틀랜드에서는 은행권 유통액은 1834년에는 312만 파운드 스텔링이었으며 1844년에는 302만 파운드 스텔링이

* 이 책, 제 I 권 (1), 16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었고 1854년에는 405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다(제1, 752호).

이것으로써도 알 수 있지만 유통은행권이 언제나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동안은 발권은행은 결코 이 유통은행권의 양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 (불환지폐는 여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불환은행권은 예컨대 현재 러시아에서와 같이 그것이 사실상 국가신용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유통수단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불환은행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자본론』, 제1부, 제3장, 제2절, 3. 주화, 가치기호) 불환국가지폐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의 작용을 받는다—F. E.)

유통은행권의 양은 거래상의 필요에 복종하며 남아 돌아가는 은행권은 모두 즉시로 그것을 발행한 기관에 되돌아 간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은행권만이 법정지불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으며 또 지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지방은행들의 은행권의 유통은 전혀 무시할 수 있다.

은행법에 관한 1858년 하원위원회 앞에서 한 진술(『은행법』, 1858년)에서 잉글랜드 은행 총재 니브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947호 질문:)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의 액은 전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약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이란 말인가?” “평상시에는 대중의 수요에는 약 2,000만이 필요한 것 같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정한 시기에는 이 액은 100만 내지 150만이 늘어난다. 대중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언제나 잉글랜드 은행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제948호) “파국시에는 대중이 당신에게 은행권의 액을 줄이지 못하게 한다고 당신은 말하였는데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없겠는가?” “파국시에는 대중이 은행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물론 잉글랜드 은행이 빚을 지고 있는 동안은 대중은 이 빚에 대해서 잉글랜드 은행에서 은행권을 끌어낼 수 있다.” (제949호) “그러면 언제나 약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가?” “대중이 가지고 있는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 그 총액은 달라진다. 그것은 1,850만, 1,900만, 2,000만 등으로 되지만 그러나 평균해

서 1,900~2,000만이다.”

1847년 상업곤궁에 관한 상원위원회 앞에서 행한 토마스 투크의 진술(『상업곤궁』, 1848~1857년).

(제3,094호) “잉글랜드 은행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의 액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다. 이 은행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의 액을 줄일 수는 있으나 매우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30년 동안 노팅검에서 은행업을 한 J. C. 라이트는 지방은행들은 대중이 필요로 하며 또 원하는 이상의 은행권을 유통시킬 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서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상업곤궁』, 1848~1857년).

(제2,844호) “잉글랜드 은행에서는 (은행권 발행에서)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유통수단의 과잉분은 모두 예금으로 되며 그리하여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지폐만이 유통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일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1파운드의 은행권이 유통되고 있으며 또 스코틀랜드 사람은 금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의 한 은행의 중역인 케네디는 은행은 자기 은행권의 유통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국내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은행권이나 금이 요구되는 동안은 은행업자들은 이러한 거래에 필요한 만큼의 유통수단을——그들의 예금자의 요구에 의해서이건 그렇지 않은 간에——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스코틀랜드의 은행은 자기 업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은행권 발행을 통제할 수는 없다”(같은 책, 제3,446, 3,448호).

스코틀랜드 연합은행의 중역 앤더슨도 같은 의견이다(같은 책, 제3, 57 8호.)

“은행권을 서로 교환하는(스코틀랜드의 은행들 사이에서) 제도로 하여 어떠한 개별적 은행이 은행권을 지나치게 발행하는 데 지장을 받는가?” “물론 지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은행권의 교환(이것은 사실상 위에서 말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지만 개개 은행의 은행권이 전 스코틀랜드에 걸쳐 유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은행에 돈자리를 가진다는 스코틀랜드의 일반적인 관습이다. 얼마만큼이라도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자기에게 당장 필요가 없는 화폐는 모두 날마다 거기에 넣는다.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영업이 끝나면 각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제쳐놓은 모든 화폐는 은행에 있게 된다.”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다(같은 위원회 앞에서 한 아일랜드 은행의 총재 맥도넬과 아일랜드 지방은행의 중역 머레이의 진술을 보라).

은행권의 유통은 잉글랜드 은행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은행권의 교환을 보장하는, 이 은행의 지하실에 있는 금예비의 상태와도 관계가 없다.

“1846년 9월 18일에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 유통액은 20,900,000파운드 스텔링이었고 이 은행의 금속저장액은 16,273,0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1847년 4월 5일에는 은행권의 유통액이 20,815,000파운드 스텔링이었고 금속예비액은 10,246,0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따라서 600만 파운드 스텔링의 귀금속이 수출되었으나 은행권의 유통액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J. G. 키니어, 「공황과 통화」, 런던, 1847년, 5페이지).

그러나 이것은 현재 영국에서 지배적인 관계에서만 그리고 그 경우에도 입법이 은행권 발행과 금속예비 사이에 다른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에서만 들어맞는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따라서 유통화폐 즉 은행권과 금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 자

채의 요구만이다. 이 경우에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일반적 사업상태는 어떻든 간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주기적 변동인데 예컨대 최근 20년 동안

“어느 달에는 유통액이 많고 다른 달에는 적으며 또 어느 달에는 중간점에 있다”(뉴마치, 『은행법』, 1857년, 제1, 650호)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마다 8월에는 수백만 파운드 스털링이, 그 대부분은 수확에 드는 비용을 금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잉글랜드 은행에서 나와 국내유통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주로 임금의 지불이 문제로 되는 만큼 영국에서는 이 경우에 은행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연말까지는 이 화폐는 다시 잉글랜드 은행에 흘러 들어간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소비된 화폐* 대신에 거의 전적으로 1파운드의 은행권만이 유통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해당한 경우에——그것도 한 해에 두 번 즉 5월과 11월에——은행권의 유통액이 300만에서 400만 파운드 스털링으로 늘어난다. 14일이 지나면 화폐는 벌써 되돌아오기 시작하며 한 달이면 거의 다 되돌아온다(앤더슨, 『상업곤궁』, 1848~1857년, 제3, 595~3, 600호).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 유통액은 그 밖에도 분기마다 배당금 즉 국채이자가 지불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일시적으로 변동된다. 그리하여 은행권은 우선 유통에서 회수되고 이어서 다시 대중 속에 흘러나가지만 매우 빨리 다시 되돌아온다. 웨즐린은(『은행법』, 1857년, 제38호) 이 때문에 은행권 유통액에 생기는 변동이 250만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명한 오버랜드, 거니 상사의 대표자인 채프만 씨는 이 때문에 생기는 화폐시장의 교란을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신이 국채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세금으로서 600만 내지 700만을 유통에서 끌어낸다면 그 동안에 그만한 액을 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은행법』, 1857년, 제5, 196호).

* 영국의 1파운드 스털링 짜리 금화.

산업경기순환의 여러 국면에 상응하는, 유통수단의 액의 변동은 훨씬 크고 또 오래 간다. 이 점에 대하여 이 상사의 또 하나의 동업자인 존경할 만한 웨이커 교도 사무엘 거니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상업곤궁』, 1848~1857년, 제2, 645호).

“10월 말(1847년)에 2,080만 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이 대중의 손에 있었다. 당시 화폐시장에서 은행권을 얻기란 매우 힘들었다. 이것은 1844년의 은행법의 제한으로 하여 은행권을 얻을 수 없으리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현재(1848년 3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액은…1,770만 파운드 스텔링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업에서 경계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이것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 런던의 은행업자나 화폐거래업자치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이상의 은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2, 650호) “잉글랜드 은행 밖에 있는…은행권의 액은 상업계와 신용의 상태를…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통의 실정을 설명하는 지표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다.” (제2, 651호) “현재의 유통의 규모로 보아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대부분 현재의 침체상태에 의하여 설명된다. 가격이 높고 사업이 활발하다면 이 1,770만 파운드 스텔링으로는 화폐의 부족을 느낄 것이다.”

(선대된 것이 규칙적으로 되돌아오고 따라서 신용이 끄덕도 하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서는 유통수단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오로지 산업가와 상인들의 수요에 의하여 정해진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금이 도매업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며 또한 금의 유통액은——계절적 변동을 제쳐놓는다면——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의 유통액은 이러한 변동을 제는 매우 정확한 지표로 된다. 공황 후의 침체기에는 유통액이 가장 적고 수요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유통수단에 대한 요구도 커지며 이 요구는 번영과 더불어 커진다. 유통수단의 양은 지나친 긴장과 지나친 투기의 시기에 최고에 이른다. 이때에 공황이 폭발하며 전날까지도 그렇게 많았던 은행권은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와 함께 어음을 할인하는 사람,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대부하는 사람, 상품을 사는 사람들도 자취를 감춘다. 잉글랜드 은행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 은행의 힘도 얼마 안가서 지친다. 온 세상이 은행권을 얻으려고 아우성을 치며 상품소유자들은 팔 수는 없지만 지불은 해야 하며, 따라서 은행권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1844년의 은행법에 의하여 잉글랜드 은행은 그 은행권 유통액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에서 이미 이야기된 은행업자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같은 책, 제2, 930호).

“파국의 시기에는 평상시의 2배나 되는 유통수단이 나라에 필요한데 그것은 은행업자와 또 그 밖의 사람들이 유통수단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공황이 일어나면 이제는 지불수단만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누구나 이 지불수단을 얻는 데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또 그 다른 사람이 지정된 기일에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큼 시장에 있는 지불수단에 대한 즉 은행권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대로 은행권을 얻어서 감추어 둔다. 그러므로 은행권은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그때에 유통에서 사라져 버린다. 사무엘 거니는(『상업곤궁』, 1848~1857년, 제1, 116호) 이러한 공포기에 금고 속에 넣어둔 은행권의 양을 1847년 10월에는 400만 내지 500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보고 있다.—F. E.)

이 점에서 특히 흥미있는 것은 거니의 동업자인 이미 위에서 말한 채프만이 은행법에 관한 1857년 하원위원회 앞에서 한 진술이다(『은행법』, 1857년). 나는 여기에서 그 진술의 기본내용을 서로 연관시켜 전하려 한다. 물론 그 진술에는 우리가 후에 가서야 연구하게 될 몇 가지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채프만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4, 963호) “조금도 서슴지 않고 말한다면 화폐시장이 그 어떤 개별적 자본가 즉 매우 부족되는 바로 그런 시기에 방대한 화폐부족과 관련한 형편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별적 자본가(런던에는 이러한 자본가들이 적지 않다)의 지배 밑에 놓이게 되는 것을 나는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유통분야에서 100만 내지 2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을 끌어낼 수 있는 — 이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 자본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은…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제4, 965호) 대투기업자는 100만 내지 200만의 정리공채를 팔아 시장에서 화폐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결과로 극도의 곤궁이 조성되었다.

(제4, 967호) 이 경우에 은행권은 물론 비생산적이다.

“그러나 큰 목적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큰 목적이란 증권의 가격을 떨어뜨리며 화폐부족을 조성하는 것인데 대투기업자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느 날 증권거래소에서 화폐에 대한 큰 수요가 생겼다.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다. 한 사람이 채프만에게 7%로 5만 파운드 스텔링을 꾸달라고 하였다. 채프만은 놀랐다. 자기의 이자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그는 동의했다. 그 후 곧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7½%로 5만 파운드 스텔링을 더 꾸었으며 이어 8%로 1만 파운드 스텔링을 꾸었고 8½%로 더 꾸겠다고 하였다. 그때는 채프만도 불안을 느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많은 액의 화폐가 갑자기 시장에서 끌려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채프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8%로 많은 금액을 꾸주었다. 그 이상 더 나아가는 데는 불안을 느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1,900만 내지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은행권이 거의 변함없이 대중의 손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은행권 중 실제로 유통하는 부분과 은행들에서 예비금으로서 놓고 있는 부분 사이의 비율은 늘 또 많이 달라진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예비금이 많고 따라서 실제적 유통의 수준이 낮다면 화폐시장의 견지에서 보면 이것은 유통수호가 차 있다(the circulation is full, money is plentiful)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금이 적고 따라서 실제적 유통의 수호가 차 있다면 화폐시장의 견지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유통수준이 낮다(the circulation is low, money is scarce)고 부른다. 즉 높고 있는 대부자본을 표시하는 화폐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유통수단이 경기순환의 국면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그러나 대중이 필요로 하는 금액은 전과 다름이 없다——순전히 기술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예컨대 세금 또는 국채이자의 지불기일에만 생긴다. 세금을 물 때에는 은행권과 금은 보통 정도 이상으로 잉글랜드 은행에 흘러 들어가며 사실상 유통수단에 대한 요구와는 관계없이 유통수단을 줄인다. 국채이자가 지불될 때에는 그와는 반대이다. 첫째 경우에는 유통수단을 얻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다. 둘째 경우에는 개인은행에서는 그 예비금이 일시 늘어나는 탓으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것은 유통수단의 절대액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다만 이러한 유통수단을 유통시키는 은행업자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 은행업자로 보면 이러한 과정은 대부자본의 양도를 표시하며 따라서 그 은행업자는 이 거래에서 나오는 이윤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유통수단의 이동이 생길 따름이며 이 이동을 잉글랜드 은행은 다음과 같이 하여 고르게 한다. 즉 분기마다 오는 납세기일 또는 역시 분기마다 오는 국채이자 지불기일의 직전에 낮은 이자로 단기대부를 함으로써 고르게 한다. 이와같이 하여 지나치게 발행된 은행권은 우선 세금지불에 의하여 생기는 부족을 메우는데, 이 은행권이 잉글랜드 은행에 되돌아옴으로써 국채이자의 지불에 의하여 대중의 손에 들어간 은행권의 과잉분이 곧 은행에 되돌아온다.

또 다른 경우에는 유통의 수준이 낮다거나 또는 높다는 것은 언제나 같은 양의 유통수단이 능동적 유통수단과 예금 즉 대부의 도구 사이에 다르게 분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 한편으로는 예컨대 잉글랜드 은행으로 금이 흘러 들어옴으로써 그 대신에 발행되는 은행권의 양이 늘어난다면, 이 은행권은 은행 밖에서의

할인에 도움을 주며 또 대부금의 상환에 의하여 되돌아오며 그리하여 유통되는 은행권의 절대량은 짧은 기간만 늘어난다.

사업이 커짐으로써 유통의 수준이 높아지면(이것은 가격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자율이 비교적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은 이윤이 많아지고 새로운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 때문이다. 사업이 줄어들거나 또는 신용을 얻기가 쉽기 때문에 유통의 수준이 낮다면 가격은 높아도 이자율은 낮을 수 있다(헵바드의 주장을 보라*).

유통수단의 절대량은 칩제기에만 이자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유통에 대한 수요는 1847년의 경우와 같이 신용이 부족된 탓으로 생겨난, 화폐퇴장수단에 대한 수요만을 표현할 따름인데(화폐의 유통속도와 같은 화폐가 끊임없이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제쳐놓는다) 1847년에는 은행법의 효력의 정지는 유통수단이 불어나게는 하지 않았으나 퇴장된 은행권을 다시 세상에 끌어내어 다시 유통시키는 데는 충분하였다. 또는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보다 많은 유통수단이 실지로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1857년에는 은행법의 효력이 정지된 후 얼마 동안 유통수단은 실지로 늘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통수단의 절대량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유통상의 절약과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유통수단의 절대량은 첫째로는 상품의 가격과 거래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며(이 경우에 보통 한 계기는 다른 계기의 작용을 마비시킨다). 또 신용상태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지 결코 이와는 반대로 그 신용상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상품가격과 이자율은 아무런 필연적 연계도 없기 때문이다.

은행제한법이 실시되던 기간에는(1797~1820년)⁷ 유통수단이 지나치게 많았으며 이자율은 언제나 은행권의 태환이 다시 시작된 시기보다도 훨씬 높았다. 후에 은행권 발행이 줄어들고 어음시세가 오름에 따라 이자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1822년, 1823년, 1832년에는 유통의 일반적 수준

* 이 권, 683~685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은 낮았으며 이자율도 역시 낮았다. 1824년, 1825년, 1836년에는 유통의 수준이 높았고 이자율도 또한 올랐다. 1830년 여름에는 유통의 수준은 높았으나 이자율은 낮았다. 새로운 금광이 발견된 이후 화폐유통은 전 구라파에 걸쳐 늘었으며 이자율은 올랐다. 이와같이 이자율은 유통화폐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수단의 발행과 자본의 대부 사이의 차이는 실제적 재생산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생산의 여러 가지 구성부분들이 어떻게 교환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보았다(『자본론』, 제2부, 제3편). 예컨대 가변자본은 물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수단 즉 노동자들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이다. 그런데 가변자본은 화폐의 형태로 일부분씩 그들에게 지불된다. 자본가는 이 화폐를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본가가 지난 주간에 지불한 같은 화폐로 그 다음 주간에 새로운 가변자본을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신용업의 조직에 크게 달려 있다. 사회적 총자본의 여러 가지 구성부분들 사이에서의, 예컨대 소비품과 소비품의 생산수단 사이에서의 교환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유통시키기 위한 화폐는 교환자들 중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다 선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후 화폐는 유통분야에 남아 있지만 교환이 끝나면 언제나 그 화폐는 선대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간다. 그것은 화폐가 실제로 사용되는 그의 산업자본 이상으로 선대되었기 때문이다(『자본론』, 제2부, 제20장*을 보라). 신용업이 발전하여 화폐가 은행에 집적되면 이 은행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화폐를 대부한다. 이러한 대부는 유통하고 있는 화폐와만 관련된다. 그것은 유통수단의 대부이지 이 유통수단에 의하여 유통되는 자본의 대부는 아니다.

채프만, (제5, 062호) “대중이 매우 많은 액의 은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시기가 닥쳐올 수 있다.”

화폐는 파국의 시기에도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누구나 이것을 대

* 이 책, 제Ⅱ권(2), 454~46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부자본으로, 대부할 수 있는 화폐로 전화시키는 것을 경계한다. 누구나 실제로 지불해야 할 경우를 생각하여 이 화폐를 붙들어 둔다.

(제5, 099호) “농촌지방의 은행들은 늘고 있는 자기의 과잉자금을 당신에게나 기타 런던의 상사들에 보내는가?” “그렇다.” (제5, 100호) “또 한편 뱅카서와 요크셔의 공장지방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당신에게서 어음을 할인받는가?” “그렇다.” (제5, 101호) “그리하여 한 지방의 과잉화폐가 다른 지방의 요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채프만은 말하기를 은행이 자기의 과잉화폐자본을 짧은 기간 정리공채와 국고증서를 사는 데 사용하는 관습은 이 화폐를 어느 때나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꾸주는 것이 관례로 된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 자신은 이러한 종류의 증권을 사들이는 것은 자신의 기업에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화폐를 확실한 어느 어음에 넣는데 이 어음들 중에서 일부는 나날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기가 얼마만큼의 늘고 있는 화폐를 매일 기대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제5, 101~5, 105호).

수출이 늘어나는 것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특히 신용을 주는 나라에서—— 국내화폐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서 나타나지만 이 수요의 장성이 수요의 장성으로서 느껴지는 것은 침체기에서만이다. 수출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위탁판매를 위하여 국외로 보낸 영국제품에 대해서 흔히 수출상인 앞으로 장기어음을 발행한다(제5, 126호).

(제5, 127호) “이러한 어음을 때때로 갱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채프만) “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밀에 붙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어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천진난만한 채프만).” (제5, 129호)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이나 수출이 늘었는데 이와같이 수출이 몹시 늘어난다면 자연히 이 수출을 표시하는

어음을 할인하기 위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지 않겠는가?”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제5, 130호) “영국은 일반적으로 수출 전액에 대하여 외국에 신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신용이 계속되는 전기간에 걸쳐 그만한 추가자본을 뺏아들이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국은 방대한 신용을 주고 있으나 그 대신 영국에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신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우리 앞으로 언제나 60일 기한의 어음을 발행하며 다른 나라들은 90일 기한의 어음을 발행한다. 한편 우리는 신용을 주는데 우리가 독일로 상품을 보낼 때는 두 달 내지 석 달의 신용을 준다.”

월슨은 채프만에게 이렇게 묻는다(제5, 131호). 즉 수입되는 이러한 원료와 식민지상품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배에 실림과 동시에 영국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어음들은 벌써 발송증권과 동시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다. 채프만은 대답하기를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상인적 업무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므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은 수송 중에 상징화 된다고 채프만은 말한다. 이 잠꼬대 같은 소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영국의 수출상인은 상품에 대하여 런던에 있는 미국의 한 대은행 앞으로 4개월 기한의 어음을 발행하고 이 은행은 미국에서 담보를 받는다는 것이다(제5, 133호).

(제5, 136호) “머나먼 나라들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상품이 팔릴 때까지는 자기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상인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상품에 대하여 대부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본을 상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상사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상품은 이름난 상사들의 인수에 의하여 대부금으로 전화된다.” (제5, 137호) “이러한 상사들은 런던, 리버풀과 그 밖의 곳에도 있다.” (제5, 138호) “따라서 제조업자가 자기 자신의 화폐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건 또는 그가 런던이나 리버풀에서 자기에게 화폐를 쥐주는 상인을 찾아내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여하튼 간에 영국에서 실시되는 선대라는 말인가?” “그렇다. 그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제조업자가 이것과 그 무슨 관계를 가지는 것은 드문 경우만이다(그런데 1847년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러하였다). 예컨대 맨체스터의 한 제품거래업자는 상품을

사서 런던의 한 믿음직한 상사를 통하여 그것을 해외로 보낸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포장되었다는 것을 런던의 상사가 확인하자 이 거래업자는 인도, 중국 및 그 밖의 나라로 가는 상품에 대하여 그 런던의 상사 앞으로 6개월 기한의 어음을 발행한다. 그 경우에 이 거래에는 은행계가 끼어들어와 그를 위하여 이 어음을 할인하여 준다. 그리하여 그가 이 상품의 대금을 지불해야 할 무렵에는 그 어음의 할인에 의하여 그는 이미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5, 139호) “그러나 그가 이 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업자가 역시 이 화폐를 대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아닌가?” “은행업자는 어음을 가지고 있다. 은행업자는 어음을 샀다. 그는 자기의 은행자본을 이 형태로 즉 상업어음의 할인형태로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프만도 어음의 할인을 대부로 보지 않고 상품의 구매라고 보고 있다. —F. E.). (제5, 140호) “그러나 이것 역시 런던의 화폐시장에서의 수요의 일부를 이루는가?” “틀림없이 그렇다. 화폐시장과 잉글랜드 은행의 기본사명은 여기에 있다. 잉글랜드 은행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음을 매우 즐겨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은행은 이것이 좋은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5, 141호) “수출업이 늘어남에 따라 화폐시장에서의 수요도 늘어나는가?” “나라가 더욱더 번영하여 감에 따라 우리(채프만 따위들)도 여기에서 한몫 본다.” (제5, 142호) “그리하여 이 투자의 여러 가지 부문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그 자연적 결과로서 이자율이 오르는가?” “틀림없이 그렇다.”

(제5, 143호) 채프만으로서는 “우리의 수출이 많은데 어떻게 되서 금의 용도가 그렇게 큰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존경할만한 윌슨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5, 144호) “우리가 수입에서 받는 신용보다 더 큰 신용을 수출에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나 자신으로 말하면 그것은 의심스럽다. 누구인가가 인도로 보낸 맨체스터 상품에 대한 어음을 인수시키려 하더라도 당신은 10개월 이하의 것은 인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인도에서 지불을 받기 얼마 전에 여하튼 간에 미국에 목화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제5, 145호) “지난 해와 같이 우리의 공업품의 수출이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이나

증가한다면 이렇게 늘어난 상품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의 수입이 많이 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 점에 과잉수출이 과잉수입과 같으며 과잉생산이 과잉상업과 같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확실히 그렇다. 우리는 미리 매우 큰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균형이 그동안 역차였다든 것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환율은 우리에게 유리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귀금속을 받아왔다.”

(제5, 148호) 윌슨은 큰 고리대업자인 채프만에게 당신의 높은 이자는 대변영과 높은 이윤의 표식이라고 보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채프만은 이 아침쟁이의 소박성에 정말 놀라면서 물론 이에 긍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매우 솔직하여 다음과 같은 보류조건을 붙인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들은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으며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이(높은 이자율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변영의 증치일 것이다.”

두 사람은 다 그것이——1857년에 그랬던 바와 같이——다음과 같은 것의 증거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즉 이곳 저곳 떠다니는 신용의 기사들은 나라의 경제형편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을 지불하기 때문이며(그러나 이 경우에 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이자율을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그 동안은 그들이 앞당긴 이윤으로 호화롭게 산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런데 또한 바로 이것은 제조업자 등에게 실지로 매우 유리한 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은 대부제도에 의하여 그야말로 기만적인 것으로 된다. 이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설명해 준다. 즉 잉글랜드 은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없는데 그것은 이 은행은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들보다 낮은 율로 할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제5, 156호) “채프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오랜 기간 이자율이 높은 이 순간에 우리의 할인액은 최고한도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파국이 있기 두 달 전인 1857년 7월 21일에 채프만이 한 말이다). (제5, 157호) “1852년에는 (이 해에는 이자가 낮았다) 할인액은 결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것은 당시에는 사실상 사업이 아직도 훨씬 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제5, 159호) “시장에 화폐가 많이 남아 돌아가고...그리고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이 낮다면 우리 나라에서 어음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1852년의 우리의 형편은 지금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당시 나라의 수출·입은 현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5, 161호) “이렇게 할인율이 높은 조건에서 우리의 할인액은 1854년 (당시 이자는 5~5½%였다) 과 같은 크기였다.”

채프만의 진술에서 매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대중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자기들의 소유로 여기며 또 그들이 할인한 어음을 언제나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문답은 그야말로 소박하기 그지없다. 큰 상사가 인수한 어음을 언제나 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잉글랜드 은행이 어떠한 사정 밑에서도 어음중개업자들에게 그 어음을 다시 할인하여 주도록 배려를 돌리는 것은 입법의 의무로 된다. 그런데 1857년에는 3명의 이러한 중개업자가 약 800만의 빚을 지고 파산하였는데 그들 자신의 자본은 이 빚에 비하면 아주 보잘 것 없는 금액이었다.

(제5, 177호) “그러면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그것들은 (베어링 상사 또는 로이드 상사의 인수어음들은) 현재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이 금과 반드시 교환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할인되어야 한다고 당신은 말하려는 것인가?” “그것들을 할인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스미드, 페인 상사 또는 존스, 로이드 상사의 인수어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할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불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매우 이상한 일일 것이다.” (제5, 178호) “그런데 베어링 상사의 인수라는 것은 어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일정한 화폐액을 지불한다는 채무가 아닌가?” “그것은 아주 옳은 말이다. 그러나 베어링 상사가 이러한 채무를 인수할 때 이러한 종류의 채무를 인수하는 어느 상인보다도 마찬가지로 이 채무를 소비관급화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음교환소에서 지불될 것이라고 타산한다.” (제5, 180호) “그러면 당신은 어떤 다른 사람이 어음을 할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어음 만기가 되기 전에 대중이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특수한 종류의 기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인수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가능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당신이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태를 모두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 182호) “그러면 당신은 잉글랜드 은행권이 반드시 금과 교환되어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상업어음)도 반드시 화폐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바로 그렇다.” (제5, 184호) “그러면 당신은 의심할 바 없이 믿음성 있는 상업어음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쉽게 화폐와 교환되도록 화폐유통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제5, 185호)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이나 또는 다른 그 누구에게 상업어음을 화폐와 교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는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통화조절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의심할 바 없이 믿음성 있고 정당한 국내 상업어음이 화폐로 전화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닥쳐오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행권의 태환을 본받은 상업어음의 태환인 것이다.

(제5, 190호) “이 나라의 화폐거래업자들은 사실상 대중을 대표하고 있을 따름이다”라고 후에 채프만 씨는 데이빗슨 사건의 배심정에서 말했다. 대금용사기를 보라.”

(제5, 196호) “분기마다(국채이자)가 지불될 때 우리가 잉글랜드 은행에 의거하는 것은…절대로 필요하다. 당신이 국채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600만 내지 700만의 국가소득을 유통에서 끌어낸다면 그 동안에 그만한 금액을 대줄 그 누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문제는 화폐의 공급이지 자본이

나 대부자본의 공급이 아니다.)

(제5, 169호) “우리의 상업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국고중서가 팔리지 않게 되고, 동인도회사 채권이 전혀 쓸모없이 되고, 가장 믿음직한 상업어음도 할인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는 그저 요구만 하더라도 사업상 즉시로 보통의 유통수단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큰 불안에 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은행업자들은 모두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 예비금을 2배로 늘리게 된다. 500명 가량 되는 지방은행업자들이 모두 자기가 거래하는 런던의 은행에 은행권으로 5,000파운드 스텔링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좀 생각하여 보라. 이 적은 금액을 평균으로 보더라도——이것은 이미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지만——그때에는 250만 파운드 스텔링이 유통에서 끌려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보상하겠는가?”

또 한편 화폐를 가지고 있는 개인자본가 등은 어떤 이자로써도 화폐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채프만의 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제5, 195호) “화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근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5, 173호) “우리의 제도는 이러하다. 즉 우리는 3억 파운드 스텔링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순간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화로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국내 주화의 총액은 그것을 모두 여기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2,300만 파운드 스텔링이 될까 말까 하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를 매 순간마다 전율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황기에 신용제도가 현금제도로 갑자기 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황기의 국내의 파국을 제쳐놓는다면 세계화폐인 금속을 엄두에 두는 한에서만 화폐의 양이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채프만은 바로 이 세계화폐를 제쳐놓고 2,300만의 은행권만을 문제로 삼는다.

이 채프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5, 218호) “화폐시장에서 혼란이 생긴 {1847년 4월과 그 후 10월에} 원래의 원인은 의심할 바 없이 이 해에 방대한 양을 수입한 결과에 환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많은 액의 화폐가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첫째로, 세계시장화폐의 이 저장은 당시 최소한도로 줄어들었다. 둘째로, 이 저장은 동시에 신용화폐인 은행권의 태환을 보장하는 데 쓰였다. 그리하여 이 저장은 전혀 다른 두 기능을 동시에 하였는데 이 기능은 다 화폐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 화폐는 언제나 세계시장화폐이며 신용화폐는 언제나 세계시장화폐에 받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1844년의 은행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1847년에는

“어음교환소는 자기 사업을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제5, 221호).”

채프만은 그래도 앞으로 올 공황을 어느 정도 예감하였던 것이다.

(제5, 236호) “화폐시장의 일정한 형편에서는(현재의 형편은 이것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화폐를 얻기가 매우 힘들며 그리하여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5, 239호)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과 월요일, 즉 1847년 10월 19일, 20일 및 22일에 은행에서 끌어낸 금액을 놓고 말한다면…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어음을 회수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크게 감사하였을 것이다. 파국이 지나가자 곧 화폐는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기 시작하였다.”

화요일 즉 10월 23일에는 은행법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그리하여 공황은 끝장이 났던 것이다.

런던에서 떠도는 어음액은 언제나 1억 내지 1억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이라고 채프만은 생각하고 있다(제5, 274호). 여기에는 지방에 있는 지방어음은 들어 있지 않다.

(제5, 287호) “1856년 10월에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액은 21, 155, 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으나 화폐를 얻기는 매우 힘들었다. 대중은 화폐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곤궁상태로 하여 생겨난 불안의 결과였는데 동방은행은 잠시 동안(1856년 3월) 그러한 곤궁상태에 처해 있었다.

(제5, 290호) 파국이 지나가자

“이자에서 자기 이윤을 얻는 은행업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곧 자기 화폐를 사업에 쓰기 시작한다.”

제5, 302호. 채프만은 은행예비금이 줄어들음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예금에 대한 염려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갑자기 많은 화폐액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화폐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마도 마지막 피난처인 은행에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은행에 예비금이 매우 적다면 은행은 우리를 결코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은행예비금이 사실상의 크기로 어떻게 없어져 가는가 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은행업자는 자기의 당면한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며 또 일부는 잉글랜드 은행에 맡겨둔다. 어음중개업자는 예비금이 없어 나라의 놀고 있는 은행화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은 예금채무의 보증으로서, 은행업자와 또 그 밖의 사람들의 예비금과 또한 공공예금 등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 예비금은 최저점 예컨대 200만 파운드 스텔링까지 줄어든다. 그러므로 이 2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지폐를 제쳐놓고는 곤궁시기에는(그런데 이 곤궁으로 하여 예비금은 줄어든다. 그것은 흘러 나가는 금속 대신으로

들어오는 은행권은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기는 금속예비 밖에는 아무런 다른 예비로도 담보되지 않으며 그리고 금이 흘러나감으로써 금속예비가 줄어들 때마다 공황은 격화된다.

(제5, 306호) “어음교환소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차액을 지불하기 위한 화폐가 없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국고와 스미드, 페인 상사 등 앞으로 발행하는 일류급 어음에 의하여 지불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5, 307호) “따라서 정부가 당신에게 유통수단을 대줄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내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대중이 달려와 우리의 손에서 유통수단을 가지고 간다. 유통수단은 더 이상 없다.” (제5, 308호) “그러면 당신은 맨체스터에서 날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만을 런던에서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바로 그렇다.”

케일리(버밍검 학파)에 속한 애트우드를 지지한 사람이 자본에 관한 오버스톤의 견해를 염두에 두고 제기한 질문에 대한 채프만의 대답은 매우 훌륭하다.

(제5, 315호) “1847년과 같은 곤궁시기에는 사람들이 화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구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서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화폐만을 거래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제5, 316호) “당신이 그것들(상업자본을) 기업에 넣은 기업이 자신의 화폐액이라고 이해한다면, 또 당신이 그것을 자본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말해야 할 것은 그것은 많은 경우에 대중이 그에게 주는 신용에 의하여 즉 채프만 같은 사람들의 매개에 의하여 기업가가 자기 기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폐 중의 보잘 것 없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5, 339호) “우리가 은행권의 태환을 정지한다면 그것은 재부가 부족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재부가 부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히 인위적인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유통수단에 대한 무시무시하게(superincumbent)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유통수단을 우리가 얻을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사정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그 때문에 나라의 모든 상업활동이 마비되어야 하겠는가? 과연 우리가 모든 생산을 중지해야 하겠는가?” (제5, 338호)
 “은행권의 대환과 나라의 산업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곤궁상태를 격화시키고 그 결과에서 이익을 보려는 목적을 가진” (제5, 358호) 은행권의 저장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3대 은행이면 충분할 것이다.

(제5, 383호) “우리의 수도의 큰 거래사업을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자본가들이 이 공황을 이용하여 희생자들의 파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겠는가?”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채프만 씨는 희생자들의 파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지만——상업적인 의미에서——이 경우에 그의 말은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동업자 거니가 사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는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하였는데 채프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의 한 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부분의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 예컨대 대륙으로 수출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업가가 있는데 그는 덩어리금을 거래하는 사람의 사정은 전혀 모른다” (제5, 046호).

그리하여 하루는 거니와 채프만 자신이 내막을 알지 못하여 수치스러운 파산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권의 발행은 언제나 자본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848년의 『상업곤궁』에 관한 상원위원회 앞에서의 투크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상업곤궁』, 1848~1857년) 자본의 대부분가——은행이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도——반드시 유통은행권의 양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제3, 099호) “예컨대 잉글랜드 은행은 은행권을 더 발행하지 않고도 대부를 현저히 늘릴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사실은 매우 많다. 가장 뚜렷한 실례의 하나는 1835년에 있었는데 이 해에 이 은행은 서인도의 예금과 동인도회사¹⁰⁾의 차관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주는 대부를 늘렸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의 총액은 사실상 어느 정도 줄었던 것이다. …1846년에 철도예금이 이 은행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유가증권(할인한 것과 담보로 받은 것)은 약 3,000만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 총액에는 아무런 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도매업은 은행권 외에 또 하나의 유통수단 그리고 도매업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유통수단인 어음을 가지고 있다. 채프만 씨는 믿음성 있는 어음은 지불에서 언제나 또 어떤 사정하에서나 접수되는 것이 규칙적인 영업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하였다.

“타우스버스 온토프가 쓸모 없다면 무엇이 쓸모 있던 말인가? 제발 살려다오!”¹¹⁾

이 두 유통수단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길바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은행권의 유통액이 줄어들면 어음의 유통액이 의례히 늘어난다. 어음에는 두 가지 종류 즉 상업어음과 은행어음이 있다. … 화폐가 부족하다면 화폐대부자는 ‘우리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수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 한 지방은행업자가 그의 손님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그는 이 손님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런던의 대리점 앞으로 발행한 21일 기한의 어음을 내준다. 이 어음은 유통수단으로 된다”(J. W. 길바트, 『화폐시장에서의 곤궁의 원인연구』(런던, 1840년), 31페이지).

어느 정도 수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뉴마치도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은행법』, 1857년, 제1, 426호).

“유통하고 있는 어음의 양의 변동과 유통하고 있는 은행권의 양의 변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 할인율이 오름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곤궁이 조금이라도 화폐시장에 생기면 어음유통의 범위는 매우 커지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또 반대로 된다는 것이 … 유일한 어느 정도 변함없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발행되는 어음은 결코 길바트가 말하는 바와 같은 단기은행어음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대부분은 **유통어음**인데 이것은 아무런 현실적 거래도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실로 삼기 위해서만 꾸며진 거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어음의 실례는 충분히 들었다. 그러므로 「이코노미스트」(윌슨)는 이러한 어음의 확실성과 은행권의 확실성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가져오는 대로 지불되는 은행권은 결코 은행 밖에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잉분은 태환되기 위하여 반드시 은행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개월 기한의 어음은 매우 지나치게 발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만기가 될 때까지는 그 발행을 통제할 수단이 없으며 또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이미 다시 다른 어음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앞으로 지불될 수 있는 어음들의 유통의 확실성은 인정하면서도 가져오는 대로 교환될 수 있는 지폐의 유통에 대하여는 어째서 의심을 품게 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 1847년 (5월 22일), 575페이지).

따라서 유통하는 어음의 양은 은행권의 양과 꼭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유통의 필요에 의하여 규정된다. 1850년대에는 평상시에 연합왕국에서는 3,900만의 은행권 밖에도 약 3억의 어음이 유통하고 있었는데, 이 어음 중에서 1억 내지 1억 2,000만은 다만 런던 앞으로만 발행된 것이었다. 어음의 유통범위는 은행권의 유통범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며 어음의 유통범위가 은행권의 유통범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화폐가 부족되는 시기만인데 이때에는 어음의 양이 늘어나고 그 질이 나빠진다. 끝으로 공황기에는 어음의 유통은 완전히 중지되며 누구나

현금만을 받으려 하므로 아무도 지불약속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영국에서는 은행권만이 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이 자기의 모든 채부를 가지고 잉글랜드 은행의 뒤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1857년에는 그 자신이 화폐시장의 거두였던 채프만 씨까지도 일정한 순간에 화폐시장을 모두 혼란에 빠뜨리고 매우 파렴치하게 자질구레한 화폐거래업자들의 피를 빨아먹을 만한 힘이 있는 큰 화폐자본가들이 런던에 여러 명 있다는 것을 통탄하고 있다. 즉 100만 내지 200만의 정리공채를 팔며 그리하여 그만한 액의 은행권을(그리고 동시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부자본을) 시장에서 끌어냄으로써 곤궁상태를 매우 첨예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상어가 여러 개 있는 것이다. 같은 수법으로 곤궁상태를 파국으로 만드는 데는 3대 은행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런던에서 가장 큰 자본세력은 물론 잉글랜드 은행이지만 이 은행은 반국가기관이라는 자기의 위치로 말미암아 그토록 잔인하게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은행도——특히 1844년 은행법 이후는——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

잉글랜드 은행은 14,553,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약 3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잔금 즉 분배되지 않은 이윤과 또한 세금 등으로서 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모든 화폐——이것은 사용될 때까지는 잉글랜드 은행에 예금된다——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도 또 그 밖의 예금(평상시에는 약 3,000만 파운드 스텔링)과 보증없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덧붙인다면 뉴마치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매우 적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은행법』, 1857년, 제1,889호).

“(런던의) 화폐시장에서 늘 유통되는 자금의 총액은 약 1억 2,000만 파운드 스텔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억 2,000만 파운드 스텔링 중에서 매우 큰 부분 즉 약 15~20%를 잉글랜드 은행이 지배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이 은행은 그 지하실에 있는 금속예비에 의하여 보증되지 않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한에서는 가치기호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치기호는 유통수단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보증 없는 은행권의 명목가치액만큼 이 은행을 위한 추가자본——의제자본이라고 하더라도——을 이룬다. 그리고 이 추가자본은 이 은행에 추가이윤을 가져온다. 윌슨은 뉴마치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은행법』, 1857년).

(제1, 563호) “어떤 은행의 자체 은행권의 유통액 즉 대중의 손에 평균적으로 남아 있는 은행권의 액은 이 은행의 유효자본에 대한 추가분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것은 틀림없이 사실이다.” (제1, 564호) “그렇다면 은행이 이러한 유통액에서 끌어내는 이윤은 모두 신용에서 생기는 이윤이지 은행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에서 생기는 이윤은 아니라는 말인가?” “틀림없이 그렇다.”

은행권을 발행하는 개인은행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뉴마치는 자기의 답변 제1, 866호~제1, 868호에서 개인은행들이 발행하는 모든 은행권의 3분의 2(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이 은행들은 금속예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그만한 액의 자본의 참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만한 액의 금속화폐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은행업자의 이윤이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보다 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업자가 금속화폐의 이러한 국민적 절약에서 이윤을 끌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적 절약이 개인의 이윤으로 나타난다는 사정은 부르조아 경제학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윤은 일반적으로 국민적 노동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797~1817년의 잉글랜드 은행은——그 은행권은 국가에 의해서만 신용수단으로 되었다——국가가 이 은행에 준 권한 즉 이 은행권을 종이에서 화폐로 전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국가에 쥐주는 권한에 대하여 국채이자 의 형태로 국가 따라서 대중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였는데 이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하튼간에 은행은 자본을 만들어내는 다른 수단들도 가지고 있다.

같은 이 뉴마치의 말에 의하면 지방은행들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과잉자금(즉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을 런던의 어음중개업자에게 보내고 이 중개업자는 그 대신 그들에게 할인어음을 보내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어음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봉사한다. 왜냐하면 이 지방손님들의 사업상 조작을 그들의 이웃에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은 그들에게서 받은 어음을 자기 손에서 다시 내놓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받은 이러한 어음은 런던에서 직접 지불을 해야 하는 손님들에게——이 손님들이 런던 앞으로 보내는 자기의 송금어음을 은행에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내주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 어음은 또한 그 지방에서 지불을 결제하는 데도 쓰인다. 왜냐하면 은행업자의 양도서명은 이 어음의 지방적 신용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어음은 예컨대 랭카셔에서는 지방은행의 모든 자체 은행권과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의 대부분을 유통에서 내쫓았다(같은 책, 제1,568호~제1,574호).

그러므로 우리는 은행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과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 자체 은행권을 발행하는 방법, 2) 런던 앞으로의 지불지도서——이것은 21일까지의 기한이 있지만 발행되면 곧 현금으로 지불된다——를 발행하는 방법, 3) 할인어음——그 신용능력은 적어도 해당지방에서는 우선 그리고 주로 은행의 양도서명에 의하여 조성된다——으로 지불하는 방법.

잉글랜드 은행의 위력은 이 은행이 시장이자율을 조절한다는 데 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는 잉글랜드 은행은 할인율을 높이는 것으로는¹²⁾ 그의 금속예비에서 정도에 맞게 금이 흘러나가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개인은행,

12) 1894년 1월 17일 런던 연합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총재 리치 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잉글랜드 은행은 할인율을 1893년에 2½%(7월)에서 3% 4%(8월)로 올렸으나 4주일 동안에 융금 450만 파운드 스텔링의 금을 잃었기 때문에 또 5%로 올렸고 그래서 금은 되돌아왔으므로 은행할인율을 9월에는 4%, 10월에는 3%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은행할인율은 시장에서는 인정되지 않았

주식은행 및 어음중개업자들——최근 30년간에 이들의 자본과 힘은 늘었다——에 의하여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잉글랜드 은행은 다른 수단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에 대해서는 1847년 상업공궁에 관한 상원위원회 앞에서 은행업자 클린(클린, 밀즈, 커리 회사의)이 말한 다음과 같은 것(『상업공궁』, 1848~1857년)은 역시 옳은 것이다.

(제1,709호) “국내의 형편이 매우 곤란한 시기에는 잉글랜드 은행이 이자율을 지시한다.” (제1,710호) “비상한 곤궁기에는...개인은행들이나 중개업자들의 할인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업무를 잉글랜드 은행이 맡게 되며 그렇게 되면 잉글랜드 은행은 시장이자율을 확정하는 힘을 갖게 된다.”

어쨌든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적 특권을 얻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자기의 권력을 개인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쓸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험바드도 은행법에 관한 1857년 하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은행법』, 1857년).

(제2,844호 {질문}) “할인율이 최고일 때에는 잉글랜드 은행이 매우 값싸게 봉사하나 할인율이 최저일 때에는 중개업자들이 매우 값싸게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험바드} “이것은 사실상 언제나 그러하다. 그것은 잉글랜드 은행은 결코 할인율을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로는 낮추지 않으며 또 할인율이 최고일 때에도 결코 그것을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로 높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이 곤궁시기에 흔히 쓰는 말대로 나사못을 조이

다는 것이다. “은행할인율이 5%였을 때 시장율은 3½%였으며 화폐율은 2½%였다. 은행할인율이 4%로 떨어졌을 때 할인율은 2¾%였으며 화폐율은 1¾%였다. 은행할인율이 3%로 되었을 때 할인율은 1½%였으며 화폐율은 좀더 떨어졌다” (『매일소식』, 1894년 1월 18일). —F. E.

기 시작한다면 즉 이미 평균수준을 넘어선 이자율을 더 올린다면 그것은 사업계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잉글랜드 은행이 나사못을 조이기 시작하자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것은 모두 밟고만다. 수출업자들은 가격이 최저한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그때야 비로소 사들이지 그 이전에는 사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저한에 이를 때면 시세는 다시 조정된다. 금은 가격이 최저한으로 떨어지기 전에 흘러나가지 않게 된다. 수출하기 위하여 상품을 사들이면 외국으로 보낸 금의 일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금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늦다”(J. W. 길바트, 『…곤궁의 원인의 연구』, 1840년, 런던, 35페이지). “환율에 의한 유통수단 조절의 또 하나의 영향은 곤궁시기에는 이자율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데서 나타난다”(같은 책, 40페이지). “환율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나라의 생산적 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잉글랜드 은행은 보다 적은 액의 귀금속을 가지고 그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은행의 이윤은 사실상 늘어나는 것이다”(같은 책, 52페이지).

그런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사무엘 거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자율의 이러한 큰 변동은 은행업자와 화폐거래업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사업상의 모든 변동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다.”

그리고 거니 일파가 사업상의 곤란을 이용하여 거리낌없이 진미를 맛보고 있을 때 잉글랜드 은행은 그와 같이 자유롭게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은행도 또한 상당한 이윤을 얻는다. 물론 여기에서는 중역 나리들이 일반적 사업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기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그들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개인적 이윤은 문제로도 삼지 않는다. 1817년, 은행권의 대환을 다시 시작할 때의 상원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잉글랜드 은행의 그러한 이윤은 1797~1819년의 전기간에 다음과 같았다.

특별배당과 배당의 증가.....	7, 451, 136
주주들 사이에 분배된 새로운 주식	7, 276, 500
자본가치의 증가	14, 553, 000

합계29, 280, 636

이것이 11, 642, 4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한 19년간의 이윤이다(D. 하드 캐슬, 『은행 및 은행업자』, 제2판, 런던, 1843년, 120페이지).

아일랜드 은행——이 은행 또한 1797년에 현금지불을 정지하였다——의 총이윤을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1821년의 보고서에 의한 매 해의 배당	4, 736, 085
공표된 특별배당금	1, 225, 000
자산의 증가	1, 214, 800
자본의 가치증가	4, 185, 000

합계11, 360, 885

이것은 300만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한 이윤이다(같은 책, 363~364페이지).

또한 집중이 문제이다! 이른바 국립은행과 그 주위에 집결되어 있는 큰 화폐거래업자와 고리대금업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용제도는 그야말로 거대한 집중이며 그것은 이 기생자계급에게 엄청난 힘을, 즉 산업자본가들을 주기적으로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실제적 생산에 간섭하는 힘을 주는데 이 무리들은 생산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며 생산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1844년과 1845년의 법들은 이 도적놈들——그들 속에는 금융업자와 주식거래업자도 들어간다——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도 그 어느 누가 이 존경할 만한 도적놈들이 국민적 및 국제적 생산을 착취하는 것은 오직 생산 자체와 피착취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의심한다면, 그는 확실히 은행업자들의 높은 도덕적 품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야기에서 문제의 진상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은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기관이다. 젊은 상인이 은행업자의 경각성 있고 마뜩지 않게 여기는 눈초리 앞에서 겁을 먹고 소란스럽고 방탕한 친구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은행업자에게 호평을 받으며 은행업자에게 언제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하여 그는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은행업자의 쩡그린 이맛살이 그의 친구들의 모든 도덕적 설교보다도 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는 속이거나 조금이라도 옳지 않은 말을 한다는 혐의를 받지 않겠는가! 걱정하면서 벌벌 떠다. 그는 이러한 혐의를 받을까봐 두려워 한다. 그것은 그 결과로 은행업자가 그에게 주는 융자를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업자의 충고는 그의 경우에는 신부의 충고보다 더 중요하다”(스코틀랜드의 은행중역 G. M. 벨, 『주식은행의 철학』, 런던, 1840년, 46~47페이지).

제 34 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의 은행입법

(전의 한 저작에서는¹³⁾ 상품의 가격과 화폐의 가치와의 관계에서 리카아도가 내놓은 이론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가장 필요한 것만을 말하면 된다. 리카아도의 견해에 의하면 화폐——금속화폐——의 가치는 그 화폐에 대상화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나 이것은 화폐의 양이 유통상품의 양 및 가격과 정당한 비율을 이루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만약 화폐의 양이 이러한 비율 이상으로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의 가격은 오른다. 만약 화폐의 양이 정당한 비율 이하로 적어지면 다른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가치는 오르고 상품의 가격은 떨어진다. 첫째 경우에는 금이 이렇듯 지나치게 많은 나라에서는 그 가치 이하로 떨어진 금을 수출하고 상품을 수입할 것이다. 둘째 경우에는 금은 그 가치 이상으로 평가되는 나라로 흘러 들어갈 것이며 한편 가치 이하로 평가된 상품은 정상적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다른 시장으로 흘러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는

“금 자체가 주화로건 또는 덩어리금으로서건 그 자체의 금속가치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가치의 기호로 될 수 있는 만큼 유통하는 태환은행권도 같은 운명을 지낼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비록 은행권은 금과 교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실제적 가치는 그 명목적 가치에 상응하더라도 유통하는 화폐인 금과 은행권의 총량(the aggregate currency consisting of metal and of convertible notes)은 이미 위에서 말한 이유로 그 총량이 유통하는 상품의 교환가치와 금의 금속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수준 이상으로 늘거나 또는

13) 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베를린, 1859년, 150페이지 이하(이 전집, 제13권, 조문판, 192~205페이지를 보라).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그 가치가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 들 수 있다. …이 가치감소——금에 비한 지폐의 가치감소가 아니라 금과 지폐를 합친 것 또는 한 나라의 유통수단의 총량의 가치감소——는 리카아도의 주되는 발견의 하나인데 오버스톤 경 일파는 이 발견을 자기들이 이용하였으며 1844년과 1845년의 로버트 필 경의 은행법의 기본원리로 삼았던 것이다”(같은 책, 155페이지).

『정치경제학 비판』에서는 이 리카아도의 이론이 잘못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위에서 말한 필의 은행법들을 강제로 밀어부친 은행이론가 일파가 리카아도의 이 명제를 가공한 방식뿐이다.

“19세기의 상업공황들 특히 1825년과 1836년의 대공황으로 하여 리카아도의 화폐이론은 더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새롭게 적용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개별적 현상——예컨대 흙이 문제로 삼은 16세기와 17세기의 귀금속의 가치감소와 같은, 또는 리카아도가 문제로 삼은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지폐의 가치감소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생산과정의 모든 요소의 모순이 폭발한 세계시장의 대폭풍우였는데 이 폭풍우의 기원과 그 방지대책을 이 과정의 가장 표면적이며 가장 추상적인 영역인 화폐유통의 영역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경제적 폭풍우의 요술쟁이 학파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원래의 이론적 전제는 사실상 리카아도가 순금속유통의 법칙을 발견하였다는 독단이다. 그들에게 남은 일은 신용유통 또는 은행권 유통을 이 법칙에 복종시키는 것뿐이었다.

상업공황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눈에 띄이는 현상은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상품가격이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오른 다음에 닥쳐온다.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모든 상품에 비한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반대로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표현방식에서는 현상이 이야기되고 있을 뿐이지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용어가 서로 달라지더라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리카

아도의 화폐이론은 그야말로 편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어반복에 인과관계의 껍질을 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주기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기적으로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주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격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가격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동의반복을 인과관계로 되게 하는 데 동의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주 쉽게 풀린다. 상품가격이 오르는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리카아도의 이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통수단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즉 유통하는 화폐의 양이 화폐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상품의 내재적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유통수단이 부족한 탓으로 화폐의 가치가 그 내재적 가치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주기적으로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지나치게 적은 화폐가 유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것이 화폐유통이 줄어드는 것과 일치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유통수단이 늘어나는 것과 일치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유통하는 상품량이 어느 정도——통계적으로는 전혀 증명할 수 없지만——줄거나 느는 탓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은 절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는 늘었거나 줄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리카아도의 견해에 의하면 가격의 전반적 변동은 순금속유통의 조건하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변동은 그 교체를 통하여 상쇄된다. 왜냐하면 예컨대 유통수단의 부족으로 상품가격이 떨어지며 이렇게 상품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외국으로 상품이 나가게 되며, 이렇게 상품이 나감으로써 이번에는 국내에 화폐가 흘러 들어오며, 이렇게 화폐가 흘러 들어옴으로써 또다시 상품가격이 오르게 된다. 유통수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되는데 그 경우에는 상품이 들어오고 금이 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 가격변동은 리카아도가 말하다시피 금속유통의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동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형태인 공황형태는 발전된 신용제도의 시기에 있는 것이므로, 은행권의 발행이 정확히 금속유통의 법칙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금속

유통은 귀금속의 수입과 수출을 자체의 구체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귀금속은 주화로서 곧 유통에 들어가며, 그리하여 그것이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 나감으로써 상품가격은 떨어지거나 오르게 된다. 상품가격에 대한 이와 같은 작용을 이제는 은행에서 금속유통의 법칙을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화폐가 외국에서 흘러 들어온다면 그것은 유통에서 화폐가 부족하다는 것,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높고 상품가격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따라서 은행권은 새로 들어온 금에 비례하여 유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은행권은 국내에서 흘러 나가는 금의 양에 비례하여 유통에서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은행권의 발행은 귀금속의 수출·입 또는 환율에 따라서 조절되지 않으면 안된다. 금은 주화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수입되는 모든 금은 유통하는 화폐의 양을 늘리며 그리하여 가격을 올리는 데 수출되는 모든 금은 주화의 양을 줄이며 그리하여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리카야도의 그릇된 전제. 바로 이 이론적 전제가 여기에서는 그때그때에 있는 금과 같은 양의 주화를 유통시키려고 하는 실제적 실험으로 된다. 영국에서 통화주의(currency principle) 학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오버스톤 경(은행업자 존스 로이드), 토렌스 대령, 노만, 클레이, 아버스노트와 그 밖의 많은 저술가들은 이 교리를 설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1844~1845년의 로버트 필 경의 은행법을 통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은행입법의 기초로 삼았다. 가장 넓게 전국적 규모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은 후에 이 교리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다 수치스러운 실패를 당하였다는 사실은 신용론에서 비로소 설명할 수 있다”(같은 책, 165~168페이지).

이 학파는 토마스 루크, 제임스 윌슨(1844~1847년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및 존 플라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도 금의 본성을 얼마나 불충분하게 이해하였으며 화폐와 자본의 관계를 얼마나 막연하게 생각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여러 번 보았으며, 특히 이 책 제28장에서 보았다. 여기에서는 필의 은행법에 관한 1857년의 하원위원회의 회의록(『은행위원회』, 1857년) 중에서 몇 가지 자료를 더 인용하기로 한다—(F. E.)

잉글랜드 은행의 전총재인 J. G. 헵바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400호) “금의 수출의 영향은…상품가격과는 절대로 관계가 없다. 그러나 금의 수출은 유가증권 시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달라짐에 따라 이자를 체화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도 반드시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1834~1843년과 1844~1853년에 관한 두 개의 표를 내놓고 있는데 이 표들은 15종의 가장 중요한 무역품의 가격변동이 금의 유출·입 및 이자율과는 아무 관계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표들은 금——이것은 사실상 투자될 곳을 찾고 있는 우리 자본의 대표자이다——의 유출·입과 이자율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1847년에는 매우 많은 액의 유가증권이 도로 미국으로, 또한 러시아의 유가증권이 다시 러시아로, 또 그 밖의 대륙의 여러 나라들의 유가증권이 우리가 곡식을 공급받고 있는 나라들로 반환되었다.”

다음에 드는 험바드의 표의 기초로 되고 있는 15종의 주되는 무역품은 목화, 면사, 면직물, 양털, 모직물, 아파, 아마천, 인디고, 선철, 양철, 판, 동, 쇠기름, 설탕, 커피, 명주이다.

I. 1834-1843년

년 월 일	잉글랜드은행의 금속예비(파운드 스털링)	시장할 인율	15종의 주되는 무역품 중		
			가격이 오른 것	가격이 떨어진 것	가격변동이 없는 것
1834년3월1일	9, 104, 000	2¾%	—	—	—
1835년 “ “	6, 274, 000	3¾%	7	7	1
1835년 “ “	7, 918, 000	3¾%	11	3	1

표 계속

년 월 일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예비(파운드 스텔링)	시 장 할인율	15종의 주 되는 무역품 중		
			가격이 오른 것	가격이 떨어진 것	가 격 변동이 없는 것
1837년 3월 1일	4, 077, 000	5%	5	9	1
1838년 " "	10, 471, 000	2¼%	4	11	—
1839년 9월 1일	2, 684, 000	6%	8	5	—
1840년 6월 1일	4, 571, 000	4¾%	5	9	1
1840년 12월 1일	3, 642, 000	5¾%	7	6	2
1841년 " "	4, 873, 000	5%	3	12	—
1842년 " "	10, 603, 000	2½%	2	13	—
1843년 6월 1일	11, 566, 000	2¼%	1	14	—

II. 1844 - 1853년

년 월 일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예비(파운드 스텔링)	시 장 할인율	15종의 주되는 무역품 중		
			가격이 오른 것	가격이 떨어진 것	가 격 변동이 없는 것
1844년 3월 1일	16, 162, 000	2¼%	—	—	—
1845년 12월 1일	13, 237, 000	4½%	11	4	—
1846년 9월 1일	16, 366, 000	3%	7	8	—
1847년 9월 1일	9, 140, 000	6%	6	6	3
1850년 3월 1일	17, 126, 000	2½%	5	9	1
1851년 6월 1일	13, 705, 000	3%	2	11	2
1852년 9월 1일	21, 853, 000	1¾%	9	5	1
1853년 12월 1일	15, 093, 000	5%	14	—	1

협바드는 이 표들에 다음과 같은 주를 달고 있다.

*1834~1843년의 10년간과 마찬가지로 1844~1853년의 10년간에도 잉글랜드

은행의 금의 변동으로 하여 언제나 할인으로 선대되는, 대부될 수 있는 화폐 가치는 늘거나 줄었다. 그런데, 한편 국내의 상품가격의 변동은 유통수단의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의 변동에서 알 수 있다”(『은행법 보고』, 1857년, II, 290, 291페이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만큼 대부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또는 오히려 공급의 수요로부터의 배리)——이것은 할인율에서 표현된다——와 실제적 자본에 대한 수요를 오버스톤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명백하다. 상품가격이 유통수단의 양의 변동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주장은 이제는 할인율의 변동이 화폐자본과는 다른 실제적인 물질적 자본에 대한 수요의 변동을 표시한다고 하는 말로써 가리워진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만도, 오버스톤도 사실상 이것을 같은 위원회에서 주장하였으며 또한 그 경우에 이들은 특히 오버스톤은 가련하기 그지없는 핑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드디어 그는 완전히 궁지에 빠졌던 것이다(제26장). 현재 있는 금량의 변동으로 국내의 유통수단의 양이 늘거나 줄며 또 이렇게 됨으로써 이 나라에서는 상품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의 거짓말이다. 이 통화주의 이론에 의하면 금이 수출된다면 금이 들어가는 나라에서는 상품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함께 금을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품의 가치는 금을 수입하는 나라의 시장에서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금을 수입하는 나라의 수출품의 가치는 금을 수출하는 나라의 시장에서는 떨어지겠지만 금이 들어가는 그 상품의 본국에서는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금의 양이 줄어들면 이자율이 오를 따름이며 금의 양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떨어질 따름이다. 만약 비용가격을 확정하는 데서 또는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데서 이자율의 이러한 변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품가격은 그 변동에 의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같은 보고에서 인도와 거래를 하는 한 대상사의 주인인 N. 알렉산더는 50년대 중엽에 인도와 중국으로 은이 몹시 흘러 나간 데 대하여——이렇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영국 천을 중국에 팔기 힘들게 만든 중국의

국내전쟁¹²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양잠업의 규모를 몹시 줄어둘게 한 구라파의 누엣병 때문이다——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4, 337호)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인도로 흘러 들어가는가? 그들은 인도로 은을 보내고 그 중의 상당한 부분으로 아편을 사는데 이 아편은 모두 중국으로 가서 비단을 사들이는 자금으로 된다. 그리고 인도의 시장형편을 두고 보면(거기에는 은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에게는 그 곳으로 천과 기타 영국제품을 보내는 것보다 은을 보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제4, 338호) “프랑스에서 은이 많이 흘러 나가지 않았는가? 그 결과 우리가 은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 매우 많이 흘러 나갔다.” (제4, 344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비단을 수입할 대신에 우리가 뽕갈과 중국의 비단을 대량적으로 그 곳으로 보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로 보낸 것은 상품이 아니라 은——이 지방의 화폐금속——인데, 그렇게 된 것은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영국)에서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초과수입으로 하여 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은은 영국이 프랑스에서 얻은 것이며 그 일부는 금으로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통화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수입에서는 가격이 영국에서는 떨어지며 인도와 중국에서는 올라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실례, 리버풀의 일류상인의 한 사람인 윌리는 1847년 상업공황에 관한 상원위원회(『상업공공』, 1848~1857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 994호) “1845년 말에는 (면방직업)보다 더 유리하고 그만큼 높은 이윤이 나오는 사업은 없었다. 목화는 많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쓸 수 있는 좋은 목화를 1파운드 당 4페니로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목화로는 우등 2호 물 연사 40번수를 꼴 수 있었는데 그 지출도 역시 4페니며 따라서 방직업자의 총지출

은 약 8페니였다. 이 실은 1845년 9월과 10월에는 1파운드 당 $10\frac{1}{2}$ 페니와 $11\frac{1}{2}$ 페니로 대량적으로 팔렸고 또 많은 납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부 경우에는 방직업자들이 목화의 구입가격과 같은 이윤을 얻었던 것이다.* (제1, 996호) “사업은 1846년 초까지 계속 유리하였다.” (제2, 000호) “1844년 3월 3일에는 목화예비(627, 042작)는 현재의 양(1848년 3월 3일에는 목화예비가 301, 070작이었다)의 2배 이상이나 되었으나 가격은 1파운드 당 $1\frac{1}{4}$ 페니가 높았던 것이다.” (5페니에 대하여 $6\frac{1}{4}$ 페니)

동시에 우등 2호 물 연사 40번수의 실가격은 1847년 1월에는 1파운드 당 $10\frac{1}{2}$ 페니였는데 10월에는 $9\frac{1}{2}$ 페니로 떨어지고 12월 말에는 $7\frac{3}{4}$ 페니로 떨어졌다. 실은 그 원료인 목화의 구입가격으로 팔렸던 것이다(같은 곳, 제2, 021호, 제2, 023호). 이것은 자본이 귀하기 때문에 화폐는 비싸야 한다는 오버스톤의 이기주의적 현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844년 3월 3일에는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이 3%였고 1847년 10월과 11월에는 8% 내지 9%로 올랐으나 1848년 3월 7일에는 또 4%였다. 목화가격은 판매의 완전한 정체와 파국 그리고 이에 따르는 높은 이자율로 하여 공급의 규모에 상응한 가격보다 훨씬 떨어졌다. 이 결과 한편으로는 1848년에 수입이 전에 없이 줄어들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생산이 줄었다. 1849년에 목화가격이 다시 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버스톤의 견해에 의하면 상품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것은 나라에 화폐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2, 002호) “면공업에서 사업행편이 최근에 나빠진 것은 원료가 부족한 탓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면의 예비는 훨씬 줄었지만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버스톤은 상품의 가격 또는 가치와 화폐의 가치 즉 이자율을 묘하게 혼동하고 있다. 질문 제2, 026호에 대한 대답에서 윌리는 통화주의 이론에 대한 총평을 내리고 있는데 1847년 5월에 카드웰과 찰스 우드 경은 이 통화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1844년의 은행법을 철저히 관찰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주의는 화폐에는 인위적인 높은 가치를 붙이지만 모든 상품에는 인위적이고 파멸적인 낮은 가치를 붙이려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계속하여 그는 이 은행법이 사업의 전반적 형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사들여서 미국으로 보내는 상품에 대하여 상인과 은행업자들 앞으로 발행하는 공장도시의 보통의 어음인 4개월 기한의 어음은 큰 회생을 바치지 않고서는 할인될 수 없었으므로 이 4개월 기한의 어음을 다시 할인할 수 있게 한 10월 25일자 정부명령(은행법 정지)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문의 수행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제2, 097호).

따라서 지방에서도 이 은행법의 정지는 하나의 구제와 같은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제2, 102호) “지난해(1847년) 10월에 이 나라에서 상품을 사들이는 미국 사람은 거의 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주문을 곧 줄였던 것이다. 그리고 화폐의 값이 올랐다는 보도가 미국에 알려지자 새로운 주문은 모두 정지되었다.”

(제2, 134호) “곡식과 설탕은 특수한 예였다. 곡식시장은 수확예상고의 영향을 받았으며 설탕은 방대한 예비와 수입의 영향을 받았다.” (제2, 163호) “미국에 대한 우리의 지불채무 중에는…위탁상품의 강제판매에 의하여 청산된 것이 많았으며 또 이곳에서의 파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것도 많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제2, 196호) “나의 기억이 틀림없다면 우리의 증권거래소에서는 1847년 10월에 이차율이 70%에까지 이르렀다.”

(1837년의 공황——그 후 오랫동안 여독이 계속되었으며 1842년에는 또 한번 완전한 보충적 공황(vollständige Nachkrise)이 덧붙었다——과잉생산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산업가와 상인들의 맹목적인 이기주의——그것도 그럴 것이 속류경제학에서는 과잉생산이란 불합리한

것이며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로 하여 마침내 통화학과는 자기의 독단을 전국적 규모에서 실천에 옮겨놓는 두뇌의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844~1845년의 은행법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844년의 은행법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을 발행부와 은행부로 나누어 놓고 있다. 발행부는 1,400만 파운드 스텔링의 담보——주로 국채증권——와 모든 금속예비——그것은 1/4까지는 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총액과 같은 액의 은행권을 발행한다. 이 은행권이 대중의 손에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은행부에 있으면서 그날그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적은 양의 주화(약 100만)와 함께 은행부의 상비에 비금을 이룬다. 발행부는 대중에게 금을 받고 그 대신 은행권을 내주며 또 은행권을 받고 그 대신 금을 내준다. 대중과의 그 밖의 거래는 은행부에서 한다. 1844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자체의 은행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게 된 개인은행들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은행권 발행만은 할당액에 국한되었다. 만약 이러한 한 은행이 자체 은행권의 발행을 그만둔다면 그 은행이 받은 할당액의 2/3만큼 잉글랜드 은행은 자체의 보증없는 은행권액을 늘릴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액은 1892년까지에는 1,400만 파운드 스텔링에서 1,650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정확히는 1,645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다.

그리하여 5파운드 스텔링의 금이 은행의 저장에서 흘러 나올 때마다 5파운드 은행권이 발행부로 들어가 거기에서 폐기되며 또 5파운드 소비된 금화가 저장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5파운드 은행권이 유통에 들어간다. 이로써 금속유통의 법칙에 그야말로 정확히 순응하는, 오버스톤의 이상적인 지폐유통이 실제로 진행되며 이로 말미암아——통화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공황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실지로는 잉글랜드 은행이 독립적인 두 개의 부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사회는 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결정적 순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은행부가 파산에 직면하고 있을 때 발행부는 수백만의 금과 그 밖에 또 1,400만이라는 담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이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거의 어느 공황 때나 외국으로 금이 매우

많이 흘러 나가는 시기가 있으며 이렇게 흘러 나가는 금은 주로 이 은행의 금속예비로 매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5파운드가 외국으로 흘러 나갈 때마다 국내유통에서는 5파운드 은행권이 끌려나오며, 따라서 유통수단의 양은 유통수단에 대한 필요가 가장 많고 또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순간에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1844년의 은행법은 직접 전상업계를 부추겨 공황이 일어나려 할 때에 곧 은행권의 예비를 만들어두게 하며 따라서 공황을 촉진하고 첨예하게 만든다. 이 은행법은 결정적 순간에 화폐유통에 대한 즉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를——그 공급이 바로 줄어들고 있는 그때에——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공황 시기에 이자율이 전에 없이 오르게 한다. 그리하여 이 은행법은 공황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격화시켜 전상업계가 파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행법이 파멸하느냐 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끌어간다. 두 번 즉 1847년 10월 25일과 (1857년) 11월 12일에 공황은 이러한 최고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정부는 1844년의 은행법의 실시를 정지함으로써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권 발행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두 번 다 공황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였다. 1847년에 400만~500만의 퇴장은은행권을 다시 세상에 끌어내어 유통시키는 데는 일류금의 담보로 은행권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으로 충분하였다. 1857년에는 법정량 이상으로 발행된 은행권은 100만도 채 못되었고 그 발행도 매우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지적하여야 할 것은 1844년의 입법에는 아직도 19세기의 처음 20년간——잉글랜드 은행권의 대환이 정지되고 은행권의 가치가 떨어진 시기——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신용을 잃을 수 있다는 위구가 여기에는 아직도 매우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쓸데없는 위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1825년에, 유통되지 않고 있던 낡은 1파운드 은행권의 예비를 다시 내놓음으로써 공황이 극복되었고, 이로써 이미 당시 잉글랜드 은행권의 신용은 전반적인 매우 심한 불신임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사실상 전국민이 그들의 신용을 가지고 이 가치기호를 뒤에서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F.

E.)

이제는 은행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가지 증언을 들어보자. J. S. 밀은 1844년의 은행법은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다행히도 바로 1857년 6월 12일이었다. 4개월이 지나서 공황이 일어났다. 밀이 잉글랜드 은행 이사회와 상업계 일반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축하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상업공황의 본성을 그리고 그들이 과도한 투기를 지지함으로써 그 자신과 대중에게 입히는 매우 큰 손해를 이제는 전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위원회』, 1857년, 제2, 031호).

현명한 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즉 만약 1파운드 은행권이

“임금을 지불하는 공업가나 기타 사람들에게 대부로서 발행된다면… 이 은행권은 소비를 위하여 이것을 지출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은행권이 그 자체로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조성하며 일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제2, 066호).

그렇다면 밀 씨는 공업가가 임금을 금 대신 은행권으로 지불한다면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공업가가 100파운드 은행권으로 대부받아 이것을 금화와 교환한다면 이 임금은 직접 1파운드 은행권으로 지불되는 경우보다 적은 수요밖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는 예컨대 어떤 광산지구에서는 임금이 지방은행의 은행권으로 지불되었고 그리하여 몇몇 노동자들이 함께 5파운드 은행권을 받았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업자들은 작은 액면의 은행권으로는 큰 액면의 은행권으로 보다 더 쉽게 또 더 많은 액을 공업가에게 대부하게 되리라는 것인가?

{1파운드 은행권에 대한 밀의 이 이상한 불안은 만약 정치경제학에 관한 그의 모든 저작에 어떠한 모순도 아랑곳하지 않는 절충주의가 없었

다면 전혀 해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많은 점에서 오버스톤을 반대하며 투크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상품가격이 현재 있는 화폐량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1파운드 은행권이 발행될 때마다——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1파운드 소비자권 금화가 은행의 예비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유통수단의 양이 늘어나며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즉 상품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위에서 말한 모든 위구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며 그 밖의 아무 것도 아니다. — F. E. }

잉글랜드 은행이 두 개 부로 나뉜 것과 그리고 은행권의 태환을 보장할 데 대한 지나친 배려에 관하여, 투크는 1847년 상업공황에 관한 상원 위원회에서(『상업공군』, 1848~1857년) 이렇게 말하고 있다.

“1837년과 1839년에 비하여 1847년에 이자율의 변동이 커진 것은 잉글랜드 은행이 두 개 부로 나뉘었기 때문이다”(제3, 010호). “은행권의 안전성은 1825년에도, 1837년에도, 1839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제3, 015호). “1825년의 금에 대한 수요는 지방은행들의 1파운드 은행권의 신용이 완전히 떨어진 탓으로 생긴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잉글랜드 은행도 또한 1파운드 은행권을 발행할 때까지는 이 빈 구멍은 금으로만 메울 수 있었던 것이다”(제3, 022호). “1825년 11월과 12월에는 수출하기 위한 금의 수요는 조금도 없었다”(제3, 023호).

“국내외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신용이 떨어진 데 대하여 말한다면 국채이자 와 예금의 지불정지는 은행권의 태환정지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제3, 028호).

(제3, 035호) “결국은 은행권의 태환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은 어느 것이나 상업공군 시기에는 새롭고 중대한 곤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

“1847년 중에 잉글랜드 은행권의 발행이 늘었다는 것은 1825년에 그랬던 바와 같이 아마도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를 다시 더 축적하게 하였을 것이다”(제3, 058호).

은행법에 관한 1857년 하원위원회(『은행법』, 1857년)에서 뉴마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 357호) (잉글랜드 은행이) “이렇게 두 개 부로 나뉘었으며 이로부터 불가피하게 예비금도 둘로 나뉘게 된…그 첫째 나뉘는 결과는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업무가——즉 이 은행의 업무 중 이 은행을 나라의 상업과 직접 연결시키는 모든 부문이——전의 예비금의 불과 반액으로 운영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예비금이 이렇게 나뉘는 결과 은행부의 예비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이 은행은 할인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비금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할인율이 여러 번 갑자기 변동되었던 것이다.” (제1, 358호) “이러한 변동은 1844년부터 (1857년 6월까지) 60번 가량 있었는데 1844년 이전에는 같은 기간에 12번도 될까 말까 하였다.”

1811년 이후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였으며 얼마 동안 이 은행의 총재였던 팔머가 1847년 상업공황에 관한 상원위원회(1848~1857년)에서 한 진술은 특히 흥미있는 것이다.

(제828호) “1825년 12월에 잉글랜드 은행에는 약 110만 파운드 스텔링의 금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당시 이 법(1844년의)이 있었다면 이 은행은 틀림없이 완전히 파산하였을 것이다. 이 은행은 12월에 1주일 동안에 500만 내지 600만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당시의 파국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제825호) “잉글랜드 은행이 한 번 시작한 거래를 끝까지 수행하려고 하였다면 현재의 은행입법은 파산되었으리라는 첫 시기는(1825년 7월 1일 이후) 1837년 2월 28일이었다. 당시 잉글랜드 은행에는 390만 내지 400만 파운드 스텔링이 있었으며 예비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겨우 65만 파운드 스텔링에 지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이러한 시기는 1839년이었는데 그것은 7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 (제826호) “이 경우에 예비금의 액은 얼마였는가? 9월 5일에 예비금은 도합 20만 파운드 스텔링의 부족이었다(the reserve was minus altogether 200,000). 11월 5일에 예비금은 약 100만 내지 150만으로 늘었다.” (제830호) “1844년의 법이 있었다면 이 은행은 1837년에 미국과의 거래를

도와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제831호) “미국과 거래하는 가장 주요한 3개 상사가 파산하였다. ...미국과 거래하던 거의 모든 상사가 신용을 잃었는데 당시 잉글랜드 은행이 이 상사들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견디어낼 수 있었던 상사는 하나나 둘 이상은 되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836호) “1837년의 곤궁상태는 1847년의 곤궁상태와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다. 1837년의 곤궁상태는 주로 미국과의 거래에만 국한되었었다.” (제838호) (1837년 6월 초에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회에서는 곤궁상태를 어떻게 완화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몇몇 사람들이 들고나온 의견은...이자율을 올려 상품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화폐의 가치를 올리고 상품을 낮게 하며 그리하여 대외 지불을 할 수 있게 (by which the foreign payment would be accomplished)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원칙이라는 것이었다.” (제906호) “잉글랜드 은행의 권한에 대한 종래의 자연적 제한인 그 은행의 금속예비의 실제적 액수 대신에 1844년의 법에 의하여 이 은행의 권한에 대한 인위적 제한이 실시된 것은 사업과정에 인위적인 곤란을 조성하며 그리하여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법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영향은 전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제968호) “1844년의 법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예비는 보통의 조건에서는 950만 이하로 많이 떨어질 수는 없다. 이것은 가격과 신용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 압력은 또한 환율에 변동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금의 수입이 많아지며 또 발행부의 금의 액이 늘어날 것이다.” (제996호) “현재의 제한하에서는 당신(잉글랜드 은행)은 대외환율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은이 요구될 때에 필요한, 은에 대한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없다.” (제999호) “잉글랜드 은행의 은예비를 이 은행의 금속예비 총액의 1/5로 제한한 명령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목적은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통화주의 이론은 제쳐 놓고라도 잉글랜드 은행을 두 개 부로 나눈 목적과 같으며 또 스코틀랜드의 은행들과 아일랜드의 은행들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행하는 은행권을 보상하기 위하여 금예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이 은행들에 지운 목적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적인 금속예비가 분산되었으며 이것으로 하여 불리한 환율을 시정할 이 은행의 능력은 약화되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은 모두 이자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즉 잉글랜드

은행은 금예비 없이는 1,400만 파운드 스틸링 이상으로 은행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은행부는 화폐과잉의 시기에는 이자율을 낮추며 곤궁시기에는 이를 올림으로써 보통의 은행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정, 구라파대륙과 아시아와의 환율을 조절하기 위한 주요수단인 금예비를 제한한다는 규정, 수출하기 위한 금*은 전혀 필요없는 스코틀랜드의 은행들과 아일랜드의 은행들이 이제는 사실상 그야말로 환상적인 은행권태환을 보증한다는 구실 밑에 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 1844년의 법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1857년에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에 금을 요구하여 밀려들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외로 금이 흘러 나가는 것과 국내로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 영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 은행입법도 역시 그것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다. 시장이자율이 늘 심하게 변동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팔머는 질문 제992호와 제994호에 대한 대답에서 두번씩이나 힘주어 말하기를 잉글랜드 은행이 은행권으로 돈을 살 수 있는 것은 환율이 영국에 유리하며 따라서 은이 남아 돌아가는 경우뿐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제1,003호) “금속예비의 상당한 부분을 은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유일한 목적은 환율이 영국에 불리할 때에 대외지불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제1,004호) “은은 상품이며 그것이 모든 다른 세계에서 화폐이기 때문에...이 목적(대외지불)을 위한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된다. 미국만은 최근에 전적으로 금을 취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곤궁의 시기에도 잉글랜드 은행은 불리한 환율로 하여 금이 국외로 흘러 나가지 않는 한에서는 5%라는 종래의 수준 이상으로 이자율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1844년의 법이 없었더라면 이 은행은 아무런 곤란도 없이 일류급 어음(first class bills)을 모두 할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제1,018호~제1,020호).

* 초판에는 화폐로 되어 있는데 왓스의 수고에 근거하여 시정하였다. 편집부.

“그런데 1844년의 법이 있는 조건에서는 또 1847년 10월에 잉글랜드 은행이 처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는 이 은행이 어떤 이자율을 신용능력 있는 상사들에 요구하더라도 그들은 지불을 계속하기 위하여 즐겨 그것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제1, 022호).

그런데 이 높은 이자율이야말로 그 법의 목적이었다.

(제1, 029호) “나는 대외적인 수요(구금속에 대한)에 미치는 이자율의 영향과, 국내에 신용이 부족되는 시기에 은행에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1, 023호) “1844년의 법이 있기 전에는——그때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으나 국내에는 불안과 심지어는 심한 파국이 지배하고 있었다——은행권 발행에 아무런 한계도 없었다. 그런데 이 은행권 발행만이 곤궁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39년이나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1801년 이래 스푸너, 애트우드 상사의 동업자인 개인은행업자 트웰즈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1857년의 은행위원회에서 심문을 받은 모든 증인들 중 나라의 실제적 형편을 훑어볼 수 있게 하여 주며 또 공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유일한 사람이다. 그 밖의 점들에서 그는 그의 동업자인 애트우드 형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버밍검 학파의 소실링론자(little shilling men)⁹인데 이 애트우드 형제가 이 학파의 창시자이다(『정치경제학 비판』, 베를린(1859년), 59페이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4, 488호) “당신은 1844년의 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은행업자로서 대답해야 한다면 이 법은 매우 훌륭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이 법이 은행업자와 각종 {화폐} 자본가들에게 풍부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자기 사업을 확신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안정된 할인율을 필요로 하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업가들에

게는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화폐대부를 매우 유리한 사업으로 만들었다.” (제4, 489호) “그(은행법) 덕분에 런던의 주식은행들은 주주들에게 20~22%를 지불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 중 한 은행은 얼마 전에 18%를 지불하였으며 또 한 은행은 내가 아는 한에서는 20%를 지불하였다. 이 은행들은 이 법을 아주 단호하게 옹호하여 나설 충분한 근거가 있다.” (제4, 490호) “대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소기업가와 존경할 만한 상인들은…이 법으로 하여 매우 웅색하게 된다. …이 점을 확신하자면 지불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인수어음이 놀랄 만큼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인수어음들은 언제나 소액으로서 대략 20~100파운드 스텔링의 것이며 그 중 많은 것이 지불되지 않으며 그 때문에 국내의 방방곡곡에 반환되는데 이것은 언제나 소상공인들이…웅색한 형편에 있다는 징조인 것이다.”

제4, 494호, 그는 현재 사업이 유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지적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미처 느끼지 못하였을 때에 그는 공황이 잠재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4, 494호) “민성 거리에서의 가격은 아직 어지간히 유지되고는 있으나 이미 아무 것도 팔리지 않으며 어떠한 가격으로도 팔 수가 없다. 명목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제4, 495호, 그는 다음과 같은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 어떤 프랑스 사람이 민성 거리¹³의 한 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팔기 위해 3,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보낸다. 그 중개업자는 정해진 가격을 받을 수 없으며 또 프랑스 사람은 그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 상품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프랑스 사람에게에는 화폐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중개업자는 프랑스 사람이 그 상품을 담보로 1,000파운드 스텔링의 3개월 기한의 어음을 자기 앞으로 발행하게 함으로써 프랑스 사람에게 1,000파운드 스텔링을 대부한다. 3개월이 지나 어음은 만기가 되었으나 상품은 아직 팔 수 없다. 그래서 중개업자는 어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는 3,000파운드 스텔링 분의 담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곤란한 형편에 빠진다. 이와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제4, 496호) “대대적인 수출을 두고 말한다면...국내의 사업이 침체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반드시 수출을 왕성하게 한다.” (제4, 497호) “당신은 국내의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대단히...엄청나게...이 점은 소상공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제4, 498호) “그러나 수입은 매우 많다. 이것은 소비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팔릴 수만 있다면 물론 그러하다. 그러나 많은 상품창고가 수입상품으로 차 있다. 내가 방금 든 실례에서는 3,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이 수입되었는데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4, 514호) “화폐의 가치가 높은 때에는 자본의 가치가 낮다고 당신은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자본의 가치가 높다는 것과 같다는 오버스톤의 의견을 결코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제4, 616호) “다른 사람들은 아주 기를 쓰고 그들의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 거래의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다. 이 점은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 그들은 그 무슨 행운으로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경우에 현재 사업의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체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품을 한 번 보내는 데서 입는 20%, 30%, 40%의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다음 번 거래에서 그들은 손실을 본 모든 것을 벌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달아 실패한다면 그때에는 파산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최근 매우 자주 보았다. 여러 상사가 1실링의 자산도 남기지 않고 파산하였다.

(제4, 791호) “이자율이 낮은 것은(최근 10년간) 물론 은행업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상업장부를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윤(그 자신의) 이전에 비하여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은행권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한 탓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상당한 액의 예금을 갖게 된다. 이자율이 높으면 우리는 직접적인 이득을 본

다.” (제4, 794호) “화폐를 적당한 이자율로 얻을 수 있다면 화폐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늘어나며 우리의 대부는 늘어난다. 이 경우의 결과는(우리 은행업자들의 경우에) 이러하다. 이자율이 오른다면 우리는 대부에 대하여 정당한 정도 이상의 이자를 받게 된다. 우리는 옹당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모두 잉글랜드 은행권의 신용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은 은행권의 태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900만 내지 1,000만의 금을 절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퇴장화폐의 신성불가침은 이전 시기의 화폐퇴장자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유지된다. W. 브라운(리버풀)은 1847년 상업공황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상업곤궁』, 1847~1857년).

(제2, 311호) “당시 이 화폐(발행부의 금속예비)에서 얻은 효과로 말하면 그 화폐를 바닷속에 내던져도 사업에 아무 손실도 없을 정도이다. 의회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조금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건축업자인 E. 캡스——그는 이미 위에서 인용된 바 있으며 또 그의 진술은 런던의 현대건축제도를 서술하는 데서(『자본론』, 제2부, 제12장*) 인용된 바 있다——는 1844년의 은행법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은행법』, 1857년).

(제5, 508호)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당신은 현대의 제도(은행입법의)는 산업이 운을 주기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호주머니에 옮겨놓기 위한 참으로 교묘한 제도라는 의견인가?” “그렇다. 나의 의견은 그러하다. 그 제도는 건축업에서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1845년의 은행법

* 이 책, 제Ⅱ권(1), 258~25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에 의하여 잉글랜드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은행들은 개개 은행에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을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가 하는 것은 1847년 상업공황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한 다음과 같은 몇몇 진술에서 알 수 있다(『상업곤궁』, 1849~1857년).

한 스코틀랜드 은행의 중역인 케네디의 진술.

(제3, 375호) “1845년의 법이 실시되기 전에 스코틀랜드에 금유통이라고 부를 만한 그 무엇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은 없었다.” (제3, 376호) “그 이후 금의 유통량이 늘어났는가?”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 대중은 금을 싫어한다(the people dislike gold).”

제3, 450호, 1845년부터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약 90만 파운드 스텔링의 금은 유해로울 따름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자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무의하게 흡수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스코틀랜드 연합은행의 중역 앤더슨의 진술.

(제3, 558호)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잉글랜드 은행에 금에 대한 큰 수요를 제기한 단 하나의 경우는 대외환율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이 수요는 우리가 에딘버러에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줄지는 않았다.” (제3, 590호) “우리가 전과 같은 액의 유가증권을 잉글랜드 은행에(또는 잉글랜드의 개인은행들에) 맡기고 있는 동안은 잉글랜드 은행에서 금이 흘러 나오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도 전과 같다.”

끝으로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하나의 논설(원수의)을 더 인용하자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런던에 있는 그들의 대리점들에 놓고 있는 현금을 맡기고 있으며 이 대리점들은 그것을 잉글랜드 은행에 맡기고 있다. 그리하여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예비를 좌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금속예비는 잉글랜드 은행에 있으면서 대외지불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1845년의 법에 의하여 허물어졌다. “1845년의 법에 의하여 최근 잉글랜드 은행에서 스코틀랜드로 금주화가 매우 많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였으나 그런 수요는 실지로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상당한 액이 변함없이 스코틀랜드에 고착되어 있고 또 그 밖에 상당한 액이 늘 런던과 스코틀랜드를 오가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한 은행업자가 그의 은행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때가 오면 런던에서 금을 담은 상자를 보내어 이때가 지나가면 그 같은 상자를 보통 열어보지도 않은 채 런던으로 도로 보낸다”(『이코노미스트』, 1847년 10월 23일, 1214~1215페이지).

{그런데 은행법의 아버지인 은행업자 사무엘 존스 로이드, 일명 오버스톤 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미 1848년에 그는 1847년의 상업공황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거듭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이 부족한 탓으로 생겨난 화폐의 긴장과 높은 이자율은 은행권을 더 많이 발행함으로써 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제1, 514호).

그러나 사실은 1847년 10월 25일의 정부지시에 의하여 은행권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는 그 허가 하나만으로도 공황의 예봉을 꺾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즉

“이자율이 높고 가공업이 부진상태에 있는 것은 산업적 및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적 자본이 줄어든 필연적 결과" (제1,604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가공업이 부진상태에 있는 것은 물질적 상품자본이 지나치게 많이 창고에 차 있었으며 전혀 팔리지 않았다는 것,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자본이 팔리지 않는 상품자본을 그 이상 더 생산하지 않기 위하여 전적으로 또는 절반 놓고 있는 형편에 있었다는 데서 나타났다.

그리고 은행법에 관한 1857년의 하원위원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44년의 법의 원칙을 엄격하고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쉽게 수행되었으며 화폐제도는 튼튼하고 또 확고부동하게 되었으며 나라의 번영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로 되었고 1844년의 법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날로 커가고 있다. 만약 위원회가 이 법의 기초로 되고 있는 원칙이 건전하다는 것과 이 법이 보장한 유익한 결과에 대한 그 이상의 실제적 증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참된 충분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주위를 살펴보라. 우리나라의 사업의 현재 형편을 보라. 인민이 만족해 하는 것을 보라. 사회의 모든 계급의 재부와 번영을 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게 한 법이 앞으로 계속 실시되는 것을 방해해야 하겠는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위원회』, 1857년, 제4, 189호).

오버스톤이 7월 14일에 위원회에서 노래한 이 열광적인 송가에 대한 대답으로 된 것은 11월 12일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회에 보낸 정부의 편지였는데 이 편지에서 정부는 아직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1844년의 기적적 법률의 실시를 정지하였던 것이다.—F. E.)

제 35 장 귀금속과 환율

제 1 절 금예비의 운동

곤궁시기의 은행권의 저장에 관하여 지적해야 할 것은 이 경우에는 사회의 가장 원시적인 단계의 불안정한 시기에 볼 수 있는 귀금속으로 하는 화폐퇴장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1844년의 법이 미치는 영향에 흥미가 있는 것은 이 법이 국내의 모든 귀금속을 유통수단으로 전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금이 흘러 나가는 것을 유통수단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같이 보려 하며, 또 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유통수단의 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보려고 한다. 이 법을 실시해본 경험은 그 반대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곧 말하려 하는 하나의 예외를 제쳐놓고는 유통하고 있는 잉글랜드 은행권의 양이 1844년 이래 이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에 이른 적은 결코 없었다. 한편 1857년의 공황은 일정한 조건 밑에서는 이 최고한도로써도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857년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에 유통하고 있던 은행권은 평균 매일 이 최고한도를 488,830파운드 스텔링이나 넘었다(『은행법』, 1858년, 6페이지).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는 당시 14,475,000파운드 스텔링에 이 은행의 지하실에 있던 금속예비액을 더한 것이었다.

귀금속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한편으로는 금과 은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금속의 이동과 또 한편으로는 그 원산지에서 여러 다른 나라로의 금과 은의 유동 및 이 나라들 사이에서의 이 추가적 금속의 분배를 구별해야 한다.

19세기 초부터는 즉 러시아,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이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금과 은의 공급은 마멸된 주화를 보상하며, 사치

품생산에서 이 금속을 보통 사용하며, 아시아로 은을 수출하는 데 충분하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첫째로는 미국과 구라파의 아시아와의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로 은을 수출하는 것이 비상이 늘어났다. 구라파에서 수출된 은은 대부분 추가적 금에 의하여 보상되었다. 또한 새로 흘러 들어온 금의 일부는 국내의 화폐유통에 의하여 흡수되었다. 1857년까지 약 3,000만의 금이 추가적으로 영국의 국내유통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¹⁴⁾ 그 다음 1844년 이후 구라파와 북 아메리카의 모든 중앙은행들에서 금속예비의 평균수준이 늘었다. 동시에 국내의 화폐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파국 후 이에 뒤따르는 정세기에는 국내유통에서 밀려나가 유동하지 않게 된 금주화의 양이 늘었기 때문에 은행예비는 전보다 더 빨리 늘어나게 되었다. 끝으로 새로운 금생산지가 발견된 후에는 재부가 늘어난 탓으로 사치품을 만들기 위한 귀금속의 소비가 늘었다.

둘째로, 귀금속은 금과 은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 사이를 늘 이리저리 유동한다. 같은 나라가 금과 은을 수입하고 또 늘 수출한다. 어느 편으로의 운동이 우세한가 하는 데 의해서만 금과 은이 흘러 나가는가

- 14) 이것이 화폐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은 W. 뉴마치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다. (제1, 509호) "1853년 말 경에 대중 속에서는 큰 공포가 일어났다. 9월에 잉글랜드 은행은 연달아 세 번 할인율을 올렸다. ... 10월 초순에 대중 속에서는 큰 불안과 우려가 생겼다. 이 공포와 이 불안은 11월 말에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500만 파운드 스텔링의 귀금속이 도착하자 거의 완전히 가셔졌다. 1854년 가을에도 즉 10월과 11월에 거의 600만 파운드 스텔링이나 되는 귀금속이 도착하였을 때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1855년 가을에도——다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은 흥분과 불안의 시기였다——9월, 10월, 11월 중에 약 800만 파운드 스텔링의 귀금속이 도착하여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1856년 말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요컨대 우리는 금융상 곤란이 있을 때마다 금을 실은 배의 도착을 자연적 및 결정적인 구제책으로 늘 보아왔다는 것은 거의 모든 위원들의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것은 늘 동요하며 흔히 평행하는 운동은 대부분 서로 중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이 마지막 결과에 주의를 돌리는 한에서는 이 두 운동의 부단성과 대체로 평행적인 과정은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귀금속의 과잉수입과 과잉수출은 상품의 수입과 수출과의 관계의 결과와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같이 언제나 해석되는데, 그것은 동시에 상품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귀금속 자체의 수입과 수출의 관계의 표현이다.

세째로, 수출과 수입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세한가 하는 것은 대체로 중앙은행의 금속예비가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하는 데 의하여 측정된다. 이 척도가 어느 정도로 정확한가 하는 것은 물론 우선 은행업 일반이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국립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귀금속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국민적 금속예비를 대표하는가 하는 것은 이 집중의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척도는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추가수입은 일정한 조건 밑에서는 국내유통과 그리고 사치품을 만들기 위한 금 또는 은의 사용증가에 의하여 흡수되기 때문이며, 또 그 밖에도 이러한 추가수입이 없이도 금주화는 국내유통을 위하여 끌려 나올 수 있으며 따라서 금속예비는 수출이 동시에 늘어나지 않고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로, 운동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계속되며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 운동의 일반적 경향으로 되고 은행의 금속예비가 중간수준 이하로 훨씬 떨어지며 드디어 그 예비의 중간적 최저한도에 이른다면 금속수출은 금이 흘러 나가는(drain) 형태를 가진다. 이 중간적 최저한도는 은행권의 태환의 담보 등을 규정하는 입법에 의하여 하나하나의 개별적 경우에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되어 있다. 영국에서 이러한 유출이 도달할 수 있는 양적 한계에 관하여 뉴마치는 은행법에 관한 1857년의 하원위원회(『은행법』, 1857년, 제1, 494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면 대외거래상의 그 어떤 변동으로 하여 금속이

흘러 나가는 것이 300만 내지 400만 파운드 스텔링을 넘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1847년 10월 23일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의 최저수준은 1846년 12월 26일에 비하여 5, 198, 156파운드 스텔링이 줄었으며 1846년(8월 29일)의 최고수준에 비해서는 6, 453, 748파운드 스텔링이 줄었다. 1

다섯째로, 이른바 국립은행의 금속예비의 사명은——그러나 이 사명만으로 그 예비의 크기가 조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비는 국내외의 거래가 마비되기만 하여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과 같은 세 가지다. 즉 1) 국제적 지불을 위한 예비금, 간단히 말해 세계화폐의 예비금으로 되는 것, 2) 번갈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국내 금속유통을 위한 예비금으로 되는 것, 3) 은행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단순한 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지만 예금지불과 은행권태환을 위한 예비금으로 되는 것, 그러므로 금속예비는 이상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개개 기능과 관계되는 그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국제적 기금으로서의 지불균형——이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규정되는 간에 또 무역균형과 그 관계는 어떠한 간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적 금속유통의 예비금으로서의 이 유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째 기능 즉 보증기금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금속예비의 자립적 운동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두 가지로 작용한다. 국내유통에서 금속화폐(따라서 또 은이 가치척도로 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은화)를 대신하는 은행권이 발행된다면 제2항에서 지적된 예비금의 기능은 없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던 귀금속의 일부는 계속하여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이 경우에 금속화폐는 국내유통을 위하여 은행에서 끌려 나오지는 않으며 그와 동시에 유통하는 금속화폐의 일부를 부동화함으로서 금속예비를 주기적으로 늘릴 필요도 없어진다. 또한 예금지불과 은행권태환을 위하여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최소한도의 금속예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이것은 금의 유출과 유입의 결과에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예비금 중에서 은행이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확보할 의무가 있는

부분에 또는 은행이 다른 때에 쓸데없는 것으로서 내놓으려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순수한 금속유통과 집적된 은행업의 조건하에서는 은행은 또한 자체의 금속예비를 예금지불을 위한 보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금이 흘러 나가는 경우에는 1857년에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바와 같은 파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1837년은 예외이지만 실제적 공황은 언제나 환율이 달라진 다음에 즉 귀금속의 수입이 다시 수출에 비하여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일어난다.

1825년에는 실제적 파국은 금이 더 이상 흘러 나가지 않게 된 다음에 일어났다. 1839년에는 파국에 이르지 않고 금이 흘러 나갔다. 1847년에는 금이 흘러 나가는 것은 4월에 머물렀는데 파국은 10월에 닥쳐왔다. 1857년에는 국외로 금이 흘러 나가는 것은 11월 초부터 멈추었고 그 후 11월이 되어서야 겨우 파국이 시작됐다.

특히 이 점은 1847년 공황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 경우에 금의 유출은 비교적 약한 예비공황을 일으킨 다음에 4월에는 벌써 중지되었으며 그 후, 10월에 이르러 비로소 원래의 상업공황이 일어났다.

다음의 진술은 1847년의 상업공황에 관한 상원비밀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증언(evidence)은 1857년에야 비로소 인쇄되었다(전에는 「상업곤궁」, 1848~1857년으로서도 인용하였다).

투크의 진술

“1847년 4월에 곤궁상태가 생겼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파국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계속되었고 또 이렇다 할 만한 상업파산은 없었다. 10월에는 곤궁상태가 4월보다 훨씬 심하였으며 상업파산 건수는 거의 전례 없이 많았다”(제2, 996호). “4월에는 환율 특히 미국과의 환율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우 많은 액의 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을 수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행은 매우 긴장된 노력에 의해서만 금이 더 이상 흘러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환율을 올릴 수 있었다”(제2, 997호). “10월에는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다”(제2, 998호). “환율의 변동은 4월의 제3주일에 시작되었다”(제3, 000호). “환율은 7월과 8월 중에 변동이 있었으며 8월 초부터는 언제나 영국에

유리하였다”(3,001호). “8월에는 국내유통을 위한 수요에 의하여 금이 흘러 나갔다.”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 J. 모리스.

“1847년 8월부터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금이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예비는 줄었다.”

“220만 파운드 스텔링의 금이 국내수요로 말미암아 은행에서 나와 유통에 들어갔다”(제137호). “이것은 한편으로는 철도부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공황시기에 은행업자들이 금예비를 가지려 하였기 때문이다”(제147호).

잉글랜드 은행의 전총재였으며 1811년부터 이 은행의 이사였던 팔머.

(제684호) “1847년 4월 중순부터 1844년의 은행법이 정지된 그날까지의 전기 간을 통하여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였다.”

따라서 자립적인 화폐공황을 일으킨 1847년 4월의 금속유출은 언제나 그런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공황을 알리는 징조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방향이 바뀌었다. 1839년에는 부진상태가 심하였던 조건에서 곡식 등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속이 흘러 나갔으나 공황도 화폐공황도 없었다.

일곱차례 전반적 공황이 끝나자 금과 은은——생산국에서 새로운 귀금속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제쳐놓는다면——그것이 여러 나라의 특수한 퇴장화폐로서 균형상태에 있었던 것과 같은 비례로 재분배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개개 나라의 퇴장화폐의 상대적 크기는 세계시장에서 노는 그 나라의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귀금속은 이것을 정상적 수준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흘러 나와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간다.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이 운동은 여러 나라들 사이의 퇴장화폐의 원래의 분배를 회복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는 여러 가지

사정의 영향을 받아 실현되는데 이 사정들은 환율을 연구할 때에 이야기 될 것이다. 정상적인 본배가 회복되자 이 순간부터 처음에는 늘어나며 다음에는 다시 흘러 나간다. {이 마지막 명제는 세계화폐시장의 중심인 영국에만 들어맞는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 F. E. }

여윌채로, 금속이 흘러 나간다는 것은 대체로는 대외무역 형편에 변동이 있다는 징조이며 이 변동은 이번에는 공황이 성숙되고 있다는 전조인 것이다.¹⁵⁾

아홉채로, 지불균형은 아시아에는 순차이고 구라파와 미국에는 역차일 수 있다.¹⁶⁾

귀금속은 주로 두 시기에 수입된다. 즉 한편으로는 이자율이 낮은 첫 단계——이 단계는 공황 다음에 오며 생산의 축소를 표현한다——에서 수입되며 다음에는 이자율은 오르지만 아직 중간수준에 이르지 않은 둘째 단계에서 수입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이 쉽게 되돌아오며 상업신용은 풍부하며 따라서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생산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는 늘지 않는다. 대부자본이 비교적 풍부한 이 두 단계에서는 금과 은의 형태로 존재하는, 따라서 직접 대부자본으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의 과잉유입은 이자율에, 따라서 또 모든 사업

-
- 15) 뉴마치는 외국으로 금이 흘러 나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 순상업적인 원인 때문인데 즉 1836년에서 1844년까지, 그 다음에는 다시 1847년의 경우와 같이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주로 곡식수입이 많았다——경우이다. 2) 영국자본을 외국에 투자하기 위한——예컨대 인도에 철도를 놓기 위한——자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예컨대 1853년과 1854년에 동방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과 같이 되돌아오지 않는 대외지출 때문이다.
- 16) (제1.918호). 뉴마치. “당신이 인도와 중국을 합쳐 본다면, 당신이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거래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중국과 미국의 거래를 고려에 넣는다면——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래가 삼각 거래이며 중국적 결제는 우리 영국을 통해서 실시된다——무역균형은 영국에만 역차일뿐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에도 역차였다는 것은 옳은 것이다”(『은행법』, 1857년).

의 진척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임금은 이미 없고 시장에는 상품이 지나치게 많으며 결보기의 변영은 오직 신용에 의해서만 유지되게 되자, 따라서 이미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며 그리하여 이자율이 적어도 중간 수준에 이르게 되자 귀금속은 흘러 나가며 끊임없이 많이 수출된다. 바로 귀금속이 흘러 나가는 데서 표현되는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직접 대부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는 자본을 끊임없이 끌어내는 데서 오는 영향은 매우 커진다. 이것은 이자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자율이 오르면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어나며 신용거래의 모든 보조수단이 지나치게 긴장된다. 그 때문에 이 시기는 파국에 앞서는 것이다.

뉴마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은행법』, 1857년).

(제1, 520호) “그러면 유통어음의 액은 이자율이 늘어남에 따라 커지는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제1, 522호) “평온한 보통 시기에는 원장부는 교환의 실제적 도구이다. 그러나 곤란이 닥쳐오는 경우에는 예컨대 내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업무는 결국 어음의 발행으로 된다. 이러한 어음은 성립된 거래의 법적 증거로 되는 데 편리할 뿐 아니라 더 사들이는 데도 편리하며 또 무엇보다도 자본을 얻기 위한 신용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또 어느 정도 위험한 사정 밑에서 은행이 할인율을 올린다면——이와 동시에 은행은 자체가 할인할 어음의 유효기간을 아마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그것은 더욱더 심하게 되리라는 일반적 위구가 생긴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리고 우선 신용의 기사는 미래의 것을 할인받아 일정한 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용수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위에서 이야기된 원인들로 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수입된 귀금속이건 수출된 귀금속이건 간에 그 귀금속의 양 그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으로서의 귀금속의 특수한 성격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며 또

한편으로는 새의 가벼운 깃털 하나가 저울판에 오른 물건에 덧붙자 오르 내리는 저울판을 한쪽으로 결국 기울어지게 하는 데 충분한 것과 같은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 그 양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덧붙으면 저울대를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조건에서 덧붙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없다면 예컨대 500만 내지 800만 파운드 스텔링——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의 금유출이 어떻게 그렇듯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보잘것없는 자본의 증대와 감소는 영국에서 평균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7,000만의 금과 비교하더라도 큰 것이 아닌데 영국과 같은 생산규모에서는 사실상 보일까 말까한 크기이다.¹⁷⁾ 그러나 바로 신용제도와 은행제도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모든 화폐자본을 생산에 복무케 하려고(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모든 화폐소득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려고) 하며, 또 한편으로 경기순환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금속예비를 최소한도——즉 그 금속예비가 자체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발전된 신용제도와 은행제도가말로 전체 유기체의 지나친 감수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생산발전의 보다 낮은 단계에서는 금속예비의 평균적 크기에 비하여 그것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생산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양의 금이 흘러 나간다 하여도 그것이 산업경기순환의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면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는 보잘것없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흉작 등으로 하여 금이 흘러 나가는 경우는 무시되

17) 예컨대 웨젤린의 우스운 대답(『은행법』, 1857년)을 들어 보라. 그는 500만의 금이 흘러 나가는 것은 그만큼 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그는 무한히 더 많이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가치가 떨어지는 조건에서 또 실제적 산업자본이 늘거나 줄어드는 조건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이와 못지 않게 우스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을 실제적 자본(자본의 물질적 요소에서 본)량이 늘거나 주는 직접적인 징조라고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었다. 이 경우에는 생산의 균형이 크게 갑자기 교란되며 그 표현으로서 금이 흘러 나가는데 그 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는 그러한 교란이 일어나는 시기가 경기가 좋은 조건에서 생산이 진행되는 시기와 일치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외시한 것은 은행권의 대환보증으로서 그리고 전체 신용제도의 축으로서의 금속예비의 기능이다. 중앙은행은 신용제도의 축이다. 그런데 금속예비는 또 은행의 축이다.¹⁸⁾ 신용제도가 현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은 이미 『자본론』, 제1부, 제3장,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서* 서술되었다. 투크나 로이드-오버스톤이나 다같이 위급한 시기에 금속기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재부의 막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의 논쟁의 중심은 다만 더하기나 덜기냐, 이 불가피한 것에 대한 취급을 더 합리적으로 하느냐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뿐이다.¹⁹⁾ 총생산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양의 금속이 제도의 축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황시기에 축의 이러한 성격이 놀랄 만큼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매우 재미있는 이론적 이원론이 여기에서 생겨난다. 계몽된 경제학은 자본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때에는 금과 은을 사실상

18) 뉴마치(『은행론』, 1857년), (제1364호)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예비는 사실상 중앙예비, 중앙금속저장이며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말하자면 나라의 모든 거래가 그 주변을 돌게 되는 하나의 축이다. 나라의 다른 모든 은행은 잉글랜드 은행을 중앙저장소로 또는 자기들의 경화예비를 끌어내야 하는 저수지로 여긴다. 그리고 대외환율의 영향은 언제나 바로 이 저장소, 이 저수지에 미치는 것이다.”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167, 16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19) “따라서 실제로 투크나 로이드나 다 같이 금에 대한 지나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올리며 자본의 대부분을 줄임으로써 신용을 제때에 제한하려 할 것이다. ... 다만 로이드만은 그의 환상에 의하여... 번잡하고 심지어는 위험한(입법적) 제한들과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이코노미스트』, 1847년(12월 11일), 1418페이지).

전혀 흥미가 없고 전혀 소용없는 자본형태로 보고 몹시 멸시한다. 그런데 이 경제학이 은행업을 취급하자 이 모든 것은 거꾸로 되어 금과 은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본으로 되며 이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과 노동은 희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금과 은은 재부의 다른 모습들과 무엇에 의해 구별되는가? 가치의 크기에 의해 구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치의 크기는 그것들에 대상화된 노동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금과 은은 재부의 자립적인 화신으로서만, 재부의 사회적 성격의 표현으로서만 구별되는 것이다. {사회적 재부는 그 사적 소유자인 개개인의 재부로서만 존재한다. 재부는 이러한 개개인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질적으로 다른 사용가치를 서로 교환함으로써만 사회적 재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그들은 화폐를 매개로 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화폐를 매개로 해서만 개개인의 재부는 사회적 재부로서 실현된다. 화폐 속에, 이 물건 속에 이 재부의 사회적 본성이 체화되어 있다. — F. E.} 따라서 재부의 이 사회적 존재는 이 세계 밖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재부의 실제적 요소들과 나란히 또 그 요소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건으로서, 사물로서,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이것을 잊어버린다. 신용은 또한 재부의 사회적 형태로서 화폐를 내쫓고 자리를 빼앗는다. 바로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신뢰로 하여 생산물의 화폐적 형태는 다만 일시적이며 관념적인 것으로서, 단순한 표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이 뒤흔들리자——그런데 이 단계는 근대산업의 경기순환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닥쳐오기 마련이다——이제 모든 실제적 재부는 갑자기 실지로 또 즉시로 화폐로 즉 금과 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열빠진 요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도 자체에서 반드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요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금과 은은 모두 해서 잉글랜드 은행의 지하실에 있는 수백만에 지나지 않는다.²⁰⁾ 따라서 금이 흘러 나가는 영향

20) “금에 대한 수요를 변경시키자면 이자율을 올리는 수밖에 다른 방도는

중에는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생산이 사실은 사회적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재부의 사회적 형태가 그 재부 밖에 있는 물건으로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형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 사정은 사실상 자본주의제도와 그 이전의 생산제도에——이 두번째 제도가 상품거래와 사적 교환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에서는——다같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 점은 오직 자본주의제도에서만 가장 뚜렷이 그리고 불합리한 모순과 베리의 아주 기괴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1) 자본주의제도에서는 직접적 사용 가치를 위한 생산자 자신의 소비를 위한 생산은 가장 완전히 폐기되고, 따라서 재부는 생산과 소비가 영킨 것으로서 표현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며 2) 신용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은 재부와 그 운동의 이 급속적 제한을, 물질적인 동시에 환상적인 이 제한을 끊임없이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더욱더 이 제한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공황기에는 모든 어음, 유가증권, 상품을 단번에 은행화폐로 바꾸며 그리고 이 모든 은행화폐를 이번에는 금으로 바꾸려는 요구가 생긴다.

제 2 절 환 율

(국제적 규모에서의 화폐급속운동의 청우계는 다 아는 바와 같이 환율이다. 독일이 영국에 지불해야 할 것보다도 영국이 독일에 지불해야 할 것이 더 많다면 런던에서는 스텔링으로 표현된 마르크의 가격은 오르고 함부르크와 베를린에서는 마르크로 표현된 스텔링의 가격은 떨어진다.

없다는데 당신은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채프만(대중개업자 상회인 오버랜드, 저니 상회의 동업자) “그렇다. 나의 의견은 그러하다. 우리의 금예비가 일정한 점까지 줄어든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즉시에 경종을 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우리는 몰락하고 있으며 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는 사람은 그 자신이 위험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 (『은행법』, 1857년, 증언, 제5, 057호).

만약 영국이 독일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지불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예컨대 독일이 영국에서 많은 것을 사들이는 것에 의하여 다시 상쇄되지 않는다면 독일 앞으로 발행된 마르크 어음의 스텔링 가격은 영국에서 독일로 어음 대신에 금속——금화 또는 덩어리금——을 보내는 것이 유리하게 될 때까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전형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귀금속 수출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더 오래 계속된다면 영국의 은행예비금은 그 영향을 받게 되며 잉글랜드 은행을 선두로 하는 영국의 화폐시장은 보호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보호대책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주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다. 금이 많이 흘러 나가는 경우에는 화폐시장은 정해놓고 응색해진다. 즉 화폐형태의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넘으며 이 때문에 이자율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잉글랜드 은행이 결정하는 할인율은 사태에 상응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장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이 보통거래와는 다른 사정(예컨대 외국차관, 외국에로의 투자 등)에 의하여 흘러 나가며 그리고 런던의 화폐시장 그 자체의 처지로 보아 이자율을 실제로 올리는 것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곤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잉글랜드 은행은 우선 공개시장에서 더 많은 것을 꺾들임으로써 흔히 쓰는 말대로 화폐를 귀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또는 필요하게 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수법은 잉글랜드 은행으로서는 해마다 더욱 더 힘들게 된다. —F. E.)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1857년의 은행입법에 관한 하원위원회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행법』 또는 『은행위원회』, 1857년으로서 인용)에서 알 수 있다.

J. S. 밀.

(제2, 176호) “거래가 곤란하게 되면…유가증권의 시세는 매우 떨어진다…외국 사람들은 이 곳 영국에서 철도주식을 사게 하거나 또는 외국철도주식의 영국인 소유자들은 이것을 외국에서 판다. …그만큼 금은 나가지 않는다.”
(제2, 182호) “여러 나라들의 이자율과 상업청우계의 도수(pressure)의 균등화는

은행업자와 유가증권 거래업자들의 부유한 큰 재계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들은... 언제나 가격이 오르리라고 보여지는 유가증권을 사들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 그들이 사들이는 데 적당한 장소는 언제나 외국으로 금을 보내는 나라일 것이다.” (제2, 184호) “1847년에는 이러한 자본투하는 금이 흘러 나가는 것을 줄이는 데 충분한 만큼 큰 규모로 실시되었다.”

잉글랜드 은행의 전총재이며 1838년부터 이 은행의 이사 J. G. 험바드.

(제2, 545호) “상당한 양의 구라파 유가증권이 구라파의 여러 화폐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이 유가증권의 가치가 한 시장에서 1% 또는 2% 떨어지면 그 증권은 곧 그 가치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다른 시장으로 보내기 위하여 팔린다.” (제2, 565호) “다른 나라들이 영국 상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제2, 566호) “따라서 이러한 빚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국에서의 거액의 자본축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1847년에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전에 우리 나라에 대해 지고 있던 수백만의 빚을 청산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동시에 영국도 역시 이 나라들에 극심한 수백만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부분을 영국인 채무자들의 파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위에서 든 제30장, 31페이지*에 있는 1857년의 『은행법』에 관한 보고를 보라.

(제2, 572호) “1847년에는 베제르부르그와의 영국의 환율은 매우 높았다. 잉글랜드 은행에 1,400만이라는 규정된 한도를 넘어 은행권을 {금예비의 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정부지시가 나왔을 때 그 조건은 할인율을 8%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러한 할인율에서는 베제르부르그에서 런던으로 금을 보내게 하고 이것이 도착하면 팔린 금에 대해 발행된 3개월 기한의 어음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 금을 8%로 대부하는 것이 유리한 거래였다.” (제2, 573호) “모든 금조작에서는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제는 환율에 있으며 어음이 만기가 될 때까지 화폐 {이 어음을 담보로 하여

* 이 권, 60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내준)를 대부할 수 있는 이자율에 있다.”

제3절 아시아와의 환율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아시아와의 영국의 환율이 불리한 경우에 영국은 다른 나라들——아시아로부터의 이 나라들의 수입이 영국의 매개에 의하여 지불되는 그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윌슨 씨는 이 경우에도 다시금 귀금속의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 일반의 수출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똑같이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경우에 다 문제로 되는 것은 지불수단이나 구매수단으로서의 수출이 아니라 자본투하를 위한 수출이다. 우선 명백한 것은 인도의 철도부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수백만 파운드 스텔링을 귀금속으로 보내는가 철길 레일로 보내는가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같은 액의 자본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형태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이 옮겨가는 것은 보통의 상업거래의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며 수출하는 나라는 이것에 대하여 이 철도의 수익에서 오는 매해의 소득을 체쳐놓고는 아무런 다른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수출이 귀금속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귀금속이며 따라서 직접 대부할 수 있는 화폐자본이며 또 전체 화폐제도의 기초이므로 이 수출은——어떠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이야기된 조건에서는 반드시 그러하다——직접 화폐시장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귀금속을 수출하는 나라의 이자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수출은 또 직접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런던의 화폐시장에 제공되는 어음 예컨대 인도 앞으로 발행된 어음만으로써는 이 특별송금을 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때, 또 충분하지 않는 한에서만 귀금속을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 앞으로 발행된 어음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며 그리하여 일정한 순간에 환율은 영국에 불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국이 인도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이 인도에 비상히 많은 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게 인도로 귀금속을 수출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 계속된다면 결국 영국상품에 대한 인도의 수요가 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되면 구라과 상품에 대한 인도의 소비능력이 간접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이 레일 등의 형태로 수출된다면 그것은 환율에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인도는 이 레일 등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또한 화폐시장에 영향을 줄 리도 없다. 월슨은 그러한 특별투자는 화폐대부에 대한 추가적 수요를 일으킬 것이며 따라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그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것이다. 레일을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그것이 어디서 부설되든지 간에 영국 땅에서든 또는 인도 땅에서든 그 레일은 일정한 분야에서 영국의 생산이 일정하게 확대된다는 것을 표시할 따름이다. 생산의 증대는——매우 광범한 한계내에서까지도——이자율을 올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어리석은 것이다. 화폐대부는 즉 신용조작이 참가하는 거래의 액은 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은 이자율이 달라지지 않는 조건에서도 늘 수 있다. 40년대에 영국에서 한창 철도 열이 올랐을 때에는 사실상 그러하였다. 이자율은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적 자본 즉 이 경우에는 상품이 문제인 한에서는 이 상품이 외국으로 보내기로 된 것이든 또는 국내소비를 위한 것이든 간에 화폐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것은 명백하다.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생길 것이다. 즉 영국의 외국투자로 하여 영국의 상업적 수출——대금지불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또 화폐를 되돌아오게 하는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에 또는 이러한 투자가 신용이 지나치게 긴장되고 투기적 조작이 시작되는 징조로 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다.

다음의 문장들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월슨이고 대답하는 것은 뉴마치이다.

(제1,786호) “당신은 전에 동아시아로 보내는 은에 대한 수요에 관해 말하면서 동아시아로 상당한 양의 금속예비가 끊임없이 실려가지만 인도와의 환율은

영국에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당신은 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가지고 있다. …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1851년에 연합왕국이 인도로 수출한 실제적 가치는 742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동인도 회사 본사의 어음액 즉 동인도회사가 그 자체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가져오는 자금이다. 이 어음은 그 해에는 320만 파운드 스텔링이었으며 그리하여 인도로 보내는 연합왕국의 수출 총액은 1,062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다. 1855년에는 … 상품수출의 실제가치는 1,035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으며 동인도회사 본사의 어음은 370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다. 따라서 총수출은 1,405만 파운드 스텔링이다. 인도에서 영국이 수입한 상품의 실제가치를 확정할 만한 자료로서 1851년에 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1854년과 1855년에 대한 것은 있다. 1855년에는 인도에서 영국이 수입한 상품의 실제적 총가치는 1,267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이 액을 수출액 1,405만 파운드 스텔링과 비교한다면 두 나라 사이의 직접적인 무역에서 영국은 138만 파운드 스텔링의 수출초과이다.”

이 점에 대하여 윌슨은 환율은 간접무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예컨대 인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북 아메리카로 가는 수출은 런던 앞으로 발행하는 어음에 의하여 지불되며 따라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을 인도에서 영국으로 직접 보내는 경우와 똑같다. 또한 인도와 중국을 합해서 본다면 균형은 영국에 역차로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도에 끊임없이 아편대금으로서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영국은 중국에 지불해야 하므로 금액은 이렇게 우회해서 영국에서 인도로 가기 때문이다(제1,787호, 제1,788호).

(제1,791호) 그런데 윌슨은 자본이 “레일과 기관차의 형태로 수출되든 또는 금속화폐의 형태로 수출되든” 환율에 대한 영향은 같지 않는다고 질문한다. 이에 대한 뉴마치의 대답은 전적으로 옳다.

최근년간에 철도를 놓기 위하여 인도로 보낸 1,200만 파운드 스텔링은 인도가 일정한 기한에 영국에 지불해야 하는 한 해 임료를 매우는 데 쓰였다. “귀금속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으로 말하면 이 1,200만 파운드 스텔링의 투자는 화폐로서의 실제적 투자를 위하여 금속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

에서만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1792년).

(제1,797호) (웨젤린의 질문) “만약 이 철(레일)에 대한 대금이 전혀 되돌아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상품형태로 수출되는 투자부분이 환율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의 상태는 한 나라에서 제공되는 채무나 어음의 양과 이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제공되는 그 양과의 비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환율의 합리적인 이론이다. 1,200만의 송금으로 말한다면 이 1,200만은 우선 이곳에서 모집된 것이다. 그런데 이 1,200만의 전액이 경화로 켈커타, 봄베이 및 마드라스에서 투하되는 그러한 종류의 거래라고 한다면… 이 뜻밖의 수요는 은의 가격과 환율에 심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것은 동인도회사가 자기 어음을 300만에서 1,200만으로 늘린다고 내일이라도 통고하는 경우와 똑같다. 그러나 이 1,200만의 절반은… 영국에서 상품… 레일, 목재 기타 재료를… 사는 데… 투하된다. …이것은 인도로 보내는 일정한 종류의 상품을 사기 위하여 영국자본을 영국 자체 내부에서 투하하는 것이며 이로써 문제는 다 되는 것이다.” (제1,798호) (웨젤린) “그러나 철도에 필요한 철과 목재라는 상품의 생산은 외국상품의 소비를 크게 하며 그리하여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확실히 그러하다.”

월슨은 철은 주로 노동을 표시하며 이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은 주로 수입상품을 표시한다는 의견을 말하고(제1,799호)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1,801호)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수입상품을 소비하여 생산한 상품이 생산물로든 또는 무슨 다른 것으로든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수출된다면 그것은 환율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 원리는 바로 대철도 부설시기의(1845년의) 영국의 사정에 들어맞는다. 3년, 4년 또는 5년 동안 연달아 당신들은 철도에 3,000만 파운드 스텔링을 투하하였는데 이 금액의 거의 모두가 임금에 지출되었다. 3년 동안 철도, 기관차, 차량 및 정거장을 건설하는 데서 당신들은 공장지구 전체를 합한 데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임금을 차, 설탕, 술, 기타 외국상품들을 사는 데 지출하였다. 이 상품들은 수입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는 전기간에 영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환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귀금속은 흘러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흘러 들어왔다.”

(제1, 802호) 윌슨은 영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균형이 이루어지고 환율이 평가인(al pari) 조건에서는 철과 기관차의 비당한 수출은 인도와의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레일이 자본으로서 수출되며 그리고 인도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한에서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뉴마치는 알지 못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그 무역상대방인 모든 나라들과의 환율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불리하게 계속될 수 없다는 원리에 나는 동의한다. 한 나라와의 불리한 환율은 반드시 다른 한 나라와의 유리한 환율을 조성하는 것이다.”

윌슨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천박한 의견을 내놓는다.

(제1, 803호) “그러나 자본을 어떠한 형태로 보내든 간에 자본을 옮긴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닌가?” “채무가 문제인 한에서는 물론 그렇다.” (제1, 804호) “그러면 귀금속을 보내든 상품을 보내든 간에 인도에서의 철도부설이 이 곳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같을 것이며 마치 모든 것이 귀금속으로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가치를 올릴 것이라는 말인가?”

철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어쨌든 이것은 레일에 들어 있는 자본의 가치가 오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 경우에 문제인 것은 화폐자본의 가치, 이자율이다. 윌슨은 화폐자본과 자본 일반을 똑같이 보려고 할 것이다. 간단한 사실은 우선 영국에서는 인도의 철도부설을 위해 1,200만이 수집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정은 환율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도 없으며 또 이 1,200만은 화폐시장에 대해서는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화폐시장이 유리한 형편에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이것은 1844년과 1845년에 영국에 철도주식 모집이 화폐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화폐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융색하게 되었다면 이자율은 물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그러나 이것은 오직 이자율을 올리는 방향에서만 그러하다——이것은 윌슨의 이론에 의하면 환율을 영국에 더 유리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즉 귀금속이 수출되는——인도토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로——경향을 막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윌슨 씨의 말은 대중을 잡을 수 없다. 질문 제1,802호에서는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제1,804호에서는 자본의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자율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율은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환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자율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자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환율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자본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서 자본이 수출되는 그 형태 자체에 의해서 그러한 작용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즉 자본의 형태상 차이와 그리고 바로 자본의 화폐형태가 그토록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것은 계몽된 경제학자들의 견해와는 전혀 모순된다——은 윌슨의 머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윌슨에 대한 뉴마치의 대답은 윌슨이 환율로부터 이자율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뛰어넘는 데 대하여 윌슨에게 전혀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있는 한에서는 일면적인 것이다. 뉴마치는 위에서 든 질문 제1,804호에 대하여 확신성없이 모호하게 대답한다.

“1,200만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1,200만을 귀금속으로 보내든 물자로 보내든 그것은 일반적 이자율이 문제인 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지만(이 그렇지만은 정반대의 주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경우에는 600만 파운드 스텔링이 곧 되돌아오겠지만 또 한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되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만이 여기 국내에서 투하되는가 또는 전부 수출되는가에 따라 약간의(얼마나 규정적인가!) 차이가 생긴다.”

600만이 곧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600만 파운드 스텔링이 영국에서 지출되는 한에서는 이것은 레일, 기관차 등으로 존재하며 이것들이 인도로 가서는 거기에서 되돌아오지 않고 그 가치가 비로소 감가상각에 의하여 즉 매우 완만하게 되돌아오지만 귀금속 600만은 아마 훨씬 빨리 현물로 되돌아올 것이다. 600만이 임금에 지출되는 한에서는 그것은 다 소비되어 버린다. 그러나 600만을 선대하는 데 쓰인 화폐는 여전히 국내에서 유통하든가 또는 예비를 형성한다. 레일 생산자들의 이윤과 600만 중에서 그들의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이 되돌아온다는 애매한 말을 뉴마치가 쓴 것은 그가 다음과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려 한 데 지나지 않는다. 즉 화폐는 국내에 남아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대부화폐자본으로서 기능을 하는 한에서는 화폐시장의 입장에서 본 차이는(유통이 아마 많은 양의 금속화폐를 삼켜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제쳐놓고) 오직 이 화폐가 B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A의 계산에 의해서 지출된다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자본이 귀금속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그 수출상품의 생산이 다른 외국상품의 추가적 수입을 요구하는 한에서만 환율(그것도 자본이 투하되는 나라와의 환율이 아니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경우에 이 생산은 이 추가수입을 청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은 새로운 투자로서든 또는 보통의 상업상 목적으로서든 간에 신용으로 수출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추가수입의 반작용에 의하여 예컨대 영국상품에 대한 식민지나 미국의 추가적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앞에서 뉴마치는 동인도회사의 어음으로 말미암아 인도에 대한 영국의 수출은 수입보다 많다고 말하였다. 찰스 우드 경은 이 점에 대하여 그에게 집중 심문을 들이댔다. 인도에 대한 영국의 수출이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이렇게 초과하게 되는 것은 영국이 아무런 동가도 지불하지 않고 인도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동인도회사의(현재는 동인도정부의)

어음이란 결국 인도에서 징수하는 하나의 공납이다. 예컨대 1855년에 영국으로의 인도의 수출은 1,267만 파운드 스텔링이고 인도로의 영국의 수출은 1,035만 파운드 스텔링이며 따라서 인도의 수출초과는 225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사태가 이것으로써 다 끝난다면 이 225만 파운드 스텔링은 어떠한 형태로 든 인도로 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동인도회사 본사의 요구가 나타난다. 동인도회사 본사는 인도의 여러 성들 앞으로 325만 파운드 스텔링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선포한다. (이 액은 동인도회사의 런던에서의 경비와 주주들에게 지불할 배당금에 쓰기 위하여 징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여 무역에서 생긴 225만 파운드 스텔링의 차액이 청산될 뿐만 아니라 또한 100만의 초과분이 이루어진다”(제1, 917호) (『은행법』, 1857년).

(제1, 922호) (우드) “그러면 동인도회사 본사의 이러한 어음의 영향으로 하여 인도에로의 수출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가?”

{이것은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인도로의 같은 액의 수출로써 메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뉴마치 씨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영국 사람들은 이 370만 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보수로 훌륭한 정치를 인도에 수출한다는 것으로써 설명하고 있다(제1, 925호). 영국 사람들이 수출한 훌륭한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인도담당대신으로서 잘 알고 있는 우드는 정당하게 또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제1, 926호).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동인도회사 본사의 어음으로 하여 생기는 수출은 훌륭한 정치의 수출이지 상품의 수출은 아니다.”

영국은 이런 식으로 훌륭한 정치를 위해 또 다른 나라들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많은 수출을 하므로——따라서 보통의 거래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입 즉 부분적으로는 수출된 훌륭한 정치에 대한 공납, 부분적으로는 식민지와 기타 나라들에 넣은 자본의 소득으로서의 공납,

아무런 등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공납을 받고 있으므로——영국이 대응수출이 없이 이 공납을 그저 삼켜버린다 하여도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영국이 국내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 공납을 생산적으로 또는 비생산적으로 다시 투하하는 경우, 예컨대 영국이 이 공납으로 크림 반도에 군수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영국의 소득에 들어가는 한(이 수입은 등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납으로서나 또는 지불되지 않는 이 공납과의 교환에 의해서나 또는 상업의 보통방도에 의해서나 지불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영국은 이것을 소비하거나 또는 자본으로서 다시 투하할 수 있다. 이런저런 것들 사이에 환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데, 현명한 윌슨은 이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득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국내생산물이든 또는 외국생산물이든 간에——외국생산물인 경우는 국내생산물과 외국생산물과의 교환만을 전제로 한다——이 소득의 소비가 생산적인가 또는 비생산적인가 하는 것은 생산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환율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평가하는 데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1, 934호) 우드는 뉴마치에게 크림 반도로 군수품을 보내는 것이 터키와의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고 질문한다. 뉴마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군수품을 보내는 것만으로써 어떻게 환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귀금속을 보내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여기에서 그는 화폐형태의 자본과 다른 형태의 자본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윌슨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1, 935호) “만약 당신이 해당한 수입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상품을 대규모로 수출한다 해도”

{영국을 두고 볼 때에는 수입을 매우 많이 하였지만 훌륭한 정부의 형태 또는 전에 수출된 투하자본의 형태의 수출을 제쳐놓고는 이 수입에 상응한 수출을 한 적이 없었으며 여하튼 간에 이것은 보통의 무역운동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윌슨 씨는 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품은 예컨대 미국생산물과 다시 교환된다. 그리고 미국생산물이 상응한 수입이 없이 수출된다 해도 이것 때문에 이 수입품의 가치가 외국으로의 등가수출이 없이 소비될 수 있다는 사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수입품은 대용수출이 없이 얻어진 것이며 따라서 무역균형에 들어가지 않고 소비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지게 된 대외채무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 수입을 예컨대 외국에서 부여된 신용으로 이미 미리 지불하였다면 그것으로써는 아무런 빚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문제는 국제균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결국 그렇게 소비된 생산물이 국내의 생산물이든 외국의 생산물이든 이에겐 전혀 관계없이 생산적 지출인가 비생산적 지출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거래에 의하여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수출에는 수입이 상응하지 않는 만큼 대외채무는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다——이것은 여러 나라에 일반적으로 들어맞는 것이다.”

윌슨의 강의는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상응하는 수입이 없는 온갖 수출은 동시에 상응하는 수출이 없는 수입인데 그것은 수출상품의 생산에는 외국상품 즉 수입상품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온갖 수출은 지불되지 않는 수입에 기초하거나 또는 지불되지 않는 수입을——즉 대외채무를——조성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을 제쳐놓더라도 그릇된 것이다. 즉 1) 영국은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무상수입품을 받는다는 점인데 예컨대 인도로부터

의 수입품의 일부가 그러하다. 영국은 이 수입품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 교환하고 이것을 대응 수입없이 수출할 수 있다. 여하튼 간에 가치에 관하여 말하다면 영국은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은 것을 수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영국은 추가자본을 이루는 수입품——예컨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이미 지불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영국이 그 후에 이것을 비생산적으로 예컨대 군수품으로 소비한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아무런 빛도 이루지 않으며 또 미국과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뉴마치는 제1,934호와 1,935호의 진술에서 자체 모순에 빠지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 우드는 질문 제1,938호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 가운데는 이에 상응한 것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군사비) 이러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상품의 어느 한 부분도 이 물건을 받는 나라에서 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 나라와의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터어키와의 무역이 보통의 균형상태에 있다면 영국과 터어키 간의 환율이 크립 반도로의 군수품 수출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뉴마치는 정신적 혼란을 일으킨다. 그는 이미 제1,934호에서 이 간단한 질문에 옳게 대답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실천적 문제는 이미 다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제는 형이상학적 토론의 매우 고상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윌슨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자본의 어떠한 수출도 그것이 귀금속형태로 이루어지든 상품형태로 이루어지든 이에는 관계없이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자기의 주장을 또 다르게도 표현하고 있다. 윌슨은 물론 환율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특히 상호간의 환율이 문제로 되고 있는 두 나라의 이자율의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자본 일반의 과잉 즉 우선은 귀금속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상품의 과잉이 이자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그의 목표에 이미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사실상 이 경우에 이자본의 상당한 부분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은 두 나라의 이자율을——그것도 반대방향으로——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으로는 두 나라의 환율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다.—F. E.)

그는 당시에 그가 편집자로 있던 『이코노미스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1847년, [5월 22일], 574페이지).

“귀금속도 포함한 온갖 종류의 큰 예비로써 표시되는 자본의 그러한 과잉은 필연적으로 상품 일반의 가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본의 사용료인 이자율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1).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충분히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상품예비를 가지고 있다면 예비가 2개월분이 겨우 될까 말까 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낮은 이자율로 일정한 기간 이 상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2). 모든 화폐대부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간에 상품에 대한 지배권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이 남아 돌아간다면 화폐이자 는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상품이 적다면 화폐이자 는 오르지 않을 수 없다(3). 상품이 팔리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이 들어온다면 파는 사람의 수는 사는 사람의 수보다 많아질 것이며 또 상품량이 직접적인 소비의 수요를 넘는 정도에 따라 상품의 더욱더 많은 부분이 앞으로 소비되기 위하여 보관되지 않으면 안된다(4). 이러한 사정에서 상품소유자는 그의 모든 예비가 몇 주일 동안에 팔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보다 그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외상으로 또는 신용으로 상품을 파는 데 동의할 것이다.”

첫째 항목에 관하여 지적해야 할 것은 귀금속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생산이 출어드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황 직후에는 언제나 그러하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귀금속이 주로 귀금속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흘러 들어올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상품의 수입은 이 시기에는 보통 수출에 의하여 상쇄된다. 이 두 단계에서는 이자율이 낮으며 천천히 오를 따름이다. 어찌서 그런가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어떠한 온갖 종류의 큰 예비의 영향이 없이도 언제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예컨대 목화의 가격이 낮으면 방직업자 등의 이윤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어째서 이자율은 낮은가? 물론 곧 자본에서 생기는 이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사정에서는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 이윤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부자본의 운동은 산업자본의 운동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데 『이코노미스트』는 대부자본의 운동이 산업자본의 운동과 같다는 정반대의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둘째 항목은—— 앞으로 2년간의 소비를 보장하는 예비라는 어리석은 전제를 그것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도록 완화한다면——상품시장에서의 상품의 과잉상태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는 가격이 떨어진다. 한 짝의 목화에 대하여 전보다 적게 지불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짝의 목화를 사들이는 화폐를 전보다 값싸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화폐시장의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다. 화폐를 전보다 값싸게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상업신용이 은행신용에 평상시보다 적게 의거하여도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흘러 넘치는 상품은 생활수단이거나 또는 생산수단이다. 이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의 가격이 낮은 탓으로 산업자본가의 이윤은 늘어난다. 풍부한 산업자본과 화폐대부에 대한 수요간의 대립——일치가 아니라——이 아니고서는 무슨 이유로 이자가 떨어지겠는가? 사정은 상인과 산업가가 전보다 쉽게 서로 신용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상업신용을 얻기가 이렇게 쉽기 때문에 산업가나 상인은 은행신용의 필요성을 전보다 덜 느낀다. 따라서 이자율은 떨어질 수 있다.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귀금속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또 수입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과 똑같은 원인이 또한 수입되는 귀금속의 과잉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수입품시장이 실제로 과잉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가격이 낮은 조건에서는 국내 공업생산이 줄어든 결과로밖에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는 낮은 가격으로 지나치게 많은 것이 수입된 조건에서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불합리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병행하여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것은 산업자본의 운동과 대부화폐자본의 운동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서로 대립된다는 표현이지 그것이 일치한다는 표현은 아니다.

세제 항목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상품이 과잉상태에 있는 경우에 어쩌서 화폐이자가 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후에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상품이 녹으면 그 상품의 일정한 양을 사는 데는 종전의 2,0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예컨대 1,000파운드 스텔링이면 된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아마 2,000파운드 스텔링을 지출하여 그것으로 전의 2배나 되는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또 내가 꾸지 않으면 안되었을 같은 자본을 선대함으로써 나의 기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는 전과 같이 2,000파운드 스텔링만큼 사들인다. 따라서 상품시장에서의 나의 수요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늘지만 화폐시장에서의 나의 수요는 전과 다름 없다. 그러나 상품시장에서의 나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즉 상품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생산이 늘지 않는다면——이것은 『이코노미스트』의 모든 법칙과는 모순되게 될 것이다——이윤은 늘겠지만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늘어나는 이윤으로 하여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하튼 간에 상품가격이 낮은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에서 올 수 있다. 첫째로는 수요의 부족이다. 그 경우에 이자율이 낮은 것은 생산이 마비되기 때문이지 상품의 값이 낮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의 값이 낮은 것은 위에서 말한 생산마비의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원인으로 될 수 있다. 또 이것은 시장에서의 상품의 과잉상태——이것은 결국 공황을 일으킨다——등의 결과일 수 있으며 또 바로 공황 때는 높은 이자율과 일치할 수 있다. 또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으며 따라서 같은 수요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써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마지막 경우에 이자율은 어쩌서 떨어져야 하는가? 이윤이 늘기 때문

인가? 같은 생산자본이나 상품자본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화폐자본이 전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다만 이윤과 이자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여하튼 간에 『이코노미스트』의 일반적 명제는 그릇된 것이다. 상품의 화폐가격이 낮은 것과 이자율이 낮은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물의 화폐가격이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자율도 가장 낮아야 하며 농산물의 화폐가격이 가장 높은,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자율도 가장 높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이자율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100파운드 스텔링에서는 여전히 150파운드 스텔링이 생길 것이다.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5파운드 스텔링의 이자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이 비율은 본전의 가치가 오르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일정한 상품량은 가치로서 보면 일정한 화폐액과 같다. 일정한 상품량의 가치가 늘어난다면 이 상품량은 더 많은 화폐액과 같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반대로 된다. 만약 그 가치가 2,000이라면 그 5%는 100이다. 그 가치가 1,000이라면 그 5%는 50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이자율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양의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1,0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2,000파운드 스텔링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화폐대부가 요구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은 옳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것은 이윤과 이자간의 반비례를 표시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요소들의 값이 떨어짐에 따라 이윤은 늘지만 이자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될 수 있으며 사실상 흔히 그렇게 된다. 예컨대 목화는 실과 천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이 낮아질 수 있다. 또 면공업에서 이윤이 많아지면 목화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목화의 값은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목화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산업가의 이윤이 높아질 수 있다. 험바드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자율의 운동과 상품가격의 운동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만 이자율의 운동은 금속예비와 환율의 운동에 정확히 따라간다.*

* 이 권, 683~684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따라서 상품이 지나치게 많다면 화폐이자 는 낮지 않을 수 없다”고 『이코노미스트』에 쓰여 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공황 중에 일어난다. 즉 상품은 지나치게 많지만 화폐로 전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자율은 높다. 경기순환의 다른 단계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며 따라서 자본은 쉽게 되돌아오지만 한편 상품의 가격은 오르며 또 자본이 쉽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자율은 낮다.

“그것(상품)이 적다면 이자율은 높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공황 후의 불경기(Abspannung) 시기에 일어난다. 상품이——수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적다면 이자율은 낮다.

네째 항목에 대하여, 시장에 상품이 가득차 있는 경우에 상품의 소유자는 현재 있는 상품의 예비가 곧 팔릴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비하여 값싸게 팔리리라는 것은——일반적으로 말해서 팔 수가 있다면——매우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어찌서 이자율이 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다.

시장이 수입상품으로 가득차 있는 경우에 이자율이 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 상품을 보내려 하지 않는 소유자들 측의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율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업신용을 얻기가 쉬운 만큼 은행신용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자율이 오르고 화폐시장에 대한 다른 또 하나의 압박이 있었으므로 1847년의 환율이 급속한 영향을 받았다는 데 대하여 쓰고 있다. 그런데 시세는 달라졌으나 금은 4월 말까지 계속 흘러 나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 전환은 5월 초에 비로소 일어났

다.

"1847년 1월 1일에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는 15,066,691파운드 스텔링이었으며 이자율은 3½%였다. 3개월 기한의 환율은 파리에 대해서는 25.75%, 함부르크에 대해서는 13.10%, 암스테르담에 대해서는 12.3¼%였다. 5월 5일에 금속예비는 11,595,535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졌고 할인율은 4%로 올랐다. 환율은 파리에 대해서는 25.67½%로, 함부르크에 대해서는 13.9¼%, 암스테르담에 대해서는 12.2½% 떨어졌다. 금은 계속 흘러 나갔다."

다음 표(잡지 『이코노미스트』의 같은 논설 가운데 있는)를 보라.

1847년	잉글랜드 은행의 금속예비	화폐시장 형편	3개월 기한의 환율의 최고		
			파 리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3월 20일	11,231,630 (파운드 스텔링)	은행할인율 4%	25.67½	13.9¼	12.2½
4월 3일	10,246,410 "	" 5%	25.80	13.10	12.3½
" 20일	9,867,053 "	화폐의 심한 부족	25.90	13.10½	12.4½
" 17일	9,329,941 "	은행할인율 5½%	26.02½	13.10¼	12.5½
4월 24일	9,213,890 "	곤궁상태	26.05	13.13	12.6
5월 1일	9,337,716 "	심한 곤궁상태	26.15	13.12¼	12.6½
5월 8일	9,588,759 "	가장 심한 곤궁 상태	26.27½	13.15½	12.7¼

1847년에는 영국의 귀금속 총수출이 8,602,597파운드 스텔링이었다.

그 중 미국으로 수출된 것	3,226,411파운드 스텔링
그 중 프랑스로 수출된 것	2,479,892파운드 스텔링
그 중 한자 도시들로 수출된 것	958,781파운드 스텔링
그 중 네덜란드로 수출된 것	247,743파운드 스텔링

3월 말에 환율이 달라졌으나 아직도 만 1개월이나 금이 계속 흘러 나

갔는데 그것은 아마 미국으로 흘러 나갔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1847년 8월 21일 『이코노미스트』, 954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자율의 상승과 그 뒤를 이은 화폐부족은 신속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환율을 바로잡고 금의 운동을 변동시켰으며 그리하여 금은 다시 영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이 작용은 지불균형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이자율이 오름으로써 영국과 외국의 유가증권시세가 떨어졌으며 외국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많이 사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 발행하는 어음액은 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조건에서 화폐를 얻기가 매우 힘들었으므로 이 어음에 대한——그 액은 늘었는데——수요는 줄었다. 같은 원인으로 외국상품에 대한 주문은 취소되었으며 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되었던 영국자본은 화폐로 실현되고 그 화폐는 투자되기 위하여 영국으로 갔다. 예컨대 5월 10일의 『리오데자네이로 물가통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환율(영국에 대한)은 다시금 떨어졌는데 이것은 주로 영국의 비용으로 국채(브라질의)를 많이 판 그 대금의 송금어음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주는 압박으로 하여 생긴 것이다.”

영국에서 이자율이 매우 낮던 때에 외국에서 여러 가지 유가증권에 투자되었던 영국자본은 이자율이 올랐을 때에 이와같이 회수되었던 것이다.

제4절 영국의 무역균형

인도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정치에 대한 댓가로 약 500만의 공납——즉 영국자본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분적으로는 관리들이 자기 봉급 중에서 지급한 것을 또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상인들이 자기 이윤의 일부분을 영국에서 투자하기 위하여 해마다 영국으로 붙이는 금액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같은 원인으로 영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많은 액의 송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호주, 스트레일리아, 서인도,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은 영국의 자본으로

세워졌으며 배당금은 영국에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영국은 외국 의——구라파, 북 아메리카 및 남 아메리카의——유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영국은 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다. 그 밖에 또 영국은 외국 의 철도, 운하, 광산 등에 출자하여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에 대한 지불은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수출액을 초과하는 생산물로써 실시된다. 한편 영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금액——영국의 유가증권의 소유자 앞으로 나가는 금액과 외국에 있는 영국 사람이 소비하는 금액——은 이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것이 무역균형과 환율에 관계되는 한에서는

“일정한 어느 순간에서도 시간문제이다. 흔히… 영국은 수출에 대해서는 장기신용을 주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일정한 순간에는 지불 기일의 이러한 차이는 환율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의 수출이 예컨대 1850년과 같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영국자본의 투자는 끊임없이 늘어나며… 그리하여 1849년에 수출된 상품의 댓가는 1850년에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1850년에 수출이 1849년의 수출보다 600만이 많다면 그 실제적 결과는 이 해에 되돌아오는 것보다 이 금액만큼 더 많은 화폐가 국외로 나간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환율과 이자율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사업이 공황에 의하여 침체되고 또 우리의 수출이 매우 줄어들게 되면 그전 몇 해 동안의 많은 수출의 댓가로 받는 송금은 우리의 수입의 가치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환율은 이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고 자본은 국내에서 급속히 축적되며 이자율은 떨어진다”(『이코노미스트』, 1851년 1월 1일(30페이지)).

대외환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1) 일시적인 지불균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이 균형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규정되든 즉 순상업적 원인에 의하여 규정되든, 대외투자에 의하여 규정되든, 또는 전쟁 등에서의 국가지출——이 경우에 외국에서 현금지불이 실시되는 한에서——에 의하여 규정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2) 일정한 나라의 화폐——이것이 금속화폐든 지폐든 간에——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 환율의 변동은 순전히 명목적인 것이다. 만약 1파운드 스텔링이 일정한 순간에 전의 반액의 화폐밖에 표시하지 않는다면 1파운드 스텔링은 25프랑이 아니라 12½프랑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3) 화폐로서 은을 사용하는 나라와 금을 사용하는 나라의 환율이 문제라면 환율은 두 금속의 상대적 가치의 변동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동으로 두 금속 사이의 평가는 틀림없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례는 1850년의 환율이다. 영국의 수출은 매우 늘었으나 환율은 영국에 불리하였다. 그러나 금은 흘러 나가지 않았다. 이것은 금의 가치에 비하여 은의 가치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다(『이코노미스트』, 1850년, 11월 30일(1319~1320페이지)을 보라).

환율의 평가는 1파운드 스텔링 당 파리에 대해서는 25프랑 20쌍뎀, 함부르크에 대해서는 13마르크—방코 10½실링, 암스테르담에 대해서는 11플로린 97센트이다. 파리에 대한 환율이 25.20 이상으로 오름에 따라 그것은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채무자나 또는 프랑스 상품의 영국인 구매자에게는 유리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은 다 이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운드 스텔링이 적어도 된다. 귀금속을 얻기가 쉽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어음이 극히 적어서 영국으로 송금하는 데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자연적 결과로서 흔히 영국에 수출하는 생산물의 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어음 대신에 이 생산물을 영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이 생산물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인도에서 자주 일어난다.

영국에 화폐가 지나치게 많고 이자율이 낮으면 유가증권의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환율이 불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금이 흘러 나갈 수도 있다.

1848년에 영국은 인도에서 많은 양의 은을 받았다. 그것은 1847년의 공황과 인도와의 거래에서 신용이 매우 떨어진 탓으로 좋은 어음은 얼마 되지 않고 보통어음은 잘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은은 모두 화당기가 무섭게 곧 대륙으로 흘러 갔는데 거기에서는 혁명에 의하여 어디에서나 화폐퇴장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1850년에는 똑같은 이 은이 대부분 인도로 되돌아갔는데 그것은 환율의 상태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유리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현금제도는 주로 천주교적인 것이라면 신용제도는 주로 신교적인 것이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금을 싫어한다. 지폐에서는 상품의 화폐적 존재는 다만 사회적 존재일 뿐이다. 신앙만이 사람들을 구원한다.”¹⁴ 상품의 내재적 정신으로서의 화폐가치에 대한 신앙, 생산양식과 미리 정해진 그 질서에 대한 신앙, 스스로 가치가 불어나는 자본의 단순한 인격화로서의 하나하나의 생산당사자들에 대한 신앙, 그러나 신교가 천주교의 기초에서 해방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제도는 현금제도의 토대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제 36 장 전자본주의적 관계

이자 붙는 자본 또는 고리대자본——이자 붙는 자본의 옛날 형태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은 그 쌍둥이인 상인자본과 아울러 자본의 태고적 형태인데 이 형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훨씬 선행하는 것이며 또 매우 각이한 사회경제적 구성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리대자본이 존재하자면 적어도 생산물의 일부가 상품으로 전화되며 또 상품거래와 함께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이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리대자본의 발전은 상인자본의 발전, 특히 화폐거래자본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가공업이 고대세계에서의 평균발전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진 공화국 말기부터 상인자본, 화폐거래자본 및 고리대자본——고대적 형태의 태두리 안에서——이 최고도로 발전하였다.

화폐와 함께 화폐퇴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직업적 화폐퇴장자는 고리대금업자로 전화되는 때에 비로소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상인이 화폐를 꾸는 것은 그 화폐를 가지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며 이것을 자본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즉 지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초기의 형태에서도 화폐대부자는 상인에게 대립하는데 이것은 그가 근대적 자본가에게 대립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이 특수한 관계는 천주교 대학들에서도 알고 있었다.

“알칼라, 살라만카, 인골슈타트, 브라이스가우의 프라이부르그, 마인쯔, 쾰른 및 트리르 대학들은 연이어 상업대부에 대한 이자의 정당성을 승인하였다. 첫 5개 대학들이 이것을 승인한 사실은 리옹 시청의 기록에 들어 있으며 『고

* 이 책, 제 I 권(1), 154~163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리대와 이자론』(리옹, 브뤼제-뽕뛰)의 부록에 인쇄되어 있다(M. 오지에, 『... 공공신용에 관하여』, 파리, 1842년, 206페이지).

노예경제(부가장적인 경제가 아니라 후의 회랍과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가 치부수단으로 되며 따라서 화폐가 노예와 토지 등을 사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차지하는 수단으로 되는 모든 형태에서 화폐는 바로 그렇게 투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되며 이자를 낳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이전시기에 고리대자본이 존재하는 특징적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특징적 형태들이다. 바로 이 형태들은 후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도 되풀이되지만 단순히 종속적인 형태들로서만 되풀이된다. 그것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이미 이자 붙은 자본의 성격을 규정하는 형태들은 아니다. 이 두 형태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는 낭비하는 양반들, 주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화폐를 꾸주는 고리대. 둘째로는 자기 자신의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소생산자들에게 화폐를 꾸주는 고리대. 이 소생산자들 중에는 수공업자도 들어 있으나 특히 농민이 들어 있다. 그것은 전자본주의적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립적인 개별적 소생산자들이 있게 되는 한에서는 농민계급이 그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고리대에 의하여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이 영락하는 것과 또 소생산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 이 두 가지로 하여 큰 화폐자본이 이루어지며 집적된다. 근대 구라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 과정이 어느 정도로 넓은 생산양식을 깨뜨리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들어서는가 안서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역사발전단계와 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정들에 달려 있다.

이자 붙은 자본의 특징적 형태로서의 고리대자본은 자기 노동에 의하여 살아가는 농민과 소수공업장주의 소생산이 우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 상응하는 것이다.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와 같이 노동조건과 노동생산물이 자본으로서 노동자에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로서의 노동자는 화폐를 꿀 필요가 없다. 그가 화폐를 꾸는 경우에는

예컨대 전당포에서 자기의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가 자기 노동조건과 자기 생산물의 실제적 또는 명목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생산자로서의 그는 고리대자본으로서 그에게 대립하는 화폐대부자의 자본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뉴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이 사실을 비속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그는 주장하기를 은행업자는 부자에게 화폐를 꾸주는데 고리대금업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꾸주기 때문에 은행업자는 존경을 받고 고리대금업자는 증오와 멸시를 받는다고 한다(F. W. 뉴만, 『정치경제학 강의』, 런던, 1851년, 44페이지). 그는 은행업자와 고리대금업자간에는 두 개의 사회적 생산양식과 그것들에 상응하는 사회적 질서의 차이가 있으며 또 이 문제는 빈부의 대립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난한 소생산자를 빨아먹는 고리대금은 부유한 대토지소유자를 빨아먹는 고리대금과 보통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로마귀족의 고리대가 로마의 평민인 소농민을 완전히 영락시키자 이 착취형태는 끝장이 났고 그리고 소농민경제 대신에 순노예경제가 나타났다.

이 경우에 고리대금업자는 이자의 형태로 생산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수단(후에 임금을 이루는 액)을 넘는 모든 잉여분(후에 이윤과 지대로서 나타나는 것)을 삼켜버릴 수 있다. 이 이자의 높이를 근대적 이자율의 높이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것은 첫째 경우는 국가의 몫으로 되는 것을 제쳐놓고는 모든 잉여가치를 다 빼앗는데 둘째 경우는 이자는—— 적어도 정상적인 이자는—— 이 잉여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임금노동자는 그가 고용되는 자본가에게 이윤, 이자 및 지대를, 요컨대 모든 잉여가치를 다 생산하여 바치고 있다는 것이다. 케어리는 자본의 발전과 이에 따르는 이자율의 저하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무의미한 비교를 하고 있다. 또한 고리대금업자가 자기의 희생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점차 희생자의 노동조건 자체——토지, 집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희생자들을 그렇게 착취하려 한다면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노동자에게서 그외 노동조건을 완전히 수탈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향하는

결과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발점으로 되는 이미 마련된 전제라는 것이다. 임금노예는 진짜 노예와 꼭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처지로 하여—— 적어도 생산자의 자격으로서는—— 채무노예로 될 수 없다. 그는 소비자의 자격으로서만 채무노예로 될 수 있다. 고리대자본은 이 형태에서는 생산양식 자체는 변경시키지 않고 사실상 직접적 생산자들의 모든 잉여노동을 차지하며, 노동조건에 대한 생산자들의 소유 또는 취득과 이에 상응하는 분산된 소생산을 본질적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은 노동을 직접 자체에 종속시키지는 않으며 그리하여 자본은 산업자본으로서 노동에 대립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리대자본은 이 생산양식을 가난하게 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킬 대신에 이것을 마비시키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와 같이 사회적 노동생산능률이 노동 그 자체를 희생으로 하여 발전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영구화시킨다.

이와 같이 고리대는 한편으로는 고대적 및 봉건적 채부와 고대적 및 봉건적 소유를 전복하고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소농민적 및 소부르주아적 생산을, 간단히 말하여 생산자가 아직 자기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모든 형태들을 전복하고 영락시킨다.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노동자는 생산조건——그가 밭갈이 하는 땅, 그가 가공하는 원료 등——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생산자로부터의 생산조건의 이러한 소외에는 생산양식 그 자체에서의 실제적 변혁이 상응한다. 따로따로 있던 노동자들은 서로 내적으로 연결된 하나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작업장에 통합된다. 노동도구는 기계로 된다. 생산양식 자체가 이제는 소소유와 연결된 생산도구의 이러한 분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노동자 자신의 고립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고리대는 이제는 생산자에게서 생산조건을 떼어낼 수 없다. 그것은 생산조건을 이미 떼어냈기 때문이다.

고리대는 생산수단들이 분산되어 있는 곳에 화폐채산을 집중시킨다. 고리대는 생산양식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생충으로서 그것에 붙어서 그것을 비참하게 만든다. 고리대는 생산양식의 피를 빨아먹으며 그것을 쇠약하게 만들며 재생산이 더욱더 비참한 조건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인민의 증오는 고대세계에서 특히 강하였는데 이 고대세계에서는 생산조건에 대한 생산자의 소유가 동시에 시민의 정치적 관계의 기초, 자립성의 기초였던 것이다.

노예제도가 지배하는 한에서는 또는 잉여생산물을 봉건영주와 그 하인들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노예소유자나 봉건영주가 고리대금업자의 손아귀에 있는 한에서는 생산양식은 전과 다름이 없다. 생산양식은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될 따름이다. 빚을 진 노예소유자나 봉건영주는 그 자신이 더 많이 빨리기 때문에 더 많이 빨아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고리대금업자에게 자리를 내주며 이 고리대금업자 자신이 고대 로마의 기사와도 같이 토지소유자나 노예소유자로 된다. 옛 착취자의 착취는 그것이 주로 정치적 권력수단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이 착취자 대신에 이번에는 가혹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벼락부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생산양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전자본주의적인 모든 생산양식에서 고리대가 혁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소유형태——소유형태의 튼튼한 기초와 또 같은 형태의 소유형태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데 정치제도가 발을 붙이고 있다——를 파괴하며 해체함으로써만이다. 아시아적 형태들에서는 고리대가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 부패 외에는 다른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다른 조건들이 있는 곳에서만 또 그러한 때에만 고리대는 한편으로는 봉건영주와 소생산자들을 영락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건을 집중시켜 그것을 자본으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생산양식을 형성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나타난다.

*중세기에는 어느 나라에도 일반적 이자율이란 없었다. 교회는 애당초부터 이자를 낳는 모든 거래를 금지하였다. 법률과 법정은 채무의 상환을 거의 보장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적 경우에는 이자율이 더 높았다. 화폐유통은 보잘것없고 지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화폐를 꾸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어음거래가 발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 그러하였다. 이자율에서나 고리대라는 개념에서나 큰 차이가 있었다. 칼 대제 시대에

는 100%를 징수하면 고리대라고 보았다. 보덴 호반의 린다우에서는 지방주민들이 1344년에는 216⅔%를 징수하였다. 쾰리히에서는 시평의회가 43⅓%를 법에서 정한 이자로 규정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2~14세기에 보통의율은 20%를 넘지 않았지만 때때로 40%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페로나에서는 12⅓%를 법에서 정한 이자로 정하였다.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10%로 정하였으나 이것은 유대인에 대해서만이었다. 그는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미 13세기에 독일령 라인 지방에서는 10%가 보통의 율이었다(힐만, 『중세기의 도시제도』, 제2부, 본, 1827년, 55~57페이지).

고리대자본은 자본의 생산양식을 가지지 않고 자본의 착취방식을 가진다. 이 관계는 부르조아 경제 내부에서도 낙후한 산업부문들에서나 또는 근대적 생산양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산업부문들에서 되풀이된다. 예컨대 영국의 이자율과 인도의 이자율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을 들 것이 아니라 예컨대 가내공업의 소생산자들에게 작은 기계를 빌려주는 자들이 이 소생산자들에게서 징수하는 이자율을 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고리대는 소비적 재부에 대립하는 것인데 그 자체는 자본의 발생과정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고리대자본과 상인의 재부는 토지소유와는 관계가 없는 화폐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인다.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성격이 발전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교환가치가 생산을 전체 너비와 깊이에서 지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화폐는 더욱더——사용가치로서의 재부의 제한된 표현방식에 대립하여——원래의 재부로서, 재부 그 자체로서, 일반적 재부로서 나타난다. 화폐퇴장은 이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화폐와 퇴장화폐로서의 화폐를 제쳐놓는다면 화폐는 바로 지불수단의 형태에서 상품의 절대적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야말로 이자와 또한 화폐자본도 발전시키는 기능인 것이다. 낭비적이고 퇴폐적인 재부가 원하는 것은 화폐로서의 화폐 즉 무엇이든 살 수 있는(또 채무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화폐이다. 그러나 소생산자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지불을 하기 위한 화폐이다(토지소유자와 국가에 바치는 현물공납과 공조가 화폐지대와 화폐조세로 전화하는 것이 여

기에서는 큰 역할을 논다). 두 경우에 다 화폐로서의 화폐가 요구된다. 한편 화폐퇴장은 비로소 고리대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되며 자체의 꿈을 실현한다. 퇴장화폐의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화폐이다. 그러나 그는 이자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 퇴장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즉 그는 잉여노동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또 생산조건 자체——비록 이것이 명목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그에게 계속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의 일정한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화시킨다. 에피쿠로스의 신들이 세계들 사이의 공간에 살고 있듯이¹⁵ 고리대는 생산의 틈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상품 형태가 생산물의 일반적 형태로 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화폐를 얻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업자는 화폐수요자의 지불능력 또는 저항능력밖에는 아무런 한계도 모른다. 소농민적 및 소부르주아적 생산에서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우연적인 재난이나 어떤 비상사고로 하여 노력자가 필요한 생산조건을 잃거나(노력자는 이 생산양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직 생산조건의 소유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생산조건이 재생산의 보통 과정으로써는 보상될 수 없는 경우이다. 생활수단과 원료는 이러한 생산조건의 주되는 부분을 이룬다. 그 값이 오르면 생산물을 판 돈에서 그것들을 보상할 수 없다. 예컨대 다만 흉작만으로도 농민은 종곡을 현물로써 보상할 수 없다. 전쟁에 의해 로마의 귀족은 평민을 영락시켰으며 그들을 강제로 군대에 복무케 하여 그들이 자기의 노동조건을 재생산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는데(재생산조건의 빈궁화, 위축 또는 상실의 여기에서는 지배적 형태이다) 바로 이 같은 전쟁은 귀족의 창고와 지하실을 전리품인 동——당시의 화폐——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귀족은 평민에게 필요한 상품인 곡식, 말, 뿔 있는 집짐승을 직접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소유가 없는 이 동을 그들에게 꾸주었으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고리를 짜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민을 자기의 채무노예로 만들었다. 칼 대제 시기에 프랑크의 농민도 역시 전쟁에 의하여 영락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채무자에서 농노로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로마 제국에서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기근으로 하여 자유민은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신을 부자에게 노예로 팔게 되는 일이 흔히 있었다. 일반적 전환점은 이상과 같다. 하나하나의 경우를 놓고 보면 소생산자의 경우에 생산조건을 유지하거나 또는 잃어버리는 것은 무수한 우연적 재난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우연적 재난이나 상실은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리대 기생충이 들어붙을 수 있는 계기로 되는 것이다. 한 마리의 황소가 죽기만 하여도 벌써 소농민으로서는 종전의 규모로 재산을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고리대금업자의 손아귀에 들며 그리고 한번 그의 손아귀에 들기만 하면 결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지만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야말로 고리대의 본래의 광범하고 독특한 지반이다. 일정한 기일에 지불해야 할 온갖 화폐납부——차지료, 공납, 세금 등——로 하여 화폐지불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는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세금징수 청부인의 기능에 붙어 다닌다. 그리고 상업과 상품생산의 일반적 성격이 발전함에 따라 구매와 지불간의 시간상 분리가 발전한다. 화폐는 일정한 기일에 내주어야 한다. 근대의 화폐공황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으로 하여 오늘날에도 화폐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리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필요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주되는 수단으로 된다. 고리대는 생산자를 더욱더 빚으로 얹어매며 그의 일상적인 지불수단을 빼앗는데 그것은 생산자의 경우에 이자의 부담 한 가지 때문에만도 규칙적인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고리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서 자라나 고리대의 진정한 지반인 화폐의 이 기능을 확대한다.

신용업은 고리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발전한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되며 고대 저술가들, 교부들, 루터 또는 구사회주의자들이 쓰던 의미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것은 이자 붙는 자본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조건과 요구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이자 붙는 자본은 근대적 신용제도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조건

에 적응하게 된다. 고리대 자체는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국가들에서는 종전의 모든 입법에 의해서 고리대가 받던 제한에서 해방된다. 이자 붙는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알맞는 의미에서는 돈을 팔 수 없는 그런 사람이나 계급에 대해서 또는 그런 관계에서는 고리대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예컨대 전당포에서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꾸는 경우, 향락생활을 하는 부자가 낭비를 위하여 꾸는 경우, 또는 생산자가 소농민, 수공업자 등과 같은 자본주의적이 아닌 생산자이며 따라서 아직 직접적 생산자로서 자기 자신의 생산조건의 소유자인 경우, 끝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자 자신이 위에서 이미 이야기된 스스로 노동하는 생산자에 가까울 만큼 소규모로 사업하는 경우이다.

이자 붙는 자본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한에서 고리대자본과 차이가 나는 점은 결코 고리대자본 자체의 본성이나 성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오직 고리대자본이 활동하는 조건이 달라졌고 또 돈을 쥐주는 사람과 맞서는 꾸는 사람의 면모가 이 조건에 의하여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산업가나 상인으로서 신용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가 자본가로서 기능을 하며 곧 자본으로 부지불노동을 차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경우만이다. 그는 잠재적 자본으로서 신용을 얻는 것이다. 또 재산은 없지만 정력, 건실성, 능력 및 사업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와같이 자본가로 될 수 있다는——그것도 그럴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개개인의 기업가적 재능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이 사정은 경제학적 변호론자들을 크게 감탄시키고 있으며 또 기성 자본가들로서는 매우 반갑지 않은 행운을 찾는 새로운 모험가들을 수없이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정은 자본 자체의 지배를 공고히 하며 자본의 토대를 확대하며 또 자본으로 하여금 하층사회 출신의 새로운 역량으로 끊임없이 인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중세기에 천주교가 신분, 출신,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인민의 우수한 분자로써 자체의 위계제를 꾸려 놓았다는 사정이 승려의 지배를 튼튼히 하고 속세의 사람들에게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주되는 수단이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 출신의 가장 우수한 인물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계급의 지배는 더욱 튼튼하고 또 더욱 위험하다.

그러므로 근대적 신용제도의 발기자들의 출발점은 이자 붙는 자본 일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공공연한 인정이다. 예컨대 공설전당포(1350년에는 프랑크 백작령의 샤를랭에, 그 후에 1400년과 1479년에는 이탈리아의 페루지아와 싸보나에 있었다)¹⁶⁾와 같이 빈민을 고리대로부터 보호하려던 고리대에 대한 반작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시설은 선량한 염원이 실현되면 그것은 그 정반대의 것으로 된다는 역사의 풍자를 보여주기 때문에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영국의 노동계급은 적게 보더라도 100%를 이 공설전당포의 후신인 전당포에 지불하고 있다.²¹⁾ 우리는 또한 17세기의 마지막 10년간에 토지소유를 담보로 지폐를 내주는 토지은행에 의해서 영국의 귀족을 고리대로부터 해방하려 한 휴 챔벌린 박사나 존 브리스코와 같은 사람들의 신용환상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기로 한다.²²⁾

12세기와 14세기에 베니스와 제노바에 조직된 신용조합은 구식 고리대

21) “전당포 이자가 그렇게 지나치게 높은 것은 한 달 동안에 자주 잡혔다 찾아냈다 하거나 한 물건을 찾아내려고 다른 물건을 잡히며 그리하여 적은 화폐차액을 얻기 때문이다. 런던에는 240개, 지방에는 약 1,450개의 허가를 받은 전당포가 있다. … 사용되는 자본은 약 100만이다. 이 자본은 한 해에 적어도 세 번 회전하며 매번 평균 33½%를 낳는다. 그리하여 영국의 하층계급은 잡힌 물건을 찾을 기일을 농침으로써 입는 손실은 제쳐놓고라도 일시적인 대부 100만에 대하여 해마다 100%를 지불한다”(J. D. 터케트, 『과거와 현재의 근로자들의 형편에 대한 역사』, 런던, 1846년, 제1권, 114페이지).

22) 그들은 자기들의 저서¹⁷⁾의 표제에도 주요 목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의 일반적 복리, 토지가치의 큰 증대, 귀족과 소귀족 등의 세금면제, 이들의 한 해 소득의 증대 등.” 그들의 말에 의하면 프랑스의 침략군이 입힐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손해를 귀족과 자작농*에게 입힌 국민의 이 극악한 원수인 고리대금융자만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 이 책, 제I권(2), 905~90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금업자의 지배와 화폐거래와 독점자들로부터 해상무역과 이에 기초한 도매상업을 해방시키려는 요구에 의하여 생겨났다. 이러한 도시공화국들에 세운 본래의 의미의 은행들은 동시에 공공신용을 위한 기관——앞으로 징수할 세금을 담보로 하여 국가가 이 기관에서 대부를 받았다——으로서 나타난다면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이 조합을 조직한 상인들 자신은 이 국가의 일류급 인사들이며 따라서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자기 정부와 자기 자신을 해방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며²³⁾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자기에게 더욱더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복종시키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은행을 창립하려고 하였을 때 토리당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은행이란 공화국의 기관이다. 변명하는 은행들이 베니스, 제노바, 암스테르담 및 함부르크에 있다. 그런데 누가 프랑스 은행 또는 에스파니아 은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1609년에 창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은 함부르크 은행(1619년)과 마찬가지로 근대 신용업의 발전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순전한 예금은행이었다. 은행이 발행한 어음은 사실상 은행에 맡긴 귀금

-
- 23) “예컨대 영국의 찰스 2세도 은장(은행업자의 선구자)에게 20~30%라는 엄청난 고리와 구전을 지불해야 하였다. 영업이 매우 유리하였기 때문에 은장들은 신이 나서 왕에게 더욱더 많이 대부를 하였으며 모든 세금수입을 예상하고 의회에서 화폐지출에 대하여 동의하기가 무섭게 모든 지출을 담보로 잡았으며 또 서로 다투어 어음, 지불명령서, 세금증서를 사거나 저당잡았으며 그리하여 사실상 모든 국가소득은 이들의 손을 거쳤다”(존 프랜시스, 『잉글랜드 은행사』, 런던, 제3판, 제1권, [1848년], 31페이지). “은행창립문제는 이미 전에 여러 차례 제외되었다. 그것이 마침내 필요하게 되었다”(같은 책, 38페이지). “은행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빨리고 있던 정부가 의회의 화폐지출을 담보로 건딜 만한 이자로서 화폐를 얻기 위해서만도 필요하였다”(같은 책, 59~60페이지).

속——주화 또는 덩어리금——에 대한 영수증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영수자의 양도서명이 있어야만 유통하였다. 그러나 네델란드에서는 상업 및 공장제 수공업과 함께 상업신용과 화폐거래도 발전하였으며 이자 붙는 자본은 발전과정 그 자체에 의하여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자율이 낮은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네델란드는 오늘날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로 인정되었다. 빈곤에 발을 붙인 구식 고리대의 독점은 거기에서는 스스로 무너져버렸다.

네델란드의 실례를 들면서 이자 붙는 자본을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에 종속시키기 위하여——그 반대로가 아니라——이자율을 강제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8세기 전체를 통하여 높아졌으며 그리하여 입법은 이 방향에서 행동하였다. 이것을 주장한 주되는 인물은 영국의 근대적 개인은행의 선조인 죠시아 차일드 경이다. 그는 대량적인 기성복제조업자인 모세스 선(Moses & Son) 회사가 자체를 개인재봉업자들의 독점을 반대하는 투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고리대금업자들의 독점을 반대하여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 죠시아 차일드는 동시에 영국의 증권거래업의 선조인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동인도회사의 독재자인 그는 무역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의 독점을 옹호한다. 그는 토마스 만리(「오해를 받은 화폐이자」)¹⁾를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겁하고 부들부들 떠는 고리대금업자 무리의 이익을 수호해 나선 그는 나 자신이 가장 약한 곳이라고 인정한 바로 그 지점에 주요포대를 구축한다. 그는 이자율이 낮은 것이 채부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것은 채부의 결과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상업에 관한 연구』, 1669년, 번역판, 암스테르담과 베를린, 1754년, 120페이지), “상업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며 또 이자의 인가가 상업을 발전시킨다면 이자를 낮추거나 고리대를 제한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국민의 채부가 많아지는 주요한 원인이다. 같은 사물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원인인 동시에 다른 조건에서는 결과로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여 결코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같은 책, 155페이지), “달같은 암탉의 원인

이요 압탄은 달걀의 원인이다. 이자가 떨어지면 재부가 늘 수 있으며 재부가 늘는 것이 이자가 더욱더 떨어지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다(같은 책, 156페이지). 나는 근로의 변호자이지만 나의 반대자는 나태와 안일의 변호자이다”(같은 책, 179페이지).

고리대를 반대하는 이 맹렬한 투쟁, 이자 붙는 자본을 산업자본에 종속시킬 데 대한 이 요구는 근대적 은행업——이것은 한편으로는 사장된 모든 화폐예비를 집적하여 화폐시장에 던져넣음으로써 고리대자본에서 그 독점을 빼앗고 또 한편으로는 신용화폐를 만들어냄으로써 귀금속의 독점 자체를 제한한다——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러한 조건들을 실현한 유기적 창조물의 선구에 지나지 않는다.

차일드의 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17세기 마지막 3분의 1기와 18세기 초의 영국은행업에 관한 모든 저서에는 고리대에 대한 반대, 고리대로부터 상업, 산업 및 국가를 해방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 동시에 신용의 기적적 영향, 귀금속의 독점을 없애는 것이 미치는 기적적 영향, 귀금속을 지폐로 바꾸는 것 등에 관한 굉장한 환상이 들어 있다. 잉글랜드 은행과 스코틀랜드 은행의 창립자인 스코틀랜드 사람 윌리엄 패터슨은 틀림없이 로 1세(Law the First)¹⁹라고 할 만하다.

잉글랜드 은행을 반대하여 “모든 은장주들과 전당포주인들이 격분의 한성을 올렸다”(매콜리, 『영국 역사』, 제4권, 런던, 1855년, 499페이지).

“첫 10년 동안 잉글랜드 은행은 큰 곤란 즉 외부로부터의 심한 적대감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은행의 은행권은 명목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인수되었다. … 은장주들(그들에 의해서 귀금속 거래는 원시적인 은행업무의 토대로 되었던 것이다)은 이 은행을 반대하는 큰 음모를 꾸몄다. 왜냐하면 이 은행으로 하여 그들의 거래는 줄어들었으며 그들의 할인율은 떨어졌고 정부와의 그들의 거래는 이 적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J. 프란시스, 같은 책, 73페이지).

잉글랜드 은행이 창립되기 전에 벌써 1683년에 국립신용은행안이 나왔

는데 이 은행의 목적은 특히 다음과 같은 데 있었다. 즉

“사업가들이 상당한 양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들이 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상품을 팔기고 이 고착된 예비를 담보로 신용을 얻으며 또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직시키고 그리고 유리한 시장이 발견될 때까지 손해를 보지 않고 팔며 그들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⁰

많은 노력 끝에 이 신용은행은 드디어 비숍스게이트 거리의 데본셔 회관에 개설되었다. 이 은행은 산업가들과 상인들에게 그들이 맡긴 상품을 담보로 이 상품가치의 3/4을 어음으로 대부하였다. 이러한 어음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개 사업부문에서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어음의 소유자는 누구나 다 그가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쉽게 어음을 내고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은행의 사업은 번영하지 못하였다. 기구가 지나치게 복잡하였으며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험이 지나치게 컸던 것이다.

영국에서의 근대적 신용업의 형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장려한 이상의 저서들의 실제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자 붙는 자본과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수단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조건의 하나로서 이 생산양식에 복종시킬 데 대한 요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저 문구에만 주의를 돌린다면 하나하나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생시몽주의자들의 은행환상 및 신용환상과 같은 데 흔히 놀라게 된다.

중농주의자들의 경우에 경작자는 실제적인 농민이 아니라 대차지농업가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시몽의 경우에는——그리고 그의 학파의 경우에는 일관하여 그러하다——노력자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를 의미한다.

“노력자는 조수, 협조자,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는 똑똑하고 능숙하고 충실한 조수를 찾는다. 그는 이들에게 일시키는데 이들의 노동은 생산적이다”(『생시몽 파의 종교, 정치경제학과 정치』, 파리, 1831년, 104페이지).

일반적으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생시몽은 그의 마지막 저서 『신기독교』에서 비로소 직접 노동계급의 대변자로서 등장하였으며 노동계급의 해방을 자기의 노력의 종국적 목적이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전의 모든 저서는 사실상 봉건사회를 반대한 근대적 부르조아 사회의 찬미에 지나지 않으며 또는 나폴레옹 시대의 원수들과 법률작성자들을 반대한 산업가들과 은행업자들의 찬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저서들과 당시의 오웬의 저서들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²⁰⁾ 방금 인용한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시몽의 후계자들의 경우에도 산업자본가는 외연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력자이다. 이들의 저서들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신용과 은행에 대한 그들의 꿈을 실현한 것이 전의 생시몽주의자인 에밀 베레르가 창립한 동산신용회사²¹⁾였다는 데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하튼 간에 신용제도도 대산업도 아직 근대적 수준에까지 발전되지 않았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만 지배적인 것으로 될 수 있었던 형태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었다——『생시몽의 학설, 해설, 제1년, 1828~1829년』, 제3판, 파리, 1831년에서 인

-
- 24) 맑스가 원고에 다시 손을 대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부분을 많이 수정하였을 것이다. 이 부분은 프랑스의 제2제국시기에 전의 생시몽주의자들이 는 역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데 맑스가 이 글을 쓰던 바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세계를 구제할 것이라는 이 학파의 신용환상은 역사의 풍자에 의하여 전례없는 대사기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 후 맑스는 오직 경탄하여 생시몽의 천재와 백과전서적 두뇌에 대해서 말했을 따름이다. 생시몽이 그의 초기의 저서들에서 부르조아지와 프랑스에서 당시 겨우 생겨난 데 불과한 프롤레타리아트와의 대립을 무시하였다면, 그가 부르조아지 중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일부를 노력자에 넣었다면 이것은 자본과 노동을 타협시키려던 푸리에의 견해에 상응하는 것이며 당시의 프랑스의 경제적 및 정치적 형편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오웬이 이 점에서 더 앞을 내다보았다면 그것은 오직 그가 다른 환경에서 즉 산업혁명과 이미 몹시 첨예화된 계급적 대립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F. E.

용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이미 동산신용회사의 맹아가 있다. 은행업자는 자본가나 개인고리대금업자보다 더 값싸게 대부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 은행업자들은

“꾸는 사람을 고르는 데서 실수하기 쉬운 토지소유자와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값싸게 즉 보다 낮은 이차로 산업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202페이지).

그런데 저자 자신이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놀고 먹는 자와 노력자 사이의 은행업자의 매개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득은 흔히 상쇄되며 심지어 없어지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무질서한 사회로 하여 이기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만과 사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은행업자는 흔히 놀고 먹는 자와 노력자 사이에 끼여들으로써 사회에 해롭게 이 두 편을 다 착취한다.”

노력자는 여기에서는 산업자본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하튼 간에 근대은행이 지배하는 자금을 오로지 놀고 먹는 자의 자금이라고만 보는 것은 전혀 잘못이다. 첫째로 이것은 자본 중에서 산업가와 상인이 화폐예비로서 또는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자본으로서 화폐형태로 일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은 놀고 있는 자본이지 놀고 먹는 자들의 자본은 아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과 저축 중에서 중국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축적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은행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은 첫째로, 화폐——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의연히 기초로 되는데 신용업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 보아 이 기초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신용제도는 사회적 생산수단(자본 및 토지소유 형태의)에 대한 개인의 독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신용제도 자체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형태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 생산양식을 이 양식에 있을 수 있는 형태들

중에서 최고의 마지막 형태로 발전시키는 추진력이라는 것이다.

은행제도는 형식적인 조직과 집중의 점으로 보아 이미 1697년에 「영국의 이자에 관한 몇 가지 사상」이라는 저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생기는 가장 인공적이며 가장 완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기관이 상업과 산업에 대하여——비록 상업과 산업의 실제적 운동은 완전히 이 은행의 활동영역 밖에 있으며 또 이 은행은 이 운동에 피동적으로 대하는 것이지만——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제도에서는 사회적 부기와 사회적 규모에서의 생산수단의 분배의 형식이 주어져 있으나 그것은 오직 형식뿐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개개 자본가나 또는 개개 자본의 평균이윤은 이 자본이 직접 차지하는 잉여노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이 차지하는 총잉여노동의 양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며 개개 자본은 이 총자본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뿐이다. 자본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신용제도와 은행제도가 완전히 발전함으로써 비로소 매개되며 또 완전히 실현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신용제도와 은행제도는 이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아직 잠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아직 적극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사회의 모든 자본을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의 처분에 맡기며 그리하여 이 자본을 쥐주는 사람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다 이 자본의 소유자나 생산자가 아니다. 그리하여 신용제도와 은행제도는 자본의 사적 성격을 없애며 자체 속에, 바로 자체 속에만 자본 자체의 폐기를 내포하고 있다. 은행업은 자본의 분배를 특수한 하나의 업무로서, 사회적 기능으로서 사적인 자본가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의 손에서 빼앗는다. 그러나 은행과 신용은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자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또 공황과 사기의 가장 위력한 공간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또한 은행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용유통으로써 화폐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 화폐는 사실상 노동과 그 생산물의 사회적 성격의 특수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데 이 사회적 성격은 사적 생산의 기초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제나 물건으로서, 다른

상품과 병존하는 특수한 상품으로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므로 신용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연합된 노동의 생산양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강력한 공간으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양식 자체에서의 다른 큰 유기적 변혁들과 관련된 요소로서만 그러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 의미에서 신용과 은행업의 기적적 힘에 관한 환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 생산양식의 형태의 하나로서의 신용업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되지 않게 되자(이것은 또한 사적 토지소유의 폐기도 의미한다) 신용 그 자체는 이미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데 이것은 생시몽주의자들도 이해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은 그 형태의 하나인 이자 붙는 자본도 계속 존재하며 사실상 이 생산양식의 신용제도의 토대를 이룬다. 상품생산은 그대로 두고 화폐를 없애려 한 프루동²⁵⁾과 같은 인기를 노리는 저술가만이 비로소 소부르조아적인 선량한 염원을 이룬바 실현한다는 무상신용²²⁾이라는 괴물을 몽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시몽 파의 종교, 정치경제학과 정치」의 4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업의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사업에 사용할 능력도 의욕도 없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근면하지만 노동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회에서는 신용은 이 도구를 될수록 쉬운 방법으로 그 도구의 소유자인 첫번째 사람의 손에서 떼내어 그것을 사업에 사용할 줄 아는 두번째 사람의 손에 옮겨놓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신용이란 소유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25) 칼 맑스, 「철학의 빈곤」, 브뤼셀과 파리, 1847년(이 전집, 조문판, 제4권, 73~210페이지를 보라). 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64페이지(이 전집, 조문판, 제13권, 101~102페이지를 보라).

따라서 신용은 소유가 이루어지는 이 방식이 없어진다면 이와 함께 없어진다. 또한 98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은행은 “이 은행과는 관계없이 활동하는 기업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을 따라가는 것을 자체의 사명으로 여기나 결코 이 운동에 스스로 충동을 주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자본을 대부 받는 노력자들에게 대하여 자본가의 역할을 논다.”

은행은 스스로 기업의 지도를 맡아야 하며 또

“은행이 관리하는 기관들과 그 은행의 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의 수와 유용성에서”(101페이지)

뛰어난 것이어야 한다는 사상 속에는 이미 동산신용이 숨어 있다. 콩스땅땡 펙피르도 역시 은행이(생시몽주의자들이 일반적 은행제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 생산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펙피르는 생시몽주의자들보다 훨씬 급진적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생시몽주의자였다. 그는

“신용기관이… 국민적 생산의 모든 운동을 관리할 것을” 원한다. — “재능이 있고 공적이 있는 무산자들에게 자금을 쥐주지만 꾸는 사람들은 생산과 소비의 엄격한 연대성으로써 강제로 위배지 말고 오히려 그들 자신이 그들의 교환과 그들의 생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국민적 신용기관을 창설하여 보라.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란 오늘날 이미 개인은행들이 달성하고 있는 것 즉 무정부상태, 생산과 소비간의 불균형, 한편의 뜻밖의 영락과 또 한편의 뜻밖의 치부일 따름이다. 그리하여 당신네 기관은 한 사람이 불행을 입으면 그만큼 또 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그 이상으로는 결코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대부를 받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이 그들의 자본주의적 주인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서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따름이다”(콩스땅땡 펙피르, 『사회 및 정치 경제학의 새 이론…』,

파리, 1842년, 433~434페이지).

이미 본 바와 같이 상인자본과 이자 붙는 자본은 가장 오랜 자본형태이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자 붙는 자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본형태로서 나타난다. 상인자본의 경우에는 매개하는 활동이——그것이 기만이라고 해석되든 노동이라고 해석되든 또는 그 무엇이라고 해석되든 간에——이루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이자 붙는 자본의 경우에는 자본이 스스로 재생산되는 성질, 스스로 불어나는 가치, 잉여가치의 생산이 하나의 신비로운 성질로서 순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정치경제학자들도 특히 프랑스와 같이 산업자본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나라의 경제학자들은 이자 붙는 자본을 자본의 기본형태라고 보며 또 예컨대 지대는——이 경우에도 대부형태가 우세하다고 하여——이자 붙는 자본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부구조를 전혀 옳지 않게 이해하며 토지도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에게만 대부된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화폐 대신에 기계, 산업용 건물 등과 같이 생산수단이 현물로 대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것들은 일정한 화폐액을 표시하며 그리고 이자 외에 마멸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정한 액이 지불된다면 이것은 이러한 자본요소들의 사용가치, 특수한 현물형태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결정적인 것은 그 생산수단들이 직접적 생산자에게 대부되는가——이것은 적어도 이러한 대부가 실시되는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 생산수단들이 산업자본가에게 대부되는가——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전제이다——하는 문제이다. 개인적 소비를 위한 집 등의 대부를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 부적당하고 무의미하다. 노동계급은 이 형태에서도 기만당한다는 것, 그것도 형편없이 기만당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만은 노동계급에게 생활수단을 대주는 소상인들도 한다. 이것은 생산과정 자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본래의 착취와 병행되는 부차적 착취이다. 판매와 대부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전혀 아무래도

좋은 형식적인 차이인데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상의 실제적 연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본질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고리대는 상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생산양식을 이용하는 것이며 생산양식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외부에서 생산양식과 관계를 맺는다. 고리대는 생산양식을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만 유지하려고 한다. 고리대는 보수적이며 현존 생산양식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생산요소가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가며 또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산요소를 화폐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더 특수한 행위로서 나타난다. 사회적 재생산에서 유통이 노는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리대는 그만큼 더 번영한다.

화폐재산이 특수한 재산으로서 발전한다는 사실은 고리대자본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자본이 모든 청구권을 화폐청구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생산에서 그 많은 양이 공급 등에 국한되고 따라서 사용가치에 국한되면 될수록 고리대자본은 더욱더 발전한다.

고리대가 두 가지 역할 즉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상인자본과 함께 자립적인 화폐재산을 이루며 둘째로는 노동조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즉 넓은 노동조건을 소유자들을 영락시키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한에서는 고리대는 산업자본의 전제를 이루는 강력한 공간이다.

중세기의 이자

“중세기에는 주민이 순전히 농업주민이었다. 봉건제도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주민이 이러한 형편에서 거래는 보잘것없으며 따라서 이윤도 보잘것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기의 고리대취체법은 정당한 것이었다. 게다가 농업국에서는 가난에 쪼들리거나 그 무슨 불상사로 불행한 처지에 떨어진 경우를 채쳐놓고는 화폐를 갚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 헨리 8세는 이자를 10%로, 제임스 1세는 8%로, 찰스 2세는 6%로 앤 여왕은 5%로 제한하고 있다. … 그 당시

* 이 권, 제1분책, 413~41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화폐대부자는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는 독점자였으며 따라서 다른 독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 오늘날에는 이윤율이 이자율을 조절하지만 당시에는 이자율이 이윤율을 조절하였다. 돈을 쥐주는 사람이 상인에게 높은 이자율을 붙였다면 상인은 그의 상품가격에 더 높은 이윤율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액의 화폐가 구매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상인에게 돈을 쥐준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길바트, 『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런던, 1834년, 163, 164, 165페이지).

“듣는 바에 의하면 현재 해마다 라이프찌히 국제시장에는 10굴덴 즉 100에 대하여 30을 징수한다고 한다.²³ 여기에 또 노이엔부르크 국제시장을 첨가하면 100에 대하여 40이 되는 것이다. 그 이상 더 받아내는지 어떤지 나는 모른다. 저주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 오늘 라이프찌히에서 100플로린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마다 40플로린을 얻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에 1명의 농민 또는 시민의 몫을 먹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1,000플로린을 가지고 있다면 해마다 400플로린을 얻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에 1명의 기사 또는 부유한 귀족의 몫을 먹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10,000을 가지고 있다면 해마다 4,000을 얻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에 1명의 부유한 백작의 몫을 먹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100,000을 가지고 있다면——상인의 경우와 같이——그는 해마다 40,000을 얻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에 1명의 큰 부유한 공작의 몫을 먹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1,000,000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해마다 400,000을 얻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에 1명의 큰 왕의 몫을 먹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 그의 생명과 재산이 결코 위험한 것도 아니며 그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이 난로 앞에 앉아서 사과를 구우면 된다. 그러니 이 도적놈은 집에 편안히 앉아서 10년이면 전세계를 먹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도록 승려들에게 주는 지시』, 루터 저작집, 비텐베르크, 1589년, 제6분책(312페이지)).

“15년 전에 나는 고리대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 그것은 당시에 이미 고리대는 큰 세력을 뻗쳐서 개선을 바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로부터 고리대는 매우 거만해졌으며 악덕, 죄악 및 치욕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기독교적 봉사를 베풀어주는 듯이 깨끗한 미덕이며 영예라고 뽐내게 되었다. 치욕이 영예로 되고 악덕이 미덕으로 된 이상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도록 승려에게

게 호소함」, 비템베르그, 1540년)

“유대인들, 롬바드 거리 사람들, 고리대금업자들 및 흡혈귀들이 우리 나라의 맨 첫 은행업자들, 우리 나라의 맨 첫 은행상인들이었으며 이들의 직분은 거의 치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었다. … 그 다음에 런던의 은장주들이 그들과 한패가 되었다. 대체로 … 우리 나라의 맨 첫 은행업자들은 … 매우 나쁜 패였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들이었으며 냉혹한 흡혈귀들이었다”(D. 하드캐슬, 『은행과 은행업자』, 제2판, 런던, 1843년, 19, 20페이지)

“사람들은 베니스가 보여준 실례(은행의 창립)를 곧 따랐다. 모든 해안도시와 일반적으로 말해서 독립과 상업으로써 이름을 떨친 모든 도시는 자체의 첫 은행을 창립하였다. 이 도시들의 배가 돌아오자면 흔히 매우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신용을 주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으며 아메리카의 발견과 그 결과인 아메리카와의 무역은 이 관습을 더욱더 강화하였다(이것이 주되는 점이다). 배로 상품을 실어 보내자면 많은 액의 대부를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이미 고대 아테네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희랍에서 그랬던 것이다. 1308년에 한자 도시 브루게에는 이미 보험조합이 있었다”(M. 오지에, 『공공신용에 관하여』, 파리, 1842년, 202, 203페이지).

근대적 신용제도가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17세기 마지막 3분의 1기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따라서 향락적 재부의 대표자들에 대한 대부가 심지어 영국에서도 얼마나 우세하였는가 하는 것은 특히 더들리 노스 경—— 그는 영국의 일류상인의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가장 저명한 이론경제학자의 한 사람이었다——의 저서에서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자를 받고 대부하는 화폐 중에서 사업가들에게 사업운영을 위하여 대부되는 것은 아직 1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그 대부분은 사치품을 사들이는 데 대부되며 또 대토지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소유에서 들어오는 소득보다 더 빨리 화폐를 지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출을 위하여 대부된다. 그들은 자기의 토지를 팔기를 싫어하며 오히려 그것을 저장잡히려 한다”(『상업에 관한 논술』, 런던, 1691년, 6, 7페이지).

18세기에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에서는 대어음거래가 있었는데 이 어음거래의 기초로 되며 과업으로 된 것은 주로 바르샤바의 은행업자들의 고리대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이 은행업자들은 8%로 또 그 이상의 이자율로 낭비가 심한 양반들에게 대부할 수 있는 화폐를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공백어음신용——이것은 전혀 아무런 상품거래에도 기초하지 않았으나 외국의 어음지불인은 이 어음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송금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동안은 이러한 어음을 관대하게 인수하였다——을 구하고 찾아냈던 것이다. 이들은 테퍼와 같은 은행업자와 기타 신망이 있는 바르샤바의 은행업자들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큰 댓가를 치루었다.”(J. G. 뷔쉬, 『여러 가지 거래의 이론적 및 실무적 해설』, 제3판, 제2권, 함부르크, 1808년, 233페이지).

이자의 금지가 교회에 주는 이득

“이자를 받는 것을 교회는 금지하였으나 곤란한 경우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재산을 파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빚을 물 때까지 일정한 기간 이 재산을 화폐대부자에게 양도하고 화폐대부자는 채무의 담보로 이 재산을 차지하며 그것이 그의 손에 있는 동안 귀준 화폐의 보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일이 없다. … 교회 자체 또는 교회의 여러 단체와 성단들은 여기에서 큰 이득을 얻었는데 특히 십자군시대에 그러하였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재부의 대부분은 이른바 죽은 손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고정적인 담보의 점유는 감출 수가 없었으므로 유대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고리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교회와 수도원은 결코 그렇게 부유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같은 책, 55페이지).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화

제37장 서론

제38장 차액지대, 개론

제39장 차액지대의 첫째 형태(차액지대 I)

제40장 차액지대의 둘째 형태(차액지대 II). 개론

제41장 차액지대 II, 첫째 경우—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

제42장 차액지대 II, 둘째 경우—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제43장 차액지대 II, 세째 경우—

생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결론

제44장 가장 나쁜 경지에서도 생기는 차액지대

제45장 절대지대

제46장 건축부지지대, 광산지대, 땅값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사

제 37 장 서론

토지소유를 그 여러 가지 역사적 형태에서 분석하는 것은 이 저서의 범위에 포괄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가 토지소유자의 손에 들어가는 한에서만 토지소유를 취급한다.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이 공업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즉 자본가가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인데, 이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그의 자본과 이 자본이 가동시키는 임금노동이 투하되어 있는 요소뿐이다. 우리의 전지에서 보면 차지농업가가 밀 등을 생산하는 것은 공업가가 실이나 기계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농업을 정복하였다고 전제한다면 여기에는 이 생산양식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생산분야를 지배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조건들 즉 자본들의 자유경쟁, 한 생산분야에서 다른 생산분야로의 자본이동의 가능성, 같은 수준의 평균이윤 등과 같은 조건들도 완전히 성숙되어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우리가 연구하는 토지소유형태는 하나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 즉 자본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작용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전화된 형태이다. 즉 봉건적 토지소유거나 또는 농민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경영하는 소농적 농업——여기에서 토지점유는 직접생산자를 위한 생산조건의 하나이며 그의 토지소유는 그의 생산양식의 가장 유리한 조건, 그 번영의 조건이다——이 전화된 형태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일반이 노동자에게서 노동조건을 수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농촌노동자에게서 토지를 수탈하고 이윤을 얻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에게 농촌노동자들이 종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와 농업의 다른 형태들도 존재하였다거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를 반박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연구에 아무런 큰

의의도 없다. 그러한 반박은 다만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소유형태를 역사적 범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범주로 보는 경제학자들에게만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토지소유의 근대적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업에 자본을 투하하는 데서 생기는 일정한 생산관계와 교환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구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분석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원래의 농업에 대한 즉 주민의 생활수단인 주된 식물성 생산물의 생산에 대한 투자만을 연구하는 데 그치려고 한다. 우리는 그 주된 식물성 생산물이 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밀은 근대의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민족의 주된 식량이기 때문이다(또는 농업 대신에 광업을 들어도 좋다. 왜냐하면 법칙은 똑같기 때문이다).

다른 농산물——예컨대 아마, 염료식물, 자립적 축산 등——의 생산에 넣은 자본이 넣는 지대가 주된 식량의 생산에 넣은 자본이 넣는 지대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설명한 것은 A. 스미드의 큰 공적의 하나이다.²⁶⁾ 이 점에 관해서는 사실상 스미드 이후에 조금도 전진이 없다. 우리가 제한하거나 추가하면서 상기시켜야 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토지소유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곳에서 할 것이고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라고 하더라도 밀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가 없는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고 때때로 예종을 위해서만 언급할 것이다.

빈틈없이 하기 위하여 지적해 둘 것은 물 둥도 그것이 소유자를 가지고 있고 토지의 부속물로 되어 있는 한에서 여기에서는 토지라고 본다는 것이다.

토지소유는 일정한 사람이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의사의 배타적인 영역으로서 마음대로 하는 그 일정한 사람의 독점을 전제로 한다.²⁶⁾

26) 사적 토지소유에 관한 헤겔의 설명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다. 인격

이러한 전제 밑에서는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이 독점의 경제적 가치 즉 그 이용을 해명하는 데 있다. 지구의 한 부분을 사용하고 남용하는 이 사람의 법률적 권력으로써는 문제는 아무 것도

으로서의 사람은 외적 자연의 정신으로서의 자기의 의사에 현실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이 자연을 자기의 사적 소유로서 점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것이 인격의 즉 인격으로서의 사람의 규정이라면 개개 사람은 인격으로서의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토지의 자유로운 사적 소유는 생겨난 지 얼마 안되는 것인데 헤겔에 의하면 그것이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고 자연에 대한 인격으로서의 사람의 관계이며 모든 사물에 대한 사람의 절대적 취득권이다(헤겔, 『법철학』, 베를린, 1840년, 79페이지). 어쨌든 하나하나의 인격은 자기의 의사 하나만으로 똑같은 땅땸기에 역시 자체를 구현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와 맞서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의사와 전혀 다른 무엇이 요구된다. 그리고 또 인격이 자체의 의사를 실현하는 한계를 어디에 두는가 즉 이 의사의 존재가 한 나라 전체에서 실현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격이 많은 나라를 차지하여 사물에 대한 나의 의사의 높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여기에서 헤겔은 완전히 궁지에 빠지고만다. “점유한다는 것은 완전히 따로따로 하는 행위이다. 나는 나의 몸이 닿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점유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 두번째 질과에 바깥의 물건은 내가 틀어쥘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너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이든 점유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내가 점유한 것과 결부되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다. 나는 손으로 점유하게 되지만 손이 미치는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90~91페이지). 그러나 이 다른 것과는 언제나 또 다른 어떤 것이 결부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정신으로서의 나의 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토지에 기울여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한계가 없어진다. “내가 어떤 것을 점유하면 오성은 곧 직접 점유된 것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도 나의 것이라는 결론을 짓게 된다. 여기에서 실정법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왜냐하면 개념으로부터는 그 이상 아무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91페이지). 이것은 개념에서 나오는 아주 소박한 고백이며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을

해결되지 않는다. 이 부분의 사용은 그의 의사와는 독립한 경제적 조건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법률적 관념 자체는 모든 상품소유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 관념——자유로운 사적 토지소유라는 법률적 관념——은 고대세계에서는 유기적 사회제도가 무너지는 시기에만, 그리고 근대세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만 나타난다. 이 관념은 아시아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구라파 사람들에게서 수입하고 있을 따름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한편으로는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의 단순한 부속물(예농, 농노, 노예 등의 형태의)의 지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대중에게서 토지를 수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시초축적에 관한 편(제1부, 제24장)에서 이미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소유의 독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또한 이러저러한 형태로 대중을 착취하는 데 입각하고 있는 이전의 모든 생산양식의——하나의 역사적 전제이며 또 여전히 그 항구적 기초이다. 그러나 초기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찾아낸 토지소유의 형태는 이 생산양식에 알맞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알맞는 토지소유형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가 농업을 자본에 종속시킴으로써 비로소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봉건적 토지소유, 씨족소유, 또는 토지공동체(Markgemeinschaft)를 가진 소농민적 소유는 그 법률적 형태가 아무리 서로 다르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알맞는 경제적 형태로 전회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가져온 큰 결과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한편으로는 농업을 사회의 가장 발전하지 못한 부분의 경험적이며 기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증명한다. 즉 개념은 처음부터 토지소유에 관한 완전히 규정된 그리고 부르조아 사회에 속하는 법률적 관념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오류에 빠지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의 실제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 고백에는 사회적 즉 경제적 발전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실정법은 달리 설정될 수 있으며 또한 달리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백도 들어 있다.

업으로부터 농학을 의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일반적으로 사적 소유의 조건하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으로 전화시킨다는 것이다.²⁷⁾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토지소유를 한편으로는 지배와 예측관계에서 완전히 떼어놓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에게서 완전히 떼어놓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 토

-
- 27) 에컨대 콘스텐과 같은 아주 보수적인 농화학자도 참으로 합리적인 농업은 어디서나 사적 소유로 해서 극복할 수 없는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²⁵⁾ 지구덩어리에 대한 사적 소유의 독점을 전문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저술가들, 에컨대 샤를 콩트 씨도 전적으로 사적 소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쓴 두 권으로 되는 저서(『소유론』, 제1권, 파리, 1934년, 228페이지)에서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민을 먹여살리는 모든 부분의 땅이 전반적 이익과 가장 잘 일치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민도 그 본성에 맞을 만한 복리와 역량에 이를 수 없다. 국민의 재부가 크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단일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몽된 의사가 그 국민의 영토의 개개 부분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 개개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의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존재는… 땅을 사유지로 나누는 것과는 양립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개개 소유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거의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양립하지 않을 것이다.” 콘스텐, 콩트 등은 소유와 합리적인 농학과의 모순에 이르렀지만 한 나라의 땅을 전일체로서 경작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특수한 농산물의 재배가 시장가격의 변동에 달려 있다는 것, 이 가격변동에 따라 이 재배가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것,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든 정신은 직접 또 될수록 빨리 화폐이익을 얻는 데 쏠리고 있다는 것——이러한 것은 몇 대를 이어 내려가는 사람들의 항구적인 전체 생활조건을 보장해야 할 농업과 모순된다. 그 뚜렷한 실례는 임업인데 임업은 그것이 사적 소유가 아니고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우에만 때때로 어느 정도 사회적 이익에 맞게 경영된다.

지는 그의 독점에 의하여 산업자본가인 차지농업가에게서 받아들이는 일정한 화폐세금 이외의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소유는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자기의 전생애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낼 수 있을 만큼 토지소유와 토지와와의 연계를 끊어놓는다. 그리하여 토지소유는 이전의 그 모든 정치적 및 사회적 장식물과 혼합물에서 벗어남으로써, 간단히 말하면 산업자본가들 자신과 그들의 이론적 대변자들이 후에 보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와의 투쟁에 열중한 나머지 쓸모없고 불합리한 군더더기라고 비난한 온갖 전통적인 부속물에서 벗어남으로써 순전히 경제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농업을 합리화하여 처음으로 농업을 사회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한 것,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의 불합리성을 입증한 것,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큰 공적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자기의 다른 모든 역사적 공적과 마찬가지로 이 공적도 우선 직접적 생산자를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으로써 세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좀 말해 둘 것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제는 곧 다음과 같다. 실제적 경작자는 임금노동자이고 그들은 자본가인 차지농업가에게 고용된다. 차지농업가는 농업을 자본의 특수한 착취분야로서만 즉 자기의 자본을 들여놓은 특수한 생산분야로서만 경영한다. 이 차지농업가인 자본가는 이 특수한 생산분야에 자기 자본을 들여놓게 허락받은 댓가로 계약에서 정해진 화폐액을 (마치 화폐자본을 꾸 사람이 일정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예컨대 해마다 토지소유자 즉 그가 이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불한다. 이 화폐액은 그것이 경작지, 건축지, 광산, 어장, 삼림 등 어느 것에 대해서 지불되든 간에 지대라고 부른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차지농업가에게 계약에 따라 빌려준 즉 내놓은 전기간 지불된다. 따라서 지대는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가 경제적으로, 자체를 실현하는 즉 소득을 가져오는(verwertet) 형태이다. 또 이 경우에는 다 함께 그리고 서로 맞서서 근대사회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세 계급 즉 임금노동자, 산업자본가, 토지소유자가 모두 나타난다.

자본은 부분적으로는 화학적 성질의 개선, 거름주기 등의 경우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부분적으로는 배수로, 관개시설, 토지정리, 경영용 건물 등의 경우와 같이 보다 오랜 기간 땅에 고착되고 땅에 투하될 수 있다. 이와같이 땅에 넣은 자본을 나는 다른 곳에서 토지자본(terra-capital)이라고 불렀다.²⁸⁾ 그것은 고정자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땅에 넣은 자본에 대한 이자 그리하여 생산도구의 개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개량에 대한 이자는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²⁹⁾ 그러나 이것은 땅 자체의 사용의 댓가로 지불되는——땅이 자연상태로 있건 경작되고 있건 간에 관계없이——원래의 지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의 체계적 연구는 우리 계획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러한 체계적 연구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이 소득부분은 상세히 고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몇 마디 말하기만 하면 된다. 농업에서 보통의 생산과정과 관련된 비교적 짧은 기간의 투자는 예외없이 모두 차지농업가가 한다. 이러한 투자는 경작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나가고 따라서 예컨대 한때 아메리카의 노예소유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땅을 난폭하게 피폐케 하지 않는다면——물론 토지소유자 나라들은 계약에 의하여 그렇게 피폐케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단순한 경작 일반과 마찬가지로 땅을 개량하고³⁰⁾ 그

28) 『철학의 빈곤』, 165페이지(맑스·엥겔스 전집, 조문판, 제4권, 200~201페이지를 보라). 거기에서 나는 토지물질(terre-matière)과 토지자본(terra-capital)을 구별하였다. “이미 생산수단으로 전화된 토지에 자본을 새로 투하하는 것만으로써도 사람들은 토지의 물질 즉 토지의 면적은 조금도 증가시키지 없이 자본으로서의 토지를 증가시킨다. … 그러나 자본으로서의 토지는 다른 모든 자본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 자본으로서의 토지는 고정자본이다. 그러나 고정자본도 유동자본과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29) 여기에서 내가 “…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이자가 일정한 사정 밑에서는 지대법칙에 의하여 조절되며 따라서 예컨대 자연적 비옥도가 높은 새 땅과 경쟁하는 경우에 없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 제임스 앤더슨과 케어리를 보라.²⁶⁾

생산물량을 늘이며 토지를 단순한 물질로부터 토지자본으로 전화시킨다. 경작되는 땅은 똑같은 자연적 속성을 가진 경작되지 않은 땅보다 더 값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오랜 기간 땅에 투하되어 비교적 오래 이용되는 고정자본도 또한 그 대부분을 어떤 분야들에서는 흔히 차지농업가만이 낸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빌리는 기간이 지나가면 토지에 실시된 개량은 땅이라는 실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우연적 부속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빌려주는 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려고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토지소유자가 땅을 빌려 주는 계약을 새로 맺을 때 그는 땅에 넣은 자본에 대한 이자를 원래의 지대에 덧붙인다. 그때에 토지소유자가 개량을 해놓은 그 차지농업가에게 빌려 주건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차지농업가에게 빌려 주건 상관없다. 그리하여 토지소유자가 받는 지대는 부풀어오른다. 또는 우리는 토지가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곧 보겠지만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려고 한다면 그때에 땅의 가치는 벌써 올라 있다.

그는 비단 땅을 팔 뿐 아니라 개량된 땅을 판다. 즉 그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땅에 투하된 자본을 판다. 원래의 지대의 운동을 완전히 제쳐놓고 보면 위에서 말한 것이 경제발전에서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들의 지대가 끊임없이 부풀어오르며 그들이 소유한 땅의 화폐적 가치가 늘어나는 비밀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로서 도와준 일 없이 얻게 된 사회적 발전의 성과를 자기 개인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말하자면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태어난 자²⁷⁾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합리적 농업에 가장 큰 지장의 하나로 된다. 왜냐하면 차지농업가는 그가 땅을 빌린 동안에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개량과 지출은 모두 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정이 그러한 지장으로 된다고 두고두고 비난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난 세기에는 근대적 지대론의 진정한 발견자이고 동시에 실제로 차지농업가이며 그때로 보아서는 상당한 농학자이기도 했던 제임스 앤더슨²⁸⁾이 그것을 비난하였고 오늘날에는 영국의 현재의 토지소유제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비난하고 있다.

A. A. 윌튼은 『대영국과 아일랜드의 차지소유의 역사』, 런던, 1865년, 96, 97페이지에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농업협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개량으로 해서 차지농업가나 농업노동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로 토지소유의 가치와 토지소유자의 지대의 규모가 커지는 동안은 토지경작을 개선하는 영역에서 매우 큰 성과나 참으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대체로 차지농업가도 토지소유자나 그의 관리인 또는 농업협회장 자신에 못지 않게 다음과 같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물을 잘 빼고 거름을 많이 주며 또 땅을 근본적으로 깨끗이 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하여 노동을 더 들임과 함께 땅을 잘 관리하면 땅을 개량하는 집에서나 생산을 늘리는 집에서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차지농업가들은 그들이 아무리 땅을 개량하고 그 가치를 높이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생기는 주된 이익은 토지소유자가 올린 지대와 오른 땅값으로 거두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다… 차지농업가들은 이 연설자들(농업관계 연회에서 연설한 토지소유자와 그 관리인들)이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즉 차지농업가가 한 개량에서 생기는 이익의 큰 몫은 결국에 가서 토지소유자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이전의 차지농업가가 빌린 땅을 아무리 잘 개량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뒤를 이은 차지농업가는 이전에 한 개량으로 해서 오른 토지의 가치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지대를 올릴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보게 될 것이다.”

원래의 농업에서는 이 과정이 아직, 땅을 건축지로 이용하는 경우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영국에서 집짓는 땅의 압도적 부분은 자유보유지로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99년 동안 또는 가능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 빌려 준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건축물은 토지 자체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된다.

“그들(차지인들)은 땅을 빌린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그때까지 굉장히 높은 지대를 물어왔지만 집을 살기 좋은 상태로 대토지소유자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땅을 빌린 계약기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이나 감독이 찾아와서 집을 검사하고 당신들이 집을 좋은 상태대로 두도록 주의를 준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여 자기 주인인 토지소유자의 재산에 집어 넣는다. 만약 이 제도가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완전히 실시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사실 왕국의 모든 주택소유권은 농촌의 토지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대토지소유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런던의 템플바(Temple Bar)²⁸의 남북에 있는 웨스트엔드²⁹의 거의 전지역은 대체로 6명의 대토지소유자의 것이며 이들은 막대한 지대를 받고 그것을 빌려 주고 있다. 그리고 빌려 주는 계약기간이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곳에서 그것은 차례차례로 빨리 지나간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왕국의 모든 도시가 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와 독점의 이타욕적인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항구도시의 거의 모든 도크 시설들은 똑같은 약탈과정의 결과에 거대한 토지의 괴물들³⁰의 손에 들어가 있다”(같은 책, 93페이지).

이러한 형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하다.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대한 1861년의 일제조사에 의하면 총인구 수는 20,066,224명인데 그 중에서 집 소유자수는 36,032명으로 되어 있지만 큰 소유자를 작은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본다면 집 수에 대한 소유자수의 비율 및 인구수에 대한 소유자수의 비율은 전혀 다를 것이다.

건물의 소유에 관한 위에서 든 실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중요하다. 즉 1) 그 실례는 원래의 지대와 그리고 땅에 투하된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지대에 대한 추가분을 이룰 수 있는 이자——와의 차이를 똑똑하게 보여준다. 건물에 대한 이자는 농업에서 차지농업가가 땅을 경작할 때에 넣은 자본에 대한 이자와 마찬가지로 땅을 빌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동안은 산업자본가인 건축투기업자나 차지인의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은 지대——해마다 일정한 기일에 토지이용의 댓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대——와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그 실례는 토지와 함께 토지에 투하된 남의 자본이 마침내는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되며 그리고 그 자본에 대한 이자는 지대를 불어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케이리와 같은 몇몇 저술가들은 부분적으로는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토지소유를 옹호하는 자로서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제도를 모순의 제도가 아니라 **조화의** 제도로 전화시키려고 애쓰면서 토지소유의 특수한 경제적 표현인 지대를 이자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와의 대립은 없어질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당시 보통 생각하기는 토지소유는 아직 사적 소유의 원시적이고 존중할 만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자본에 대한 이자는 고리대라고 공격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들리 노스, 로크와 그 밖의 사람들은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대와 비슷한 형태라고 썼다. 이것은 뒤르코가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자를 정당화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든 새 시대의 저술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즉 땅에 넣은 자본에 대한 어떠한 이자도 덧붙지 않은 순수한 지대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 두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남의 자본에 대한 이자를 얻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남의 자본까지 무상으로 얻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일정한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다른 모든 소유형태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의 정당화는 생산양식 자체가 따라서 또 생산양식에서 생기는 생산관계와 교환관계가 역사적인 과도적 필연성이라는 데 있다. 물론 후에 보게 되겠지만 토지소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밖의 종류의 소유와 다르다. 즉 토지소유는 일정한 발전수준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입장에서까지도 쓸모없으며 해로운 것으로 된다는 점이다. *

지대는 다른 형태로도 이자와 혼동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지대의 특수한 성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땅땀기를 빌려 주고 해마다 받아내는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된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일정한 화폐소득은 모두 자본화될 수 있다. 즉 그것을 상상적 자본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평균이자율이

* 이 권, 991~992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5%라면 한 해의 200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는 4,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자본화된 지대야말로 땅의 구매가격 또는 그 가치를 이루는데 이 범주는 얼핏 보아도 노동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노동의 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불합리한 형태의 뒤에는 실제적 생산관계가 숨어 있다. 어떤 자본가가 한 해에 200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를 낚는 땅을 4,000파운드 스텔링을 주고 산다면 그는 해마다 평균 5%의 소득을 얻는다. 이것은 그가 이 자본을 이자가 붙는 증권을 사는 데 넣거나 그것을 5%의 이자로 직접 뒀는 경우와 똑같다. 이것은 4,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이 5%로 그 가치가 불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는 그가 소유지를 산 값을 20년 동안에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보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땅의 구매가격이 몇 해의 구매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것은 지대의 자본화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구매가격은 사실상 땅의 구매가격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지대를 보통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지대의 구매가격이다. 그러나 지대의 이 자본화는 지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반대로 지대를 그 자체의 자본화로부터 끌어내어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파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지대의 존재야말로 전제이며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지대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땅값은 이자율이 오르내리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된다. 만약 보통의 이자율이 5%에서 4%로 떨어진다면 한 해의 200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는 4,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아니라 5,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한 해 동안에 불어난 가치를 표시할 것이며 그리하여 똑같은 땅때기의 값이 4,000파운드 스텔링에서 5,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또는 20개년의 구매에서 25개년의 구매로 오를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지대 자체의 운동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자율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땅값의 운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자율도 그것이 이윤율에 의하여 조절되는 한에서는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윤율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이자율은 대부

화폐자본이 늘어나는 결과에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땅값은 지대의 운동과 토지생산물의 가격——지대는 그 한 부분을 이룬다——이 운동과 관계없이도 오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대 자체와 지대가 땅을 사는 사람에게서 가지는 이자형태를 혼동하는 것은 지대의 본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인데 이 혼동은 아주 묘한 거짓 결론에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된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토지소유는 특히 귀중한 소유형태로 인정되며 그 밖에 또 토지소유를 사들이는 것은 특히 확실한 투자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대를 사는 데서 기준으로 되는 이자율은 대개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치는 다른 투자의 경우보다 낮다. 그리하여 예컨대 땅을 사는 사람이 다른 데에 투자한다면 똑같은 자본에 대하여 5%를 받겠지만 땅을 산 값에 대해서는 4%밖에 받지 못한다.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가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 해에 똑같은 화폐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지대를 얻기 위하여 지출한다. 그러므로 띠에르 씨의 소유에 관한 아주 너절한 자기 저서³²(1849년,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프루동을 반대하여 한 연설안을 인쇄한 것)에서 지대가 낮다는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은 지대를 사는 값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자본화된 지대가 땅의 가격 또는 땅의 가치로 나타나며 따라서 땅이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된다는 사정은 몇몇 변호론자들에게는 토지소유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된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은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땅에 대해서도 등가를 지불하였으며 토지소유의 대부분은 이와같이 하여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화하는 똑같은 이유는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들어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예의 값을 현금으로 지불한 노예소유자를 보면 노예노동에서 얻는 수익은 노예를 사는 데 지출된 자본의 이자를 표시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대를 팔고 사고 한다는 것으로써 지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대의 존재로써 지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대——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토지소유가 가지는

자립적인 특수한 경제적 형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대를 불순하게 하고 모호하게 하는 일체 혼합물을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편으로 토지소유의 실제적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대의 개념과 본성과는 모순되면서도 지대의 존재형태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들을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서도 이론상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는 요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지농업가가 토지경영을 허락받은 값으로 차지료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무는 모든 것은 물론 실천에서는 지대로서 나타난다. 이 공물은 그 구성부분이 무엇이건 간에, 그 원천이 어디에 있건 간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래의 지대와 같다. 즉 지구의 한 부분에 대한 독점으로 하여 이른바 토지소유자가 공물을 받아들이고 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공물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땅을 빌려주는 데서 나오는 자본화된 소득에 지나지 않는 땅값을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원래의 지대와 같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자는 지대의 종류가 다른 한 구성부분을 이룰 수 있는데 이 구성부분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 나라의 총지대액에 대한 추가분으로서 더욱더 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이자를 제쳐놓고 보더라도 차지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즉 평균이윤이건 정상적인 임금이건 또는 동시에 이 두 가지 것이건 간에 그것에서 떼어낸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즉 원래의 지대가 전혀 없고 따라서 땅이 실제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떼어낸 것이 차지료를 전부 차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윤에서 떼어낸 것이건 임금에서 떼어낸 것이건 간에 이 경우에 지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에 그러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가나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차지료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그 어느 부분이나 지대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실천에서는 이 떼어낸 부분이 실제적 지대와 꼭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의 소득을 이루며 그의 독점의 경제적 실현이며 또 실제적 지대와 마찬가지로 땅값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차지인 자신이 산업자본가가 아니며 그의 경영방식이 자본주의적이 아니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토지소유의 표현인 지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예컨대 아일랜드에서는 사태가 그러하다. 차지인은 여기에서는 대체로 소농민이다. 그가 차지료로 토지소유자에게 무는 것에는 흔히 그의 이윤 즉 그 자신의 잉여노동——그는 자기 자신의 노동도구의 소유자로서 이 잉여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의 한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에서라면 그가 똑같은 양의 노동의 댓가로 받았을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도 들어있는 것이다. 그 밖에 여기에서는 땅의 개량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차지인의 작은 자본——이것은 차지인이 대부분 그 자신의 노동으로 땅에 넣은 것이다——을 수탈하는데 이것은 고리대금업자가 비슷한 조건에서 하게 될 행동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자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적어도 자기 자신의 자본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약탈은 아일랜드의 토지입법에 관한 분쟁거리로 되고 있는데 이 토지입법은 결국 본질상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된다. 즉 차지인에게 해약통고를 하는 토지소유자는 차지인이 해놓은 땅의 개량이나 땅에 넣은 자본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팔머스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웃으면서 대답하는 것이 버릇이었다.

“하원은 토지소유자의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들에서까지도 토지소유자가 땅의 생산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높은 차지료를 짜낼 수 있는 예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다. 예컨대 영국 공업지구들에서는 자그마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건 또는 짹짹이 취미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건 작은 땅패기를 공장노동자들이 빌린다(『공장감독관의 보고』).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의 농업지대에 대해 말하려 한다. 예컨대 영국의 차지농업가들 중에는 교육, 교양, 전통, 경쟁과

그 밖의 사정들로 해서 차지농업가로서 자기의 자본을 농업에 넣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한 수의 소자본가들이 있다. 그들은 평균이윤보다 적은 이윤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윤의 일부를 지대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그들은 자기 자본을 토지에 즉 농업에 투하하는 것이 허락된다. 어디서나 토지소유자들은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심지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전체 차지농업가계급을 속여먹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1815년의 곡물법³⁴⁾은 의심할 바 없이 반 자코뱅 전쟁³⁵⁾중에 비상히 늘어난 지대를 놓고 먹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속 보장하기 위해 이 나라에 부과한 빵세이다. 그런데 이 곡물법은 물론 한두 해 있는 예외적인 풍년을 제쳐놓고 보면 농산물의 값을 곡물수입이 자유롭다면 떨어졌을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곡물법은 법을 제정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지시한——외국의 곡물을 수입하는 데서 법적 한계로 되는 기준가격으로서 지시한——수준에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땅을 빌리는 계약은 이 기준가격의 영향하에서 체결되었다. 이 환상이 깨어지자 새로운 법률이 작성되어 새로운 기준가격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기준가격도 낮은 기준가격이나 다름없이 탐욕스러운 토지소유자적 환상의 무력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이 차지농업가들은 1815년부터 1830년대까지 속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간을 통하여 농업공궁이 늘 이야기거리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하여 온 한세대의 차지농업가가 수탈되고 영락되었으며 새로운 자본가계급이 그들을 대신하게 되었다.³¹⁾

그러나 훨씬 더 일반적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래의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적인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임금의 일부가 노동자에게서 공제되어 차지료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며

31) 곡물법반대 현상논문³⁶⁾을 보라. 그렇지만 곡물법은 늘 값을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 유지하였다. 이것은 상층의 차지농업가에게는 유리하였다. 그들은 근거가 있는 없든 예외적인 평균가격을 바라다 본 대다수의 차지농업가가 보호관세로 해서 빠진 정채상태를 이용하여 이익을 보았다.

이리하여 그것이 노동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대라는 가면을 쓰고 토지소유자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치가 유리한 몇몇 주를 예외로 하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영국에서 곡물법이 실시되기 전에 설정된 임금 수준에 관한 의회조사위원회의 저서들³⁷⁾은 지금까지 19세기의 임금의 역사에 관한 가장 귀중하며 거의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료인 동시에 영국의 귀족과 부르주아지 자신이 스스로 세운 치욕의 기념비인데 이 저서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하고도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즉 그것은 반 자코뱅 전쟁 중의 높은 지대율과 이에 따라 땅값이 오른 것은 부분적으로는 오직 임금에서 떼어내고 심지어 임금을 육체적 최저한 이하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즉 정상적 임금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사정들, 그 중에서도 화폐의 가치가 줄어든 것, 농업지방들에서 빈민구제법³⁸⁾의 실시방법 등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같은 때에 차지농업가들의 소득은 비상이 높았고 토지소유자들은 옛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되었다. 사실 곡물세의 실시를 찬성하는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들의 주된 논거의 하나는 날품팔이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떨어뜨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영국에서도 다른 모든 구라파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임금의 일부가 전과 다름없이 지대로 들어가고 있다. 박애주의적 귀족의 한 사람인 샤프츠베리 백작——당시에는 애슐리 경——이 영국 공장노동자들의 형편에 몹시 마음이 움직여 10시간노동일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에 의회내에서 그들의 대변자로 나타났는데 그때에 산업가의 대변자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샤프츠베리에게 속해 있는 촌락들의 날품팔이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자본론』, 제1부, 제23장, 제5절, 5. 「영국 농업 프롤레타리아트」를 보라*). 이 박애가가 받는 지대의 일부는 다만 그의 차지인이 그를 위하여 농업노동자의 임금에서 약탈해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는 명백히 보여주었다.

* 이 책, 제I권(2), 847~85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이 발표된 자료가 흥미있는 것은 또한 거기에 들어 있는 사실들이 1814년과 1815년의 위원회들³⁹⁾이 폭로한 가장 험악한 사실들과 대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들로 해서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을 잠시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때마다 들려오는 것은 다른 산업부문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상적 수준으로 임금을 올릴 수는 없으며 동시에 지대를 낮추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차지농업가들의 부르짖음이다. 그리하여 이 부르짖음에는 차지농업가들이 지대라는 이름으로 임금에서 떼어낸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다는 고백이 들어 있다. 예컨대 1849~1859년에 영국에서는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일련의 결정적인 사정들로 해서 올랐는데 그 사정들이란 아일랜드에서 대중적인 국외이주가 있어서 아일랜드로부터 농업노동자가 공급되지 않게 된 것, 가공업이 농업인구를 몹시 빨아들인 것, 전쟁이 군대를 많이 요구한 것,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캘리포니아)으로의 대대적인 국외이주와 그 밖에 여기에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원인들이다. 이와 동시에 이 기간에 1856년의 흉년을 제외하면 곡물의 평균가격은 16% 이상이나 떨어졌다. 차지농업가들은 지대를 낮추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이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차지농업가들은 증기기관과 새로운 기계를 대량적으로 도입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데서 출로를 찾았다. 이 기계들은 부분적으로는 말을 대신하고 경영에서 말을 쫓아냈지만 부분적으로는 낱품팔이 농업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어 인위적인 과잉인구를 만들어냈으며 따라서 임금을 또다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총인구가 늘어난 데 비하여 전반적으로 농업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또 몇 개의 순농업지대에서는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었지만 그러한 일이 생겼다.⁴⁰⁾ 당시 캠브리지 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이던 포셋(체신장관으로서 1884년에 사망)도 1865년 10월 12일 사회과학대회⁴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2) J. C. 모튼, 「농업에 사용되는 힘」, 이것은 1860년 런던 공예협회⁴⁰⁾에서 한 보고인데 스코틀랜드의 12 주와 잉글랜드의 35 주의 약 100명의 차지농업가에게서 수집한 믿을 만한 문건에 기초한 것이다.

“날품팔이 농업노동자들은 국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차지농업가들은 이러한 국외이주로 해서 노동이 더 바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늘 지불해오던 그러한 높은 지대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높은 지대가 직접 낮은 임금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대를 증대시키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해서 땅값의 높이가 제약되는 한에서는 땅의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과 같으며 땅값의 높은 수준은 노동의 값의 낮은 수준과 같은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사정은 같다.

“한편으로 빵, 포도주, 고기, 채소, 과실의 값은 올랐는데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값은 다름없기 때문에 차지료는 오른다. 만약 늙은이들이 그들의 조상의 계산서를 비교하여 본다면——그렇게 한다는 것은 약 100년 전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된다——그들은 당시 프랑스 농촌에서 노동일의 값이 오늘날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고깃값은 그 후 3배로 되었다. … 이러한 변혁으로 희생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땅을 빌려 주고 있는 부유한 소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땅을 경작하는 빈민인가? … 차지료가 오른 것은 사회적 불행의 한 증거이다”(『프랑스와 영국의 사회기구에 대하여』, M. 류비송, 제2판, 파리, 1837년, 101페이지).

한편으로는 평균이윤에서 빼이낸 것으로서의 지대 또 한편으로는 평균 임금에서 빼이낸 것으로서의 지대의 실례.

토지중개업자이며 농업기사인, 위에서 인용한 모튼⁴²⁾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많은 지방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빌린 땅이 큰 데서 생기는 지대는 작은 데서 생기는 지대보다 낮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작은 땅을 얻으려는 경쟁은 보통 큰 땅을 얻으려는 경쟁보다 심하며 또 농업 밖에 다른 어떤 일에도 거의 종사할 수 없는 소차지인들은 알맞는 일을

꼭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지대가 너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흔히 그 지대를 지불하려는 것이다”(J. L. 모튼, 『소유지의 원천』, 런던, 1858년, 116페이지).

그러나 그의 의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이 차이가 점차 사라질 것인데 바로 소차지인계급의 국외이주가 이와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모튼은 명백히 차지농업가 자신의 임금에서 떼어낸 것, 따라서 더 확실하게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떼어낸 것이 지대에 들어가는 실례를 들고 있다. 특히 두 말이 끄는 쟁기를 가질 수 없는 70~80에이커(30~34헥터)보다 작은 빌런 땅의 경우이다.

“만약 차지농업가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가 빌런 그 땅으로 살아갈 수 없다. 만약 그가 일한 자기의 노동자들에게 말기고 자기는 다만 노동자를 감독하는 데 그친다면 그는 아마 틀림없이 얼마 안가서 지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같은 책, 118페이지).

그러므로 모튼은 만약 그 지방의 차지농업가들이 아주 가난하지 않다면 빌리는 땅은 70에이커보다 작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차지농업가는 두서너 마리의 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한다.

연구소⁴³ 및 중앙농업협회의 회원인 레옹스 드 라베르뉴 씨의 비범한 지혜. 그는 자기의 저서 『영국의 농촌경제』(영문번역판, 런던, 1855년에서 인용)에서 해마다 소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소를 부리지만 영국에서는 그 대신에 말을 부리기 때문에 소는 쓰지 않는다(42페이지).

프랑스				영국			
우유	400만 파운드	스털링		우유	1,600만 파운드	스털링	
고기	1,600만 파운드	스털링		고기	2,000만 파운드	스털링	
작업	800만 파운드	스털링		작업			
2,800만 파운드 스텔링				3,600만 파운드 스텔링			

그런데 여기에서 영국의 생산액이 더 많은 것은 라베르뉴 자신의 자료에 의하면 그가 고깃값을 두 나라에서 다 같다고 가정하면서도 우윳값은 영국에서는 프랑스의 2배나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35페이지). 따라서 영국의 우유생산액을 800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줄인다면 총생산액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2,800만 파운드 스텔링으로 줄어든다. 라베르뉴 씨가 자기의 계산에 여러 가지 생산량과 가격차이를 동시에 넣고 그리하여 영국이 어떤 생산물을 프랑스보다 비싸게 생산한다면—— 이것은 기껏하여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를 위한 이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것이 영국농업의 우월성으로 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좀 지나치다.

라베르뉴 씨는 영국농업의 경제적 결과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들의 편견도 가려 보고 있는데, 이 점을 그는 48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다.

“알곡작물은 보통 큰 손해를 가져온다. … 알곡작물은 그 재배지를 피폐하게 한다.”

라베르뉴 씨는 다른 식물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사료작물과 뿌리를 쓰는 식물은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믿고 있다.

“사료작물은 그 성장의 주된 원소들을 대기 중에서 빨아들이고 땅에서 빨아들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땅에다 돌려준다. 그리하여 사료식물은 이중으로—— 즉 직접으로도 그렇고 또한 그것들이 동물 거름으로 전화되어—— 알곡작물과 그 밖에 땅을 피폐케 하는 작물들이 끼친 손해를 메워준다. 그러므로 사료작물은 적어도 이러한 작물들과 돌려가며 심는 것이 원칙이다. 노포크식 윤작이란 이것이다”(50, 51페이지).

영국농업의 이 이야기“를 믿고 있는 라베르뉴 씨가 또한 곡물법폐지 후 영국농촌의 날품판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종전의 정상적이 아닌 성격을 잃었다는 자기의 주장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놀랄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자본론』 제1부, 제23장, 제5절, 845~875페이지⁴⁶에서 말한 것을 보라. 그러나 우리는 1865년 12월 14일 버밍엄에서 한 존 브라이트의 연설도 들어보자. 그는 의회에 전혀 대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500만의 가족에 대하여 말한 후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연합왕국에서는 이 500만의 가족 중에서 100만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100만 이상이 구제받는 불행한 극빈자 명단에 올라 있다. 그 다음에 또 100만은 겨우 구제받는 극빈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극빈자가 될 위험에서 늘 해매고 있다. 그들의 형편과 앞으로의 전망도 구제받는 극빈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한번 사회의 이 부분에서 지식이 없는 하층을 생각해 보라. 버림받은 그들의 처지, 그들의 가난, 그들의 고생, 그들의 완전한 절망상태를 생각해 보라. 미국에서까지 노예소유제가 지배하고 있던 동안 남부주들에서까지도 흑인은 누구나 다 어느 때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감히 말하지만 이 사람들 즉 우리 나라에서 최하층을 이루는 이 대중에게는 어떠한 개선에 대한 신심도 없으며 개선을 바라는 마음 까지도 없다. 당신들은 최근 도셋서의 날품팔이 농업노동자인 존 크로스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가? 그는 한 주일에 6일간 일을 하였고 한 주에 8실링의 임금으로 24년간 일해 준 그의 고용주의 훌륭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존 크로스는 이 임금으로 자기의 오막살이에서 7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먹여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병든 아내와 젖먹이어린애를 덥게 해주기 위하여 6페니의 값이 있는 나무울타리를 뜯었다. 법률용어로는 훔쳤다고 말할 수 있다. 치안판사는 이 죄로 그에게 14~20일간의 금고를 판결하였다. 존 크로스 사건과 같은 사건은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에는 얼마든지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의 처지야말로 그들이 어떻게 그날그날 살아가는가 하는 비밀을 아주 성실한 연구가도 알아낼 수 없을 만한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전국에 눈을 돌려 이 500만의 가족과 이 주민층이 처해 있는 절망상태를 생각해 보라. 선거권이 없는 이 국민대중이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면서도 거의 전혀 휴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겠는가? 이들과 지배계급을 비교해 보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공산주의라고 나를 비난할 것이다. … 하지만 일에 시달리면서도 선거권이 없는 다수의 이 국민과 지배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비교해 보라. 이 지배계급의 재부,

이들의 호사, 이들의 사치를 보라, 이들의 피로를 보라, 이들에게도 피로는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배부르고 싫증이 나는 데서 오는 피로이다. 그리고 마치고 새로운 놀이터를 찾아내는 것만이 의의가 있다는 듯이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싸다니고 있는 꼴을 보라”(『셋별』, 46 1865년 12월 14일).

잉여노동 따라서 또한 잉여생산물 일반과 지대 즉 잉여생산물 중에서 적어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특수하게 규정되는 부분과를 어떻게 뒤섞고 있는가를 아래에서 보게 된다. 잉여노동 일반의 자연적 기초 즉 잉여노동을 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자연적 조건은 자연이——육지에서 생기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생산물 모든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 등으로든——필요한 생산수단을 노동일의 전부를 삼키지 않는 노동시간을 지출케 하여 보장한다는 것이다. 농업노동(여기에는 단순히 주워모으는 노동, 사냥, 물고기잡이, 축산노동도 들어간다)의 이러한 자연발생적 생산성은 온갖 잉여노동의 기초이다. 온갖 노동이 처음에는 원래 먹을 것을 차지하고 생산하는 데 돌려지는 것이니 말이다(그러나 동물은 그와 동시에 기후가 찬 곳에서는 추위를 막는 가죽을 준다. 이 밖에 동굴은 사는 데 이용된다 등).

잉여생산물과 지대를 이와같이 뒤섞고 있는 것은 표현이 다를 뿐 도브 "씨에게서도 보게 된다.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은 처음에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공업노동은 농업노동에 매여 있다. 농사를 짓는 종족인 가족공동체 또는 가족의 잉여노동과 잉여생산물에는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이 다 들어 있다.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은 나란히 나간다. 사냥, 물고기잡이, 농사는 각각 그에 맞는 도구 없이는 할 수 없다. 천짜기, 실 뽑기 등은 처음에는 농업의 부업으로서 수행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의 노동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나뉘듯이 노동계급의 총노동도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즉 노동계급의 전체 생활수단을 생산하는(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수단도 포함하여) 부분이 전사회를 위한 필요노동을 수행하도록 나뉠 수 있다. 노동계급의 나머지 부분 전체가 수행하는 노동은 잉여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요노동에는 결코 농업노동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

나라 노동자의 평균소비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밖의 모든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도 들어간다. 또 사회적 견지에서 말하면 한편이 필요노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한편이 잉여노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또 그 반대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의 분업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농업노동자와 공업노동자 사이에서의 분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의 순공업적인 노동의 성격에 다른 한편의 순농업적인 노동의 성격이 상응한다. 이 순농업적인 노동은 결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발전의 한 산물이다. 그것도 아주 근대적인. 어디서나 얻어낼 수 없는 산물이며 전적으로 규정된 한 생산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농업노동의 일부가 사치에만 쓰이거나 공업용 원료로 되는 생산물에 대상화되고 먹는 것——대중이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한편 공업노동의 일부는 농업노동자와 비농업노동자들의 필요한 소비수단으로 되는 생산물에 대상화된다. 이 공업노동을 사회적 견지에서 잉여노동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 공업노동은 부분적으로는 농업노동의 필요부분과 마찬가지로 필요노동이다. 그것은 또한 전에 농업노동과 자연발생적으로 결부되었던 공업노동의 일정한 부분이 자립화된 형태에 불과하며 이제는 공업노동과 떨어진 순농업노동을 필연적으로 서로 보충하는 것이다(순전히 물질적 측면에서만 문제를 본다면 예컨대 기계를 쓰는 500명의 직포공은 전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잉여생산물인 천을 생산한다. 즉 그들 자신의 옷에 드는 것보다 많은 천을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지대가 나타나는 형태들을 살펴볼 때에는 즉 생산적으로 쓰이건 소비를 위하여 쓰이건 간에 땅을 이용하는 댓가로서 지대의 이름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는 차지료를 살펴볼 때에는 땅과 같이 절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 즉 노동생산물이 아닌 물건이나 골동품, 재간있는 사람들이 만든 예술품 등과 같이 적어도 노동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물건의 값은 매우 우연적인 사정들의 배합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물건을 파는 데는 그 물건이 독점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필요없다.

지대를 살펴볼 때에 분석을 모호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주된 세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

1) 사회적 생산과정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서로 다른 지대 형태들을 뒤섞는 것.

지대의 특수한 형태가 어떻게 간에 지대의 모든 유형에 공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지대를 차지하는 것이 토지소유가 자체를 실현하는 경제적 형태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는 지대가 토지소유를 즉 지구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일정한 개인의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자가 아시아, 이집트 등에서처럼 공동체(Gemeinwesen)를 대표하는 인물인건, 또는 이 토지소유가 노예제도나 농노제도하에서와 같이 직접적 생산자들의 인격에 대한 일정한 인물의 소유의 우연적 부속물에 불과하건, 또는 이 토지소유가 자연에 대한 비생산자들의 순수한 사적 소유, 땅에 대한 단순한 소유명의이건, 또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식민지개척자와 소농민적 토지소유자에게서와 같이 노동이 홀로 떨어져 수행되고 사회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직접적 생산자들이 일정한 땅배기의 생산물을 차지하고 생산하는 것으로 직접 나타나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관계이건 아무래도 좋다.

서로 다른 지대형태에 공통되는 점 즉 지대는 서로 다른 개인이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케 하는, 법적으로 꾸며낸 것인 토지소유의 경제적 실현이라는 이 점으로 해서 차이를 보지 못하게 된다.

2) 온갖 지대는 잉여가치이며 잉여노동의 생산물이다. 지대는 발전되지 않은 형태인 현물지대형태에 있어서는 아직 직접 잉여생산물이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온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지대는 언제나 이윤, 즉 상품의 가치 중에서 그 자체가 잉여가치(잉여노동)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인데 잉여가치의 이 특수하고 유다른 구성부분은 잉여가치와 이윤 일반의 일반적 존재조건을 설명해야 설명된다는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이 일반적 조건이란 직접적 생산자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력, 그들 자체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잉여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주관적 조건이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은 잉여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 생산자들이 자기를 생산자로서 재생산하고 자기를 유지하는 데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의 한 부분만 들이면 되며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데 그들의 노동력을 전부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자연조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의 비옥도가 하나의 한계, 하나의 출발점, 하나의 기초를 이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다른 한계, 출발점, 기초를 이룬다. 문제를 더 상세히 살펴 보면 먹을 것의 생산은 직접적 생산자들의 생활과 온갖 생산 일반의 가장 첫째가는 조건이므로 이 생산에 들이는 노동 따라서 가장 넓은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농업노동은 직접적 생산자들의 먹을 것을 생산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전부를 들이지 않을 만큼 생산적이어야 한다. 즉 농업에서의 잉여노동 따라서 또 농업에서의 잉여생산물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사회의 한 부분의 총 농업노동——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은 전체 사회에 필요한 따라서 또 비농업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생산할 만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일꾼과 공업일꾼 사이의 이 대분업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농업일꾼들 중에서 먹을 것을 생산하는 일꾼과 원료를 생산하는 일꾼 사이의 분업이 가능해야 한다. 먹을 것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노동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은 사회에 대해서는 먹을 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요노동만을 표시한다. 어쨌든 하나하나의 작업장 내부의 분업과는 다른 전사회 내부의 모든 분업에서는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노동은 특수한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이 특수한 물건에 대한 사회의 특수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이 분업이 균형적이라면 서로 다른 집단이 생산하는 생산물은 가치대로(더 발전된 조건하에서는 생산가격대로) 팔린다. 또는 이 가치 따라서 생산가격이 일반적 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변경된 가격대로 팔린다. 가치법칙은 사실상 하나하나의 상품이나 물건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에 의하여 자립화된 개별적인 사회적 생산분야들의 그때그때의 총생산물에 대해서 작용한다. 그리하여 개개 상품에 필요노동시간만이 소비될 뿐 아니라 또한

사회적 총노동시간 중에서 필요한 비례적 분량만이 서로 다른 집단들에 소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이 사용가치라는 그 사실이 여전히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상품의 사용가치가 그 상품이 절대적으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면 일정한 사회적 생산물량의 사용가치는 그 생산물량이 개개 특수한 종류의 생산물에 대한 양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수요에 알맞는가, 따라서 노동이 이 양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수요에 비례하여 서로 다른 생산분야에 균형적으로 분배되고 있는가에 달렸다(이 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산분야에 자본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 사회적 수요 즉 사회적 규모에서 필요한 사용가치는 여기에서 사회적 총노동시간 중 서로 다른 특수한 생산분야에 돌아가는 몫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하나의 상품의 경우에 나타나는 똑같은 법칙 즉 하나하나의 상품의 사용가치는 그 교환가치 따라서 그 가치의 전제라는 법칙에 불과하다. 이 점은 이 균형이 파괴되면 상품가치 따라서 또 그 가치 속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한에서만 필요노동과 잉여노동간의 비율과 관계가 있다. 예컨대 면직물이 불균형적으로 너무나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 직물의 총생산물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그에 필요한 노동시간만이 실현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요컨대 너무나 많은 사회적 노동이 이 특수한 부문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물의 일부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전체 생산물은 마치 그 생산물이 필요한 비례로 생산된 것처럼 팔릴 뿐이다. 사회적 노동시간 중에서 서로 다른 특수한 생산분야들에 합목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들의 이 양적 한계는 가치법칙 일반의 보다 발전된 표현에 불과하다. 비록 이 경우에 필요노동시간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말이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만저만한 노동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한은 사용가치를 통하여 나타난다. 일정한 생산조건하에서 사회는 자기의 총노동시간 중 이만저만한 시간을 이 개별적 종류의 생산물에 들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잉여노동과 잉여가치 일반의 주관적 및 객관적인 조건들은 이윤이건 지대이건 간에 구체적인 규정된 형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조건들은 잉여가치가 어떤 특수한 형태를 취하든 간에 잉여가치로서의 잉여가치에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조건들은 지대를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3) 지대액은 지대를 받아들이는 자가 끼어드는 것으로 해서 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가 끼어드는 것과 관계가 없으며 그가 전혀 참가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발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정은 바로 토지소유의 경제적 이용에 있어서, 지대의 발전에 있어서 특히 독특한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품생산, 더 정확히 말하면 전체 범위에서 상품생산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모든 생산부문과 그 부분들의 모든 생산물에 공통적인 것을 자칫하면 지대의(그리고 농업생산물 일반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기 쉬운 것이다.

사회발전과정에서 지대의 크기(그리고 이와 함께 토지의 가치)는 사회적 총노동의 결과로서 발전한다.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에 따라 시장과 토지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또 한편으로는 직접 비농업부문까지도 포함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업부문을 위한 생산조건으로서의 땅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더 정확하게 원래의 농업지대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지대 따라서 또 토지의 가치는 토지생산물을 위한 시장과 함께 발전하며 따라서 또 비농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즉 부분적으로는 먹을 것에 대한, 부분적으로는 원료에 대한 그들의 욕망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발전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본성으로 해서 비농업인구에 비해 농업인구를 끊임없이 줄인다. 왜냐하면 공업(좁은 의미에서의)에서는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줄더라도 절대적으로는 늘어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데 농업에서는 일정한 땅빼기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가변자본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농업에서는 가변자본은 새로운 땅이 경작되는 한에서만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비농업인구가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현상은 농업과 그 생산물에만 있는 특성은 아니다. 오히려 같은 현상은 상품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그 절대적 형태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다른 모든 생산부문들과 생산물들에도 특징적이다.

이 생산물들은 다른 상품들이 그 등가물을 이루고 다른 생산물들이 상품으로서 그리고 가치로서 그와 대립하는 한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는,

그것도 실현될 수 있는 즉 화폐로 전화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사용가치인 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그 생산물들이 그 생산자 자신을 위한 직접적 생존수단으로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즉 교환가치(화폐)로 전화되어야만, 양도되어야만 사용가치로 되는 생산물로서 생산되는 한에서 그렇다. 이 상품을 위한 시장은 사회적 분업으로 해서 발전한다. 즉 생산적 노동이 갈라짐으로 해서 그 노동의 생산물이 각각 서로 상품으로 전화되며 각각 상대방을 위한 중간물로 전화되며 그 생산물이 서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농업생산물에만 독특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대는 상품생산의 기초 위에서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만 화폐지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대는 농업생산이 상품생산으로 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따라서 비농업생산이 농업생산과 대립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그와 똑같은 정도로 농업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며 교환가치로 그리고 가치로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함께 상품생산이 발전하고 따라서 가치의 생산이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생산이 발전한다. 그런데 잉여가치가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토지소유가 땅을 독점하여 이 잉여가치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빼앗아내고 따라서 그 지대의 가치와 땅 자체의 값을 올리는 능력이 발전한다. 자본가는 이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발전에서 아직 자립적으로 기능을 하는 자이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 중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가 도와주지 않지만 늘어나는 몫을 빼앗아 내기만 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의 지위가 독특하다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토지생산물을 위한 시장이 넓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라 그리고 그와 함께 토지생산물과 대립하는 상품세계 즉 다른 말로 하면 비농업적 상품생산자들과 비농업적 상품생산의 수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 토지생산물의 가치 따라서 땅 자체의 가치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도와주지 않고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치량, 잉여가치의 양 그리고 이 잉여가치의 일부가 지대로 전화되는 것이 사회적 생산과정

에 즉 상품생산 일반의 발전에 의존한다는 현상은 토지소유자의 어떤 독특한 특성으로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도브는 이 현상으로부터 지대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지대는 농산물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농산물의 가치는 비농업인구의 양과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물이 그 등가물을 이루는 일련의 다른 상품들의 양과 다양성이느는 데 따라서만 상품으로서 발전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도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가치의 일반적 서술에서 보여준 것이다.”⁴⁸ 한편으로 어떤 생산물의 교환능력은 일반적으로 그 생산물의 외부에 있는 상품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한편 이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될 수 있는 양은 특히 그 다양성에 달려 있다.

공업에서는 농업에서나 어떤 생산자도 고립적으로 보면 가치 또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의 생산물은 사회적 관계들이 일정하게 결합될 때에 비로소 가치와 상품으로 된다. 첫째로, 그 생산물이 사회적 노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에서 따라서 그 생산자 자신의 노동시간이 사회적 노동시간 일반의 일부로 나타나는 한에서 그렇게 된다. 둘째로는 그의 노동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그의 생산물에 찍힌 사회적 성격으로 나타나며 그의 생산물의 화폐적 성격에서 그리고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생산물의 일반적 교환가능성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지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를 설명하거나 그보다 더 제한성을 가진 이해에서는 잉여생산물 일반을 설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여기에서는 상품과 가치로서의 모든 생산물이 가지는 성격을 오직 농산물만이 가지는 것으로 잘못 보고 있다. 그 설명은 가치의 일반적 규정으로부터 일정한 상품가치의 실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더욱더 천박한 것으로 된다. 개개 상품은 그 가치를 유통과정에서만 실현할 수 있으며 상품이 가치를 실현하는가 그리고 실현한다면 어느 정도로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장조건에 달렸다.

그리하여 지대의 독특한 특성은 농산물이 가치로 발전하고 또 가치로서 발전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들과 대립하여 비농산물이 상품으로서의 농산물과 대립한다는 데에 또는

농산물이 사회적 노동의 특수한 표현으로서 발전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대의 독특한 특성은 농산물이 가치(상품)로서 발전하는 조건들과 함께 그리고 농산물의 가치의 실현조건들과 함께 토지소유의 권력도 발전하여 토지소유가 참여하지 않고 창조되는 이 가치 중에서 더욱더 많은 몫을 차지하며 잉여가치 중에서 더욱더 많은 몫이 지대로 전화된다는 데에 있다.

제 38 장 차액지대. 개론

지대를 분석하는 데서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겠다. 즉 이러한 지대를 지불하게 되는 생산물에서 잉여가치의 일부 따라서 또 총가격의 일부가 결국 지대로 전화되는데——우리의 분석을 위해서는 농산물이나 광업생산물을 생각하면 된다——이러한 생산물 따라서 토지생산물이나 광업생산물이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가격대로 팔린다는 것이다. 즉 그 생산물이 팔리는 값은 그 생산비요소들(소비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에다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며 선대된 총자본——소비된 것과 소비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산되는 이윤을 보탠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생산물이 팔리는 평균가격은 그 생산가격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대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즉 이윤의 일부가 어떻게 지대로 전화될 수 있는가, 따라서 상품 값의 일부가 어떻게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지대형태의 일반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한 나라에서 압도적 다수의 공장이 중기기관에 의하여 돌아가는데 일정한 소수의 공장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물에 의하여 돌아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해당한 산업부문들에서 100이라는 자본이 소비되고 있는 상품량에 대하여 생산가격이 115라고 가정한다. 이 15%라는 이윤은 소비된 자본 100에 대해서 계산될 뿐 아니라 이 상품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린 총자본에 대해서도 계산된다. 이 생산가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하는 개개 산업가의 개별적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의 평균적인 조건하에서 상품에 평균하

* 이 권, 제1분책, 211~24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여 드는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것은 사실상 시장생산가격이며 아래위로 몹시 움직이는 시장가격과 다른 평균시장가격이다. 상품의 가치는 일정한 양의 상품이나 하나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개별적으로 일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자에게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즉 일정한 평균적인 사회적 생산조건하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장에 있는 여러 종류의 상품 총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데 가치의 이 본성, 가치의 이 규정방식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의 형태로, 더 나아가서는 조절적 시장가격 또는 시장생산가격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또 일정한 숫적 관계는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아무래도 좋으므로 우리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생산비가 100이 아니라 90밖에 안된다고 가정하자. 시장을 조절하는 이 상품량의 생산가격은 15%의 이윤을 포함하여 115이므로 물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는 공장주들도 역시 115로 즉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평균가격으로 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윤은 15가 아니라 25가 될 것이다. 그들은 조절적 생산가격으로 해서 10%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상품을 생산가격 이상으로 팔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가격대로 팔기 때문이며,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하에서 즉 이 생산분야에서 지배적인 평균수준 이상의 조건하에서 그들의 상품이 생산되며 또는 그들의 자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을 곧 보게 된다.

첫째로, 자연적인 폭포를 동력으로 쓰는 생산자들의 초과이윤은 우선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우연적인 결과가 아니며 시장가격의 우연적인 변동의 결과가 아닌 온갖 초과이윤(이 범주는 이미 생산가격을 서술할 때에 설명하였다*)과 그 성격이 같다. 그리하여 이 초과이윤은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시장을 조절하는, 이 생산분야 전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생산가격과의 차액과 같다. 이 차액은 상품의 개별적 생산가격을 넘는 일반적 생산가격의 초과분과 같다. 이 초과분의 두 개의 조절적인 한계는 한편으로는 개별적 생산비 따라서

* 이 권, 제1분책, 237~24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개별적 생산가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 생산가격이다. 폭포에 의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가 더 작은 것은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총량이 더 작기 때문이다. 즉 불변자본의 일부로서 대상화된 형태로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이 더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쓰이는 노동은 같은 종류의 공장의 대부분에서 쓰이는 노동보다 생산적이며 그 개별적 노동생산력은 더 크다. 그 개별적 노동생산력이 더 크다는 것은 똑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다른 공장들에서보다 더 적은 양의 불변자본 즉 더 적은 양의 대상화된 노동이 들며 그 밖에 또 수차는 불을 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의 산 노동이 든다는 데서 나타난다. 이와같이 적용되는 노동의 개별적 생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줄어들지만 상품의 생산비도 줄어들며 따라서 또 그 생산가격도 줄어든다. 산업가의 견지에서는 그의 상품의 생산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대상화된 노동의 댓가를 더 적게 지불하여도 되며 또한 그가 적용하는 산 노동력에 대하여도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여도 된다. 그의 상품의 생산비가 더 적기 때문에 그의 개별적 생산가격도 더 적다. 그의 생산비는 100이 아니라 90이다. 따라서 그의 개별적 생산가격도 115가 아니라 $103\frac{1}{2}$ 밖에 안될 것이다($100 : 115 = 90 : 103\frac{1}{2}$). 그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의 차액의 한계는 개별적 생산비와 일반적 생산비의 차액이다. 이것은 그의 초과이윤의 한계를 이루는 크기의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 이윤율이 규정적 요인의 하나로서 들어가는 일반적 생산가격의 크기이다. 석탄 값이 싸지면 그의 개별적 생산비와 일반적 생산비의 차액은 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초과이윤이 줄 것이다. 만약 그가 상품을 그 개별적 가치 또는 그 개별적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가격으로 팔지 않을 수 없다면 그 차액은 없어질 것이다. 이 차액은 한편으로는 상품이 일반적 시장가격으로 즉 경쟁으로 해서 개별적 가격이 균등화되어 생기는 값으로 팔리는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가동시키는 노동의 보다 큰 개별적 생산력이 노동자들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생산력이 다 그렇듯이 그들의 고용자의 이익으로 되는 결과이다. 즉 그 개별적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표시되는 결과이다.

이 초과이윤의 하나의 한계는 일반적 생산가격——일반적 이윤율의 수준이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수준이므로 이 초과이윤은 일반적 생산가격과 개별적 생산가격의 차액, 따라서 개별적 이윤율과 일반적 이윤율의 차이에서만 생길 수 있다. 이 차액을 넘는 초과분은 생산물의 시장을 조절하는 생산가격대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로, 여기까지는 동력으로서 증기가 아니라 자연적인 폭포를 쓰는 공장주의 초과이윤은 다른 모든 초과이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온갖 정상적인 초과이윤 즉 우연적인 판매조작이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초과이윤은 이 특수한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 즉 일반적으로 이 생산분야의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가격 또는 달리 표현하면 이 생산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가격을 규정하는 일반적 생산가격과의 차액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이제부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공장주는 그의 초과이윤 즉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조절되는 생산가격이 직접 그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초과분은 어떠한 사정으로 해서 얻게 되는가?

무엇보다 먼저 자연적인 폭포의 동력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폭포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석탄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즉 석탄은 물을 증기로 전화시키며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이고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등가물을 지불받지 않으면 안되고 일정한 비용이 드는데 폭포는 그렇지 않다. 폭포는 하나의 자연적 생산요인으로서 이 요인을 만들어내는 데 어떠한 노동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증기기관을 가지고 일하는 공장주도 자연력을 쓰는데 이 자연력은 그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지만, 노동을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하여 자연력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값싸게 생산하게 하는 한에서는 자연력은 잉여가치를 따라서 이윤을 높이며 그리하여 협업, 분업 등에서 생기는 노동의 사회적 자연력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의 독점물로 된다. 그 공장주는 석탄의 댓가는 지불하지만, 물이 그 물리적 상태를 변경하여 증기로 되는 능력,

증기의 탄성 등의 댓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자연력 즉 이 자연력으로 해서 오르는 노동력을 이와같이 독점하는 것은 증기기관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된다. 그와 같이 독점하는 것은 노동생산물 중에서 임금으로 전화되는 부분에 비하여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을 늘릴 수 있다. 그와 같이 독점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일반적 이윤율을 높이지만 바로 평균이윤을 넘는 개별적 이윤의 초과분인 초과이윤은 만들어내지 않는다. 따라서 폭포라는 자연력을 써서 이 경우에 초과이윤을 만들어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경우에 자연력을 쓰기 때문에 노동생산력이 오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려면 그 밖의 다른 사정들이 더 필요하다.

반대의 경우, 산업에서 자연력을 쓰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의 양이 달라지므로 일반적 이윤율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연력을 쓰는 것만으로 일반적 이윤율과 어긋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은 바로 그 어긋남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에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개별적 자본이 실현하는 초과이윤은——특수한 생산분야들 사이에서 이윤율의 배리는 끊임없이 균등화되어 평균이윤율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우연적인 배리에 지나지 않는 배리를 제쳐놓고 본다면 비용가격 즉 생산비가 줄어드는 데서 생긴다. 그런데 생산비가 줄어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이 평균보다 더 많은 양으로 쓰이며 따라서 생산에서 비생산적 비용이 줄어드는데 노동생산력을 늘리는 일반적 원인(협업, 분업 등)은 그 원인이 보다 넓은 노동분야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정도에서, 더 큰 강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정 때문이다. 다른 한편 생산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능자본의 규모를 제쳐놓고 본다면 더 좋은 노동방법, 새로운 발명, 개량된 기계, 화학적인 제조상의 비밀 등 간단히 말하면 새로롭고 개량되고 평균수준보다 나은 생산수단과 생산방법이 쓰인다는 사정 때문이다. 이 경우에 생산비의 감소와 여기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은 기능자본을 투하하는 방식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기능자본이 예외적으로 다량으로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데서 생기는데 이 사정은 크기가 같은 자본량이 평균적으로 적용되자마자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크기가 일정한 자본이 특히 생산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데서 생기는데 이 사정은 예외적인 생산양식이 일반화되거나 그보다 더 발전된 생산양식이 나오면 사라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 초과이윤의 원인은 자본 자체(여기에는 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는 노동도 들어간다)에서 생긴다. 적용된 자본의 크기의 차이에서 생기건 자본을 적용하는 더 합목적적인 방식에서 생기건 이에는 관계없이 말이다. 같은 생산분야에서 모든 자본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 것도 없다. 반대로 자본들 간의 경쟁은 이 차이를 더욱더 균등하게 만들려고 한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한 가치의 규정은 상품의 값이 싸지는 데서 관찰되며 또 상품은 똑같은 유리한 사정에서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데서 관찰된다. 그러나 폭포를 쓰는 공장주의 초과이윤은 사정이 다르다. 그가 적용하는 노동의 높은 생산력은 자본과 노동 자체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자본 및 노동과는 다르지만 자본과 한덩어리가 되는 자연력을 쓰는 데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높은 생산력은 자연력의 이용과 결부된 더 큰 자연발생적 노동생산력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이 자연력이란 예컨대 증기의 탄성과 같이, 같은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연력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이 이 분야에 투하되기만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적용되게 되는 그러한 자연력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연력은 폭포와 같이 특수한 땅땡기와 거기에 붙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력이다. 노동생산력을 높이는 이 자연조건을 살리는 것은 어떤 자본이나 물을 증기로 전화시킬 수 있는 것과 달라서 자본에 달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자연조건은 자연의 어떤 곳에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곳에서 일정한 자본을 지출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자연조건은 기계, 석탄 등과 같이 노동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물과 결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의 땅의 일정한 자연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폭포를 소유하고 있는 공장주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장주들이 이 자연력을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땅, 더구나 물의 힘을 갖추고 있는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한 나라에서 자연적인 폭포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의 힘의 분량이 늘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폭포는 그 추동력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끌어낼 수도 있으며 낙차가 일정하다면 물의 힘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용하기 위하여 수차를 개량할 수 있으며 보통의 수차가 물공급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터빈을 쓸 수 있다 등등. 이러한 자연력의 점유는 그 점유자의 손에서 독점을 이룬다. 이 독점은 투하된 자본의 높은 생산력의 한 조건으로서 이 조건은 자본 자체의 생산과정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³³⁾ 이와같이 독점할 수 있는 이 자연력은 언제나 땅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력은 해당한 생산분야의 일반적 조건에 드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일반적 조건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생산분야의 조건에 드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폭포가 있는 땅과 함께 그 폭포가 지구의 이 한 부분의 소유자로, 즉 토지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폭포에 자본을 투하하며 자본에 의해서 그 폭포를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는 그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은 그 자체로 폭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폭포를 이와같이 이용하는 데서 생기는 초과이윤은 자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점할 수 있으며 또 독점되어 있는 자연력을 자본에 의해서 이용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밑에서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락된다. 즉 그것은 폭포의 소유자의 손에 들어간다. 공장주가 이 소유자에게 그 폭포로 해서 한 해에 1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한다면 공장주의 이윤은 15파운드 스텔링으로 되며 그 경우에 그의 생산비액을 이루는 100파운드 스텔링에 대하여 15%로 된다. 그리고 그는 증기를 가지고 일하는 그의 생산분야의 다른 모든 자본가들과 꼭 마찬가지로 처지에 있거나 아마 그들보다 나은 처지에 있을 것이다. 자본가 자신이 폭포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폭포의

33) 초과이윤에 관해서는 「최근 맬더스 씨가 주장한 수요의 본성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런던, 1821년)(맬더스를 반대한 것)를 보라.

소유자로서 역시 10파운드 스텔링의 초과이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초과분은 그 자본가의 자본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본과 떼어 낼 수 있으며 독점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자연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기기 때문어야말로 이 초과분은 지대로 전화되는 것이다.

첫째, 이 지대가 언제나 차액지대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지대는 상품의 일반적 생산가격을 규정하는 데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반적 생산가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 지대는 언제나 독점한 자연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별적 자본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해당한 생산분야 일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가격의 차액에서 생기는 것이다.

둘째, 이 지대는 적용되는 자본이나 이 자본이 자기 것으로 하는 노동의 생산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데서——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을 따름이다——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대는 일정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일정한 개별적 자본의 생산성이 생산력을 높이는 예외적이며 자연이 만들어낸 그러한 유리한 조건들을 이용할 수 없는 자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석탄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물의 힘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컨대 증기를 이용하는 것이 물의 힘을 이용하는 데는 없는 그러한 결정적 우월성을 가지며 이 우월성이 물의 힘을 이용하는 데서 나오는 우월성보다 훨씬 크다면 물의 힘은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초과이윤도 낳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지대도 낳지 못할 것이다.

셋째, 자연력은 초과이윤의 원천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생산력의 자연적 기초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의 자연적 기초일 뿐이다. 사실 사용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가치의 담당자이지 교환가치의 원인이 아니다. 똑같은 사용가치도 만약 그것이 노동을 돌이지 않고 마련될 수 있다면 아무런 교환가치도 가지지 않을 것이지만 사용가치로서의 그 자연적 유용성을 여전히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물건이 사용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즉 노동의 그러한 자연적 담당자가 아니라면

그 물건은 아무런 교환가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만약 여러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으며 여러 개별적 생산가격이 시장을 조절하는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는다면 폭포를 써서 노동생산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폭포로 생산하는 상품의 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이고 이 상품에 들어 있는 이윤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즉 또 한편으로 만약 자본이 적용하는 노동의 자연적 및 사회적 생산력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높아진 노동생산력은 결코 잉여가치로 전화되지 않을 것이다.

네째, 폭포에 대한 토지소유는 폭포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잉여가치(이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값의 창조와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초과이윤은 아무런 토지소유도 없는 경우에도 예컨대 폭포가 있는 땅을 주인 없는 땅으로서 공장주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는 초과이윤으로 전화되는 가치부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로 해서 토지소유자, 폭포의 소유자는 이 초과이윤을 공장주의 주머니에서 자기 자신의 주머니로 옮겨놓을 수 있을 따름이다. 토지소유는 이 초과이윤의 창조의 원인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지대의 형태로 전화시키는 원인이며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폭포의 소유자가 이윤 또는 상품가격 중의 이 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원인이다.

다섯째, 우선 폭포의 값 즉 토지소유자가 폭포를 제3자나 공장주 자신에게 파는 경우에 그가 받게 될 값은 그 공장주의 개별적 생산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품의 생산가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대는 중기기관을 가지고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상품의 생산가격으로서 폭포와는 관계없이 정해지는 생산가격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이 폭포의 값이라는 것이 결국 그 배후에 현실적인 경제적 관계가 숨어 있는 불합리한 표현이다. 폭포는 땅 일반이나 모든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아무런 노동도 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화폐로 표현된 가치에 지나지 않는 것인 가격도 없다. 가치가 없으면 그에 따라서 또 아무 것도 화폐로 표시될 수 없다. 이 값은 자본화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소유로 해서 그 소유자는 개별적 이윤과 평균이윤의 차액을

가로챌 수 있다. 이렇게 가로챘으며 해마다 새로워지는 이윤은 자본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자연력 자체의 값으로 나타난다. 폭포를 이용하여 공장주가 얻는 초과이윤이 한 해에 10파운드 스텔링이고 평균이자율 5%라면 이 10파운드 스텔링은 2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의 한 해 이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폭포로 그 소유자가 공장주에게서 해마다 가로챌 수 있는 1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화인 이것이 폭포 자체의 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폭포 자체에는 가치가 없으며 폭포의 값이란 자본주의적으로 계산한 가로챌 초과이윤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곧 알게 된다. 즉 2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값은 10파운드 스텔링씩 해서 20년 동안의 초과이윤을 표시할 따름인데, 그 밖의 조건들이 다름없다면 바로 그 폭포로 해서 그 소유자는 30년, 100년, x년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 해마다 이 10파운드 스텔링을 가로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물의 힘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생산방법으로 해서 증기기관으로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비가 100파운드 스텔링에서 90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진다면 초과이윤, 따라서 지대, 따라서 또 폭포의 값은 없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알게 된다.

이상과 같이 차액지대의 일반적 개념을 확정해 놓고 이제는 원래의 농업에서 보게 되는 차액지대를 살펴보는 데로 넘어가자. 원래의 농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대체로 광업에도 들어맞는다.

제 39 장 차액지대의 첫째 형태(차액지대 I)

리카아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완전히 옳다.

“지대(즉 차액지대, 그는 차액지대밖에는 도대체 어떠한 지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언제나 같은 양의 두 자본과 노동의 적용에서 얻어지는 생산물간의 차이이다”(『원리』, 59페이지).

지대가 문제이고 초과이윤 일반이 문제가 아닌 한에서 그는 같은 면적의 땅에서라고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초과이윤은 그것이 유통과정에서 부닥치는 우연한 사정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면 언제나 같은 양의 두 자본과 노동의 생산물간의 차이로서 생산되며, 그리고 이 초과이윤은 같은 양의 두 자본과 노동이 같은 면적의 땅에 적용되어 같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면 지대로 전화된다. 어쨌든 이 초과이윤이 같은 양의 적용된 자본이 낳는 같지 않은 결과에서 생긴다는 것은 결코 무조건적인 필연성은 아니다. 또한 서로 다른 기업에서 같지 않은 양의 자본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개개 자본의 같은 비례적 부분,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은 같지 않은 결과를 준다. 즉 이윤율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임의의 투자분야 일반에서 초과이윤이 있게 되는 일반적 전제이다. 둘째 전제는 이 초과이윤이 지대(일반적으로 이윤과 구별되는 형태로서의 세)의 형태로 전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사정 밑에서 일어나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리카아도는 다음과 같은 명제와 관련하여 그 명제가 차액지대에만 관계되는 한에서 역시 옳은 것이다.

“동일한 또는 새로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에서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은 모두 지대를 낮추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를 증대시키는 것은 모두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지대를 높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74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원인 중에는 일반적인 사정(비옥도와 위치)뿐 아니라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도 있다. 즉 1) 세금의 분배가 균등하게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정이다. 예컨대 영국에서와 같이 세금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금을 땅에다 매기고 지대에다 매기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세금분배가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2) 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농업발전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차이. 왜냐하면 이 산업부문은 그 정통적 성격 때문에 공업보다는 더 어렵게 같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이다. 3) 차지인들 간의 불균등한 자본분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농업을 정복하는 것, 자작농민이 임금노동자로 전화되는 것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일반의 마지막 정복이므로 위에서 든 여러 차이는 다른 어떤 산업부문보다 농업에서 더 심한 것이다.

이와같이 미리 말해둘 것을 말한 다음에 리카아도와 그 밖의 사람들의 연구와는 다른 나의 연구의 특성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선 같은 면적의 서로 다른 땅에 들인 같은 양의 자본에서 생기는 같지 않은 결과를 살펴 보거나 면적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크기가 같은 땅패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살펴 보자.

자본과는 관계가 없이 결과가 이렇게 같지 않은 일반적인 두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비옥도(이 첫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땅의 자연적 비옥도에 일반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며 그리고 어떠한 서로 다른 계기가 들어가는가를 밝혀야 한다). 2) 땅의 위치. 이 둘째 사정은 식민지에서 결정적인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땅이 차례차례로 경작될 수 있는 순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차액지대를 낳는 이 두 개의 서로 다

큰 기초인 비옥도와 위치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치는 아주 좋지만 비옥도는 매우 낮은 땅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 사정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일정한 나라에서 땅을 개간할 때에 좋은 땅에서 나쁜 땅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옮겨갈 수도 있는 이유를 그 사정으로 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생산의 진보는 일반적으로 한편으로는 지방에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교통 및 운수수단을 만들어내어 위치를 조성함으로써 차액지대의 기초인 위치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며, 또 한편으로 공업과 농업을 떨어지게 하고 생산의 대중심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 현상의 반대측면인 농촌의 상대적인 고립화(relative Vereinsamung des Lande)를 강화함으로써 땅패기의 위치상 차이를 크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선 땅패기의 위치라는 이 점은 제쳐놓고 자연적 비옥도만을 살펴보자. 기후 등의 계기들을 제쳐놓고 보면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는 토양결층의 화학적 구성의 차이 즉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 내용의 차이에 있다. 그러나 두 땅패기의 화학적 구성이 같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 자연적 비옥도가 같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영양소가 식물의 영양을 위하여 잘 동화되고 직접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현실적, 실제적 비옥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 비옥도가 같은 땅패기들에서 이 자연적 비옥도가 어느 정도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농화학, 부분적으로는 농업기계화의 발전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옥도는 그것이 땅의 객관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일정한 관계 즉 농화학과 농업기계화의 일정한 발전수준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옥도는 이 발전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화학적 수단(예컨대 굳은 점토질 땅에 일정한 액체비료를 치는 것 또는 기름진 점토질 흙을 구워내는 것)의 결과이건, 또는 기계적 수단(예컨대 기름진 땅을 갈기 위하여 특수한 쟁기를 사용하는 것)의 결과이건 간에, 비옥도가 같은 땅을 사실상 더 비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장애물은 제거할 수 있다(물떼기도 또한 여기에 든다). 그 결과에 여러 종류의 땅을 가는 순서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농업이 발전하던 한 시기에 메마른 사질 땅과 기름진 점토질 땅 사이에서 그러하였다. 그 결과에 또 역사적으로——경작순서에서——어떻게 보다 기름진 땅이 덜 기름진 땅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똑같은 결과는 또한 땅의 구성에서 인위적으로 실시한 개량으로거나 영농방법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로 해서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결과는 하층의 땅의 조건이 서로 다른 결과에 여러 종류의 땅의 등급이 달라지는 데서도 생길 수 있는데 이 하층의 땅이 역시 경작되어 보드라운 땅에 덧붙여지면 그럴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영농방법의 적용(예컨대 녹비의 재배)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하층의 땅을 상층의 땅으로 만들든가 하층의 땅과 상층의 땅을 뒤섞든가 또는 하층의 땅을 위로 올리지 않고 갈든가 하는 기계적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

서로 다른 땅의 비옥도의 차이에 미치는 이상과, 같은 모든 영향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비옥도의 견지에서는 노동생산력의 정도 즉 이 경우에는 땅의 자연적 비옥도를 곧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농업의 능력——이 능력은 발전단계가 다르면 다른 것이다——도 땅의 화학적 구성과 그 밖의 자연적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이른바 자연적 비옥도의 한 계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의 일정한 발전단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또 각종 토지가 그 소질에 따라 차지하는 순서는 이 발전정도에 상응한다. 이것은 물론 여러 종류의 땅들에 동시에 자본을 투하하는 경우에 언제나 그러한 바와 같다. 그 경우에는 차액지대는 올라가는 차례로 또는 내려가는 차례로 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지 경작되고 있는 땅의 총체에 대해서는 차례가 일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일정한 차례를 넘게 한 계기적 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A, B, C, D 4종류의 땅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또 밀 1쿼터의 값은 3파운드 스텔링 즉 60실링이라고 가정하자. 지대는 단순한 차액지대이므로 쿼터 당 60실링인 이 값은 가장 나쁜 땅에서는 생산가격(Produktionskosten)⁵⁰과 같다. 즉 자본 더하기 평균이윤과 같다.

A가 가장 나쁜 땅이어서 50실링의 지출로 1쿼터=60실링을 준다고 하

자. 즉 이윤은 10실링 또는 20%라고 하자.

B는 똑같은 지출로 2쿼터=120실링을 준다고 하자. 이것은 70실링의 이윤 또는 60실링의 초과이윤을 주는 것으로 될 것이다.

C는 똑같은 지출로 3쿼터=180실링을 준다고 하자. 총이윤은 130실링, 초과이윤은 120실링이다.

D는 4쿼터=240실링=180실링의 초과이윤을 준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될 것이다.

표 I

땅종류	생 산 물		선대자본	이 윤		지 대	
	쿼터	실링		쿼터	실링	쿼터	실링
A	1	60	50	1/6	10	—	—
B	2	120	50	1 1/6	70	1	60
C	3	180	50	2 1/6	130	2	120
D	4	240	50	3 1/6	190	3	180
합계	10	600	—	—	—	6	360

지대는 각각 D에서는 190실링—10실링 즉 D와 A간의 차액이고, C에서는 130실링—10실링 즉 C와 A간의 차액이고, B에서는 70실링—10실링 즉 B와 A 간의 차액이다. 그리고 B, C, D에서의 총지대는 6쿼터=360실링이고 D와 A, C와 A, B와 A간의 차액들의 합계와 같다.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생산물을 표시하는 이 차례는 문제를 추상적으로 보면(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지적하였다) 내려가는 차례로(D에서 A로 즉 기름진 땅에서 점점 덜 기름진 땅으로 내려가는)도 이루어지고, 올라가는 차례로(A에서 D로 즉 비교적 덜 기름진 땅에서 점점 더 기름진 땅으로 올라가는)도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번갈아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올라가는 식으로 예컨대 D에서 C, C에서 A로, A에서 B로라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내려가는 차례에 따라 진행된 과정은 1쿼터의 값이 가령 15실링에서 60실링으로 점차 올라가는 것이었다. D에서 생산되는 4쿼터(백만 쿼터라고 생각해도 좋다)만으로는 더 이상 안되게 되자 밑값은 부족한 공급을

C가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갔다. 즉 그 값은 쿼터 당 20실링으로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밑값이 쿼터 당 30실링으로 오르자 B가 경작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며 밑값이 60실링으로 오르자 A가 경작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지출된 자본에 대하여 20%보다 낮은 이윤율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D에서 지대는 처음에는 쿼터 당 5실링, D에서 생산하는 4쿼터에 대하여는 20실링으로 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쿼터 당 15실링, 4쿼터에 대하여는 60실링, 그 다음에는 쿼터 당 45실링, 4쿼터에 대하여는 180실링으로 되었다.

D의 이윤율이 처음에는 역시 20%였다면 4쿼터에 대한 D의 총이윤도 10실링에 불과하였으나 이 10실링은 곡물 값이 15실링인 경우에는 60실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곡물을 대표하였다. 그런데 곡물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들어가고 매 쿼터에서 일부는 임금을 보상하고 다른 일부는 불변자본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는 잉여가치가 더 크며 따라서 또 그 밖의 조건들이 전과 같다면 이윤율도 보다 컸다(이윤율에 관한 문제는 더욱 특별히 그리고 더욱 상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차례가 거꾸로이고 과정이 A에서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경작지가 경작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쿼터 당 값은 처음에 60실링 이상으로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B측에서 2쿼터의 필요한 공급이 있었으므로 값은 다시금 60실링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B는 쿼터 당 30실링으로 생산하였지만 60실링으로 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공급은 바로 겨우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선 60실링의 지대가 B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며 똑같은 방식으로 C와 D에서도 지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언제나 전제로 되고 있는 것은 C와 D는 1쿼터의 밑을 20실링 및 15실링의 실제가치대로 제공하였지만 A가 제공하는 1쿼터의 공급은 총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전과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다름없이 60실링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A가 그 다음에는 A와 B가 충족시킨 요구보다 수요가 늘어난 결과에 B, C, D가 차례로 경작되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개간면적이 늘게 되었고 우연히 더 기름진 땅이 나중에야 비로소 경작권내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첫 차례(내려가는 차례)에서는 값이 오름과 함께 지대는 높아지고 이윤율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이윤율은 줄어들다가도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들로 해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말하겠다. 일반적 이윤율은 모든 생산분야의 잉여가치에 의하여 균등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농업이윤이 공업이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둘째 차례(올라가는 차례)에서는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율은 전과 같을 것이다. 이윤의 양은 더 적은 곡물로 표시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상품에 비해서 곡물의 상대적 가격은 오를 것이다. 다만 이윤이 늘어난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산업가인 차지농업가의 주머니로 들어가 늘어나는 이윤으로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대형태로 이윤에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곡물값은 우리의 전제 밑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차액지대는 값이 그대로이거나 오르는 경우에도 발전하고 늘며 나쁜 땅에서 좋은 땅으로 계속 나아가는 경우나 좋은 땅에서 나쁜 땅으로 계속 뒷걸음질하는 경우에도 발전하고 늘어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1) 값이 한 차례에서는 오르고 다른 차례에서는 변함없다고 가정하였으며 2) 좋은 땅에서 나쁜 땅으로 또는 반대로 나쁜 땅에서 좋은 땅으로 끊임없이 경작이 옮겨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곡물에 대한 수요가 원래 10쿼터였는데 17쿼터로 늘어난다고 하자. 그리고 또 가장 나쁜 땅 A는 60실링의 생산가격(50실링의 비용+20%의 이윤으로 10실링)으로 $1\frac{1}{3}$ 쿼터를 제공하며 따라서 그 생산가격이 쿼터 당 45실링인 다른 땅 A에 의하여 밀려난다고 하자. 또는 오랜 땅 A는 계속되는 합리적 경작의 결과에 개량되든가 또는 예컨대 클로버 등을 심어 비용은 그대로이면서도 더 생산적으로 경작되게 되고 그리하여 이 땅의 생산물은 선대자본이 변함없으면서도 $1\frac{1}{3}$ 쿼터로 늘어난다고 하자. 그리고 또 땅 B, C, D는 전과 다름없이 같은 양의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옥도가 A와 B 사이에 있는 A'라는 새로운 땅이 경작되게 되고 또 비옥도가 B와 C 사이에 있는 B', B''라는 땅들이 경작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 쿼터 당 밭의 생산가격 또는 그 조절적 시장가격이 60실링에서 45실링으로 즉 25%만큼 떨어질 것이다.

둘째, 더 기름진 땅에서 덜 기름진 땅으로 옮겨가는 동시에 덜 기름진 땅에서 더 기름진 땅으로 옮겨가기도 할 것이다. A'라는 땅은 A보다는 기름지나 지금까지 경작되고 있는 B, C, D보다는 기름지지 않다. 그리고 B', B"는 A, A' 및 B보다는 기름지나 C 및 D보다는 기름지지 않다. 따라서 아래 위로 옮겨가는 차례는 엇바뀌게 될 것이다. 경작이 A 등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덜 기름진 땅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가장 기름졌던 땅들인 C 및 D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기름진 땅으로는 옮겨갈 것이다. 다른 편으로 경작은 절대적으로 더 기름진 땅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가장 덜 기름졌던 땅 A 또는 A 및 B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기름진 땅으로는 옮겨갈 것이다.

셋째, B에서는 지대가 줄 것이다. 또한 C 및 D의 지대도 줄 것이다. 그러나 곡물로서의 총지대는 6쿼터에서 7 $\frac{2}{3}$ 쿼터로 늘 것이다. 경작되어 지대를 낳는 땅의 분량은 늘었을 것이며 생산물의 양도 10쿼터에서 17쿼터로 늘었을 것이다. 이윤은 A에서 전과 다름없지만 그것을 곡물로 표현하면 늘 것이다. 이윤율 자체는 상대적 잉여가치가 늘 것이기 때문에 늘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생산수단이 값싸지게 되기 때문에 임금, 따라서 가변자본에 대한 지출이 줄며 따라서 총지출도 줄 것이다. 화폐로 표현하면 총지대는 360실링에서 345실링으로 줄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차례를 들어보자.

표 II

땅 종류	생 산 물		자본 지출	이 윤		지 대		쿼 터 당 생산가격
	쿼터	실링		쿼터	실링	쿼터	실링	
A	1 $\frac{1}{2}$	60	50	2/9	10	—	—	45실링
A'	1 $\frac{2}{3}$	75	50	5/9	25	1/3	15	36 "
B	2	90	50	8/9	40	2/3	30	30 "
B'	2 $\frac{1}{2}$	105	50	1 $\frac{1}{2}$	55	1	45	25 $\frac{1}{2}$ "
B"	2 $\frac{2}{3}$	120	50	1 $\frac{2}{3}$	70	1 $\frac{1}{3}$	60	22 $\frac{1}{2}$ "

C	3	135	50	1%	85	1%	75	20 ~
D	4	180	50	2%	130	2%	120	15 ~
합계	17	—	—	—	—	7%	345	—

마지막으로 A, B, C, D라는 땅들만이 전과 같이 경작되는데 그 땅들의 생산성이 올라서 A는 1쿼터가 아니라 2쿼터를, B는 2쿼터가 아니라 4쿼터를, C는 3쿼터가 아니라 7쿼터를, 그리고 D는 4쿼터가 아니라 10쿼터를 생산하였다면, 따라서 똑같은 원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땅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였다면 총생산은 10쿼터에서 23쿼터로 오를 것이다. 인구가 늘고 값이 떨어진 결과에 수요가 이 23쿼터를 빨아들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표 III

땅 종류	생 산 물		자본 지출	쿼터당 생산 가격	이 윤		지 대	
	쿼터	실링			쿼터	실링	쿼터	실링
A	2	60	50	30	1/3	10	0	0
B	4	120	50	15	2 1/2	70	2	60
C	7	210	50	8	5 1/2	160	5	150
D	10	300	50	6	8 1/2	250	8	240
합계	23	—	—	—	—	—	15	450

숫자적 관계는 다른 표들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마음대로 정한 것이지만 가정들은 완전히 합리적인 것이다.

첫번째의 주되는 가정은 농업에서의 개량이 서로 다른 종류의 땅들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땅들인 C 및 D에 대하여는 A 및 B에 대해서보다 더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었다. 개량이 좋은 땅에 대해서보다 나쁜 땅에 대해서 더 많이 영향을 준다면 좋은 땅에서 생기는 지대는 늘지 않고 줄 것이다. 그러나 이 표에서는 모든 종류의 땅의 비옥도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더 좋은 땅들인 C 및 D의 더 높은 상대적 비옥도가 늘며 따라서 똑같은 자본을 투하하였지만 생산물은 더욱 차이가

생기며 따라서 또 차액지대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번째 가정은 총생산물이 늘어남과 함께 총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첫째로 그것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마침내 위에서 든 차례 III(표III)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로 필요한 생활수단의 값이 싸짐에 따라 그것의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영국에서의 곡물법⁵¹⁾의 폐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뉴만⁵²⁾을 보라).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생각은 단순히 날씨 때문에 수확에서 큰 차이가 갑자기 생겨 곡물값이 때로는 지나치게 떨어지고 때로는 지나치게 오른다는 데서 나오고 있을 따름이다. 이 경우에는 값이 떨어지는 것이 갑작스럽고 또 오래 가지 않아 소비를 늘리는 데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조절적 생산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값이 떨어지고 따라서 그것이 오래 가는 경우에는 반대현상을 볼 수 있다. 셋째로 곡물의 일부는 브랜디나 맥주를 만드는 데 소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물건의 소비증가는 결코 협소한 한계에 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넷째로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인구의 증가에 달려 있다. 부분적으로는 18세기 중엽을 넘어서까지도 아직 영국이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그 나라가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수요는 단순히 국민적 소비의 한계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밀의 생산이 늘고 그 값이 떨어지면 호밀이나 귀밀 대신에 밀이 인민대중의 주되는 식량으로 되며 따라서 그 때문에만도 밀에 대한 시장은 확대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생산물이 줄고 값이 오르는 경우에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들과 가정한 숫자적 관계에서 차례 III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즉 쿼터 당 값은 60실링에서 30실링으로 즉 50%만큼 떨어지며, 생산은 차례 I과 비교하면 10쿼터에서 23쿼터로 즉 130%만큼 늘며, 땅 B에서의 지대는 다른없고 C에서의 지대는 25%만큼 늘며, D에서는 33⅓%만큼 늘며, 총지대는 18파운드 스텔링에서 22⅓파운드 스텔링으로 즉 25%만큼 늘어난다.

위에서 든 세 개의 표(그 중에서 차례 I은 이중으로 보아야 한다. 즉 A에서 D로 올라가는 것과 D에서 A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회의 일정한 상태에서의 일정한 단계들——예컨대 서로 다른 세

나라에 나란히 있는——로서 볼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은 나라의 다른 발전시기에 서로 뒤따르는 단계들로서 볼 수도 있는데 이 표들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차례는 형성과정에서 어떠했던 간에 완성된 것으로서는 언제나 내려가는 것같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대를 연구할 때에 사람들은 언제나 처음에는 최대한의 지대를 가져오는 땅으로부터 출발하고 마지막으로 가서야 비로소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땅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2)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가장 나쁜 땅의 생산가격은 언제나 조절적 시장가격이다. 비록 표 I 이 올라가는 차례로 형성된 경우에 그 표에서의 조절적 시장가격은 점점 더 좋은 땅이 경작됨으로써만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만 말이다. 이 경우에는 땅 A가 어느 정도로 전과 다름 없이 조절적인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량에 달려 있는 한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값이 조절적이다. 만약 B, C, D에서 생산되는 것이 수요를 넘는다면 A는 조절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슈토르흐가 가장 좋은 땅을 조절적인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그의 머리에는 이러한 것이 떠올랐던 것이다.⁵³ 이러한 의미에서는 아메리카의 곡물 값이 영국의 곡물 값을 조절한다.

3) 차액지대는 경작의 그때그때의 일정한 발전정도에서 일정한, 땅의 자연적 비옥도(여기에서는 아직 땅의 위치를 제쳐놓고 본다)의 차이에서 생기며 따라서 가장 좋은 땅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데서 그리고 크기가 같은 자본이 같지 않은 땅들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같지 않은 땅들은 똑같은 자본에 대하여 같지 않은 양의 생산물을 준다는 사정에서 생긴다.

4) 차액지대와 그리고 차액지대의 등급은 좋은 땅에서 나쁜 땅으로 내려가는 차례에서도 생길 수 있고 나쁜 땅에서 좋은 땅으로 올라가는 차례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뒤바뀌고 엇바뀌면서 생길 수도 있다(차례 I 은 D에서 A로 옮겨감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A에서 D로 옮겨감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다. 차례 II 는 두 종류의 운동을 포괄하고 있다).

5) 차액지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토지생산물의 값이

다름없을 때에도, 오를 때에도 그리고 그것이 떨어질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값이 떨어질 때 총생산과 총지대는 늘 수 있고 지금까지 지대가 없었던 땅에서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비록 가장 나쁜 땅 A는 더 좋은 땅에 의하여 밀려나거나 그 자체가 개량되어 있거나 하며 또 다른 더 좋은 땅들에서의 지대와 가장 좋은 종류의 땅에서의 지대까지도 줄어들지만(표 II) 말이다. 이 과정은 또한 총지대(화폐로 표현된)가 줄어드는 것과 결부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작의 전반적인 개량으로 해서 값이 떨어지며 그리하여 가장 나쁜 땅의 생산물과 생산가격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대는 좋은 땅들의 일부에서 변함이 없든가 줄어들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땅에서는 늘 수 있다. 물론 가장 나쁜 땅과 비교한 모든 땅의 차액지대는 생산물량의 차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예컨대 밭 1쿼터의 값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차액지대는 생산물량의 차이의 크기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모든 땅의 절대적 비옥도가 오르는 경우에 더 좋은 종류의 땅의 비옥도가 그보다 나쁜 종류의 땅의 비옥도보다 상대적으로 오른다면 이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의 크기도 늘어난다. 그리하여(표 I) 값이 60실링인 경우에는 D의 지대는 A에 대한 생산물의 차이에 의하여 즉 3쿼터의 초과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지대는 $3 \times 60 = 180$ 실링이다. 그러나 값이 30실링인 표 III에서는 D의 지대는 A에 비한 D의 생산물의 초과분 8쿼터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8 \times 30 = 240$ 실링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웨스트, 맬더스, 리카아도에게서도 지배적인 차액지대에 관한 첫번째 그릇된 전제 즉 차액지대는 반드시 더욱더 나쁜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또는 농업의 생산성이 더욱더 줄어드는 것을 가정한다는 전제는 무너지고만 것이다.⁵⁴ 차액지대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더욱더 좋은 땅으로 옮겨갈 때에도 생길 수 있다. 차액지대는 이전의 나쁜 땅 대신에 더 좋은 땅이 가장 아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차액지대는 농업이 더욱 전진하는 것과 결부될 수 있다. 차액지대의 조건은 각종 땅들이 같지 않다는 것뿐이다. 생산성의 발전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 차액지대는 전체 농토의 절대적 생산성이 늘더라도 같지 않다는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사실이 강화되거나 변함없거

나 또는 약화될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18세기 초부터 그 중간에 이르는 동안 영국에서는 금, 은의 값이 떨어졌지만 곡물의 값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동시에(이 전기간을 보면) 지대, 총지대, 경지면적, 농업생산과 인구는 늘었다. 이것은 올라가는 선에 따른 표 II와 결합된 표 I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나쁜 땅 A가 개량되거나 곡물을 경작하는 땅에서 제외되거나 한다.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장 나쁜 땅이 농업과 공업에서의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초(시기를 정확히 표시할 것)부터 1815년에 이르는 동안에 곡물 값은 끊임없이 올랐고 그와 함께 지대, 총지대, 경지면적, 농업생산과 인구도 끊임없이 늘었다. 이것은 내려가는 선에 따른 표 I에 상응한다(여기에 당시의 나쁜 땅의 경작에 관한 인용문을 들 것).

페티와 데이번트의 시대에는 개량과 개간에 대하여 농촌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불평이 있었다. 좋은 땅에서 지대가 줄었고 지대를 가져오는 땅이 늘어나서 총지대가 늘었다.

(이상의 세 점에 대하여 나중에 상세한 인용문을 들 것.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경지가 가지는 비옥도의 차이에 관하여도 그렇게 할 것.)

차액지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생산물량의 시장가치가 언제나 그 총생산가격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표 I을 들어 보자. 10쿼터의 총생산물은 600실링으로 팔리는데 그것은 시장가격이 쿼터 당 60실링인 A의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적인 생산가격은 다음과 같다.

A.....	1쿼터= 60실링	1쿼터=60실링
B.....	2쿼터= 60실링	1쿼터=30실링
C.....	3쿼터= 60실링	1쿼터=20실링
D.....	4쿼터= 60실링	1쿼터=15실링
10쿼터=240실링,		평균 1쿼터=24실링

10쿼터의 실제적 생산가격은 240실링이다. 이것이 600실링 즉 250%의

비싼 값으로 팔린다. 1쿼터의 실제적 평균가격은 24실링이다. 이 1쿼터의 시장가격은 60실링이고 이것도 역시 250%의 비싼 값으로 팔린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경쟁을 통하여 관철되는 시장가치에 의한 규정이다. 이 경쟁은 하나의 거짓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 거짓의 사회적 가치는 토지생산물을 지배하는 시장가치의 법칙에서 발생한다. 생산물 따라서 또 토지생산물의 시장가치의 규정은 땅의 질과 그 비옥도의 차이에 기초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생산물의 교환가치에 기초하는 하나의 사회적 행위이다. 비록 사회적으로 의식되지 않고 의도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만약 자본주의적 사회형태가 폐지되고 사회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연합체로서 조직된다고 생각하면 이 10쿼터는 240실링에 들어 있는 양과 같은 양의 자립적인 노동시간을 표시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 토지생산물을 실제로 거기에 들어 있는 노동시간의 2½배로 사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의 존재의 기초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마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해서 생산물의 값이 같은 금액만큼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생산양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차액지대가 국가의 수중으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토지생산물의 값은 그 밖의 조건들에 변함이 없으면 그대로 같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연합체에 의하여 바뀌는 경우에 생산물의 가치가 그대로 같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장가격이 같은 종류의 상품들에 대해서 같다는 것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상품교환에 입각하고 있는 생산의 기초 위에서 관철되는 방식인 것이다. 소비자로서 본 사회가 토지생산물의 값으로 너무나 많이 지불하는 것 즉 사회의 노동시간이 토지생산물에서 실현되는 데서 손실로 되는 것이 이제는 사회성원의 한 부분인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이익으로 된다.

다음 장 차액지대 II에서 서술하게 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두번째 사정은 다음과 같다.

에이커 당 또는 헥터 당 지대, 일반적으로 에이커 당 생산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 또는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의 차이가 문제로 될 뿐 아니라 또한 각종 토지가 몇 에이커나 경작되고 있는가 하는 사정도 문제로 된다. 여기에서 총지대 즉 총경지면적에서 나오는 총지대의 크기만이 직접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값도 오르지 않고 값이 떨어지면서 여러 종류의 땅의 상대적 비옥도의 차이도 커지지 않는 데 치대율이 어떻게 오르는가 하는 문제의 연구에 우리와 넘어가는 것으로 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I

땅종류	에이커	생 산 가 격	생산물	곡물지대	화 폐 지 대
A.....	1	3파운드 스텔링	1쿼터	0쿼터	0파운드 스텔링
B.....	1	3 " "	2 "	1 "	3 " "
C.....	1	3 " "	3 "	2 "	6 " "
D.....	1	3 " "	4 "	3 "	9 " "
합 계	4	—	10 "	6 "	18 " "

이제 각 등급의 경작지의 에이커 수가 2배로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표 Ia

땅종류	에이커	생 산 가 격	생산물	곡물지대	화 폐 지 대
A.....	2	6파운드 스텔링	2쿼터	0쿼터	0파운드 스텔링
B.....	2	6 " "	4 "	2 "	6 " "
C.....	2	6 " "	6 "	4 "	12 " "
D.....	2	6 " "	8 "	6 "	18 " "
합 계	8	—	20 "	12 "	36 " "

두 경우를 더 가정하자. 그 첫째는 가장 나쁜 두 종류의 땅에서 생산이 확대되는 경우인데 다음과 같다.

표 Ib

땅종류	에이커	생 산 가 격		생산물	곡물 지대	화 폐 지 대
		에이커 당	합 계			
A.....	4	3파운드 스텔링	12파운드스텔링	4쿼터	0쿼터	0파운드 스텔링
B.....	4	3 " "	12 " "	8 " "	4 " "	12 " "
C.....	2	3 " "	6 " "	6 " "	4 " "	12 " "
D.....	2	3 " "	6 " "	8 " "	6 " "	18 " "
합 계	12	—	36 " "	26 " "	14 " "	42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과 경지가 네 개 등급의 땅에서 각각 고르지 않게 확대되는 경우이다.

표 Ic

땅종류	에이커	생 산 가 격		생산물	곡물 지대	화 폐 지 대
		에이커 당	합 계			
A.....	1	3파운드 스텔링	3파운드스텔링	1쿼터	0쿼터	0파운드 스텔링
B.....	2	3 " "	6 " "	4 " "	2 " "	6 " "
C.....	5	3 " "	15 " "	15 " "	10 " "	30 " "
D.....	4	3 " "	12 " "	16 " "	12 " "	36 " "
합 계	12	—	36 " "	36 " "	24 " "	72 " "

우선 표I, Ia, Ib, Ic의 모든 경우에 에이커 당 지대는 전과 같다. 왜냐하면 사실상 같은 종류의 땅 1에이커에서 같은 양의 자본의 생산물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즉 개개 나라에서 일정한 개개 순간에 볼 수 있는 일로서 여러 종류의 땅이 일정한 비율로 총경지를 이루는 데 참가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두 나라를 서로 비교하든가 같은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에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일로서 총경지가 여러 종류의 땅들로 나뉘는 비율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표 Ia와 I를 비교하면 네 개 등급의 땅의 경작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하면 경작지 에이커 수가 2배로 됨과 함께 총생산도 2배로 되며

그리고 또한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도 2배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표 Ib와 Ic를 표 I와 차례로 비교하면 두 경우에 다 경지면적은 3배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경우에 다 경지면적은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늘지만 표 Ib에서는 A등급과 B등급——그 중 A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고 B는 가장 적은 차액지대를 가져온다——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다. 즉 새로 경작되는 8에이커 중에서 A와 B의 몫은 3에이커씩, 합계 6에이커인데 C와 B의 몫은 겨우 1에이커씩, 합계 2에이커다. 다시 말하면 증가분의 3/4은 A와 B에서 나온 것이고 겨우 1/4이 C와 D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 표 I과 비교한 표 Ib에서는 경지면적은 3배로 되었지만 그에 따라 생산물도 3배로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생산물량은 10쿼터에서 30쿼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겨우 26쿼터로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증가분 중에서 큰 부분이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A에서 나온 것이고 좋은 땅들에서 나온 증가분의 대부분은 B등급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곡물지대는 겨우 6쿼터에서 14쿼터로 늘지만 화폐지대는 18파운드 스텔링에서 42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표 Ic 즉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땅은 그 면적이 전혀 늘지 않고, 최소한의 지대를 가져오는 땅은 그 면적이 얼마 늘지 않는데, 가장 많은 증가분은 C와 D에서 나오는 경우를 I과 비교하면 경지면적이 3배로 됨에 따라 생산은 10쿼터에서 36쿼터로 즉 3배 이상으로 늘고 곡물지대는 6쿼터에서 24쿼터로 즉 4배로 늘며 화폐지대도 같은 배수로 즉 18파운드 스텔링에서 72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토지생산물의 값은 본질상 변함이 없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총지대는 경작이 확대됨에 따라 노는데 이것은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가장 나쁜 땅에서만 경작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 한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총지대가 늘어난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 경작이 확대되고 따라서 생산물량이 땅의 확대에 비례하여 늘 뿐 아니라 더 빨리 늘어나는 데 따라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도 늘어난다. 가장 나쁜 땅과 그와 인접한 땅들에서 주로 경작이 확대된다면(이 경우에 가장 나쁜 땅이라는 범주는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 총지대는 경지의 확대에 비례하여 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두 나라에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땅 A가 질적으로 같다면, 총지대는 총경지면적에서 가장 나쁜 종류의 땅과 그다지 좋지 않은 종류의 땅이 차지하는 몫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또 크기가 같은 총토지면적에 똑같은 자본을 들여 얻는 생산물량에 반비례한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총토지면적내에서 가장 나쁜 경지의 양과 그보다 좋은 경지의 양의 비율이 총지대에 주는 영향은 가장 나쁜 경지의 질과 그보다 좋은 경지 및 가장 좋은 경지의 질과의 비율이 에이커 당 지대에 주는 따라서 그 밖의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는 총지대에 주는 영향과 반대된다. 이 두 계기의 혼동으로 해서 차액지대에 대한 온갖 있을 수 있는 그릇된 반대론이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총지대는 경작을 확대하기만 하여도 늘며 이와 결부되어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들여놓으면 늘어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전체에 의하면 에이커 당으로 계산한 각종 땅의 지대비율은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또 각 에이커에 지출된 자본에 대한 관계에서 본 지대율도 다름이 없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지면적과 이에 대한 자본지출이 비례적으로 늘어난 경우인 표 Ia를 표 I과 비교하면 경지면적이 늘어난데 비례하여 총생산도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즉 이것도 저것도 다 2배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총지대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지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늘어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총지대는 18파운드 스텔링에서 36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다.

총면적 4에이커를 든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총지대는 18파운드 스텔링이고 따라서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땅을 넣어 계산한 평균지대는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다. 예컨대 한 토지소유자가 4에이커 전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평균지대는 통계상으로 그렇게 계산된다. 18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총지대는 1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을 적용한 결과에 생긴다. 이 두 숫자 사이의 비율을 우리는 지대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대율은 180%이다.

표 Ia의 경우에도 똑같은 지대율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4에이커 대신에 8에이커가 경작된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땅이 똑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는다. 36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총지대는 에이커 수가 8이고 적용되는 자본이 20파운드 스텔링인 경우에 에이커 당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평균지대로 되고 180%의 지대율로 된다.

그런데 증가가 주로 나쁜 두 종류의 땅에서 있었던 Ib의 경우를 본다면 12에이커에서 42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를 얻게 되며 따라서 에이커 당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평균지대를 얻게 된다. 지출된 총자본은 30파운드 스텔링이고 따라서 지대율은 140%이다. 그리하여 에이커 당 평균지대는 1파운드 스텔링만큼 줄었고 지대율은 180%에서 140%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대 총액은 18파운드 스텔링에서 42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는데 평균지대는 에이커 당으로 계산해도 자본에 대하여 계산해도, 준다. 생산이 느는 데 따라 줄지만 그에 비례하여 줄지는 않는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땅에서 생기는 지대가 에이커 당으로 계산하여도, 지출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하여도 다름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원인은 경지의 증가분의 $\frac{3}{4}$ 이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땅 A와 최소한의 지대를 가져올 뿐인 땅 B에서 생긴 것이라는 데 있다.

Ib의 경우에 오직 땅 A만이 확대되었다면 A는 9에이커로 되고 B, C 및 D는 각각 1에이커로 될 것이다. 총지대는 여전히 18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며 따라서 12에이커에 대하여 에이커 당 평균지대는 $1\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30파운드 스텔링의 지출된 자본에 대한 18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는 60%의 지대율로 될 것이다. 평균지대는 에이커 당으로 계산하여도, 지출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하여도 매우 줄었을 것이며 총지대도 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Ic를 I 및 Ib와 비교하여 보자. I과 비교하면 땅 면적은 3배로 되고 지출된 자본도 3배로 되었다. 총지대는 12에이커에 대하여는 72파운드 스텔링이고 에이커 당으로는 I의 경우에는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6파운드 스텔링이다. 지출된 자본에 대한 지대율은 (72파운드 스텔링 : 30파운드 스텔링) 180%가 아니라 240%이다. 총생산물은 10쿼터에서 36쿼터로 늘었다.

경지면적, 지출된 자본 그리고 각종 경지 사이의 차이는 같으나 분배

가 다른 Ib와 비교한다면 생산물은 26쿼터 대신에 36쿼터, 에이커 당 평균지대는 $3\frac{1}{2}$ 파운드 스텔링 대신에 6파운드 스텔링 그리고 크기가 같은 총선대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지대율은 140% 대신에 240%이다.

표 Ia, Ib, Ic에서 보는 서로 다른 상태를 서로 다른 나라에 동시에 나란히 있는 상태로 보전 또는 같은 나라에서 순차적인 상태로 보전 위에서 서술한 것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대가 없는 가장 나쁜 땅의 생산물이 다름없기 때문에 곡물값이 그대로 있는 경우, 각종 등급의 경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다름없는 경우, 따라서 각 등급의 경지의 같은 면적에 대한 자본의 지출이 같은 조건에서 생산물량이 각각 같은 경우, 따라서 각종 땅의 에이커 당 지대 사이의 비율이 변함없는 경우, 그리고 같은 종류의 모든 땅때기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지대율이 같은 경우——이러한 경우들에 첫째로 오직 지대가 없는 땅만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총지대는 언제나 경지면적이 확대됨과 함께, 따라서 자본의 투하가 늘어남과 함께 늘어난다. 둘째로 에이커 당 평균지대(경작되는 에이커의 총수로 총지대를 나눈 것)도 평균지대율(지출된 총자본으로 총지대를 나눈 것)도 아주 심히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두 가지 것이 다 같은 방향에서 그러나 서로 다른 비율로 달라질 수 있다. 오직 지대가 없는 땅 A만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쳐놓고 본다면 에이커 당 평균지대와 농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율은 각 등급의 땅들이 총경지에서 차지하는 비례적 몫에 달려 있거나, 결국 같은 것으로 되지만 비옥도가 서로 다른 땅들에 대한 적용되는 총자본의 분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땅이 많이 경작되건 적게 경작되건 따라서(오직 A만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총지대가 크건 작건 그와는 관계없이 에이커 당 평균지대와 적용되는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율은 총면적에서 각종 땅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름없는 동안은 다름없다. 경작이 확대되고 자본의 투하가 늘어남에 따라 총지대가 늘고 심지어는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에이커 당 평균지대와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 즉 지대가 없는 땅이거나 아주 적은 차액지대를 가져올 따름인 땅이 더 많은 지대를 가져오는 더 좋은 땅보다 더 많이

확대되는 경우이다. 반대로 에이커 당 평균지대와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율은 좋은 땅들이 총면적에서 비교적 큰 몫을 차지하고 따라서 비교적 많은 자본이 그 땅들에 지출되는 정도에 따라 오른다.

그리하여 같은 시기의 서로 다른 나라를 비교하거나 같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보통 통계사업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경지의 에이커 당 또는 헥터 당 평균지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즉 에이커 당 지대의 평균수준 따라서 또 총지대는 일정한 정도로(결코 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빠른 정도로) 한 나라의 농업의 상대적 비속도가 아니라 절대적 비속도에 상응한다는 것 즉 같은 토지면적에서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생산물량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총면적 중에서 비교적 좋은 종류의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크기가 같은 토지면적에서 같은 자본투하로 얻는 생산물량은 더욱 크며 에이커 당 평균지대도 더욱 크기 때문이다. 반대인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다. 그리하여 지대는 차별적 비속도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 비속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같이 보이며 따라서 차액지대의 법칙은 없어지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일정한 현상들을 부인하든가 또는 평균곡물가격과 경지의 차별적 비속도에 존재하지 않는 차이에 의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 현상들이란 총경지면적에 대한 총지대의 비율이든 땅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 총지대의 비율이든 총지대의 비율은 지대 없는 땅의 비속도가 같고, 따라서 생산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각종 땅 사이의 차이가 같은 경우에는 에이커 당 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지대율에 의하여 규정될 뿐 아니라, 또한 총경작 에이커 수에 대한 개개 종류의 땅의 에이커 수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는 결국 같은 것으로 되지만 각종 땅들 사이의 적용되는 총자본의 분배에 의하여도 크게 규정된다는 사실에 단순히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지금까지 이 사실은 이상하게도 전혀 보지 않고 넘어왔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이 우리가 연구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이다. 즉 값이 달라지지 않고 경지의 비속도의 차이가 변함없으며 그리고 에이커 당 지대가 다름없거나 또는 실제로 지대를 가져오는 각 등급의 땅에 투하된 에이커 당 자본에 대한 지대율 또는

실제로 지대를 가져오는 총자본에 대한 지대율이 다른없는 경우에는 에이커 당 평균지대의 상대적 수준과 평균지대율 즉 땅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한 총지대의 비율은 단순히 경작지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액지대 I에서 살펴 본 차액지대형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을 더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차액지대 II에 대하여도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첫째, 이미 본 바와 같이 경지가 확대되고 값이 그대로 있으며 경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다른없는 경우에 에이커 당 평균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율은 늘 수 있다. 한 나라에서 땅을 다 차지하고 땅에 대한 투자, 경작 및 인구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자 농업도 포함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들이 전제로 되는 것이지만——질이 서로 다른 미경지의 값은(차액지대만을 전제로 하면) 그것과 질이 같고 위치가 대등한 기경지의 값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이 땅은 지대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 값은 덧붙는 개간비를 빼어내면 기경지의 값과 같다. 땅값은 물론 자본화된 지대일 따름이다. 그러나 기경지의 값으로 지불되는 것도 미래의 지대일 따름이며 예컨대 기준으로 되는 이자율이 5%라면 20년간의 지대가 한꺼번에 선불되는 것이다. 땅이 팔리면 그것은 지대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팔리며 그리고 지대(이것은 이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그러할 따름이지만 땅의 열매로 인정된다)의 전망적인 성격은 미경지나 기경지나 차이가 없다. 미경지의 값은 지대와 마찬가지로——이 지대의 집약적 표현이 그 값이다——이 땅이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동안은 순전히 환상적이다. 그러나 미경지의 값은 그와 같이 선형적으로 규정되며 살 사람이 나서야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실제적 평균지대가 그 나라의 실제적인 연평균 총지대와 총경지면적에 대한 그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미경지부분의 값은 기경지부분의 값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그것은 기경지에서의 자본의 지출과 그 결과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나쁜 땅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땅은 지대를 가져오기 때문에(그런데 이 지대는 우리가 차액지대Ⅱ에서 보게 되겠지만 자본의 양과 이에 상응하는 경작의 집약성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다) 미경지의 명목가격이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이 미경지부분은 상품으로, 그 소유자를 위한 채부의 원천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미경지도 포함한 전지역의 땅값이 왜 늘어나는가를 설명하여 준다(옅다이크).⁵⁵ 예컨대 미국에서의 토지투기는 자본과 노동이 미경지에 던지는 이러한 반영에 기초하고 있을 따름이다.

둘째, 경지 일반이 확대되는 과정은 더 나쁜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거나 또는 일정한 각종 땅에서 그 땅들이 존재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비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더 나쁜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물론 결코 자유로운 선택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제로 하던 값이 오르는 결과일 수 있을 따름이며 또 어떠한 생산양식하에서도 필연성의 결과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나쁜 땅은 위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땅보다 먼저 선택되는데 위치는 신생국들에서 경지를 확대하는 경우에 언제나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또 어떤 지대의 땅은 대체로 비교적 기름진 부류에 속하지만 따로따로 보면 좋은 땅과 나쁜 땅이 뒤섞여 있는 것이고 나쁜 땅은 그것이 좋은 땅과 연달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작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도 나쁜 땅이 먼저 선택된다. 나쁜 땅이 좋은 땅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나쁜 땅은 좋은 땅들과 연달아 있다는 것으로 해서 기경지나 경작되게 되어 있는 더 기름진 땅과 연달아 있지 않은 더 기름진 땅에 비하여 위치의 우월성을 얻게 된다.

예컨대 미시건 주는 서부 주들 중에서 곡물을 수출하게 된 최초의 주 가운데 하나였다. 그 주의 땅은 대체로 메말랐다. 그러나 그 주가 뉴욕 주와 이웃으로 되고 또 호수와 에리 운하에 의한 수상연락이 있기 때문에 그 주는 우선 자연적으로 더 기름진 훨씬 먼 서부 주들에 비하여 우월성을 얻게 되었다. 뉴욕 주와 비교한 이 주의 예는 우리에게 또한 좋은 땅에서 나쁜 땅으로 옮겨가는 사실도 보여준다. 뉴욕 주 특히 이 주의 서부의 땅은 비할 바 없이 기름지며 특히 밀 재배지로서 그렇다. 그런데 약탈적 경작으로 해서 이 기름진 땅은 메마른 땅으로 되었고 지

금에는 미시건의 땅이 그보다 더 기름진 것으로 되고 있다.

“1838년에 밀가루는 버팔로를 거쳐 주로 뉴욕과 어퍼 캐나다(Upper Canada)의 밀 재배지방으로부터 서부로 배에 실려 수송되었다. 그런데 불과 12년 후인 오늘에 와서는 방대한 양의 밀과 밀가루가 서부로부터 동부로 에리 호를 따라 그리고 에리 운하를 거쳐 버팔로와 그와 인접한 항구인 블랙로크로 배에 실려 수송되고 있다. 밀과 밀가루의 수출은 특히 1847년 구라파에서의 기근으로 해서 자극을 받았다. 그 결과 뉴욕 주 서부에서 밀은 값싸지고 밀 재배는 이익이 적어졌다. 그 때문에 뉴욕 주의 농장주들은 목축, 우유가공업, 과수재배 등으로 즉 서북부 사람들이 자기들과 직접 경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 부분들로 더욱 쏠렸다”(J. W. 존스톤, 『북 아메리카에 관한 수기』, 런던, 1851년, 제1권, 222페이지).

세체, 곡물을 더 싼 값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식민지와 일반적으로 신생국들의 땅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연적 비옥도가 높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곡물은 여기에서는 가치 이하로 팔릴 뿐만 아니라 그 생산가격 이하로 즉 더 오랜 나라들에서의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가격 이하로 팔린다.

존스톤이 말하는 바와 같이(같은 책, 223페이지) 우리가

“이러한 많은 밀을 해마다 버팔로로 보내고 있는 이 새로운 주들은 그 자연적 비옥도가 높고 거기에는 무한히 광활하고 풍부한 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 조건에 달려 있다. 예컨대 미시건과 같은 그러한 지방의 전주민은 처음에는 거의 전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하였고 특히 그들이 공업상품 및 열대생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물인 대량적 농산물의 생산에만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잉여생산물은 전부 곡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 이 점으로 해서 처음부터 근대적 세계시장에 기초하고 있는 식민지는 이전의 식민지 특히 고대세계의 식민지와 다르다. 근대적 식민지는 다른 사정하에서라면 스

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될 생산물인 의류, 도구 등을 완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을 통하여 받는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 합중국의 남부 주들은 목화를 자기들의 주되는 생산물로 삼을 수 있었다. 세계시장에서의 분업으로 해서 그 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들이 청소하고(young) 인구가 비교적 적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 주들은 아주 많은 잉여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땅이 기름진 덕택도 아니고 그 주민들의 노동의 효과성 때문도 아니며 그들의 노동과 따라서 그 노동을 표시하는 잉여생산물의 일면적 형태 때문이다.

그리고 또 새로 경작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아직 충분히 다루지 못한 비교적 덜 기름진 경지에서도 기후조건이 아주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상층에 풀어지기 쉬운 식물의 영양소가 많이 쌓여 그리하여 거름을 주지 않고 심지어 아주 얇게 갈더라도 오랫동안 수확을 낼 수 있다. 북 아메리카의 서부 대초원의 경우에는 그 대초원이 자연적으로 경작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개간비도 필요없다는 사정이 덧붙는다.³³⁻¹⁾ 이러한 종류의 비교적 덜 기름진 지역에서는 잉여분은 땅의 높은 비옥도에서 즉 에이커 당 많은 생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얇게 갈 수 있는 에이커 수가 많은 결과에 나온다. 왜냐하면 이러한 땅은 경작자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든가 오랜 나라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밖에 들이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욕, 미시건, 캐나다 등의 일부 지방에서와 같이 분식소작제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러하다. 한 가족이 예컨대 100에이커를 얇게 갈면 에이커 당 생산

33-1) {이러한 프레리 초원, 스텝 초원 지방들의 경작이 급속히 늘어나는 사실이야말로 최근 "인구는 생존수단을 압박한다"⁵⁶⁾는 맨더스의 악명높은 명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인구를 압박하는 생활수단을 힘껏 틀어쥐지 않는다면 농업이 파멸되고 이와 함께 독일이 파멸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 스텝, 프레리, 팜파스, 라노 초원지방 등의 경작은 아직 겨우 착수되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라파농업에 대한 그 변혁적인 영향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전에 비할 바 없이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 F. E. }.

물은 많지 않더라도 100에이커의 생산물은 상당히 많은 잉여분을 팔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인공적 풀밭 없이 자연적 방목장에서 거의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으면서 목축도 한다. 여기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땅의 질이 아니라 그 양이다. 이렇게 알게 가는 가능성은 물론 시간이 감에 따라 자연히 없어지는데 새로운 땅이 기름질수록 천천히 없어지고 그 생산물이 많이 수출되면 될수록 더 빨리 없어진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땅은 훌륭한 첫 수확을 내며 밀수확까지 낸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는 사람은 풍부한 여분의 밀을 시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같은 책, 224페이지).

오래 전부터 경작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소유관계와 기경지값이 규정하는 미경지값 등으로 해서 이러한 종류의 조방적 경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리카아도가 생각하듯이 이러한 땅이 반드시 대단히 기름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없고 또 비옥도가 같은 땅만이 경작된다는 것도 없다는 것은 다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미시건 주에서는 1848년에 465,900에이커에 밀을 심었고 4,739,300부셀 즉 에이커 당 평균 10 $\frac{1}{8}$ 부셀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종곡을 떼어 놓으면 에이커 당 9부셀이 못된다. 이 주의 29개 지역 가운데서 에이커 당 평균생산량이 7부셀인 것은 2곳, 8부셀은 3곳, 9부셀은 2곳, 10부셀은 7곳, 11부셀은 6곳, 12부셀은 3곳, 13부셀은 4곳이고 16부셀은 1곳뿐이며 18부셀이 1곳 더 있다(같은 책, 226페이지).

실제 경작에 있어서는 땅의 비옥도가 높다는 것은 이 비옥도를 보다 높은 정도로 즉시에 이용할 가능성과 일치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연적으로 풍부한 땅에서보다 자연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더 클 수 있다. 그런데 식민지 이주민들은 우선 이러한 종류의 땅에 손을 댈 것이며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마치라, 기경지보다 더 나쁜 땅으로 출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방금 살펴 본 경우를 제쳐놓으면 더 큰 면적의 땅으로 경작을 확대하는 것, A로부터 D에 이르는 각종 땅으로 경작을 확대하는 것, 즉 예컨대

더 큰 면적의 땅인 B와 C를 경작하는 것은 곡물값이 미리 오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예컨대 면방직업이 해마다 확대되더라도 실값이 끊임없이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시장가격이 심히 오르거나 떨어지면 생산규모는 영향을 받지만 이 점을 제쳐놓고 보면 평균가격의 수준이 생산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예외적으로 고무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경우에도 농업에서는(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는 다른 모든 생산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과잉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적 과잉생산은 그 자체로서는 축적과 같은 것이며 또 다른 생산양식들에서는 직접 인구의 증가로 해서 생기며 식민지에서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민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다.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며 이것을 내다보고 새로운 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땅에 투하된다. 비록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토지생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이지만 말이다. 새로운 자본의 형성이 바로 그 자체로서 그렇게 되게 한다. 하나하나의 자본가로 말한다면 그는 그 자신이 아직 통제할 수 있는 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자본에 자기의 생산규모를 맞춘다. 그는 오직 시장에서 될수록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애쓴다. 그는 과잉생산이 일어나면 그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자들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하나의 자본가는 이미 있는 시장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함으로써 또한 시장 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자기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제 40 장 차액지대의 둘째 형태 (차액지대 II). 개론

지금까지 우리는 차액지대를 비옥도가 서로 다른 똑같은 면적의 땅들에 투하된 똑같은 자본의 생산성이 서로 다른 결과로서만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지대가 없는 가장 나쁜 땅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과 그보다 좋은 땅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의 차이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자본이 서로 다른 땅뎡기에 동시에 투하되며 그리하여 새로운 투자가 있을 때마다 땅의 경작이 늘어난다고 즉 경지면적이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차액지대는 본질상 결국에 가서는 땅에 투하된 같은 자본의 생산성이 서로 다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 보자. 즉 생산성이 서로 다른 자본이 똑같은 땅뎡기에 차례차례로 투하될 때와 그 자본이 서로 다른 땅뎡기에 동시에 투하될 때에——결과가 똑같다고 전제하더라도——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초과이윤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아무래도 마찬가지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즉 A에서는 에이커 당 생산가격이 3파운드 스텔링이고 생산물은 1쿼터이며 그리하여 3파운드 스텔링은 1쿼터의 생산가격이며 조절적 시장가격인데 B에서는 에이커 당 생산가격이 3파운드 스텔링, 생산물은 2쿼터, 따라서 초과이윤이 3파운드 스텔링, 이와 마찬가지로 C에서는 에이커 당 생산가격이 3파운드 스텔링, 생산물은 3쿼터, 초과이윤은 6파운드 스텔링, 마지막으로 D에서는 에이커 당 생산가격이 3파운드 스텔링, 생산물은 4쿼터, 초과이윤은 9파운드 스텔링이건, 그렇지 않고 이 12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 그에 따른 1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그와 똑같은 차례로 똑같은 1에이커에 적용되어 그와 똑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똑같은 결과에 이르건 그것은 마찬가지로

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나 저 경우나 자본은 10파운드 스텔링이고 차례로 투하되는 그 가치부분은 $2\frac{1}{2}$ 파운드 스텔링씩이다. 이 가치부분들이 비속도가 서로 다른 4에이커의 땅에 동시에 투하되건 또는 똑같은 에이커에 차례차례로 투하되건 그 가치부분들의 생산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부분은 초과이윤을 가져오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 생산물과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투자의 생산물과의 차이에 비례하여 초과이윤을 준다.

자본의 서로 다른 가치부분들에서 초과이윤과 서로 다른 초과이윤율은 위에서 든 두 경우에 다 똑같이 형성된다. 그리고 지대는 다름 아닌 이 초과이윤의 형태이며 초과이윤은 지대의 실체를 이룬다. 그러나 어쨌든 둘째 방식(초과이윤을 형성하는)에서는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화하는 데서 즉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에게서 토지소유자로 양도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형태변화에서 곤란이 생긴다. 영국의 차지농업가들이 공식적 농업통계에 대하여 것처럼 완강히 반항을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투자의 현실적 결과를 확정할 때에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들과 토지소유자들 간의 투쟁도 그 때문이다(모튼). 사실 지대액은 땅을 빌린 때에 확정되고 그 후에 자본을 차례차례로 투하하는 데서 나오는 초과이윤은 차지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은 차지농업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농업가는 오랜 기간의 차지계약을 얻으려고 투쟁하며 반대로 지주측의 세력이 우세하면 해마다 해약할 수 있는 차지계약(tenancies at will)이 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자본이 면적이 같은 땅땡기에 동시에 투하되어 같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건, 그 자본이 똑같은 땅땡기에 차례차례로 투하되건 그것은 초과이윤형성의 법칙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화하는 데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하다. 투자의 방식은 이 전화를 한편으로는 비교적 좁은 한계에 몰아넣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흔들리는 한계에 몰아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약적 경작(경제학적으로는 집약적 경작이란 자본이 서로 나란히 있는 땅땡기들에 분배되지 않고 똑같은 땅땡기에 집적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한다)을

하는 나라들에서는 모두가 자기의 『소유지의 원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원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하고 곤란한 직업으로 되고 있다. 비교적 오래 가는 토지개량의 경우에는 차지계약의 기한이 지날 때 인위적으로 높아진 땅의 차별적 비옥도는 땅의 자연적 비옥도와 일치하며 따라서 지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비옥도가 서로 다른 땅의 지대의 규정과 일치한다. 이와 반대로 초과이윤의 형성이 경영자본액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일정한 경영자본액에서 나오는 지대액은 그 나라의 평균지대에 덧붙을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차지농업가가 전과 같은 집약적 방식으로 경작을 계속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주의를 돌린다.

그러면 차액지대 Ⅱ를 살펴 보는 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차액지대 Ⅱ의 기초이며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차액지대 Ⅰ일뿐 아니라 일정한 때 시각에 차액지대 Ⅱ의 운동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도 차액지대 Ⅰ 즉 비옥도와 위치가 서로 다른 땅들의 동시적인 경작, 다시 말하면 질이 서로 다른 땅뻘기에 대한 총농업자본의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의 동시적인 적용이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하다.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이주자들은 적은 자본만 들여도 된다. 주되는 생산요인들은 노동과 땅이다. 개개 세대주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독립적인 일터를 그와 같은 식민지 이주자들의 일터 옆에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일반적으로 원래의 농업에서는 이미 자본주의에 앞선 생산양식하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양기르기와 일반적으로 축산업에서는 그것들이 자립적 생산부문으로 될 때에는 정도의 차이는 어떻든 간에 땅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 이용은 처음부터 조방적인 성격을 띤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수단이 사실상으로는 법률상으로 경작자 자신의 소유인 이전의 생산양식들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손노동에 의한 농업경영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태의 본성으로 해서 여기로부터 비로소 점차 생산수단이 집적되게

되고 임금노동자로 전화된 직접적 생산자와 대립하는 자본으로 생산수단이 전화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에서 그것은 처음에는 맨 먼저 특히 양기르기와 짐승기르기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비교적 적은 면적의 땅에 자본이 집적되는 데서가 아니라 말을 먹이는 비용과 그 밖의 생산비가 절약되는 대규모의 생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상 똑같은 땅에 더 많은 자본을 들여놓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농업의 자연법칙으로 해서 경작의 일정한 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땅의 피폐하에서는 자본——여기에서는 또한 이미 생산된 생산수단의 의미에서의 자본이다——이 농업의 결정적인 요소로 된다. 기경지가 미경지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면적을 이루고 있으며 지력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고 있는 한에서(원래의 농사짓기와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이 우세하게 되기 전 시기에 짐승기르기와 짐승고기를 먹는 것이 주로 되고 있던 경우에 그렇다)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생산양식은 특히 한 자본가의 자금으로 경작되는 땅 면적의 규모로 해서 따라서 또 넓은 면적의 땅에서의 자본의 적용이 조방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해서 농민적 생산과 대립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차액지대 I 이 출발점으로 되는 역사적 기초라는 것을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 일정한 매 순간에 일어나는 차액지대 II의 운동은 그 자체가 이번에는 차액지대 I의 얼룩덜룩한 기초로 되는 지역에서만 시작된다.

둘째, II 형태의 차액지대에서는 비옥도의 차이에다 차지농업자들 사이의 자본(및 신용능력)의 분배상의 차이가 덧붙는다. 원래의 공업에서는 개개 생산부문에 기업규모의 가장 낮은 한도와 이에 따르는 자본의 가장 낮은 한도 즉 그보다 낮아서는 개별적인 기업을 성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도가 곧 형성된다. 또한 개개 생산부문에서는 이 가장 낮은 한도를 넘는 자본의 표준적인 평균규모가 형성되는데 대다수의 생산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며 또 가지고 있다. 이 평균규모를 넘는 자본은 초과이윤을 낼 수 있으며 그보다 적은 자본은 평균이윤도 내지 못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고전적인 나라인 영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직 천천히 그리고 고르지

않게 농업을 틀어준다.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입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향도 제한되어 있는 한에서 나쁜 땅에서 즉 평균보다 불리한 생산조건 밑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이 시장가격을 규정한다. 농업에 적용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업이 처리할 수 있는 자본 총량의 큰 부분은 이러한 생산자들의 손에 있다.

예컨대 농민이 그의 작은 분할지에 많은 노동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노동은 고립된 노동이며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생산성의 객관적 조건들을 빼앗긴, 그 조건들을 잃은 노동이다.

이 사정으로 해서 진정한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들은 초과이윤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다. 적어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원인이 문제인 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공업에서와 같이 농업에서도 똑같이 발전한다면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우선 이 초과이윤을 지대로 전화시킬 수 있게 하는 조건들에는 아직 마음을 쓰지 말고 차액지대Ⅱ의 경우의 초과이윤의 형성만을 살펴 보자.

그 경우에는 차액지대Ⅱ는 차액지대Ⅰ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지만 본질상으로 차액지대Ⅰ과 일치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차액지대Ⅰ에서 여러 종류의 땅의 비옥도의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비옥도의 차이로 해서 땅에 투하한 여러 자본이 주는 결과가 같지 않은 한에서만, 다시 말하면 크기가 같은 여러 자본에 대한 생산물량이 같지 않은 한에서만이거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 생산물량을 주는 한에서만이다. 결과가 이와같이 다른 것이 똑같은 땅폐기에 차례로 투자되고 있는 서로 다른 자본에서인가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땅폐기에 투하된 자본에서인가 하는 것은, 땅의 비옥도나 생산물의 차이를 다르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더 생산적으로 투하된 자본의 부분들에 대한 형성을 다르게 할 수 없다. 투자액이 같더라도 비옥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전과 다름없이 땅이다. 다만 차액지대Ⅰ에서는 여러 종류의 땅이 그 땅들에 투하된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같은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주는 같은 결과를 이 경우에는 똑같은 땅이 서로 다른 부분들로 투하되는 한 자본에 대하여 준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표Ⅰ에서는 1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이 서로 다른 차지농업가들에

의하여 $2\frac{1}{2}$ 파운드 스틸링씩 되는 자립적인 자본의 모습으로 4종의 땅 A, B, C 및 D의 매 에이커에 투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와 똑같은 자본이 D의 똑같은 에이커에 대하여 차례로 투하되어 제1차 투자는 4쿼터를 주고, 제2차 투자는 3쿼터, 제3차 투자는 2쿼터, 그리고 마지막 투자는 1쿼터(또는 차례가 이와 반대라고 하여도 좋다)를 준다고 하자. 그러면 소득이 가장 적은 자본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1쿼터의 값인 3파운드 스틸링은 아무런 차액지대도 가져오지 않고 생산가격이 3파운드인 밀의 공급이 아직 필요한 한에서는 생산가격을 규정할 것이다. 그런데 전제에 의하면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3파운드 스틸링의 값에는 $2\frac{1}{2}$ 파운드 스틸링의 자본이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평균이윤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2\frac{1}{2}$ 파운드 스틸링씩 되는 다른 세 부분은 생산물량의 차이에 따라서 초과이윤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생산물은 자체의 생산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2\frac{1}{2}$ 파운드 스틸링의 소득이 가장 적은 투자 즉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고 또 생산물의 값이 생산가격의 일반적 법칙에 의하여 조절되는 투자의 생산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초과이윤의 형성은 표 I에서와 똑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차액지대 II는 차액지대 I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다. $2\frac{1}{2}$ 파운드 스틸링의 자본 즉 가장 나쁜 땅에 지출된 자본이 가져오는 생산물의 최소한은 이 경우에 1쿼터라고 가정되고 있다. 따라서 땅 D의 차지농업가가 그에게 4쿼터를 가져오고 3쿼터의 차액지대를 물게 하는 $2\frac{1}{2}$ 파운드 스틸링 외에 똑같은 땅에 $2\frac{1}{2}$ 파운드 스틸링을 지출하는데, 이 $2\frac{1}{2}$ 파운드 스틸링은 가장 나쁜 땅 A에서 지출되는 같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겨우 1쿼터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본의 지출은 차지농업가에게 평균이윤밖에 가져오지 않으므로 지대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지대로 전화될 아무런 초과이윤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D에 대한 제2차 투자의 생산물이 이렇게 줄더라도 그것은 이윤율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A종류의 땅의 새로운 1에이커에 $2\frac{1}{2}$ 파운드 스틸링이 새로 투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초과이윤에는 결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또 땅 종류 A, B, C, D의 차액

지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차지농업가에게 있어서는 D에 대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이 추가적 투자는 전제에 의하면 D의 1에이커에 대한 맨 처음의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투자가 그에게 유리한 바로 그만큼 유리하였을 것이다. 맨 처음의 그 투자는 4쿼터를 가져오지만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또 $2\frac{1}{2}$ 파운드 스텔링씩 두 차례 더 투자하여 그 중에서 제1차 투자는 3쿼터, 제2차 투자는 2쿼터의 추가생산물을 차지농업가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4쿼터를 주었으며 따라서 3쿼터의 초과이윤을 준, D에 대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제1차 투자에서 나온 생산물에 비하면 생산물은 다시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초과이윤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며 평균이윤에도, 조절적 생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균이윤과 조절적 생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줄어드는 초과이윤을 가져오는 추가적 생산이 A에서의 생산을 쓸데없이 만들며 따라서 A가 경작되지 않게 되는 경우만일 것이다. 이 경우에 D의 1에이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과 결부되어 생산가격이 떨어질 것인데 예컨대 땅 B가 지대 없는 땅으로 되고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땅으로 된다면 3파운드 스텔링에서 $1\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D의 생산물은 전에는 4쿼터였는데 이제는 $4+1+3+2=10$ 쿼터일 것이다. 그러나 B가 조절하는 1쿼터의 값은 $1\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D에서의 화폐지대는 전에는 9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D와 B의 차액은 $10-2=8$ 쿼터이고 쿼터 당 $1\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12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여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2\frac{1}{2}$ 파운드 스텔링씩 해서 두 차례의 추가적 자본에 대한 초과이윤율은 떨어졌으나 에이커 당으로 계산하면 지대는 $33\frac{1}{3}\%$ 만큼 오를 것이다.

이것을 보면 차액지대 일반이 특히 I 형태와 결합된 II 형태에서의 차액지대가 심히 복잡한 배합을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컨대 리카아도는 차액지대를 아주 일면적으로 그리고 단순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위에서 든 바와 같이 조절적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동시에 기름진 땅들에서 생기는 지대가 늘며 그리하여 절대적 생산물도 절대적 초과생산물도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내려가는 선에 따른

차액지대 I에서는 에이커 당 절대적 초과생산물은 다름없거나 줄기까지 하더라도 상대적 초과생산물과 따라서 에이커 당 지대는 늘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똑같은 땅에 차례로 하는 투자의 생산성은 그 투자의 큰 부분이 비교적 더 기름진 땅들에 들어가지만 줄어든다. 만약 하나의 견지 즉 생산량이나 생산가격의 견지에서 보면 노동생산능률은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견지에서는 그것은 줄었다. 왜냐하면 똑같은 땅에서 한 서로 다른 투자에 대한 초과이윤율과 에이커 당 초과생산물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례로 투자하여 그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에 차액지대 II는 이 여러 차례의 투자가 가장 나쁜 땅인 A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필연적으로 생산가격이 오르는 것과 그리고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결부될 것이다.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투자로 생산가격 3파운드 스텔링인 1쿼터를 내는 A의 1에이커에 다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을 투자하여 즉 5파운드 스텔링의 총투자로 그 1에이커의 땅이 도합 $1\frac{1}{2}$ 쿼터밖에 내지 않는다면 이 $1\frac{1}{2}$ 쿼터의 생산가격은 6파운드 스텔링이고 따라서 1쿼터의 생산가격은 4파운드 스텔링이다.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의 생산성의 모든 감소는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는 여분의 초과생산물의 감소일 따를 인데 이 경우에는 에이커 당 생산물의 상대적 감소일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집약적 경작 즉 똑같은 땅에 차례차례로 하는 투자는 주로 또는 비교적 높은 정도로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 발전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쓸모없었던 땅을 쓸모있는 땅으로 전화시키는 오래 가는 개량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차례차례로 하는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은 주로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비교적 좋은 땅이 선택되는 것은 이용할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되는 비옥도의 자연적 요소가 그 땅에 가장 많이 들어 있어서 그 땅에 자본을 들여놓으면 유리하다는 전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곡물법이 폐지된 후 영국에서 경작이 더욱 집약적으로 되었을 때 전에 밭을 심던 많은 땅이 다른 목적에 돌려졌다. 즉 목장으로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밭 농사에 가장 알맞는 기름진 땅들에서는 물을 뺏으며 또

그 땅들은 다른 방법으로 개량되었다. 그리하여 밀 농사에 둘러지는 자본은 비교적 더 좁은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그런데 가장 좋은 땅의 가장 많은 초과생산물량과 지대가 없는 땅인 A의 생산물량과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초과이윤은 이 경우에는 에이커 당 초과생산물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데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데 상응한다——새로 형성되는 초과이윤(지대로 될 수 있는)은 지대로 전화되는 이전의 평균이윤의 일부(전에는 평균이윤을 표시한 생산물의 일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태에서 지대로 전화되는 추가적 초과이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시장가격이 A의 생산가격을 넘고 그 때문에 A나 B나 그 밖의 어떤 등급의 땅에서도 초과생산물을 3파운드 스텔링 이상의 높은 값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생산가격과 조절적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은 A, B, C, D의 등급 중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나오는 생산물이 줄어드는 것과 결부될 것이다. 이러한 형편이 비교적 오랫동안 고착되고 추가적 땅 A(적어도 A와 같은 질의 땅)를 경작하게 하거나 그 밖의 영향으로 해서 공급을 더 값싸게 하지 않는 한 다른 조건들이 변함없다면 빵값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이윤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A보다 나쁜 땅을 끌어들여 경작하여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킨 건 또는 4종의 땅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킨 건 그것은 아무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차액지대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과 결부되어 오를 것이다.

이미 경작되고 있는 땅에 추가적으로 투하되는 자본의 생산성이 줄어들어 그에 따라 생산가격이 오르고 이윤율이 떨어지며 더 높은 차액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왜냐하면 차액지대는 그러한 조건에서는 마치 꼭 A보다 나쁜 땅이 이제는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땅에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이 한 경우를 리카아도는 유일한 경우라고, 정상적인 경우라고 잘라 말하였으며 차액지대Ⅱ의 전체 형성은 결국

이 경우로 된다고 하였다.

사실 A종류의 땅만이 경작되고 이 땅에 차례로 하는 투자들이 생산물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결부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차액지대 II의 경우에 차액지대 I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기경지로부터의 공급이 불충분하고 따라서 새로 더 나쁜 땅이 추가되어 경작되기까지, 또는 여러 종류의 땅에 투하한 추가적 자본의 총생산물이 지금까지 존재하던 생산가격보다 높은 생산가격으로만 제공될 수 있을 때까지 시장가격이 계속 생산가격을 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 자본의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줄더라도 그 때문에 조절적 생산가격과 이윤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세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

1) A, B, C, D 중 어느 것이건 한 종류의 땅에 투하되는 추가자본이 A의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윤율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투자로는 아무런 초과이윤도, 따라서 또 있을 수 있는 아무런 지대도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추가적 땅 A가 경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2) 추가자본이 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가져온다면 조절적 가격이 다른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초과이윤(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형성되리라는 것은 두말 할 것 없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즉 이 추가적 생산으로 해서 A가 경작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경쟁하는 땅 종류의 대열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조절적 생산가격이 떨어진다. 동시에 임금이 떨어지거나 더 값싼 생산물이 요소로서 불변자본에 들어가거나 하면 이윤율은 오를 것이다.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가장 좋은 토지들인 C와 D에서 높아졌다면 초과이윤의 증대(따라서 지대의 증대)가 어느 정도까지 값이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윤율이 오르는 것과 결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생산성이 오르는 정도와 새로 덧붙는 자본량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이윤율은 임금이 떨어지지 않아도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값이 싸짐으로써 오를 수 있다.

3) 추가적 투자를 하여 초과이윤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이 투자를 하

여 생기는 생산물이 땅 A에서의 똑같은 자본에서 생기는 생산물을 넘어 여분을 남기도록 그렇게 된다면, 공급이 늘어나서 땅 A가 경작되지 않게 되는 일이 없다면 어떠한 사정 밑에서도 초과이윤이 새로 형성되며 이 초과이윤의 새로운 형성은 D, C, B, A에서 동시에 생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나쁜 땅 A가 밀려나서 경작되지 않게 된다면 조절적 생산가격은 떨어지며 그리고 화폐로 표현된 초과이윤 따라서 또한 차액지대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쿼터 당 값이 떨어지는 것과 초과이윤을 이루는 쿼터 수가 늘어나는 것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우에 투자를 차례차례로 하여 생기는 초과이윤이 줄어들에 따라 생산가격은 언뜻 보면 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질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투자하여 초과생산물이 줄어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완전히 상응한다. 즉 비옥도가 A와 B, B와 C, C와 D 사이에 있는 땅 종류들에 예컨대 $2\frac{1}{2}$ 파운드 스텔링씩의 새로운 자립적인 4개의 자본이 투하되어 각각 $1\frac{1}{2}$ 쿼터, $2\frac{1}{2}$ 쿼터, $2\frac{3}{4}$ 쿼터 및 3쿼터를 내는 경우이다. 이 모든 종류의 땅들에서 4개의 추가적 자본 모두에 대하여 초과이윤 즉 잠재적 지대가 형성될 것이다. 비록 초과이윤율은 각각 더 좋은 땅들에 대한 똑같은 투자에서 생기는 초과이윤과 비교하면 줄어들 것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4개 자본이 D 등에 투하되건 D와 A 사이에 나눠진 그것은 완전히 같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차액지대의 두 형태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보게 된다. 차액지대 I에서는 생산가격이 전과 다름없고 또 차이(각종 땅들의 생산물 사이의)가 전과 다름없다면 에이커 당 평균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평균지대율은 총지대가 늘어남과 함께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에 지나지 않는다. 에이커 당으로 또는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지대의 실제적인 수준은 이 경우에는 전과 같다.

이와 반대로 똑같은 전제 밑에서는 지출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지대율은 전과 다름없다 하더라도 에이커 당으로 계산한 지대의 수준은 오를 수 있다.

상대적인 비옥도는 전과 다름없다고 하고 A, B, C, D에 각각 $2\frac{1}{2}$ 파

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5파운드 스텔링, 따라서 도합 1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2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투하되어 생산이 2배로 된다고 하자. 이것은 이러한 개개 종류의 땅이 1에이커가 아니라 2에이커씩 그것도 전과 같은 비용으로 경작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윤율은 전과 같을 것이며 또한 초과이윤 또는 지대에 대한 이윤율의 관계도 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A는 2쿼터를 내고, B는 4쿼터, C는 6쿼터, D는 8쿼터를 내게 된다 하더라도 생산가격은 여전히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자본은 전과 다름없는데 비옥도가 2배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 비옥도는 전과 다름없는데 자본이 2배로 되었기 때문이다. A의 2쿼터에는 이제는 6파운드 스텔링의 비용이 들 것인데 이것은 이전의 1쿼터에 3파운드 스텔링의 비용이 든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윤은 네 종류의 땅 모두에서 2배로 될 것이지만 그것은 다만 지출된 자본이 2배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대는 똑같은 비율로 2배로 될 것이다. 즉 지대는 B에서는 1쿼터가 아니라 2쿼터, C에서는 2쿼터가 아니라 4쿼터, D에서는 3쿼터가 아니라 6쿼터일 것이다. 이에 따라 B, C, D에서의 화폐지대는 각각 6파운드 스텔링, 12파운드 스텔링, 18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에이커 당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에이커 당 화폐지대도 2배로 되고 따라서 또 이 화폐지대가 자본화된 것인 땅값도 2배로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곡물지대와 화폐지대가 늘고 따라서 땅값도 오르는데 그것은 땅값을 계산하는 데 기준으로 되는 에이커가 변함없는 크기를 가진 토지면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지출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지대율로서의 지대의 상대적 수준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출된 자본 20에 대한 총지대 36의 관계는 지출된 자본 10에 대한 총지대 18의 관계와 같다. 각종 땅에 지출된 자본에 대한 이 땅들에서 생기는 화폐지대의 관계에 대하여도 그와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예컨대 C에서 5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한 지대 12파운드 스텔링의 관계는 이전의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한 지대 6파운드 스텔링의 관계와 같다. 이 경우에는 지출된 자본들 사이에 새로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초과이윤이 생긴다. 그것은 단순히 추가자본이 지대를 가져오는 땅 종류의 어느 하나에겐 또는 그

모두에 투하되어, 비례적으로 전과 같은 양의 생산물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만약 예컨대 C에 대해서만 투자가 2배로 된다면 C, B 및 D 사이의 차액지대는 자본에 대하여 계산하면 전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C에서의 지대량은 2배로 되지만 투자도 2배로 되기 때문이다.

여기로부터 알 수 있듯이 생산가격, 이윤율 그리고 차이(각종 땅들의 생산물의)는 전과 다름없더라도(따라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초과이윤이나 지대의 율이 다름없더라도) 에이커 당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의 높이에 따라서 땅값은 오를 수 있다.

초과이윤 따라서 지대의 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즉 여전히 지대를 가져오는 추가적 투자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그와 똑같이 될 수 있다. 만약 2½파운드 스텔링의 제2차 투자에 의하여 생산물이 2배로 되지 않고 B에서는 겨우 3¼쿼터, C에서는 5쿼터 그리고 D에서는 7쿼터를 가져온다면 2½파운드 스텔링의 제2차 투자에 대하여 B에서 차액지대는 1쿼터가 아니라 겨우 1/2쿼터, C에서는 2쿼터가 아니라 1쿼터 그리고 D에서는 3쿼터가 아니라 2쿼터일 것이다. 차례차례의 두 투자에 있어서 지대와 자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차 투자		2차 투자	
	지 대	자 본	지 대	자 본
B	3파운드스틸링	2½파운드스틸링	1½파운드스틸링	2½파운드스틸링
C	6 " "	2½ " "	3 " "	2½ " "
D	9 " "	2½ " "	6 " "	2½ " "

자본의 상대적 생산성의 율, 따라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초과이윤의 율이 이렇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B에서는 1쿼터에서 1½쿼터로(3파운드 스텔링에서 4½파운드 스텔링으로), C에서는 2쿼터에서 3쿼터로(6파운드 스텔링에서 9파운드 스텔링으로), 그리고 D에서는 3쿼터에서 5쿼터로(9파운드 스텔링에서 15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추가적 자본들에서의 차이는 A에 투하된 자본과 비교하여 줄었을 것이며 생산가격은 전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지만 에이커 당 지대와 따라서 에이커 당 땅값은 올랐을 것이다.

그러면 차액지대 I 을 기초로 전제하는 차액지대 II 의 배합들은 다음과 같다.

제 41 장 차액지대 II. 첫째 경우 —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

이 조건은 시장가격이 전과 다름없이 가장 나쁜 땅 A에 투하된 자본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I. 지대를 가져오는 땅들인 B, C, D의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자본이건 땅 A에 투하된 같은 자본이 생산하는 정도의 생산물밖에 내지 않는다면, 즉 조절적 생산가격으로는 평균이윤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따라서 아무런 초과이윤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지대에 미치는 그 영향은 영이다. 모든 것은 전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마치 가장 나쁜 땅인 A와 질이 같은 임의의 에이커 수가 기경지면적에 덧붙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II. 추가자본은 서로 다른 모든 종류의 땅에서 이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 추가생산물을 낸다. 즉 생산은 각종 땅의 특수한 비옥도에 따라 추가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우리는 제39장에서 다음과 같은 표 I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표 1

땅 종류	에 이 커	자 본 파운드 스털링	이 윤 (파운드 스털링)	생 산 가 (파운드 스털링)	생 산 물 쿼터	판 가 (파운드 스털링)	수 익 (파운드 스털링)	지 대		초과 이윤율
								쿼터	파운드 스털링	
A	1	2½	1/2	3	1	3	3	0	0	0
B	1	2½	1/2	3	2	3	6	1	3	120%
C	1	2½	1/2	3	3	3	9	2	6	240%
D	1	2½	1/2	3	4	3	12	3	9	360%
합계	4	10	—	12	10	—	30	6	18	—

이 표는 이제와 다음과 같은 표로 전화된다.

표 II

땅 종류	에 이 커	자 본 (파운드 스텔링)	이윤 (파 운 드 스 테 링)	생 산 가 (파 운 드 스 테 링)	생 산 물 (쿼 터)	판 매 가 (파 운 드 스 테 링)	수익 (파 운 드 스 테 링)	지 대		초 과 이 윤 율
								쿼 터	파 운 드 스 테 링	
A	1	$2\frac{1}{2} + 2\frac{1}{2} = 5$	1	6	2	3	6	0	0	0
B	1	$2\frac{1}{2} + 2\frac{1}{2} = 5$	1	6	4	3	12	2	6	120%
C	1	$2\frac{1}{2} + 2\frac{1}{2} = 5$	1	6	6	3	18	4	12	240%
D	1	$2\frac{1}{2} + 2\frac{1}{2} = 5$	1	6	8	3	24	6	18	360%
	4	20	—	—	20	—	60	12	36	—

이 표에서는 모든 종류의 땅에서 투자가 2배로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대를 가져오는 종류의 땅들의 어느 하나나 몇 개에 추가자본이 투하되지만 하면 그것이 어떤 비율로 투하되든 법칙은 똑같다. 필요한 것은 다만 각종 땅에서 자본과 같은 비율로 생산이 느는 것뿐이다. 이 경우에 지대는 다만 땅에 대한 투자가 늘기 때문에만 늘며 자본이 이와 같이 늘어난 데 비례해서만 늘다. 투자가 늘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는 데 비례하여 생산물과 지대가 이와 같이 느는 것은 생산물량으로 보나 지대의 크기로 보아 다음과 같은 경우와 똑같다. 즉 지대를 가져오는, 질적으로 같은 땅패기들의 경지면적이 늘고 전에 질이 같은 땅패기를 경작할 때와 같은 투자로 경작되게 되는 경우와 똑같다. 예컨대 표 II의 경우에 에이커 당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이 각각 B, C 및 D의 둘째 에이커에 투하되는 경우와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예는 자본이 더 생산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더 많은 자본이 똑같은 면적에 적용되어 같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에 모든 상대적 크기는 전과 같다. 물론 상대적 차이가 아니라 순전히 산술적인 차이를 살펴 본다면 각종 땅에서 생기는 차액지대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추가자본이 B 및 D에만 투하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D와 A 사이의 차이는 전에는 3쿼터였는데 7쿼터이고, B와 A 사이의 차이는 전에는 1쿼터였는데 3쿼터이며 C와 B 사이의 차이는 전에는 +1쿼터였는데 -1쿼터이다, 등등. 그러나 이 산술적 차이는 크기가 같은 투자의 생산성의 차이를 표현하는 한에서 차액지대 I에서는 결정적 의의를 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완전히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다만 서로 다른 땅땀기에 투하된 각 자본부분에서의 차이가 변함없는 경우에 서로 다른 추가자본이 투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Ⅲ. 추가자본은 초과생산물을 가져오고 따라서 초과이윤을 이루지만 자본이 늘어나는 데 비례하여 초과이윤을 이루지는 않으며 그 율은 줄어든다.

표 Ⅲ

땅 종 류	에 이 커	자 본 (파운드스털링)	이 윤 (파운드스털링)	생 산 가 격 (파운드스털링)	생 산 물 (쿼터)	판 매 가 격 (파운드스털링)	수 익 (파운드스털링)	지대		초 과 이 윤 율
								쿼터	파운드스털링	
A	1	$2\frac{1}{2}$	$1/2$	3	1	3	3	0	0	0
B	1	$2\frac{1}{2} + 2\frac{1}{2} = 5$	1	6	$2 + 1\frac{1}{2} = 3\frac{1}{2}$	3	$3\frac{10}{12}$	$1\frac{1}{2}$	$4\frac{1}{2}$	90%
C	1	$2\frac{1}{2} + 2\frac{1}{2} = 5$	1	6	$3 + 2 = 5$	3	15	3	9	180%
D	1	$2\frac{1}{2} + 2\frac{1}{2} = 5$	1	6	$4 + 3\frac{1}{2} = 7\frac{1}{2}$	3	$22\frac{1}{2}$	$5\frac{1}{2}$	$16\frac{1}{2}$	330%
	—	$17\frac{1}{2}$	$3\frac{1}{2}$	21	17	—	51	10	30	—

이 세제 가정에서도 또한 추가적인 두번째 투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땅에서 균등하게 진행되는가 불균등하게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초과이윤의 생산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가 같지 않은 비율로 줄어드는가, 추가적 투자가 지대를 가져오는 똑같은 종류의 땅에서 진행되는가 또는 지대를 가져오는 서로 다른 질의 땅들 사이에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나뉘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이 모든 사정은 우리가 전개하려는 법칙에 대하여 아무래도 좋다. 우리의 유일한 전제는 어떠한 종류의 땅이든 지대를 가져오는 땅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초과이윤을 가져오지만 자본이 늘어나는 정도에 비하면 그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감소의 한계는 위에서 든 표의 예에서는 가장 좋은 땅 D에 대한 첫번째 투자의 생산물인 4쿼터=12파운드 스텔링과 가장 나쁜 땅 A에 대한 똑같은 투자의 생산물인 1쿼터=3파운드 스텔링 사이에서 움직인다. 첫번째 투자에 의해서 가장 좋은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차례로 투자를 하여 그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에 지대를 가져오는 어떤 땅들에 차례로 투자를 하여 나오는 생산물의 최고한계를 이루며,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아무런 초과이윤도 낳지 않는 가장 나쁜 땅 A의 생산물은 그 최저한계를 이룬다. 만일 둘째 가정이 좋은 종류의 땅들 중에서 질이 같은 새로운 땅떼기가 경지면적에 덧붙고 어떠한 종류의 경지이든 그 분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상응한다면 세제 가정은 D와 A 사이 즉 가장 좋은 땅과 가장 나쁜 땅 사이의 비옥도가 서로 다른 추가적 땅들이 경작되는 경우에 상응한다. 만약 차례차례로 하는 투자가 땅 D에서만 진행된다면 거기에는 D와 A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그리고 또 D와 C 사이의 차이 또한 마찬가지로 D와 B 사이의 차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든 투자가 땅 C에서만 진행된다면 C와 A 또는 B 사이의 차이만 포함되며 그리고 B에서만 진행된다면 B와 A 사이의 차이만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즉 이 모든 종류의 땅에서 지대는 추가적으로 투하되는 자본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초과이윤율은 추가자본에 대해서나 땅에 투하된 총자본에 대해서나 줄어든다. 그러나 초과이윤의 절대적 크기는 는다. 이것은 마치 자본 일반

의 이윤율은 줄더라도 이윤의 절대량은 느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B에 대한 투자에서 얻는 평균초과이윤율은 자본에 대하여 90%인데 첫번째 투자에서는 120%였다. 그러나 총초과이윤은 1쿼터에서 $1\frac{1}{2}$ 쿼터로, 3파운드 스텔링에서 $4\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난다. 2배로 된 선대자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본 총지대는 절대적으로 늘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땅에서 생기는 지대의 차이와 그 호상관계는 이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차이의 이 변동은 지대가 서로 늘어난 결과이고 그 원인이 아니다.

Ⅳ. 비교적 좋은 종류의 땅에 대한 추가적 투자가 맨 첫번째 투자보다 많은 양의 생산물을 내는 경우는 더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는 에이커 당 지대는 늘어나는데 그것도 어떠한 종류의 땅에 추가 자본이 투하되든 간에 추가자본보다 큰 비율로 늘어난다는 것은 두 말할 것 없다. 이 경우에 추가적 투자는 땅의 개량과 결부되어 있다. 또한 거기에는 더 적은 자본의 추가지출이 이전에 한, 더 큰 자본의 지출과 같은 결과이거나 그보다 큰 결과를 낳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는 이전의 경우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모든 투자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만약 100이 10이라는 이윤을 내는 데 200이 어떤 일정한 형태로 적용되어 40이라는 이윤을 낸다고 하면, 이윤은 10%에서 20%로 늘며 그 한에서 이것은 50이 더 합목적적인 형태로 적용되어 5 대신에 10이라는 이윤을 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경우에 이윤의 증대가 생산물의 비례적 증대와 결부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차이는 내가 한 경우에는 자본을 2배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종래의 자본을 가지고 2배의 효과를 거둔다는 데 있다. 내가 1) 이전의 절반의 산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으로 전과 같은 양의 생산물을 내는가, 또는 2) 전과 같은 양의 노동으로 이전의 2배의 생산물을 내는가, 또는 3) 이전의 2배의 노동으로 이전의 4배의 생산물을 내는가 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첫째 경우에는 노동——산 노동의 형태이건 대상화된 노동의 형태이건——이 풀려나와 어떻게든 다르게 쓰일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자본(및 노동)이 풀려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재부의 증가이다. 그것은 이 추가자본이 축적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적하는 노동을 절약한다.

100이라는 자본(생산가격을 이루는)이 10미터의 생산물을 생산하였다고 하자. 100에는 산 노동 및 이윤과 마찬가지로 불변자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1미터에는 10이 든다. 이제 내가 같은 자본 100으로써 20미터를 생산할 수 있다면 1미터에는 5가 든다. 그런데 내가 50이라는 자본으로 10미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역시 1미터에는 5가 들며 종래의 상품공급으로 충분한 한에서는 50이라는 자본이 풀려 나온다. 내가 40미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200이라는 자본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역시 1미터에는 5가 든다. 선대자본에 비례하는 생산물량으로 어떠한 차이도 알아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가치규정이나 가격규정으로 어떠한 차이도 알아낼 수 없다. 그러나 예컨대 생산을 배로 늘릴 필요가 있는 한에서, 첫째 경우에는 자본이 풀려 나오며, 둘째 경우에는 추가자본이 절약되며, 셋째 경우에는 선대자본이 늘어남으로써만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선대자본이 더 많은 생산물을 이전의 생산력으로 얻어야 할 경우와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제1편에 속하는 것).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지에서 잉여가치의 증가가 아니라 생산비의 감소를 고려하면——그런데 잉여가치를 이루는 요소인 노동에 대한 비용의 절약도 자본가를 위해서 생산비를 감소시키며 조절적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한에서는 그를 위하여 이윤을 이룬다——불변자본을 적용하는 데는 가변자본을 적용하는 데 드는 것보다 늘 덜 든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게 신용이 발전한다는 것과 대부자본이 넉넉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는 한편으로는 100파운드 스텔링이 5명의 노동자들의 1년간 생산물을 이룬다면 추가적 불변자본 100파운드 스텔링을 적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변자본으로 100파운드 스텔링을 적용한다. 만약 잉여가치율이 100%라면 5명의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200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런데 1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의 가치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며 이자율이 5%라면 자본으로서의 아마도 105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똑같은 화폐액도 그것이 생산에 불변자본의 가치로 선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변자본의 가치로 선대되는가에 따라서 그 생산물을 살펴 본다면 아주 서로 다른 가치를 표현한다. 그리고 또 자본가의 견지에서 상품의 생산비에 관하여 말한다면 100파운드 스틸링이라는 불변자본이 고정자본으로 투하되는 한 그 중 마멸분만이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는 데 임금에 지출된 100파운드 스틸링은 전부 그 상품의 가치에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이도 있다.

자본이 전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내어야만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식민지 이주자들과 일반적으로 자립적 소생산자들에게서는 생산물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들의 소득인데 자본가들에게서는 그것은 자본의 선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이주자들과 자립적 소생산자들은 노동지출을 무엇보다 문제인 노동생산물을 생산하는 필수적 조건으로서 본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노동을 넘어서 지출하는 초과노동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물론 초과생산물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팔 수 있거나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은 이 생산물을 그들에게 아무런 대상화된 노동도 들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들에게는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만이 재부의 양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들이 될수록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치 이하로 파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가격 이하로 파는 것도 역시 그들에게는 이윤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이윤이 채무, 지당 등으로 해서 미리 빼앗기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이와 반대로 자본가들에게는 가변자본의 지출도 불변자본의 지출도 자본의 선대이다. 불변자본의 선대의 상대적 중대는 그 밖의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비를 줄이고 또한 그 실체가치도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은 잉여노동에서만 생기며 따라서 가변자본을 적용하는 데서만 생기는 것이지만 자본가마다 그에게는 산 노동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할 생산가격의 한 요소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산 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과거노동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사회적 재부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왜곡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경쟁의 견지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거짓으로 나타나며 모든 것이 그렇게 거꾸

로 나타난다.

생산가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 밑에서는 생산성이 그대로 있거나 늘거나 줄더라도 추가적 투자는 비교적 좋은 땅들 즉 B 이상의 모든 땅에서 실시될 수 있다. 이것이 A 자체에서 가능한 것은 우리의 전제 밑에서는 생산성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이 경우에는 그 땅은 여전히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든가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우만일 것이다. 이 나중의 경우에는 땅 A에 투하된 자본의 일부는 지대를 가져올 것이고 다른 부분은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A에서 생산력이 줄어든다는 가정 밑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생산가격이 전과 같지 않고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정 밑에서도 즉 추가적 투자가 가져오는 초과생산물이 추가적 투자의 크기에 비례하건 이 비례 이상이건 또는 그 이하이건——따라서 자본이 느는 경우에 자본의 초과이윤율이 전과 같건 오르건 또는 떨어지건——에 이커 당 초과생산물과 그에 따른 초과이윤은 늘며 따라서 지대는 곡물로도 화폐로도 늘 수 있다. 에이커 당으로 계산한 초과이윤, 따라서 지대의 단순한 양적 증대 즉 어떤 변함없는 단위에 대하여 계산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땅의 양——에이커 또는 헥터——에 대하여 계산한 양적 증가는 여기에서는 비율의 증대로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에이커 당으로 계산한 지대는 단순히 땅에 자본이 더 많이 투하되는 결과로 는다. 그것도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조건에서도 그렇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변함없건 줄건 또는 늘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 마지막 사정들은 에이커 당 지대가 커지는 규모를 변경시키지만 이 커지는 사실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이것은 차액지대 II에 독특한 것으로서 그것과 차액지대 I을 구별케 하는 현상이다. 만약 추가적 투자들이 똑같은 땅에서 시간적으로 서로 뒤를 이어 실시되지 않고 해당한 질의 새로운 추가적 땅들에서 공간적으로 서로 나란히 실시된다고 하면 총지대의 양은 늘 것이며 또한 앞에서 분명히 된 바와 같이 총경지면적의 평균지대도 늘 것이지만 에이커 당 지대는 늘지 않을 것이다. 총생산과 초과생산물의 양 및 그 가치가 문제로 되는 한에서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보다 작은 규모의 토지면적에

서 자본이 집적되고 에이커 당 지대액이 느는데, 더 큰 규모의 면적에 자본이 분산되고 그 밖의 조건들이 같다면 그것은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똑같은 토지면적에서 자본이 더욱더 집적되며 따라서 에이커 당으로 계산한 지대도 더욱더 늘어난다. 그러므로 만약 두 나라에서 생산가격이 같고 각종 땅들의 차이도 같으며 또한 투하자본액도 같지만, 한 나라에서는 주로 제한된 토지면적에 차례차례로 투자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그보다 넓은 면적에 나란히 투자를 한다고 하면, 두 나라에서 지대의 양은 같더라도 에이커 당 지대와 따라서 땅값은 첫째 나라에서는 높고 둘째 나라에서는 낮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대의 높이에서 생기는 차이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땅의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서로 다른 투자방식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과생산물에 관하여 말할 때는 언제나 이것을 생산물 중에서 초과이윤을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잉여생산물이나 초과생산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생산물 중에서 총잉여가치나 개별적 경우에는 평균이윤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 지대를 가져오는 자본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에 가지는 특수한 의미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해를 일으키게 한다.

제 42 장 차액지대 II. 둘째 경우—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생산가격은 추가적 투자의 생산성의 율이 변함없거나 떨어지거나 오르는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다.

I. 추가적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

그리하여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량은 그 땅의 질에 각각 상응하게 그 땅에 투하된 자본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늘어난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땅의 차이가 변함없는 경우에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초과생산물이 늘어난다는 뜻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차액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땅 A에서의 모든 추가적 투자를 제쳐놓는다. A에서의 초과이윤율은 영이다. 즉 추가자본의 생산력과 따라서 초과이윤율은 다름없다고 가정하였으므로 A에서 초과이윤율은 그대로 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밑에서 조절적 생산가격은 A에서의 생산가격 대신에 바로 그 다음으로 더 좋은 땅인 B 또는 일반적으로 A보다 좋은 어떤 땅에서의 생산가격이 조절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만 떨어질 수 있다. 즉 땅 C에서의 생산가격이 조절적인 것으로 된다면 자본이 A에서 철수되거나 A와 B에서까지 철수되고 그리하여 C보다 나쁜 모든 땅은 밭을 심는 땅들과 경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제 밑에서 이에 대한 조건은 추가적 투자에 의해서 얻는 추가적 생산물이 수요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더 나쁜 땅 A 등에서의 생산은 공급을 보장하는 데서 쓸데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표 II를 들어 보자. 다만 여기에서 20쿼터가 아니라 18쿼터가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땅 A는 떨어져 나갈 것이며 땅 B 그리고 이와 함께 쿼터당 30실링의 생산가격이 조절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차액지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된다.

표 IV

땅 종류	에 이커	자 본 (파 운 드 스 털 링)	이 윤 (파 운 드 스 털 링)	생 산 가 격 (파 운 드 스 털 링)	생 산 물 (쿼터)	쿼터당 판매가 격 (파 운 드 스 털 링)	수 익 (파 운 드 스 털 링)	지 대		초 과 이윤율
								곡 물 (쿼터)	화 폐 (파 운 드 스 털 링)	
B	1	5	1	6	4	1½	6	0	0	0
C	1	5	1	6	6	1½	9	2	3	60%
D	1	5	1	6	8	1½	12	4	6	120%
합계	3	15	3	18	18	—	27	6	9	—

그리하여 표 II 와 비교하면 총지대는 36파운드 스텔링에서 9파운드 스텔링으로, 곡물로는 12쿼터에서 6쿼터로 줄어든 것인데 총생산은 20쿼터에서 18쿼터로 즉 2쿼터밖에는 줄지 않을 것이다. 초과이익율은 자본에 대하여 계산하면 180%에서 60%로 즉 3분의 1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곡물지대와 화폐지대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데 상응한다.

표 I 과 비교하면 화폐지대만이 줄어든다. 즉 두 경우에 다 곡물지대는 6쿼터인데 화폐지대는 한 경우에는 18파운드 스텔링이고 다른 경우에는 9파운드 스텔링이다. 땅 C에서는 곡물지대는 표 I 과 비교하면 변함없다. 생산성이 같은 추가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추가생산이 A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내물고 이와 함께 땅 A를 경쟁하는 생산요인에서 제쳐놓은 결과에 사실상 새로운 차액지대 I 이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전에는 더 나쁜 땅 A가 놀던 역할과 같은 역할을 더 좋은 땅 B가 한다. 이 결과에 한편으로는 B에서 지대가 없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제한 대로 추가자본의 투하는 B, C 및 D 사이의 차이로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중에서 지대로 전화되는 부분은 줄어든다.

만약 땅 A를 제쳐놓아도 수요가 충족된다는 위에서 말한 결과를 땅 C나 D 또는 이 두 땅에 대하여 2배 이상의 자본을 투하여 얻는다면

사태는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세번째 투자가 C에 대하여 실시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표 IVa

땅종류	에이커	자본 (파운드 스털링)	이윤 (파운드 스털링)	생산 가격 (파운드 스털링)	생산물 (쿼터)	판매 가격 (파운드 스털링)	수익 (파운드 스털링)	지 대		초 과 이윤율
								꼭 물 (쿼터)	화폐 (파운드 스털링)	
B	1	5	1	6	4	1½	6	0	0	0
C	1	7½	1½	9	9	1½	13½	3	4½	60%
D	1	5	1	6	8	1½	12	4	6	120%
합계	3	17½	3½	21	21	—	31½	7	10½	—

이 경우에는 표 IV와 비교하면 C에서 생산물량은 6쿼터에서 9쿼터로, 초과생산물량은 2쿼터에서 3쿼터로, 화폐지대는 3파운드 스텔링에서 4½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다. 이와 반대로 화폐지대가 12파운드 스텔링이었던 표 II와 그것이 6파운드 스텔링이었던 표 I을 비교하면 화폐지대는 줄었다. 곡물로 표현된 총지대는 7쿼터이며 표 II (12쿼터)와 비교하면 줄었고 표 I (6쿼터)과 비교하면 늘었다. 화폐로 표현된 총지대(10½파운드 스텔링)는 두 표(18파운드 스텔링과 36파운드 스텔링)에 비하여 줄었다.

2½파운드 스텔링의 세번째 투자가 땅 B에서 실시된다면 이것은 물론 생산량에는 변동을 일으키지만 지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제에 의하면 똑같은 땅에 차례로 투자하더라도 조금도 차이가 생기지 않고 또 땅 B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세번째 투자가 땅 C에서가 아니라 D에서 실시된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총생산물량은 22쿼터로서 표 I의 그것의 2배 이상인데 선대자본은 10파운드 스텔링에 비하여 겨우 17½파운드 스텔링 즉 2배가 못된다. 그리고 또 총생산물량은 표 II의 총생산물량보다 2쿼터만큼 많은데 선대자본은 표 II에서 더 많아 20파운드 스텔링이다.

표 IVb

땅 종 류	에 이 커	자 본 (파 스 운 털 드 링)	이 윤 (파 스 운 털 드 링)	생 산 가 (파 스 운 털 드 링)	생 산 물 (쿼 터)	판 매 가 (파 스 운 털 드 링)	수 익 (파 스 운 털 드 링)	지 대		초 과 이 윤 율
								쿼 터	파 스 운 털 드 링	
B	1	5	1	6	4	1½	6	0	0	0
C	1	5	1	6	6	1½	9	2	3	60%
D	1	7½	1½	9	12	1½	18	6	9	120%
합계	3	17½	3½	21	22	—	33	8	12	—

땅 D에서는 표 I 과 비교하면 곡물지대는 3쿼터에서 6쿼터로 늘었는데 화폐지대는 전과 다름없이 9파운드 스텔링이다. 표 II 와 비교하면 D의 곡물지대는 전과 다름없이 6쿼터이지만 화폐지대는 18파운드 스텔링에서 9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졌다.

총지대를 살펴 본다면 표 IVb의 곡물지대는 8쿼터로서 표 I의 6쿼터보다도, 표 IVa의 7쿼터보다도 많지만 표 II의 12쿼터보다는 적다. 표 IVb의 화폐지대는 12파운드 스텔링으로서 표 IVa의 10½파운드 스텔링보다는 많고 표 I의 18파운드 스텔링 그리고 표 II의 36파운드 스텔링보다는 적다.

표 IVb의 조건하에서 B에서 지대가 없어지더라도 지대 총액이 표 I의 그것과 같기 위해서는 6파운드 스텔링의 초과생산물을 즉 1½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생산가격으로 4쿼터를 더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총지대는 표 I에서와 같이 18파운드 스텔링으로 된다. 이에 필요한 추가자본의 크기는 그 추가자본을 C에 투하하는가 D에 투하하는가 또는 이 두 땅에 나누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C에서는 5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2쿼터의 초과생산물을 가져오며 따라서 1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은 4쿼터의 추가적인 초과생산물을 가져올 것이다 D에서는 추가적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다는 전제하에서 즉 이 경우에 기초로 되어 있는 전제하에서 4쿼터의 추가적 곡물지대를 내기 위하여 5파운드 스텔링의 추가가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표 IVc

땅 종류	에 이커	자본 (파운드 스털링)	이윤 (파운드 스털링)	생산 가격 (파운드 스털링)	생산물 (쿼터)	판매 가격 (파운드 스털링)	수익 (파운드 스털링)	지 대		초 과 이윤율
								쿼터	파 운드 스털링	
B	1	5	1	6	4	1½	6	0	0	0
C	1	15	3	18	18	1½	27	6	9	60%
D	1	7½	1½	9	12	1½	18	6	9	120%
합계	3	27½	5½	33	34	—	51	12	18	—

표 IVd

땅 종류	에 이커	자본 (파운드 스털링)	이윤 (파운드 스털링)	생산 가격 (파운드 스털링)	생산물 (쿼터)	판매 가격 (파운드 스털링)	수익 (파운드 스털링)	지 대		초 과 이윤율
								쿼터	파 운드 스털링	
B	1	5	1	6	4	1½	6	0	0	0
C	1	5	1	6	6	1½	9	2	3	60%
D	1	12½	2½	15	20	1½	30	10	15	120%
합계	3	22½	4½	27	30	—	45	12	18	—

총화폐지대는 생산가격이 전과 같은 조건에서 추가자본이 투하된 표Ⅱ의 경우의 꼭 절반일 것이다.

이 표들을 표Ⅰ과 비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생산가격이 쿼터 당 60실링에서 30실링으로 즉 절반만큼 떨어졌는데 총화폐지대는 전과 다름없이 18파운드 스텔링이고 이에 따라 곡물지대는 2배로 즉 6쿼터에서 12쿼터로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땅 B에서는 지대가 없어졌다. 땅 C에서는 화폐지대가 표Ⅳc에서는 1/2만큼 늘었는데 표Ⅳd에서는 1/2만큼 줄었다. 땅 D에서는 화폐지대가 표Ⅳc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9파운드 스텔링인데 표Ⅳd에서는 9파운드

스털링에서 15파운드 스털링으로 늘었다. 생산은 10쿼터에서 표 IVc에서는 34쿼터로, 표 IVd에서는 30쿼터로 늘었고 이윤은 2파운드 스털링에서 표 IVc에서는 $5\frac{1}{2}$ 파운드 스털링으로, 표 IVd에서는 $4\frac{1}{2}$ 파운드 스털링으로 올랐다. 총투자액은 한 경우에는 10파운드 스털링에서 $27\frac{1}{2}$ 파운드 스털링으로, 다른 경우에는 10파운드 스털링에서 $22\frac{1}{2}$ 파운드 스털링으로 따라서 두 경우에 다 2배 이상 늘었다. 각종 땅에서의 지대율 즉 선대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지대는 IV로부터 IVd에 이르는 모든 표들에서 어디서나 같다. 그것은 벌써 각종 땅에서 두 번에 걸쳐 차례로 한 투자의 생산성의 율이 다름없다는 가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표 I 과 비교하면 지대율은 모든 종류의 땅의 평균에서나 개개 종류의 땅에서나 떨어졌다. 그것은 표 I 에서는 평균 180%였고 표 IVc에서는 $\frac{18}{27\frac{1}{2}} \times 100 = 65\frac{1}{11}\%$ 표 IVd에서는 $\frac{18}{22\frac{1}{2}} \times 100 = 80\%$ 이다. 에이커 당 평균화폐지대는 올랐다. 그 평균은 이전의 표 I 에서는 4에이커 전체에 있어서 에이커 당 $4\frac{1}{2}$ 파운드 스털링이었는데 이제 표 IVc 및 표 IVd에서는 3에이커에 대하여 에이커 당 6파운드 스털링이다. 지대를 가져오는 땅들에서의 그 평균은 전에는 에이커 당 6파운드 스털링이었는데 이제는 9파운드 스털링이다. 그리하여 에이커 당 화폐지대액은 올랐으며 이제는 이전의 2배의 생산물을 표시한다. 그러나 곡물지대 12쿼터는 이제는 총생산물——34 및 30쿼터——의 절반보다 적는데 표 I 에서 6쿼터는 총생산물 10쿼터의 $\frac{3}{5}$ 을 이룬다. 즉 지대를 총생산물의 비례적 부분으로서 살펴 보면 지대는 줄었고 지출된 자본에 대하여 보더라도 역시 줄었지만 화폐지대액은 에이커 당으로 계산하면 늘었으며 생산물로 표현한 지대의 크기는 더욱 늘었다. 만약 표 IVd에서 땅 D를 보면 이 경우에는 실제적 생산가격은 15파운드 스털링이고 그 중에서 $12\frac{1}{2}$ 파운드 스털링은 지출된 자본이다. 화폐지대는 15파운드 스털링이다. 표 I 에서는 똑같은 땅 D에서의 생산가격은 3파운드 스털링이고 지출된 자본은 $2\frac{1}{2}$ 파운드 스털링. 화폐지대는 9파운드 스털링이었으며 따라서 화폐지대는 생산가격의 3배, 지출된 자본의 거의 4배이다. 표 IVd에서는 D에서 15파운드 스털링의 화폐지대는 생산가격과 똑같으며 지출된 자본을 $\frac{1}{5}$ 만큼 넘을 뿐이다. 그렇지만 에

이커 당 화폐지대는 $2/3$ 만큼 더 크며 9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5파운드 스텔링이다. 표 I에서는 3쿼터의 곡물지대는 4쿼터인 총생산물의 $3/4$ 인데 표 IVd에서는 그것은 10쿼터로서 땅 D의 1에이커에서 얻는 총생산물(20쿼터)의 절반이다. 이것은 지대가 총수익의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선대자본에 대한 비율에서는 준다 하더라도 화폐와 곡물로 표현된 에이커 당 지대는 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에서 총생산물의 가치는 30파운드 스텔링이다. 지대는 18파운드 스텔링 즉 이 총생산물가치의 절반 이상이다. 표 IVd에서 총생산물의 가치는 45파운드 스텔링이고 그 중에서 18파운드 스텔링 즉 절반 이하가 지대이다.

그러면 쿼터 당 값이 $1\frac{1}{2}$ 파운드 스텔링만큼 즉 50%만큼 떨어졌는데도, 그리고 경쟁하는 토지면적이 4에이커에서 3에이커로 줄었는데도 총화폐지대는 변함없고 곡물지대는 2배로 되며 그리고 곡물지대와 화폐지대가 에이커 당으로 계산하면 느는 원인은 보다 많은 쿼터의 초과생산물이 생산된다는 데 있다. 곡물값은 50%만큼 떨어지는데 초과생산물은 100%만큼 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총생산물은 우리가 내놓은 조건하에서는 3배로 늘지 않으면 안되며 비교적 좋은 땅들에서는 투자가 2배 이상으로 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투자가 어떠한 비율로 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추가적 투자들이 좋은 종류의 땅과 가장 좋은 종류의 땅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제나 각종 땅에서의 자본의 생산성은 그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생산가격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화폐지대를 내기 위한 추가자본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경지에서 땅 A를 제쳐놓기 위하여 필요한 곡물의 공급——그런데 이것은 땅 A의 에이커 당 생산물량에 의존할 뿐 아니라 또한 총경지면적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에도 의존한다——이 많아진다면 따라서 또 A보다 좋은 땅에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자본량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면 그 밖의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는 화폐지대와 곡물지대는 땅 B에서는 두 가지 것이 다 없어지는데도 더 많아질 것이다.

땅 A에서 기능을 그만둔 자본이 5파운드 스텔링이라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표 II와 IVd를 들어 비교해야 할 것이다. 총생산물은 20쿼터에서 30쿼터로 늘 것이다. 화폐지대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36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8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곡물지대는 전과 다름없이 12쿼터일 것이다.

만약 땅 D에서 44쿼터=66파운드 스텔링의 생산물을—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하여 4쿼터라는 D의 이전의 울대로— $27\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총(화폐)지대는 다시 표 II에서 도달한 수준에 오를 것이며 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땅종류	자 본 (파운드 스텔링)	생 산 물 (쿼 터)	곡물지대 (쿼 터)	화폐지대 (파운드 스텔링)
B	5	4	0	0
C	5	6	2	3
D	$27\frac{1}{2}$	44	22	33
합 계	$37\frac{1}{2}$	54	24	36

총생산은 표 II에서는 20쿼터였는데 여기서는 54쿼터일 것이며 화폐지대는 전과 다름없이 36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은 $37\frac{1}{2}$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지만 표 II에서는 2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총선대자본은 거의 2배로 되는데 생산은 거의 3배로 될 것이다. 곡물지대는 2배로 되는데 화폐지대는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에 지대를 가져오는 비교적 좋은 종류의 땅을 즉 A보다 좋은 모든 땅에 추가적 화폐자본이 투하된 결과에 값이 떨어진다면 총자본은 생산과 곡물지대가 느는 것과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는 경향을 가진다. 그리하여 곡물지대의 증대는 값이 떨어져서 화폐지대가 줄어드는 것을 벌충할 수 있다. 똑같은 법칙은 선대자본이 땅 D보다 C에 즉 지대를 더 많이 가져오는 땅보다 지대를 더 적게 가져오는 땅에 더 많이 적용되는데 비례하여 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도 나타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화폐지대가 변함없거나 늘기 위해서는 일정한 추가적인 양의 초과생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초과생산

물을 가져오는 땅들이 비옥하면 할수록 자본은 더욱더 적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만약 B와 C, C와 D 사이의 차이가 더욱더 크다면 추가자본도 더욱더 적게 요구될 것이다. 일정한 비율은 다음과 같은 것에 달려 있다. 즉 1) 값이 떨어지는 비율 즉 이제는 지대를 내지 않는 땅 B와 전에 지대를 내지 않던 땅 A 사이의 차이, 2) B보다 좋은 종류의 땅들 사이의 차이의 비율, 3) 새로 투하되는 추가자본의 양, 그리고 4) 질이 서로 다른 땅들에 대한 추가자본의 분배.

사실상 이 법칙은 이미 첫째 경우를 연구할 때 설명한 것 즉 생산가격이 얼마가 되건 간에 생산가격이 일정한 경우에는 지대가 추가적 투자의 결과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땅 A가 제외된 결과에 이제는 새로운 차액지대 1을 얻게 되는데 땅 B가 이제는 가장 나쁜 땅이고 쿼터 당 1½파운드 스텔링이 새로운 생산가격으로 된다. 이것은 표Ⅱ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표Ⅳ에 대해서도 들어맞는다. 법칙은 똑같은데 다만 땅 A 대신에 B가, 3파운드 스텔링 대신에 1½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이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중요하다. 즉 땅 A에서 자본을 끌어내고 이 땅의 참가 없이도 충분한 공급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추가자본이 필요하였다면 이와 함께 모든 땅에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부 땅들에서는 그리고 모든 경지의 평균에서 보면 에이커 당 지대가 변함없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똑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곡물지대가 아직 경제에서 역할을 놓고 있는 것은 다만 전통의 힘 때문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예컨대 공장주는 전에 1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으로 살 수 있었던 실보다 훨씬 더 많은 실을 5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만약 동시에 방직기업소, 설탕제조소, 술양조장 등의 소유자이거나 거기에 출자하는 자라고 하면 화폐지대는 줄더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업소에서 쓸 원료의 생산자로서 역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⁴⁾

Ⅱ. 추가자본의 생산성의 율이 떨어지는 경우

A보다 좋은 종류의 땅들에 대한 추가적 투자로 하여 A의 생산물이 쓸데없이 되며 따라서 땅 A에서 자본이 끌려나오거나 땅 A가 다른 생산물의 생산에 돌려지거나 하는 경우에 생산가격은 방금 살펴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떨어질 수 있는 한에서 이 경우는 아무런 새로운 것도 주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미 연구될 대로 다 연구되었다. 이 경우에는 에이커 당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늘 수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변함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되었다. 비교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 표를 다시 들자.

표 1

땅 종류	에이커	자 본 (파운드 스텔링)	이 윤 (파운드 스텔링)	생 산 가 격 (파운드 스텔링)	생 산 물 (쿼터)	곡 물 지 대 (지대)	화 폐 지 대 (파운드 스텔링)	초과 이윤율
A	1	2½	1/2	3	1	0	0	0
B	1	2½	1/2	3	2	1	3	120%
C	1	2½	1/2	3	3	2	6	240%
D	1	2½	1/2	3	4	3	9	360%
합계	4	10	—	—	10	6	18	평균 180%

34) 위에서 든 IVa에서 IVd에 이르는 표들에는 일관된 계산상 착오가 있었으므로 고쳐 계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물론 이 표들로부터 전개한 이론적 명제들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었으나 에이커 당 생산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아주 이상한 숫자관계를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형도에서는 수직선보다는 수평선에 대하여 매우 큰 축적을 쓴다. 그런데도 역시 자기의 농업적 심정이 상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에이커 수에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떠한 수를 곱하더라도 좋다. 또한 표 I에서는 에이커 당 1, 2, 3, 4쿼터를 10, 12, 14, 16부셀(8부셀=1쿼터)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수들에서 갈라져 나오는 다른 표들의 수들은 개연성의 한계내에 머무른다. 결과——지대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의 관계——는 결국 완전히 같은 것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편집자가 다음 장에 넣은 표들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 —F. E.

표 V

땅 종 류	에 이 커	투 자 (파운드 스털링)	이 (파 운 드 스털 링)	생 산 물 (쿼터)	판 매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수 익 과 (파운드 스털링)	곡 물 지 대 (쿼터)	화 폐 지 대 (파운드 스털링)	초 과 이 윤 율
B	1	$2\frac{1}{2} + 2\frac{1}{2}$	1	$2 + 1\frac{1}{2} = 3\frac{1}{2}$	$1\frac{1}{2}$	6	0	0	0
C	1	$2\frac{1}{2} + 2\frac{1}{2}$	1	$3 + 2 = 5$	$1\frac{1}{2}$	$8\frac{1}{2}$	$1\frac{1}{2}$	$2\frac{1}{2}$	$51\frac{3}{4}\%$
D	1	$2\frac{1}{2} + 2\frac{1}{2}$	1	$4 + 3\frac{1}{2} = 7\frac{1}{2}$	$1\frac{1}{2}$	$12\frac{1}{2}$	4	$6\frac{1}{2}$	$137\frac{1}{4}\%$
합 계	3	15	—	16	—	27	$5\frac{1}{2}$	$9\frac{1}{2}$	평균 $94\frac{3}{4}\%*$

그러면 생산성의 율이 떨어지면서도 B, C, D에서 나오는(표 III에서의) 16쿼터라는 숫자가 땅 A를 경지에서 제외하는 데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표 III은 표 V로 전환된다.

이 경우에는 추가자본의 생산성의 율이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정도가 각종 땅들에서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조절적 생산가격은 3파운드 스텔링에서 $5/7$ 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졌다. 투자는 절반만큼(표 I 과 비교하여) 즉 10파운드 스텔링에서 5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다. 화폐지대는 18파운드 스텔링에서 $9\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거의 절반만큼 줄었지만 곡물지대는 6쿼터에서 $5\frac{1}{2}$ 쿼터로 $1/12$ 밖에 줄지 않았다. 총생산물은 10쿼터에서 16쿼터로 즉 160%로 늘었다. 곡물지대는 총생산물의 $1/3$ 보다 좀 더 많다. 선대자본과 화폐지대의 비율은 전에는 10 : 18이었는데 15 : $9\frac{1}{2}$ 이다.

III. 추가자본의 생산성의 율이 오르는 경우

이 경우는 이 장 첫머리에 든 변종 I——즉 생산성의 율이 변함없는 조건에서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구별된다. 즉 이 경우에는 일정한 추가적 생산물에 의해서 땅 A를 경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추가적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오르는 경우에도 추가적

*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땅은 다음 표 VI, VII, VIII, IX 및 X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산에 넣지 않았다. 편집부,

투자는 그것이 여러 종류의 땅에 어떻게 나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서로 다른 영향으로 해서 차이가 없어지는가 심화되는가에 따라서 더 좋은 땅들의 차액지대, 따라서 또 총지대가 줄거나 는다는 것은 이미 차액지대 I의 경우에 본 바와 같다. 그 밖의 점에서는 모든 것이 땅 A에 해당하는 토지면적과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고 또한 생산성이 오르는 조건에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추가생산물을 대기 위하여 필요한 선대자본의 상대적 규모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연구할 만한 보람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 차액이윤이 어떻게 차액지대로 전화되는가 하는 문제의 연구로 되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점은 다음과 같다.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첫째 경우에는 땅 A에 투하된 추가자본은 차액지대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 A는 전과 다름없이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그 생산물의 값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시장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율이 변함없는 조건하에서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둘째 경우의 변종 I에서는 땅 A는 필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며 변종 II(생산성의 율이 떨어지는 조건하에서 생산가격이 떨어지는)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땅 A에 대한 추가자본은 생산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즉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둘째 경우의 변종 III에서는 이 추가자본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땅 A에도 그리고 그보다 좋은 종류의 땅들에도 투하될 수 있다.

땅 A에 투하된 2½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이 1쿼터가 아니라 1⅓쿼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 표를 기본표 I과 비교하는 외에 또한 투자가 2배로 되었고 생산성이 변함없으며 투자에 비례하는 경우인 표 II와도 비교해야 한다.

전제에 의하면 조절적 생산가격은 떨어진다. 만약 그것이 전과 다름없이 3파운드 스텔링이라면 이전에 투자가 2½파운드 스텔링에 지나지 않던 조건에서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던 가장 나쁜 땅 A는 이제는 그보다 나쁜 땅이 경작되게 되지 않고도 지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도

표 VI

땅 종 류	에 이 커	자 본 (파운드스털링)	이 윤 (파운드 스털링)	생 산 가 격 (파운드스털링)	생 산 물 (쿼터)	판매 가격 (파운드 스털링)	수 익 (파운드 스털링)	지 대		초과 이용율
								(쿼터)	(파운드 스털링)	
A	1	$2\frac{1}{2} + 2\frac{1}{2} = 5$	1	6	$1 + 1\frac{1}{2} = 2\frac{1}{2}$	2	6	0	0	0
B	1	$2\frac{1}{2} + 2\frac{1}{2} = 5$	1	6	$2 + 25 = 27$	2	12	$1\frac{3}{4}$	6	120%
C	1	$2\frac{1}{2} + 2\frac{1}{2} = 5$	1	6	$3 + 3\frac{3}{4} = 5\frac{3}{4}$	2	18	$3\frac{1}{2}$	12	240%
D	1	$2\frac{1}{2} + 2\frac{1}{2} = 5$	1	6	$4 + 4\frac{1}{2} = 8\frac{1}{2}$	2	24	$5\frac{1}{4}$	18	260%
합 계	4	20	4	24	22	—	60	$13\frac{1}{2}$	36	240%

이 땅 A에서의 생산성이 오른 결과에, 그러나 맨 처음의 자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일부에 대해서만 오른 결과에 그렇게 될 것이다. 첫번째 3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는 1쿼터를 얻고 두번째 생산가격으로는 $1\frac{1}{2}$ 쿼터를 얻지만 $2\frac{1}{2}$ 쿼터의 총생산물은 이제는 그 평균가격으로 팔린다. 생산성의 올은 추가적 투자에 따라 커지므로 이 경우는 땅의 개량을 전제로 한다. 이 개량은 일반적으로 에이커 당 더 많은 자본이(더 많은 거름, 더 많은 기계화된 작업 등이) 지출된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이 추가자본만이 질적으로 다른 더 생산적인 투자를 실시할 가능성을 준다는 것일 수도 있다. 두 경우에 다 에이커 당 5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지출로 $2\frac{1}{2}$ 쿼터의 생산물을 얻는데 이 자본의 절반인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지출로는 1쿼터의 생산물을 얻을 뿐이다. 일시적인 시장관계를 제쳐놓고 보면 A등급의 땅의 상당히 큰 면적이 에이커 당 겨우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으로 계속 경작되는 조건에서만 땅 A의 생산물은 새로운 평균가격보다 더 높은 생산가격으로 계속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커 당 5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새로운 투자와 이에 따라 개량된 경영방법이 전반적으로 보급되자 조절적 생산가격은 $2\frac{2}{11}$ 파

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자본 부분간의 차이는 사라질 것이며 그 경우에는 겨우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으로 경작되는 땅 A의 1에이커는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새로운 생산조건들에 맞지 않게 경작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똑같은 에이커에 지출된 서로 다른 자본부분들의 수익간의 차이가 아니라 에이커 당 충분한 총투자와 불충분한 총투자간의 차이일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많은 수의 차지농업가들(많은 수의 차지농업가들이어야 하는 것은 적은 수의 차지농업가들이라면 그들은 생산가격 이하로 그 생산물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의 손에 있는 불충분한 자본은 하강선에 따른 땅 자체의 분화와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나쁜 땅에 적용되는 나쁜 경작방식은 더 좋은 땅에서의 지대를 올린다. 그 경작방식은 심지어 일반적으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질이 똑같이 나쁜 땅에서 경작이 개량되면 거기에서 지대를 낼 수 있다.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토지면적에 차례로 하는 투자에서 생기는 차액지대는 실지로 어떤 평균적 크기로 전화된다는 것인데 이 평균적 크기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투자의 영향은 인식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가장 나쁜 땅에서는 지대를 낼지 않으며, 1) 예컨대 A의 에이커 당 총생산물의 평균가격을 새로운 조절적 가격으로 만들며, 2) 에이커 당 자본의 총량의 변동으로서 표시되는데 이 자본의 총량은 새로운 조건에서 땅의 충분한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이 총량에서는 따로따로 차례로 한 투자도 그 투자의 영향도 각각 구별할 수 없게 융합되어 있다. 좋은 종류의 땅들의 개별적 차액지대도 사정은 꼭 마찬가지다. 개별적 차액지대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 종류의 땅의 평균생산물을 지금은 늘어나서 표준적인 것으로 된 투자로 가장 나쁜 땅에서 얻는 생산물과 비교한 차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어떠한 땅도 자본의 투하없이 어떠한 생산물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차액지대인 차액지대 I에서까지도 생산가격을 조절하는 땅인 A의 1에이커가 이러저러한 값으로 이만저만한 생산물을 준다고 말하고 또한 더 좋은 땅들인 B, C, D가 이만저만한 차액생산물을 준다고, 따라서 조절적 가격하에서 이만저만한 화폐지대를 준다고 말하는 경우에 언

제나 일정한 생산조건에서 표준적인 자본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자본이 지출된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도 공업에서 개개 부문이 상품을 그 생산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최소한의 자본이 요구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똑같은 땅에서 개량과 결부되어 차례로 하는 투자의 결과에 이 최소한이 변동된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변동된다. 예컨대 땅 A의 일정한 에이커 수에 이 추가적 경영자본이 투하되지 않는 한에서 땅 A 중에서 더 잘 경작되는 에이커들에서는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사정으로 해서 지대가 조성될 것이며 더 좋은 땅들인 B, C, D에서는 지대가 오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방식이 보급되어 표준적인 것으로 되자 생산가격은 떨어진다. 더 좋은 땅들의 지대는 다시 떨어지며 땅 A 중에서 이제는 평균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경영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생산물을 그 개별적 생산가격 이하로 팔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평균이윤을 얻지 못한다.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만약 투자가 늘어나는 결과에 필요한 총생산물을 더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 내고 따라서 예컨대 경영자본이 A에서 철수되며 따라서 A가 이 일정한 생산물 예컨대 밀의 생산에서 경쟁하지 않게 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된다. 조절적인 땅으로 된 비교적 좋은 땅인 B에 이제는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액이 이제는 표준적인 것으로 된다. 그리고 땅때기의 서로 다른 비옥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에이커 당 이 새로운 표준량의 자본이 지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평균투자액——예컨대 영국에서는 에이커 당 1848년 이전에는 8파운드 스텔링, 1848년 이후에는 12파운드 스텔링*——은 차지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으로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보다 많이 지출하는 차지농업가에게서 초과이윤은 차지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은 지대로 전화되지 않는다. 차지계약이 끝나게 된 후 이러한 전화가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똑같은 특별한 선대를 할 수 있는 차지농업가들

* 이 권, 893~894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사이의 경쟁에 달릴 것이다. 투자가 똑같거나 심지어 줄어드는 경우에도 생산물의 증가를 계속 보장하게 하는 항구적 토지개량은 이 경우에 문제가 아니다. 이 항구적 개량은 자본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땅의 자연적 질의 차이와 꼭 마찬가지로 작용된다.

그래서 차액지대 II에서는 차액지대 I 자체에서는 전개되지 않는——왜냐하면 차액지대 I은 에이커 당 표준투자의 어떠한 변동과도 관계없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하나의 계기가 문제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한편으로는 조절적인 땅 A에 대한 서로 다른 투자의 결과가 지워지며 이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이제는 단순히 에이커 당 표준적인 평균생산물로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커 당 투자의 표준적 최저한 또는 평균적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 변동이 땅의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윤이 지대형태로 전화되는 방식도 다르다.

그리고 또 표 VII을 표 I 및 II와 비교하면 곡물지대는 표 I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되고 표 II에 비하여 $1\frac{1}{4}$ 쿼터만큼 늘었는데 화폐지대는 표 I에 비하여 2배로 되고 표 II에 비하여 변함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만약(다른 조건들은 같다고 하고) 추가자본의 많은 부분이 비교적 좋은 종류의 땅들에 돌려지든가 또는 다른 한편으로 땅 A에서의 추가자본의 작용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따라서 땅 A의 쿼터 당 조절적 평균가격이 더 높아진다면 화폐지대는 크게 늘 것이다.

만약 추가투자로 해서 비속도가 각종 땅들에서 서로 다르게 커진다면 그 결과에 이 땅들에서 나오는 차액지대는 달라질 것이다.

어쨌든 추가투자의 생산성의 율이 오르는 결과에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즉 이 생산성이 선대자본보다 높은 비율로 는다면——에이커 당 지대는 예컨대 투자가 2배로 되면 2배로 될 뿐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에이커 당 지대는 또한 땅 A의 생산성이 더 빨리 늘어나는 결과에 생산가격이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

추가투자가 예컨대 땅 B와 C의 생산성을 땅 A의 생산성과 같은 정도로 높이지 않고 그리하여 땅 B와 C에서는 비례적 차이가 줄어들어 생산

물의 양이 늘더라도 값이 떨어지는 것을 벌충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표Ⅱ에 비하여 (화폐)지대는 땅 D에서는 변함없고 땅 B와 C에서는 줄어든 것이다.

표 VIa

땅종류	에이커	자 본 (파운드 스텔링)	이윤 (파운드 스텔링)	에이커 당 생산물 (쿼터)	판매 가격 (파운드 스텔링)	수익 (파운드 스텔링)	지대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 스텔링)
A	1	$2\frac{1}{2} + 2\frac{1}{2} = 5$	1	$1 + 3 = 4$	$1\frac{1}{2}$	6	0	0
B	1	$2\frac{1}{2} + 2\frac{1}{2} = 5$	1	$2 + 2\frac{1}{2} = 4\frac{1}{2}$	$1\frac{1}{2}$	$6\frac{3}{4}$	$1\frac{1}{2}$	$3\frac{3}{4}$
C	1	$2\frac{1}{2} + 2\frac{1}{2} = 5$	1	$3 + 5 = 8$	$1\frac{1}{2}$	12	4	6
D	1	$2\frac{1}{2} + 2\frac{1}{2} = 5$	1	$4 + 12 = 16$	$1\frac{1}{2}$	24	12	18
합계	4	20	—	$32\frac{1}{2}$	—	—	$16\frac{1}{4}$	$24\frac{3}{4}$

마지막으로 비교적 좋은 땅떼기들에서 비옥도가 비례적으로 똑같이 높아질 때에 땅 A에서 보다 더 많은 추가자본이 지출되든가 비교적 좋은 땅떼기들에서의 추가투자로서 해서 생산성의 물이 오르든가 하는 경우에는 화폐지대는 늘 것이다. 이 두 경우에는 다 차이가 늘 것이다.

추가투자로서 해서 이루어지는 개량이, 차이를 전부 또는 일부 줄이면서 땅 B와 C에 대해서보다 A에 대하여 더 큰 영향을 준다면 화폐지대는 떨어진다. 가장 좋은 땅떼기들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화폐지대는 더욱더 떨어진다. 곡물지대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또는 변함없는가 하는 것은 받게 되는 영향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각종 땅들의 추가적 비옥도의 상대적 차이가 변함없는 조건에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땅 A에서보다 지대를 가져오는 땅들에 더 많은 자본이 지출되고 또한 비교적 낮은 지대를 낳는 땅에서보다 더 높은 지대를 낳는 땅에 더 많은 자본이 투하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같은 추가자본

으로 비옥도가 땅 A에서보다 비교적 좋은 땅들과 가장 좋은 땅에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화폐지대도 곡물지대도 늘어난다. 즉 이 비옥도의 증가가 낮은 등급의 땅들에서보다 높은 등급의 땅들에서 더 심한 데 비례하여 화폐지대와 곡물지대가 는다.

그러나 생산력이 느는 것이 자본이 추가되는 결과이고 투자가 변함없을 때에 비옥도가 단순히 높아지는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사정에서도 지대는 상대적으로 오른다. 이것은 절대적 관점인데 이 절대적 관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 이전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지대 그리고 에이커 당 증가된 지대(차액지대 I에서와 같이 총경지에 대해서는 평균지대의 높이)는 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결과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증가된 투자가 값이 변함없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생산성의 율이 변함없이 기능을 하건, 또는 값이 변함없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생산성의 율이 줄어들면서 기능을 하건, 또는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생산성의 율이 오르면서 기능을 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추가자본의 생산성의 율이 변함없거나 줄어들거나 오르는 어느 경우에도 값은 같고 또 생산성의 율이 변함없거나 줄어들거나 오르는 어느 경우에도 값은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 가정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즉 값이 변함없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추가자본의 생산성의 율은 변함없으며, 값이 변함없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생산성의 율은 줄어들며, 값이 변함없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생산성의 율은 오른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지대는 변함없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사정들이 같은 경우에 추가투자가 비옥도 증대의 조건이 아니라면 지대는 더욱더 심히 줄어들 것이다. 그 경우에는 추가투자는 언제나 지대가 절대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이다.

제 43 장 차액지대 II. 세째 경우— 생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결론

{생산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질이 가장 나쁜 땅의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땅 A에 투하된 2½ 파운드 스틸링이 1쿼터 이하를 생산하거나, 5파운드 스틸링이 2쿼터 이하를 생산하거나, A보다도 질이 더 나쁜 땅이 경작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조절적인 것이라고 보는 생산가격이 3파운드 스틸링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거나 심지어 오르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2½파운드 스틸링의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만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자주 있다. 예컨대 얇게 가는 경우에 상층의 비옥한 토양이 낡은 경작체계로 해서 피폐되어 수익이 줄어들며, 이어 깊이 갈아서 파올린 하층의 토양이 합리적인 경작으로 전보다 더 높은 수익을 다시금 내는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2½파운드 스틸링의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은 비교적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에까지도 차액지대 I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차액지대 II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특수한 경우는 차액지대 II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사실상 차액지대 I의 변화가 차액지대 II에 반영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를 보여주는 일례를 다음에 든다.

화폐지대도 화폐수익도 표 II에서와 같다. 오른 조절적 생산가격은 생산물의 양에서 잃은 것을 정확히 벌충한다. 이 가격과 생산물의 양과는 반비례로 변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을 곱한 값이 전과 다름없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표 VII

땅 종 류	에 이 커	투 자 (파운드스털링)	이 윤 (파운드 스털링)	생 산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생 산 물 (쿼터)	판 매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수 익 (파운드 스털링)	지 대		지 대 율
								곡 물 (쿼터)	화폐 (파운드 스털링)	
A	1	$2\frac{1}{2} + 2\frac{1}{2}$	1	6	$1/2 + 1\frac{1}{4} = 1\frac{3}{4}$	$3\frac{3}{4}$	6	0	0	0
B	1	$2\frac{1}{2} + 2\frac{1}{2}$	1	6	$1 + 2\frac{1}{2} = 3\frac{1}{2}$	$3\frac{3}{4}$	12	$1\frac{3}{4}$	6	120%
C	1	$2\frac{1}{2} + 2\frac{1}{2}$	1	6	$1\frac{1}{2} + 3\frac{3}{4} = 5\frac{1}{4}$	$3\frac{3}{4}$	18	$3\frac{3}{4}$	12	240%
D	1	$2\frac{1}{2} + 2\frac{1}{2}$	1	6	$2 + 5 = 7$	$3\frac{3}{4}$	24	$5\frac{1}{4}$	18	360%
	—	20	—	—	$17\frac{1}{2}$	—	60	$10\frac{1}{2}$	36	240%

위에서 든 경우에 두번째 투자의 생산력은 첫번째 투자의 맨 처음의 생산성보다 높다고 가정하였다.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첫번째 투자의 맨 처음의 생산성과 같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사태는 다름없어서 다음과 같다.

표 VIII

땅 종 류	에 이 커	투 자 (파운드스털링)	이 윤 (파운드 스털링)	생 산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생 산 물 (쿼터)	판 매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수 익 (파운드 스털링)	지 대		초 과 이 윤 율
								곡 물 (쿼터)	화폐 (파운드 스털링)	
A	1	$2\frac{1}{2} + 2\frac{1}{2} = 5$	1	6	$1/2 + 1 = 1\frac{1}{2}$	4	6	0	0	0
B	1	$2\frac{1}{2} + 2\frac{1}{2} = 5$	1	6	$1 + 2 = 3$	4	12	$1\frac{1}{2}$	6	120%

C	1	$2\frac{1}{2} + 2\frac{1}{2} = 5$	1	6	$1\frac{1}{2} + 3 = 4\frac{1}{2}$	4	18	3	12	240%
D	1	$2\frac{1}{2} + 2\frac{1}{2} = 5$	1	6	$2 + 4 = 6$	4	24	$4\frac{1}{2}$	18	360%
	—	20	—	—	15	—	60	9	36	240%

이 경우에도 생산가격이 똑같은 비율로 오르면 생산성이 줄더라도 수익이나 화폐지대에서 완전히 벌충된다.

세제 경우가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첫째 경우와 둘째 경우에 언제나 그렇게 보았듯이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은 변함없는데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만이다. 이 경우에는 차액지대 I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차액지대 II를 이루는 지대부분만이다. 두 개의 예를 들고 첫번째 예에서는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1/2로 줄고 두번째 예에서는 1/4로 준다고 하자.

표 IX

땅 종 류	예 이 커	투 자 (파운드 스텔링)	이 윤 (파운드 스텔링)	생 산 가 격 (파운드 스텔링)	생 산 물 (퀴 터)	판 매 가 격 (파운드 스텔링)	수 익 (파운드 스텔링)	지대		지대율
								곡물 (퀴 터)	화폐 (파운드 스텔링)	
A	1	$2\frac{1}{2} + 2\frac{1}{2} = 5$	1	6	$1 + 1/2 = 1\frac{1}{2}$	4	6	0	0	0
B	1	$2\frac{1}{2} + 2\frac{1}{2} = 5$	1	6	$2 + 1 = 3$	4	12	$1\frac{1}{2}$	6	120%
C	1	$2\frac{1}{2} + 2\frac{1}{2} = 5$	1	6	$3 + 1\frac{1}{2} = 4\frac{1}{2}$	4	18	3	12	240%
D	1	$2\frac{1}{2} + 2\frac{1}{2} = 5$	1	6	$4 + 2 = 6$	4	24	$4\frac{1}{2}$	18	360%
	—	20	—	—	15	—	60	9	36	240%

표 IX는 표 VIII과 같으나 다만 표 VIII에서는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데 표 IX에서는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든다.

표 X

땅 종 류	에 이 커	투 자 (파운드 스텔링)	이 윤 (파운드 스텔링)	생 산 가 격 (파운드 스텔링)	생 산 물 (퀴 터)	판 매 가 격 (파운드 스텔링)	수 익 (파운드 스텔링)	지대		지대율
								곡물 (퀴터)	화제 (파운드 스텔링)	
A	1	$2\frac{1}{2} + 2\frac{1}{2} = 5$	1	6	$1 + 1/4 = 1\frac{1}{4}$	$4\frac{1}{2}$	6	0	0	0
B	1	$2\frac{1}{2} + 2\frac{1}{2} = 5$	1	6	$2 + 1/2 = 2\frac{1}{2}$	$4\frac{1}{2}$	12	$1\frac{1}{4}$	6	120%
C	1	$2\frac{1}{2} + 2\frac{1}{2} = 5$	1	6	$3 + 3/4 = 3\frac{3}{4}$	$4\frac{1}{2}$	18	$2\frac{1}{2}$	12	240%
D	1	$2\frac{1}{2} + 2\frac{1}{2} = 5$	1	6	$4 + 1 = 5$	$4\frac{1}{2}$	24	$3\frac{3}{4}$	18	360%
	—	20	—	24	$12\frac{1}{2}$	—	60	$7\frac{1}{2}$	36	240%

이 표에서도 총수익, 총화폐지대 및 지대율은 표 II, VII 및 VIII에서와 같다. 왜냐하면 또다시 생산물(파운드 스텔링)과 판매가격은 반비례로 변화하였으나 투자는 전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가격이 오르는 조건하에서 있을 수 있는 다른 경우 즉 지금까지 경작할 만한 가치가 없던 더 나쁜 땅이 이제 경작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같은 땅——우리는 이것을 a라고 부르자——이 다른 땅들과 경쟁하게 된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대를 가져오지 않던 땅 A가 지대를 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위에서 든 표 VII, VIII 및 X은 각각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라는 땅이 덧붙어서 새로운 차액지대 I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차액지대 II가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형성된다. 위에서 든 세 표의 어느 것에서나 땅 a는 비옥도가 각각 다르다. 비례적으로 오르고 있는 비옥도의 계열은 비로소 땅 A로부터 시작된다. 오르고 있는 지대의 계열도 이에 따라가고 있다. 전에는 지대를 내지 않다가

표 VIIa

땅 종 류	에 이 커	자 본 (파운드스틸링)	이윤 (파운드스틸링)	생산가격 (파운드스틸링)	생 산 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스틸링)	수익 (파운드스틸링)	지대		중 가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스틸링)	
a	1	5	1	6	$1\frac{1}{2}$	4	6	0	0	0
A	1	$2\frac{1}{2}+2\frac{1}{2}$	1	6	$1/2+1\frac{1}{4}=1\frac{3}{4}$	4	7	$1/4$	1	1
B	1	$2\frac{1}{2}+2\frac{1}{2}$	1	6	$1+2\frac{1}{2}=3\frac{1}{2}$	4	14	2	8	$1+7$
C	1	$2\frac{1}{2}+2\frac{1}{2}$	1	6	$1\frac{1}{2}+3\frac{3}{4}=5\frac{1}{4}$	4	21	$3\frac{3}{4}$	15	$1+2\times 7$
D	1	$2\frac{1}{2}+2\frac{1}{2}$	1	6	$2+5=7$	4	28	$5\frac{1}{2}$	22	$1+3\times 7$
	—	—	—	30	19	—	76	$11\frac{1}{2}$	46	—

표 VIIa

땅 종 류	에 이 커	자 본 (파운드 스틸링)	이윤 (파운드 스틸링)	생산가격 (파운드 스틸링)	생 산 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스틸링)	수익 (파운드 스틸링)	지대		중 가
								곡물 (쿼터)	화폐 (파운드 스틸링)	
a	1	5	1	6	$1\frac{1}{4}$	$4\frac{1}{2}$	6	0	0	0
A	1	$2\frac{1}{2}+2\frac{1}{2}$	1	6	$1/2+1=1\frac{1}{2}$	$4\frac{1}{2}$	$7\frac{1}{2}$	$1/4$	$1\frac{1}{2}$	$1\frac{1}{2}$
B	1	$2\frac{1}{2}+2\frac{1}{2}$	1	6	$1+2=3$	$4\frac{1}{2}$	$14\frac{1}{2}$	$1\frac{1}{4}$	$8\frac{3}{4}$	$1\frac{1}{2}+7\frac{1}{2}$
C	1	$2\frac{1}{2}+2\frac{1}{2}$	1	6	$1\frac{1}{2}+3=4\frac{1}{2}$	$4\frac{1}{2}$	$21\frac{1}{2}$	$3\frac{1}{4}$	$15\frac{1}{2}$	$1\frac{1}{2}+2\times 7\frac{1}{2}$
D	1	$2\frac{1}{2}+2\frac{1}{2}$	1	6	$2+4=6$	$4\frac{1}{2}$	$28\frac{1}{2}$	$4\frac{1}{4}$	$22\frac{1}{2}$	$1\frac{1}{2}+3\times 7\frac{1}{2}$
	5	—	—	30	$16\frac{1}{4}$	—	78	10	48	—

표 Xa

땅 종 류	에 이 커	자 본 (파운드스털링)	이 윤 (파운드 스털링)	생 산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생 산 물 (쿼터)	판 매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수 익 (파운드 스털링)	지대		중 가
								곡 물 (쿼터)	화 폐 파 운 드 스 털 링	
a	1	5	1	6	$1\frac{1}{2}$	$5\frac{1}{2}$	6	0	0	0
A	1	$2\frac{1}{2}+2\frac{1}{2}$	1	6	$1+1\frac{1}{4}=1\frac{1}{4}$	$5\frac{1}{2}$	$6\frac{3}{4}$	$1\frac{1}{8}$	$2\frac{2}{3}$	$2\frac{2}{3}$
B	1	$2\frac{1}{2}+2\frac{1}{2}$	1	6	$2+1\frac{1}{2}=1\frac{1}{2}$	$5\frac{1}{2}$	$13\frac{1}{2}$	$1\frac{3}{4}$	$7\frac{1}{2}$	$2\frac{2}{3}+6\frac{3}{4}$
C	1	$2\frac{1}{2}+2\frac{1}{2}$	1	6	$3+3\frac{1}{4}=3\frac{3}{4}$	$5\frac{1}{2}$	20	$2\frac{5}{8}$	14	$2\frac{2}{3}+2$ $\times 6\frac{3}{4}$
D	1	$2\frac{1}{2}+2\frac{1}{2}$	1	6	$4+1=5$	$5\frac{1}{2}$	$26\frac{3}{4}$	$3\frac{1}{2}$	$20\frac{1}{2}$	$2\frac{2}{3}+3$ $\times 6\frac{3}{4}$
—	—	—	—	30	$13\frac{5}{8}$	—	$72\frac{3}{4}$	8	$42\frac{1}{2}$	—

지대를 내게 된 가장 나쁜 땅에서 나오는 지대는 하나의 불변량을 이루며 이것이 그보다 높은 모든 지대에 단순히 덧붙는다. 그리고 이 불변량을 뺀 후에야 비로소 보다 높은 지대들에서 차액들의 계열이 명료하게 나타나며 또 이 계열이 질이 서로 다른 땅들의 비옥도의 계열과 평행하고 있다는 것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표들에서 땅 A로부터 D까지의 서로 다른 비옥도의 비율은 1:2:3:4이며 이에 따라 지대의 비율도

VIIa에서는 $1 : (1+7) : (1+2\times 7) : (1+3\times 7)$ 이며

VIIIa에서는 $1\frac{1}{2} : (1\frac{1}{2}+7\frac{1}{2}) : (1\frac{1}{2}+2\times 7\frac{1}{2}) : (1\frac{1}{2}+3\times 7\frac{1}{2})$ 이며

Xa에서는 $2\frac{2}{3} : (2\frac{2}{3}+6\frac{3}{4}) : (2\frac{2}{3}+2\times 6\frac{3}{4}) : (2\frac{2}{3}+3\times 6\frac{3}{4})$ 이다. 간단히 말하면 땅 A의 지대가 n이고 비옥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땅에서 나오는 지대가 n+m이라면, 지대의 계열은 다음과 같이 즉 $n : (n+m) : (n+2m) : (n+3m)$ 등으로 될 것이다. —F. E.]

(위에서 든 세째 경우는 원고에는 제목만 있을 뿐이고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한 바와 같이 이것을 될수록 보충하는 것이 편집자의 임무로 되었다. 그러나 그 밖에 편집자에게는 차액지대Ⅱ의 세개의 주되는 경우와 아홉 개의 갈라져 나온 경우의 차액지대Ⅱ에 관한 이상의 모든 연구로부터 나오는 일반적 결론을 짓는 일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에서 들고 있는 예들은 거의 적합하지 않다. 첫째로 이 예들에서는 크기가 같은 면적에서 1:2:3:4라는 비례로 수익을 내는 땅패기들이 비교되고 있다. 따라서 그 차이들은 이미 처음부터 심히 과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하고 있는 가정과 계산을 더욱 전개하는 데서, 완전히 무리한 숫자 관계에 이르게 하고 있다. 둘째로 이 예들은 완전히 그릇된 외관을 낳게 한다. 비옥도의 비례가 1:2:3:4 등과 같은 때에 0:1:2:3 등의 계열의 지대를 얻게 된다면 사람들은 곧 첫 계열에서 둘째 계열을 끌어내고 총수익의 2배가, 3배가 등으로 지대의 2배가, 3배가 등을 설명해보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옳지 않을 것이다. 비옥도의 비례가 $n:(n+1):(n+2):(n+3):(n+4)$ 인 경우에도 지대의 비례는 0:1:2:3:4이며 지대는 비옥도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땅을 영점으로 해서 계산한 차이에 비례하는 것이다.

본문의 설명을 위해서는 원고에 있는 표들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드는 연구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초를 얻기 위하여 나는 앞으로 일련의 새로운 표들을 들겠는데 거기에서는 수익을 부셀(1/8쿼터 또는 36, 35리터) 및 실링(=마르크)으로 표시한다.

첫째 표(XI)는 이전의 표 I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표는 A~E에 이르는 5종의 땅에서 50실링이라는 첫번째 투자에 의하여 얻는 수익과 지대를 보여주는데 이 50실링은 10실링의 이윤과 함께 에이커 당 60실링의 총생산가격을 이룬다. 곡물수확량은 에이커 당 10, 12, 14, 16, 18부셀로 낮게 보고 있다. 그 결과에 나오는 조절적 생산가격은 부셀당 6실링이다.

다음의 13개의 표들은 이 장과 그 앞의 2장에서 살펴본 차액지대Ⅱ의 세 경우 즉 똑같은 땅에 50실링이라는 추가자본이 투하되는 조건에서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오르는 경우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 경우들은 각각 이번에는 첫번째 투자에 비하여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1) 변함없는 경우 2) 떨어지는 경우 3) 오르는 경우에 그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표시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더 설명해야 할 몇 개의 변종이 생긴다.

첫째 경우……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변종들이 있다.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표 XⅡ).

변종 2.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 땅 A에서 두번째 투자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두 경우가 있다.

a) 땅 B도 또한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경우(표 XⅢ).

b) 땅 B가 전혀 지대가 없지는 않는 경우(표 XⅣ).

변종 3.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표 XⅤ). 이 경우도 땅 A에서의 두번째 투자를 못하게 한다.

두번째 경우……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변종들이 있다.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다름없는 경우(표 XⅥ).

변종 2.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표 XⅦ). 이 두 변종으로 해서 땅 A는 다른 땅들과의 경쟁에 끼어들지 못하고 땅 B는 지대가 없게 되며 생산가격을 조절하게 된다.

변종 3.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표 XⅧ). 이 경우에는 땅 A는 여전히 조절적이다.

세째 경우…… 생산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즉 땅 A가 변함없이 지대가 없고 값을 조절하는 땅일 수 있든가, 그렇지 않고 땅 A보다 질이 나쁜 땅이 나타나서 다른 땅들과 경쟁하게 되고 값을 조절하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땅 A는 벌써 지대를 가져온다.

첫째 상황. 땅 A가 여전히 조절적인 경우.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표 XⅨ). 이것은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전제하에서만 있을 수 있다.

변종 2.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표 XX). 그렇더라도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변종 3.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표 XXI). 이렇게 되려면 또다시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져야 한다.

둘째 상황. 질이 더 나쁜 땅(a로 표시되는)이 나타나서 경쟁하게 되며 땅 A가 지대를 가져오는 경우.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표 XXⅡ).

변종 2.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표 XXⅢ).

변종 3.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표 XXⅣ).

이 세 변종은 문제의 일반적 조건들에 상응하는 것이며 어떠한 지지도 필요없다.

그러면 표를 들어보자(표 XI 을 보라).

똑같은 땅에서 두번째 투자가 실시되는 경우.

첫번째 경우……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

표 X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	10	6	60	0	0
B	60	12	6	72	12	12
C	60	14	6	84	24	2×12
D	60	16	6	96	36	3×12
E	60	18	6	108	48	4×12
	—	—	—	—	120	10×12

표 XI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60=120	10+10=20	6	120	0	0
B	60+60=120	12+12=24	6	144	24	24

C	$60+60=120$	$14+14=28$	6	168	48	2×24
D	$60+60=120$	$16+16=32$	6	192	72	3×24
E	$60+60=120$	$18+18=36$	6	216	96	4×24
	—	—	—	—	240	10×24

변종 2.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 땅 A에서는 두번째 투자가 없다.

1) 땅 B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는 경우.

표 XⅢ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	10	6	60	0	0
B	$60+60=120$	$12+8=20$	6	120	0	0
C	$60+60=120$	$14+9\frac{1}{2}=23\frac{1}{2}$	6	140	20	20
D	$60+60=120$	$16+10\frac{2}{3}=26\frac{2}{3}$	6	160	40	2×20
E	$60+60=120$	$18+12=30$	6	180	60	3×20
	—	—	—	—	120	6×20

2) 땅 B가 전혀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지는 않는 경우.

표 XⅣ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	10	6	60	0	0
B	$60+60=120$	$12+9=21$	6	126	6	6
C	$60+60=120$	$14+10\frac{1}{2}=24\frac{1}{2}$	6	147	27	6×21
D	$60+60=120$	$16+12=28$	6	168	48	$6+2 \times 21$
E	$60+60=120$	$18+31\frac{1}{2}=31\frac{1}{2}$	6	189	69	$6+3 \times 21$
	—	—	—	—	150	$4 \times 6 + 6 \times 21$

변종 3.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 이 경우에도 땅 A에서는 두번째 투자가 없다.

표 XV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	10	6	60	0	0
B	$60+60=120$	$12+15=27$	6	162	42	42
C	$60+60=120$	$14+17\frac{1}{2}=31\frac{1}{2}$	6	189	69	42×27
D	$60+60=120$	$16+20=36$	6	216	96	$42+2\times 27$
E	$60+60=120$	$18+22\frac{1}{2}=40\frac{1}{2}$	6	243	123	$42+3\times 27$
	—	—	—	—	330	$4\times 42+6\times 27$

둘째 경우……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 땅 A는 경쟁에서 떨어져나가고 땅 B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

표 XV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B	$60+60=120$	$12+12=24$	5	120	0	0
C	$60+60=120$	$14+14=28$	5	140	20	20
D	$60+60=120$	$16+16=32$	5	160	40	2×30
E	$60+60=120$	$18+18=36$	5	180	60	3×20
	—	—	—	—	120	6×20

변종 2.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 땅 A는 경쟁에서 떨어져나감 땅 B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

표 XVI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B	$60+60=120$	$12+9=21$	$5\frac{1}{2}$	120	0	0
C	$60+60=120$	$14+10\frac{1}{2}=31\frac{1}{2}$	$5\frac{1}{2}$	140	20	20
D	$60+60=120$	$16+12=28$	$5\frac{1}{2}$	160	40	2×30
E	$60+60=120$	$18+13\frac{1}{2}=31\frac{1}{2}$	$5\frac{1}{2}$	180	60	3×20
	—	—	—	—	120	6×20

변종 3.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 땅 A는 전과 다름없이 다른 땅들과 경쟁한다. 땅 B는 지대를 가져온다.

표 XVII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	$10+15=25$	$4\frac{1}{2}$	120	0	0
B	$60+60=120$	$12+18=30$	$4\frac{1}{2}$	144	24	24
C	$60+60=120$	$14+21=35$	$4\frac{1}{2}$	168	48	2×24
D	$60+60=120$	$16+24=40$	$4\frac{1}{2}$	192	72	3×24
E	$60+60=120$	$18+27=45$	$4\frac{1}{2}$	216	96	4×24
	—	—	—	—	240	10×24

세째 경우…… 생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A. 땅 A가 전과 다름없이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가격을 조절하는 경우.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 이렇게 되려면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져야 한다.

표 XIX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60=60$	$7\frac{1}{2}+10=17\frac{1}{2}$	6 %	120	0	0
B	$60+60=120$	$9+12=21$	6 %	144	24	24
C	$60+60=120$	$10\frac{1}{2}+14=24\frac{1}{2}$	6 %	168	48	2×24
D	$60+60=120$	$12+16=28$	6 %	192	72	3×24
E	$60+60=120$	$13\frac{1}{2}+18=31\frac{1}{2}$	6 %	216	96	4×24
	—	—	—	—	240	10×24

변종 2.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렇더라도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을 수 있다.

표 XX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60=120$	$10+5=15$	8	120	0	0
B	$60+60=120$	$12+6=18$	8	144	24	24
C	$60+60=120$	$14+7=21$	8	168	48	2×24
D	$60+60=120$	$16+8=24$	8	192	72	3×24
E	$60+60=120$	$18+9=27$	8	216	96	4×24
	—	—	—	—	240	10×24

변종 3.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 이렇게 되려면 위에서 말한 전제하에서 첫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들어야 한다.

표 XX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60+60=120$	$5+12\frac{1}{2}=17\frac{1}{2}$	6	120	0	0

B	$60+60=120$	$6+15=21$	6	144	24	24
C	$60+60=120$	$7+17\frac{1}{2}=24\frac{1}{2}$	6	168	48	2×34
D	$60+60=120$	$8+20=28$	6	192	72	3×24
E	$60+60=120$	$9+22\frac{1}{2}=31\frac{1}{2}$	6	216	96	4×24
	—	—	—	—	240	10×24

B. 더 나쁜 땅(a로 표시되는)이 값을 조절하는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A는 지대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경우. 그렇더라도 모든 변종들에서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을 수 있다.

변종 1.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변함없는 경우.

표 XXI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셸)	판 매 가 격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120	16	$7\frac{1}{2}$	120	0	0
A	$60+60=120$	$10+10=20$	$7\frac{1}{2}$	150	30	30
B	$60+60=120$	$12+12=24$	$7\frac{1}{2}$	180	60	2×30
C	$60+60=120$	$14+14=28$	$7\frac{1}{2}$	210	90	3×30
D	$60+60=120$	$16+16=32$	$7\frac{1}{2}$	240	120	4×30
E	$60+60=120$	$18+18=36$	$7\frac{1}{2}$	270	270	5×30
	—	—	—	—	450	15×30

변종 2.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

표 XXIII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셸)	판 매 가 격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증 가
a	120	15	8	120	0	0
A	$60+60=120$	$10+7\frac{1}{2}=17\frac{1}{2}$	8	140	20	20
B	$60+60=120$	$12+9=21$	8	168	48	20×28
C	$60+60=120$	$14+10\frac{1}{2}=24\frac{1}{2}$	8	196	76	$20+2\times 28$

D	$60+60=120$	$16+12=28$	8	224	104	$20+3\times 28$
E	$60+60=120$	$18+13\frac{1}{2}=31\frac{1}{2}$	8	252	132	$20+4\times 28$
		—	—	—	380	$5\times 20+10+28$

변종 3.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오르는 경우(표 XXIV를 보라).
이 표들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표 XXIV

땅종류	생산가격 (실링)	생 산 물 (부셀)	판 매 가 격 (실링)	수 익 (실링)	지 대 (실링)	지 대 의 중 가
a	120	16	$7\frac{1}{2}$	120	0	0
A	$60+60=120$	$10+12\frac{1}{2}=22\frac{1}{2}$	$7\frac{1}{2}$	$168\frac{3}{4}$	$48\frac{3}{4}$	$15+33\frac{3}{4}$
B	$60+60=120$	$12+15=27$	$7\frac{1}{2}$	$202\frac{1}{2}$	$82\frac{1}{2}$	$15+2\times 33\frac{3}{4}$
C	$60+60=120$	$14+17\frac{1}{2}=31\frac{1}{2}$	$7\frac{1}{2}$	$236\frac{1}{4}$	$116\frac{1}{4}$	$15+3\times 33\frac{3}{4}$
D	$60+60=120$	$16+20=36$	$7\frac{1}{2}$	270	150	$15+4\times 33\frac{3}{4}$
E	$60+60=120$	$18+22\frac{1}{2}=40\frac{1}{2}$	$7\frac{1}{2}$	$303\frac{3}{4}$	$183\frac{3}{4}$	$15+5\times 33\frac{3}{4}$
	—	—	—	—	$581\frac{1}{4}$	$5\times 15+15\times 33\frac{3}{4}$

우선 지대의 계열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조절적인 땅을 영점으로 한 비옥도의 차이의 계열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이다. 지대는 절대적 수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익의 차이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각종 땅이 에이커 당 1, 2, 3, 4, 5부셀의 수익을 가져오건 11, 12, 13, 14, 15부셀의 수익을 가져오건 두 경우에 다 지대의 계열은 0, 1, 2, 3, 4부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폐수익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똑같은 땅에 투자가 되풀이되는 조건에서 생기는 지대 총액과 관련하여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까지 연구한 13개 경우 중에서 다섯 개 경우에는 투자와 함께 지대총액도 2배로 된다. 즉 $12\text{실링}\times 10$ 대신에 $24\text{실링}\times 10=240\text{실링}$ 으로 된다. 그 경우들이란 다음과 같다.

값이 변함없는 첫째 경우, 변종 1. 투자에 따라 생산이 느는 경우 (표 XII).

값이 떨어지는 둘째 경우, 변종 3 생산이 더욱더 느는 경우 (표 XVIII),
값이 오르는 세째 경우, 첫째 상황, 세 변종 모두 (표 XIX, XX, XXI)
에서 땅 A가 여전히 조절적인 땅인 경우.

아래 네 경우에는 지대는 2배 이상 오른다. 즉

첫째 경우, 변종 3. 값은 다름없으나 생산이 더욱더 느는 경우 (표 XV), 지대 총액은 330실링으로 오른다.

세째 경우, 두번째 상황.

세 변종 모두에서 땅 A는 지대를 가져온다 (표 XXII, 지대는 $30 \times 15 = 450$ 실링, 표 XXIII, 지대는 $20 \times 5 + 28 \times 10 = 380$ 실링, 표 XXIV, 지대는 $15 \times 5 + 33\frac{3}{4} \times 15 = 581\frac{1}{4}$ 실링).

다음 한 경우에는 지대가 오르지만 첫번째 투자에서 나오는 지대의 2배가 되지는 않는다.

값이 변함없는 첫째 경우, 변종 2. 땅 B가 아직 지대를 가져오는 조건에서 두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 (표 XIV, 지대는 $6 \times 4 + 21 \times 6 = 150$ 실링).

마지막으로 모든 종류의 땅에서 하는 두번째 투자에서 나오는 총지대가 여전히 첫번째 투자 (표 XI)에서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은 다만 세 경우뿐이다. 즉 땅 A는 경쟁에서 떨어져나가고 땅 B는 조절적인 땅으로 따라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땅으로 된다. 그리하여 땅 B에서 지대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것은 지대계열의 그 다음 매개 고리에서 줄어든다. 그 때문에 이상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우, 변종 2. 조건은 땅 A가 경쟁에서 떨어져나갈 때의 조건과 같다 (표 XIII). 지대 총액은 20×6 으로 되고 따라서 표 XI에서와 같이 $12 \times 10 = 120$ 으로 된다.

두번째 경우, 변종 1과 2. 이 경우에 땅 A는 전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떨어져나가고 (표 XVI 및 XVII) 지대 총액은 다시 $20 \times 6 = 12 \times 10 = 120$ 실링으로 된다.

요컨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대다수 경우에 지대는 땅에 대한 투자증가의 결과에 지대를 가져오는 땅의 에이커 당으로나 특히 지대 총액으로 보나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한 13개 경우 중에

서 세 개 경우에만 지대 총액은 변함없다. 그 세개 경우란 이 때까지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조절적 역할을 놀던 질이 가장 나쁜 땅이 경쟁에서 떨어져나가고 질이 그 다음으로 높은 땅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고 따라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에도 가장 좋은 종류의 땅에서 나오는 지대는 첫번째 투자로 해서 나오는 지대에 비하면 오른다. 땅 C에서 나오는 지대는 24실링에서 20실링으로 떨어지더라도 땅 D와 E에서 나오는 지대는 36과 48실링에서 40과 60실링으로 오른다.

총지대가 첫번째 투자 때에 이른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표 XI) 땅 A 밖에도 땅 B가 경쟁에서 떨어져나가고 땅 C가 조절적이며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땅으로 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자본이 땅에 투하되면 될수록, 어떤 나라에서 농업과 문명 일반이 높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미 경작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땅이 경쟁능력을 유지하는 한에서 에이커 당 지대도 지대 총액도 더욱더 오르며 사회가 초과이윤의 형태로 대토지소유자들에게 지불하는 공납이 더욱더 팽창한 것으로 된다.

이 법칙은 대토지소유자계급의 놀랄 만한 생활력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사회의 어떠한 다른 계급도 이 계급처럼 낭비생활을 하지는 않으며, 어떠한 다른 계급도 이 계급처럼 재래의 신분에 알맞는 사치——이에 드는 화폐가 어디서 나오든 간에——의 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어떠한 다른 계급도 이 계급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빚을 져나가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이 계급은 다른 사람들이 땅에 투하한 자본의 덕택으로, 자본가가 땅에서 끌어내는 이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대를 가져오는 그 자본의 덕택으로 언제나 곤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이 똑같은 법칙은 또한 대토지소유자의 이 생활력이 어째서 점차 지쳐가는가를 설명해 준다.

영국의 곡물세가 1846년에 폐지되었을 때 영국의 공장주들은 이것으로 토지귀족을 극빈자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도리어 토지귀족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부유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첫째로 차지농업가들은 계약에 의

하여 이제부터는 한 해 동안에 에이커 당 8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2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둘째로 하원에 대단히 많은 대표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자기들의 땅의 물빠기나 그 밖의 항구적 개량을 위하여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얻어냈다. 가장 나쁜 땅도 어디서나 완전히 밀려난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다만 다른 목적에, 그것도 대개는 일시적으로만 이용되었기 때문에 지대는 투자가 늘어나는 데 따라 늘어나고 토지귀족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나은 처지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란 없다. 대양을 건너다니는 기선, 남북 아메리카와 인도의 철도는 완전히 독자적인 지역들을 구라파의 곡물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처지에 끌어들었다. 한편으로는 북 아메리카의 대초원(프레리), 아르헨티나의 대초원(пампас) 즉 자연적으로 경작에 적합한 초원들, 원시적 경작으로 그리고 거름을 주지 않고도 여러 해에 걸쳐 풍부한 수확을 내는 처녀지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인도의 공산주의적 공동체들의 땅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들은 국가의 무자비한 전제정치가——흔히 고문에 의하여——강탈하여 가는 조세를 지불하기 위한 화폐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를, 그것도 더욱더 많이 팔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생산물은 생산가격과는 관계없이 상인이 부르는 값으로 팔렸다. 왜냐하면 농민은 세금을 무는 날짜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돈을 손에 넣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쟁——처녀지의 경쟁과 힘에 겨운 조세로 하여 쓰러지는 러시아와 인도의 농민 경쟁——에 부닥쳐서는 구라파의 차지농업가와 농민은 이미 이전의 지대를 물고서는 해나갈 수 없었다. 구라파 땅의 일부는 곡물을 생산하는 데서는 종국적으로 경쟁에서 밀려났고 지대는 어디서나 줄어들었다. 위에서 든 둘째 경우의 변종 2——즉 곡물값이 떨어지고 추가적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구라파에서 보통으로 되었다. 때문에 스코틀랜드로부터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부 프랑스로부터 동부 프리시아에 이르기까지 지주들은 비명을 올렸다. 다행히도 아직 대초원지가 모두 개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라파의 모든 대토지소유는 두말 할 것 없고 소토지소유까지도 파멸시킬 만한 대초원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F. E.}.

지대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A. 차액지대.

- 1) 차액지대의 개념. 물의 힘에 의한 예증, 원래의 농업지대로의 이행.
- 2) 서로 다른 땅땡기의 비옥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지대 I.
- 3) 똑같은 땅에 차례로 하는 투자에서 생기는 차액지대Ⅱ. 차액지대Ⅱ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연구해야 한다.
 - a) 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
 - b)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 c) 생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리고 또

- d)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화.
- 4) 이 지대의 이윤율에 대한 영향.

B. 절대지대

C. 땅값

D. 지대에 관한 결론적 고찰.

차액지대를 살펴보고 얻는 일반적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알게 된다.

첫째, 초과이윤은 여러 가지 길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차액지대 I에 기초하여 즉 비옥도가 서로 다른 땅들로 이루어지는 토지면적에 전체 농업자본을 투자하는 데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차액지대Ⅱ로서는 똑같은 땅에 차례로 하는 투자의 차별적 생산성이 서로 다른 데 기초하여, 즉 가장 나쁘고 지대를 가져오지 않지만, 생산가격을 조절하는 땅에서 똑같은 투자로 얻는 생산성보다 높은 생산성—예컨대 밀의 쿼터 수로 표현되는—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초과이윤이 어떻게 생기는 간에 그것의 지대로의 전화 따라서 차지농

업가의 손에서 토지소유자의 손으로 그것이 옮겨간다는 것은 차례차례의 개별적 투자에서 나오는 개별적 생산물의 서로 다른 실제적인 개별적 생산가격(즉 시장을 조절하는 일반적 생산가격과는 관계없는)이 미리 하나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된다는 것을 언제나 선행조건으로서 전제로 한다. 에이커 당 생산물의 일반적인 조절적 생산가격이 이 개별적 평균가격을 넘는 초과분, 이것이 에이커 당 지대를 이루며 또 그것을 규정한다. 차액지대 I에서는 결과의 차이는 그 자체로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서로 떨어져서 나란히 존재하는 서로 다른 땅패기들에서 표준적이라고 인정되는 에이커 당 투자와 이에 상응하는 경작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차액지대 II에서는 결과의 차이를 우선 알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실상 차액지대 I로 다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만 다시 전화될 수 있다. 예컨대 851페이지의 표 III을 들어보자.

땅 B는 에이커 당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첫번째 투자의 결과에 2쿼터를 내며, 그와 똑같은 두번째 투자의 결과에 $1\frac{1}{2}$ 쿼터를 내며, 똑같은 에이커에서 도합 $3\frac{1}{2}$ 쿼터를 낸다. 똑같은 땅에서 생긴 이 $3\frac{1}{2}$ 쿼터 중에서 얼마가 첫번째 투자의 생산물이고 얼마가 두번째 투자의 생산물인지 알 수 없다. 이 $3\frac{1}{2}$ 쿼터는 사실상 5파운드 스텔링의 총자본의 생산물이다. 그리고 실지 사태는 다만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2쿼터를 냈으며 5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4쿼터가 아니라 $3\frac{1}{2}$ 쿼터를 냈다는 데 있을 뿐이다. 비록 이 5파운드 스텔링이 4쿼터를 내고 그리하여 두 차례의 투자의 생산물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또는 심지어 그것이 5쿼터를 내고 그리하여 두번째 투자가 1쿼터의 초과분을 냈다고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첫 2쿼터의 생산가격은 쿼터 당 $1\frac{1}{2}$ 파운드 스텔링이고 그 다음 $1\frac{1}{2}$ 쿼터의 생산가격은 쿼터 당 2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frac{1}{2}$ 쿼터에는 도합 6파운드 스텔링이 든다. 이것이 총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이며 쿼터 당으로는 평균 1파운드 스텔링 $14\frac{1}{2}$ 실링 즉 대략 $1\frac{3}{4}$ 파운드 스텔링으로 된다. 땅 A가 규정하는 일반적 생산가격이 3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면 그 개별적 생산가격은 쿼터 당 $1\frac{1}{4}$ 파운드 스텔링의 초과이윤을 주며 따라서 $3\frac{1}{2}$ 쿼터에 대하여는 도합 $4\frac{3}{8}$ 파운드

스털링의 초과이윤을 준다. 땅 B의 평균생산가격에 의하면 이 초과이윤은 대략 $1\frac{1}{2}$ 쿼터로 표시된다. 따라서 땅 B에서 생기는 초과이윤은 B의 생산물의 해당한 일부분인 $1\frac{1}{2}$ 쿼터로 표시되며 이 $1\frac{1}{2}$ 쿼터는 곡물지대를 이루며 일반적 생산가격에 따라 $4\frac{1}{2}$ 파운드 스털링으로 팔린다. 그러나 반대로 땅 A의 1에이커의 생산물을 넘는 땅 B의 1에이커의 생산물의 초과분은 그대로 초과이윤 따라서 초과생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체에 의하면 B의 1에이커는 $3\frac{1}{2}$ 쿼터를 생산하고 A의 1에이커는 1쿼터를 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땅 B의 생산물의 초과분은 $2\frac{1}{2}$ 쿼터이다. 초과생산물은 $1\frac{1}{2}$ 쿼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B에서는 A에서보다 2배의 자본이 투하되고 따라서 B에서의 생산가격은 2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A에서도 또한 5파운드 스털링이 투하되고 생산성의 율이 변함없다고 하면 생산물은 1쿼터가 아니라 2쿼터일 것이며 그리하여 실지 초과생산물은 $3\frac{1}{2}$ 과 1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3\frac{1}{2}$ 과 2를 비교해야 알아낼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2\frac{1}{2}$ 쿼터가 아니라 $1\frac{1}{2}$ 쿼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땅 B에서 $2\frac{1}{2}$ 파운드 스털링의 세번째 투자가 실시되고 이것이 겨우 1쿼터를 내며 따라서 이 1쿼터에 땅 A에서와 마찬가지로 3파운드 스털링이 든다면 3파운드 스털링이라는 그 판매가격은 다만 생산가격을 보상할 뿐이고 평균이윤을 낼 뿐이며 아무런 초과이윤도 따라서 또 지대로 전화될 수 있는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땅이건 그 1에이커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땅 A의 에이커 당 생산물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그 생산물이 똑같은 투자의 생산물인지 또는 더 많은 투자의 생산물인지 알 수 없으며, 초과생산물이 생산가격을 보상할 뿐인지 또는 그것이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더 높은 데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둘째, 새로운 초과이윤의 형성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 생산가격을 보상할 따름인 투자 즉 1쿼터를 땅 A의 1에이커에서의 똑같은 투자와 마찬가지로 비싸게 생산하는 투자 따라서 전체에 의하면 3파운드 스털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투자를 한계로 하는 추가적 투자의 생산성의 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전개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땅 B의 1에이커에 대한 총투자가 더 이상 아무런 지대도 이루지 않

게 되는 한계는 B의 에이커 당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A의 에이커 당 생산가격의 수준으로 오르게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만약 땅 B에서 생산가격을 보상할 따름이며 따라서 아무런 초과이윤도 따라서 또 아무런 지대도 이루지 않는 추가적 투자가 실시된다면 이것은 물론 쿼터 당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을 올리지만, 이전의 투자가 이루어 놓은 초과이윤과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었던 지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균생산가격은 언제나 땅 A에서의 생산가격보다 낮으며 쿼터 당으로 계산한 이 값들의 차액이 줄더라도 그와 같은 비율로 쿼터 수가 늘며 그리하여 값의 총초과분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든 경우에 땅 B에서의 5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처음부터 두 번에 걸친 투자는 $3\frac{1}{2}$ 쿼터를 생산하며 따라서 전제에 의하면 $1\frac{1}{2}$ 쿼터의 지대=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을 생산한다. 만약 여기에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세번째 투자가 덧붙어서 그것이 추가적으로 1쿼터를 생산할 뿐이라면 $4\frac{1}{2}$ 쿼터의 총생산가격(이윤 20%를 포함한)은 9파운드 스텔링이고 따라서 쿼터 당 평균가격은 2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리하여 땅 B에서의 쿼터 당 평균생산가격은 $1\frac{5}{7}$ 파운드 스텔링에서 2파운드 스텔링으로 올랐고 따라서 땅 A의 조절적 가격과 비교한 쿼터 당 초과이윤은 $1\frac{2}{7}$ 파운드 스텔링에서 1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 \times 4\frac{1}{2} =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며 이전의 $1\frac{2}{7} \times 3\frac{1}{2} = 4\frac{1}{2}$ 파운드 스텔링과 똑같다.

만약 땅 B에서 다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씩의 네번째, 다섯번째 추가적 투자가 실시되고 그 투자들이 1쿼터를 각각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생산할 따름이라고 가정하면 에이커 당 총생산물은 이제는 $6\frac{1}{2}$ 쿼터이며 그 총생산가격은 15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땅 B에서의 쿼터 당 평균생산가격은 다시 2파운드 스텔링에서 $2\frac{2}{13}$ 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고 땅 A의 조절적 생산가격과 비교한 쿼터 당 초과이윤은 다시 1파운드 스텔링에서 $9/13$ 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9/13$ 파운드 스텔링은 이전의 $4\frac{1}{2}$ 쿼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6\frac{1}{2}$ 쿼터에 대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9/13 \times 6\frac{1}{2} = 1 \times 4\frac{1}{2} =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정하에서 조절

적 생산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지대를 가져오는 종류의 땅들에서 추가적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추가자본이 초과이윤을 가져오지 않게 되고 겨우 평균이윤만을 가져오는 정도까지 추가적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 에이커 당 초과이윤의 총액은 쿼터 당 초과이윤이 아무리 줄더라도 변함없다고 말할 수 있다. 쿼터 당 초과이윤이 줄더라도 그것은 1에이커에서 생산되는 쿼터 수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언제나 벌충된다. 평균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의 수준으로(따라서 이 경우에는 땅 B에서 3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려면 3파운드 스텔링의 조절적 생산가격보다 높은 생산가격을 가지는 생산물을 내는 그러한 추가적 투자가 실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땅 B에서의 쿼터 당 평균생산가격을 3파운드 스텔링의 일반적 생산가격의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땅 B에서 다음과 같이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1) $3\frac{1}{2}$ 쿼터가 생산되는데 그 생산가격은 전과 같이 6파운드 스텔링이다. 따라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씩 두 번 투자된다. 이 투자는 두 번 다 초과이윤을 이루지만 그 수준은 떨어진다.

2) 1쿼터는 3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의 경우에는 개별적 생산가격이 조절적 생산가격과 같을 것이다.

3) 1쿼터는 4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의 경우에는 개별적 생산가격이 조절적 가격보다 33% 더 높다.

이때에는 $10\frac{7}{10}$ 파운드 스텔링의 투자로 에이커 당 $5\frac{1}{2}$ 쿼터가 13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될 것이다. 투자는 맨 처음 것보다 4배로 늘었으나 생산물은 첫번째 투자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3배도 못될 것이다.

13파운드 스텔링으로 얻은 $5\frac{1}{2}$ 쿼터는 쿼터 당 $2\frac{4}{11}$ 파운드 스텔링의 평균생산가격으로 되며 따라서 3파운드 스텔링의 조절적 생산가격하에서는 쿼터 당 $7\frac{1}{11}$ 파운드 스텔링의 초과분을 낸다. 이 초과분이 지대로 전화될 수 있다. $5\frac{1}{2}$ 쿼터를 3파운드 스텔링의 조절적 가격으로 판다면 $16\frac{1}{2}$ 파운드 스텔링이 된다. 13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을 빼면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초과이윤 또는 지대가 남는데 이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은 땅 B에서 쿼터 당 현재의 평균생산가격 즉 쿼터 당 $2\frac{4}{11}$ 파운드 스텔링으로 계산하

면 이제는 $1\frac{1}{2}$ 쿼터를 대표한다. 화폐지대는 1파운드 스텔링만큼 떨어지고 곡물지대는 약 $1/2$ 쿼터만큼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B에서의 네번째 추가적 투자는 초과이윤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평균이윤보다도 적게 내지만 초과이윤과 지대는 계속 나온다. 만약 위에서 든 3)의 투자 외에 2)의 투자도 조절적 생산가격을 넘는 값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총생산은 6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 얻는 $3\frac{1}{2}$ 쿼터+8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 얻는 2쿼터, 도합 14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 얻는 $5\frac{1}{2}$ 쿼터이다. 쿼터 당 평균생산가격은 $2\frac{6}{11}$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며 이것은 $5/11$ 파운드 스텔링의 초과분을 남길 것이다. 이 $5\frac{1}{2}$ 쿼터가 3파운드 스텔링씩으로 팔리면 $16\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되고 이 중에서 총생산가격 14파운드 스텔링을 빼면 지대로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이 남는다. 이것은 땅 B에서의 현재의 평균생산가격하에서는 $55/56$ 쿼터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전보다 적기는 하지만 지대는 계속 존재한다.

어쨌든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 비교적 좋은 땅들에서는 조절적 생산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생산물을 내는 추가적 투자가 실시되더라도 지대는——적어도 실지로 있을 수 있는 한계내에서는——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줄어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보다 덜 생산적인 이 자본이 총투자 중에서 차지하는 몫에 비례하여 줄어들며 다른 편으로는 이 자본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데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본의 생산물의 평균생산가격은 그래도 조절적인 가격보다 낮을 것이며 따라서 지대로 전화될 수 있는 초과이윤을 그래도 남길 것이다.

그러면 생산성이 줄어드는 네 차례의 투자($2\frac{1}{2}$, $2\frac{1}{2}$, 5 및 5파운드 스텔링)의 결과에 땅 B에서 나오는 1쿼터의 평균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차지농업가는 이 경우에 각각의 쿼터를 그 개별적 생산가격으로 팔며 따라서 총쿼터 수를 3파운드 스텔링의 조절적 가격과 일치하는 그 평균생산가격으로 판다. 그러므로 그는 15파운드 스텔링의 자기 자본에 대하여 여전히 $20\%=3$ 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지대는 없어졌다. 각 쿼터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이렇게 일반적 생산가격과 균등화되는

경우에 초과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본 (파운드 스털링)		이 윤 (파운드 스털링)	생산물 (쿼터)	생산가격		관 매 가 격 (파운드 스털링)	수 익 (파운드 스털링)	지대를 위한 초과분	
				쿼터당 (파운드 스털링)	합 계 (파운드 스털링)			(쿼 터)	(파운드 스털링)
1)	2½	1/2	2	1½	3	3	6	1	3
2)	2½	1/2	1½	2	3	3	4½	1/2	1½
3)	5	1	1½	4	6	3	4½	-1/2	-1½
4)	5	1	1	6	6	3	3	-1	-3
	15	3	6	—	18	—	18	0	0

첫번째 투자 2½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초과이익은 3파운드 스텔링, 두번째 투자 2½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초과이익은 1½파운드 스텔링이며 도합 선대자본의 1/3에 대한 즉 5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초과이익은 4½파운드 스텔링=90%였다.

3)의 투자 5파운드 스텔링의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생산물 1½쿼터를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팔면 1½파운드 스텔링의 마이너스로 된다. 마지막으로 4) 투자 5파운드 스텔링의 경우에도 그 생산물 1쿼터를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팔면 3파운드 스텔링의 마이너스로 된다. 따라서 이 두 투자는 도합 4½파운드 스텔링의 마이너스를 내며 이것은 1)과 2)의 투자에서 나오는 4½파운드 스텔링의 초과이익과 맞먹는다.

초과이익과 마이너스 이익과는 서로 비긴다. 그러므로 지대는 없어진다. 그러나 실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초과이익 또는 지대를 이루었던 잉여가치의 요소들이 이제는 평균이익의 형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차지농업가는 지대에 손해를 끼치면서 15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3파운드 스텔링 즉 20%의 이 평균이익을 얻는다.

B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A의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먼저번 투자

들의 생산물의 개별적 가격과 그것을 넘는 조절적 가격과의 차액이 그 후의 투자들의 생산물의 값과 그보다 낮은 조절적 가격과의 차액으로 하여 더욱더 비껴나가고 결국에 가서는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번 투자들의 생산물이 따로따로 팔리는 동안 초과이윤으로 나타나는 것은 점점 평균생산가격의 일부로 되고 따라서 평균이윤의 형성에 참가하여 드디어 마지막에는 완전히 평균이윤에 의하여 흡수된다.

만약 땅 B에서 15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아니라 겨우 5파운드 스텔링이 투자되고 에이커 당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투자로 A의 $2\frac{1}{2}$ 에이커가 새로 경작되어 마지막 표의 추가적인 $2\frac{1}{2}$ 쿼터가 생산된다고 하면 지출된 추가자본은 모두 해서 $6\frac{1}{4}$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며 이 6쿼터의 생산을 위한 A 및 B에서의 총투자는 15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겨우 $11\frac{1}{4}$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며 이윤을 포함한 그 총생산가격은 $13\frac{1}{2}$ 파운드 스텔링을 이룰 것이다. 이 6쿼터는 여전히 18파운드 스텔링에 팔릴 것이나 자본지출은 $3\frac{3}{4}$ 파운드 스텔링만큼 줄어들며 땅 B에서 나오는 지대는 전과 같이 에이커 당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을 이룰 것이다. 만약 추가적인 $2\frac{1}{2}$ 쿼터 당 생산을 위하여 A보다 더 나쁜 땅 A_1 , A_2 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그리하여 땅 A_1 의 $1\frac{1}{2}$ 쿼터에 대한 쿼터 당 생산가격이 4파운드 스텔링이며 땅 A_2 에서 나오는 마지막 1쿼터의 생산가격이 6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면 사태는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6파운드 스텔링이 쿼터 당 조절적 생산가격으로 될 것이다. 땅 B에서 나오는 이 $3\frac{1}{2}$ 쿼터는 $10\frac{1}{2}$ 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21파운드 스텔링으로 팔리며 이것은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5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를 낼 것이며 곡물로는 $1\frac{1}{2}$ 쿼터가 아니라 $2\frac{1}{2}$ 쿼터의 지대를 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 A에서 나오는 1쿼터는 이제는 3파운드 스텔링= $\frac{1}{2}$ 쿼터의 지대를 낼 것이다.

이 점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적해 둘 것이 또 하나 있다.

총자본 중에서 $1\frac{1}{2}$ 쿼터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는 부분이 총자본 중에서 $1\frac{1}{2}$ 쿼터보다 적은 것을 생산하는 부분에 의하여 비껴지게 되자 땅 B의 1쿼터의 평균가격은 땅 A가 조절하는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의 일반적 생산가격과 균등화되고 그와 일치한다. 이 균등화가 어떻게 곧 이루어지

는가 또는 이를 위해서는 불충분한 생산력을 가진 자본이 얼마나 B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은 먼저번 투자들의 초과생산성이 일정하다고 전제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달려 있다. 즉 다음번 투자들의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생산성 즉 조절적인 가장 나쁜 땅 A에서 하는 크기가 같은 투자의 생산성과 비교하여 불충분한 생산성에 달려 있거나 조절적 가격과 비교한 이 다음번 투자들의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에 달려 있다.

위에서 말한 것에서 무엇보다 먼저 명백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다.

첫째, 추가자본이 똑같은 땅에 투하되고 그 생산성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동안에는 에이커 당 곡물지대와 화폐지대는 선대 자본에 비하면(따라서 초과이윤 또는 지대의 율은) 상대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절대적으로는 는다. 이 경우에 한계로 되는 것은 평균이윤을 가져올 따름인 추가자본 또는 개별적 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과 일치하는 생산물을 내는 추가자본이다. 만약 공급이 늘어서 나쁜 종류의 땅들에서의 생산이 쓸데없게 되지 않는다면 생산가격은 위에서 말한 조건하에서는 변함없다.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 추가자본은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더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과이윤을 낼 수 있다.

둘째, 평균이윤을 낼 따름이며 따라서 초과생산성이 영인 추가자본의 투하는 형성된 초과이윤 따라서 지대의 높이에는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결과에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의 쿼터 당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은 오르며 쿼터 당 초과분은 줄어들지만 줄어든 이 초과분을 내는 쿼터 수는 늘며 그리하여 총결과는 다름없다.

셋째, 개별적 생산가격이 조절적 가격보다 높은 생산물을 내는 추가적 투자, 따라서 초과생산성이 영일 뿐만 아니라 영보다 낮으며 마이너스인 즉 조절적인 땅 A에서의 똑같은 투자의 생산성보다 낮은 추가적 투자는 비교적 좋은 땅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평균가격을 일반적 생산가격에 더욱더 접근시키고 따라서 초과이윤 또는 지대를 이루는 이 두 가격간의

차액을 더욱더 줄인다. 전에는 초과이윤 또는 지대를 이루던 것 중에서 더욱더 많은 부분이 평균이윤을 이루는 데 들어간다. 그렇지만 B의 1에 이커에 투하된 총자본은 초과이윤을 계속 가져온다. 비록 이 초과이윤은 이 불충분한 생산성을 가진 자본량이 늘고 또 이 불충분한 생산성의 정도가 커짐과 함께 줄어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경우에는 자본이 늘고 생산이 느는 조건에서 에이커 당 지대는 절대적으로도 줄어들며 둘째 경우와 같이 투하자본량이 늘어나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좋은 땅 B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조절적 가격과 일치하는 경우 따라서 더 생산적인 먼저번 투자들의 초과이윤이 전부 평균이윤을 이루는 데 들어가는 경우에만 지대는 없어질 수 있다.

에이커 당 지대가 줄어드는 가장 낮은 한계는 이 지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점이다. 그러나 이 한계점은 추가적 투자가 불충분한 생산성을 가지고 생산하게 되자 곧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충분한 생산성을 가진 추가적 투자가 늘어나서 그 영향으로 먼저번 투자들의 보다 높은 생산성이 사라지고 투하된 총자본의 생산성이 땅 A에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과 같게 되며 따라서 땅 B에서의 쿼터 당 개별적 평균가격이 땅 A에서의 쿼터 당 개별적 평균가격과 같게 되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대는 없어질 것이지만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의 조절적 생산가격은 변함없을 것이다. 다만 이 한계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생산가격은 추가자본의 불충분한 생산성의 정도가 심해지는 결과이건 불충분한 생산성의 정도가 같은 이 추가자본 자체의 양이 늘어나는 결과이건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901페이지에서 든 표에서 쿼터당 4파운드 스텔링으로 똑같은 땅에서 $1\frac{1}{2}$ 쿼터가 아니라 $2\frac{1}{2}$ 쿼터가 생산되었다고 하면 전체로서는 22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 7쿼터를 얻게 될 것이다. 1쿼터에는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이 들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 생산가격보다 $1\frac{1}{7}$ 파운드 스텔링만큼 높다. 이 일반적 생산가격은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땅패기들에서의 쿼터 당 개별적 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과 같게 되고 개별적 생산가격을 넘는 일반적 생산가격의

초과분 따라서 초과이윤과 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때까지는 아직 오랫동안 불충분한 생산성을 가진 추가자본, 심지어는 불충분한 생산성의 정도가 더욱더 심해지는 추가자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우에도 비교적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 지대가 없어짐에 따라 그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가격은 비로소 일반적 생산가격과 일치할 것이며 따라서 아직 일반적 생산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위에서 든 예에서 비교적 좋은 땅이지만 좋은 종류의 땅 즉 지대를 가져오는 일련의 땅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땅 B에서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5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으로 $3\frac{1}{2}$ 쿼터가 생산되며 불충분한 생산성을 가진 1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으로 $2\frac{1}{2}$ 쿼터가 생산되어 도합 6쿼터가 생산되며, 따라서 이 수량의 $5/12$ 가 불충분한 생산성을 가지고 투하되는 이 나중의 자본부분들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 점에서 비로소 6쿼터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은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고 따라서 일반적 생산가격과 일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의 조건하에서는 나중의 $2\frac{1}{2}$ 쿼터는 땅 A의 새로운 $2\frac{1}{2}$ 에이커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말한 대로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추가자본이 벌써 일반적 생산가격으로만 생산하는 경우가 한계를 이룰 것이다. 이 한계를 넘으면 똑같은 땅에서 하는 추가적 투자는 몇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차지농업가가 먼저 두 차례의 투자를 하여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면 그는 계속 그것을 지불해야 하며 3파운드 스텔링보다 더 많이 들여 1쿼터를 생산하는 투자는 어느 것이나 이윤을 줄일 것이다. 이것은 불충분한 생산성의 경우에 개별적 평균가격의 균등화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를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땅 A에서의 생산가격이 땅 B에서의 가격을 조절하는 위에서 든 예에서 들어 보자.

먼저 두 차례의 투자에서 $3\frac{1}{2}$ 쿼터의 생산가격은 또한 차지농업가에 대해서는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는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어 그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간의 차액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

이다. 따라서 먼저번 두 차례의 투자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가격의 초과분은 그에게서 세번째와 네번째 투자에서 본 손실을 벌충하는 데 쓰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자 본 (파운드 스털링)	이 율 (파운드 스털링)	생산 가격 (파운드 스털링)	수 익 (파운드 스털링)	1쿼터 당 생 산가격 (파운드 스털링)	판 매 가 격		초 과 이 율 (파운드 스털링)	손 실 (파운드 스털링)
					쿼터당 (파운드 스털링)	합 계 (파운드 스털링)		
2½	1/2	3	2	1½	3	6	3	—
2½	1/2	3	1½	2	3	4½	1½	—
5	1	6	1½	4	3	4½	—	1½
5	1	6	1	6	3	3	—	3
15	3	18	—	—	—	18	4½	4½

세번째 투자에서 나오는 1½쿼터에 차지농업가는 이윤도 포함하여 6파운드 스텔링을 들인다. 그러나 조절적 생산가격이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일 때 그는 4½파운드 스텔링을 받아야만 그 1½쿼터를 팔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이윤을 모두 잃을 뿐 아니라 그 밖에 1/2파운드 스텔링 즉 5파운드 스텔링의 투자자본의 10%를 더 잃을 것이다. 이윤과 자본에서의 그의 손실은 세번째 투자에서는 1½파운드 스텔링, 네번째 투자에서는 3파운드 스텔링 도합 4½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더 생산적인 투자들에서 나오는 지대와 같다. 더 생산적인 이 투자에서의 개별적 생산가격은 바로 그 초과분이 지대로서 탄 사람에게 지불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땅 B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평균가격에 균등화되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만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번째 투자로 1½쿼터를 추가생산할 필요가 있다면 조절적 시장가격은 쿼터 당 4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절적 시장가격이 이와같이 오르는 결과에 땅 B에서는 첫번째 투자와 두번째 투자에 대한 지대가 오를 것이며 땅 A에서는 지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초과이윤이 형태상 지대로 전화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에 토지소유로 해서 소유자는 초과이윤을 차지농업가의 손에서 자기의 손으로 옮겨놓을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된다. 즉 똑같은 토지면적에서 차례로 하는 투자나 결국 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토지면적에 투하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자본의 생산성의 율이 떨어지고 조절적 가격이 변함없는 경우에는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형태상 전화——이것은 토지소유의 결과이다——로 해서 훨씬 일찍이 한계점에 이르며 따라서 사실상 심하건 심하지 않건 인위적인 제한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좁은 한계내에서 필요하게 되어 일반적 생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차액지대가 오르는 원인으로 될 뿐 아니라 지대로서의 차액지대의 존재 자체가 동시에 일반적 생산가격이 더 일찍이 그리고 더 빨리 오르며 그렇게 되어 더 필요하게 된 공급을 보장하는 원인으로 된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땅 A가 두번째 투자의 결과에 4파운드 스텔링보다 적게 들여 추가적 생산물을 낸다면 또는 A보다도 나쁜 새로운 땅이 경쟁에 참가하게 되고 거기에서의 생산가격이 물론 3파운드 스텔링보다 높으나 4파운드 스텔링보다는 낮다면 땅 B에서 하는 추가적 투자는 위에서 든 예에서와 같이 조절적 가격을 4파운드 스텔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차액지대 I은 차액지대 II의 기초이며 동시에 이 두 형태의 차액지대는 서로 한계를 이루며 그 때문에 때로는 똑같은 땅땀기에서 차례로 투자가 실시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 추가되는 땅에서 서로 나란히 투자가 실시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형태의 차액지대는 다른 경우들 예컨대 더 좋은 땅이 차례가 되는 경우에도 서로 제한한다.

제 44 장 가장 나쁜 경지에서도 생기는 차액지대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공급은 다음과 같이 해야만 보장될 수 있다고 하자. 즉 지대를 가져오는 땅들에서 불충분한 생산성을 가진 투자를 차례로 하거나 역시 생산성이 줄지만 땅 A에서 추가적 투자를 하거나 또는 A보다도 질이 나쁜 새로운 땅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이다.

지대를 가져오는 땅을 대표하는 것으로 땅 B를 들어 보자.

땅 B에서 1쿼터(여기에서는 이것을 100만 쿼터라고 하여도 좋다. 마치 각각의 에이커를 100만 에이커라고 하여도 좋듯이)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자면 이제까지 조절적 생산가격이던 쿼터 당 3파운드 스텔링 이상으로 시장가격이 올라야 추가적 투자를 하게 된다. 가장 높은 지대를 내는 땅들인 C와 D 등에서도 또한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초과생산력은 줄어든다. 그러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땅 B의 그 1쿼터가 필요하다고 전제되고 있다. 만약 이 1쿼터를 땅 B에 투하하는 추가자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보다 더 적게 들여 생산할 수 있다면 땅 B에 투하되는 추가자본은 시장가격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란 땅 A에 똑같은 추가자본을 대는 경우거나 땅 A에서의 추가자본은 벌써 1쿼터를 3¼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할 수 있었는데 예컨대 1쿼터를 4파운드 스텔링으로밖에 생산할 수 없는 더 낮은 등급의 땅 A₁에 추가자본을 대는 경우이다.

땅 A는 전과 같이 1쿼터를 3파운드 스텔링으로 생산한다고 하자. 땅 B도 또한 전과 같이 3½쿼터를 모두 해서 6파운드 스텔링의 개별적 생산가격으로 생산한다고 하자. 이제 만약 새로운 1쿼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땅 B에서 4파운드 스텔링을 생산가격(이윤도 포함한)에 더 들일 필요가 있는데 땅 A에서는 그것을 3¼파운드 스텔링을 더 들여 생산할 수 있다

면 그것은 B에서가 아니라 A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 없다. 그러나 그것을 땅 B에서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적 생산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이 총생산에 대한 조절적 가격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땅 B에서는 $4\frac{1}{2}$ 쿼터의 생산물을 $15\frac{3}{4}$ 파운드 스텔링으로 팔 것이다. 이 금액 중에서 첫 $3\frac{1}{2}$ 쿼터의 생산가격은 6파운드 스텔링이며 마지막 1쿼터의 생산가격은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이며 모두 해서 $9\frac{1}{2}$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지대를 위한 초과이익으로 $6\frac{1}{4}$ 파운드 스텔링이 남는데 전에는 이것이 겨우 $4\frac{1}{2}$ 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이 경우에는 땅 A의 1에이커도 $1\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생산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가장 나쁜 땅 A가 아니라 비교적 좋은 땅 B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까지 경작되고 있는 땅과 똑같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A등급의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없고 기경지 A에 두번째로 투자하거나——그러나 생산가격은 오른다——더 나쁜 땅 A₁을 경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차례로 하는 투자가 차액지대 II를 내게 되자 생산가격이 오르는 한계는 더 좋은 땅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액지대 I의 기초인 가장 나쁜 땅도 또한 지대를 낼 수 있다. 그리하여 차액지대만을 고려한다면 모든 경지는 지대를 내게 될 것이다.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표를 얻게 되는데 이 표들에서 생산가격이라는 것은 선대자본 총액 더하기 20%의 이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씩 되는 자본에 대하여 이윤이 $1\frac{1}{2}$ 파운드 스텔링이고 합하면 3파운드 스텔링이 된다.

이것은 1쿼터밖에 가져오지 않는 $3\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투자가 B에서 있기 전의 사태이다. 이 투자가 있는 후의 사태는 다음과 같다.

땅 종 류	에 이 커	생산가격 (파운드 스텔링)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스텔링)	화폐수익 (파운드 스텔링)	곡물 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스텔링)
A	1	3	1	3	3	0	0
B	1	6	$3\frac{1}{2}$	3	$10\frac{1}{2}$	$1\frac{1}{2}$	$4\frac{1}{2}$
C	1	6	$5\frac{1}{2}$	3	$16\frac{1}{2}$	$3\frac{1}{2}$	$10\frac{1}{2}$
D	1	6	$7\frac{1}{2}$	3	$22\frac{1}{2}$	$5\frac{1}{2}$	$16\frac{1}{2}$

합계	4	21	17½	—	52½	10½	31½
----	---	----	-----	---	-----	-----	-----

땅 종류	에이커	생산가격 (파운드 스털링)	생산물 (쿼터)	판매가격 (파운드 스털링)	화폐수익 (파운드 스털링)	곡물지대 (쿼터)	화폐지대 (파운드 스털링)
A	1	3	1	3½	3½	1/7	1/2
B	1	9½	4½	3½	15¼	1 1¼	6¼
C	1	6	5½	3½	19¼	3 1¼	13¼
D	1	6	7½	3½	26¼	5 1¼	20¼
합계	4	24½	18½	—	64¼	11½	40¼

{이 계산도 다 옳은 것은 아니다. B의 차지농업가에게는 이 4½쿼터의 생산에 첫째로 9½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 둘째로 4½파운드 스텔링의 지대, 도합 14파운드 스텔링이 들며 쿼터 당으로는 평균 3⅞파운드 스텔링이 든다. 이렇게 되어 그의 총생산의 이 평균가격이 조절적 시장 가격으로 된다. 그러므로 땅 A에서의 지대는 1/2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9파운드 스텔링으로 되고 땅 B에서의 지대는 여전히 4½파운드 스텔링으로 될 것이다. 즉 3⅞파운드 스텔링씩 4½쿼터이며 14파운드 스텔링이다. 이 금액에서 전체 생산가격 9½파운드 스텔링을 빼어내면 4½파운드 스텔링이 초과이윤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하여 숫자를 고쳐야 할 것이 있지만 이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 즉 전부터 지대를 가져오는 비교적 좋은 땅이 차액지대 II에 의하여 값을 조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이제까지 지대를 가져오지 않던 땅도 포함한 모든 땅이 지대를 가져오는 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F. E. }

곡물의 조절적 생산가격이 오르면 즉 조절적인 땅에서 나는 곡물의 쿼터 당 생산가격이 오르거나 땅 종류의 하나에서의 조절적 투자가 늘면 곡물지대는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모든 종류의 땅의 비옥도가 줄어들고 예컨대 2½파운드 스텔링씩의 새로운 투자로 각각 1쿼터가 아니라 겨우 5/7쿼터를 생산하는 경우와 똑같다. 이 땅들에서 똑같은

투자로 생산하는 곡물의 초과분은 초과이윤 따라서 지대를 표시하는 초과생산물로 전화된다. 만약 이윤율이 다름없다면 차지농업가는 자기의 이윤으로 더 적은 곡물을 살 수 있다.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해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임금이 육체적 최저한으로, 따라서 노동력의 정상적인 가치 이하로 떨어지거나, 노동자들의 그 밖의 소비품으로 공업에서 나오는 것이 비교적 값싸졌거나, 노동일이 연장되고 또는 더 집약적으로 되었으며 따라서 비농업적 생산부문이지만 농업이윤을 조절하는 생산부문들에서의 이윤율이 비록 오르는 않더라도 변함없거나 또는 농업에서 공업에 비하여 더 많은 불변자본과 더 적은 가변자본이 투하되거나 하여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나쁜 땅을 새로 경작하지 않고 이제까지 가장 나쁜 땅이었던 A에서 지대가 생길 수 있는 첫째 방도를 살펴보았다. 즉 이 지대는 이제까지 조절적이던 땅 A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새로운 더 높은 생산가격과의 차액에서 생겼는데 이 새로운 더 높은 생산가격은 불충분한 생산력을 가지고 비교적 좋은 땅에 투하된 마지막 추가자본이 필요한 추가생산물을 내는 그러한 생산가격이다.

만약 1쿼터를 4파운드 스테일링으로밖에 낼 수 없는 땅 A₁에서 추가생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면 땅 A에서 에이커 당 지대는 1파운드 스테일링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땅 A₁이 가장 나쁜 경지로서 A 대신에 들어설 것이며 A는 지대를 내는 땅 종류의 계열에서 가장 낮은 고리로 나타날 것이다. 차액지대 I 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똑같은 땅패기에서 차례로 하는 투자들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지대 II —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이 밖에도 또 이중으로 차액지대가 땅 A에서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값이든 이전의 값에 비하여 떨어진 것이더라도 값이 변함 없는 조건하에서 추가적 투자가 초과생산성을 낳는 경우이다. 이것은 명백히 일정한 한계까지는 바로 가장 나쁜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는 이와 반대로 땅 A에서 차례로 하는 투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두 경우에 다 수요의 상태로 하여 생산이 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차액지대의 전지에서 보면 총생산에 대한(또는 총투자에 대한) 일반적 생산가격을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쿼터 당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라는, 전에 전개한 법칙과 관련하여 특수한 곤란이 생긴다. 사실 더 좋은 땅들과는 달라서 땅 A에서는 새로운 투자들에 대하여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과의 균등화를 제한하는 생산가격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 A에서의 개별적 생산가격이야말로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산가격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1) 차례로 하는 투자들의 생산력이 오르는 경우에는 땅 A의 1에이커에서 5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을 선대하고 따라서 6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 2쿼터가 아니라 3쿼터를 생산할 수 있다.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첫번째 투자는 1쿼터를 내고 두번째 투자는 2쿼터를 낸다. 이 경우에는 6파운드 스텔링의 총생산가격으로 3쿼터를 내며 따라서 1쿼터에는 평균 2파운드 스텔링이 든다. 그리하여 3쿼터를 2파운드 스텔링씩으로 판다면 땅 A는 여전히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고 차액지대 II의 기초만이 달라진다. 3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2파운드 스텔링이 조절적 생산가격으로 된다. 가장 나쁜 땅에서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이제는 평균 1쿼터가 아니라 $1\frac{1}{2}$ 쿼터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투자의 경우에 질이 더 좋은 모든 땅의 공식적 비옥도이다. 이 모든 땅의 이전의 초과생산물의 일부는 이때부터 이 땅들의 필요생산물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이 땅들의 이전의 초과이윤의 일부가 평균이윤을 이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는 반대로 더 좋은 종류의 땅들에서는 일반적 생산가격이 투자의 한계로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균계산으로 절대적 초과분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땅들에서 계산하듯이 계산한다면 첫번째 투자의 1쿼터에는 3파운드 스텔링이 들며 두번째 투자의 2쿼터에는 쿼터 당 $1\frac{1}{2}$ 파운드

스털링밖에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땅 A에서는 1쿼터의 곡물지대 또는 3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지대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3쿼터는 그 전 값으로 9파운드 스텔링에 팔릴 것이다. 만약 두번째 투자와 같은 생산력을 가진 $2\frac{1}{2}$ 파운드 스텔링의 세번째 투자가 있게 된다면 이제는 9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 도합 5쿼터가 생산될 것이다. 만약 땅 A에서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여전히 조절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1쿼터가 $1\frac{1}{2}$ 파운드 스텔링으로 팔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평균가격은 다시 세번째 투자의 생산성이 새로 오르는 결과가 아니라 다만 두번째 투자와 똑같은 추가적 생산성을 가진 새로운 투자가 더 있게 되는 결과에 떨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변함없는 생산성을 가진 투자들을 땅 A에서 차례로 하면 그 투자들이 지대를 가져오는 땅들에서와 같이 지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생산가격을 떨어뜨리며 이와 함께 그 밖의 조건들이 같다면 다른 모든 종류의 땅들에서 차액지대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3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으로 1쿼터를 생산하는 첫번째 투자가 그 자체로서 여전히 조절적인 것이라면 5쿼터는 15파운드 스텔링에 팔리고 땅 A에서 그 다음에 하는 투자들에서 나오는 차액지대는 6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땅 A의 1에이커에 추가자본을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개량이며 추가자본은 처음에 넣은 자본부분도 더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자본의 $\frac{1}{3}$ 이 1쿼터를 생산하고 나머지 $\frac{2}{3}$ 가 4쿼터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에이커 당 9파운드 스텔링은 언제나 5쿼터를 생산할 것이다. 3파운드 스텔링은 1쿼터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이지만 말이다. 이 경우에 지대 즉 초과이윤이 생기는가 안생기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조절적 생산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즉 땅 A에서 개량되었지만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경작을 하게 되는 것은 오직 비교적 좋은 땅들에서도 그러한 경작을 하기 때문인 그러한 경우 즉 농업에서 일반적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인 그러한 경우이다. 그리하여 이제 땅 A의 자연적 비옥도가 문제라면 이 땅에는 3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6 또는 9파운드 스텔링이 지출된다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있다. 이것은 특히

어떤 나라에서 공급을 대부분 보장하는 땅 A의 대부분이 이 새로운 방법으로 경작되는 경우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량이 우선 A면적의 적은 부분에서만 있었다면 더 잘 경작된 이 부분은 초과이윤을 낼 것이며 토지소유자는 재빨리 이것을 전부 또는 일부 지대로 전화시키고 지대로서 굳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수요가 공급과 함께 늘어난다면 땅 A의 전면적이 새로운 방법으로 경작되게 됨에 따라 점차 A의 모든 땅에서 지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초과생산성의 결과는 시장의 조건들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땅 A에서의 생산가격이 땅 A에서 투자를 더하여 얻는 생산물의 평균가격으로 균등화되는 것은 이와같이 투자를 하는 데서 나오는 초과이윤이 지대 형태로 굳어지기 때문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또다시 전에 우리가 더 좋은 땅들에서 추가자본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바와 같이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화 즉 토지소유가 끼어드는 것이 생산가격을 올리며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과 차이나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 토지소유가 끼어드는 것은 땅 A에서 두 가격의 일치를 방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 A에서 평균생산가격이 생산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필요한 생산가격보다 더 높은 생산가격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지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똑같은 결과는 외국에서 곡물을 자유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생기거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차지농업가들은 생산가격이 외부로부터 규정되는 경우에 지대를 내면 곡물을 경작하는 데서는 경쟁할 수 없는 땅을 이제는 다른 데 쓰도록 예컨대 목장으로 쓰도록 돌리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지대를 가져오는 땅만이 즉 쿼터 당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외부로부터 규정되는 생산가격보다 낮은 땅만이 곡물을 경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생산가격은 떨어지지만 평균가격의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높을 것이지만 가장 나쁜 경지 A의 생산가격보다 낮을 것이며 그리하여 새로운 땅 A의 경쟁은 제한된다고 대체로 보아야 한다.

2) 추가자본의 생산력이 줄어드는 경우.

땅 A_1 은 추가적인 1쿼터를 4파운드 스틸링으로밖에 생산할 수 없는

데 땅 A는 $3\frac{3}{4}$ 파운드 스텔링으로 즉 A₁보다 덜 들여 생산한다고, 그러나 땅 A에서의 첫번째 투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1쿼터보다는 $\frac{3}{4}$ 파운드 스텔링만큼 더 들여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땅 A에서 생산되는 두 쿼터의 총가격은 $6\frac{3}{4}$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며 따라서 쿼터 당 평균가격은 $3\frac{3}{8}$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생산가격은 오를 것이나 겨우 $\frac{3}{8}$ 파운드 스텔링만큼 오를 것인데 추가자본이 $3\frac{3}{4}$ 파운드 스텔링으로 1쿼터를 생산하는 새로운 땅에 투하되는 경우에는 생산가격은 $\frac{3}{8}$ 파운드 스텔링만큼 더 올라서 $3\frac{3}{4}$ 파운드 스텔링까지 되며 이에 따라 그 밖의 모든 차액지대가 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땅 A의 쿼터 당 $3\frac{3}{8}$ 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은 똑같은 땅에서 더 많이 투자하였을 때의 평균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어 조절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초과이윤이 없을 것이므로 아무런 지대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번째 투자에 의하여 생산된 이 1쿼터가 $3\frac{3}{4}$ 파운드 스텔링에 팔렸다면 이제는 땅 A가 $\frac{3}{4}$ 파운드 스텔링의 지대를 낼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추가적 투자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전히 3파운드 스텔링으로 1쿼터를 생산하는 땅 A의 모든 에이커에서 그러할 것이다. 땅 A로서 미경지가 아직 존재하는 동안은 값은 일시적으로만 $3\frac{3}{4}$ 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A의 새로운 땅패기의 경쟁으로 하여 $3\frac{3}{4}$ 파운드 스텔링보다 덜 들여 1쿼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A의 모든 땅이 다 이용될 때까지는 생산가격이 3파운드 스텔링에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1에이커의 땅이라든 지대를 가져온다면 토지소유자는 다른 어떤 에이커도 지대를 받지 않고는 차지농업가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산가격이 평균가격으로 균등화되는가 또는 두번째 투자의 개별적 생산가격 $3\frac{3}{4}$ 파운드 스텔링이 조절적인 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또다시 실지 있는 땅 A에서 두번째 투자가 널리 퍼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3\frac{3}{4}$ 파운드 스텔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조절적 가격으로 된다. 즉 쿼터 당 $3\frac{3}{4}$ 파운드 스텔링의 가격으로 얻은 초과이윤을 수요를 충족

시킬 때까지 토지소유자가 지대로 굳어지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차레로 투자하는 경우에 토양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문제에 관하여는 리비히를 보라.⁵⁷ 투자의 초과생산력이 차레로 줄어들면 생산가격이 변함 없는 조건에서 에이커 당 지대는 끊임없이 늘며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조건에서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견지에서는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지출을 하며 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언제나 그 생산물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상이라는 것은 다만 일정한 생산수단으로 표시되는 가치의 보상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았지만 생산의 요인으로서 생산에 들어가는 자연요소들은 그것들이 생산에서 어떠한 역할을 놀든 간에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공짜 자연력으로서 즉 노동의 공짜 자연생산력으로서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 자연생산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온갖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처음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그러한 자연력이 생산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도움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한에서 그 자연력은 값을 결정하는 데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발전과정에서 이 자연력의 도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생산물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면 즉 추가적 생산물을 이 자연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즉 인간의 협력, 인간의 노동의 협조를 받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새로운 추가적 요소가 자본에 들어간다. 따라서 전과 같은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자본을 지출한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같다면 생산이 비싸진다.

(1876년 2월 중순에 시작함이라고 써놓은 노트에서(F. E.))

차액지대와 땅에 투하된 자본의 단순한 이자로서의 지대.

이른바 항구적 개량이라는 것은 자본을 지출해야 할 작업으로 땅의 물리적 속성, 부분적으로는 화학적 속성을 변경시키는 것이며 자본이 땅과 한덩어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항구적 개량은 거의 전부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된다. 즉 일정한 제한된 장소에 있는 토양인 일정한 땅땡기에다 다른 장소에 있으며 흔히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다른 토양에 천연적으로 있는 속성들을 붙여준다는 것이다. 어떤 땅은 천연적으로 평평한데 다른 땅은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땅은 천연적으로 물이 잘 빠지는데 다른 땅은 인공적으로 물을 빼야 한다. 어떤 땅은 천연적으로 두터운 부식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토양에서는 인공적으로 그것을 두텁게 해야 한다. 어떤 점토질토양은 천연적으로 적당한 양의 모래가 섞여 있는데 다른 토양에서는 인공적으로 이 적당한 비율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목초지는 천연적으로 관개되거나 진흙으로 덮여 있는데 다른 목초지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부르조아 경제학의 용어로 말하면 자본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러한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어떤 땅에서는 지대는 이자이지만, 이 우월성을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땅에서는 지대는 이자가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멋들어진 이론이다. (사실 한 경우에 지대가 실지로 이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도 지대를 이자라고 불러야 하며 그릇되게 이자로 묘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는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가 있는 후에 땅이 지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그 땅에 자본이 투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로 해서 땅이 전에 비하여 더 생산적인 투자분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 나라의 모든 땅에 이러한 투자를 해야 하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가 아직 없었던 어느 땅땡기나 다 이제부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투자가 실시된 땅이 내는 지대는(이 경우에는 이 땅이 내는 이자) 차액지대이다. 이것은 이

* 이 권, 775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땅이 천연적으로 이러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땅은 이제부터 오직 인공적으로만 그 우월성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다.

결국에는 이자로 되는 이 지대도 투하된 자본이 상각되면 순수한 차액지대로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자본이 자본으로서 이중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에 의해서만 가치가 규정된다는 것을 배격하는, 리카아도의 모든 반대자들이 땅들의 차이로 차액지대를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여 여기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자연이 가치를 규정한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이 규정을 위치 때문이라고 하든가 더 나아가서는 토지경작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들어진 현상의 하나이다. 어떤 일정한 시간에 만들어지는 생산물에다 똑같은 노동은 똑같은 가치를 붙인다. 그러나 이 생산물의 크기 또는 양 따라서 또 이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부분은 노동량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오직 생산물의 양에 달렸다. 그런데 생산물의 양은 이번에는 일정한 양의 노동의 생산성에 달렸고 이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에 달린 것은 아니다. 이 생산성이 자연에서 나오는가 사회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생산성 자체에 노동이 들며 따라서 자본이 드는 경우에만 이 생산성은 이러저러한 정도로 생산가격을 올리는데 자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 45 장 절대지대

차액지대를 분석하는 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즉 가장 나쁜 땅에서는 지대가 생기지 않으며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별적 생산가격이 시장을 조절하는 생산가격보다 낮으며 그리하여 지대로 전화되는 초과이윤이 생기는 그러한 땅에서만 지대가 생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차액지대로서의 차액지대의 법칙은 이 전제가 옳건 또는 옳지 않건 간에 이에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다.

시장을 조절하는 일반적 생산가격을 P 라고 한다면 가장 나쁜 땅 A 의 생산물에서는 P 는 이 땅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치한다. 즉 가격은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 더하기 평균이윤(=기업이득 + 이자)을 지불한다.

이 경우에 지대는 영이다. 그 다음에 보다 좋은 땅 B 의 개별적 생산가격은 P' 이며 $P > P'$ 이다. 즉 P 는 B 등급 땅의 생산물의 실제적 생산가격보다 크다. 이제 $P - P' = d$ 라고 하자. 따라서 P' 를 넘는 P 의 초과분 d 는 이 B 등급 땅의 차지농업가가 얻는 초과이윤이다. 이 d 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지대로 된다. 세째 등급의 땅 C 에서는 P'' 가 실제적 생산가격이며 $P - P'' = 2d$ 라고 하자. 그리하여 이 $2d$ 는 지대로 전화된다. 네째 등급의 땅 D 에서도 마찬가지로 P''' 가 개별적 생산가격이고 $P - P''' = 3d$ 라고 하면 이 $3d$ 도 지대로 전화된다 등. 이제 A 등급의 땅에서 지대는 영이며 따라서 그 생산물의 가격은 $P + 0$ 라는 전제가 그릇된 것이라고 하자. 그와는 반대로 이 토지에서도 지대 $= r$ 가 생긴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생길 것이다.

첫째로, A 등급 땅의 생산물의 가격은 이 땅에서의 생산가격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고 이 생산가격을 넘는 어떤 초과분을 포함하며 $P + r$ 일 것이

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제로 하면 즉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초과분 r 이 임금에서 떼어낸 것도 아니며 자본에 대한 평균이윤에서 떼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차지농업가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산물이 생산가격 이상으로 팔리며 따라서 그가 초과이윤을 얻으리라는 사실에 의해서만이다. 그가 이 초과분을 지대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지 않아도 좋다면 말이다. 그 경우에 시장에 있는 모든 종류의 땅의 총생산물의 조절적 시장가격은 자본 일반이 모든 생산분야에서 낚는 생산가격 즉 비용 더하기 평균이윤과 같은 가격이 아니라 생산가격 더하기 지대일 것이며 즉 $P+r$ 이지 P 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A등급 땅의 생산물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조절적인 일반적 시장가격, 총생산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가격의 한계를 표시하며 그러한 한에서 이 총생산물의 가격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경우에 토지생산물의 일반적 가격은 본질적으로 수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여 차액지대의 법칙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등급 땅의 생산물의 가격 따라서 또한 일반적 시장가격이 $P+r$ 라고 하면 B, C, D 등 땅의 생산물의 가격도 또한 $P+r$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 B에서는 $P-P'=d$ 이기 때문에 또한 $(P+r)-(P'+r)=d$ 일 것이며, 땅 C에서는 $P-P''=(P+r)-(P''+r)=2d$ 일 것이며, 끝으로 땅 D에서는 $P-P'''=(P+r)-(P''' +r)=3d$ 일 것이다 등.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전과 같을 것이며 같은 법칙에 의하여 규정될 것이다. 물론 지대는 이제는 이 법칙과는 관계가 없는 한 요소를 포함하며 토지생산물의 가격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오를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비옥도가 가장 낮은 땅의 지대가 어떻든지 간에 차액지대의 법칙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차액지대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은 A등급의 땅의 지대를 영이라고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영인가 또는 영보다 큰가 하는 것은 차액지대가 문제로 되는 한 아무래도 좋으며 사실상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액지대의 법칙은 앞으로 하게 될 연구의 결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제 더 나아가서 가장 나쁜 종류의 땅 A의 생산물은 아무런 지대도 낳지 않는다는 전제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토지생산물 예컨대 곡물의 시장가격이 어떤 수준에 이르러 A등급의 땅에 지출한 추가적 선대자본이 보통의 생산가격을 지불하며 따라서 자본에 대하여 보통의 평균이윤을 가져온다면, 이 조건만 보장되면 A등급의 땅에 추가자본이 투하된다. 즉 이 조건만 보장되면 자본가는 새로운 자본을 투하하여 보통의 이윤을 얻으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 자본을 불어나게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경우에도 시장가격은 땅 A의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이 더 추가되자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뚜렷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에는 공급이 불충분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충분하다.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전에는 땅 A의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새로 경작되는 A등급의 땅의 비옥도가 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은 B등급의 땅의 생산물의 생산가격이 시장을 조절하던 때와 같이 낮게는 다시 떨어지지 않게 된다. 땅 A에서의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데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오르는 데 한계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 경작되는 땅이 이때까지 조절적이었던 A등급의 땅보다 더 비옥하지만 겨우 추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할 따름이라면 시장가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낮은 등급의 땅에서 지대가 생기는가 안생기는가 하는 문제의 연구는 이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와 일치한다. 그것은 이 경우에도 A등급의 땅에서는 지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즉 시장가격은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이 가격으로 바로 투하자본 더하기 평균이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으로 설명되며 간단히 말하여 시장가격이 차지농업가의 상품의 생산가격을 그에게 벌충하여 준다는 것으로 설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는 그가 자본가로서 행세해야 하는 한 이러한 조건에서 땅 A를 경작할 수 있다. 즉 땅 A에서 자본을 정상적으로 불리기 위한 조건이 이제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지농업가가 아무

런 지대도 지불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자본의 가치를 불리는 평균적 조건에 따라 땅 A에 자본을 투하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A등급의 이 땅을 곧 차지농업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차지농업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는 보통의 이윤으로 자기의 자본을 불릴 수 있다는 사정은 결코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땅을 차지농업가에게 공짜로 빌려주며 이 사업상 친구에 대하여 매우 너그러운 자선가가 되어 그에게 세를 받지 않는 신용을 줄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는 토지소유의 사상, 토지소유의 폐절을 의미하는데 토지소유의 존재야말로 자본을 투하하는 데, 자본을 땅에서 마음대로 불리는 데 한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 한계는 차지농업가가 단순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더라도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그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가 실제로 토지소유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곡물가격의 수준으로 하여 그는 땅 A를 이용하여 자기의 자본에서 보통의 이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이 한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의 독점, 자본에 대한 한계로서의 토지소유는 이미 차액지대에서 전제로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없이는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화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초과이윤이 차지농업가에게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계로서의 토지소유는 차액지대로서의 지대가 없는 곳 즉 땅 A에서도 계속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자본을 땅에 투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그 경우는 모두 다 토지소유에 대한 법률상의 폐절은 아니더라도 실지상의 폐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폐절은 그야말로 일정한 그리고 그 본성으로 보아 우연적인 사정에서만 있을 수 있다.

첫째로, 토지소유자 자신이 자본가이든가 또는 자본가 자신이 토지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에 그는 시장가격이 이제 A종류의 땅에서 생산가격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즉 자본 더하기 평균이윤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른다면 자기의 땅빼기를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시인가? 그것은 그에 대하여 토지소유가 그의 자본을 투하하

는 데 아무런 한계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땅을 단순히 자연요소로 취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오직 자기 자본을 불릴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며 자본가로서 고려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는 실지 있으나 하나의 예외로서만 있다. 자본주의적 토지경작에서는 기능자본과 토지소유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영하는 일은 없다. 이러한 일이 그야말로 우연적이라는 것은 곧 알 수 있다.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스스로 경영하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A종류의 땅을 경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작하려면 땅 A의 일부를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와 같이 토지소유가 투자에 한계를 이루는 일이 없다고* 한 그 가정이 곧 사라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한, 자본과 땅,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의 분리에서 출발하며 그 다음에는 반대로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그와 대립하는 토지소유가 없는 조건에서 자본이 땅을 경작하는 데서 아무런 지대도 끌어내지 않을 곳에서 어디서나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서 전제하는 것은 엉터리없는 모순이다(훨씬 아래에서 인용한 평산지대에 관한 A. 스미드의 글을 보라).** 토지소유가 이와 같이 없다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토지소유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둘째로, 빌려주는 땅 가운데서는 일정한 수준의 시장가격에서 아무런 지대도 지불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실상 공짜로 빌려주는 개별적인 땅패기가 있을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염두에 있는 것은 빌려준 땅에서 나오는 총지대이지 그 개별적 땅패기에서 나오는 특수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차지농업가에게서는 빌려준 땅 가운데서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부분을 염두에 두는 한 투자의 한계로서의 토지소유는 사라지며 그것도 토지소유자와의 계약 자체에 의하여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토지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지대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다만 그가 이 토지부분을 부속물

* 제1판에서는 견해로 되어 있다. 맑스의 원고에 근거하여 시정함. 편집부.

** 이 권, 89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로 하고 있는 땅에 대하여 지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바로 하나의 결합이 전제로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립적인 새로운 생산장소로서의 더 나쁜 A종류의 땅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결합이 아니라 그 땅이 그보다 좋은 땅에 끼어 있는 때에 낼 수 없는 부분을 이를 따름이라는 그러한 결합이 전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경우는 바로 A종류의 땅폐기에서 자립적으로 경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반적 처지에서는 그 땅폐기를 자립적으로 빌리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다.

새책으로, 차지농업가는 전부터 자기가 빌려온 땅에 추가자본을 투하하여 얻은 추가생산물이 현재의 시장가격으로서는 그에게 생산가격밖에는 가져다주지 않으며, 보통의 이윤을 가져다 줄 따름이며, 추가적 지대를 지불할 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자본을 투하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땅에 투하한 자본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를 지불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시장가격(또한 땅의 비옥도)으로 해서 그가 추가자본으로 더 많은 생산물——종래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가격 밖에도 일정한 초과이윤을 가져오는 더 많은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차지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째서인가? 그것은 차지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의 자본을 땅에 투하하는 데서 토지소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한계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이 초과이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더 나쁜 추가적인 땅을 자립적으로 경작하고 자립적으로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순한 사정은 종래의 땅에 추가자본을 투하하는 것만으로는 더 많이 필요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다들 여지없이 증명한다. 하나의 가정은 다른 가정을 배제한다. 하긴 이제와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장 나쁜 종류의 땅 A에서 생기는 지대는 소유자 자신이 경작하는(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야말로 우연적인 예외로서만 있곤 한다.) 땅과 비교하든,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추가적 투자와

비교하든 그 자체가 하나의 차액지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 여러 종류의 땅의 비옥도의 차이에서 생겨나지 않는 차액지대, 따라서 땅 A는 아무런 지대도 지불하지 않으며 그 생산물이 생산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러한 차액지대일 것이다. 그리고 2) 똑같은 빌린 땅에서의 추가적 투자가 지대를 가져오는가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새로 경작되는 A등급의 땅이 지대를 지불하는가 지불하지 않는가 하는 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마치도 예컨대 한 새로운 자립적인 공업기업소를 세우는 데는 같은 생산부문의 다른 제조업자가 자기 자본의 일부를 자기의 기업에서는 전혀 볼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자 붙는 증권에 투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기 기업을 어느 정도 확장하거나——이러한 확장으로 그는 충분한 이윤을 얻지 못하지만 이자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이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에게는 이것이 부차적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추가적인 새로운 기업소는 평균이윤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며 또 이 평균이윤을 바라고 이 기업소를 세우는 것이다. 물론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추가적 투자와 A종류의 새 땅의 추가적 경작은 서로 한계를 이룬다. 더 불리한 생산조건에서 추가적 자본이 전부터 빌려온 땅에 투하될 수 있는 한계는 경쟁관계에 있는, A등급의 땅에서의 새로운 투자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 한편 이 등급의 땅이 가져올 수 있는 지대는 경쟁관계에 있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추가적 투자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릇된 평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문제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곡물(이것은 우리의 이 연구에서는 토지 생산물 일반을 대표한다)의 시장가격이 A등급의 땅도 일부 경작되게 하며 또 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생산가격 즉 자본의 보상분 더하기 평균이윤을 끌어내는 데 충분하다고 하자. 따라서 A등급의 땅에서 자본을 정상적으로 불리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고 하자.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 경우에 이 자본을 실지로 투하할 수 있는가? 또는 가장 나쁜 땅 A도 지대를 가져올 정도로 시장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안되는가? 즉 토지소유자의 독점은 자본을 투하하는 데 이 독점이 없다면 순자본주의

적 견지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그러한 한계를 이루는가? 문제의 설정 그 자체의 조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컨대 일정한 시장가격에서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고 다만 평균이윤을 가져올 따름인 추가적 투자가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 사정은 결코 다음과 같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즉 역시 평균이윤을 가져오지만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A등급의 땅에 자본이 실지로 투하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추가적 투자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A등급의 땅을 끌어들이 필요성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땅 A가 지대를, 따라서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을 가져오는 한에서만 땅 A에서 추가적 경작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두 경우만이 가능하다. 즉 그 하나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마지막 추가적 투자까지도 초과이윤—— 이것을 차지하는 것이 차지농업가이든 토지소유자이든 이에는 관계없이——을 가져올 만큼 시장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격의 등귀와 마지막 추가적 투자에서 얻는 이 초과이윤은 땅 A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의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경작을 위해서는 생산가격만으로도, 평균이윤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가격은 그 정도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며 또 새 땅이 이 생산가격만을 가져오자 벌써 새 땅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추가적 투자와 역시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땅 A에서의 투자 사이에서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경우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마지막 투자가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지만 시장가격은 땅 A가 경작될 수 있고 지대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높이 오른 경우이다. 이 경우에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추가적 투자가 가능하였던 것은 다만 시장가격에 의하여 땅 A가 지대를 가져오게 될 때까지는 땅 A는 경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땅 A의 경작은 더 낮은 가격수준에서도 시작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지대가 없이 보통의 이윤을 가져오기 위하여 높은 시장가격을 요구하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그 후의 투자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시장가격이 높아도

이 투자는 평균이윤을 가져올 따름이다. 따라서 더 낮은 가격에서는 이 가격은 땅 A를 경작하는 경우에 이 땅 A에서의 생산가격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이 투자가 이 이윤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이 전제 밑에서는 이 투자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땅 A의 지대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이 투자와 비교하면 하나의 차액지대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A의 땅빼기에서 이러한 차액지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땅빼기가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코 경작될 수 없다는 사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즉 토지종류의 차이에 의해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으며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추가자본의 있을 수 있는 투하에 대한 한계를 이루는 이 지대가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두 경우에 다 땅 A의 지대는 곡물가격을 올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일 것이다. 가장 나쁜 땅도 그것을 일반적으로 경작하기 위해서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이야말로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점까지 곡물가격을 올리는 원인일 것이다.

차액지대는 토지소유가 이 경우에 초과이윤을 가로채는——그렇지 않으면 차지농업가가 이 초과이윤을 차지하게 되며 그리고 일정한 사정 밑에서는 그의 차지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실지로 차지한다——데 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토지소유는 이 경우에 상품가격 중에서 토지소유가 관여하지 않고(오히려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생산가격이 경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결과에) 생기며 초과이윤으로 되는 부분이 자본가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즉 자본가의 손에서 토지소유자의 손으로 옮겨가는 원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소유는 이 경우에 가격의 이 구성부분 또는 그 전제로 되는 가격등귀를 조성하는 원인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나쁜 땅 A——이것이 경작되면 생산가격을 가져올 것이지만——가 이 생산가격을 넘는 일정한 초과분인 지대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이 경작될 수 없다면 토지소유는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원인이다. 토지소유 차체가 지대를 창조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둘째 경우에서와 같이 이제 땅 A가 지불하는 지대는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마지막 추가적 투자——생산가격을 지불하는 데 지나지 않는——와 비교

하여 차액지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땅 A가 지대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조절적 시장가격이 높이 오를 때까지는 땅 A를 경작할 수 없다는 사정, 오직 이 사정만이 이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다음과 같은 점에까지 즉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마지막 투자에 대해서는 그 생산가격을 지불할 따름이지만 동시에 땅 A를 위한 지대를 가져오는 그러한 생산가격을 지불하는 점에까지 올리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땅 A가 일반적으로 지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은 이 경우에는 땅 A와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마지막 투자 사이에 차액지대를 남겨 하는 원인이다.

곡물가격이 생산가격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전제에서 A등급의 땅은 아무런 지대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지대라는 이 말을 범주의 본질을 표현하는 뜻에서 이해한다. 차지농업가가 그의 노동자들의 정상적 임금에서든 그 자신의 정상적 평균이윤에서든 간에 그것에서 떼어낸 것인 차지료를 지불한다면 그는 아무런 지대도 즉 그의 상품의 가격, 중에서 임금 및 이윤과 구별되는 자립적인 아무런 구성부분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실지로 볼 수 있는 일이다. 한 나라의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평균임금수준 이하로 떨어지며 따라서 임금에서 떼어낸 것 즉 임금의 일부가 일반적으로 지대로 들어간다면 가장 나쁜 땅의 차지농업가도 이 점에서는 예외로 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나쁜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같은 생산가격에서 이 낮은 임금은 이미 하나의 구성항목을 이루며 따라서 생산가격대로 생산물을 판다 하여도 이 땅의 차지농업가는 지대를 지불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또한 자기의 땅을 노동자에게 즉 임금을 넘는 판매가격에서 그가 얻는 모든 것을 전부 또는 대부분 지대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노동자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차지료는 지불되지만 실제적 지대가 지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지대와 차지료는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이다.

이미 위에서 본 경우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테두리 안에서 지대를

가져오지 않고 실지 땅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조차 우리의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더구나 식민지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식민지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여기에서는 본래의 농업식민지만을 문제로 삼는다——단순히 많은 옥토가 자연상태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땅을 누구도 차지하지 않았고 이 땅이 토지소유에 얽매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다. 바로 이 점으로 해서 땅이 문제로 되는 한 오랜 나라들과 식민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웨이크필드³⁵⁾가 옳게 지적하였고 또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중농주의자인 미라보와 그 밖의 옛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가 법률상으로는 사실상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식민지 이주자들이 그저 간단히 땅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명목상 땅값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땅에 대한 권리명의를 얻기 위한 요금을 국가에 지불하는가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이미 식민지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법률상의 토지소유자라는 사정도 상관이 없다. 사실상 식민지에서는 토지소유가 자본을 투하하는 데서와 또한 자본 없이 노동을 투하하는 데서 제한으로 되지 않는다. 이미 자리를 잡은 식민지 이주자들이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새 땅을 자기들의 자본이나 자기들의 노동을 돌리는 곳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투자의 장소로서의 땅을 제한하고 있는 곳에서 그 토지소유가 토지생산물의 가격과 지대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가를 연구해야 하는 경우에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도 없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소유 형태도 없는——토지소유 일반은 사실상 여기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자유로운 부르주아적 식민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예컨대 리카아도는 지대에 관한 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⁵⁸⁾ 그는 서두에서 토지를 차지하는 것이 토지생산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 한다고 말하고 다음

35) 웨이크필드, 『영국과 미국』, 런던, 1833년. 또한 「자본론」, 제1권, 제25장도 보라.

에 곧 예증으로서 식민지를 들고 있는데, 식민지에서는 땅이 비교적 자연적 상태에 있고 그 이용은 토지소유의 독점으로 해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그는 보고 있다.

법률상의 토지소유만으로는 소유자에게 아무런 지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이 법률상의 토지소유로 해서 소유자는 땅이 본래의 농업에 사용되든 또는 건축 등과 같은 그 밖의 생산적 목적에 사용되든 이에는 관계없이 경제적 관계가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초과분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땅의 이용을 가능하게 할 때까지는 자기의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는 이 활동무대의 절대량을 늘이거나 줄일 수는 없으나 시장에 있는 그 땅의 양을 변동시킬 수는 있다. 따라서 이미 푸리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명한 모든 나라에서 땅의 비교적 많은 부분이 언제나 경작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특징적인 사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로 하여 새로운 땅, 말하자면 지금까지 경작되고 있는 것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을 개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할 때 이 땅에 대한 투자가 차지농업가에게 생산가격 따라서 보통의 이윤을 가져올 만큼 토지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올랐다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과연 이 땅을 공짜로 빌려주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투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토지소유자는 자기에게 차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땅을 빌려준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은 생산가격 이상인 $P+r$ 로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전제에 의하면 토지소유는 땅을 빌려주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으므로 시장가격이 생산가격을 조금이라도 넘기만 하면 가장 나쁜 종류의 새로운 땅도 시장에 내놓게 할 만하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가장 나쁜 땅에서 지대——비옥도의 차이에서 나올 수 없는 지대——가 생긴다는 데서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반드시 보통 의미의 독점가격이며 또는 그 구성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형태로 지대가 들어가는 가격이며 차이가 있다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라는 점일 따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세금이 자체의 일정한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 세금은 전부터 빌려온 땅에서의 추가적 투자에 의하여, 외국의 토지생산물——그것의 자유로운 수입을 전제로 한다——의 경쟁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경쟁에 의하여, 끝으로 소비자의 욕망과 지불능력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로 되는 것은 가장 나쁜 땅에서 지불되는 지대가 그 땅의 생산물의 값——이것은 전체에 의하면 일반적 시장가격을 조절한다——에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즉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의 값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여 이 상품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한 요소로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대가 그 땅의 생산물의 값에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결코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데 들어간다고 주장해 온 것은 다만 상품의 가치와 그 생산가격과의 차이를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품의 생산가격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총가치에 의해서만 조절되며 또 각종 상품의 생산가격의 운동은——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면——오직 그 상품의 가치의 운동에 의해서만 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가치와 결코 같지 않다. 이미 명백히 된 바와 같이 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가치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될 수 있으며 예외로서만 그 가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토지생산물이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팔린다는 사실은 결코 이 생산물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팔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업생산물이 평균하여 그 생산가격대로 팔린다는 사실이 결코 이 생산물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농산물이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그리고 그 가치 이하로 팔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한편 많은 공업생산물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팔리기 때문에 바로 생산가격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상품의 가치에 대한 그 상품의 생산가격의 비율은 전적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불변부분에 대한 그 가변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즉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정한

생산분야의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즉 그 자본 중 물질적 노동조건에 지출되는 불변구성부분에 대한 임금에 지출되는 가변구성부분의 비율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그 비율보다 높다면 그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러한 자본은 사회적 평균자본의 크기가 같은 얼마간의 부분보다도 많은 산 노동을 쓰기 때문에 노동의 착취가 같은 조건에서는 보다 많은 잉여가치 따라서 보다 많은 이윤을 생산한다. 따라서 이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다. 왜냐하면 이 생산가격은 자본의 보상분 더하기 평균이윤과 같으며 평균이윤은 이 상품에서 생산되는 이윤보다 낮기 때문이다. 사회적 평균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는 이 낮은 구성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보다 적다. 일정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높다면 사태는 반대로 된다. 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낮는데 이것은 가장 발전된 산업부분의 생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적 현상이다.

일정한 생산분야의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이것은 우선 이 특수한 생산분야의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평균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달된 생산력의 단계는 가변자본부분에 대하여 불변자본부분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데서, 또는 일정한 자본 중에서 임금에 지출되는 구성부분이 늘 줄어드는 데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정한 생산분야의 자본구성이 보다 높다면 이것은 생산력의 발전이 평균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의 예술작품——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문제의 본성으로 보아 우리의 제목과는 관계가 없다——을 제쳐놓는다면 물론 서로 다른 생산분야는 그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에 서로 다른 비율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산 노동이 한 분야에서는 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한 분야에서는 보다 작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예컨대 농업과는 엄밀히 구별해야 할 채취공업에서는 불변자본의 한 요소로서의 원료는 전혀 없으며 보조자재도 경우에 따라서 큰 역할을 노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광업에서는 불변자본의 다른 부분인 고정자본이 큰 역할을 논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생

산의 진보는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데 따라 재어진다.

본래의 농업의 자본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다면 이것은 명백히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농업이 가공업과 같은 정도로는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다른 모든——그리고 일부는 결정적인——경제적 사정은 제쳐놓고라도 화학, 지질학 및 생리학의 발전과 특히 또 농업에서의 그것들의 적용이 비교적 늦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매우 어린 데 비해, 역학의 발전과 특히 그 적용이 비교적 이르며 또 급속한 데서도 설명될 것이다. 어쨌든 농업 자체의 진보도 언제나 가변자본부분에 비하여 불변자본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데서 표현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또 오래전에 다 알고 있는³⁶⁾ 사실이다. 일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나라 예컨대 영국에서 농업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보다 낮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파고드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는 쓸데없는 일일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전체에서만 농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 즉 일정한 크기의 자본에 의하여 농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이 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며 그 자본의 지휘를 받는 잉여노동(따라서 또한 사용되는 산 노동 일반)은 사회적 평균구성의 크기가 같은 자본의 경우보다 크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확고부동하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하며 그리고 이 가정에서만 생길 수 있는 지대형태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대형태도 무너진다.

그렇지만 농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을 넘는다는 단순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서로 다른 땅 종류의 비옥도의 차이 또는 같은 땅에서 차례로 하는 투자의 생산성의 차이와는 관계가 없는 지대, 간단히 말하여 차액지대와 본질상 구별되는 지대——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지대라고 부를 수 있다——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불충분하다. 수많은

36) 동발⁵⁹ 및 R. 존스⁶⁰를 보라.

공업생산물은 그 가치가 그 생산가격을 넘는다는 속성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생산물이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 또는 지대로 전화될 수 있는 초과이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이다. 생산가격의——그리고 그 전제로 되는 일반적 이윤율의——존재와 개념은 하나하나의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리지 않는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생산가격은 상품가치의 균등화에서 생기는데, 이 균등화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에서 소비된 해당한 자본가치를 보상한 다음에 총잉여가치를 그것이 하나하나의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며 따라서 그 분야의 생산물에 들어 있는 비례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만 평균이윤이 생기며 상품의 생산가격——그 특징적 요소가 평균이윤이다——이 생기는 것이다. 총자본에 의하여 창조되는 잉여가치의 분배에서 경쟁에 의하여 이 균등화를 실현시키고 이 균등화의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자본의 끊임없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에서도 상품의 가치와 그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조절하는 일반적 생산가격과 이와는 다른 개별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에서 생기는 그러한 초과이윤만을 허용하는 것이 자본의 경향이다. 따라서 이 초과이윤은 서로 다른 두 생산분야들 사이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개개 생산분야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생산가격 즉 일반적 이윤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와 일반적 이윤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에 증명한 바와 같이* 이 전제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에서 사회적 총자본의 비례적 분배가 끊임없이 변하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본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데에, 자본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데에 요컨대 서로 다른 이 생산분야들——사회적 총자본의 자립적 부분들을 투하하기 위한 그만한 수의 자유로운 영역으로서의——사이에서의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에 기초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예컨대 상품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높거나 생산된 잉여가치가 평균이윤보다 많은 생산분야에서 가치를 생산

* 이 권, 제1분책, 235~237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가격에 귀착시키며, 이와 함께 이 생산분야의 초과잉여가치를 자본에 의하여 이용되는 모든 분야들 사이에 분배하려는 자본 사이의 경쟁을 방해하는 제한은 아무 것도 없거나 또는 있다 하여도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생겨 자본이 하나의 외부의 힘——자본이 부분적으로밖에는 극복할 수 없거나 또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투자를 제한하여 이것을 다음과 같은 조건 즉 이미 위에서 이야기된 잉여가치의 평균이윤으로의 일반적 균등화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조건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외부의 힘——에 부당친다면 이러한 생산분야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을 넘는 상품가치의 초과분에 의하여 초과이윤이 즉 지대로 전화되며 또 지대로서 이윤에서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초과이윤이 생긴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부의 힘이며 제한으로서 토지소유는 땅에 투하되는 경우의 자본과 대립하며 또는 토지소유자는 자본가와 대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는 관세를 받지 않고서는 즉 지대를 징수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경작되지 않은 땅이나 빌려주지 않았던 땅에서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비록 새로 경작되는 땅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땅 즉 아무런 차액지대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리고 토지소유가 없다면 시장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조건에서 경작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조절적 시장가격은 이 가장 나쁜 땅의 경작자에게 그의 생산가격만을 지불할 그러한 땅이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토지소유가 설정하는 한계로 하여 시장가격은 이 땅에서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 즉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점까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제에 의하면 농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 지대는(이제 곧 연구하게 될 한 경우를 빼놓는다면)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 또는 이 초과분의 일부분을 이룬다. 이 지대가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액 전체와 같은가 또는 이 차액 중의 일정한 한 부분과만 같은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관계와 그리고 새로 경작되는 토지면적에 달려 있다. 지대가 농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그 가치의 초과분과 같지 않은 동안은 이 초과분의 일부는 언제나

나 서로 다른 개별적 자본들 사이에서의 총잉여가치의 일반적 균등화와 비례적 분배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과 같다면 평균이윤을 넘는 잉여가치의 이 모든 부분, 이 모든 초과분은 이 균등화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대지대가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 전체와 같거나 또는 일부분과만 같거나 이와는 관계없이, 농산물은 언제나 독점가격으로 팔릴 것이다. 그것은 농산물의 가격이 그 가치 이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격이 그 가치와 같기 때문이며, 또는 그 가격이 그 가치 이하이지만 그 생산가격 이상이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독점적 처지란 농산물은 공업생산물——그 가치가 일반적 생산가격보다 높은——과는 달라서 생산가격으로 팔리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가치와 생산가격의 한 부분은 사실상 일정한 불변량 즉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인 $\text{생산비} = k$ 이기 때문에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는 그와는 다른 가변부분인 잉여가치에 있으며 이 잉여가치는 생산가격 중에서는 이윤 p 와——즉 이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그리고 그 비례적 부분으로서의 개개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 총잉여가치와——같으나 상품의 가치 중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자본에 의하여 창조된 실제적 잉여가치와 같으며 또 이 하나하나의 자본이 만들어낸 상품가치의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상품의 가치가 생산가격보다 크다면 생산가격은 $k+p$ 이고 가치는 $k+p+d$ 이며 그리하여 $p+d$ 는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와 같다. 따라서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는 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가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이 자본에 돌아가는 잉여가치를 넘는 초과분인 d 와 같다.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은 그 가치에는 이르지 않고도 생산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은 가치의 수준에 이르기 전에 일정한 점까지는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또한 토지소유의 독점으로 해서만 농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이 농산물의 일반적 시장가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계기로 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끝으로 또한 이 경우에는 생산물의 값이 오르는 것이 지대의 원인이 아니라 지대가 생산물의 값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나쁜 땅의 단위면적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가격이 $P+r$ 이라고 하면 전제에 의하여

$P+r$ 가 조절적 시장가격으로 되는 만큼 모든 차액지대는 r 의 해당하는 배수만큼 늘어난다.

비농업적인 사회적 자본의 평균구성이 $85c+15v$ 이고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하면 생산가격은 115일 것이다. 농업자본의 구성은 $75c+25v$ 라고 하면 잉여가치율이 같은 경우에 생산물의 가치와 조절적 시장가격은 125일 것이다. 농산물이 비농업생산물과 평균가격에서 균등하게 된다면(간단히 하기 위하여 이 두 생산부분의 총자본이 같다고 하자) 총잉여가치는 40 즉 200이라는 자본에 대한 20%일 것이다. 생산물은 이 두 경우에 다같이 120으로 팔릴 것이다. 따라서 생산가격으로의 균등화에서는 비농업생산물의 평균시장가격은 그 가치 이상으로 되며 농산물의 평균시장가격은 그 가치 이하로 될 것이다. 농산물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면 균등화의 경우보다는 농산물은 5만큼 높고 공업생산물은 5만큼 낮을 것이다. 시장조건 때문에 농산물은 그 가치대로 팔 수 없고 생산가격을 넘는 모든 초과분을 받을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두 극단의 중간일 것이다. 즉 공업생산물은 얼마간 그 가치보다 높게 팔릴 것이며 농산물은 얼마간 그 생산가격보다 높게 팔릴 것이다.

토지소유는 농산물의 가격을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시장가격이 생산가격 이상으로 올라 얼마나 가치에 접근하는가, 따라서 일정한 평균이윤을 초과하여 농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어느 정도로 지대로 전화되거나 또는 평균이윤으로의 잉여가치의 일반적 균등화에 참가하는가 하는 것은 토지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시장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쨌든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에서 생기는 이 절대지대는 단순히 농업에서 생기는 잉여가치의 일부이며 이 잉여가치가 지대로 전화된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가로챈 것이다. 이것은 차액지대가 일반적인 조절적 생산가격 밑에서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화하는 데서, 토지소유가 초과이윤을 가로채는 데서 생기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대의 이 두 형태는 유일하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 두 형태 밖의 지대는 다음과 같은 원래의 독점가격에서만 나올 수 있다. 즉 상품의 생산가격에 의해서도, 그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고 구매자의 수요와 지불능력에 의하여 규정되는 독점가격인데 이 독

점가격은 시장가격의 실제적 운동을 연구하는 경쟁론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한 나라의 땅이 모두 다 빌려주는 땅으로 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정상적인 관계를 일반적이라고 전제한다면—— 지대가 생기지 않는 땅이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대가 생기지 않는 투자—— 땅에 투하된 자본의 개별적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땅을 빌려주고 있다면 토지소유는 필요한 자본투하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는 작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도 땅과 합쳐진 자본이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되고만다는 것이 차지농업가에게 매우 결정적인 제한으로 되는 한에서는 토지소유는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역시 계속 작용한다. 이 경우에만 모든 지대가 다음과 같은 차액지대로 전화될 것이다. 즉 땅의 질의 차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차액지대가 아니라 일정한 땅에 마지막으로 한 투자에서 생기는 초과이윤과 가장 나쁜 등급의 땅을 빌린 데 대해서 지불하는 지대 사이의 차액에 의하여 규정되는 차액지대로 전화될 것이다. 자본을 투하하는 곳으로서 땅 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공납을 낮게 하는 한에서만 토지소유는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작용한다. 일단 그와 같이 허락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땅에서의 투자의 양적 규모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절대적 제한도 붙일 수 없다. 주택건설 일반에 대해서는 주택을 지어야 할 땅에 대한 제3자의 토지소유가 제한을 붙인다. 그러나 이 땅을 일단 주택건설을 위하여 빌렸다면 그 위에 고층주택을 짓는가 단층주택을 짓는가 하는 것은 차지인의 마음에 달렸다.

농업자본의 평균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더 높다면 절대지대——방금 우리가 연구한 의미에서의——는 즉 차액지대와도 구별되며 원래의 독점가격에서 생기는 지대와도 구별되는 지대는 없어질 것이다. 그 경우에는 농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가격을 넘지 않을 것이며, 농업자본은 비농업자본보다 더 많은 노동을 가동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잉여노동을 실현하지도 않을 것이다. 경작의 진보에 따라 농업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과 같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농업자본의 구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그 불변부분이 가변부분에 비하여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종전의 땅보다도 나쁜 새로운 땅이 지대——이 경우에 지대는 가치와 생산가격을 넘는 시장가격의 초과분에서만 요컨대 생산물의 독점가격에서만 생길 수 있다——를 지불할 만큼 농산물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모순으로 보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야 한다.

우선 이윤율의 형성을 연구할 때에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같더라도 즉 같은 양의 기계와 원료가 같은 양의 노동에 의하여 가동되더라도 불변자본부분들의 가치가 같지 않으므로 자본의 구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원료 또는 기계는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비쌀 수 있다. 같은 양의 노동을 가동시키기 위해서(그런데 이것은 전체에 의하면 같은 양의 원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더 많은 자본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100이라는 자본에서 또한 대지 않으면 안되는 원료비가 한 경우에는 40이고 또 한 경우에는 20이라면 같은 100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같은 양의 노동을 가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같다는 것은 보다 비싼 원료의 값이 보다 싼 원료의 값 수준으로 떨어지자 곧 알려질 것이다. 그 경우에는 적용되는 산 노동과 적용되는 노동조건의 분량과 본성 사이의 기술적 관계에서는 아무런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가치관계는 같게 될 것이다. 한편 전적으로 가치구성 of 견지에서 문제를 본다면 유기적 구성이 낮은 자본도 그 불변부분의 가치가 느는 것만으로 유기적 구성이 높은 자본과 외관상 같은 단계에 오를 수 있다. 산 노동에 비하여 많은 기계와 원료를 쓰기 때문에 $60c+40v$ 인 자본과 많은 산 노동(60%)과 적은 기계(예컨대 10%) 및 노동력에 비하여 적고 값싼 원료(예컨대 30%)를 쓰기 때문에 $40c+60v$ 인 또 하나의 자본이 있다고 하자. 원료와 보조자재의 가치가 30에서 80으로 오르는 것만으로 기술적 구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구성은 균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둘째번 자

본에서는 기계 10에 대하여 원료 80, 노동력 60으로 즉 $90c+60v$ 로 되는데 이것은 백분율로 표시하면 역시 $60c+40v$ 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 구성이 같은 자본들도 서로 다른 가치구성을 가질 수 있으며, 백분율로 표시된 가치구성이 같은 자본들도 유기적 구성이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치구성으로 보아 농업자본이 일반적 수준에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아직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농업자본에서도 일반적 수준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만 농업자본 자체의 생산물——이것은 다시 농업자본의 생산조건의 일부를 이룬다. 이 비싸졌다는 것 또는 비료와 같은 보조자재가 전에는 가까운 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먼 곳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점은 제쳐놓고 농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류, 화학적 보조수단 등이 농업에서 전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며 따라서 불변자본이 기술적으로 즉 가치상으로뿐 아니라 분량상으로도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에 비하여 늘어난다고 하면, 농업에서는(광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노동생산능률이 문제로 될 뿐 아니라 자연적 노동조건에 의존하는 자연적 노동생산능률도 문제로 된다. 농업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늘더라도 자연력이 줄어든 것을 벌충할 따름이든가 벌충하지도 못하며——이 벌충은 언제나 일시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그리하여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은 값싸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바싸지는 것을 막는 데 지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곡물 값이 오르는 경우에 생산물의 절대량은 줄어드는데 상대적 초과생산물이 늘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즉 이것은 주로 기계나 집짐승으로 이루어지며 마멸분만을 보상하면 되는 불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임금으로 지출되며 늘 전적으로 생산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변자본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알맞게 오르기만 하여도 기술적 보조수단의 수준이 더 낮은 조건에서 시장가격이 올라야 하였던 더 나쁜 땅이 경작되며 동시에 지대를 낼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규모의 축산업에서는 집짐승 그 자체로 존재하는 불변자본에 비하여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이 매우 적다는 사정은 농업자본이 비농업적인 사회적 평균자본보다 백분율로 계산하면 더 많은 노동력을 가동시킨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논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지대를 연구하는 경우에 우리는 농업자본 중에서 기본적인 식물성 영양수단 즉 일반적으로 문명한 국민의 주되는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부분——결정적인 것으로서의——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축산업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되는 생활수단 예컨대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투하되는 모든 자본의 평균에서는 값이 아주 다르게 규정된다는 것은 이미 A. 스미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은 그의 공적의 하나이다. 즉 이 경우에 값은 예컨대 인공적인 목초지로서 축산에 이용되지만 일정한 질의 경지로도 쉽게 전화될 수 있는 땅의 생산물 값이 같은 질의 경지에서 내는 것과 같은 지대를 낼 수 있을 만큼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곡물을 심는 땅에서 내는 지대는 집짐승 값을 규정하는데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램제이가 집짐승 값은 이와 같이 토지소유의 경제적 표현인 지대에 의하여 따라서 토지소유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오른다고 지적한 것은 옳은 것이다.⁶⁾

“경작이 늘어나는 탓으로 자연적인 목초지만으로는 축산을 위하여 즉 육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충분하다. 많은 기경지가 집짐승을 기르고 살지게 하는 데 돌려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집짐승 값은 축산에 드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이 땅이 농경지로서 경작된다면 이 땅에서 토지소유자가 얻게 될 지대와 차지농업가가 얻게 될 이윤을 지불할 만큼 높지 않으면 안된다. 전혀 경작되지 않는 진펄에서 기른 집짐승도 같은 시장에서는 무게와 품질에 따라 가장 잘 경작한 땅에서 기른 집짐승과 같은 값으로 팔린다. 이러한 진펄의 소유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집짐승의 값에 따라 자기네 땅의 지대를 올린다”(A. 스미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런던, 1776년, 제1부, 제1장, 185페이지).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곡물지대와는 달리 화폐지대는 비교적 나쁜 땅을 위하여 생긴다.

절대지대는 얼핏 보아 지대가 독점가격에서 생기는 듯이 생각하게 하는 몇몇 현상을 설명하여 준다. 예컨대 A. 스미드가 든 실례를 이야기의 실마리로 삼기 위하여 예컨대 노르웨이의 숲과 같이 사람이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고 존재하며 따라서 조림의 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숲의 소유자를 들어 보자. 예컨대 영국에서 수요가 있어서 나무를 베는 자본가가 그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한다면 또는 그 소유자 자신이 자본가로서 나무를 베다면 목재는 선대자본에 대한 이윤 밖에도 어느 정도의 지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이 자연산물에서 순전히 독점에 의한 덧붙이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 경우에 자본은 거의 노동에 지출되는 가변자본으로써만 이루어지며 따라서 또 크기가 같은 다른 자본보다 더 많은 양의 잉여노동을 내게 한다. 따라서 목재의 가치에는 구성이 더 높은 자본의 생산물에서보다 더 많은 부지불노동 또는 잉여가치의 초과분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에서 평균이윤을 얻을 수 있으며 많은 초과분이 지대형태로 숲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쉽게 나무를 더 많이 베어내고 따라서 이 생산을 빨리 늘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요가 매우 크게 늘어나야만 목재의 가격이 그 가치와 같게 되며 따라서 부지불노동의(그 중에서 평균이윤으로서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이 모두 지대형태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 경작되는 땅의 질은 마지막으로 경작된 가장 나쁜 땅보다 더 나쁘다고 가정하였다. 그 땅이 그보다는 좋다면 그 땅은 차액지대를 낳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지대가 차액지대로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연구한다. 여기에는 두 경우만이 있을 수 있다. 즉 새로 경작되는 땅이 마지막으로 경작된 땅보다 나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질이 같든가 하는 경우이다. 그 땅이 그보다 나쁘다면 이 경우는 이미 우리가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그 질이 같은 경우만이다.

우리가 이미 차액지대를 연구할 때에 해명한 바와 같이 농업이 발전함

에 따라 비교적 나쁜 땅과 마찬가지로 그 질이 같은 땅과 심지어 그보다 더 좋은 땅도 새로 경작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차액지대에서는 때로는 서로 무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하여 우세를 차지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조건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것은 지대 일반에서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차액지대 아닌 지대에서도 한편으로는 땅의 비옥도 일반이, 또 한편으로는 땅의 위치가 조절적 시장가격으로 이윤과 지대를 낮으면서 땅을 경작하게 하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가 늘 제기되기 때문이다). 경작에 드는 비용이 줄지 않았다고 전제하면 다시 말해 기술적 성격을 가진 진보가 경작을 확대케 하는 새로운 계기를 이루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시장가격이 오름으로써 전에는 그 위치 때문에 경쟁에서 빠져 있던 비교적 비옥한 땅이 경작되게 될 수 있다. 또는 시장가격이 오름으로써 비교적 비옥도가 낮은 땅에서는 위치의 장점이 커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이 이 장점에 의하여 벌충된다. 또는 시장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위치는 교통수단의 개선에 의하여 비교적 좋은 땅을 경쟁에 들어서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아메리카의 대초원주들에서 대규모로 보는 바와 같다. 이것은 오랜 문명국들에서도 늘 일어난다. 하긴 웨이크필드가 옳게 지적한 바와 같이⁶² 위치가 결정적 역할을 노는 식민지에서와 같은 정도로는 아니지만 말이다. 따라서 첫째로는 위치와 비옥도와의 모순되는 작용과 둘째로는 위치라는 요인——이 요인은 끊임없이 고르게 되며 고르게 되려는 진보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겪는다——의 가변성은 번갈아 같은 질의 땅, 그보다 좋은 땅, 또는 그보다 나쁜 땅을 전부 경작해 온 땅과 새로운 경쟁에 들어서게 한다.

둘째로, 자연과학과 농학이 발전함에 따라 땅의 비옥도도 달라진다. 그것은 땅의 성분을 곧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동부주들에 있는 전에는 나쁜 땅으로 여겨왔던 모래땅이 얼마 전에는 1등급의 땅으로 되었다(파씨의 책을 보라⁶³). 한편 화학적 구성 때문에 나쁜 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계적, 물리적 장애로 하여 경작되지 않았을 따름인 땅이 이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이 발견되자 곧 좋은 땅으로 전화된다.

새책으로, 모든 오랜 문명국들에서는 오랜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관계로 하여 예컨대 국유지, 공유지 등의 형태로 많은 땅이 순전히 우연적으로 경작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 땅은 점차적으로만 경작되게 된다. 이 땅이 경작되는 차례는 그 질에도, 그 위치에도 달려 있지 않고 순전히 외부적 사정에만 달려 있다. 우리가 영국의 공유지가 어떻게 점차 울치기법⁶⁴에 의하여 사유화되어 경작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를 더듬어 본다면 근대의 한 농화학자 예컨대 리비히가 이 차례의 선정을 지도하여 한 포전은 그 화학적 성질 때문에 경작에 적합하다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제쳐놓았다고 하는 그 환상적인 전제보다 더 가소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이 경우에 결정적 역할을 논 것은 도적질을 하게 한 경우이다. 즉 대지주들이 어느 정도 그럴 듯한 법률적 구실 밑에 이러저러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한 경우이다.

네책으로, 인구와 자본의 증가에서 그때그때에 이르게 된 발전단계가 토지경작의 확대에 일정한——신축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제쳐놓는다면, 그리고 일련의 순조로운 계절과 불순한 계절과 같이 시장가격에 일시적 영향을 미치는 우연의 작용을 제쳐놓는다면 토지경작의 공간적 확장은 한 나라의 자본시장과 기업형편의 전반적 상태에 달려 있다. 자본이 모자라는 시기에 추가자본을 농업에 돌리게 하자면 미경지——여기에서 지대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이와는 관계없이——에서 차지농업가가 평균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자본이 남아돌아가는 시기에는 시장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거나 하면 자본은 토지경작에 흘러들어간다. 전부터 경작되어 온 땅보다 좋은 땅이 사실상 위치라는 계기만으로 또는 종래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이 한계로 하여 차지농업가는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다——만으로 또는 순우연적인 요인만으로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작되는 땅과 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땅만을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땅과 마지막으로 경작되는 땅 사이에는 언제나 개간비라는 차이가 있으며 개간되는가 개간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시장가격과 신용관계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 땅이 실제로 경쟁에 참가하게 되면 시장가격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 후에 새로 나타난 땅은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땅과 같은 지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그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 즉 증명해야 할 것——즉 마지막 땅에서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증명하고 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세운 집에서는 그것을 빌려주더라도 본래의 집세 밖에는 아무런 지대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집은 흔히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서 아직 집세는 생기지 않아도 지대는 생긴다. 일정한 땅땡기에서 차례차례로 하는 투자로 해서 비례적으로 더 많은 생산물이 생기며 따라서 첫번째 투자에서와 똑같은 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경작되는 땅과 같은 질의 포전에서는 같은 비용으로 같은 생산물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질의 포전이 어째서 차례차례로 경작되고 그 모두가 한꺼번에 경작되지 않는가 또는 오히려 모든 포전을 경쟁에 끌어넣지 않기 위하여 어째서 단 하나의 포전도 경작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언제나 지대를 얻으려고 즉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토지소유자의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땅들 상호간의 경쟁은 토지소유자가 그 땅들의 경쟁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전에서 다른 자본과 경쟁할 자본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본래의 농업지대가 단순히 독점가격인 한, 이 독점가격은 극히 적은 것으로밖에 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절대지대도 역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그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이 어떠한지 간에——극히 적은 것으로밖에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절대지대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크기가 같은 자본은 잉여가치율이 같거나 또는 노동의 착취가 같은 조건에서 그 자본의 평균구성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 있다. 공업에서는 서로 다른 양의 이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균등하게 되며 사회적 자본의 한 부분으로서의 하나하나의 자본에 균등하게 나누

어진다. 토지소유는 생산에——농업을 위해서건 원료채취를 위해서건 간에——땅이 필요하게 되는 한 땅에 투하된 자본에서의 이러한 균등화를 방해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이윤율로 균등하게 되는 과정에 참가하게 될 잉여가치의 일정한 부분을 빼앗는다. 그 경우에 지대는 상품의 가치, 더 정확히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루는데 이 부분은 노동자한테서 그것을 짜낸 자본가계급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한테서 그것을 켜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에 농업자본은 크기가 같은 비농업 자본보다 더 많은 노동을 가동시킨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이 어긋남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그 어긋남이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공업에 비한 농업의 상대적 발전에 달려 있다. 이 차이는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자본의 가변부분이 불변부분에 비하여 줄어드는 비율이 농업자본의 경우보다 공업자본의 경우에 더 크지 않다면 말이다.

이 절대지대는 원래의 채취공업에서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것은 이 공업에서는 불변자본의 한 요소인 원료가 전혀 없으며 또한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가장 낮은 자본구성이 무조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대가 전적으로 독점가격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여기에서는 매우 유리한 시장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여기에서는 매우 유리한 시장관계가 이루어져야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리며 또는 지대가 상품의 생산가격을 넘는 잉여가치의 초과분 전제와 같게 될 것이다. 예컨대 어장, 채석장, 야생림 등의 지대의 경우가 그러하다.³⁷⁾

37) 리카아도는 이것을 극히 결합기로 처리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산림지대에 관하여 A. 스미드를 반대하고 있는 부분, 『원리』 제2장의 바로 그 첫머리를 보라(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런던, 1821년, 34~35페이지).

제 46 장 건축부지지대, 광산지대, 땅값

일반적으로 지대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차액지대가 있으며 또 그것은 농업차액지대와 똑같은 법칙에 얽매인다. 자연력이 독점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산업가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것이 폭포이건, 풍부한 광산이건, 물고기가 많은 수역이건, 위치가 좋은 건설부지이건——지구의 한 부분에 대한 자기의 명익에 의하여 이 자연대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능자본에서 이 초과이윤을 지대형태로 빼앗는다. 건설부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A. 스미드는 이 땅의 지대의 기초는 농업에 쓰이지 않는 다른 모든 땅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농업지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을 해명하였다(A. 스미드, 『제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런던, 1776년, 제1부, 제11장, 제2절과 제3절). 이 지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로 이 경우에는 위치가 차액지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며(이것은 예컨대 포도재배의 경우와 대도시에서의 건설부지의 경우에는 매우 심하다). 둘째로 소유자의 완전한 피동성이 뚜렷하다는 것인데 토지소유자의 능동성은 다만(광산의 경우에 특히 그렇지만) 사회발전의 진보——토지소유자는 산업자본가와와는 달라서 이 사회발전의 진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며 또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다——를 착취하는 데 있다는 것이며, 끝으로 많은 경우에, 특히 빈궁을 매우 파렴치하게 착취하는 경우에 독점가격이 우세하며(그것은 포토시³⁸⁾ 광산이 한때 스페인의 풍부한 원천이었는데 이보다 더 빈궁이 집세의 풍부한 원천이었기 때문이다³⁸⁾) 그리고 이 토지소유가 같은 사람의 손에서 산업자본과 결합이 되어 산업자본으로

38) 령, 뉴만.⁶⁶

하여금 임금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거주지로서의 땅에서 실제로 내쫓게 하는 경우에³⁹⁾ 이 토지소유는 큰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사회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공납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토지소유에는 땅의 몸덩어리, 땅의 내장, 공기를,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착취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가 들어 있다. 인구의 증가 따라서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모든 산업건설물, 철도, 상품창고, 공장건물, 도크(dock) 등과 같이 땅과 합쳐진 또는 땅에 뿌리를 박고 땅에 의거하고 있는 고정자본의 성장도 또한 건축지대를 반드시 증가시킨다. 주택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이며 상각금인 한에서의 집세와 단순한 땅에 대한 지대를 혼동하는 것은, 이 경우에 케어리 식의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며, 특히 영국에서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축투기업자가 완전히 서로 다른 인물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문제로 된다. 한편으로는 재생산 또는 채취를 목적으로 한 땅의 이용이며 또 한편으로는 땅은 온갖 생산과 온갖 인간 활동의 조건으로서 필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나 토지소유는 자체의 공납을 요구한다. 건설부지에 대한 수요는 공간 및 지반으로서의 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동시에 존재로 되는 땅의 요소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⁴⁰⁾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들 특히 런던에서와 같이 건설이 공장식으로 진행되는 곳에서는 건축투기의 본래의 주요대상은 주택이 아니라 지대인데, 이에 대한 실례는 「자본론」 제2부, 제12장에, 1857년의 은행위원회 앞에서 한 런던의 대건축투기업자 에드워드 캡스의 증언에 들어 있다.* 그는

39) 크롤링턴의 파업, 앵겔스, 「영국 노동계급의 형편」, 307페이지(이 전집, 조문판, 제2권, 530~531페이지를 보라).

40) “런던 거리들의 포장으로 하여 스코틀랜드의 해안에 있는 암석으로 된 벌거숭이땅의 소유자들은 전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던 들땅에서 지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A. 스미드, 「제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런던, 1776년, 제1부, 제11장, 204~205페이지).

* 이 권, 제Ⅱ권(1), 258~25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증언 제5, 435호에서 이렇게 말한다.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건실한 사업(fair trade)에만 매달려 가지고는 출세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그 밖에도 반드시 투기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도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청부업자는 건물 자체에서는 극히 적은 이윤밖에는 얻지 못하며 주되는 이윤은 지대가 오르는 데서 얻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어떤 땅뺨기를 빌리고 그 대신에 한 해에 30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한다고 하자. 그가 세밀한 건축계획에 따라 거기에서 적당한 주택을 세운다면 그는 그것에서 해마다 400 내지 450파운드 스텔링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의 이윤은 건물에서 나오는 이윤이라기보다——이러한 이윤은 많은 경우에 거의 그의 염두에도 없는 것이다——오히려 한 해에 100 내지 150파운드 스텔링의 지대증가분일 것이다.”

이 경우에 잊어서는 안될 것은, 제일 길어야 99년 동안 빌리는 계약기간이 다 된 다음에는 땅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그리고 그 사이에 대체로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오른 지대와 함께 건축투기업자 또는 그의 권리계승자에게서 다시 원래의 마지막 토지소유자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원래의 광산지대는 농업지대와 꼭 마찬가지로 규정된다.

“일부 광산에서는 그 생산물이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며 그것에 투하된 자본과 보통의 이윤을 보상하기에 겨우 될까말까 하다. 그러한 광산은 기업가에게는 약간의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토지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지대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러한 광산은 그 자신이 기업가로서 자기의 투하자본에서 보통의 이윤을 얻는 토지소유자에 의해서만 이득을 보면서 채굴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많은 탄광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경영되며 다른 방식으로는 경영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그 누구에게도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경영할 것을 허가하지 않으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A. 스미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런던, 1776년), 제3부, 제11장, 207페이지).

독점가격——지대와는 관계없는 생산물 또는 땅 자체의 독점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대가 독점가격에서 흘러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물이 독점가격으로 팔리는가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점가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일반적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격과도, 생산물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격과도 관계없이 오직 구매자의 사려는 의욕과 지불능력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가격을 두고 말한다. 특제품의 포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교적 적은 양으로밖에 생산할 수 없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원은 독점가격을 낳는다. 포도재배업자는 이 독점가격으로 해서 상당한 초과이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데, 생산물의 가치를 넘는 이 독점가격의 초과분은 오직 상류의 포도주 소비자의 재부와 기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경우에 독점가격에서 흘러 나오는 이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화되며 특수한 속성을 가진 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명의로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이 지대형태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독점가격이 지대를 조성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경지에서서의 지대 없는 투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가 설정하는 제한으로 해서 곡물이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뿐 아니라 그 가치 이상으로 팔리다면 지대는 독점가격을 조성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사회의 잉여노동의 일부를 공납으로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은——그것도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오직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즉 자본화된 지대, 따라서 바로 이 자본화된 공납이 땅값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땅이 다른 모든 거래품과 마찬가지로 팔릴 수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가리워진다. 따라서 구매자에게는 지대에 대한 그의 청구권이 공짜로 즉 노동, 모험 및 자본의 기업정신 없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그 등가가 지불된 것으로서 나타난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에게 지대는 그가 땅을 사는 데, 따라서 지대에 대한 청구권을 사는 데 사용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만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흑인을 산 노예소유자에게는 흑인에 대한 그의 소유가 노예제도 그 자체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상품의 매매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그

러나 명의 자체는 판매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명의는 그것이 팔릴 수 있기 전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한 번의 판매나 그리고 수많은 판매와 판매의 끊임없는 반복도 이 명의를 창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창조한 것은 생산관계였다. 생산관계가 그 외피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 이르자 명의와 이 명의에 기초한 모든 거래의 물질적 원천——경제적 및 역사적으로 정당화되었으며 사회적 생활조성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적 원천——은 사라지고 만다. 보다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의 견지에서는 땅에 대한 개인의 사적 소유는 한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의 사적 소유와 꼭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 사회 전체, 한 국민, 심지어는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통털어 본 것도 땅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들은 땅의 점유자, 땅의 이용자에 지나지 않으며 착한 가장으로서 그것을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앞으로 땅값을 연구하는 데서는 우리는 경쟁에서의 모든 변동, 온갖 토지투기를 제쳐놓으며 또한 땅이 생산자의 주요수단을 이루며 따라서 어떠한 값을 내고도 사지 않을 수 없는 소토지소유도 제쳐놓고 본다.

I. 땅값은 지대가 오르지 않아도 오를 수 있다. 즉

1) 그것은 단순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리하여 지대가 보다 비싸게 팔리며 따라서 자본화된 지대인 땅값이 오른다.

2) 땅과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가 오르기 때문이다.

II. 땅값은 지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나 경작지 중에서 가장 나쁜 땅의 지대가 많은 적든 또는 전혀 없든 이에 관계없이 차액지대의 울은 높아진다. 여기에서 울이란 잉여가치 중에서 지대로 전화하는 부분과 토지생산물을 생산하는 선대자본과의 비율을 말한다. 이것은 초과생산물과 총생산물의 비율과는 다르다. 그것은 총생산물에 선대자본이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즉 생산물과 함께 계속 존재하는 고정자본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여기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차액지대를 낳는 땅에서는 더욱더 늘어나는 생산물부분이 여분의 초과생산물로 전화된다는 것이다. 가장 나쁜 땅에서는 토지생산물의 값이 올라야 비로소 지대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땅값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값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늘어날 수 있다. 토지생산물의 값은 전과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는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다.

토지생산물의 값이 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지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독점가격을 제쳐놓는다면) 오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중 그 어느 것에 의해서만이다. 즉 낡은 땅에서의 투자량이 같은 조건에서 보다 좋은 질의 새로운 땅이 경작되기 때문인데, 이 땅은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만 충분할 것이며 그리하여 조절적 시장가격은 전과 다름이 없다. 이 경우에 낡은 땅의 값은 오르지 않으나 새로 경작된 땅의 값은 낡은 땅의 값 이상으로 오른다.

또는 지대가 늘어나는 것은 비옥도가 전과 같으며 시장가격이 전과 같은 조건에서 땅을 이용하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대는 선대자본에 대한 그 비율이 전과 같다 하더라도 예컨대 지대의 양은 자본 자체가 2배로 되었기 때문에 2배로 된다. 값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번째 투자는 첫번째 투자와 마찬가지로 초과이익을 낳으며 이 초과이익은 빌리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대로 전화된다. 이 경우에 지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지대를 낳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땅에서 차례로 하는 서로 다른 투자가 지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생산물이 같지 않으며 따라서 차액지대가 생기는 한에서만이라는 주장은 결국 다음과 같은 주장 즉, 1,000파운드 스텔링씩의 두 자본이 비옥도가 같은 두 땅에 투자된다면 이 두 땅이 다 차액지대를 낳는 보다 좋은 땅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중 한 땅만이 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된다(따라서 총지대의 양, 한 나라의 총지대는 단위토지면적의 값이나 지대율이나 또는 심지어 단위면적당 지대량도 반드시 늘어나지 않더라도 투자량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다. 이 경우에 총지대량은 경작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다. 이것은 심지어 개별적 소유지들에

서 지대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장은 또 하나의 주장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땅에서 나란히 하는 투자는 같은 땅에서 차례로 하는 투자와는 다른 법칙에 종속된다고 하는 주장과 같을 것인데, 사람들은 차액지대를 바로 두 경우의 법칙의 동일성에서 즉 같은 땅에서나 서로 다른 땅에서 하는 투자의 생산성의 증대에서 끌어내고 있다. 이 경우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표시되고 있는 유일한 차이는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땅에서 차례로 하는 투자는 토지소유의 제한에 부닥치지만 같은 땅에서 차례로 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투자형태들이 실천에서 서로 제한하는 대립적 작용도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자본의 차이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 자본의 구성이 전과 같으며 잉여가치율도 전과 같다면 이윤율은 전과 달라지지 않으며 그리하여 자본이 2배로 되는 경우에는 이윤액도 2배로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제로 된 관계에서는 지대율도 전과 다름이 없이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x 라는 지대를 낳는다면 2,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전제로 된 사정에서는 $2x$ 라는 지대를 낳는다. 그러나 토지면적——이것은 전과 다름이 없는데 그것은 전제에 의하면 2배로 된 자본이 같은 땅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에 대하여 계산하면 지대의 양이 늘어나는 탓으로 그 높이도 늘어난다. 같은 한 에이커에서 전에는 2파운드 스텔링의 지대가 생겼는데 이제는 4파운드 스텔링의 지대가 생긴다.⁴¹⁾

41) 이 문제를 연구한 것은 로드베르투스의 공적의 하나인데 지대에 관한 그의 중요한 지서⁶⁷⁾에 대해서는 제4부에서⁶⁸⁾ 이야기될 것이다. 다만 그가 법한 오류는 첫째로 자본에서는 이윤의 증대가 언제나 자본의 증대로 표현되며 그리하여 이윤의 양이 늘어나더라도 비율은 전과 같다고 생각한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구성이 달라지면 노동의 착취는 전과 같더라도 이윤율은 바로 자본의 가변부분에 비한 불변부분의 상대적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가 법한 오류는 둘째로 양적으로 일정한 땅, 예컨대 1에이커에 대한 화폐지대의 이 비율을 고전경제학에서, 지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데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취급한 점이다. 이것도 또한 그릇된 것이다. 고전경제학에서는 현물형태로의 지대를 고찰하는 한에서는 언제나 지대율을 생산물과 연관시켜 취급하며 화폐지대로서의 지대를 고찰

임여가치의 한 부분인 화폐지대——화폐는 가치의 자립적 표현이기 때문에——의 땅에 대한 비율이란 그 자체가 엉터리없고 불합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서로 쟁 수 없는 크기가 재어지기 때문이다. 즉 한편으로는 일정한 사용가치인 몇 평방 피트의 땅과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 더 정확히는 임여가치가 재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즉 일정한 관계에서는 몇 평방 피트의 땅에 대한 소유로 하여 토지소유자는 자본에 의하여 실현된 일정한 양의 부지불노동——감자를 뒤적거리는 돼지처럼 몇 평방 피트를 뒤적거리는 자본(원고에서는 여기에서 괄호 속에 리비히라고 넣었으나 지우고 있다)에 의하여 실현된 일정한 양의 부지불노동——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명백히 이 표현은 지구의 직경에 대한 5파운드 스틸링의 은행권의 비율을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형태——여기에서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드러나며 실지로 요약된다——의 매개는 일상적인 거래에서의 이 관계의 실제적 담당자들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한 그들은 이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성은 이 관계에 대하여 조금도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완전한 모순도 그들의 견지에서는 전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내적 연관과 떨어졌으며 따로 떼어놓고 보면 불합리한 현상형태에서 그들은 물 속의 고기처럼 편안하게 느낀다. 헤겔이 일정한 수학적 공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즉 상식으로 불합리한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으로 합리적인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는 것이 이 경우에는 들어맞는다.⁶⁹

그리하여 토지면적 자체와 관련시켜 볼 때 지대의 양이 늘어난 것은 지대의 율이 늘어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표현된다. 따라서 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없을 때에 난처하게 된다.

그러나 땅값은 토지생산물의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오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이가 더 생김으로써 비교적 좋은 땅의 차액지대 따라서

하는 한에서는 선대자본과 관련시켜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합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땅값이 늘어날 수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노동생산력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토지생산물의 값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은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보상되고도 남을 수 있다. 1쿼터에 60실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자. 같은 1에이커에서 같은 자본으로 1쿼터가 아니라 2쿼터가 생산되고 1쿼터가 40실링으로 떨어진다면 2쿼터는 80실링으로 될 것이며, 그리하여 같은 에이커에서 같은 자본의 생산물의 쿼터 값은 3분의 1만큼 떨어졌지만 이 생산물의 가치는 3분의 1만큼 오를 것이다. 생산물이 그 생산가격 또는 가치 이상으로 팔리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차액지대를 연구하는 데서 명백히 되었다. 그것은 사실상 다음의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그 하나는 나쁜 땅은 경쟁권 밖으로 밀려나가나 좋은 땅의 값이 오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차액지대가 늘어나며 따라서 일반적 개량이 여러 종류의 땅에 고르지 않게 작용한다. 또 하나는 가장 나쁜 땅에서 같은 생산가격(절대지대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같은 가치)이 노동생산능률이 오르는 결과에 늘어난 양의 생산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생산물은 전과 같은 가치를 표시하나 그 구성부분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한편 이 부분의 수는 늘어난 것이다. 같은 자본이 쓰이는 경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언제나 같은 가치가 어떠한 임의의 양의 생산물로도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자본이 석고나 분화석 등 요컨대 그 작용이 오랜 세월에 걸치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조건은 쿼터 당 값은 물론 떨어지지만 쿼터 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비율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Ⅲ. 지대 따라서 땅값이 일반적 또는 개별적 종류의 땅에서 오르는 이러한 서로 다른 조건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경쟁하며 부분적으로는 서로 배제하고 또한 다만 번갈아 작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지대가 올랐다는 것을 결론지을 수 없으며 지대가 올랐다고 해서——지대가 오르면 언제나 땅값은 오르게 된다——곧바로 토지생산물이 늘어났다는 것을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⁴²⁾

토지가 피폐하게 된 실제적인 자연적 원인——그런데 차액지대에 대하여 쓴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농화학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을 검토해 볼 대신에 공간적으로 한정된 땅때기에 마음대로 많은 자본을 투하할 수 없다는 천박한 견해에 사람들은 매달렸다. 예컨대 잡지 「에딘버러 평론」은 소호 광장을 갈아엎어서 전영국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리처드 존스를 반박하였던 것이다.⁷⁹ 만약 이것을 농업의 특수한 단점이라고 본다면 그 정반대의 명제가 진실이다. 농업에서는 땅 자체가 생산수단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가 차례차례로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땅이 기초로, 장소로, 공간적인 작업토대로만 되는 공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또는 매우 협소한 한계 안에서만 그러하다. 하긴 영세한 수공업에 비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생산을 집적시킬 수 있으며 대공업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단계가 일정하다고 하면 언제나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며 고층건축에도 일정한 실제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 생산을 확대하려면 또한 토지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계 등에 투하된 고정자본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개량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멸된다. 새로운 발명들에 의하여 이 경우에도 약간의 개량은 있을 수 있으나 생산력의 발전단계를 일정하다고 하면 기계는 다만 악화될 수 있을 따름이다. 생산력이 빨리 발전하는 경우에는 낡은 기계는 모두 보다 유리한 기계에 의하여 교체되며 따라서 완전히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땅은 옮겨 다루기만 하면 끊임없이 개량된다. 이전의 투자를 잃지 않으면서 차례차례로 투자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땅의 우월성. 이 우월성에는 또한 차례차례로 하는 이 투자의 수익상 차이의 가능성이 들어 있다.

42) 지대가 오르는 조건에서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사실은 따씨를 보라.

제 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사

제1절 서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이론적 표현으로서의 '근대정치경제학의 견지에서 볼 때 지대의 취급에서의 곤란이 사실상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저술가들조차도 그 대다수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대를 새로 설명하려는 온갖 새로운 시도가 증명하여 준다. 이 경우에 새로운 점이란 거의 언제나 이미 오래전에 극복된 견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곤란은 농업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생산물과 이에 상응하는 잉여가치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모든 생산적 자본——그것이 어떠한 분야에 투하되든 간에——에 의하여 창조되는 잉여가치를 분석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곤란은 잉여가치가 여러 자본들 사이에 평균이윤으로 즉 전체 생산분야의 사회적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총잉여가치에서 이 자본들이 그 상대적 크기에 따라 차지하는 비례적 몫으로 균등화되었는데, 이렇게 균등화된 후 즉 분배될 수 있는 모든 잉여가치가 이미 분명히 분배된 후, 땅에 투하된 자본이 지대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여분의 잉여가치부분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다. 토지소유를 반대하는 산업자본의 대변자로서의 근대경제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연구하게끔 자극을 준 실제적 동기——우리는 이 동기를 지대의 역사에 관한 장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를 완전히 제쳐놓고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이론가로서의 그들에게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농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지대라는 현상이 투하분야 자체의 특수한 작용에서, 지가 자체의 속성들에서 생긴다고 보는 것은 가치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영역에서의 과학적 인식의 온갖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지대가 토지생산물의 값에서 '지불된다는 것——차

지농업가가 자기의 생산가격을 얻어낸다면 지대가 현물형태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그렇게 된다——을 간단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통의 생산가격을 넘는 이 값의 초과분을, 따라서 농산물의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다른 생산부문들의 생산성을 넘는 농업의 자연적 생산성의 초과분으로 설명하는 것은 엉터리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반대로 노동이 생산적이면 생산적일수록 같은 양의 노동 따라서 같은 가치를 표시하는 사용가치의 양은 더 크므로 노동생산물은 더 값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대의 분석에서 오직 곤란한 것은 평균이윤을 넘는 농업이윤의 초과분을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잉여가치가 아니라 이 생산분야에 고유한 초과잉여가치를 따라서 또 순생산물이 아니라 다른 생산부문들의 순생산물을 넘는 이 순생산물의 초과분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평균이윤 자체는 완전히 규정된 역사적 생산관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생활과정의 산물, 형성물이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매개하는 매우 복잡한 중간고리들을 전제로 하는 산물이다. 일반적으로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평균이윤 자체가 기준으로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하에서 그러한 바와 같이 생산 일반의 조절자로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잉여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전체 잉여가치를 맨 먼저 차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이 아직 없으며, 따라서 자본이 아직 사회적 노동을 자체에 종속시키지 않았거나 떠엄떠엄박에 종속시키지 않은 사회형태들에서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지대는, 평균이윤을 넘는 즉 사회적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에서 개개 자본이 차지하는 비례적 몫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는 도대체 문제로 될 수 없다. 예컨대 파썬 씨(아래를 보라)가 이미 원시상태에 대해서도 이윤을 넘는 초과분, 잉여가치의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를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소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파썬 씨에 의하면 이 형태는 아마 사회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아직 발전하지 않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분석에 착수했을 따름이었던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지대의 분석에서 아무런 곤란도 느끼지 않았거나 아주 다른 종류의 곤란을 느꼈다. 페티, 캔틸론, 대체로

봉건시대에 가깝던 저술가들은 지대를 잉여가치 일반의 정상적인 형태⁷²로 보고 있는데 이윤은 그들에게서는 아직 똑똑하지 않게 임금과 융합되고 있거나 기껏해야 이 잉여가치 가운데서 자본가가 토지소유자에게서 빼앗아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첫째로 농업인구가 아직 국민의 매우 압도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고, 둘째로 토지소유자가 아직도 토지소유의 독점에 의하여 직접적인 생산자들의 잉여노동을 맨 먼저 차지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따라서 토지소유가 아직도 생산의 기본조건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들에게서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고(즉 직접적 생산자들에게서 착취되고) 또 자본이 맨 먼저 이미 차지한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어떻게 토지소유가 자본으로부터 빼앗아내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설정은 아직 있을 수 없었다.

중농주의자들에게서는 곤란이 이미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다. 사실상 자본을 맨 처음에 체계적으로 해석한 자로서 그들은 잉여가치 일반의 본성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들에게서 이 분석은 그들이 잉여가치의 유일한 존재형태라고 보는 지대의 분석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지대를 낳는 자본 즉 농업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자본이며, 이 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는 농업노동은 잉여가치를 낳는 유일한 노동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견지에서는 아주 정당하게도 유일한 생산적 노동이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아주 정당하게도 규정적인 것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제4부⁷³에서 말하게 될 다른 공적들을 체제놓고도 그들은 우선 중상주의와는 반대로 유통분야에서만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자본에서 생산자본으로 되돌아간 큰 공적이 있는데, 이 중상주의는 그 거친 현실주의로 하여 당시의 진짜 속류경제학을 이루었으며 당시의 실제적 이해관계 앞에서 페티와 그의 후계자들의 과학적 분석의 싹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자본과 잉여가치에 대한 중상주의의 견해뿐이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중금주의가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을 그리고 생산물이 상품으로 따라서 화폐로 전화하는 것을 정당하게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이며 조건이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⁷⁴

중금주의의 계속인 중상주의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벌써 상품가치의 화폐로의 전화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이지만, 그러나 유통분야라는 내용없는(begriffslos) 견지로부터 그리하며 그리하여 이 잉여가치는 잉여화폐로, 무역균형의 순차로 표시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상주의는 당시의 상인들과 공장주들에게 참으로 특징적인 것이며, 또한 그것은 봉건적인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전변되는 데서와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국민들이 공업으로 싸움을 벌이는 데서 이른바 자연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수단에 의하여 달성되는 자본의 급속한 발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상인들과 공장주들이 대표하는 자본주의적 발전시기에 알맞는 것이다. 국민적 자본이 점차적으로 천천히 산업자본으로 전화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전화가 보호관세를 통하여 주로 토지소유자, 중소농민 그리고 수공업자들에게 세금을 들쭉음으로써, 자립적인 직접적 생산자들을 더욱더 수탈함으로써, 자본의 축적과 집적을 폭력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간단히 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조건들을 빨리 만들어냄으로써 시간적으로 촉진되는가 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연적인 국민적 생산력을 자본주의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큰 차이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주의의 국민적 성격이란 그 대변자들의 입에 오른 단순한 문구가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재부와 국가의 자원만을 문제로 한다는 구실 밑에 사실상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치부 일반을 국가의 최종적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낡은 국가에 대하여 부르조아적 사회를 선포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과 자본가계급의 이익의 발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근대사회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우세의 기초로 되었다는 의식도 있었다.

그리고 또 중농주의자들이 사실상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또 자본의 발전은 모두 자연적 기초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노동의 생산능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옳다. 도대체 1노동일에 개개 노력자가 그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생활수단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는 더 많은 농산물을 사람이 생산할 수 없다면, 개개 노력자가 나날이 지출하는 전체 노동력이 그의 개인적 수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생활수단을

겨우 생산할 뿐이라면 도대체 잉여생산물도 잉여가치도 문제로 될 수 없을 것이다. 농업노동의 생산능률이 노력자의 개인적 수요를 초과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의 기초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인데,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것은 더욱더 늘어나는 일부 사회성원을 직접적 생활수단의 생산에서 떼내어 그들을 스튜어트의 말대로 자유로운 일손으로 만들고 그들을 마음대로 다른 분야들에서 착취할 수 있게 한다.⁷⁵

그러나 전체 고전경제학의 마지막 시기, 오히려 그 임종에 즈음하여 잉여노동 따라서 잉여가치 일반의 자연적 조건에 관한 극히 원시적인 표상을 되씹음으로써, 지대가 오래전에 잉여가치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이며 하나의 특수한 부분으로서 전개되었는데도 지대에 대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본질적인 것을 내놓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데르, 파씨⁷⁶ 등과 같은 최근의 경제학 저술가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일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에서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심오하고 옳았던 것을 그것이 평범하고 낡아빠지고 그릇된 것으로 된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속류경제학에 특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류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연구한 문제도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다. 속류경제학은 이 문제를 부르조아 사회의 보다 낮은 발전단계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와 혼동하고 있다. 속류경제학이 자유무역에 관한 중농주의적 명제들을 설새없이 우쭐대면서 되씹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런 것이다. 이 명제들은 이러저러한 국가에 대하여는 실천적으로 아무리 흥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론적 흥미는 오래전에 완전히 사라졌다.

농산물이 유통과정에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그것의 극히 얼마 안되는 부분밖에 들어가지 않으며 심지어는 토지소유자의 소득을 표시하는 생산물부분 중에서도 비교적 얼마 안되는 부분밖에 들어가지 않는 본래의 자연경제에서는 예컨대 고대 로마의 많은 라티퐁디움에서와 칼 대제의 영지들에서는 그리고 정도상 차이는 있으나 전중세기에(뱅크스, 『노동의 역사』를 보라) 대영지의 생산물과 잉여생산물은 결코 농업노동의 생산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공업노동의 생산물도 포함한다. 농업이 토대가 되고 가내수공업 및 제조노동이 그 부업으로 되

고 있다는 것이 고대와 중세의 구라파에서나 오늘날에도 아직 전통적인 조직이 파괴되지 않고 있는 인도의 공동체에서나 이 자연경제가 입각하고 있는 생산양식의 조건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 연계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이 과정은 특히 18세기의 마지막 3분의 1기에 영국에서 대규모적으로 볼 수 있었다. 정도는 어쨌든 반봉건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예컨대 헤텐슈반드는 18세기 말에도 아직 농업과 공업의 이러한 분리를 무모한 사회적 모험으로, 터무니없이 위험한 존재방식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농업과 가장 비슷한 카르타고와 로마에서의 고대농업경영에서까지도 비슷한 점은 실지로 자본주의적인 착취방식에 상응하는 형태보다도 재배원 경영과 더 유사하다.⁴²⁻¹⁾ 형태상 비슷한 점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몸젠 씨⁴³⁾와 같이 이미 어떤 화폐경제에서나 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찾아내지는 않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본질적인 점에서도 완전히 착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상 비슷한 점을 고대에는 대륙 이탈리아에서 보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마 시실리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시실리가 로마에 농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나라로 존재해왔고 따라서 농업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근대적 의미의 차지농업가이다.

지대의 본성에 대한 옳지 않은 이해는 현물형태로서의 지대가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10분의 1세로서, 부분적으로는 오랜 계약에 의하여 영구

42-1) A. 스미드는 자기의 시대에는(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열대 및 아열대 나라들에서의 재배원경영에 대하여 들어맞는다)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자본가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예컨대 카토가 자기의 영지에서 그리하였던 것처럼——지대와 이윤은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분리는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제이며 그리고 또 노예제와 같은 토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과 일반적으로 모순된다.

43) 몸젠 씨는 자기의 「로마사」에서 자본가라는 말을 결코 근대경제학 및 근대 사회의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아메리카에서가 아니라 대륙에서 지나간 상태의 옛 전통으로서 퍼지고 있는 통속적 표상에 따라 쓰고 있다.

화된 진기한 것으로서의 중세의 자연경제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조건들과 완전히 모순되면서 현대까지 전해온 사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대는 농산물의 값에서가 아니라 그 양에서 생기며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생기는 것같이 보인다. 이미 앞에서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잉여가치는 초과생산물에서 표시되나 이와 반대로 생산물량의 단순한 증가라는 의미에서의 초과생산물은 언제나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치의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1860년의 면공업은 1840년에 비해 막대한 잉여가치를——실값은 도리어 떨어졌는데——표시했어야 할 것이다. 몇 해에 걸치는 흉작의 결과로 지대가 대단히 늘 수 있는데 그것은 곡물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하긴 이 초과가치는 비싸진 밀의 절대적으로 줄어든 양으로 표시되지만 말이다. 이와 반대로 몇 해에 걸치는 풍작의 결과로 지대가 줄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곡물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긴 이 줄어든 지대는 값싸진 밀의 보다 많은 양으로 표시되지만 말이다. 그러면 우선 생산물지대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생산물지대는 지나간 생산양식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으며 잔재로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모순된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계약에서 저절로 사라졌다는 것과 영국의 교회가 받아들인 10분의 1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이 간섭할 수 있었던 곳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폭력적으로 폐기되었다⁷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 위에서 존속한 경우에는 그것은 화폐지대의 중세기적으로 가장된 표현 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밖의 아무 것으로도 될 수 없었다. 예컨대 1쿼터의 밀값이 40실링이라고 하자. 이 1쿼터 중에서 일부분은 1쿼터에 들어 있는 임금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임금을 새로 지출할 수 있기 위하여 팔리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일부분은 1쿼터에 부과되는 세금부분을 지불하기 위하여 팔리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에 따라 사회적 분업이 발전한 곳에서는 종자와 비료의 일부분까지도 상품으로서 재생산에 들어가며 따라서 보상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하여 1쿼터의 일부분을 다시 팔지

않으면 안된다. 종자와 비료를 실지로 상품으로서 사들일 필요가 없고 생산물 자체 중에서 현물로 떼내어 그것들이 새로 생산조건으로서 그 생산물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이것은 농업에서 뿐 아니라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많은 생산부문들에서도 볼 수 있다—— 그것들은 계산화폐로 표현되어 계산에 들어가며 생산비의 구성부분으로서 공제된다. 기계와 고정자본 일반의 마멸은 화폐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윤인데 이것은 현실적 화폐 또는 계산화폐로 표현된 이 비용들의 총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 이윤은 총생산물 가운데서 그 값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부분으로 표시된다.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이 지대를 이룬다. 만약 계약상의 생산물지대가 값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 나머지보다 많으면 그것은 지대가 아니라 이윤에서 떼어낸 것일 것이다. 이 가능성 때문에만도 생산물 값에 따라가지 않고 따라서 현실적 지대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윤에서 떼어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을 보상하는 구성부분들에서 떼어낸 것일 수 있는 생산물지대는 남아빠진 형태이다. 사실상 이 생산물지대는 그것이 명목상으로뿐 아니라 실지로도 지대인 한에서는 오직 생산물 값에서 그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바로 문제는 생산물지대에서는 이 가변량이 불변량으로 생각되는 데 있다. 그러나 현물로서의 생산물은, 첫째로 노동자들을 먹여살리는 데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먹을 것을 남겨두는 데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넘는 초과분이 현물지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리운 옛 시기를 회상케 하는 표상이다. 이것은 직포업자가 20만 엘레의 꽃천을 짜는 경우와 꼭 마찬가지다. 이 20만 엘레의 꽃천은 그의 노동자들을 입히고 또 그의 처와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 자신이 입고 남음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팔기 위한 꽃천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꽃천으로 많은 지대를 무는 데 충분하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다! 20만 엘레의 꽃천에서 그 생산가격을 떼어내면 반드시 지대로서 꽃천의 초과분이 남을 것이다. 예컨대 꽃천의 판매가격을 모르고 20만 엘레의 꽃천에서 1만 파운드 스텔링의 생산가격을 떼어내며 꽃천에서 화폐를 떼어내며 사용가치 자체에서 교환가치를 떼어내며 그리고 다음으

로 이 파운드 스텔링을 넘는 이 엘레의 꽃천의 초과분을 규정한다는 것——이것은 사실 어리석은 표상이다. 이것은 적어도 직선과 곡선의 구별이 없어지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그 기초에 놓여 있는 원의 정방형화보다도 더 한심하다. 그런데 파씨 씨의 처방은 바로 이러하다. 머릿속에서나 실제로나 꽃천을 화폐로 전화시키기 전에 꽃천에서 화폐를 떼어내라! 남는 것은 지대인데 그것은 현물적으로(예컨대 칼 아른트⁷⁹를 보라)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 궤변적인 요술로는 알아낼 수 없는 지대이다. 이와같이 현물지대를 다시 내세우는 것은 모두 결국에는 몇 쉘렐의 밑에서 생산가격을 떼어내며 채적에서 화폐액을 빼내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으로 된다.

제2절 노동지대

지대의 가장 단순한 형태인 노동지대의 형태에서——이 형태에서는 직접적 생산자가 일주일의 일부분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자기에게 속하는 생산도구(쟁기, 가축 등)를 가지고 사실상 자기에게 속하는 땅에서 일하고 일주일의 나머지 며칠은 지주의 영지에서 공짜로 일한다——지대를 고찰한다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더욱 아주 명백하며 여기에서는 지대와 잉여가치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윤이 아니라 지대가 부지불잉여노동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 노력자(self-sustaining serf)가 자기에게 필요한 생존수단을 넘는 초과분 즉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라면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는 초과분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그의 노동시간이 그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지주를 위한 부역노동시간으로 나뉘는 비율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라면 이윤으로 나타날 것의 짝인, 가장 필요한 생존수단을 넘는 이 초과분은 전적으로 지대——이 경우에 이것은 직접적인 부지불잉여노동일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난다——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여기에서 부지불잉여노동이라는 것은 생산조건 즉 이 경우에는 땅과 같고 또 땅과 구별되는 한에서는

땅의 부속물로 볼 수 있을 따름인 생산조건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이 경우에 부역군의 생산물이 그의 생존수단외에 그의 노동조건들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모든 생산양식에 변함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양식의 특수한 결과가 아니라 온갖 연속적이고 생산적인 노동 일반의, 온갖 장기적인 생산——이것은 언제나 동시에 재생산이며 따라서 그 자체의 기능조건들의 재생산이다——의 자연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직접적 노력자가 자기 자신의 생존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노동조건의 점유자로 남는 모든 형태에서는 소유관계가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나타나며, 따라서 직접적 생산자는 자유롭지 않는 자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부역노동을 동반하는 농노제로부터 단순한 공납의무로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에 의하면 이 경우에 직접적 생산자는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 자기의 노동의 실현에 필요한 그리고 자기의 생존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대상적인 노동조건들을 점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이와 결부된 농촌가내공업도 자립적으로 운영한다. 이 자립성은 예컨대 인도에서와 같이 이 소농민들이 많건 적건 자연발생적인 생산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명목상 지주에 대한 자립성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명목상 토지소유자를 위한 잉여노동은 소농민들에게서 경제외적 강제——이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든 간에——에 의해서만 짜낼 수 있다.⁴⁴⁾ 이 형태가 노예경제나 재배원경영과 다른 점은 노예는 다른 사람의 생산조건을 가지고 일하고 자립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신적인 종속관계, 정도는 어쨌든 간에 인신적인 부자유 그리고 땅의 부속물로 땅에 얽매어 있는 것이 필요하며 본래의 의미에서의 예속이 필요하다. 만약 토지소유자인 동시에 주권자로서 직접적 생산자들과 대립하는 것이 사적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처럼 국가라면 지대와 조세는 일치한다. 또는 더 정확

44) 정복자들이 나라를 정복한 후에 언제나 당면한 과업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도 점유하는 것이었다. 령계를 참조하며⁴⁵⁾ 또한 피저를 보라.”

히 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지대형태와 구별되는 조세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종속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국가에 대한 모든 백성의 처지에 공통적인 것보다 더 가혹한 형태를 띠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는 국가가 최고의 지주이다. 여기서는 주권이 국민적 규모에서 집적된 토지소유이다. 그러나 그 대신 이 경우에는 사적 토지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긴 땅의 사적 점유 및 공동점유와 그 이용은 존재하지만 말이다.

직접적 생산자에게서 부지불잉여노동을 빨아내는 특수한 경제적 형태가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이 관계는 직접생산 자체에서 생겨나서 이번에는 그것이 생산에 규정적인 반작용을 한다. 이에 기초하여 생산관계 자체에서 생기는 경제적 공동체(Gemeinwesen)의 전체구조와 이와 동시에 그 특수한 정치적 구조가 나온다. 생산조건의 소유자와 직접적 생산자와의 직접적 관계——이 관계의 그때그때의 형태는 언제나 자연적으로 노동방식 따라서 그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한다——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전체 사회구조 따라서 주권관계 및 종속관계의 정치적 형태, 간단히 말해서 그때그때의 특수한 국가형태의 가장 깊은 비밀, 숨은 기초를 발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경제적 기초——주되는 조건들로 보아 같은——가 끝없이 서로 다른 경험적 사정, 자연조건, 인종관계,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역사적 영향 등으로 해서 무한한 변화와 차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변화와 차이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이 사정들을 분석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시초적인 지대형태인 노동지대로 말한다면 지대가 이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시초적 형태이며 또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다른 사람의 부지불노동과 일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일치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명백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직접적 생산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은 아직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주를 위한 그의 노동과 떨어져 있고, 이 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강제노동이라는 포악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대를 가져오는 땅의 속성도 여기에서

는 명백히 드러난 비밀로 되고 있다. 왜냐하면 땅에 얽매인 인간의 노동력과 소유관계 즉 노동력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필수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그 노동력을 긴장시키고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소유관계가 다같이 지대를 가져오는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지대는 직접 토지소유자가 노동력의 이러한 초과지출을 차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 생산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이상 아무런 지대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와 지대가 같은 것일 뿐 아니라 잉여가치가 아직 명백하게 잉여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경우에는 지대의 자연조건이나 한계도 명백한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잉여노동의 자연적 조건과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직접적 생산자가 자신의 필수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노동을 하고도 여분의 노동을 할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는 1)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며 2) 그의 노동의 자연조건 즉 무엇보다도 먼저 경작되는 땅의 자연조건이 충분히 유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노동의 자연적 생산성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가능성이 지대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낳는 것은 오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는 강제이다. 그러나 가능성 자체는 주관적 및 객관적 자연조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도 신비로운 것은 전혀 없다. 만약 노동력이 적고 노동의 자연조건이 빈약하다면 잉여노동도 적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한편 생산자들의 수요도 적고 다른 한편 잉여노동의 착취자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마지막으로 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착취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이 잉여노동이 실현되는 잉여생산물도 작다.

끝으로 노동지대의 경우에 자명한 것이지만 다른 조건들이 같다고 하면 직접적 생산자가 어느 정도로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며 부유해지며 필요한 생존수단을 넘는 일정한 초과분을 생산할 수 있는가, 또는 자본주의적 표현방식을 앞당겨 쓴다면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윤을 즉 그 자신이 생산하는 그의 임금을 넘는 초과분을 생산할 수 있는가, 또 있다면 어느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잉여노동 또는 부역노동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이 경우에 지대는 정상적이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말하자면 합법적인 잉여노동형태이다. 그것은 결

코 이윤을 넘는 초과분 즉 이 경우에는 임금을 넘는 어떠한 다른 초과분 이상의 초과분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윤의 크기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지대의 크기에 즉 소유자를 위하여 강제로 하는 잉여노동의 크기에 달려 있다.

일부 역사가들은 직접적 생산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이며 사실상 그의 전체 잉여노동은 법률상 토지소유에게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대체 부역의무를 지고 있는 자 또는 농노 편에서 재산과 또 상대적으로 말해서 재부가 자립적으로 느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생산관계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양식이 입각하고 있는 원시적이며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전통이 결정적 역할을 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나 그러하지만 여기에서도 현존하는 것을 법률로서 신성화하며 관습과 전통이 가져온 현존하는 것의 제한을 법률적 제한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사회성원 중에서 지배하는 부분의 이익으로 된다는 것도 명백하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으면 현존하는 상태의 토대, 그 상태의 기초에 놓여 있는 관계의 끊임없는 재생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율이 서고 질서가 잡힌 형태를 띠게 되면 그러한 일이 저절로 생긴다. 그리고 이 규율과 질서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확립되며 단순한 우연이나 자의와는 관계가 없어야 할 온갖 생산양식의 없어서는 안될 계기이다. 이 규율과 질서는 바로 온갖 생산양식이 사회적으로 공고화되고 따라서 그것이 단순한 우연과 단순한 자의로부터 상대적으로 해방되는 형태이다. 생산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의 정제상태에서는 온갖 생산양식은 그 자체의 재생산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이 형태에 이른다. 이 형태는 일정한 기간 계속되면 관습과 전통으로서 공고히 되며 마침내 글로 밝힌 법률로 신성화된다. 그런데 이 잉여노동의 형태인 부역노동은 노동의 모든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데, 노동방식 자체가 거치른 데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역노동은 자연히 발전된 생산양식에서보다는,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보다는 직접적 생산자의 총노동에서 훨씬 적은 몫을 떼낼 것이다. 예컨대 지주를 위한 부역노동이 처음에는 1주에 2일이었다고 가정하자. 1주에 2일이라는 이 부역노동은 그렇게 되어 확정되며 관습법이나

성문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제된 불변량이다. 그러나 직접적 생산자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1주의 나머지 날들의 생산성은 그의 경험에 늘어남과 함께 늘지 않을 수 없는 가변량이다. 이것은 그에게서 생긴 새로운 수요, 그의 생산물을 위한 시장의 확대, 그의 노동력의 이 부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더 보장된다는 것이 그를 고무하여 노동력을 더욱 긴장케 하리라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노동력이 결코 농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농촌가내공업에도 쓰인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다소간 유리한 사정들, 타고난 인종적 성격 등에 의존하는 일정한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제3절 생산물지대

노동지대가 생산물지대로 전화되더라도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대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형태들에서 지대의 본질은 지대가 잉여가치 또는 잉여노동의 유일하게 지배적이며 정상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도 표현된다. 즉 지대는 자기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조건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적 생산자가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노동조건인 땅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일한 잉여노동 또는 유일한 잉여생산물이며, 그리고 다른 한편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직접적 생산자와 대립해서 자립적인 것으로 되며 토지소유자에게서 인격화된 노동조건으로서 직접적 생산자와 대립하는 것은 땅뿐이다. 생산물지대가 얼마나 지배적이며 가장 발전된 지대형태이든 간에 그것은 어쨌든 언제나 앞선 적전 앞선 형태 즉 직접 노동으로 따라서 부역노동으로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지대의 잔재를 동반한다. 지주가 사사로운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 점은 마찬가지다. 생산물지대는 직접적 생산자의 보다 높은 문화수준, 따라서 그의 노동과 사회일반의 보다 높은 발전단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앞선 형태와 구별되는 점은 잉여노동이 더 이상 현물적 모습으로 수행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또 더 이상 지주나 그의 대리인의 직접적인 감독과 강제 하에서 수행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직접적 생산자는 직접적 강제 대신에 여러 관계의 힘에 의하여, 채찍 대신에 법적, 규정에 의하여 내몰리며 자기자신의 책임하에 잉여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충족시켜야 할 직접적 생산자의 수요를 넘어서 하는 생산이라는 의미에서의 잉여생산 그리고 전과 같이 직접적 생산자의 농토와 나란히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영주의 직영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접적 생산자 자신에게 속하는 농토에서, 직접적 생산자 자신이 이용하는 땅에서 하는 생산이라는 의미에서의 잉여생산은 이 경우에는 이미 자명한 원칙으로 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직접적 생산자는 자기의 전체 노동시간을 많건 적건 마음대로 처리한다. 하긴 이 노동시간의 일부——처음에는 그것의 초과분의 거의 전부——는 여전히 공짜로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되지만 말이다. 다만 다른 것은 토지소유자가 이 노동시간을 이제는 직접 그것 자체의 현물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는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받는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를 위한 노동으로 해서 생기는 중단, 부담으로 되며 부역노동의 규칙에 따라서는 크건 작건 장애로 되는 중단(『맑스·엥겔스 전집』, 제23권, 제1부, 제8장, 제2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주와 보야르」를 보라)은 생산물지대가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없어지거나 생산물지대와 함께 일정한 부역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해 동안에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의 중단으로 된다. 생산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과 토지소유자를 위한 노동은 이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순수한 형태의 이 생산물지대는 보다 발전한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에서도 그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자연경제를 전제로 한다. 즉 경영조직이 전적으로 또는 압도적으로 경영 자체에서 마련되고 그 총생산물 중에서 직접 보상되며 재생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산물지대는 또한 농촌가내공업과 농업과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지대를 이루는 잉여생산물은 농업과 공업을 겸해서 하는 이 가족노동의 생산물인데, 중세기에 흔히 그러하였던 것처럼 생산물지대에는 많건 적건 공업생산물이 들어갈 수 있거나 생산물지대가 본래의 의미에서의 토지생산물 형태로만 제공될 수도 있다.

이 지대형태에서는 잉여노동을 나타내는 생산물지대가 반드시 농촌가족의 초과노동의 전부를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생산자에게 노동지대에 비하면 꼭 충족시켜야 할 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의 노동생산물과 꼭 마찬가지로, 그 자신에게 속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초과노동을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한 보다 큰 여유가 주어져 있다. 이 지대형태와 함께 또한 개개의 직접적 생산자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보다 큰 차이가 생길 것이다. 적어도 이 가능성이 나타나며 그리고 이 직접적 생산자가 또 다른 사람의 노동을 직접 착취하는 수단을 얻을 가능성까지도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형태의 생산물지대를 취급하는 만큼 이것은 여기서 우리와 관계가 없다. 또 우리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지대가 결합되고 혼합되고 융합될 수 있는 끝없이 서로 다른 배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생산물과 생산 자체의 일정한 성격과 결부된 생산물지대의 형태로 해서, 이 지대에 없어서는 안될 농업과 가내공업과의 결합으로 해서, 농민가족이 이것으로 유지하는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으로 해서, 농민가족이 시장에 매어 있지 않으며 그들의 외부에 있는 사회부분의 생산운동과 역사운동에 매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경제 일반의 성격으로 해서, 이 형태는 예컨대 아시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회상태의 기초로 되기에 아주 알맞는 것이다. 이 형태에서는 노동지대라고 하는 이전의 형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대는 잉여가치의, 따라서 잉여노동의 즉 직접적 생산자가 공짜로, 따라서 사실상 강제로——이 강제는 이제는 낡은 가혹한 형태로 그와 맞서는 것은 아니지만——그의 가장 본질적인 노동조건인 땅의 소유자를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체 초과노동의 정상적인 형태이다. 이윤——앞질러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직접적 생산자의 필요노동을 넘는 노동의 초과분 가운데서 그 자신이 차지하는 부분을 이윤이라고 부른다면——은 생산물지대에 그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생산물지대의 배후에서 자라며 그것의 자연적 한계는 생산물지대의 크기에 있다. 생산물지대는 노동조건, 생산수단 자체의 재생산을 크게 위협하고 생산의 확대를 크건 작건 불가능하게 하며 또한 직접적 생산자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수단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예컨대 인도에서의 영국인들처럼 정복자인 상업국민이 이 형태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제4절 화폐지대

여기에서 우리가 화폐지대——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한, 그리고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에 지나지 않는 산업지대나 상업지대와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지대 자체가 노동지대의 전화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생산물지대의 단순한 형태전화로부터 생기는 지대이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 생산자는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물의 값을 자기의 토지 소유자(이것이 국가이건 사사로운 개인이건 관계없이)에게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현물형태의 생산물의 초과분만으로는 이제는 안되며 이 초과분은 현물형태에서 화폐형태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직접적 생산자는 여전히 자기의 생존수단의 적어도 가장 많은 부분을 스스로 계속 생산하지만 그의 생산물의 일부분은 이제는 상품으로 전화되고 상품으로서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전체 생산양식의 성격은 많건 적건 달라진다. 전체 생산양식이 사회적 연관에 달려 있지 않고 그와 떨어져 있다는 성격을 잃는다. 이제는 많건 적건 화폐지출을 포함하는 생산비의 관계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어쨌든 총생산물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다시 재생산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생존수단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넘는, 화폐로 전화되어야 할 부분의 초과분이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종류의 지대의 기초는 분해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생산물지대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직접적 생산자는 여전히 상속에 의한 또는 일반적으로 전통에 의한 땅의 점유자이며 그는 가장 중요한 이 생산조건의 소유자로서의 지주에게 여분의 강제노동을 즉 등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부지불노동을 화폐로 전화된 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땅과는 다른 노동조건들인 농기구와 그 밖의 동산의 소유는 이전의 형태들에서도 처음에는 사실 상으로 그 다음에는 법률상으로도 직접적 생산자의 소유로 전화되는데

화폐지대의 형태에서는 이것이 더욱 전제로 된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그 다음에는 크건 작건 국민적 규모로 진행되는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화는 벌써 상업, 도시공업, 일반적으로 상품생산 따라서 화폐유통의 보다 현저한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또한 생산물의 시장가격을 그리고 생산물이 정도는 어쨌든 그 가치에 가깝게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전의 형태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 구라파의 동부에서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 전화과정을 볼 수 있다.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이 없이는 이 전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운가 하는 것은, 로마제정하에서 여러 가지로 이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실패한 사실과, 그리고 이 지대 가운데서 적어도 나라의 세금으로 받아 들인 부분만이라도 화폐지대로 전화시키려고 하였으나 현물지대로 되돌아간 사실들이 증명하여 준다. 바로 이와같이 이행이 어렵다는 것은 예컨대 혁명 전의 프랑스에서 화폐지대가 이전의 형태들의 잔재와 뒤섞여 하나로 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생산물지대의 전화된 형태로서의 그리고 그것과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화폐지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종류의 지대 즉 잉여가치——생산조건의 소유자에게 바쳐야 할 부지불잉여노동——의 정상적인 형태로서의 지대의 마지막 형태인 동시에 그러한 지대가 소멸하는 형태이다. 순수한 형태에서 이 지대는 노동지대 및 생산물지대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넘는 어떤 초과분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윤을 개념상으로 흡수한다. 이윤이 사실상 초과노동의 한 특수부분으로서 지대와 나란히 생기는 한에서는 화폐지대는 아직도 그 이전의 형태들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이 이윤의 싹을 정상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이윤의 싹은 자신의 초과노동이든 다른 사람의 초과노동이든 간에 화폐지대로 표시되는 잉여노동이 수행된 후에 노동을 착취할 가능성이 나타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다. 만약 이윤이 실제로 이 지대와 나란히 생긴다면 이윤이 지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대가 이윤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화폐지대는 동시에 지금까지 고찰한, 잉여가치 및 잉여노동과 명백히 일치하는 지대 즉 잉여가치의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형태로서의 지대가 소멸되는 형태이다.

화폐지대는 더한층 발전하면——모든 중간형태 예컨대 소농민적 차지인의 형태를 제쳐놓으면——땅을 자유로운 농민적 소유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형태를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지불하는 지대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화폐지대에서는 땅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경작하는 예측된 직접적 생산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전통적인 관습법적 관계가 글로 밝힌 법의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계약상의 순수한 화폐관계로 반드시 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자인 토지점유자는 사실상 단순한 차지농업가로 된다. 이 전화는 그 밖의 일반적 생산관계가 적당한 조건에서는, 한편으로는 종전의 점유자인 농민을 더욱더 수탈하고 그들을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로 바꿔놓는데 이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의 점유자가 돈을 내고 지대를 지불할 자기의 의무에서 풀려나와 그 자신이 경작하는 땅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독립적 농민으로 되게 한다. 그리고 또 현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화폐로 고용되는, 가진 것이 없는 날뎌팔이 노동자계급이 형성될 뿐 아니라 이 계급의 형성이 그 전화에 앞서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계급이 아직 드문드문 나타날 따름인 그 발생기에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지대를 지불할 의무를 가진 농민들에게서는 이미 봉건시대에 부유한 예측적 농민들 자신이 다시 예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자기의 계산으로 농촌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관습이 필연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게서는 일정한 재산을 모아서 자기 자신이 장래의 자본가로 될 가능성이 더욱더 조성된다. 그리하여 스스로 일하던 이전의 토지점유자 자신들 가운데서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들의 온상이 생기는데 그들의 발전은 농촌 밖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발전에 의존하며 그리고 그들은 16세기의 영국에서와 같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장기차지계약하에서 토지소유자를 희생으로 하여 그들을 치부케 한 당시의 화폐가치의 누진적 감소와 같은 특히 유리한 사정들이 그들을 돕는 경우에는 아주 빨리 자라난다.

그리고 또 지대가 화폐지대의 형태를 띠며 그와 함께 지대를 무는 농민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관계가 계약관계의 형태를 띠면——이 전화는 대체로 세계시장, 상업 및 공업이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한 발전수

준에 이른 경우에만 가능하다——이제까지는 농촌의 한계 밖에 있었고 지금은 도시에서 번 자본과 이미 도시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 즉 생산물을 상품으로서만 그리고 잉여가치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산하는 것을 농촌과 농업에 옮겨놓는 자본가들에게 반드시 땅을 빌려주게 된다. 이 형태는 봉건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할 때에 세계시장을 지배한 나라들에서만 일반적인 원칙으로 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와 실지 일하는 농민 사이에 나타남에 따라 농촌에서의 본래의 생산양식에서 생겨난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 차지농업가는 이 농업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지휘자로 그리고 그들의 잉여노동의 현실적인 착취자로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이제 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와만 직접적인 관계, 그것도 단순한 화폐 및 계약 관계를 맺는다. 이와 함께 지대의 본성도 사실상으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전화될 뿐 아니라——이러한 전화는 부분적으로는 이미 이전의 형태들에서도 볼 수 있었다——정상적으로 공인된 지배적 형태로 전화된다. 지대는 잉여가치 및 잉여노동의 정상적인 형태에서 이 잉여노동 가운데서 착취하는 자본가가 이윤의 형태로 차지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제는 자본가가 전체 잉여노동——이윤과 이윤을 넘는 초과분——을 직접 빼내어 그것을 총잉여생산물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돈으로 만든다. 그가 지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내주는 것은 이제는 그가 자본을 가지고 농촌노동자들을 직접 착취하여 빼낸 이 잉여가치의 한 초과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토지소유자에게 내주는 것이 많은가 또는 적은가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계로서는 자본이 농업 아닌 생산분야들에서 가져오는 평균이윤에 의하여 그리고 평균이윤에 의하여 규정되는 비농업적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이제 지대는 잉여가치 및 잉여노동의 정상적인 형태로부터 전화되어 잉여노동 가운데서 자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제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을 넘는, 이 특수한 생산분야인 농업생산분야에만 있는 초과분으로 된다. 지대 대신에 이제는 이윤이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로 되었고 지대는 이제 잉여가치 일반이 아니라 그것의 일정한 결가지인 초과이윤이 특수한 사정하에서 자립화한 형태로서만 의의를 가진다. 이 전화에 생산양식

자체에서의 점차적인 전화가 어떻게 상응하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미 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에게서 정상적인 것은 토지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그의 생존수단을 넘는 초과분만이 상품으로 전화되었는데 이제는 이 상품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부분만이 직접 그를 위한 생존수단으로 전화된다는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이제는 농업노동까지도 자체에 그리고 자체의 생산성에 직접 종속시키는 것은 이미 땅이 아니라 자본이다.

평균이윤과 그것에 의하여 조절되는 생산가격은 농촌관계 밖에서, 도시의 상업과 공업의 권내에서 형성된다. 지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농민의 이윤은 이윤의 균등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와 그의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이윤을 얻는 한에서는 즉 자신의 노동에 의하든 또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착취에 의하든 간에, 그의 필수적인 생존수단을 넘는 초과분을 실현하는 한에서는 이것은 정상적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윤의 크기가 지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윤의 한계로서의 지대가 이윤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다. 중세기의 높은 이윤율은 자본의 낮은 구성——여기에서는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변적 요소가 우세를 차지한다——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수행되는 사기, 토지소유자의 일부 지대와 그에게 종속된 주민의 일부소득의 취득에 기인한다. 중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처럼 봉건제도가 도시의 예외적인 발전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농촌이 도시를 정치적으로 착취한다면 이제는 도시가 농촌을 어디서나 그리고 예외없이 그 독점가격, 그 조세체계, 그 동업조합제도, 그 직접적인 상인적 기만, 그 고리대로써 경제적으로 착취한다.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농업생산에 참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러저러한 형태로 옛날부터 지대를 물어온 농산물의 값이 적어도 이 참가 당시에는——농산물 값이 독점가격의 수준에 이른 때문이든 또는 농산물의 가치의 수준으로 올랐고 농산물의 가치는 사실상 평균이윤에 의하여 조절되는 생산가격보다 높는데 농산물 값이 그 가치의 수준으로 오른

때문이는 간에——공업의 생산가격 이상으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는 본래의 농산물 값에 의해서는 우선 이 생산물의 값 중에서 평균이윤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며, 다음에는 바로 같은 값 중에서 또 이 이윤을 넘는 초과분을 지대형태로 지불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려하게 되는 일반적 이윤율은 지대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형성되었고 따라서 그것이 농업에서 조절적 역할을 하게 되자 이 초과분을 발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다고 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로드베르투스 씨⁸²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로, 자본은 농업에 자립적이며 지도적인 역량으로서 단번에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리고 특수한 생산부문에 침투한다. 자본이 우선 장악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의 농업이 아니라 축산 특히 양 기르기와 같은 생산부문인데 양 기르기의 주되는 생산물인 양모는 공업의 양양기에는 처음에는 생산가격을 넘는 시장가격의 부단한 초과분을 가져다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균등화된다. 16세기에 영국에서 그러하였다.

둘째로, 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처음에는 드문드문 나타날 따름이므로 그것이 처음에 장악하는 것은 특수한 비옥도나 특히 유리한 위치로 하여 대체로 차액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땅들의 집단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반대할 것이 없다.

셋째로, 사실상 도시수요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생산양식이 나타났을 때에는 농산물의 값이 예컨대 영국에서 17세기의 마지막 3분의 1기에 의심할 바 없이 그랬던 것처럼 생산가격보다 높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본에 대한 농업의 단순한 종속에서 이 생산양식이 어느 정도로 벗어나면 그리고 이 생산양식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농업이 개량되고 생산비가 떨어지면 영국에서 18세기 전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농산물의 값이 떨어지는 반작용에 의하여 상쇄될 것이다.

그런즉 이 전통적 방식으로는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를

설명할 수 없다. 지대는 어떠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든 간에 그것은 일단 뿌리를 박게 되면 이미 앞에서 지적인 근대적 조건하에서만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또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이 화폐지대에서는 자본화된 지대, 땅 값, 따라서 땅의 양도가능성 및 양도가 본질적 계기로 된다는 것이며 또 그 때문에 종전에 지대를 지불할 의무를 지닌 자가 독립적인 농민적 소유자로 전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와 그 밖의 곳의 화폐소유자들도 땅을 사가지고 농민이나 자본가에게 빌려주며 이렇게 지출된 그 자본의 이자형태로서의 지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정도 종전의 착취방식의 개조, 소유자와 현실적 경작자와의 관계의 개조 그리고 지대 자체의 개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5절 분익경리 및 농민의 분할지소유

우리는 여기서 지대발전계열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이 모든 지대형태들 즉 노동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생산물지대의 단순한 전화형태로서의)에서는 지대를 무는 자는 언제나 실지로 경작자 이면서 토지점유자이며, 그들의 부지불잉여노동은 직접 토지소유자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지막 형태인 화폐지대에서도 그것이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한에서는 즉 생산물지대의 단순한 전화 형태인 한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렇다.

시초적 지대형태로부터 자본주의적 지대로의 이행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분익제 또는 분익경리제도인데, 이에 있어서는 경작자(차지인)는 노동(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외에 생산적 자본의 일부를 내고, 토지소유자는 토지 외에 생산적 자본의 다른 일부(예컨대 가축)를 내며, 그리고 생산물은 나라가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한 비율로 분익소작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 완전한 자본주의적 경영으로 되기에는 한편으로 차지인에게 충분한 자본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얻는 몫은 순수한 지대형태를 갖지 않는다. 사실상 이 몫에는 토지소유자가 선대한 자본에 대한 이자와 초과적인 지대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 또한 이 몫은 사실상 차지인의 잉여노동전부를 흡수할지 모르며 또는 크건 작건 이 잉여노동의 일부를 차지인에게 남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경우에 지대는 이미 잉여가치 일반의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분업소작인은 자기 자신의 노동만을 쓰건 다른 사람의 노동도 쓰건,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노동도구의 일부의 소유자로서, 그 자신의 자본가로서 생산물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것이다. 다른 한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몫을 청구하는 것은 토지소유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자본의 대부자로서이다.⁴⁴⁻¹⁾

예컨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처럼 자립적 농민경리로 이행한 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던 낡은 토지공유의 잔재는 이 나라들에서 보다 낮은 지대형태에로 이행하기 위한 구실로 되어 왔다. 땅의 일부는 개개의 농민들에게 속하고 그들에 의하여 자립적으로 경작된다. 다른 일부는 공동으로 경작되고 잉여생산물을 형성하는데 이 잉여생산물은 일부는 공동지출을 벌충하는 데 쓰고 일부는 흉작 등에 대한 예비로 쓴다. 이 나중의 두 부분의 잉여생산물과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 잉여생산물은 그것을 낸 땅과 함께 점차로 국가관리나 개인들에게 빼앗기며 그리하여 본래는 자유롭던 농민적 토지소유자들——그들이 이 땅을 공동으로 경작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이 부역의무를 지닌 자 또는 생산물지대를 지불할 의무를 지닌 자로 되는데 공유지를 빼앗은 자들은 빼앗은 공유지의 소유자로 될 뿐 아니라 농민 자신의 땅의 소유자로도 된다.

본래의 의미의 노예소유자경리(이것에도 주로 자체의 소비를 위한 가부장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일하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재배원제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가 있다)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경작하고 모든 생산도구를 소유하며 그리고 현물 또는 화폐로 보수를 받는 자유롭지 못한 종이나 자유로운 종의 노동을 착취하는 지주

44-1) 뷰레, 또코빌, 시스몽디를 보라.⁸³⁾

경리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상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생산도구의 소유자, 따라서 또 이 생산요소들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직접적 착취자는 일치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대와 이윤도 일치하며 잉여가치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땅과 그리고 본래의 노예제형태에서는 직접적 생산자들 자신도 포함하는 전체 생산도구의 소유자는 전체 잉여노동——이 경우에는 잉여생산물로 표시된다——을 노력자들에게서 직접 빼낸다. 미국의 재배원들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적 관념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이 전체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본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이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사고방식이 아직 자본주의 나라들로부터 옮겨지지 않은 곳에서는 전체 잉여가치가 지대로 나타난다. 어쨌든 이 형태는 아무런 곤란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명칭이 붙든 간에 토지소유자의 소득은, 그가 취득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잉여생산물은 이 경우에는 부지불잉여노동의 전부가 직접 취득되는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형태이며 토지소유는 이 취득의 기초를 이룬다.

다음으로는 분할지소유. 이 경우에 농민은 동시에 그의 기본생산수단이며 그의 노동과 자본의 없어서는 안될 투하분야인 그의 땅의 자유로운 소유자이다. 이 형태에서는 어떠한 차지료도 지불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대는 잉여가치의 갈라진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기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지대는 다른 생산부문들과 비교할 때에 초과이윤으로 나타나되, 대체로 농민노동의 전체 수익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초과이윤으로서 나타나지만 말이다.

이 토지소유형태는 이전의 보다 낡은 토지소유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에 비하여 숫적으로 현저히 더 많다는 것.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일반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그 때문에 다른 생산부문들에서도 자본의 집적이 좁은 한계내에서 움직이고 자본의 분산이 우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태의 본질상 이 경우에 생산자인 농민들 자신은 농산물의 압도적인 부분을 직접적인 생존수단으로서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이상의 초과분만을 상품으로서 도시와의 상업에 내놓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농산물의 평균시

장가격이 어떻게 규정되든 간에 비교적 좋은 땅 또는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의 상품가격의 초과부분인 차액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아직 일반적 시장가격이 전혀 발전하지 않은 사회상태에서 이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에게지도 이 차액지대는 존재한다. 이 경우에 그것은 초과잉여생산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유리한 자연조건하에서 자기의 노동을 실현하는 농민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바로 이 형태에서는 땅값이 농민의 실제적인 생산비에 한 요소로 들어가며——그것은 이 형태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유산을 나눌 때에 땅이 일정한 화폐가치로 인수되기 때문이든가, 또는 전체 소유가 아니면 그 부분이 부단히 이전할 때에 경작자 자신이 대부분은 저당으로 빌린 돈으로 땅을 사들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다른 아닌 자본화된 지대인 땅값이 미리 예견되는 요소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지대가 땅의 비옥도와 위치의 어떠한 차이와도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바로 이 형태에서는 아무런 절대지대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장 나쁜 땅은 아무런 지대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지대는 생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생산물가치의 초과분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든가 또는 생산물의 가치를 넘는 초과적 독점가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농업은 주로 직접적 생존수단을 위하여 경영되고 땅은 대다수 주민에게서 그 노동과 그 자본의 없어서는 안될 투하분야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조절적 시장가격은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만 그 가치의 규모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치는 산 노동의 요소가 우세하기 때문에 대개는 생산가격보다 높을 것이다. 하기는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이 초과분은 분할지령리가 우세한 나라들에서는 비농업자본의 구성이 낮음으로써 다시 제한되지만 말이다. 분할지농민에게서 착취의 한계로 되는 것은, 한편 그 자신이 소자본가인 한에서는 자본의 평균이윤도 아니며, 다른 한편 그 자신이 토지소유자인 한에서는 지대의 필요성도 아니다. 소자본가로서의 그에게서 절대적 한계로 되는 것은 그가 본래의 의미에서의 비용을 공제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는 임금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생산물가격이 그에게 임금을 보상하는 한 그는 자기의 땅을 경작할 것이며, 흔히 육체적 최저한도의

임금만을 보상할 때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토지소유자로서의 그에 대하여 말한다면 소유로 해서 당하는 제한은 없어지는데, 이 제한은 그것과 분리된 자본(노동도 포함하여)의 투하에 대한 장애로 됨으로써 자본과의 대립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대체로 제3자인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땅값의 이자가 제한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자는 바로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는 이윤을 형성할 잉여노동부분에서 지불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땅값과 그것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에서 먼저 취해지는 지대는 농민의 생존에 필요한 노동을 넘는 초과분인 그의 자본화한 잉여노동의 일부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다. 하기는 이 잉여노동은 전체 평균이윤과 같은 상품가치부분에서 실현되지는 않으며 더구나 평균이윤에서 실현되는 잉여노동을 넘는 초과분인 초과이윤에서 실현되지는 않지만 말이다. 지대는 평균이윤으로부터의 한 공제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평균이윤 가운데서 실현되는 유일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분할지농민이 자기의 땅을 경작하거나 또는 경작할 땅을 사들이기 위하여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와 같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그에게 평균이윤——더욱이 지대형태로 고정된 이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을 가져오리 만큼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분할지농민의 생산물의 가치수준으로나 생산가격수준으로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것이 분할지소유가 지배적인 나라들에서 곡물가격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가진 나라들에서보다 값싼 원인의 하나이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잉여노동의 일부는 공짜로 사회에 제공되고 생산가격의 조절에도, 가치형성 일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값은 생산자들의 빈궁의 결과이지 결코 그들의 노동생산능률의 결과가 아니다.

자작농들의 이 자유로운 분할지소유형태는 지배적이며 정상적인 형태로서, 한편 고전적 고대의 최성기에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며, 다른 한편 우리는 그것을 봉건적 토지소유의 해체로부터 나오는 형태의 하나로서 근대적 국민들에게서 보게 된다. 영국의 자유농민층, 스웨덴의 농민신분, 프랑스와 서부독일의 농민이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식민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는 독립적

인 농민이 다른 조건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자작농들의 자유로운 소유는 분명히 소생산을 위한, 즉 땅의 점유가 자기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노력자의 소유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며 그리고 자유로운 소유자이든 예속농민이든 간에 농민이 언제나 스스로, 독립하여, 개별적 노력자로서 자기의 가족과 함께 생존수단을 생산해야 하는 그러한 생산양식을 위한 가장 정상적인 토지소유형태이다. 토지소유가 이러한 생산양식의 완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도구의 소유가 수공업적 생산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토지소유는 개인적 자립성의 발전을 위한 기초로 된다. 그것은 농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과도적 단계이다. 이 토지소유를 몰락시키는 원인은 이 토지소유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이 토지소유를 정상적으로 보충하는 것인 농촌가내공업이 대공업의 발전의 결과에 파멸하는 것, 소생산의 조건에서 땅이 점점 매마르게 되고 피폐해지는 것, 공유지는 어디에서나 분할지경리를 두번째로 보충하며 또 공유지가 있어야만 이 경리는 집짐승을 기를 수 있는데 이러한 공유지를 대토지소유자들이 빼앗는 것, 재배원경리로 경영되든 자본주의적 경리로 경영되든 이에는 관계없는 대농업의 경쟁 등이다. 농업에서의 개량——이것은 한편으로 농산물의 값을 떨어뜨리며 다른 한편으로 지출의 증대와 더욱 풍부한 대상적 생산조건들을 필요로 한다——도 이 몰락을 촉진하는데 그것은 18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 볼 수 있었다.

분할지소유는 그 본성으로 해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 사회적 노동형태, 자본의 사회적 집적, 대규모의 축산, 과학을 더욱더 응용하는 것을 배제한다.

고리대금업과 조세체계는 어디서나 이 토지소유를 파멸시키지 않을 수 없다. 땅을 사는 데 드는 자본은 농업에서 끌어낸다. 생산수단은 한없이 분산되고 생산자 자신은 분리된다. 인간의 힘이 터무니없이 낭비된다. 생산조건이 더욱더 나빠지고 생산수단의 값이 비싸지는 것은 분할지소유의 필연적 법칙이다. 이 생산양식에서는 풍작도 불행으로 된다.⁴⁵⁾

45) 투크의 지서 가운데서 프랑스 국왕이 개원식에서 한 연설을 보라.⁴⁴⁾

자유로운 토지소유와 결부된 경우의 소농업의 특수한 결합의 하나는 경작자가 땅을 사는 데 자본을 지출한다는 데서 생긴다(이것은 대토지소유자가 첫째로 땅을 사기 위하여, 둘째로 차지농업가로서 스스로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자본을 지출하는 과도적 형태에도 들어맞는다). 이 경우에 땅이 단순한 상품으로서 가지는 가동성으로 해서 바뀌는 토지소유자의 수가 늘어나며⁴⁶⁾ 그리하여 개개 새로운 세대에 유산을 나눌 때마다 땅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자본의 지출로서 나타난다. 즉 그것은 농민이 사들이는 땅으로 된다. 이 경우에 땅값은 개별적인 비생산적 생산비 또는 개별적 생산자들에게서의 생산물 생산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땅값이란 자본화된 따라서 미리 받는 지대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지대만을 받고 차지농업가는 땅에 대하여 한 해 동안의 이 지대 외에 아무 것도 물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 자신이 땅을 사는 데 지출한 자본은 그에게서는 이자를 가져오는 자본이지만 그러나 농업 자체에 투하된 자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농업에서 기능하는 고정자본의 요소도 유동자본의 요소도 이루지 않는다.⁴⁷⁾ 그것은 오히려 다만 사는 사람에게 한 해 동안의 지대를 받을 명의를 제공할 따름이고 이 지대의 생산과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 땅을 사는 사람은 바로 땅을 파는 사람에게 자본을 지불하는 것이며 파는 사람은 그 대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

46) 무니에와 류비송을 보라.⁴⁵⁾

47) 박사 H. 마튼 씨(「조방인가 집약인가」(왓스는 이 소책자에 대하여 다른 자료는 들지 않고 있다)는 그가 논쟁을 건 상대방의 그릇된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는 땅을 사는 데 투하하는 자본을 투하자본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에는 투하자본과 경영자본 즉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해당한 개념규정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다. 자본 일반에 관한 그의 아주 초학자다운 표상——그렇지만 이것은 독일 국민경제학의 상태로 보아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용서되어야 할 것이다——때문에 이 자본이 투하자본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국가증권을 사는 데 투하하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는 투자로 되나 실제로는 어떠한 생산부문에도 투하되지 않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그는 모른다.

따라서 이 자본은 이미 사는 사람의 자본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사는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땅 자체에 투하할 수 있는 자본에는 속하지 않는다. 사는 사람이 땅을 비싸게 샀건 싸게 샀건 또는 거저 얻었건, 그것으로 해서 차지농업가가 경영에 투하하는 자본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으며 또 지대에도 아무런 변동도 없고, 다만 지대가 그에게 이자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또 높은 이자로 나타나는가 낮은 이자로 나타나는가 하는 데만 영향이 있다.

에컨대 노예소유자경제를 들어보자. 이 경우에 노예의 댓가로 치르는 값은 노예로부터 앞으로 짝년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미리 받고 자본화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노예를 살 때 치른 자본은 노예에게서 이윤, 잉여노동을 빼내기 위한 자본의 구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와 반대이다. 그것은 노예소유자가 양도한 자본이며 그가 실제적 생산에서 마음대로 하는 자본에서 떼어낸 것이다. 그것이 노예소유자에게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땅을 사는 데 들인 자본이 농업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것은 노예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노예나 땅을 다시 팔 때에만 이 자본이 다시 그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는 사람에게서 똑같은 관계가 생긴다. 그가 노예를 샀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노예를 당장 착취할 수는 없다. 다른 자본을 노예소유자경제 자체에 투하함으로써 비로소 그는 노예를 착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자본이 이중으로 즉 땅을 파는 사람의 손에도 땅을 사는 사람의 손에도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는 사람의 손에서 파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며 그리하여 일은 끝난다. 이제는 산 사람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대신 그에게는 땅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이 땅에 대한 실제적 투자에서 얻는 지대를 그가 이 땅에 투하한 자본의 이자로서가 아니라, 땅을 사는 데 지출한 자본의 이자로 보는 사정은 땅이라는 요인의 경제적 본성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3% 이자의 정리공채의 댓가로 1,00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한 사정이 그 소득에서 국채이자를 지불하는 자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땅을 사는 데 지출된 화폐가 국가증권을 사는 데 지출된 화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자본에 지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가치액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그 자체로서 자본이며 잠재적 자본인 것과 마찬가지다. 땅의 댓가로 지불되는 것은 국채의 댓가로, 그 밖에 사들이는 상품의 댓가로 지불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화폐액이다. 이 화폐액은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자본이다. 판 사람이 받은 화폐가 실제로 자본으로 전화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산 사람에게서 이 화폐가 더 이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지출한 다른 모든 화폐와 마찬가지다. 그의 계산에서는 이 화폐가 그에게 이자를 가져오는 자본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지대로서 또는 국채의 이자로서 얻는 소득을 이 소득을 얻는 권리를 사는 데 든 화폐의 이자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는 재판매에 의해서만 이 화폐를 자본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새로 사는 다른 사람이 본래 산 사람이 처하였던 것과 같은 처지에 있게 되며, 이렇게 지출된 화폐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아무리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출한 사람에게서는 실제적 자본으로 전화될 수 없다.

소토지소유에서는 땅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계나 원료와 마찬가지로 자본으로서 생산물의 생산가격에 들어가는 듯한 환상이 더욱더 굳어진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지대, 따라서 자본화된 지대인 땅값은 두 경우에만 생산물의 값을 규정하는 데 참가할 수 있다. 첫째로는 농업자본——땅을 사는 데 지출하는 자본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자본——의 구성 때문에 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높으며, 시장관계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 차액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독점가격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는 분할지경리와 소토지소유하에서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는 생산은 아주 많은 부분이 농민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돌리며 일반적 이용을 위한 조절과는 관계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할지경리가 벌린 땅에서 운영되는 경우에까지도 벌린 땅세는 다른 어떠한 관계하

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윤의 일부를 포함하며 심지어 임금에서 빼어 낸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빌린 땅세는 명목상의 지대에 지나지 않고 임금 및 이윤과 대립한 자립적 범주로서의 지대는 아니다.

따라서 땅을 사기 위한 화폐자본의 지출은 농업자본의 투자가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소농민이 그의 생산분야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본을 그만큼 줄어들게 한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산수단의 규모를 줄이며 따라서 재생산의 경제적 기초를 좁힌다. 그것은 소농민을 고리대에 예속시킨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는 대체로 진정한 신용관계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폐지출이 또한 대경리들에서 생기는 경우에도 그것은 농업에 장애로 된다. 그것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모순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채무나 그리고 그가 자기의 땅을 상속하였는가 또는 샀는가 하는 것은 대체로 아무래도 좋다. 그가 지대를 스스로 차지하는가 또는 그것을 다시 저당권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그 자체는 빌린 땅의 경영에 아무런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지대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땅값은 이자율에 의하여 조절된다. 이자율이 낮으면 땅값은 높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높은 땅값과 낮은 이자율은 반드시 같이 나아갈 것이며 그리하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농민이 땅에 대하여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낮은 이자율로 해서 그는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자본을 신용으로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분할지소유가 지배하는 경우에는 사태가 다르다. 우선 농민에게는 신용의 일반적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자가 자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분할지소유가 지배하고——여기에서는 식민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분할지농민이 국민의 기본을 이루는 경우에는 자본의 형성 즉 사회적 재생산이 비교적 미약하며 이미 말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대부될 수 있는 화폐자본의 형성은 더욱 미약하다. 이것은 집적과 부유한 놀고 먹는 자본가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매서⁸⁶⁾). 세째로 토지소유가 대부분의 생산자들의 생활조건을 이루고 그들의 자본에 없어서는 안될 투하분야를 이루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므로 땅값은 이자율과 관계없이 그리고 자주 이자율과 반비례하여 오른다. 이 경우에 분할지로 팔리는 땅에 대해서는 큰 땅패기로 팔린 때보다 흔히 훨씬 높은 값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작은 구매자의 수는 많고 큰 구매자의 수는 적기 때문이다(『암흑단』⁸⁷, 류비송⁸⁸, 뉴만⁸⁹). 이 모든 원인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땅값은 오른다. 이 경우에 농민이 땅을 사는 데 지출한 자본에서 빼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무니에⁹⁰)에 대하여 다른 편에서는 농민 자신이 저당권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높은 고리대적 이자율이 상응한다. 아일랜드의 제도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태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산 자체하고는 인연이 없는 땅값이라는 이 요소가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동발: Dombsle).

땅값이 이러한 역할을 하며 땅의 매매, 상품으로서의 땅의 유통이 이러한 규모에까지 발전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한 결과인데 이에 있어서는 상품이 모든 생산물과 모든 생산수단의 일반적 형태로 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현상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제한되어 발전했을 따름이고 자체의 모든 특성을 나타내지 않은 곳에서만 발전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농업이 이미——또는 아직——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종속되지 않고 봉건한 사회형태로부터 전해 내려온 생산양식에 종속되고 있는 데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생산자로 하여금 그의 생산물의 화폐가격에 의존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결합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불충분한 발전에서 생기는 결합과 일치한다. 농민은 자기의 생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이 상인으로 되고 산업가로 되는 것이다.

생산자에게서의 생산비를 이루는 요소로서의 땅값과 생산물의 생산가격의 요소가 아닌 것으로서의 땅값(지대가 농산물의 가격형성에 규정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조차도 20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 선대되는 자본화된 지대는 결코 농산물의 가격형성에 규정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간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토지사유와 합리적 농업, 땅의 정상적인 사회적 이용

간의 모순이 표현되는 형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토지사유, 따라서 직접적 생산자들에게서의 토지수탈——한 사람의 사적 소유는 다른 사람의 토지소유의 결여를 의미한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이다.

이 경우에 소농업에서는 토지사유의 형태이며 결과인 땅값은 생산 자체의 제한으로서 나타난다. 대농업과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대토지소유에 있어서도 소유는 제한으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소유가 결국 차지농업가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이익으로 되는 생산적 투자를 하는 데서 차지농업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두 형태에서는 땅——공통적인 영원한 소유,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는 인류의 양도할 수 없는 생존과 재생산의 조건으로서의——의 의식적인 합리적인 취급이 아니라 지력의 착취와 낭비가 나타난다(이 착취가 사회의 도달된 발전수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생산자들의 우연적이며 불균등한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제척농고라도). 소소유에서는 사회적 노동생산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지식이 없는 데로부터 그렇게 된다. 대소유에서는 차지농업가와 소유자가 될수록 빨리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이 수단을 이용하는 결과로 그렇게 된다. 이 두 경우에 다 같이 시장가격에 의존하는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소토지소유에 대한 모든 비판은 결국 농업의 제한과 그에 대한 장애로서의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으로 된다. 대토지소유에 대한 온갖 반대되는 비판도 그렇다. 물론 이 두 경우에 부차적인 고려는 여기서는 다 제쳐놓는다. 이 제한과 이 장애는——이것들을 온갖 토지사유가 농업생산과 땅 자체의 합리적 취급, 보존 및 개량에 대치시킨다——대토지소유와 소토지소유에서 서로 다른 형태들로만 발전되며 그리고 해독의 특수한 형태들에 관한 논쟁에서는 해독의 기본원인이 망각된다.

소토지소유의 전제로 되는 것은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농촌에 살며 사회적 노동이 아니라 고립된 노동이 우세하며, 따라서 이에 있어서는 재생산의 즉 그 물질적 및 정신적 조건들의 다양성 및 발전이 배제되며 합리적 경작의 조건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대토지소유는 농업 인구를 끊임없이 줄여드는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며 대도시들에 집중되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공업인구를 이에 대치시킨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자연법칙으로부터 출발하는 사회적 물질대사 과정에서 메울 수 없는 틈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조성되는데, 그 결과 지력은 낭비되고 이 낭비는 상업을 통하여 자기 나라 국경 밖으로 멀리 퍼져나간다(리비히¹⁾).

소토지소유가 원시적 사회형태들의 모든 난폭성과 문명한 나라들의 모든 고통, 모든 빈궁을 합친 절반이 사회 밖에 있는 야만인계급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대토지소유는 노동력의 자연적 에너르기의 피난처이며 국민의 생명력의 갱신을 위한 예비적 밑천으로서 저장되는 마지막 분야인 농촌 자체에서 노동력을 파괴한다. 대공업과 공업적으로 운영되는 대농업은 공동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전자가 노동력을, 따라서 인간의 자연력을 더 낭비하고 파괴하며, 후자가 땅의 자연력을 더 직접 낭비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이 양자가 구별된다면 나중에는 발전과정에서 양자는 손을 맞잡는다. 즉 농촌에서의 공업적 체계는 노동자들의 힘을 몽땅 써 버리며 공업과 상업은 또 농업을 위하여 땅을 피폐케 하는 수단을 만들어 낸다.

제7편

소득과 그 원천

제48장 삼위일체의 공식

제49장 생산과정의 분석

제50장 경쟁의 외관

제51장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제52장 계급

제 48 장 삼위일체의 공식

I ⁴⁸⁾

자본—이윤(기업이득 더하기 이자), 땅—지대, 노동—임금, 이것이 사회적 생산과정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는 삼위일체의 공식이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자는 자본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산물로 나타나고 기업이득은 이자와는 반대로 자본과는 관계없는 임금으로서 나타나므로 이 삼위일체의 공식은 좀더 정확하게 표시하면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이자, 땅—지대, 노동—임금,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특수하게 특징짓는 잉여가치형태인 이윤은 다행히도 빠져 있다.

그런데 이 경제학적 삼위일체를 좀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해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부의 소위 원천들은 아주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며 조금도 서로 비슷한 점이 없다. 그것들의 호상관계는 수수료, 홍당무, 음악 사이의 호상관계나 다름없다.

자본, 땅, 노동! 그러나 자본은 물건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사회구성체에 속하는 일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이다. 이 생산관계는 어떤 물건에서 표시되고 이 물건에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부여준다. 자본은 물질적인, 생산된 생산수단의 총계가 아니다. 자본, 이것은 자본으로 전화된 생산수단인데 생산수단은 그 자체로서는 자본이 아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이 그 자체로서는 화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의 일정한 부분

48) 아래의 세 개 단편은 제6편 원고의 서로 다른 곳에 있다.—F. E.

* 이 책, 제1분책, 제23장을 보라. 편집부.

이 독점한 생산수단, 산 노동력에 대하여 자립화된, 바로 이 노동력의 생산물과 활동조건——이것들이 이 대립으로 해서 자본에서 인격화된다. 자립적인 힘으로 전화된 노동자들의 생산물, 생산자들의 지배자이며 구매자로서의 생산물뿐 아니라 또 이 노동의 사회적 힘과 장래의… (?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다)* 형태도 그들의 생산물의 속성으로서 그들과 대립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생산과정의 한 가지 요인의 일정한, 얼핏 보면 아주 신비로운 사회적 형태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와 함께 땅, 무기자연 그 자체, 원래 생긴대로의 천연적이며 조잡한 덩어리⁹⁸가 있다. 가치는 노동이다. 따라서 땅은 잉여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땅의 절대적 비옥도는 일정한 양의 노동이 땅의 자연적 비옥도로 해서 생기는 일정한 생산물을 만들어준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땅의 비옥도의 차이가 가져오는 것은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 따라서 똑같은 가치가 서로 다른 양의 토지생산물로 표현된다는 것, 따라서 이 생산물들이 서로 다른 개별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개별적 가치가 시장가치로 균등화되면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즉

“나쁜 땅보다 더 기름진 땅의 이익은… 경작이나 소비자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로 넘어간다”(리카아도, 『원리』, 62페이지, [런던, 1821년]).

그리고 끝으로 동맹에서의 세째것⁹⁹으로서 단순한 유령과 같은 노동이라는 것(die Arbeit)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본다면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 취하여 본다면 사람의 생산적 활동 일반이다. 이 생산적 활

* 후에 원고 글씨를 풀어본즉 이곳은 다음과 같다: “이 노동의 사회적 힘과 사회화된 형태.” 편집부.

** 후에 원고 글씨를 풀어본즉 이곳은 다음과 같다: “그것에 숨어 있는 것을 취하여 본다면.” 편집부.

동은 온갖 사회적 형태와 규정된 성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독립한, 어떠한 사회와도 떨어진 단순한 자연적 존재에 있어서까지도 사람이 자연과 물질대사를 하는 수단이며, 또 이 생산적 활동은 아직 전혀 사회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나 또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나 생명의 발현과 생명의 확증으로서 공통한 것이다.

II

자본—이자; 토지소유, 땅에 대한 사적 소유, 그것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현대적인 사적 소유—지대; 임금노동—임금, 따라서 소득의 원천들 사이의 관련은 응당 이 형태로 맺어져야 한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과 토지소유도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형태——임금노동은 노동의 사회적 형태, 토지소유는 독점된 땅의 사회적 형태——이며 그것도 이 두 가지는 다 자본에 상응하는 그리고 같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에 속하는 형태들이다.

이 공식에서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자본과 나란히, 일정한 생산양식, 일정한 역사적 모습의 사회적 생산과정에 속하는 이 형태의 생산요소와 나란히, 일정한 사회적 형태와 융합되었으며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 표시되는 한 생산요소와 나란히 한편으로는 땅이 또 한편으로는 노동이 직접 서 있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현실적 노동과정의 두 요소로서 그 소재적 형태에 있어서 모든 생산양식에 공통하며 온갖 생산과정의 소재적 요소들이고 생산과정의 사회적 형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이다.

둘째로, 자본—이자, 땅—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에서는 자본, 땅, 노동은 각각 그 생산물, 그 열매로서의 이자(이윤이 아니라), 지대 및 임금의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전자는 근거이고 후자는 귀결이며 전자는 원인이고 후자는 결과이다. 그것도 그 하나하나의 원천이 그 원천에서 떨어져 나오고 생산된 것인 그 생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자(이윤이 아니라), 지대, 임금이라는 세 소득은 모두 생산물가치의 세

부분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치의 부분들이며 또는 화폐적 표현으로는 일정한 화폐부분들, 가격의 부분들이다. 자본—이자라는 공식은 자본의 가장 내용없는 공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본의 한 공식이다. 그러나 땅은 어떻게 가치를 즉 사회적으로 규정된 양의 노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더구나 땅 자체의 생산물의 가치 중 지대를 이루는 특수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땅은 예컨대 밀이라는 일정한 사용가치, 일정한 물질적 생산물의 생산요인으로 된다. 그러나 땅은 밀의 가치의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가치가 밀로 표시되는 한에서는 밀은 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될 따름이고 이 노동을 표시하는 특수한 소재 또는 이 소재의 특수한 사용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것은 1)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밀값이 높거나 또는 비싼 것은 땅의 생산성에 달려 있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농업노동의 생산능률은 자연조건들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 생산능률 여하에 따라 같은 양의 노동이 많은 또는 적은 양의 생산물로, 사용가치로 표시된다. 1셰펠로 표시되는 노동량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똑같은 양의 노동이 제공하는 셰펠의 수량에 달려 있다. 이 경우에 가치가 얼마만한 양의 생산물로 표시되는가 하는 것은 땅의 생산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가치는 이러한 분배와는 관계없이 정해져 있다. 가치는 사용가치로 표시된다. 그리고 사용가치는 가치창조의 조건이다. 그러나 한편에는 땅이라는 사용가치가 서 있고 다른 편에는 가치가, 더구나 특수한 가치부분이 서 있는 하나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 (여기에서 원고는 끊어지고 있다.)

III

속류경제학은 사실상 부르조아적 생산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부르조아적 생산의 대표자들의 관념을 교조주의적으로 설명하고 체계화하며 변호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제적 관계의 소외된 현상형태, 이 현상형태에서는 이 경제적 관계는 명백히 불합리하고 완전한 모순을 이루는데——만약 사물의 현상형태와 본질이 직접 일치한다

면 온갖 과학은 쓸데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바로 이 현상형태에서 속류경제학은 아주 마음이 편안하며 그리고 이 관계는 그 내적 연관이 가리워져 있지만, 보통의 관념에 익숙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속류경제학에는 그만큼 더욱 자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속류경제학은 그의 출발점인 삼위일체 즉 땅—지대, 자본—이자, 노동—임금 또는 노동의 가격이란 명백히 불가능한 세 가지 배합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우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용가치인 땅과 교환가치인 지대이다. 그리하여 물건으로서 본 하나의 사회적 관계가 자연에 대하여 하나의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즉 같은 기준에서 측정할 수 없는 두 개의 크기가 서로 일정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 다음에는 자본—이자이다. 자본이라는 것을 화폐에 자립적으로 표시된 일정한 가치액이라고 본다면 어떤 가치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라는 것으로 되는 만큼 그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 바로 자본—이자라는 형태에서는 모든 매개가 사라지고 자본은 그 가장 일반적인, 그러나 그 때문에 그 자체로부터는 설명될 수 없는 불합리한 공식으로 되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속류경제학자는 자본—이윤이라는 공식보다도 어떤 가치가 그 자체와 같지 않다는 신비로운 속성을 가진 자본—이자라는 공식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자본—이윤이라는 공식은 벌써 현실적인 자본주의적 관계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어서 또 4는 5가 아니며 따라서 100탈리는 110탈리일 수 없다는 것을 불안하게 느끼는 속류경제학자는 가치인 자본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을 자본의 소재적 실체 즉 노동의 생산조건으로서의 자본의 사용가치인 기계, 원료 등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또다시 $4=5$ 라는 알 수 없는 첫번째 관계 대신에 토지소유의 경우와 같이, 한편으로는 사용가치인 물건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인 잉여가치 사이에서 전혀 같은 기준에서 잴 수 없는 관계를 끌어내고 있다. 속류경제학자가 같은 기준에서 잴 수 없는 이것에 이르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되며 그는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부르쥔아적 관념의 합리적인 것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끝으로 노동—임금 즉 노동의 가격이라는 표현은 제1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

히 가치의 개념과 모순된 것이고, 또 가격——이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치의 일정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의 개념과도 모순되는 것이다.⁴⁹

‘그리고 노동의 가격이란 누런 빛의 로그 수(數)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속류경제학자는 매우 만족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야 부르조아가 노동에 대하여 화폐를 지불한다는 부르조아의 깊은 이해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또 바로 가치의 개념에 대한 이 공식의 모순이 가치의 개념을 이해할 의무를 그에게서 면제하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⁴⁹⁾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사회적 생산과정 일반의 역사적으로 규정된 하나의 형태이다. 이 사회적 생산과정은 인간생활의 물질적 생존조건의 생산과정인 동시에, 특수한 역사-경제적 생산관계에서 진행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산하며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즉 이 생산관계 자체를, 따라서 또 이 과정의 담당자들을, 그들의 물질적 생존조건과 그들의 호상관계를 즉 이것들의 일정한 경제적 사회형태를 생산하며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들——이 생산의 담당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자연과 맺고 또 호상간에서 맺으며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산한다——의 총체가 바로 경제적 구조의 관점에서 본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그에 앞선 모든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물질적 조건 밑에서 진행되는데, 이 물질적 조건은 동시에 개개인이 자기들의 생활의 재생산과정에서 맺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의 담당자이다.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관계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전제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이고 산물이다. 그 조건과 그 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 의하여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자본은——그런데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의 담당자로서만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상응하는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을 직접

49) 원고에서는 제48장의 첫머리로 되어 있다[F. E.].

적 생산자 즉 노동자로부터 짜내는데, 이 잉여노동은 자본이 등가물을 주지 않고 얻는 것이고 이 잉여노동이 자유로운 계약상 합의의 결과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제나 강제노동인 것이다. 이 잉여노동은 잉여가치로 표시되며 이 잉여가치는 잉여생산물로 존재한다. 잉여노동 일반은 일정한 욕망의 한도를 넘는 노동으로서 언제나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에서는 노예제도 등에שו와 마찬가지로 잉여노동이 오직 적대적 형태를 취하며 사회의 일정한 부분이 순전히 먹고 먹음으로 해서 보충된다.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은 우연적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서 필요하며, 또 욕망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상응하는 재생산과정의 필연적인 누진적 확대——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축적이라고 불린다——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자본이 이전 형태들인 노예제도, 농노제도 등에서보다 생산력, 사회관계의 발전과 그리고 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höhere Neubildung)를 위한 요소의 창조에 더 유리한 방식과 조건하에서 이 잉여노동을 강요한다는 것은 자본의 문명보급자적 측면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자본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희생으로 하는 강제와 사회적 발전(이것이 물질적 및 지적 이익을 포함함)의 독점화가 없어지는 단계를 가져오며, 다른 한편으로 이 단계는 보다 높은 사회형태에서 이 잉여노동과 물질적 노동 일반에 바쳐지는 시간의 보다 큰 제한을 결부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를 위한 물질적 수단과 싹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잉여노동은 노동생산력의 발전 여하에 따라 총노동일이 짧더라도 클 수 있으며 또 총노동일이 길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노동이 3시간이고 잉여노동이 3시간이면 총노동일은 6시간이고 잉여노동의율은 100%이다. 필요노동이 9시간이고 잉여노동이 3시간이면 총노동일은 12시간이고 잉여노동의율은 33⅓%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또 일정한 잉여노동시간에 얼마만한 사용가치가 생산되는가 하는 것은 노동생산능률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회의 실제적 재부와 사회의 재생산과정을 끊임없이 확대할 가능성은 잉여노동의 길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잉여노동의 생산능률에 달려 있으며, 또 잉여노동을 진행되게 하는 생산조건들이 풍부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자유의 왕국은 사실상 궁핍과 외적 합목적

성에 의하여 지시되는 노동이 없어지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따라서 그것은 사물의 본성으로 보아 본래의 물질적 생산분야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다. 미개인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자연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듯이, 문명인도 그러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사회형태하에서도 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생산양식하에서도 그러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발전함에 따라 이 자연적 필연의 왕국이 확대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확대된다. 이 왕국에서의 자유는 오직 사회화된 인간, 연합된 생산자들이 자연과의 자기들의 이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이 물질대사가 맹목적인 힘으로서 그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기들의 공동통제 밑에 두며 가장 적게 힘을 들이고 그들의 인간성에 가장 알맞고 가장 적합한 조건하에서 그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데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역시 필연의 왕국이다. 필연의 왕국의 맞은편에서, 자체 목적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인간의 힘의 발전이 시작되고 자유의 진정한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의 왕국은 이 필연의 왕국을 토대로 해서만 꽃피울 수 있다. 노동일을 줄이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이 잉여가치 또는 이 잉여생산물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는——분배의 우연적인 변동을 제쳐놓고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 그것의 기준을 정하는 한계를 본다면——자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 중 개개 자본가에게 속하는 몫에 비례하는 배당으로서 분배된다. 잉여가치는 이러한 모습에서는 자본에 돌아가는 평균이윤으로서 나타나는데 평균이윤 그 자체는 다시 기업이득과 이자로 갈라지며, 이 두 범주의 형태로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 잉여가치, 따라서 잉여생산물을 이렇게 차지하고 분배하는 것은 토지소유로 해서 제한당한다. 기능자본가가 잉여노동을, 따라서 이윤의 형태로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을 노동자에게서 빼앗아내듯이, 토지소유자는 이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지대의 형태로 위에서 말한 법칙에 따라 자본가에게서도 빼앗아낸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잉여가치 중 자본에 돌아가는 몫으로서의

이윤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우리는 총이윤(양적으로 총잉여가치와 같다)에서 지대를 뺌으로써 이미 제한되어 있는 평균이윤(기업이득 더하기 이자와 같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지대를 뺀다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이윤(기업이득 더하기 이자)과 지대는 잉여가치의 특수한 구성부분들, 잉여가치가 그것이 자본의 몫으로 되는가 또는 토지소유의 몫으로 되는가에 따라 구별되는——그러나 잉여가치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범주들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자본에 대한 이윤과 지대의 합계는 사회적 잉여가치의 총액을 이룬다. 자본은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로 표시되는 잉여노동을 노동자에게서 직접 짚낸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을 잉여가치의 생산자라고 볼 수 있다. 토지소유는 실제적 생산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토지소유의 역할은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의 주머니에서 자기 자체의 주머니로 옮겨놓는 것뿐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역할을 노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자본에 가하는 압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또 단순히 대토지소유가 노동자에게서 노동조건을 수탈하는 전제이며 조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이며 조건이라는 데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특히 토지소유자가 가장 본질적인 생산조건 중의 하나의 인격화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끝으로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소유자이며 판매자로서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물의 일부분을 받는데, 그 부분이 표시하는 그의 노동부분을 우리는 필요노동 즉 이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그것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조건이 빈약한가 풍부한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관계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서로 다른 것으로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들 모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은 해마다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며 땅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가져다주고 노동력은——정상적인 조건 밑에서는 또 그 노동력이 사용될 수 있는 동안은——노동자에게 임금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해마다 생산되는 총가치 중의 이 세 부분 그리고 해마다 생산되는 총생산물 중에서 이에 상응하는 부분들은——우리는 여기에서 당분간 축적을 제

쳐놓는다——그 재생산의 원천을 말라버리게 하지 않으면서 각각 그 소유자들이 해마다 소비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은 다년생의 한 그루 나무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세 그루 나무의, 해마다 소비되어야 할 열매로서 나타나며 자본가, 토지소유자 및 노동자라는 세 계급의 매해 소득을 이루는데 이 소득은 기능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직접 짜내며 노동 일반을 적용하는 자로서 분배한다. 그리하여 자본가에게는 그의 자본이,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의 땅이,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그의 노동력이 또는 오히려 그의 노동 자체가(왜냐하면 노동자는 노동력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만 실제로 팔며 노동력의 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에게는 노동의 가격으로서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윤, 지대 및 임금이라는 그들의 특수한 소득의 서로 다른 세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사실상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러한 것으로 된다. 즉 자본은 자본가에게는 잉여가치를 퍼내는 몫을 줄 모르는 펌프이며, 땅은 토지소유자에게는 자본이 퍼낸 잉여가치의 일부를 끌어당기는 설새없이 작용하는 자석이며, 또 마지막으로 노동은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일부를 따라서 사회적 생산물 중 이 가치부분으로 제어지는 부분인 생활필수품을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얻기 위한 끊임없이 갱신되는 조건이며 끊임없이 갱신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러한 것으로 된다. 즉 자본은 매해 노동의 가치의 일부 따라서 매해 노동의 생산물의 일부를 이윤의 형태로 고정시키고, 토지소유는 다른 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그리고 임금노동은 또 다른 부분을 임금의 형태로 고정시키며 바로 이러한 전화를 통하여 이 부분들을 자본가, 토지소유자 및 노동자의 소득으로 전환시키지만 이 여러 가지 범주들로 전화되는 실체 그 자체는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이다. 분배는 오히려 이 실체 즉 대상화된 사회적 노동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매해 생산물의 총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생산당사자들, 생산과정의 여러 가지 기능의 담당자들에게는 사태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뒤집힌 형태로 나타난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더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다. 자본과 토지소유와 노동은 그 생

산당사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독점적인 세 가지 원천으로 보인다. 즉 해마다 생산되는 가치 따라서 이 가치가 존재하는 생산물의 서로 다른 세 개 구성부분이 생기며, 따라서 사회적 생산과정의 개개의 요인들에 소득으로서 돌아가는 이 가치의 여러 가지 형태뿐 아니라 이 가치 자체도 따라서 이 소득형태들의 실체도 생기는 그러한 원천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원고에서는 2절판 전지 한 장이 빠져 있다.}

…차액지대는 땅의 상대적 비옥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땅 그 자체에서 생기는 속성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차액지대가 첫째로 여러 가지 종류의 땅에서 나는 생산물의 개별적 가치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급방 말한 그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차액지대가 개별적 가치와는 다른 조절적인 일반적 시장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것은 경쟁을 통하여 관찰되는 사회적 법칙인데 이 법칙은 땅과도 땅의 비옥도의 서로 다른 정도와도 관계가 없다.

적어도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에서도 합리적인 관계가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땅—지대라는 공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노동이 가치를 형성하고 상품가치로 표시되는 한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범주들로 이 가치가 분배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노동이 임금노동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갖는 한에서는 그것은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미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임금 또는 노동의 가격은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불합리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노동력이 팔리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들은 일반적인 생산요인으로서의 노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노동은 상품가치 중 임금으로서 노동력의 가격을 이루는 구성부분에도 대상화된다. 노동이 생산물의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노동이 이 부분에서 대상화되는 것은 지대나 이윤을 이루는 부분에서 대상화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산조건으로서의 노동의 구체적 형태에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이라는 사회적 규정성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적 규정성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자본—이윤이라는 표현도 여기에서는 부정확한 것이다. 자본을 그것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관계에서, 즉 그것이 노동력에 대하여 즉 임금노동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강제에 의하여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노동자와 자본의 관계에서 파악한다면, 이 잉여가치에는 이윤(기업이득 더하기 이자) 외에 지대도 포함된다. 간단히 말해서 나누지 않은 전체 잉여가치가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득의 원천으로서의 자본은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는 잉여가치부분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자본이 일반적으로 끌어내는 잉여가치가 아니라 자본이 자본가를 위하여 끌어내는 잉여가치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식이 **자본—이자**로 전화된다면 모든 연관은 더욱더 사라지고 만다.

우리는 처음에 세 가지 원천의 차이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와는 반대로 그 원천들의 생산물, 그것들의 산물인 소득이 모두 같은 분야인 가치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 차이(같은 기준에서 잴 수 없는 크기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완전히 다르고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또 비교할 수도 없는 물건들 사이의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사라진다. 즉 사실상 자본이 땅 및 노동과 같이 단순히 그 소재적 실체에서 즉 다만 생산된 생산수단으로 고찰되고 이 경우에 노동자에 대한 관계로서의 자본, 가치로서의 자본이 사상됨으로써 사라진다.

세째,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이자(이윤)**, **땅—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은 그 부분들의 똑같은, 균형이 잡힌 모순을 표시한다. 사실상 임금노동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노동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그 본성으로 보아 임금노동으로서 나타남으로써(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난다) 대상적 노동조건들——생산된 생산수단과 땅——이 임금노동과 대립하여 취하는(이 노동조건들 자체로서는 반대로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규정된 특수한 사회적 형태들도 이 노동조건들이 소재적 정재 또는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현실적 노동과정에서 취하는 모습과 직접 일치하는데 노동과정의 구체적이며 역사적으로 규정된 온갖 사회적 형태와는 관계없이, 심지어 그것의 온갖 사회적 형태와도 관계없이 직접 일치한다. 그러므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에 대하여 자립화된, 그럼으로써 전화된 노동

조건들의 모습 즉 생산된 생산수단은 자본으로 전화되고 땅은 독점된 땅으로, 토지소유로 전화된 모습,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속하는 이 모습은 생산과정 일반에 있는 생산된 생산수단과 땅의 정재 및 기능과 일치한다. 이 생산수단은 절대적으로, 본성으로 보아 자본이며 자본은 단순히 이 생산수단의 경제학적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땅도 절대적으로, 본성으로 보아 일정한 수의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독점된 땅이다. 자본과 자본가——자본가는 사실상 인격화된 자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에게 있어서 생산물이 노동자들에게 대립하는 자립적인 역량으로 되듯이 땅도 토지소유자에게서 인격화되고 또한 한사코 자립적인 역량으로서 그 도움으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자기의 몫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땅이 생산물 중에서 그에 속하는 부분을 그 생산성을 회복하고 높이기 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땅 대신에 토지소유자가 이 생산물의 한 몫을 낭비하고 써버리기 위하여 얻는다. 자본은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 못지 않게 명백한 것은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하여 노동 일반과 임금노동과의 일치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면, 자본과 독점된 땅도 노동조건들의 자연적 형태로서 노동 일반에 대립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은 이제는 노동수단의 자연적 형태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노동과정 일반에서 노동수단의 기능으로부터 생겨나는 순전히 물적인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본과 생산된 생산수단은 똑같은 표현으로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 일반과 사적 소유에 의하여 독점된 땅도 똑같은 표현으로 된다. 따라서 본성으로 보아 자본인, 노동수단으로서의 노동수단이 이윤의 원천으로 되고 땅으로서의 땅이 지대의 원천으로 된다.

노동으로서의 노동은 합목적적인 생산적 활동으로서의 단순한 규정성에서는 생산수단 즉 사회적 형태규정성에서의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재적 실체에서의 생산수단과 관련되며 노동재료와 노동수단으로서의 생산수단과 관련되는데 이 노동재료와 노동수단도 역시 소재적으로만, 사용가치로서만 서로 구별된다. 즉 땅은 생산된 것이 아닌 노동수단으로서, 그 밖의 것은 생산된 노동수단으로서 서로 구별된다. 따라서 노동이 임금노

동과 일치한다면 노동조건들이 이제는 노동과 대립하게 되는 그 규정된 사회적 형태도 노동조건들의 소재적 정제와 일치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수단은 노동수단으로서 자본이며 땅은 땅으로서 토지소유이다. 그 경우에는 노동에 대한 이 노동조건들의 형식적인 자립화, 노동조건들이 임금노동에 대립하여 취하는, 이 자립화의 특수한 형태는 물건으로서의, 물질적인 생산조건으로서의 노동조건과 떼어 수 없는 속성이며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조건에 필연적으로 속하며 내재적으로 생기는 성격이다.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의하여 규정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내에서의 노동조건들의 사회적 성격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말하자면 아득한 옛날로부터 생산과정의 요소들로서 노동조건들에 붙어 있는 물적 성격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생산과정 일반에서 노동의 첫 활동부면으로서의 자연력의 왕국으로서의, 모든 노동대상의 이미 있는 병기창으로서의 땅이 차지하는 해당한 몫과 생산된 생산수단들(도구, 원료 등)이 차지하는 해당한 몫은 자본과 토지소유로서의 그것들에 즉 그 사회적 대표자들에게 이윤(이자)과 지대의 형태로 돌아가는 각자의 몫에서 표현되는 것같이 보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몫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그리하여 지대와 이윤과 임금은 땅과 생산된 생산수단과 노동이 단순한 노동과정에서 노는 역할에서 생기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노동과정을 단순히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온갖 역사적 규정성을 무시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임금노동자의 노동을 그의 수익, 그의 소득으로서 표시하는 생산물은 임금 즉 가치(따라서 이 가치에 의하여 재어지는 사회생산물) 중 그의 임금을 표시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역시 그와 똑같은 것이고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이 노동일반과 일치한다면 임금도 노동의 생산물과 일치하고 임금이 표시하는 가치부분도 노동이 만들어낸 가치일반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그 밖의 가치부분들인 이윤과 지대도 역시 자립적으로 임금과 대립하게 되며 특수하게 노동과는 다르며 노동과는 관계없는 고유한 원천에서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이윤과 지대는 함께 작용하는 생산요소들에서 생겨나고 이 생산요소들의 소유자

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윤은 자본의 소재적 요소인 생산수단에서 생겨나고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대표하는 땅 또는 자연에서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로셔⁵⁰⁾)

그러므로 자본은 자본가가 노동에서 끌어내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윤의 형태로 그에게 주며, 토지독점은 다른 부분을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노동은 노동자에게 아직 남아 있는 마지막 가치부분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즉 가치의 일부는 이윤의 형태로 전화되고 둘째 부분은 지대의 형태로, 세째 부분은 임금의 형태로 전화되는 것을 매개하는 원천으로부터 토지소유와 자본과 임금노동은 이 가치부분들 자체와 생산물의 해당한 부분들——이 가치부분들이 그것들로 존재하거나 그것들과 전환될 수 있는——이 생겨나는 현실적 원천으로, 따라서 결국 생산물의 가치 자체가 생겨나는 원천으로 전화한다.⁵⁰⁾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심지어는 상품생산의 가장 간단한 범주들인 상품과 화폐를 연구할 때 우리는 사회적 관계——사회적 관계에서는 재부의 소재적 요소들이 생산에서 이 사회적 관계의 담당자로 된다——를 이 물건들 자체의 속성으로 전화시키며(상품), 그리고 더욱 뚜렷하게는 생산관계 자체를 물건으로 전화시키는(화폐) 신비로운 성격을 지적하였다. 모든 사회형태는 문제가 상품생산과 화폐유통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렇게 사태를 뒤집어놓는 데 한몫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또 그 지배적인 범주, 그 규정적인 생산관계를 이루는 자본에서는 이렇게 요술에 걸리고 뒤집힌 세계는 훨씬 더 발전한다. 자본을 우선 직접적인 생산과정에서——잉여노동을 짜내는 힘으로——본다면 이 관계는 아직 극히 간단하다. 그리고 실제적 연관은 이 과정의 담당자인 자본가들 자신에게 곧 안겨오며 아직 그들이 그것을 의식한다.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격렬한 투쟁은 이것을 잘 증명해 준다. 그러나 이 직접적인 분야——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진행되는 직접적 과정의

50) "임금과 이윤과 지대는 모든 소득과 모든 교환가치의 시초의 세 원천이다" (A. 스미드⁵⁰⁾). "그리하여 물질적 생산의 원인들은 동시에 현존하는 모든 기본소득의 원천이다" (슈토르흐, 『정치경제학 독본』, 제1권, 259페이지).

분야——에서조차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본래의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에서 상대적 잉여가치가 발전함에 따라——이렇게 됨으로써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발전하는 것이다——직접적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의 이 생산력과 노동의 사회적 연관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겨간 것같이 보인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본은 극히 신비로운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모든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노동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속하는 힘이며 또 자본 자체 속에서 나오는 힘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유통과정이 끼어들게 되는데 이 유통과정의 물질대사와 형태변화에는 특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이 발전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자본, 심지어는 농업자본의 모든 부분이 끌려들어온다. 이 유통과정이야말로 시초적 가치생산의 관계가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서는 분야다. 벌써 직접적 생산과정에서도 자본가는 동시에 상품생산자로서, 상품생산의 지도자로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이 생산과정은 자본가에게는 결코 단순히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이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짜냈으며 상품에 구현시킨 잉여가치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상품에 들어 있는 가치와 잉여가치는 유통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생산에 선대된 가치를 보상하는 가치와 특히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도 유통에서 실현될 뿐 아니라 유통에서 생겨나는 것같이 보인다. 이러한 외관을 특히 강화하는 사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양도이윤인데 이것은 사기, 책략, 실무지식, 숙련 그리고 한없이 달라지는 시장형편에 달려 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노동기간과 함께 두번째 규정적 요소인 유통기간이 덧붙는다는 사정이다. 이 유통기간은 물론 가치와 잉여가치의 형성의 부정적인 제한으로서 작용할 뿐이지만, 그러나 마치 그것이 노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원인인 것같이 보이며, 또 자본의 본성에서 생기고 노동과는 관계없는 규정을 가져오는 것같이 보인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제2부에서 이 유통분야를 이 분야가 낳는 일정한 형태와 관련시켜서만 서술하고 또 이 분야에서 진행되는 자본형태의 가일층의 발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분야는 개개의 경우를 보면 우연이 지배하는 경쟁의 분야이며, 따라서 거기에서

는 이 우연을 통하여 자체를 관찰하고 또 이 우연을 조절하는 내재적 법칙은 이 우연이 많이 포괄되는 경우에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서는 개개의 생산당사자들 자신은 여전히 이 법칙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또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로서의 현실적 생산과정은 새로운 형태를 낳는데 이 새 형태에서는 내적 연관의 실마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생산관계는 점점 더 서로 자립화하며 가치구성부분들은 서로 자립적인 형태들로 굳어진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화하는 것은 생산과정에 의하여서도 또 유통과정에 의하여서도 규정된다. 이윤이라는 형태의 잉여가치는 노동에 지출된 자본부분——잉여가치는 여기에서 생겨난다——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과 관련된다. 이윤율은 고유한 법칙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이 법칙은 잉여가치율이 같더라도 이윤율이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며 심지어 달라지게까지 한다.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잉여가치의 진정한 본성을 따라서 자본의 실제적 기구를 가리운다. 이러한 것은 이윤이 평균이윤으로 전화되고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시장가격의 조절적인 평균으로 전화됨으로써 더욱 심하게 된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인 자본의 균등화과정이 끼어드는데 이 과정은 상품의 상대적 평균가격을 상품의 가치와 분리시키고 서로 다른 생산분야(개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의 개별적 투자는 완전히 무시한다)의 평균이윤을 개개의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제적 착취와 분리시킨다. 그렇게 보일 뿐 아니라 이 경우에는 사실상 상품의 평균가격은 상품의 가치와 다르며 따라서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노동과 다르며 또 개개의 자본의 평균이윤은 이 자본이 고용한 노동자에게서 끌어낸 잉여가치와 다르다. 상품의 가치는 직접 다음과 같은 영향 밑에서만 나타난다. 즉 노동생산력의 변동이 생산가격의 마지막 한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격이 오르내리는 데에, 그 운동에 미치는 영향 밑에서만 나타난다. 이윤은 노동의 직접적 착취에 의해서는 부차적으로만——즉 이 착취가 자본가에게 이 착취와는 관계없는 것같이 보이는 조절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평균이윤과는 어긋나는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한에서——규정되는 것같이 보인다. 정상적인 평균이윤 자체가 자본에 내재하는 것이

고 착취와는 관계없는 것같이 보인다. 비정상적인 착취와 또 유리한 예외적인 조건하에서의 평균적인 착취는 평균이윤 자체를 낳는 조건이 아니라 평균이윤과의 배리만을 낳는 조건같이 보인다. 이윤이 기업이득과 이자로 갈라지면(유통에 기초하고 있고 전적으로 유통에서만 생겨나고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생겨나지 않는 것같이 보이는 상업이윤과 화폐거래이윤이 끼어드는 문제는 완전히 제쳐놓는다) 잉여가치의 형태는 완전히 자립화되고 잉여가치의 실체, 그 본질에 대하여 그 형태가 완전히 굳어진다. 이윤의 일부는 다른 부분에 대립하여 자본주의적 관계 자체와 완전히 분리되고 임금노동을 착취하는 기능에서가 아니라 자본가 자신의 임금노동에서 생겨나는 것같이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이자는 노동자의 임금노동과도, 자본가 자신의 노동과도 관계없이 생겨나며 그 자체의 독립적 원천으로서의 자본에서 생겨나는 것같이 보인다. 자본이 처음에는 유통의 표면에서 자본이라는 물신으로서, 가치를 낳는 가치로서 나타났다면 이제는 이자 붙는 자본의 모습에서 그것의 가장 소외되고 가장 특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또 땅—지대 및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의 세째 고리로서의 자본—이자라는 공식은 자본—이윤보다 훨씬 철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윤에서는 아직도 그 근원을 회상케 하는 흔적이 남아 있지만 이자에서는 그것이 씻은 듯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이 근원과 대립되는 형태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잉여가치의 자립적인 원천으로서의 자본과 나란히 토지소유가 나타나는데 이 토지소유는 평균이윤에 대한 제한으로 되며 잉여가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은 계급에게 넘겨주는 요인으로 된다. 즉 자신이 노동하지도 않고 노동자들을 직접 착취하지도 않으며 또 이자 붙는 자본처럼 예컨대 자본을 꾸주는 데서 생기는 위험과 회생을 무릅쓰는 도덕적으로 그럴 듯한 생각에 잠길 수도 없는 그런 계급에게 넘겨주는 요인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일부가 직접 사회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요소인 땅과 결부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서로 자립화되고 굳어지는 형태가 완성되고 그 내적 연관은 중국적으로 끊어지며 잉여가치의 원천은 바로 생산과정의 서로 다른 소재적 요소들과 결부되어 있는 생산관계가 서로 자립

화됨으로써 완전히 감추어진다.

자본—이윤 또는 더 훌륭하게는 자본—이자, 땅—지대, 노동—임금이라는 공식에서는 즉 가치 및 재부 일반의 구성부분들과 그 원천들과의 연관을 보여주는 이 경제학적 삼위일체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신비화되고 사회적 관계가 물화되며 생산의 소재적 관계가 이 관계의 역사적 사회적 규정성과 직접 하나로 결합된다. 즉 자본 씨와 땅 부인이 사회적 성격으로서, 동시에 직접 단순한 물건으로서 괴상한 짓을 하는 요술에 걸리고 뒤집혔으며 또 거꾸로 선 세계가 완성되었다. 고전경제학이 이자를 이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대를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그리하여 이 두 가지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잉여가치가 되게 함으로써 또 유통과정을 형태들의 단순한 형태변화로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를 노동에 귀착시킴으로써, 이상과 같은 그릇된 외관과 환상을 부숴버리고, 재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자립화되고 굳어진 것을 부숴버리며, 사물들의 인격화와 생산관계의 물화를 부숴버리며, 일상생활의 이 종교를 부숴버린 것은 고전경제학의 큰 공적이다. 그러나 고전경제학의 가장 훌륭한 대변자들까지도——부르조아적 관점에서는 달리 될 수 없는 일이지만——그들이 비판적으로 부숴버린 외관의 세계에 많건 적건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며, 따라서 모두가 많건 적건 불철저성, 도중하차, 풀리지 않은 모순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 실제적인 생산당사자들이 자본—이자, 땅—지대, 노동—임금이라는 이러한 소외되고 불합리한 형태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러한 외관의 형태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들을 늘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적 생산당사자들의 평범한 관념을 교사처럼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 관념들에 어떤 분별있는 질서를 세운 데 지나지 않는 속류경제학이 온갖 내적 연관이 사라진 바로 이 삼위일체에서 헛된 자기 만족을 위한 자연적이며 조금도 의심할 여지없는 기초를 발견한다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 이 공식은 동시에 지배계급들의 이해관계에도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소득원천의 자연적 필연성과 영원한

정당성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나의 교조에까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관계의 물화와 생산당사자들에 대한 생산관계의 자립화를 설명하는 데서는 세계시장, 그 정형, 시장가격의 운동, 신용기간, 공업과 상업의 경기순환, 번영과 공황의 교체 등으로 해서 어떻게 이 상호관련이 생산당사자에게 맹목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항거할 수 없는 자연법칙으로 보이며 그들에게 맹목적인 필연성으로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경쟁의 실제적 운동은 우리의 계획 밖의 일이며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부조직을, 말하자면 그것의 관념적인 평균형에서만 서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사회형태들에서는 이 경제학적 신비화는 주로 화폐와 이자 붙는 자본과 관련해서만 생긴다. 이러한 신비화는 사태의 본성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다. 즉 첫째로는 사용가치, 직접적인 자기수요를 위한 생산이 우세한 경우이며, 둘째로는 고대 및 중세기에서와 같이 노예제도 또는 농노제도가 사회적 생산의 광범한 기초로 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생산자들에 대한 생산조건들의 지배는 지배 및 예속관계——이것은 생산과정의 직접적인 추진력으로 나타나며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에 의하여 가리워져 있다. 원시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원시공동체에서는 또 고대 도시공동체에서까지도 이 공동체가 자체가 그 조건들과 함께 생산의 기초로서 나타나며 또한 이 공동체의 재생산이 생산의 종국적 목적으로서 나타난다. 중세기의 동업조합들에서조차 자본도 노동도 구속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그것들의 관계는 조합제도 및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들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이 관계들에 상응하는 직업상 의무, 장주제도 등에 관한 관념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비로소 ... *

* 여기에서 원고는 끊어지고 있다. 편집부.

제 49 장 생산과정의 분석

이제부터 하는 연구에서는 생산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그것은 이 경우와 같이 한 해 총노동생산물 따라서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의 가치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이 차이는 일반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윤(기업이득 더하기 이자)과 지대는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개개의 부분들이 얻는 독특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잉여가치의 크기는 잉여가치가 갈라질 수 있는 부분들의 전체 크기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평균이윤 더하기 지대는 잉여가치와 같다.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노동 따라서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직접으로는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되는 데 참가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상품가치 일반의 일부분은 해당 상품의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로 가치 이하로 팔린 상품이 불변자본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이윤율이 늘므로써 또는 가치 이하로 팔린 상품이 개인소비품으로서 가치 중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윤과 지대가 더 많은 생산물로 표시됨으로써 상쇄된다. 그러나 둘째로 가치로부터의 가격의 이러한 배리는 평균하여 보면 없어진다. 어쨌든 상품의 가격에 나타나지 않은 잉여가치 부분이 가격형성에서 없어진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평균이윤 더하기 지대의 총액은 그 정상적인 형태에서는 총잉여가치보다 적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클 수는 없다. 그것의 정상적인 형태는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전제로 한다. 독점지대조차도 그것이 임금에서 떼낸 것이 아니고 따라서 특수한 범주를 이루지 않는 한에서는 간접적으로 언제나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루지 않을 수 없다. 즉 독점지대가(차액지대의 경우와 같이) 그것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상품 자체의 생산가격을 넘는 가격초과분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독점지대가(절

대지대의 경우와 같이) 그것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상품 자체의 초과잉여 가치——그 상품 자체의 잉여가치 중 평균이윤에 의하여 재어지는 부분을 넘는 초과부분——를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점지대는 다른 상품들 즉 독점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상품과 교환되는 상품들이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룬다. 평균이윤 더하기 지대의 총액은, 평균이윤과 지대가 그 부분들을 이루고 있으며 또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크기보다 결코 더 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품의 전체 잉여가치 즉 상품에 들어있는 전체 잉여노동이 상품의 가격에서 실현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이 늘 달라지는——노동생산력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다——조건에서 상품의 일부는 항상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생산되며 따라서 그 상품은 개별적 가치 이하로 팔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도 잉여노동은 전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윤·더하기 지대는 실현된 전체 잉여가치(잉여노동)와 같고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연구에서는 실현된 잉여가치는 전체 잉여가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윤과 지대는 실현된 잉여가치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에 들어가는 잉여가치이고 따라서 실제로 이 가격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전체 잉여가치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의 세번째의 독특한 형태를 이루는 임금도 언제나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과 같다. 즉 노동수단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산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지출되고 노동자들의 보수를 지불하는 데 지출되는 구성부분과 같다(소득을 지출할 때 지불을 받는 노동은 임금용 자금, 이윤 또는 지대 중에서 지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노동에 대한 지불에 사용되는 상품의 가치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노동은 상품가치를 분석하며 또 이 상품가치가 갈라져서 이루어지는 구성부분들을 분석할 때에는 고려에 넣지 않는다). 가변자본의 가치 따라서 노동의 가격은 노동자의 대량화된 노동일의 일부분에서 즉 상품가치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 또는 자기 노동의 가격을 재생산하는 부분에서 재생산된다. 노동자의 총노동일은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 한 부분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활수단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

한 양의 노동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그의 총노동 중 지불되는 부분이고 그의 노동 중 그 자신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노동일의 나머지 부분 전체,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가치에 실현된 노동 아상으로 수행하는 전체 초과노동량은 잉여노동, 부지불노동이며 이 노동은 그의 온 상품생산의 잉여가치에서(따라서 초과량의 상품에서) 표현되고 잉여가치는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부분들로, 이윤(기업이득 더하기 이자) 및 지대로 갈라진다.

따라서 상품가치 중 하루 또는 한 해 동안에 첨가되는 노동자의 전체 노동이 실현되는 전체 부분, 이 노동이 만들어내는 한 해 생산물의 총가치는 임금의 가치, 이윤 및 지대로 갈라진다. 왜냐하면 이 총노동은 생산물가치 중 노동자 자신이 지불 받는 부분 즉 임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필요노동과 생산물가치 중 잉여가치를 표시하며 나중에 이윤과 지대로 갈라지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의 부지불잉여노동으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이 노동 밖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으며 임금, 이윤, 지대의 형태를 얻는 생산물가치 밖에는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노동자가 한 해 동안에 새로 첨가하는 노동이 표시되는 한 해 생산물의 가치는 임금 또는 가변자본의 가치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으며 잉여가치는 다시 이윤과 지대의 형태로 갈라진다.

따라서 한 해 생산물의 총가치 중 노동자가 한 해 동안에 만들어내는 부분은 세 가지 소득인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가치의 한 해 총액에 표현된다. 그러므로 명백히 한 해 동안에 만들어내는 생산물가치에는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는 재생산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임금은 생산에 선대된 자본의 가변부분의 가치와 같을 따름이며 지대와 이윤은 선대자본의 전체 가치——불변자본의 가치 더하기 가변자본의 가치와 같은——이상으로 생산된 가치초과분인 잉여가치와 같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윤과 지대의 형태로 전화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소득으로서 소비되지 않고 축적하는 데 쓰인다는 사정은 여기에서 해결해야 할 곤란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잉여가치 중 축적의 밑천으로서 저축되는 부분은 새로운 추가자본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낡은 자본을 보상하는 데는——노동력에 지출된 구성부분을 보상하는 대도, 노동수단에 지출된 구성부

분을 보상하는 데도——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은 모두 개인적 소비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곤란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이 소득들 즉 임금, 이윤, 지대가 소비되는 한 해 생산물의 가치에는 한 해 생산물에 들어간 불변자본부분의 가치와 같은 일정한 가치부분이 들어 있다. 거기에는 분해되어 임금으로 되는 가치부분과 이윤과 지대로 되는 가치부분 외에 이 가치부분이 들어 있다. 따라서 한 해 생산물의 가치=임금+이윤+지대+C인데 C는 한 해 생산물의 불변가치부분을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임금+이윤+지대와 같은 따름인 한 해 동안에 생산된 가치가 (임금+이윤+지대)+C의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한 해 동안에 생산된 가치가 그 자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생산물을 살 수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불변자본 중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따라서 가치는 줄었지만 상품을 한 해 동안 생산한 후에도 여전히 계속 존재하는 부분을 제쳐놓는다면, 따라서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소비되지는 않은 고정자본을 잠시 사상한다면, 선대자본 중 원료와 보조자재의 형태를 가진 불변부분은 전부 새로운 생산물에 들어갔는데 노동수단의 일부는 전부 소비되고 다른 부분은 부분적으로 소비되었을 따름이며 그리하여 그 가치의 일부만이 생산에서 소비되었다. 불변자본 중 생산에서 소비된 이 부분은 전부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모든 사정들 특히 노동생산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제한다면 그 부분을 보상하는 데는 전과 같은 노동량이 든다. 즉 그 부분은 같은 크기의 가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재생산 자체가 전과 같은 규모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이 노동을 해야 하며 또 누가 이 노동을 하는가?

생산물에 들어 있는 불변가치부분을 누가 그리고 무엇으로써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첫째 곤란에 있어서는,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부분으로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이것은 둘째 곤란의 전제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제1권, 제5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에서 낡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치에 대한 첨가분을 만들어낼 따름이며, 추가적 가치를 만들어낼 따름

인 새로운 노동이 단순히 첨가됨으로써 어떻게 동시에 낡은 가치가 생산물 중에 유지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인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한에서의 노동 즉 노동 일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생산적 노동으로서 기능을 하는 한에서의 노동에 의해서이다. 그리하여 소득이 즉 한 해 동안에 만들어진 전체 가치가 지출되는 생산물에서 불변부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추가노동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물론 지난해에 그 가치와 사용가치가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가노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상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새로 덧붙는 전체 노동은 한 해 동안에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서 표시되며 이 가치는 또 모두 세 종류의 소득 즉 임금과 이윤과 지대로 전화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소비된 불변자본을 — 부분적으로는 현물로 또 가치상으로 복구해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가치상으로만(단순히 고정자본의 마멸분만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 복구해야 한다 — 보상하기 위한 여분의 사회적 노동은 남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해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며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형태로 갈라지고 이러한 형태로 지출되어야 할 가치는, 새로 만들어진 가치 이상으로 생산물에 들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불변자본부분의 값을 지불하거나 또는 그 부분을 사들이기에는 부족한 것같이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나서는 문제는 이미 제2권,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을 연구할 때에 해결되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우선 거기에서는 잉여가치는 아직 그 소득형태들인 이윤(기업이득 더하기 이자)과 지대의 형편에서 전개되지 않았고 따라서 또 이러한 형태에서는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는 또 A. 스미드 이래의 전체 정치경제학의 믿기 어려운 만한 오류는 바로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형태의 분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전체 자본을 2대 부류로 즉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I 부류와 개인소비품을 생산하는 II 부류로 나누었다. 일부 생산물은 생산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고 개인소비에도 쓰일 수 있다(말, 곡물 등)는 사정은 이 분할의 절대적 정당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이 분할은

사실상 가설이 아니라 사실의 표현일 따름이다. 한 나라의 한 해 생산물을 들어보자. 이 생산물의 일부는 그것이 아무리 생산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 소비에 들어간다. 이것은 임금과 이윤과 지대가 지출되는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은 사회적 자본의 일정한 부류의 생산물이다. 이 똑같은 자본은 I 부류에 속하는 생산물도 생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한에서는 생산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I 부류의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 자본 중 II 부류의 생산물에——실제로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는 생산물에——소비되는 부분이 아니다.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며 따라서 소득이 지출되는 대상인 II 부류의 전체 생산물은 그것에 소비된 자본 더하기 생산된 초과분의 정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다만 소비품생산에만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이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한 해 생산물 중 재생산의 수단으로 쓰이는 I 부류——원료와 노동도구——는 이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현물적으로는 소비품으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만 생산수단 생산에만 투하된 자본의 생산물이다. 불변자본을 이루는 비할 바 없이 많은 생산물부분은 소재상으로도 그것이 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의 생산물이 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농민이 자기의 종곡을 먹어버리거나 자기의 부림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은 경제적 필요성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마치 소비할 수 없는 형태에 있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두 부류를 살펴볼 때에는 불변자본 중 두 부류의 한 해 생산물과는 관계없이 현물로 또 가치상으로 계속 존재하는 고정부분은 무시한다.

임금과 이윤과 지대가 그 생산물로 지출되는, 간단히 말해서 소득이 그 생산물로 소비되는 II 부류에서는 생산물은 가치로 보아 그 자체가 세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한 구성부분은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 부분의 가치와 같으며, 둘째 구성부분은 생산에 선대된 가변자본부분 즉 임금에 지출된 부분의 가치와 같으며, 끝으로 세째 구성부분은 생산된 잉여가치 즉 이윤+지대와 같다. II 부류의 생산물의 첫째 구성부분인 불변자본부분의 가치는 II 부류의 자본가도 노동자도 또는 토지소유자도

소비할 수 없다. 이 구성부분은 그들의 소득의 어떤 부분도 이루지 않으며 그것은 현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보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팔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 생산물의 다른 두 구성부분은 이 부류에서 생산된 소득=임금+이윤+지대의 가치와 같다.

I 부류에서도 생산물은 형태상으로 보면 이와 똑같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득인 임금+이윤+지대, 간단히 말해서 가변자본부분+잉여가치를 이루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 I 부류의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II 부류의 생산물의 형태로 소비된다. 따라서 I 부류의 소득의 가치는 II 부류의 생산물 중에서 보상되어야 할 이 부류의 불변자본을 이루는 부분으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II 부류의 생산물 중에서 II 부류의 불변자본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은 그 현물형태로 I 부류의 노동자와 자본가와 토지소유자가 소비한다. 그들은 자기 소득을 II 부류의 이 생산물에 지출한다. 다른 한편으로 I 부류의 생산물은 그것이 I 부류의 소득을 대표하는 한에서는 그 현물형태로 II 부류에 의하여 생산적으로 소비되며 II 부류의 불변자본을 현물로 보상한다. 끝으로 I 부류의 소비된 불변자본은 바로 노동수단과 원료와 보조자재로 이루어지는 이 부류 자체의 생산물로 보상되는데, 일부분은 I 부류의 자본가들이 서로 교환함으로써 보상되며 일부분은 이 자본가들의 일부가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직접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적용할 수 있음으로 하여 보상된다.

단순재생산의 이전의 도식(제2권, 제20장, 제2절)을 들어보자.⁹⁷

$$\begin{array}{l} \text{I. } 4,000c + 1,000v + 1,000m = 6,000 \\ \text{II. } 2,000c + 500v + 500m = 3,000 \end{array} \left. \vphantom{\begin{array}{l} \text{I. } 4,000c + 1,000v + 1,000m = 6,000 \\ \text{II. } 2,000c + 500v + 500m = 3,000 \end{array}} \right\} 9,000$$

이 도식에 의하면 II 부류에서는 생산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이 $500v + 500m = 1,000$ 을 소득으로서 소비하고 보상될 $2,000c$ 가 남는다. 이것은 I 부류의 노동자와 자본가와 지대수득자가 소비하는데 그들의 소득은 $1,000v + 1,000m = 2,000$ 이다. 소비되는 II 부류의 생산물은 I 부류의 소득으로서 소비되며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없는 생산물로 표시되는 I 부류의 소득

부분은 II부류의 불변자본으로서 소비된다. 따라서 나머지 처리해야 할 것은 I부류의 4,000c이다. 이것은 I부류 자체의 생산물=6,000에 의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6,000-2,000에 의하여 보상된다. 왜냐하면 이 2,000은 이미 II부류를 위한 불변자본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숫자들은 물론 마음 내키는 대로 든 것이고 따라서 I부류의 소득의 가치와 II부류의 불변자본의 가치와의 비례도 마음내키는 대로 든 것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산과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정들이 같은 조건하에서 따라서 축적을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I부류의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가치총액은 II부류의 불변자본부분의 가치와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다면 II부류가 자기의 불변자본을 보상할 수 없거나 I부류가 자기의 소득을 소비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 해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개개의 투자의 상품생산물의 가치와 꼭 마찬가지로, 또 개개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두 가치구성부분으로 갈라진다. 즉 선대된 불변자본의 가치를 보상하는 A와 소득의 형태로 임금과 이윤과 지대로서 나타나는 B로 갈라진다. 이 가치구성부분 B는 A가 다른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 1) 소득의 형태를 결코 취하지 않고 2) 항상 자본, 그것도 불변자본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한에서는 A에 대한 대립을 이룬다. 그러나 다른 구성부분 B는 또 그 자체에 대립이 들어 있다. 이윤과 지대는 임금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것이 모두 소득형태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윤과 지대에서는 잉여가치 즉 부지불노동이 표시되고 임금에서는 지불노동이 표시된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생산물가치 중 지출된 임금을 표시하며 즉 임금을 보상하며 그리고 재생산이 같은 규모에서 또 같은 조건하에서 진행된다는 우리의 전제하에서는 다시 임금으로 전화되는 부분은 우선 가변자본으로서, 재생산에 다시 선대되어야 할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되돌아온다. 이 구성부분은 두 가지로 기능을 한다. 그것은 우선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자본으로서 노동력과 교환된다. 그것은 노동자의 손에서는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얻는 소득으로 전화되며 소득으로서 생산수단과 교환되어 소비된다. 이 두 가지 과정은 화폐유통을 거쳐

서 나타난다. 가변자본은 화폐로 선대되고 임금으로 지불된다. 이것은 자본으로서의 가변자본의 첫째 기능이다. 가변자본은 노동력과 교환되고 이 노동력의 발현인 노동으로 전화된다. 이것은 자본가를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화폐로써 노동자들은 자기의 상품생산물 중 이 화폐에 의하여 재어지는 부분을 사서 그것을 소득으로서 소비한다. 우리가 화폐유통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노동자의 생산물의 일부는 현존자본의 형태로 자본가의 손에 있다. 자본가는 이 부분을 자본으로서 선대하며 새로운 노동력의 댓가로 그것을 노동자에게 주는데, 노동자는 그것을 직접 또는 다른 상품과 교환하여 소득으로서 소비한다. 그러므로 생산물가치 중 재생산에서 임금으로 즉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으로 전화되어야 할 부분은 우선 자본의 형태로, 더 정확히 말하면 가변자본의 형태로 자본가의 손에 되돌아온다. 그 부분이 이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노동은 임금노동으로서, 생산수단은 자본으로서, 또 생산과정 자체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으로서 끊임없이 새로 재생산되는 데서 본질적인 조건이다.

쓸데없는 곤란에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총수익 및 순수익을 총소득 및 순소득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총수익 또는 총생산물은 재생산된 생산물 전체이다. 고정자본 중에서 적용되기는 하였으나 소비되지는 않은 부분을 빼놓으면 총수익 또는 총생산물의 가치는 선대되어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에 이윤과 지대로 갈라지는 잉여가치를 더한 것과 같다. 또는 하나하나의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생산물을 본다면 총수익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이루는 소재적 요소들에 이윤과 지대를 표시하는 잉여가치의 소재적 요소들을 더한 것과 같다.

총소득이란 총생산물 중에서 선대되어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가치부분 그리고 이 가치부분에 의하여 재어지는 생산물부분을 빼고 남는 가치부분 및 이 가치부분에 의하여 재어지는 생산물부분이다. 따라서 총소득은 임금(또는 다시 노동자의 소득으로 되어야 할 생산물부분) + 이윤 + 지대와 같다. 이와는 반대로 순소득은 잉여가치 따라서 임금을 빼고 남는 잉여생산물이며 따라서 사실상 자본이 실현하여 토지소유자와 나누어야 할 잉여가치와 이 잉여가치에 의하여 재어지는 잉여생산

물을 표시한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개개 상품의 가치와 개개 자본의 전체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단순히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한 부분이 가변자본으로서 되돌아오며 따라서 또 자본의 형태로 되돌아오지만 그러나 전부 총소득으로 전화되어 임금과 이윤과 지대——이것들의 총액이 총소득을 이룬다——의 형태를 취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사회의 한 해 총생산물의 가치에 관해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개별적 자본가의 생산물과 사회의 생산물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점뿐이다. 개별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순소득과 총소득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총소득에는 임금이 포함되지만 순소득에는 임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사회의 소득을 보면 국민소득은 임금 더하기 이윤 더하기 지대 즉 총소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추상이다. 왜냐하면 전체 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기초해서는 자본주의적 관점에 서는 것이고 따라서 이윤과 지대로 갈라지는 소득만을 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예컨대 세이 씨의 경우와 같이 전체 수익, 전체 총생산물은 한 국민으로 보면 결국 순수익으로 된다는 또는 순수익과 차이가 없다는 환상, 따라서 이 차이는 국민적 관점에서는 없어진다는 환상은, 상품의 가치는 결국은 전부 소득으로 즉 임금과 이윤과 지대로 갈라진다는, A. 스미드 때부터 모든 정치경제학에 일관되어 있는 불합리한 교조의 필연적이며 극단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⁵¹⁾

51) 리카아도는 분별없는 세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다. “순생산물과 총생산물에 대하여 세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된 전체 가치는 총생산물이다. 이 가치는 거기에서 생산비를 빼면 순생산물이다’(제2권, 491페이지).” 그러므로 순생산물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비는 세이 씨에 의하면 지대와 임금과 이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08페이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물의 가치, 생산적 봉사의 가치, 생산비의 가치는 모두 사물을 그 자연적 과정에 내버려둔다면 비슷한 가치들이다.’ 전체에서 전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리카아도,

개개 자본가의 경우에는 그의 생산물의 일부가 다시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확대재생산 또는 축적을 제쳐놓더라도), 그것도 그 자체가 다시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즉 소득형태로 전화되어야 할 가변자본으로 전화될 뿐 아니라, 결코 소득으로 전화될 수 없는 불변자본으로도 다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물론 이해하기 힘들지 않다. 생산과정을 아주 간단히 보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똑똑히 알 수 있다. 생산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로소 곤란이 시작된다. 소득으로서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형태로 소비되는(개인적으로 소비되든 생산적으로 소비되든 그것은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다) 생산물부분 전체의 가치는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전적으로 임금 더하기 이윤 더하기 지대로써 이루어지는 가치 총액 즉 세 가지 소득의 총가치와 같다. 그러나 물론 이 생산물부분의 가치에는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들어 있는 불변자본의 가치인 C와 같은 가치부분이 들어 있으며 따라서 명백히 그것은 소득의 가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한편으로는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 한편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는 이론적 모순인데 이와 같은 사정이 곤란을 빚어낸다. 그런데 겉보기로만, 개별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에만 상품가치에는 소득형태로 존재하는 부분과 구별되는 그 어떤 다른 가치부분이 들어 있다는 주장으로써 이 곤란을 가장 쉽게 회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본으로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득으로 된다”는 판에 박힌 문구는 그 이상의 아무런 사고도 필요없게 한다. 전체 생산물의 가치를 소득의 형태로 소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낡은 자본을 보상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개개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가 세 가

「원리」, 제32장, 512페이지, 주).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듯이 리카아도도 상품가격을 소득들의 가치 총액으로 갈라놓는 A. 스미스의 그릇된 상품가격 분석을 결코 반박한 일이 없다. 그는 이 그릇된 분석이 마음에 걸리지지도 않으며 상품의 불변가치부분을 사상하는 한에서는 자기의 분석에서 이 그릇된 분석을 옳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도 때때로 똑같은 사고방식에 되돌아가고 있다.

지 소득의 가치 더하기 0의 총액과 같을 수 있는가——이 모든 것은 물론 이 경우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분석은 가격의 간단한 요소들을 결코 해명할 수 없고 오히려 순환론에 빠져서 한정없이 문제의 해결을 미루는 것으로써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변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임금, 이윤, 지대로 갈라질 수 있으나 임금, 이윤, 지대가 표시되는 상품가치는 이번에는 다시 임금, 이윤, 지대에 의하여 규정되고 그리하여 한정없이 이렇게 계속된다.⁵²⁾

상품의 가치는 결국 임금+이윤+지대로 갈라질 수 있다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교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즉 결국은 소비자가 총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화폐유통은 결국은 생산자 자신들 사이의 화폐유통과 같은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투크⁹⁹⁾)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제들은 모두 그것들이 의거하고 있는 기본명제와 마찬가지로 그릇된 것이다.

- 52) “어느 사회에서나 개개 상품의 가격은 결국 이 세 부분(즉 임금, 이윤, 지대)의 이것이나 저것 또는 셋 전체로 분해된다. …네제 부분이 차지농업가의 자본을 보상하기 위하여 또는 그의 부림짐승 또는 그 밖의 농기구의 마멸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어떤 농기구, 예컨대 부림말의 가격도 그 자체가 위에서 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말을 기르는 땅의 지대, 말을 기르는 노동, 그리고 이 땅의 지대와 이 노동에 대한 임금을 선대하는 차지농업가의 이윤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곡물의 가격은 말의 가격도, 말의 유지비도 지불해야 하지만 그러나 전체 가격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결국은 지대, 노동(임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및 이윤이라는 이 세 부분으로 갈라진다”(A. 스미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런던, 1776년, 60~61페이지)).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A. 스미드 자신이 이러한 평계의 모순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 왜 평계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생산물의 가격이 결국은 남김없이 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 실체적인 투자를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평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그릇되고 또 명백히 불합리한 분석에 이르게 하는 곤란은 요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근본관계를 알지 못하며 따라서 또 잉여가치의 본성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체 기초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개개 생산물, 개개 상품의 가치에는 불변자본과 같은 가치부분, 가변자본(노동자의 임금으로 전화되는)과 같은 가치부분 및 잉여가치(후에 이윤과 지대로 갈라지는)와 같은 가치부분이 들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기 임금으로, 자본가는 자기 이윤으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지대로 어떻게 상품을 즉 그 하나하나에 이 구성부분 중의 하나뿐 아니라 셋이 다 들어 있는 그런 상품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임금, 이윤, 지대의 총액 따라서 소득의 세 개 원천 전체의 가치의 총액이 이 소득들을 받는 자들의 전체 소비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세 가치구성부분뿐 아니라 또 하나의 가치구성부분 즉 불변자본이 들어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가치로써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가치를 살 수 있는가?⁵³⁾

53) 프루동은 이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공식으로써 발로시키고 있다. 즉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되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생산물에는 생산물의 원가에 덧붙는 이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¹⁰⁹ 그러나 에제느 포르카드 씨는 어떻게 프루동을 가르치고 있는가? “프루동의 반박이 옳다면 그것은 자본의 이윤과 관계될 뿐 아니라 산업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만약 노동자가 그 댓가로 80파에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100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면, 만약 임금이 어떤 생산물에서 그 임금 자체가 그 생산물에 집어넣은 가치밖에 되살 수 없다면 이것은 노동자가 아무 것도 되살 수 없으며 임금이 아무 것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실상 원가에는 언제나 노동자의 임금 이상의 것이 들어 있으며, 판매가격에는 기업가의 이윤 이상의 것 예컨대 원료의 가격——흔히 외국에 지불하는——이 들어 있다. …프루동은 국민적 자본이 끊임없이 불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노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어난다는 것 즉 기업가에게 있어서나 노동자에게 있어서나 다 이렇게 불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친구대륙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2권, 제3편에서 분석하였다.

2) 어떻게, 또 왜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덧붙임으로써 낡은 가치를— 그것을 새로 생산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개별적 자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총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재생산 과정의 일반적 연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과 잉여가치가 실현되며 따라서 한 해 동안에 새로 덧붙은 노동이 만들어내는 전체 가치가 실현되는 생산물이 어떻게 자체의 불변 가치부분을 보상하며 그리면서 동시에 소득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가치로 갈라질 수 있는가 하는 곤란, 그리고 또 새로 덧붙은 노동 전체는 임금과 잉여가치로만 실현되고 이 두 가치의 총액에서 남김없이 표시됨에도

평론』, 1848년, 제24권, 998~999페이지), 이것이야말로 부르조아적 압둔의 낙천주의가 거기에 가장 알맞는 지혜의 형태를 취한 본보기이다. 첫째로, 포르카드 씨는 노동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가치 이외에 더 높은 가치를 받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를 실제로 노동자가 다 받는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로, 포르카드 씨는 프루동이 그렇게 좁은 관점에서 내놓은 곤란을 아주 옹계 일반화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에는 임금을 넘는 초과분뿐 아니라 이윤을 넘는 초과분도 즉 불변가치부분도 들어 있다. 따라서 프루동의 이치대로 한다면 자본가도 그의 이윤으로 상품을 되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포르카드는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자본이 불어난다는 무의미한 문구로써 풀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 끊임없이 불어난다는 것은 특히 자본이 100인 경우에는 경제학자에게 불가능한 상품가격의 분석이 자본이 10,000인 경우에는 쓸데없는 것으로 된다는 데서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농산물에는 토지에 들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탄소가 들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불어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화학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부르조아 세계를 모든 있을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세계로 보려는 선의에서 나오는 희망이 속류경제학에서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과학연구심의 모든 필요성을 대신한다.

불구하고 어떻게 생산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이 소재상으로 또 가치상으로 새로운 것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가 하는 곤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재생산의 분석과 재생산의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 즉 그것들의 소재적 성격과 가치관계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서 주되는 곤란이 있다.

4)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곤란이 덧붙는데 이 곤란은 잉여가치의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이 서로 자립적인 소득의 형태로 나타나기만 하면 더욱 심하게 된다. 이 곤란은 소득과 자본이라는 확고한 규정들이 서로 바뀌고 그 위치가 달라지며, 그리하여 이 규정들은 개별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총생산과정을 볼 때에는 없어지는 것같이 보이는 데 있다. 예컨대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I 부류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은 소비품을 생산하는 II 부류의 자본가들의 불변자본을 가치상으로 또 소재상으로 보상한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는 소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본이며, 따라서 이 규정들은 상품가치의 구성부분의 실제적 자립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관념에 의하여 곤란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소득이 지출되는 소재적 요소들 즉 소비품을 형성할 사명을 가진 상품들은 예컨대 털실, 모직물과 같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것들은 한 단계에서는 불변자본의 일부를 이루며 다른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모두 소득에 들어간다. 따라서 A, 스미드와 같이 불변자본은 총연관에서는 없어지고마는 상품가치의 가상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변자본과 소득의 교환이 진행된다. 노동자는 상품 중에서 자기의 소득을 이루는 부분을 자기의 임금으로 산다. 이렇게 하여 그는 동시에 자본가를 위하여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를 보상한다. 끝으로 생산물 중에서 불변자본을 이루는 부분은 현물로 또는 불변자본의 생산자 자신들 사이에서의 교환을 통하여 보상된다. 이것은 소비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과정이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소득이 전체 생산물을 따라서 불변가치부분도 보상한다는 그릇된 관념이 생길 수 있다.

5)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 외에도 또 하나

의 혼란이 생기는데, 그것은 잉여가치가 특수하고 서로 자립적이며 또 서로 다른 생산요소와 관련되는 서로 다른 소득형태인 이윤과 지대로 전화하기 때문에 생긴다. 상품의 가치가 기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며, 또 이 상품가치가 특수한 구성부분들로 갈라진다는 것, 또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소득형태들로 더욱 발전한다는 것,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가치구성부분들과, 서로 다른 생산요인의 서로 다른 소유자들과의 관계로 전화한다는 것, 일정한 범주와 정의에 따라 이 소유자들 사이에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분배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치규정과 가치규정의 법칙 자체가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윤의 균등화 즉 서로 다른 자본들 사이에서의 전체 잉여가치의 분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절대지대에서) 토지소유가 이러한 균등화를 가로막는 장애로 되기 때문에, 상품의 조절적 평균가격이 상품의 개별적 가치와 어긋나게 된다는 사정에 의하여도 역시 가치법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정은 또한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에 덧붙는 잉여가치의 크기에 영향을 줄 따름이지 잉여가치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이 여러 가지 가격구성부분들의 원천으로서의 상품들의 총가치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혼동인데 이 혼동은 필연적으로 가치가 그 자체의 구성부분들에서 생겨나는 듯한 허울과 관련되어 있다. 즉 우선 상품가치의 여러 가지 구성부분은 소득들에서 자립적 형태를 가지게 되며, 또 그러한 소득들로서 그 원천으로서의 상품의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천으로서의 개개의 소재적 생산요소들과 관련된다. 상품가치의 구성부분을 이러한 특수한 원천들과 실제로 관련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가치구성부분들로서가 아니라 소득들로서 관련시키고 있으며, 이 규정된 범주의 생산당사자들인 노동자와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가치구성부분들로서 관련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상품가치가 갈라져서 이 가치구성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들이 결합되어 상품가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상품가치는 임금, 이윤, 지대의 가치 총액에서 생겨나고 임금, 이윤, 지대의 가치는 또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등의

훌륭한 순환론이 나오는 것이다.⁵⁴⁾

- 54) “재료와 원료와 완성품에 지출되는 유동자본은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필요가격을 가진 상품들로써 구성된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상품 전체를 고찰할 때에 유동자본의 이 부분을 필요가격의 요소에 넣는다면 이중계산으로 될 것이다” (슈토르흐, 『정치경제학 독본』, 제2권, 140페이지). 슈토르흐는 유동자본의 이 요소들을(고정자본은 형태를 바꾼 유동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불변가치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과 또 기업가의 이윤 중 임금——이것을 생활수단의 일부라고 본다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들 즉 시장가격으로 사며 역시 임금, 자본세[이자], 지대 및 기업이익이 들어 있는 상품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러한 판단은 필요가격을 그것의 가장 간단한 요소들로 갈라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으로 될 따름이다” (같은 책, 주). 슈토르흐는 자기의 저서 『국민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파리, 1824년)에서는 세이와의 그의 논쟁에서 물론 상품가치를 소득들로만 갈라내는 그릇된 상품가치분석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결론들이 황당하다는 것을—— 개별적 자본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 자신 필요가격의 분석에서는 일보도 전진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가격에 대하여는 이것을 끝없는 순환론에 빠지지 않으면서 실제적 요소들로 갈라낼 수는 없다고 자기의 『독본』에서 언명하고 있다. “한 해 생산물의 가치는 자본에 대한 부분과 이윤에 대한 부분으로 갈라진다는 것 그리고 한 해 생산물의 이 가치부분들은 각각 국민이 그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그의 소비의 밑천을 갹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물을 규칙적으로 사들인다는 것은 명백하다(134, 135페이지). …그들(자기 노동에 의하여 살아가는 농민가족)은 자기 곡간과 외양간에서 살고 자기 종곡과 집짐승의 먹이를 먹고 자기 집짐승으로 옷을 해입고 자기 농기구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가? 세이 씨의 명제에 의하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135, 136페이지). …국민의 소득이 그들의 총생산물과 같다는 것 즉 총생산물에서 자본을 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민은 자기들의 장래의 소득에 조금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 자기들의 한 해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147페이지). 국민의 자본을 이루는 생산물은 소비될 수 없는 것이다”(150페이지).

재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새로 덧붙는 노동의 일부만이 불변자본의 생산 따라서 보상에 사용된다. 즉 소득의 소재적 요소인 소비품의 생산에 소비된 불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II부류가 이 불변부분에 아무런 추가적 노동도 들이지 않음으로써 상쇄된다. 그러나(전체 재생산과정 따라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I부류와 II부류의 상쇄를 포함하는 전체 재생산과정을 본다면) 새로 덧붙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비록 이 생산물은 불변자본 없이는 생산될 수 없겠지만——이 불변자본은 소재상으로 보면 재생산과정 중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우연과 위험에 처하게 된다(그리고 또 가치상으로 보아도 불변자본은 노동생산력이 달라지는 결과로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 자본가들에게만 관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윤 따라서 잉여가치 따라서 또 잉여생산물——새로 덧붙는 노동만을(가치상으로 보아) 표시하는——의 일부는 보험의 밑천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 이 보험의 밑천을 개별적 기업으로서의 보험회사가 관리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사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득 중에서 소득으로서 소비되지도 않고 또 반드시 축적의 밑천으로 쓰이지도 않는 유일한 부분이다. 이것이 실제로 축적의 밑천으로 쓰이는가 또는 재생산의 결손을 메울 따름인가 하는 것은 우연에 달려 있다. 이것은 또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 중에서 따라서 잉여노동 중에서 축적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확대에 쓰이는 부분과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없애버린 후에도 계속 있어야 할 유일한 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 생산자들이 규칙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이 오늘날과 같은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이 때문에 생산에 아직 참가 못하거나 또는 더 이상 참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잉여노동을 제외하고는 일하지 않는 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한 노동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인류사회가 생겨난 첫 시기를 돌이켜보면 여기에는 생산된 생산수단은 아직 없고 따라서 불변자본——그 가치가 생산물에 들어가고 같은 규모로 재생산하려면 그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정도로 생산물 중에서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변자본——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연이 직접 생활수단을 주며 이것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

리므로 자연은 또 얼마 안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는 개개인에게 시간을 주는데,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새로운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있는 생활수단을 얻는 데 드는 노동 이외에 다른 자연의 생산물들을 활, 돌칼, 작은 배 등과 같은 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키는 데 노동을 지출하기 위한 시간을 준다. 미개인에게서의 이 과정은 소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전적으로 잉여노동이 다시 새로운 자본으로 전화하는 것에 상응한다. 축적과정에서는 초과노동이 이러한 생산물이 끊임없이 자본으로 전화한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자본이 이윤, 지대 또는 그 밖의 소득형태에서 즉 잉여노동에서 생겨난다는 사정 때문에 상품의 모든 가치가 미리 소득에서 생겨나는 것 같은 그릇된 관념이 생긴다. 이윤이 다시 자본으로 전화하는 것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추가노동——이것은 언제나 소득의 형태로 나타난다——은 낡은 자본가치를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득으로서 소비되지 않는 한에서는 새로운 추가자본을 만들어내는 데 쓰인다.

모든 곤란은 다음과 같은 데서 생긴다. 즉 새로 덧붙는 전체 노동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임금으로 갈라지지 않는 한에서는 이윤——여기에서는 잉여가치 일반의 형태를 의미한다——으로서, 즉 자본가로서는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은 가치 따라서 또 그가 선대된 어떠한 것도, 즉 어떠한 자본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가치로서 나타나는 데서 생긴다. 그러므로 이 가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추가적 재부의 형태로, 간단히 말해서 개별적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소득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이 가치는 생산적으로 소비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소비될 수도 있으며, 자본으로서 소비될 수도 있고 소득으로서 소비될 수도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그 현물형태로 보아 생산적으로 소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해마다 덧붙는 노동은 자본도 만들어내고 소득도 만들어낸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축적과정에서 보게 된다. 그러나 노동력 중에서 자본을 새로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부분(따라서 비껴서 말하면 노동일 중에서 미개인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는 데 쓰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하는

부분)은 잉여노동의 전체 생산물이 우선 이윤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이 잉여생산물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다만 자본가가 차지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가의 사적관계와만 관련되는 규정이다. 사실상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잉여가치는 소득과 자본으로 즉 소비품과 추가적 생산수단으로 갈라진다. 그러나 전년도부터 물려받은 낡은 불변자본(손상을 입은, 따라서 그만큼 없어진 부분은 무시한다. 따라서 낡은 자본이 재생산될 필요가 없는 한에서는 무시한다. 그런데 재생산과정의 이러한 교란은 보험의 분야에 속한다)은 그 가치면에서 보면 새로 덧붙는 노동에 의하여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 덧붙는 노동은 소득인 임금과 이윤과 지대로 갈라질 따름이지만, 이 새로 덧붙는 노동의 일부는 늘 소비된 불변자본을 재생산하고 보상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것은 고려에 넣지 않는다. 즉 1) 이 노동의 생산물에서 그 가치의 일부분은 새로 덧붙는 이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소비된 불변자본이라는 것, 따라서 또 이 가치부분이 표시되는 생산물부분은 소득으로 전화되지 않고 현물로 이 불변자본의 생산수단을 보상한다는 것. 2) 새로 덧붙는 이 노동을 실제로 표시하는 가치부분은 현물로는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여기에서 이 가치부분은 그것이 소득으로서 소비될 수 있는 현물형태, 그러나 그 자체도 역시 결코 새로 덧붙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현물형태로 전화된다——불변자본을 보상한다는 것.

재생산이 여전히 같은 규모에서 진행되는 한에서는 불변자본의 소비된 개개 요소는 양과 형태는 같지 않아도 작용능력은 같은 해당 종류의 새로운 것으로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생산력이 여전히 같다면 이렇게 현물로 보상한다는 것은 동시에 불변자본이 그 전 형태에서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가치를 보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생산력이 늘어서 같은 소재적 요소를 적은 노동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물가치의 보다 적은 부분이 불변자본을 완전히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초과분은 새로운 추가자본을 형성하는 데 쓰일 수 있거나 또는 더 많은 부분의 생산물이 소비품의 형태를 취할 수 있거나

또는 잉여노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생산력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부분의 생산물이 낡은 자본을 보상하는 데 들 것이며 잉여생산물은 줄어들 것이다.

이윤 또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형태의 잉여가치가 다시 자본으로 전화된다는 것은——우리가 역사적으로 규정된 경제형태를 무시하고 이러한 재전화를 단순히 새로운 생산수단의 형성으로 본다면——노동자는 직접적인 생활수단을 얻기 위한 노동 외에 생산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하는 상태가 역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윤을 자본으로 전화시킨다는 것은 초과노동의 일부를 새로운 추가적 생산수단을 형성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윤이 자본으로 전화되는 형태로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은 초과노동을 지배하는 것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라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 초과노동이 우선 그것이 소득으로서 나타나는 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그것은 예컨대 미개인에게는 직접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데 쓰는 초과노동으로서 나타난다) 이 노동 또는 이 노동의 생산물을 일하지 않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은 이윤으로서의 이윤이 아니다.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화된다는 것은 자본가가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을 소득으로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같이 전화되는 것은 가치, 대상화된 노동, 또는 이 가치가 직접 표시되는 또는 이 가치가 먼저 화폐로 전화된 후에 교환되는 생산물이다. 이윤이 자본으로 전화되는 경우에도 이윤이라는 잉여가치의 이 규정된 형태가 새로운 자본의 원천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 잉여가치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화될 따름이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되게 하는 것은 형태전화가 아니다. 이제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상품과 그 가치이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가 지불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그리고 이 때문에만 이 가치는 잉여가치로 된다——노동의 대상화된 가치 그 자체로 보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오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불변자본을 이루고 있는 상품에는 또한 임금과 이윤과 지대의 요소들도 들어 있다는 형태로 나타

나며, 또는 한 사람에게는 소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본으로 되며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관계이다. 그리하여 방적업자의 실에는 그의 이윤을 표시하는 가치부분이 들어 있다. 따라서 직조업자가 실을 산다면 그는 방적업자의 이윤을 실현하나 그 자신으로 보면 이 실은 그의 불변자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과 자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미 이전에 설명한 것 외에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가치로서 볼 때 실과 함께 직조업자의 자본의 구성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의 가치라는 것이다. 이 가치의 부분들이 방적업자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자본과 소득으로, 다시 말하면 지불노동과 부지불노동으로 갈라지는가 하는 것은 상품 자체의 가치규정(평균이윤 때문에 생기는 변화를 무시한다면)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윤,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는 상품가치를 넘는 초과분——이 초과분은 값에 덧붙이는 것, 서로 속이는 것, 양도이윤 등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이라는 관념이 그 뒤에 언제나 숨어 있다. 상품의 생산가격이 지불되거나 심지어는 가치가 지불된다면 물론 상품의 가치 중에서 상품의 판매자에게 소득형태로 나타나는 구성부분도 지불된다. 독점가격은 여기에서는 물론 문제로 되지 않는다.

둘째로, 불변자본을 이루는 상품구성부분들은 다른 모든 상품가치와 마찬가지로 결국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볼 때 임금과 이윤과 지대로 갈라지는 가치부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이것은 모든 상품가치는 상품에 들어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의 척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자본주의적 표현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제1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개개 자본의 상품생산물이 개개의 부분으로 갈라져서, 그 중 하나는 전적으로 불변자본부분을 표시하고, 다른 하나는 가변자본부분을 표시하며, 또 하나는 잉여가치만을 표시하는 데 조금도 방해로 되지 않는다.

슈토르흐는 다음과 같이 말할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표현하고 있다.

“국민소득을 이루는 팔 수 있는 생산물은 정치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

서 보아야 한다. 즉 개개인과는 관계에서는 가치로서 또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재부로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소득은 개개인의 소득처럼 그 가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용성 또는 그것이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국민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 19페이지).

첫째로, 가치에 기초한 생산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어떤 국민을 국민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노동하는 총체(Gesamtkörper)로 보는 것은 그릇된 추상이다.

둘째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없어진 후에도 사회적 생산이 유지되는 조건하에서는 가치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즉 노동시간의 조절,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집단으로의 사회적 노동의 분배,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부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

제 50 장 경쟁의 외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가치 또는 상품의 총가치에 의하여 조절되는 생산가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갈라진다. 즉

1) 불변자본을 보상하는——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서 생산수단의 형태로 소비된 과거노동을 표시하는——가치부분으로 갈라진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들어간 생산수단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 갈라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자본 즉 자본의 생산물이 일정한 기간 예컨대 한 해 동안에 표시되는 형태이다. 하나하나의 상품은 상품자본의 한 요소를 이룰 따름이며 그리하여 그 가치는 상품자본의 가치와 똑같은 구성부분으로 나뉜다.

2) 노동자의 소득을 재며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전락되는 가변자본의 가치부분으로 갈라진다. 따라서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의 이 가변가치부분에서 재생산하였다. 요컨대 상품생산에서 첫째의 불변가치부분에 새로 덧붙은 노동의 지불부분이 표시되는 가변부분으로 갈라진다.

3) 잉여가치 즉 상품생산물 중에서 부지불노동 또는 잉여노동을 표시하는 가치부분으로 갈라진다. 이 마지막 가치부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자립적 형태들——이 형태들은 동시에 소득형태들이다——을 취하는데, 그것은 자본에 대한 이윤의 형태(자본으로서의 자본에 대한 이자와 기능자본으로서의 자본에서 얻는 기업이득)와 생산과정에서 협력하는 땅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의 형태이다. 2)와 3)의 구성부분들 즉 언제나 임금(이것은 물론 미리 가변자본의 형태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취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 및 지대라는 소득형태들을 취하는 가치구성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하여 1)의 불변구성부분과 구별된다. 즉 이 불변부분인 상품의 생산수단에 새로 덧붙은 노동이 대상화되는 가치

가 모두 그 가치구성부분으로 갈라진다는 점에 의하여 구별된다. 그런데 불변가치부분을 제쳐놓는다면 상품의 가치——따라서 그것이 새로 덧붙은 노동을 표시하는 한에서의——는 언제나 세 가지 소득형태를 이루는 세 부분으로 즉 임금, 이윤 및 지대로 갈라지며⁵⁵⁾ 이것들의 가치의 크기 즉 이것들이 총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몫은 각각 위에서 말한 서로 다른 독특한 법칙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임금의 가치, 이윤 및 지대가 자립적인 구성적 가치요소를 이루며 이것을 합하면——불변적 구성부분을 제쳐놓는다면——상품의 가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상품가치 또는 생산가격의 구성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⁵⁶⁾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알기에는 어렵지 않다.

55) 불변자본부분에 덧붙은 가치가 임금, 이윤, 지대로 나뉘는다면 이것들이 가치부분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것들이 이 가치를 표시하는 직접적 생산물 속에 즉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 예컨대 방직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생산한 직접적 생산물인 실속에 존재한다고 물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들이 이 생산물에서 표시되더라도 그것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 임의의 다른 어떤 생산물, 소재적 재부의 다른 어떤 구성부분에서 표시되는 경우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또한 실지로 임금은 화폐로 즉 순수한 가치표현으로 지불된다. 이자와 지대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자본가에게 있어서 그의 생산물이 순수한 가치표현으로 전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전화는 분배 자체에 이미 전제로 되고 있다. 이 가치들이 같은 생산물, 같은 상품——이 상품의 생산에서 그 가치들이 생겼다——으로 다시 전화되는가 안되는가 또 노동자가 자기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를 되사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노동의 생산물을 사는가 하는 것은 이 문제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로드베르투스 씨는 이 문제에 그야말로 쓸데없이 열중하고 있다.

56) "원료와 가공되는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반적 규칙은 금속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 충분할 것이다. 금속의 가치는 이윤율에도, 임금율에도, 광산에 대하여 지불되는 지대에도 의존하지 않고 금속을 얻어내 시장에 내놓는 데 필요한 총노동량에 의존한다"(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파세의 원리」, 런던, 1821년, 제3장, 77페이지).

500이라는 자본의 생산물의 가치가 $400c+100v+150m=650$ 이라고 하고 150m은 또 75의 이윤과 75의 지대로 나뉜다고 하자. 그리고 또 쓸데없는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자본은 평균적인 구성이며 그리하여 그 생산가격은 그 가치와 일치한다고 하자. 이러한 일치는 이 개별적 자본의 생산물이 총자본 중에서 이 개별적 자본의 크기에 상응하는 부분의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변자본에 의하여 재어지는 임금은 선대자본의 20%이며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 잉여가치는 30% 즉 이윤 15%, 지대 15%이다. 상품의 가치 중에서 새로 덧붙은 노동이 대상화되고 있는 총구성부분은 $100v+150m=250$ 이다. 그 크기는 그것이 임금, 이윤 및 지대로 나누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 부분들의 호상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100이라는 화폐,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그 댓가가 지불되는 노동력이 25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노동량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의 $1\frac{1}{2}$ 배만큼의 잉여노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노동일이 10시간이었다면 노동자는 4시간은 자신을 위하여, 6시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였다. 따라서 100파운드 스텔링의 보수를 지불받는 노동자의 노동이 25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화폐가치로 표현된다. 이 250파운드 스텔링을 제쳐놓고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나누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400이라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새로 덧붙은 총가치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생산되었으며 그것에 대상화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250이라는 상품가치는 노동자, 자본가 및 토지소유자가 임금, 이윤 및 지대라는 소득의 형태로 이 가치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배당금의 한계이다.

유기적 구성이 같은 자본 즉 적용되는 산 노동력과 가동되는 불변자본의 비율이 같은 자본이 400이라는 불변자본을 가동시키는 것과 똑같은 노동력의 댓가로 100이 아니라 150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또한 잉여가치는 새로운 비율로써 이윤과 지대로 나뉜다고 하자. 이제는 15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이전의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가동시킨 것과 똑같은 양의 노동을 가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새로 생산된 가치는 여전히 250일 것이며 총생산물의

가치도 여전히 650일 것이지만 그 경우에는 $400c+150v+100m$ 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00m은 예컨대 45의 이윤과 55의 지대로 나눌 것이다. 새로 생산된 총가치가 임금, 이윤 및 지대로 나뉘는 비율은 매우 다르게 될 것이다. 선대된 총자본은 전과 똑같은 노동의 총량을 가동시키지만 그 크기도 역시 매우 달라질 것이다. 선대된 자본에 대해 임금은 $27\frac{3}{11}\%$, 이윤은 $8\frac{8}{11}\%$, 지대는 10%로 될 것이다. 따라서 총잉여가치는 18%를 좀 넘을 것이다.

임금이 오른 탓으로 총노동 중에서 부지불부분은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 10시간노동일에서는 이제 노동자는 6시간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며 4시간만을 자본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윤과 지대의 비율도 달라질 것이며 줄어든 잉여가치는 새로운 비율로 자본가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나눌 것이다. 끝으로 불변자본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선대된 가변자본의 가치는 늘어났으므로 줄어든 잉여가치는 더욱더 떨어진 총이윤율——총이윤율이란 여기에서는 총선대자본에 대한 총잉여가치의 비율이다——로 표현될 것이다.

임금의 가치, 이윤율, 지대율에서의 변동은 이 부분들의 비율을 규정하는 법칙들의 작용이 어떻든지 간에 250이라는 새로 창조된 상품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계내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지대가 독점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법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복잡해질 따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생산물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잉여가치의 분할만이 달라질 것이며, 또 다른 상품들에 대한 이 생산물의 상대적 가치를 두고 본다면 잉여가치의 일부가 다른 상품들에서 이 특수한 상품으로 옮겨온다는 차이만이 있을 것이다.

요약하여 보자.

	생산물의 가치	새로운 가치	잉여가치율	총이윤율
첫째 경우	$400C+100V+150m=650$	250	150%	30%
둘째 경우	$400C+150V+100m=650$	250	$66\frac{2}{3}\%$	$18\frac{3}{11}\%$

첫째로 잉여가치는 종전의 액의 3분의 1만큼 즉 150에서 100으로 줄어

들었다. 이윤율은 3분의 1보다 좀 더 많이 즉 30%에서 18%로 떨어졌다. 왜냐하면 줄어든 잉여가치가 이제는 늘어난 선대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윤율은 잉여가치율과 같은 비율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잉여가치율은 150/100에서 100/150으로 즉 150%에서 66⅔%로 떨어졌는데, 이윤율은 150/500에서 100/550으로 즉 30%에서 18⅓%로 떨어졌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윤율은 잉여가치량보다 비교적 더 많이 떨어지나 잉여가치율보다는 더 적게 떨어진다. 또한 선대자본은 그 가변적 구성부분이 늘어남으로써 늘어났지만 적용되는 노동의 양이 전과 같다면 생산물의 가치와 양은 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대자본의 이러한 증대는 물론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자본가에게는 절실히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재생산과정 전체를 놓고 본다면 가변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은 새로 덧붙는 노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되는 가치의 대부분이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로 전화될 대신에 임금으로,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가변자본으로 전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전과 다름이 없는데 그것은 그 가치가 한편으로는 불변자본가치=400에 의하여, 또 한편으로는 새로 덧붙는 노동을 표시하는 250이라는 숫자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의 크기는 전과 다름이 없다. 새로운 생산물은 그 자체가 다시 불변자본으로 들어가는 한에서는 같은 크기의 가치에서는 전과 같은 양의 사용가치를 표시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불변자본의 요소들은 같은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임금이 늘어난 것이 노동자가 그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받은 것이 노동생산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 사태는 다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양의 노동——지불노동 및 부지불노동——을 표시하는 총가치는 여전히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량을 표시하는 생산물의 양은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이 생산물의 개개 해당부분의 가격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개개 부분은 이제는 보다 많은 양의 노동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150이라는 오른 임금은 종전의 100이라는 임금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100이라는 줄어든 잉여가치는 전에 비하여 2/3의 생산

물을 즉 전에 100으로 표시된 사용가치량의 66⅔%를 표시할 따름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 생산물이 불변자본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불변자본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이 오른 결과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임금이 오른 것이 상품의 가격이 오른 결과이며 또 같은 양의 노동의 생산능률이 떨어진 결과일 것이다. 여기에서 마치 임금이 오름으로써 생산물의 가격이 오른 듯한 겉모양이 생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임금이 오른 것은 상품가치의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인데, 상품가치가 변동된 것은 노동생산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따라서 적용된 같은 양의 노동이 여전히 250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이 노동에 의하여 적용되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다면 같은 양의 생산물의 가치도 같은 크기만큼 늘거나 줄어든 것이다. $450c+100v=150m$ 이면 생산물가치는 종전의 650에 대하여 700이며, $350c+100v+150m$ 이면 같은 양의 생산물의 가치는 600일 따름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노동이 가동시키는 선대자본이 늘거나 주는 경우에는 생산물의 가치는 다른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선대자본이 불변자본부분의 가치크기의 변동에 의하여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이와는 반대로 선대자본이 노동생산력은 전과 다름이 없는데 가변자본부분의 가치크기가 달라짐으로써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생산물의 가치는 전과 다름이 없다. 불변자본의 가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어떠한 대립운동에 의해서도 상쇄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변자본의 가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노동생산능률이 전과 같다고 전제하면 잉여가치쪽에서 일어나는 반대방향의 운동에 의하여 상쇄되며, 그리하여 가변자본의 가치 더하기 잉여가치 즉 노동에 의하여 생산수단에 새로 덧붙으며 생산물에서 새로 표시되는 가치는 전과 다름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가변자본이나 임금의 가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결과라면, 즉 이 자본투하에서 적용되는 노동의 생산능률이 떨어지거나 오른 결과라면 이것은 생산물의 가치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진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위에서 든 실례에서 불변자본이 전과 같이 400c인 경우에 $100v+150m$ 에서 $150v+100m$ 으로 변동된 것이 즉 가변자본이 늘어난 것이, 이 특수한 부문 예컨대 면방직업에서가 아니라 예컨대 노동자의 식량을 대주는 농업에서 노동생산력이 떨어진 결과이며, 따라서 이 식량의 가격이 오른 결과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650의 가치는 여전히 같은 양의 면사로 표시될 것이다.

또한 이상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노동자의 소비로 들어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부문에서 절약 등에 의하여 불변자본의 지출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적용되는 노동 자체의 생산능력의 직접적인 제고와 똑같은 정도로 임금을 줄이며——그것은 노동자의 생활수단이 값싸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잉여가치를 늘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늘어날 것이다. 즉 첫째로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잉여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화하는 것을 살펴보는 데서 우리는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윤율의 변동을 잉여가치율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연구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거기에서 해명된 법칙들은 일반적인 성격을 띠며 또 그것은 다음과 같은 투자에도 즉 노동자의 소비로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을 생산하며 따라서 그 생산물의 가치변동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투자에도 들어맞는다.

따라서 새로 덧붙는 노동에 의하여 생산수단이나 불변자본에 해마다 새로 덧붙는 가치가 임금, 이윤 및 지대라는 서로 다른 소득형태로 분화되고 갈라진다고 해서 가치 그 자체의 한계, 서로 다른 이 범주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가치 총액이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의 이 부분들 상호간의 비율의 변동이 그 부분들의 총액, 이 일정한 가치의 크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100이라는 일정한 수는 그것이 $50+50$ 으로 나누어지든 $20+70+10$ 으로 나누어지든 또는 $40+30+30$ 으로 나누어지든 언제나 같다. 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이 소득들

로 나누어지는 부분은⁴ 자본가치의 불변부분과 꼭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즉 그때그때마다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는 상품의 가치 중에서 임금, 이윤 및 지대로 나누어지는 양이 주어지며 따라서 이 상품의 하나하나의 가치부분들의 총액의 절대적 한계가 주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하나의 범주 자체를 두고 보면 그 평균적 및 조절적 한계도 또한 주어지는 것이다. 임금은 그 한계를 짓는 기초로 된다. 임금은 한편으로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조절된다. 임금의 최저한계는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육체적 최저한의 생활수단에 의하여 주어지며 따라서 일정한 양의 상품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생산수단에 새로 덧붙는 노동 중에서——또는 노동일 중에서——노동자가 이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등가를 생산하며, 또 재생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자의 하루의 생활수단의 평균가치가 6시간의 평균노동과 같다면, 그는 평균 하루에 6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노동력의 실제적 가치와 이 육체적 최저한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후풍토와 사회발전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것은 육체적 욕망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전된 사회적 욕망——이것은 두번째 자연이다——에도 달려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한 시기에 이 조절적인 평균임금의 크기는 주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나머지 모든 소득들의 가치도 한계가 있다. 이 가치는 언제나 총노동일(이것은 이 경우에는 평균노동일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사회적 총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는 총노동량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이 체화되는 가치에서 그 중 임금으로 체화되는 부분을 던 것과 같다. 따라서 그 가치의 한계는 부지불노동이 표현되는 가치의 한계에 의하여 즉 이 부지불노동의 양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노동일 중에서 노동자가 자기 임금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지출하는 부분이 그의 임금의 육체적 최저한을 자체의 극단한 한계로 한다면, 노동일 중에서 다른 부분——그의 잉여노동이 표시되는 부분 따라서 또 가치 중에서 잉여가치를 표현하는 부분——은 노동일의 육체적

최대한을, 즉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유지하며 재생산하는 조건에서 줄 수 있는 하루 노동시간의 총량을 자체의 한계로 한다. 여기에서는 한 해 동안에 새로 덧붙는 총노동이 표시되는 가치의 분배가 문제이므로 노동일은 여기에서는 그 자체의 육체적 최대한과 많이 차이가 나든 적게 차이가 나든 간에 이에 관계없이 불변의 크기로 볼 수 있으며 또 그러한 것으로서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가치 중에서 잉여가치를 이루며 이윤과 지대로 나누어지는 부분의 절대적 한계는 주어져 있다. 이 가치부분은 노동일 중에서 그 지불부분을 빼고 남는 부지불부분의 크기에 의하여 즉 총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이 잉여노동이 실현되고 있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며 선대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하는 잉여가치를 이윤이라고 한다면——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이 이윤은 그 절대적 크기로 보면 잉여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그 한계는 잉여가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합법칙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윤율의 높이도 또한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한계에 들어 있는 크기이다. 그것은 생산에 선대된 사회적 총자본에 대한 총잉여가치의 비율이다. 이 자본이 500(백만 단위라 하자)이고 잉여가치는 100이라면 20%는 이윤율의 절대적 한계이다. 이 율에 따라서 다른 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들 사이에 사회적 이윤을 나누면 상품의 가치와 어긋나는 생산가격——이것은 실제로 조절하는 평균시장가격이다——이 생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긋남으로 해서 가치에 의한 가격의 규정도, 이윤의 합법칙적인 한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소비된 자본 k 더하기 그것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와 같다면, 그 생산가격은 이제는 그 생산에 소비된 자본 k 더하기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이 상품의 몫에 돌아가는 잉여가치 예컨대 이 상품의 생산에 선대된 자본——실지로 소비된 자본뿐 아니라 단순히 적용된 자본——에 대한 20%와 같다. 그러나 이 20%의 추가 자체는 사회적 총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진 잉여가치와 그리고 자본가치에 대한 이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며,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20%이지 10%나 100%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됨으로써 이윤의 한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하나하나

의 자본들 사이에서 이윤의 분배가 달라질 따름이며, 이 자본들이 총자본의 가치부분을 이루는 데 비례하여 끌고루 이윤이 이 자본들 사이에 나누어질 따름이다. 시장가격은 이 조절적인 생산가격 이상으로 오르며 또 그 이하로 떨어지지만 이러한 변동은 서로 상쇄된다. 노동생산력이 달라져서 상품의 실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와 또한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재해로 하여 생산과정이 형클어지는 경우를 제쳐놓고 오랜 기간의 가격표를 본다면, 첫째로는 어긋나는 차이의 한계가 비교적 좁은 데 대하여 놀라게 되며, 둘째로는 어긋나는 차이의 균등화가 규칙적인 데 대하여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케틀레가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지적한¹⁾ 그러한 조절적인 평균치가 지배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는 데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는다면 지대는 결국 차액지대로 되고 만다. 즉 지대는 조절적인 생산가격으로 해서 일부 자본가들이 얻으며 그 다음에는 토지소유자가 차지하게 되는 초과이윤이 균등화되는 범위에 제한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대는 일반적 이윤율에 의한 생산가격의 조절로 해서 생기는 개별적 이윤율의 배리 속에 자체의 규정된 가치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품가치가 생산가격으로 균등화되는 데 토지소유가 지장으로 되어 절대지대를 얻는다면, 이 절대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을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 즉 토지생산물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가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자본의 몫으로 되는 이윤을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 경우에 이 차액은 지대의 한계를 이루며 지대는 여전히 주어진, 그리고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일정한 부분일 따름이다.

끝으로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되는 것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에서 인위적인 또는 자연적인 독점으로 하여, 특히 토지소유의 독점으로 하여 지장을 받으며 그리하여 독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품의 생산가격 및 가치를 넘는 독점가격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계가 그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정한 상품의 독점가격은 다른 상품의 생산자들의 이윤의 일부를 독점가격을 가진 상품에 옮겨놓을 따름일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에 잉여가치가 나누어지는 데서 국부적인 교란이 생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잉여가치 자체의 한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독점가격을 가진 상품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소비품으로 된다는——노동자가 여전히 자기의 노동력의 전체 가치를 지불받는 경우에는——그 상품은 임금을 올리며 따라서 잉여가치를 줄일 것이다. 그러한 상품으로 하여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은 임금이 그 육체적 최저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에서만이다. 이 경우에 독점가격은 실질 임금(즉 노동자가 같은 양의 노동에 의하여 받는 사용가치의 양)에서 그리고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에서 빼내어 지불될 것이다. 독점가격이 상품가격의 정상적인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는 확고히 규정되고 정확히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덧붙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갈라지는 상품가치의 분할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임금과 잉여가치 사이의 비율에서 자체의 주어진 그리고 조절적인 한계를 찾듯이, 이윤과 지대로의 잉여가치 자체의 분할도 이윤율의 균등화를 규정하는 법칙들에서 자체의 한계를 찾는다. 이윤이 이자와 기업이득으로 나뉘는 데 대하여 말한다면 평균이윤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의 한계를 이룬다. 평균이윤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정한 크기의 가치의 한계내에서 그것들은 나누어져야 하며 또 그 한계내에서만 나누어질 수 있다. 일정한 분할비율은 이 경우에는 우연적이다. 즉 전적으로 경쟁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시장가격이 그것을 조절하는 평균가격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어지는데 즉 경쟁의 영향이 없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경쟁이 유일하게 규정적인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같은 생산요인인 자본이 잉여가치 중에서 그에 돌아가는 부분을 똑같은 생산요인의 두 소유자 사이에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평균이윤을 나누는 데서 일정한 합법칙적 한계가 없다는 사정으로 하여 상품가치의 일부분으로서의 평균이윤의 한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한 기업의 두 동업자가 어떠한 외부적 사정들로 하여 이윤을 똑같이 나누지 않는다는 사정이 이 이윤의 한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상품가치 중에서 생산수단의 가치에 새로 덧붙은 노동을 표시

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부분들로 나누어지고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소득의 형태로 서로 자립적인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임금, 이윤 및 지대를 그 합성 즉 합계에서 상품 자체의 조절적 가격(자연 가격, 필요가격)이 생기게 하는 구성요소들로——그리하여 상품가치에서 불변가치부분을 뺀 것이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원래의 단위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 부분의 가격이 각각 자립적으로 규정되며 상품가격이 세 개의 독립적 크기의 합계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서——보아야 한다는 것으로는 결코 아니다. 사실상 상품가치는 미리 주어진 크기이며 임금, 이윤 및 지대——이들 상호간의 상대적 크기는 어떠한 간에——의 총가치 전체이다. 위에서 말한 그릇된 견해에 의하면 임금, 이윤, 지대는 세 개의 자립적인 가치량이며 이 가치량 전체가 상품가치의 크기를 이루며 제한하고 규정한다.

우선 명백한 것은 임금, 이윤, 지대가 상품가격을 구성한다면 이것은 상품가치의 불변부분에도 해당되며 또한 가변자본과 잉여가치가 표시되는 상품가치의 다른 부분에도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불변부분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변부분을 구성하는 상품의 가치도 역시 결국은 임금, 이윤 및 지대라는 가치의 총액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견해는 그러한 불변가치부분의 존재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명백한 것은 이 경우에는 모든 가치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남는 것은 오직 가격 즉 노동력, 자본 및 땅의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양의 화폐가 지불된다는 의미에서의 가격이라는 표상만이다. 그러나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의 일정한 형태이며 따라서 다시 가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일정한 양의 금이나 은이 이 생산요소들에 지불되거나 또는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이 일정한 양의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하자. 그런데 금과 은은(그리고 계몽된 경제학자는 그가 이것을 인식한 것을 자랑한다) 그 자체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다. 따라서 금과 은의 가격도 임금, 이윤 및 지대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 이윤 및 지대를 일정한 양의 금 및 은과 같다고 봄으로써 그것들을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금과

은의 가치——임금. 이윤 및 지대는 자체의 등가로서의 이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금 및 은과는 관계없이 즉 바로 그 자체가 이 세 가지 것의 산물인 개개 상품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바로 이 세 가지 것에 의하여 먼저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이윤 및 지대의 가치는 그것들이 일정한 양의 금 및 은과 같다는 그 점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임금, 이윤 및 지대는 일정한 양의 임금, 이윤 및 지대와 같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일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임금을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 견해에서도 노동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임금의 조절적인 가격, 임금의 시장 가격이 올랐다내렸다 하는 데서 중심으로 되는 가격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예컨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하자. 그러나 이 경우에 문제로 되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란 어떠한 것인가? 자본의 수요이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같은 것이다. 자본의 공급에 관하여 말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본이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자본의 가장 단순한 현상들을 든다면 자본은 화폐와 상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화폐는 상품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은 상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전체에 의하면 우선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에 의하여 규정된다. 임금은 이 경우에는 하나의 전체로 되며 상품가격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본다. 따라서 이 가격은 자본에 대한 공급되는 노동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자본 자체의 가격은 그것을 구성하는 상품의 가격과 같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자본의 공급과 같다. 그리고 자본의 공급은 일정한 가격의 상품액의 공급과 같으며, 이 가격은 우선 노동의 가격에 의하여 조절되며, 노동의 가격은 이번에는 다시 상품가격 중에서 노동자의 노동과 교환되어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가변자본을 이루는 부분과 같다. 그리고 이 가변자본을 이루는 상품의 가격 자체는 다시 우선 노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격은 임금, 이윤 및 지대라는 가격들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전체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 자체의 가치가 임금이 참가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경쟁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경쟁은 노동의 시장가격을 오르내리게 한다. 그러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고 하자. 그 경우에 임금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경쟁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우리는 경쟁은 결정적 작용을 하지 않으며,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힘의 균형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바로 전제로 하였다. 우리가 바로 발견하려 하는 것은 임금의 자연가격 즉 경쟁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쟁을 조절하는 노동의 가격이다.

노동의 필요가격은 노동자의 필요한 생활수단에 의하여 규정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 생활수단은 가격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노동의 가격은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생활수단의 가격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우선 노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노동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노동의 가격이 그 자체에 의하여 규정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동의 가격이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를 모른다. 노동이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격을 갖는 것은 그것을 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의 가격에 대하여 말하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방식으로 노동의 필요가격이 규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평균이윤——정상적인 조건에서 상품가격의 둘째 요소를 이루는 개개 자본의 이윤——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평균이윤은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평균이윤율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그러나 이 경쟁은 이미 이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생산부문이 같은가 또는 서로 다른가 하는 데는 관계없이 서로 다른 이윤율을, 따라서 서로 다른 이윤을 전제로 한다. 경쟁은 그것이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이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같은 생산분야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팔지만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상품을 그들에게 같은 이윤을——이미 부분적으로 임금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상품가격에 대한 같은 비례적인 추가를——주는 가격으로 판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경쟁은 이윤율의 차이를 균등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차이가 있는 이윤율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윤은 상품가격의 요소로서 이미 있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에서 이윤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경쟁은 균등화가 실지로 이루어질 때 생기는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낮추거나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윤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말하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쟁의 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이윤율——이 이윤율이 경쟁을 조절한다——이다. 평균이윤율은 서로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난다. 경쟁은 이 균형을 조성할 수는 있으나 이 균형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이윤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 이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어째서 일반적 이윤율은 10% 또는 20% 또는 100%인가? 경쟁 때문인가? 그러나 반대로 경쟁은 10% 또는 20% 또는 100%라는 차이를 낳게 한 원인들을 없애버렸다. 경쟁에 의하여 개개 자본이 자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같은 이윤을 낳는 그러한 상품가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이윤 자체의 크기는 경쟁과는 관계가 없다. 경쟁은 모든 차이를 끊임없이 이 크기로 만들게 할 따름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며 그리하여 경쟁은 그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똑같은 가격으로 팔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 가격은 10 또는 20 또는 100인가?

그리하여 이윤을 따라서 이윤을 상품의 가격——이 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임금에 의하여 규정되었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추가라고 설명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경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것은 이 이윤율은 일정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 이윤율과 이윤의 필요가격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쓸데없는 논의를 지대에 대하여 다시 늘어놓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철저히 논의해 본다면 이윤과 지대는 우선 임금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격에 대한 이해할 수 없

는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단순한 가격추가로 나타나게 될 따름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요컨대 경제학자들이 경쟁을 설명해야 할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경쟁이 경제학자들의 모든 무의미한 말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윤과 지대가 가격의 구성부분으로서 유통에 의하여 생기는 듯한 즉 판매에서 생기는 듯한 환상——그런데 유통은 미리 그 유통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을 제쳐놓는다면 사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된다.

임금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격은 100, 이윤율은 임금의 10%, 지대는 임금의 15%라고 하자. 그러면 임금, 이윤 및 지대의 총액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격은 125이다. 이 25라는 추가는 상품을 파는 데서 생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품을 서로 파는 모든 사람은 각 사람에게 100의 임금이 든 것을 125로 파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가 100으로 파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작은 유통과정과는 관계없이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125가 드는 상품 자체를 세 사람이 나눈다면——자본가가 먼저 125로 팔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100을, 자기 자신에게 10을, 그리고 토지소유자에게 15를 지불한다고 해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노동자는 가치와 생산물의 $4/5=100$ 을 받는다. 자본가는 가치와 생산물의 $2/25$ 를, 지대를 받는 자는 $3/25$ 을 받는다. 자본가는 100으로가 아니라 125로 판매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노동이 표시되고 있는 생산물의 $4/5$ 만을 준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80을 주고 20——그 중에서 8은 자기 몫으로, 12는 지대를 받는 자의 몫으로 될——을 남겨두는 경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경우에는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가격에 대한 추가는 위에서 말한 전제에서는 임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치와는 관계가 없이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이 표상에서는 임금 100이라는 말은 생산물의 가치 즉 이 일정한 노동량이 표시되는 화폐액과 같으나 이 가치는 다시 실제적 임금과는 다르며 따라서 약간의 잉여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 잉여분

은 명목상의 가격추가에 의하여 나올 뿐이다. 따라서 임금이 100이 아니라 110이라면 이윤은 11이고 지대는 $16\frac{1}{2}$, 따라서 상품가격은 $137\frac{1}{2}$ 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할은 언제나 임금에 대한 일정한 백분율의 명목상 추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가격은 임금에 따라 오르내릴 것이다. 이 경우에 임금은 처음에는 상품의 가치와 같으며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상품의 가치와 다르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사태는 내용이 없는 우회적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상품의 가치는 그 속에 들어 있는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나 임금의 가치는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임금을 넘는 가치초과분은 이윤과 지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뺀 다음의 상품가치, 상품생산물에 대상화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 일정한 가치량이 세 구성부분——임금, 이윤 및 지대로서 서로 관계가 없는 자립적인 소득형태를 취하는——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표면에서는 따라서 이에 사로잡힌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표자의 머리 속에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한 상품의 총가치가 300이고 그 중에서 200은 그 상품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 즉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라고 하자. 따라서 100이 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그에 덧붙은 새로운 가치의 총액으로서 남는다. 이 새로운 가치 100은 세 소득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전액이다. 임금= x , 이윤= y , 지대= z 라고 한다면 총액 $x+y+z$ 는 이 경우에는 언제나 100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가, 상인 및 은행업자의 머리 속에는 또 속류경제학자의 머리 속에는 이것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들에게서는 상품가치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뺀 것은 주어진 것으로서 100이며 이 100이 그 다음에 x , y , z 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경우에 상품의 가격은 단순히 상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또 서로 독립하여 규정되는 임금, 이윤 및 지대의 가치크기로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x , y , z 는 각기 자립적으로 주어지고 규정되며, 그리고 이 크기들의 총액——100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으로 비로소 상품 자체의 가치크기가 상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이 구

성부분들의 합계의 결과로서 나온다. 이 착오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필연적이다.

첫째로는, 상품가치의 구성부분들은 자립적인 소득으로서 서로 대립하며 이 소득은 그러한 것으로서 전혀 서로 다른 세 생산요인인 노동, 자본 및 땅과 관련을 갖게 되며 따라서 이것들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력, 자본 및 땅에 대한 소유는 상품의 이 서로 다른 가치구성부분들이 각기 이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며 따라서 그들의 소득으로 되는 원인이다. 그러나 가치는 그 무엇이 소득으로 전화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득으로 전화되며 소득이라는 모습을 취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 부분들의 상대적 크기의 규정은 서로 다른 종류의 법칙에 따르며, 이 법칙과 상품가치 자체와의 관련 및 이 가치에 의한 그 법칙의 제한은 결코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만큼 상반되는 외관은 더욱더 굳어지게 된다.

둘째로는,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임금의 일반적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다른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이윤율이 반대방향으로 운동하며, 그리하여 해당 생산분야의 자본의 평균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상품의 생산가격이 달라지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높아지고 다른 것은 낮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어도 일부 생산분야에서는 경험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품의 평균가격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며 또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러한 변동은 임금과는 관계가 없는 상품가치에 의하여 비밀리에 조절된다는 것이다. 이외는 반대로 임금이 국부적으로 오른다면 즉 독특한 사정에 의하여 특수한 생산분야에서만 임금이 오른다면 이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게 명목상 오를 수 있다. 이 경우에 임금이 전과 다름이 없는 다른 종류의 상품에 비하여 한 종류의 상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에서 잉여가치의 균등한 분배가 국부적으로 교란된 데 대한 하나의 반동, 특수한 이윤율이 일반적 이윤율로 균등하게 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얻어지는 경험도

* 이 권, 제1분책, 241~245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역시 가격은 임금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임금에 의하여 상품가격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경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 관련의 원인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의 평균가격 즉 노동력의 가치는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둘째 것이 오르거나 내리면 첫째 것도 오르거나 내린다. 이 경우에 다시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임금과 상품가격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인이 결과로, 결과가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가격의 운동에서도 그러하다. 시장가격의 운동에서는 평균을 넘어 임금이 오른 것은 생산가격을 넘어 시장가격이 오른 것——이것은 변형기와 결부되어 있다——에 상응하며 그 후에 평균 이하로 임금이 떨어진 것은 생산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떨어진 것에 상응한다. 시장가격의 운동에서 변동이 있는 것을 제쳐놓는다면 생산가격이 상품의 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에는,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즉 임금이 오르면 이윤율이 떨어지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또 그 반대라는 사실이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상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은 임금의 변동과는 관계가 없는, 불변자본의 가치에서의 변동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임금과 이윤율은 반대방향으로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변하며 동시에 오르거나 또는 떨어질 수 있다. 이윤율이 직접 잉여가치율과 일치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생활수단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윤율은 노동강도가 세지거나 노동일이 연장되는 탓으로 전과 같거나 심지어는 전보다 오를 수도 있다. 이 모든 경험은 가치구성부분들의 자립적인 전도된 형태로 하여 생기는 환상——임금만이 또는 임금과 이윤이 함께 상품가치를 규정하는 듯한 환상——을 확증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상이 임금과 관련하여 생긴다면 즉 노동의 가격이 노동에 의하여 생기는 가치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러한 환상은 이윤과 지대의 경우에는 자명한 일이다. 이 경우에는 그것들의 가격 즉 그것들의 화폐적 표현은 노동 및 노동에 의하여 생기는 가치와

* 이 권, 제1분책, 131~14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는 관계없이 조절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째로는, 상품의 가치 또는 겉보기에만 이 가치와 관계가 없는 듯한 생산가격은 시장가격의 끊임없는 변동의 부단한 상쇄에 의하여 조절적인 평균가격으로서만 나타나지 않고 직접적인 경험에서 언제나 상품의 시장가격과 일치한다고 하자. 또한 재생산은 언제나 변함없는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노동생산능률은 자본의 모든 요소에서 전과 다름이 없다고 하자. 끝으로 상품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개개 생산분야에서 새로운 노동량 따라서 새로 생산되는 가치가 생산수단의 가치에 덧붙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은 언제나 변함없는 비율로 임금, 이윤 및 지대로 나누어지며 그리하여 실제로 지불되는 임금, 실제로 실현되는 이윤 및 실제적 지대는 노동력의 가치, 총잉여가치 중에서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총자본의 자립적으로 기능하는 개개 부분에 돌아가는 부분과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정상적으로 지대가 구축되고 있는 한계와 언제나 직접 일치한다고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가 생산하는 가치의 분배와 생산가격의 조절이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그러나 경쟁을 배제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자.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크기일 것이며, 또 변함이 없는 크기로서 나타날 것이며, 상품생산물의 가치 중에서 소득으로 나뉘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 크기일 것이며, 또 변함이 없는 크기로서 표시될 것이며, 끝으로 이 주어진 그리고 변함이 없는 가치부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비율로 임금, 이윤 및 지대로 나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에서까지도 실제적 운동은 필연적으로 왜곡된 모습으로——미리 주어진 가치의 크기가 서로 관계가 없는 소득형태를 취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가치의 크기가 이것을 이루는 임금, 이윤 및 지대라는 독립적인 그리고 그 자체로서 자립적으로 규정되는 요소들의 합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나타날 것이다. 이 외관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적 자본과 그 상품생산물의 현실적 운동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그 분할의 전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할되는 구성부분들이 상품가치의 전체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우선 각 자본가에게서는 상품의 비용

가격은 일정한 크기로서 나타나며 또 실제적 생산가격에서 언제나 그러한 크기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비용가격은 불변자본인 선대된 생산수단의 가치 더하기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는 생산당사자들에게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불합리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리하여 임금은 동시에 노동자의 소득으로서 나타난다. 노동의 평균가격은 일정한 크기인데 그것은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품의 가치 중에서 임금을 이루는 부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이 생겨나는 것은 그것이 임금이라는 이 형태를 취하며 또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에서 노동자의 몫을 임금이라는 형태로 선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에 해당하는 등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의 하루 노동 또는 한 해 노동의 일부가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격 속에 들어 있는 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은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등가물이 생산되기 전에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그러므로 임금은 상품과 상품가치가 생산되기 전에 그 크기가 주어져 있는 하나의 가격요소로서, 비용가격의 구성부분으로서——자립적인 형태를 취하고 상품의 총가치에서 분리되는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 총가치를 미리 규정하는 일정한 크기로서 즉 가치와 가격을 이루는 요인으로서—— 나타난다. 임금이 상품의 비용가격에서 노역함과 비슷한 역할을 평균이윤은 상품의 생산가격에서 논다. 왜냐하면 생산가격은 비용가격 더하기 선대자본에 대한 평균이윤과 같기 때문이다. 자본가 자신은 이 평균이윤을 하나의 조절적인 요소로서 자기 자신의 표상과 계산에 넣고 있는데, 그것은 평균이윤이 한 투자분야에서 다른 투자분야로 자본이 옮겨가는 것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오랜 기간에 걸치는 재생산과정을 포괄하는 모든 판매와 계약에서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평균이윤이 그러한 한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이며 사실상 일정한 모든 생산부문에서 창조되는, 더구나 그러한 모든 부문에서의 하나하나의 모든 투자에서 창조되는 가치 및 잉여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평균이윤은 겉보기의 현상에서는 가치가 갈라지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품생산물의 가

치와는 독립한 크기로서,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미리 주어진 그리고 상품의 평균가격 자체를 규정하는 크기로서 즉 가치를 이루는 요인으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잉여가치는 그 여러 부분들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들로 나누어지는 탓으로 더 구체적인 형태에서 상품의 가치를 이루는 전제로서 나타난다. 평균이윤의 일부는 이자의 형태로, 상품과 그 가치의 생산에 전제로 된 하나의 요소로서 기능자본가에게 자립적으로 대립한다. 이자의 크기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자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자본가에게서 일정한 크기——개별적 자본가인 그가 생산한 상품의 비용가격에 들어가는——이다. 지대——농업자본가에게서는 계약으로 정한 땅세의 형태를 취하며 그리고 다른 기업가들에게서는 기업장소에 대한 세의 형태를 취한다——도 같은 역할을 논다. 잉여가치가 나뉘어 생기는 이 부분들은 개별적인 모든 자본가에게서 그의 비용가격의 일정한 요소로서 나타나므로 반대로 그것들이 마치 잉여가치를 이루는 듯이, 상품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듯이——임금이 그 다른 부분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나타난다. 상품의 가치가 나뉘어 생기는 이 산물이 어째서 늘 가치형성 자체의 전제로서 나타나는가 하는 비밀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다른 모든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물질적 생산물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계들, 물질적 생산물을 형성하는 경제적인 형태규정성도 재생산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전제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끊임없이 그 전제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같은 관계의 이 끊임없는 재생산이야말로 개별적 자본가가 자명한 것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예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러한 것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동안은 새로 덧붙는 노동의 일부는 끊임없이 임금으로 되며 또 한 부분은 이윤(이자 및 기업이득)으로 그리고 세제 부분은 지대로 된다. 서로 다른 생산요인들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데서 이것이 전제로 되며 또 이 전제는 각 경우마다 상대적인 양적 비율의 변동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다. 가치부분들이 서로 대립하는 규정된 모습은 그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전제로 되며 또 그것이 변함없이 전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

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험과 현상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시장가격——자본가는 사실상 시장가격의 영향으로만 가치가 규정되는 것으로 본다——은 그 크기로 보면 결코 위에서 말한 예상에는 의존하지 않으며 시장가격은 계약에 의하여 예견된 이자나 또는 지대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은 늘 변하고 있을 따름이며 비교적 오랜 기간의 그 평균이 바로 변하지 않는, 따라서 결국은 시장가격을 지배하는 크기로서의 임금, 이윤 및 지대의 평균을 각각 낳는 것이다.

한편 임금, 이윤 및 지대는 그것들이 가치생산의 전제로 나타나며 그리고 개별적 자본가에서는 비용가격과 생산가격에 전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를 이룬다면 불변자본부분——그 가치는 일정한 크기로서 개개 상품의 생산에 들어간다——도 가치를 이룬다는 생각은 매우 간단하게 보인다. 그러나 불변자본부분은 상품들의 총액 따라서 상품가치의 총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품가치가 상품가치를 이루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도 같은 뜻을 되풀이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가가 이 문제를 밝히는 데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다면——그런데 자본가로서의 그의 생각은 오로지 그의 이해관계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그 자신이 생산하는 생산물은 불변자본부분으로서 다른 생산분야에 들어가고 또 이 다른 생산분야의 생산물은 불변자본부분으로서 그의 생산물에 들어온다는 것을 경험은 곧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새로운 생산이 문제인 한에서 그에게서 새로 형성되는 가치는 겉보기에는 임금, 이윤 및 지대의 크기로서 이루어지므로 이것은 또한 다른 자본가들의 생산물로 이루어지는 불변부분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변자본부분의 가격 따라서 상품의 총가치는 사실상 끝까지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방식으로써이지만 결국은 자립적이며 서로 다른 법칙들에 따라 규정되고 또 서로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가치요인들인 임금, 이윤 및 지대의 합계로서 얻어지는 가치 총액이다.

네째로는,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리는가 안팔리는가 하는 것은 따라서

가치규정 그 자체는 개별적 자본가로서는 아무래도 좋다. 가치규정은 애당초부터 그와는 관계가 없는 조건에 의하여 그가 알 수 없게 진행된다. 왜냐하면 개개 생산부문에서 조절적인 평균가격을 이루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치와는 다른 생산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치규정 그 자체는 개별적 자본가의 관심사로 되며 또 그것이 개개 생산분야의 개별적 자본가에게서와 자본에서 규정적 계기로 되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한에서이다. 즉 노동생산력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데 따라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줄어드는가 또는 늘어나는가 하는 것은, 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현재의 시장가격에서 초과이익을 얻게 하며, 또 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상품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부분생산물 또는 개개 상품에 보다 많은 임금, 보다 많은 불변자본 따라서 또 보다 많은 이자가 돌아가기 때문에——한에서만이다. 가치규정이 개별적 자본가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즉 그것이 그 자신에게서 상품의 생산비를 늘이거나 또는 줄이는 한에서만 따라서 그것이 그를 예외적인 위치에 놓는 한에서만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에게는 임금, 이자 및 지대는 기능자본가로서의 그에게 돌아가는 이윤부분인 기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격일 뿐 아니라 재생산과정이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팔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가격을 조절하는 한계로서 나타난다. 그가 임금, 이자 및 지대의 크기에 의하여 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비용가격을 넘는 보통의 또는 보통 이상의 기업이익을 가격에서 빼내기만 한다면, 그가 파는 데서 상품에 들어 있는 가치와 잉여가치를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불변자본부분을 쳐쳐놓는다면 임금, 이자 및 지대는 그에게 상품가격의 한계를 짓는, 따라서 창조적이며 규정적인 요소로서 나타난다. 그가 예컨대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즉 그 정상적인 높이 이하로 낮추며 자본을 보다 낮은 이자율로 얻고 그 또 땅세를 지대의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지불할 수 있다면 그가 생산물을 그 가치 이하로, 심지어는 일반적인 생산가격 이하로 파는가 팔지 않는가 따라서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노동의 일부를 공짜로 내놓는가 내놓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는 전혀 상

관이 없다. 이것은 불변자본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상업가가 원자재를 그 생산가격 이하로 살 수 있다면 그는 이번에는 완전품 중의 이 원자재를 생산가격 이하로 파는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상품가격 중에서 동가에 의하여 지불되고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들을 넘는 초과분이 전과 같거나 또는 전보다 늘기만 하면 그의 기업이익은 전과 같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전보다 늘 수도 있다. 그런데 그의 상품의 생산에 가격의 일정한 요소로서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가치 외에도 바로 임금, 이자, 지대는 가격의 한계를 지으며 가격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그 생산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에게는 상품가격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익은 우연적인 경쟁조건에 의존하는 시장가격이 위에서 말한 가격요소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재적인 상품가치를 넘는 초과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처럼 나타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익 자체가 시장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한에서는 그 자체가 이번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경쟁에 의존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개별적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나 다같이 임금, 이자 및 지대의 일정한 그리고 미리 전제로 된 크기는 변함이 없는 그리고 조절적인 크기로서 타산되는데, 여기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개개 경우에 일정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가격에 대한 변함이 없는 한계를 이룬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예컨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오로지 문제로 되는 것은 일정한 임금, 일정한 이자 및 일정한 지대를 치루면서 상품을 일정한 일반적 시장가격대로 또는 그 이하로 팔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즉 해당한 기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임금과 땅값은 낮으나 이와 반대로 자본의 이자는 높는데——이것은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일반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다른 나라에서는 임금과 땅값은 명목상 높는데 자본의 이자는 낮다면, 자본가는 첫번째 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노동과 땅을 적용하고 두번째 나라에서는 비교적 보다 많은 자본을 적용한다. 이 두 나라의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를 타산함에 있어

서는 이 요인들이 규정적 요소로서 들어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은 임금, 이자 및 지대에 의하여 즉 노동, 자본 및 땅의 가격들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리고 이 가격요소들은 사실상 가격을 형성하는 조절적 요인들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경험히 보여주고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자본가의 이해타산이 보여주고 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는 언제나 상품의 시장가격의 전제가 아니라 그 결과인 하나의 요소 즉 위에서 든 요소들——임금, 이자 및 지대——의 합계로 이루어지는 비용가격을 넘는 초과분이 남는다. 이 네번째 요소는 개개 경우에 경쟁에 의하여 규정되고 개개 경우의 평균에서는 평균이윤——이것은 다시 같은 경쟁에 의하여 조절되지만 그러나 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만 조절된다——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섯째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새로 덧붙는 노동이 표시되는 가치를 임금, 이윤 및 지대라는 소득형태로 나누는 것은 매우 자명한 것으로 되며, 그리하여 이 방법은 이 소득형태의 존재조건 자체가 없는 곳에서도 적용된다(우리가 지대를 연구하는 데서 예로서 든 지난 역사적 시기들에 대하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즉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짐작해서 이 소득형태에 포괄시킨다.

독립적인 노력자——소농민을 들어보자. 그것은 이 경우에는 세 소득형태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가 그 자신을 위하여 일하며 그 자신의 생산물을 판다면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을 노동자로서 쓰는 자기 자신의 고용주(자본가)로서 간주되며 또 자기 자신을 차지인으로서 쓰는 자기 자신의 토지소유자로서 간주된다. 그는 임금노동자로서의 자기에게는 임금을 지불하며, 자본가로서는 이윤을 차지하며, 토지소유자로서의 자기에게는 지대를 지불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에 상응하는 관계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초로 된다고 전제한다면 독립적인 생산자가 자기 자신의 잉여노동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수단——이미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본의 형태를 취한——에 대한 소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한에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포괄되는 것은 옳다. 또한 그가 자기의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하며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는 한에서는(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가격

은 미리 타산할 수 있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잉여노동량은 그 자체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이윤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잉여가치부분을 넘는 얼마간의 초과분은 다시 그가 수행한 노동의 양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그가 땅의 소유자라는 것에 의해서만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지 않은 이러한 생산형태가 자본주의적 소득형태에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자본주의적 관계가 모든 생산양식의 자연적인 관계인 듯한 외관이 더욱더 확고히 된다.

임금을 그 일반적 기초 즉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에서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돌려 놓고 보자. 이 몫을 자본주의적 제한에서 해방하여 이것을 한편으로는 현재의 사회생산력(즉 실제적인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노동자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허용하는 소비의 범위까지 또 한편으로는 개성의 충분한 발전이 요구하는 소비의 범위까지 늘여보자. 또한 잉여노동과 잉여생산물을 일정한 사회의 생산조건에서 한편으로는 보험과 예비를 위한 밑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규정되는 정도로 재생산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되게 하자. 끝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회성원이 아직 노동능력이 없거나 또는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회성원을 위하여 늘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량을 1) 필요노동과 2) 잉여노동 속에 포함시켜 보자. 즉 임금과 잉여가치에서,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에서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벗겨 보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들은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회적 생산양식에 공통한 이 형태들의 기초만이 남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포괄은 이전의 지배적인 생산양식들 예컨대 봉건적 생산양식에도 고유한 것이었다. 봉건적 생산양식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전적으로 그 밖에 서 있는 생산관계가 봉건적 관계에 포괄되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농민보유지——이것은 기사보유지와 대립하는 것이다——가 그러하였는데 이것은 화폐를 바칠 의무만을 포함하였고 이로부터만 봉건적이었다.

제 51 장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그리하여 해마다 새로 덧붙는 노동에 의하여 새로 덧붙는 가치는——따라서 또한 한 해 생산물 중에서 이 가치를 표시하며 또 생산물의 총가치 중에서 떼어낼 수 있는 부분도——서로 다른 세 소득형태를 취하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형태들은 이 가치의 한 부분은 노동력의 소유자에게, 또 한 부분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세째 부분은 토지소유권의 소유자에게 속하거나 또는 돌아간다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분배관계 또는 분배형태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새로 생산된 가치 전체가 서로 다른 생산요인의 소유자들 사이에 분배되는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견해에 의하면 이 분배관계는 자연적 관계, 온갖 사회적 생산의 본성으로부터, 사람들의 생산 일반의 법칙들로부터 나오는 관계이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들이 다른 분배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분배방식들은 이 자연적 분배관계의 가장 순수한 표현과 최고의 형태에 이르지 못한 변동, 발전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위장되었으며 색깔을 달리한 변종으로서 해석되고 있다.

이 견해에서 옳은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생산(예컨대 자연적으로 생긴 인도공동체나 또는 페루인들의 비교적 인위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에서나 생산자와 그의 가족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부분과——생산적 소비에 돌아가는 부분은 제쳐놓고——항상 일반적인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쓰이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언제나 잉여노동인 그 노동부분과는——그 잉여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되건 누가 이 사회적 수요의 대표자로서 기능하건 간에——항상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분배방식

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그 차이와 특수한 형태들을 사상하고 차이와 상반되는 그 공통성에만 주의를 돌릴 때에 그것들이 같다는 것으로 될 뿐이다.

머리가 더 발달하고 더 비판적인 사람은 분배관계의,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성격을 인정하기는 하지만⁵⁶⁻¹⁾ 그러나 그만큼 집요하게 생산관계 자체의 변함없는 성격,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며 따라서 온갖 역사적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그 성격을 고집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와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증명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특수한 역사적 규정성을 가진 특별한 종류의 생산양식이라는 것, 그것은 다른 온갖 규정된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사회적 생산력과 그 발전 형태의 일정한 단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 그 조건은 그 자체가 선행과정의 역사적인 결과이자 그 산물로서 새로운 생산양식은 그것을 자체의 주어진 기초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역사적으로 규정된 이 특수한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생활과정에서, 자기의 사회적 생활의 생산에서 맺게 되는 관계——는 특수하고 역사적이며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분배관계는 본질상 생산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 생산관계의 이면이며,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한결같이 역사적으로 잠정적인 바로 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분배관계를 고찰할 때에는 우선 한 해 생산물이 임금, 이윤 및 지대로서 분배된다는 이른바 사실로부터 출발하고들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렇게 표현되면 그릇된 것이다. 생산물은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이 소득 중의 하나인 임금 자체는 언제나 소득 즉 노동자의 소득의 형태만을 취하는데 그것은 그 소득이 전에 자본의 형태로서 바로 그 노동자와 대립한 이후의 일이다. 생산된 노동조건과 노동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자본으로서 직접적인 생산자와 대

56-1) J. S. 밀, 「정치경제학상의 약간의 미해결문제」, 런던, 1844년(둘째 논문, 47~74페이지).

립한다는 사실은 맨 처음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 노동조건의 일정한 사회적 성격을, 따라서 그들이 생산 그 자체에서 노동조건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그리고 그들 호상간에 맺는 일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 노동조건이 자본화하는 것은 또한 직접적 생산자들로부터의 땅의 수탈을, 따라서 토지소유의 일정한 형태를 전제로 한다.

만일 생산물의 한 부분이 자본으로 전화하지 않는다면 생산물의 다른 부분은 임금, 이윤 및 지대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조건의, 일정한 이 사회적 형태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부단히 그것을 재생산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그 생산물이 생산되는 생산관계를, 따라서 또한 이에 상응하는 분배관계를 부단히 재생산한다.

물론 자본(여기에는 그것의 대립물로서의 토지소유도 포함된다) 자체가 벌써 분배를 즉 노력자에게서 노동조건을 수탈하는 것, 소수의 개인들 손에 이 조건이 집중되는 것, 또 다른 개인들을 위한 독점적인 토지소유권, 한마디로 말하여 시초축적에 관한 편(『자본론』, 제1권, 제24장)에서 연구된 모든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배는 사람들이 분배관계라고 할 때에 의미하는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여기에서 분배관계라고 할 때에는 생산관계와 대립해서 거기에다 역사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생산물 중 개인적 소비에 돌려지는 몫에 대한 서로 다른 권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위에서 말한 분배관계는 생산관계 자체의 내부에서 그 생산관계의 일정한 대리인들이 직접적 생산자들과 대립해서 놀아야 하는 특수한 사회적 기능의 기초이다. 그것은 생산조건 자체와 그 대표자들에게 특수한 사회적 자질을 부여한다. 그것은 생산의 전체 성격과 전체 운동을 규정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는 맨 처음부터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생산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 밖의 생산양식을 구별케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생산물의 경우에는 상품으로서의 그 존재가 지배적이며 규정적인 특징이라는 그 점이다.

이것은 우선 노동자 자신이 오직 상품판매자로서만, 따라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로서만 나타나며 따라서 노동은 일반적으로 임금노동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명한 모든 것으로 보아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가 이 생산양식의 전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논증할 필요는 없다. 바로 이 생산양식의 주되는 대표자들인 자본가와 임금노동자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들 자신은 자본과 임금노동의 체화, 인격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 과정이 개인들에게 아로새기는 일정한 사회적 성격이며 그 일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의 산물이다.

1) 상품으로서의 생산물의 성격과 2) 자본의 생산물로서의 상품의 성격은 벌써 유통관계 전체를 즉 생산물이 거쳐야 하는 그리고 생산물에 일정한 사회적 특징을 부여하는 일정한 사회적 과정을 포함한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또 생산대표자들의 일정한 관계도 포함하는데 그 관계에 의하여 가치를 불리기 위한 그들의 생산물의 이용과 생활수단 또는 생산수단으로의 그것의 역전화가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제쳐놓더라도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특성 즉 상품으로서의 생산물 또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으로서의 상품이라는 이 특성으로부터 전체 가치규정이 나오며 가치에 의한 전체 생산의 조절이 나온다. 완전히 특수한 이 가치형태에서 노동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노동으로서만 의의를 가진다. 다른 한편 이 사회적 노동의 분배와 그 노동생산물의 상호보충, 그 노동생산물들의 물질대사, 사회적 기구에의 그 노동의 종속과 편입——이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의 우연한, 서로 없애치우는 활동에 맡겨져 있다. 이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은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각자는 자기의 상품을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려고 하는(생산의 조절에서도 순전히 제마음대로만 행동하는 것같이 보인다) 만큼 내적 법칙은 배리를 서로 없애는 그들의 경쟁, 그들이 서로 가하는 압력을 매개로 해서만 관철된다. 이 경우에 가치법칙은 개별적 대표자들에게 대립하는 내적 법칙, 맹목적인 자연법칙으로서만 작용하며 생산의 우연적인 동요 속에서 생산의 사회적 균형을 유지해나간다.

또한 이미 상품, 더구나 자본의 생산물로서의 상품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전체를 특징짓는 사회적인 생산규정들의 물화와 생산의 물질적 기초의 인격화가 들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수한 차이점으로 되는 둘째 것은 생산의 직접적 목적이며 규정적 동기로서의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자본은 본질상 자본을 생산하는데 오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한에서만 그렇게 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와 더 나아가서는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를 고찰할 때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기에 독특한 생산양식——이것은 사회적 노동생산력 발전의 특수한 형태인데 이 생산력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자본력의 성격을 취하며 따라서 노동자 그 자신의 발전과 직접 모순되는 것이다——이 어떻게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가치와 잉여가치를 위한 생산은 우리의 그 다음 연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즉 상품의 가치를 그때그때에 있게 되는 사회적 평균가치 이하로 줄이려고 부단히 작용하는 경향을 전제로 한다. 생산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사회적 노동생산력을 높이는 가장 힘센 지대로 된다. 그러나 이 생산력을 높이는 것은 이 경우에 자본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으로서만 나타난다.

자본가가 자본의 인격화로서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얻는 권력, 그가 생산의 지도자와 지배자로서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은 노예나 농노 등을 이용하는 생산에 기초한 권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직접적 생산자대중에게 그들의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엄격히 규제하는 권력의 형태로서 그리고 완전한 위계제도로 된 노동과정의 사회적 기구의 형태로서 대립한다. 그러나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 권력을 노동 자체와 대립하는 노동조건인 인격화로서만 행사할 뿐이고, 이전의 생산형태들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정치적 또는 선정적 지배자로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권력을 쥔 사람들 속에서는,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대립하는 자본가 자신들 속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무정부상태가 지배하는데 이 무정부상태내에서 생산의 사회적 연관은 전능한 자연법칙으로서만 개인적 자의를 위압하면서 실현된다.

가치(생산물)의 한 부분이 잉여가치로서 나타나며 이 잉여가치가 이윤

(지대), 자본가의 소득,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부로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임금노동의 형태로서의 노동과 자본의 형태로서의 생산수단이 전제로 주어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오직 이 생산의 두 가지 기본요인이 이처럼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직 가치의 한 부분이 이와같이 그의 이윤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확대재생산에 예정되어 있으며, 자본가의 이윤의 일부를 이루는 추가적인 생산수단은 새로운 추가적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확대재생산과정 일반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의 형태는 전체 과정의 성격과 생산 자체의 특수한 방식에 대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지만 그러나 임금노동이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규정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사회적 노동시간 일반이며 사회 일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량, 서로 다른 생산물이 뺄아들이는 몫에 따라 그 생산물들의 사회적 비중이 규정되는 노동량이다. 사회적 노동시간이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나타나는 일정한 형태는 물론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의 형태와 이에 상응하는 자본으로서의 생산수단의 형태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 기초 위에서 상품생산이 일반적 생산형태로 되는 한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른바 분배관계 자체를 보기로 하자. 임금은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며 이윤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일정한 분배형태들은 생산조건의 일정한 사회적 성격과 생산당사자들의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일정한 분배관계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생산관계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윤을 보기로 하자. 잉여가치의 이 일정한 형태는 새로운 생산수단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형태로 형성되는 전제이며 따라서 이것은 재생산을 지배하는 하나의 관계이다. 그러나 개별적 자본가에게는 그가 정말로 자기의 이윤을 소득으로서 뭉땅 먹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경우에 보험의 밑천과 예비의 밑천, 경쟁의 법칙 등의 형태로 그의 앞에 나타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 한계는 이윤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단순한 분배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실지로 증명하여 준다. 그리고 또 전체 자본주

의적 생산과정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하여 조절된다. 그런데 조절적인 생산가격은 그 자체가 또한 이윤율의 균등화와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적 생산분야 사이에 실시되는 자본의 분배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윤은 생산물 분배의 주되는 요인이 아니라 생산물의 생산 자체의 주되는 요인이며 자본과 노동 자체를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에 분배하는 요인이다. 이윤이 기업이득과 이자로 갈라지는 것은 똑같은 소득이 나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체를 불리는 가치,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로서의 자본의 발전에서 즉 지배적 생산과정의 이 일정한 사회적 형태의 발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부터 신용과 신용제도를 발전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의 해당한 형태를 발전시킨다. 이자나 이자와 비슷한 이른바 분배형태들은 규정적인 생산적 요인으로서 가격에 들어간다.

지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분배형태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소유 그 자체는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아무런——적어도 아무런 정상적인——기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 지대가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에 국한되며 2) 토지소유자가 생산과정과 따라서 전체 사회적 생활과정의 지도자와 지배자로부터 단순히 땅을 빌려주는 자, 땅으로 고리대를 하는 자, 단순히 지대를 받아먹는 자의 지위로 떨어진다는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수한 역사적 결과이다. 땅이 토지소유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생산양식의 역사적 전제로 된다. 토지소유가 농촌경리의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허용하는 형태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이 생산양식의 특수한 성격의 산물이다. 토지소유자의 소득은 다른 사회형태하에서도 지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하에서의 지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른바 분배관계는 생산과정의 역사적으로 규정된 특수한 사회적 형태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간생활의 재생산과정에서 상호간에 가지게 되는 관계에 상응하며 또 그 형태와 관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이 분배관계의 역사적 성격은 생산관계의 역사적 성격이며 분배관계는 생산관계의 한 측면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적 분배

는 그 밖의 생산양식들에서 생겨나는 분배형태들과는 다르며 또 개개 분배형태는 일정한 생산형태——분배형태가 생겨나고 상응하는——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한다.

분배관계만을 역사적인 것으로 보고 생산관계는 역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한편으로는 부르조아 경제학에 대하여 초보적이며 아직도 소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견해이다. 다른 한편 그 견해는 사회적 생산과정과, 유달리 고립된 인간이 아무런 사회적 도움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순한 노동과정을 뒤섞고 같은 것으로 보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정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한 노동과정의 단순한 요소들은 그 모든 사회적 발전형태에 의연히 공통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일정한 역사적 형태는 모두 이 과정의 물질적 기초와 사회적 형태를 더욱 발전시킨다. 일정한 성숙단계에 이르면 그 역사적 형태는 버림을 받고 보다 높은 형태에 자리를 내준다. 그러한 위기가 왔다는 것은 분배관계 따라서 또한 이 분배관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의 일정한 역사적 형태를 한편으로 하고 생산력, 생산능력 및 그 요인들의 발전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간의 모순과 대립이 확대하고 심화되는 데서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생산의 물질적 발전과 생산의 사회적 형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⁵⁷⁾

57) 경쟁과 협동에 관한 저서(1832년?)를 보라.¹⁰²

제 52 장 계 급

한갓 노동력만의 소유자, 자본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이들의 소득원천은 각각 임금, 이윤 및 지대이다——즉 임금노동자, 자본가 및 토지소유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현대사회의 3대 계급이다.

영국에서 현대사회는 그 경제적 구조의 견지에서 보아 논쟁할 여지없이 가장 광범하게, 가장 고전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이 계급구분은 아직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영국에서도(농촌에서는 도시에서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덜하지만) 중간적 및 과도적 단계들이 도처에서 계급간의 엄격한 계선을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연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생산수단이 더욱더 노동과 분리되며 흩어진 생산수단이 더욱더 집중되어 큰 더미를 이루며 따라서 노동이 임금노동으로 전화하고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전화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항구적 경향이며 발전법칙이다. 그리고 이 경향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소유가 자본 및 노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분리된다.⁵⁸⁾ 즉 온갖 토지소유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토지소유형태로 전화한다.

58) F. 리스트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대영지에서 자체로 해나가는 경영이 우세한 것은 문명, 교통수단, 국내공업 및 부유한 도시의 발전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메클렌부르크그의 도처에서 보게 된다. 이전에는 영국에서도 그것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 대신에 그것이 증질 정도의 경리로 갈라지게 되고 땅을 빌려주게 되었다”(『농지제도, 영세경리 및 국외이주』(슈투트가르트 및 튀빙겐), 1842년, 10페이지).

우선 해답을 주어야 할 문제는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임금노동자, 자본가, 토지소유자는 무엇에 의하여 3대 사회계급을 이루는가 하는 다른 문제에 해답을 주기만 하면 저절로 풀릴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그것은 소득과 소득원천이 같다는 점인 것처럼 보인다. 3대 사회적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의 구성요소, 그 집단을 이루는 개인들은 각각 임금이나 이윤이나 지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의 자본과 자기의 토지소유를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예컨대 의사와 관리는 두 계급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으며 각기 이 두 집단성원들의 소득은 똑같은 원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노동자들 속에서는 자본가와 토지소유자들 속에서는 사회적 분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해관계와 처지의 무한한 세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토지소유자는 포도원의 소유자, 경작지의 소유자, 산림의 소유자, 광산의 소유자, 어장의 소유자로 나누어진다.

{원고는 여기에서 중단되고 있다.}

F.엔겔스

『자본론』 제Ⅲ권에 대한 보충

1859년 5월 6월에 F.엔겔스가 쓴
머릿말과 첫 논문은 잡지『신시대』(제
1권, 제1호, 1895~1896년)에 처음으
로 발표, 두번째 논문은 러시아어로
잡지 『볼셰비크』(1932년, 제23~24호)
에 처음으로 발표. 수고에 의하여 인
쇄, 『신시대』의 본문과 대조 원문은
독일어

『자본론』 제3권은 여론의 판단에 맡겨진 이래 이미 여러 번 구구한 해석을 받아왔다. 그와 다르게 되기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것을 출판할 때 나의 임무는 우선 될 수 있는 대로 진실한 본문을 마련하고, 맑스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될 수 있는 대로 맑스 자신의 말로 전달하며, 나 자신의 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어넣되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누구의 말이라는 데 대하여 독자에게 사소한 의문도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비난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에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만들어야——프랑스 사람들의 표현으로 *en faire un livre*——할 것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문의 진실성을 희생시켜야 할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임무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 나에게서는 그렇게 개작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맑스와 같은 인물은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을, 자기의 과학적 발견을 자기 자신이 서술한 대로 후세에 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것처럼 뛰어난 인물의 유고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배신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세째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읽을 수 없거나 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제1부에 대하여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데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무엇을 양보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데 진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개작이 고작해서 주석, 더구나 출판도 되지 않았고 손에 넣을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주석의 가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논쟁이 붙자마자 원문을 인용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며 두번째, 세번째 논쟁에서는 원문 전체의 출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새로운 것을, 그것도 총총히 써놓았을 뿐이고 군데군데 빠진 데도 있는 초고의 형태로 제공하는 저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쟁이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해에서의 곤란한 점을 없애기 위하여, 원문에서 그 의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점들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또는 1865년에 쓰여진 원문에다 1895년의 사태에 근거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내가 참견하는 것은 확실히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지금에 와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이다.

I. 가치법칙과 이윤율

이 두 요인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의 해결이 맑스의 본문이 발표된 후에도 그것이 발표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논의를 일으키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적을 기대하였다가 예상했던 요술 대신에 간단하고 합리적이고 무미건조한 모습의 해결을 보고는 환멸을 느끼고 있다. 환멸을 느끼고 마음껏 기뻐한 것은 물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로리아이다. 그는 마침내 자기 따위의 난쟁이로서도 맑스가 든든하게 쌓아놓은 거대한 건물을 공중에 쳐들어 폭파할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지점(支點)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는 격분하여 부르짖는다. 무엇이랴구, 그런 것이 해결이란 말인가? 그것은 순전한 기만이다! 경제학자들이 가치를 운운할 때에는 사실상 교환에서 확정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이 그대로 팔리지 않을 뿐 아니라 팔릴 수도 없는(ne possono vendersi mai) 가치를 연구하는 일은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제학자로서는 아직 누구도 한 적이 없으며 또 결코 하지도 않을 것이다. … 상품이 그대로 결코 팔리지 않는 가치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에 비례하여 규정된다고 맑스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상품이 그대로 팔리는 가치는 상품에 소비된 노동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정통파 경제학자들의 명제를 다만 거꾸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개별적 가격은 개별적 가치와 차이가 나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 총액은 언제나 그 상품의 총가치와 또는 총상품량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량과 일치한다고 하는 맑스의 주장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치란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에 지나지 않으므로 총가치라는 개념 그것부터가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것이며 … 형용상의 모순이다.”

맑스는 자기의 저서의 맨 첫머리에서 교환이 두 개의 상품을 등치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상품들이 같은 종류의 그리고 같은 양의 요소 우선 해답을 주어야 할 문제는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즉 같은 양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는 상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양에 비례해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비례로 교환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설을 엄숙하게 부인한다는 것이다.

“언제 이렇게까지 불합리에 빠진 것을 보았으며 이보다 더한 이론적 파산을 본적이 있는가? 언제 이보다 더 호사스럽고 장엄한 과학상의 자살이 있었는가?” (『신과학, 문학 및 예술문집』, 104 로마, 제3조, 제55권, 1895년 2월 1일, 477~478, 479페이지)

보다시피 우리의 로리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가 맑스물 자기파위의 평범한 사기꾼으로 냉대한 것은 옳지 않았던가? 자 보라——맑스는 로리아처럼 자기의 독자를 우롱하고 있다. 그는 신통히도 아주 너절한 이탈리아의 경제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기만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 둘까마라¹⁰⁵는 자기의 직업에 능통하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둔중한 북쪽나라 사람인 맑스는 길을마다 궁지에 빠지며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말을 한다. 그리하여 결국 그에게는 장엄하게 자살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상품은 그 가치대로 결코 팔린 적이 없으며 또 팔릴 수도 없다는 주장은 당분간 논하지 말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로리아씨의 주장만을 언급하자.

“가치란 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품의 총가치라는 개념 그것부터가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

결국 두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인 상품의 가치는 순전히 우연한 것이며 외부로부터 상품에 와서 묻은 것이며 오늘은 이만큼 되었다가 내일은 저만큼 될 수 있는 것이다. 1센트너의 밀이 1그램의 금과 교환되는가 또는 1킬로그램의 금과 교환되는가 하는 것은 이 밀이나 이 금에 내재하는 조건에는 조금도 달라지 않고 이것들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정에

달렸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교환에서도 작용하고 교환을 대체로 지배하며 교환과는 관계없이 자립적인 존재를 유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상품의 총가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명한 로리아는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상품이 어떠한 비율로 교환되든지 간에 그것이 그 상품들의 가치이며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는 가격과 같은 것이며 개개 상품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가격의 수만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그 이상 질문을 계속하면서 해답을 기다리는 자는 머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걸리는 점이 있다. 정상상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상품 전체를 절반씩 즉 수요부류 그리고 그와 양이 같은 공급부류로 나누어 보자. 그리고 또한 개개 부류의 가격=1조 마르크, 프랑, 파운드 스텔링 또는 그 어떤 다른 화폐단위라고 하자. 이것은 분명히 도합 2조의 가격 또는 가치로 된다.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로리아 씨는 부르짖는다. 두 부류를 합하면 2조의 가격을 표시할지 모르나 가치의 사정은 다르다. 가격이라고 하면 $1+1=2$ 이지만 가치라고 하면 $1+1=0$ 이다. 적어도 모든 상품의 총체가 문제인 이 경우에는 사정이 이렇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두 소유자 중 각자는 상대방의 상품에 대하여 1조를 주려고 하며 또 줄 수 있으므로 그 중 각자의 상품은 1조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소유자의 모든 상품을 제3자의 손에 집결한다면 한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될 것이며 또 한편 사람에게도 없을 것이며 제3자에게는 더구나 없을 것이다. 결국 누구에게나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쪽나라 사람인 까글리오스뜨로가 가치개념을 자그마한 혼적도 남지 않을 만큼 처치해버리는 데서 발휘한 우월성에 다시금 경탄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속류경제학의 훌륭한 완성이다!''

-
- 1) 그 이름 모를 사람 없는(하이네의 말을 빈다면) 바로 이 신사는 좀 후에 제3권에 대한 나의 서문에 부록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그것은 나의 서문이 1895년의 『평론』, 제1호에 이탈리아 마로 발표된 후의 일이다. 그

브라운의 『사회입법 및 통계 문헌집』¹¹⁰(베를린, 제7권, 1894년)에서

대답은 1895년 2월 25일자 『사회개혁』¹⁰⁶에 실렸다. 그는 먼저 그로서는 피할 수 없는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갑절이나 불쾌한 찬사를 나에게 퍼붓고나서 자기는 유물사관 분야에서의 맑스의 공적을 가로채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1885년에 어느 잡지의 자그마한 논설에서 말하는 김에 맑스의 공적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이에 대하여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즉 이 문제를 주제로 한 자기의 저서에서는 완강하게 이것을 묵살하고 있다. 그 저서에서는 다만 129페이지에 맑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도 프랑스에서의 소토지소유를 논하는 기회에 나올 뿐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는 대담하게도 이렇게 언명한다. 즉 맑스는 결코 이 이론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 이론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체로 암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심할 바 없이 해랑틴이 이미 1656년에 선포한 것으로서 그것이 맑스보다 훨씬 이전에 일련의 역사가, 정치가, 법률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새로 전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로리아의 저서의 프랑스 판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란 이렇다. 요컨대 맑스는 더할 나위 없는 표절자라는 것이다. 그가 맑스의 글을 빌려다가 허풍을 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못하게 한 후에도 그는 맑스도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의 글로 자기를 장식하고 있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내가 가한 반박 가운데서 맑스는 「자본론」, 제2권 더구나 제3권은 결코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로리아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만 그는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엥겔스는 기세등등하게 제2권과 제3권을 내놓으면서 나에게 대답하고 있다. ... 훌륭하다! 그런데 나는 그처럼 커다란 지적 쾌락을 맛볼 수 있게 한 그 두 권에 대하여 대단한 기쁨을 느끼는 데 일찍이 어떠한 승리도 오늘 의 이 패배——이것이 참으로 패배라면——처럼 나에게 즐거운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패배인가? 엥겔스가 경건한 우정을 가지고 모아놓은 이 두서없는 수많은 소논문들을 맑스가 발표할 목적으로 썼다는 것이 정말로 옳은가? 맑스가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자기의 저서와 자기의 체계를 완성하려고 하였다고 정말로 볼 수 있겠는가? 맑스가 여러 해 전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그 해결이란 것이 아주 비판적인 기만과 아주 속된 말공부로 되고만, 평균이윤율에 관한 그 장을 그가 발표하였으리라는 것이 정말인가? 이것은 적어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 이것은 맑스가 자기의

베르너 쾰바르트는 맑스의 체계의 윤곽을 대체로 훌륭하게 서술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수로서 맑스의 저서들에서 맑스가 실지로 말한 것을 대체로 다 읽고 맑스의 체계에 대한 비판은 그 체계를 반박하는——“정치적 야심가들이나 이렇게 할 것이다.”——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전개하는 데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물론 쾰바르트도 우리의 논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는 가치가 맑스의 체계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가치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들의 교환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당사자들의 의식 속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사상적, 논리적 사실이다. 물질적 규정성에서의 가치개념은 맑스의 경우에는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경제적 정재의 기초라는 사실의 경제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경제제도하에서 가치법칙은 궁극에 있어서 경제현상들을 지배하는 것이며 이 경제제도하에서는 극히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 즉 상품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현상들을 지배하는 노동생산력의 규정적 작용이 실현되는 특수한 역사적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쾰바르트는 말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에 대한 가치법칙

훌륭한(splendido) 책을 출판한 이후 그 속편을 낼 생각이 없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대작의 완성을 자기의 후계자들에게 맡기려고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나에게서는 생각된다.”

267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하이네가 자기의 속물적인 독일독자층에 대하여 한 가장 열시적인 말은 “저자는 결국 자기의 독자층이 마치 이성적 존재인 것처럼 그들에게 습관이 된다.”¹⁰⁷는 것이다. 유명한 로리아는 자기의 독자층을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불행한 나에게 새로운 찬사를 한바탕 퍼붓고 있다. 이 경우에 우리의 스가나렐¹⁰⁸은 저주하러 왔으나 입술은 뜻과는 반대로 축복과 사랑의 말을 퍼붓는 발람¹⁰⁹과 비슷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발람은 주인보다 영리한 당나귀를 타고 다닌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는 발람이 자기의 당나귀를 집에 두고 온 것이 분명하다.

의 의의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말할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해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 같고 그것을 보다 규정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정식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이해는 가치법칙에 지배되는, 사회의 경제적 발전단계들에서 가지는 이 법칙의 전체 의의를 결코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브라운의 『사회정치 중앙신문』,¹¹¹ 1895년 2월 25일자, 제22호에는 『자본론』 제3권에 관한 콘라드 슈미트의 역시 훌륭한 논문이 실려 있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맑스가 잉여가치로부터 평균이윤율을 끌어냄으로써 지금까지는 경제학자들이 제기하지도 못하였던 문제, 즉 이 평균이윤율의 높이는 어떻게 규정되며 또 어째서 그것은 예컨대 10%나 15%이고 50%나 100%에는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처음으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논증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자본가가 차지하는 잉여가치가 이윤 및 지대가 나오는 단 하나밖에 없는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래 이 문제는 저절로 풀리고 있는 것이다. 슈미트의 논문의 이 부분은 만일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려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면 직접 로리아 따위의 경제학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슈미트도 역시 가치법칙에 대한 형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치법칙을 실제적 교환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과학적 가설이라고, 외관상으로는 그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듯한 경쟁가격의 현상까지도 설명하는 필요한 이론적 출발점으로서 실증된 가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가치법칙이 없이는 자본주의적 현실의 경제적 기구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 해석도 불가능하다. 슈미트는 나에게 인용할 것을 허락한 어떤 사신(private letter)에서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형태내에서는 이론적으로 부득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허구라고 적어서 말하고 있다.¹¹² 그러나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이해는 전혀 부당하다.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도 단순한 가설——부득이한 허구는 더 말할 것도 없고——보다는 훨씬 더 크고 더 규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쾰바르트도 슈미트도——유명한 로리아는 여기에서 드는 김에 속류경

제학의 재미나는 견본으로서 들어들 뿐이다——여기에서는 순논리적 과정뿐 아니라 역사적 과정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사유에의 반영, 그 과정의 내적 연관의 논리적 추구가 문제로 되고 있다는 데에 옹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결정적인 구절은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1부, 154페이지*에 있다.

“모든 곤란은 상품이 단순히 상품으로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생산물로서 교환되는 데 있는데, 자본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또는 그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잉여가치 총량에서 몫을 요구한다.”

이 차이를 예증하기 위하여 우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평균하여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일하며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서로 직접 교환한다고 가정한다. 그 경우에는 두 노동자는 하루의 자기 노동으로 자기의 생산물에 같은 양의 새로운 가치를 덧붙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생산물은 이미 이전에 생산수단에 체화되어 있는 노동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후자의 가치부분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변자본을 표시할 것이며, 새로 덧붙은 가치 중에서 노동자의 생활수단으로 쓰여지는 부분은 가변자본에 해당할 것이며, 새로운 가치 중에서 그 밖에 남아 있는 부분은 잉여가치를 대표할 것인데, 이 경우에 그것은 노동자에게 속할 것이다. 따라서 두 노동자는 그들이 다만 선대하였을 따름인 불변가치부분을 보상할 것을 떼어놓은 다음에는 크기가 같은 가치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과 생산수단의 가치와의 비율——이것은 자본주의적 이윤율에 상응할 것이다——은 두 사람의 경우에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교환에서 자기의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상받으므로 이것은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 이 권, 제1분책, 213~214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따라서 가치대로의 또는 대략 가치대로의 상품교환은 일정하게 높은 단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요구하는 생산가격대로의 교환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를 요구한다. … 그러므로 가치법칙이 가격과 가격운동을 지배한다는 것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상품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생산가격에 앞선 것으로 보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것은 생산수단이 노동자에게 속하는 상태에 타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고대세계에서나 현대세계에서나 스스로 일하는 땅을 가진 농민과 수공업자의 경우에 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견해 즉 생산물이 상품으로 발전하는 것은 같은 한 공동체성원들 사이의 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들 사이의 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이러한 원시적 상태에 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제와 농노제에 기초한 그 후의 상태에도 타당하며, 또한 수공업의 동업조합적 조직에도——각 생산부문에 고착된 생산수단을 한 분야로부터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상호관계가 어느 정도까지든 서로 다른 나라나 또는 공산주의적 공동체들 사이의 관계와 같은 한에서는——타당하다”(맑스, 『자본론』, 제3권, 제1부, 155~156페이지). *

맑스가 제3부를 다시 한 번 다듬고 고칠 수 있었다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이 구절을 현저히 상세하게 전개하였을 것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이 구절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해야 할 그것의 초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점을 좀더 상세히 논하기로 하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생활의 첫 단계들에서는 생산물이 생산자들 자신에 의하여 소비되며, 이 생산자들은 어느 정도 공산주의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에 자연발생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화되기 시작하게 하는 이 생산물의 잉여분의 교환은 좀 후에 생기며, 그것이 처음에는 종족이 다른 개별적 공동체들 사이에만 진행되다가, 후에 와서야 비로소 공동체내에도 생겨서 공동체가 크고 작은 가족집단들로 해체되는 데 본질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체된

* 이 권, 제1분책, 215~216페이지를 보라. 편년부.

후에도 서로 교환하는 가장들은 의연히 근로농민으로서 이들은 자기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자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기 경리에서 생산하며 필수품의 적은 부분만을 자기 노동생산물의 잉여분을 가지고 외부에 가서 바꾸어 온다. 가족은 농사일과 짐승 기르기에 종사할 뿐 아니라 그 생산물을 가공하여 소비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며 곳에 따라서는 땃돌로 난알을 뿜기까지 하며 뿜을 구으며 아마와 양모로 실을 뽑고 물을 들이며 천을 짜며 가족을 이기며 나무집을 짓고 수리하며 도구와 용기를 만들며 또 종종 목공이나 야장일도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족이나 가족집단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한다.

이러한 가족이 남에게서 교환으로 얻어오거나 사들여야 하는 그 약간의 것은 독일에서는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도 주로 수공업적 생산물 즉 그 제조법을 농민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사들이는 제품이 값싸거나 질이 좋아서 손수 만들지 않는 그러한 물건들이었다. 따라서 중세의 농민은 자기가 교환해오는 물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꽤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을의 야장이나 수레 제조공은 농민이 보는 데서 일하였으며 재봉사와 구두쟁이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젊었을 때만 하여도 우리 라인 지방에서는 이들이 농가를 이집 저집 찾아다니며 그들이 직접 만든 천과 가족으로 옷과 신을 지어주곤 하였다. 농민이나 농민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다 자신이 노력자들이었으며 교환되는 물품은 그들 각자의 노동의 생산물이었다. 그들이 이 생산물을 만드는 데 지출한 것은 무엇인가? 노동, 노동뿐이다. 그들은 노동도구를 보상하며 원료를 생산하며 원료를 가공하는 데 그들 자신의 노동력밖에는 아무 것도 지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이 생산물을 다른 생산자의 생산물과 교환할 때 지출된 노동에 비례하여 교환하는 외에 다른 수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 생산물에 지출된 노동시간은 교환하게 되는 크기를 양적으로 규정하는 데서 적합한 단 하나의 척도였을 뿐 아니라 결코 어떠한 다른 척도도 있을 수가 없었다. 농민과 수공업자가 한 사람의 10시간노동짜리 생산물을 다른 사람의 한 시간노동짜리 생산물과 교환할 만큼 어리석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농민적 자연경제의 전기간에 걸쳐서 가능한 것은 교환되는 상품량이 그것에 체

화된 노동량에 의하여 더욱더 제어지게 되는 그러한 교환뿐이었다. 화폐가 이 경제에 침투한 순간부터 가치법칙(주의하라——맑스가 정식화한 그대로의)에 적응하는 경향은 한편으로는 더욱더 뚜렷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리대자본과 국고제도의 간섭으로 해서 점점 파탄되게 된다. 그리고 가격이 평균하여 가치와 거의 가까워지는 기간은 이미 더 길어지게 된다.

농민의 생산물과 도시 수공업자의 생산물 사이의 교환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처음에 교환은 직접, 상인의 매개없이 농민이 팔고 사고 하는 도시의 장날에 진행된다. 이 경우에도 농민은 수공업자의 노동조건을 알고 있으며 수공업자도 농민의 노동조건을 알고 있다. 수공업자 자신도 아직은 어느 정도 농민으로서 채마밭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흔히 얼마간의 밭과 한두 마리의 암소, 돼지, 집짐승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세기 사람들은 적어도 일용품에 한해서는 서로 남의 원료, 보조자재의 생산비와 노동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출된 노동량에 따른 이러한 교환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중단되면서 노동이 지출되고 소출도 일정하지 않은 생산물, 예컨대 낱알이나 집짐승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출된 노동량을 더구나 계산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나마 규정하였겠는가? 분명히 이렇게 해보았다 저렇게 해보았다 하면서 오랜 과정을 통하여 암중모색하여 비로소 규정하게 되었을 것인데, 이 경우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오직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대체로 각자가 자기의 비용을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개개 경우에 언제나 옳은 방도를 찾아내도록 도와주었으며, 교환되는 물품의 종류수가 제한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방법이 종종 수세기 동안이나 달라지지 않았던 관계로 이 과정은 험하게 되었다. 이 생산물의 상대적 가치량을 근사적으로 정확하게 확정하는 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집짐승과 같은 상품——집짐승은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생산하는 기간이 오래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가치량을 규정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같이 보인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공인된 첫 화폐상

품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된다. 집짐승이 화폐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집짐승의 가치, 일련의 다른 상품에 대한 그것의 교환비율이 비교적 보통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많은 종족들의 지역에서 무조건 인정된 고정성을 가지게 되어야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이나 그들에게서 사는 사람이나 틀림없이 아주 영리하여 자기들이 지출한 노동시간을 교환에서 등가물없이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상품생산의 초기상태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민족이나——예컨대 러시아인과 동방인——지금도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여 생산물에 지출한 노동시간을 완전히 보상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끈덕지게 흥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의한 이러한 가치규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상품생산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치법칙의 여러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들도 「자본론」 제1권 제1편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특히 노동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창조하게 되는 조건들도 발전하였다. 더구나 이 조건들은 당사자들에게 의식되지 않은 채 관철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어려운 이론적 연구에 의해서만 일상적인 실천으로부터 추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조건들은 자연법칙과 같은 식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맑스가 증명한 바와 같이 상품생산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진보는 금속화폐로 넘어간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규정도 이제는 상품교환의 표면에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실천의 견지에서 보면 결정적인 가치척도로 된 것은 화폐이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상품이 다양해질수록, 그 상품이 먼 나라에서 오는 것이 많을수록, 따라서 그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계산하기가 어렵게 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었다. 게다가 화폐 자체도 처음에는 대체로 외국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귀금속이 그 나라에서 채취되던 경우에도 농민들과 수공업자는 부분적으로는 그 귀금속을 채취하는 데 지출된 노동을 대략적으로도 규정할 도리가 없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로 계산하던 관습 때문에 그들 자신부터 가치척도로서의 노동의 속성에 관한 의식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었다. 인민의 의식에서는 화

폐가 절대적 가치를 대표하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맑스의 가치법칙은 일반적으로 경제법칙들이 작용하는 한에서 단순상품생산의 전기간에 걸쳐서,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형태가 발생한 결과 단순상품생산이 변형되는 그 시기까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그때까지는 가격이 맑스의 법칙에 의하여 규정된 가치로 끌리며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동요한다. 그리하여 단순상품생산이 충분히 발전하면 할수록 외부의 폭력적인 교란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 장기간의 평균가격은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맑스의 가치법칙은 생산물을 상품으로 전화시킨 교환의 시초부터 기원 15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경제적으로 일반적 타당성을 가진다. 그런데 상품교환은 일체 기록된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며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2,500년이나 어쩌면 5,000년, 바빌로니아에서는 기원전 4,000년 내지 6,000년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치법칙은 5,000년 내지 7,000년의 기간을 지배해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이 전기간에 걸쳐서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타당성을 가졌던 가치를 그것대로 상품이 팔린 적도 없고 또 팔릴 수도 없는 가치,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도 결코 문제시 하지 않을 가치라고 부르고 있는 로리아 씨의 심오한 사상에 탄복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상인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인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으로의 단순상품생산의 전화에 대하여 말해 보자. 종전에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였던, 이를테면 세습제로 해서 고정불변하였던 사회, 농민이 자기의 분할지경리뿐 아니라 자유로운 소유자로서 자유롭거나 예측적인 소작인으로서 또는 농노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그리고 도시 수공업자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동업조합적 특권을 세습적으로, 거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물려받던 사회, 그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가 자기의 고객, 자기의 판매시장 및 어려서부터 닮은 세습적인 직업상의 기능까지도 세습적으로 물려받던 사회에서는 상인은 혁명적인 요소였다. 바로 이 세계에 그러한 변혁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할 상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상인은 의식적인 혁명가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디까지나 이 세계에 붙어 사는 자로서 행동하였다. 중세기의 상인은 결코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본질상 그의 모든 동시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성원이었다. 농촌에는 원시공산주의의 기초 위에서 발생한 마르크 공동체가 지배하였다. 개개 농민은 처음에는 지대에 따라 질이 다른 똑같은 크기의 땅뻘기들을 가진 똑같은 크기의 분할지정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르크 공동체에서 해당하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 공동체가 폐쇄적인 것으로 되고 새로운 분할지들이 더 이상 분여되지 않게 된 이래, 상속 등으로 해서 분할지가 세분되고 그에 따라서 공동체에서의 권리가 세분되게 되었으나 공동체적 토지소유의 단위는 의연히 완전한 분할지였다. 그리하여 마르크 공동체에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의 권리를 가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짜리 분할지가 있게 되었다. 그 후의 모든 영업조합들, 우선 도시의 동업조합은 마르크 공동체의 본을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동업조합의 내부제도는 마르크 공동체의 제도를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수공업적 특권에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조직의 중심점은 조합에 확보된 모든 특권과 수입을 이용하는 데 개개 조합원이 똑같이 참가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1527년에 엘버펠트와 바르멘의 주민들에게 준 연사업의 특권에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다(툰, 『니더라인의 공업과 공업노동자』, 제2부, 라이프찌히, 1879년, 164페이지 이하). 이러한 것은 광업에도 해당하는데 광업에서는 주(kux)마다 똑같은 몫을 차지하였으며 또 마르크 공동체성원의 분할지와 마찬가지로 주에 따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해외무역을 시작한 상인조합들에도 그만 못지 않게 타당하다. 베니스 인과 제노바인은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의 항구들에서——각 국민이 중앙사무소 외에 주택, 음식점, 창고, 진열장, 판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들의 자신의 접대궁에서 완전한 상업조합들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들은 경쟁자나 고객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며 상호간의 협약에 의하여 제정된 가격으로 팔았으며 그들의 상품은 공적 통제와 흔히 특수한 검인에 의하여 보장된 일정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으로 토착민들의 상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가격 등을 결정하였다. 노르웨이의

베르겐에 있는 독일 다리(Tydske Bryggen)에서의 한자 동맹원들(Hanseatic merchants)의 행동도 역시 그러하였으며 그들의 경쟁자인 네델란드인과 영국인의 행동도 역시 그러하였다. 약속된 가격보다 낮게 팔거나 비싸게 사는 자는 화를 면치 못했다! 그가 당하는 배척은 당시의 조건에서는 조합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직접적 벌금은 제쳐놓더라도 불가피한 과멸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 밖에 일정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조합들도 설립되었는데 예컨대 14세기와 15세기에 소아시아의 포케아와 키오스 섬의 명반갱을 여러 해 동안 점유하고 있던 제노바의 마오나 조합, 그 다음에는 14세기 말부터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거래를 하였고 거기에다 자기의 거류지들을 설치한 큰 라벤스베르그 상사 또한 아우그스부르크의 상인인 푸저, 벨저, 필린, 회흐슈테터 등과 뉘른베르그의 상인인 히르슈포겔과 기타의 독일인 회사——이 독일인 회사는 6만 6,000두카트의 자본과 세 척의 배를 가지고 1505~1506년에 있었던 포르투갈인의 인도원정에 참가하여 150%, 다른 자료에 의하면 175%의 순이익을 얻었다(하이드, 『중세기의 근동무역사』, 슈투트가르트, 1879년, 제2권, 524페이지)——그리고 루터를 것처럼 격분케 한 그 밖의 일련의 독점회사들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윤과 이윤율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데 바로 상인들의 노력은 이 이윤율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균등하게 할 것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근동지방에서의 베니스인, 북방에서의 한자 상인은 누구나 사들이는 상품에 대하여 자기의 이웃과 같은 값을 지불하였으며 그 상품의 수송비도 누구에게나 같았으며 각자는 그 상품에 대하여 남과 같은 값을 받았으며 돌아오는 배에 실은 짐도 자기 국민에 속하는 다른 모든 상인과 같은 값으로 사들였다. 따라서 이윤율은 누구에게나 같았다. 큰 무역회사들에 있어서 이윤이 출자금의 몫에 비례하여 분배된 것은 마르크에서 가지는 권리가 그 권리를 받게 되는 분할지의 몫에 비례한 것이나 또는 광산에서 나오는 이윤을 주수에 비례하여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균등한 이윤율은 완전히 발전한 것으로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종국적 결과의 하나인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는 자본의 역사적 발전의

출발점의 하나로, 심지어는 마르크 공동체—— 이것은 또한 원시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유물이다——의 직접적 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최초의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대단히 높았다. 사업은 대단히 위험하였는데 그것은 해적 행위가 심해서 뿐 아니라 경쟁하는 국민들도 기회만 있으면 가끔 온갖 폭행을 감행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판매 자체와 이 판매조건이 외국의 군주들이 부여한 특권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이 특권이 켜이나 자주 파기되거나 철회되곤 하였다. 따라서 이윤은 높은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회전이 완만하고 거래가 지연되었는데 비교적 유리한 시기——그런데 이런 시기는 오래 지속되는 일이 드물었다——에는 상업이 독점이윤을 동반하는 독점 무역이었다. 이윤율이 평균해서 대단히 높았다는 것은 또한 항상 보통 상업이윤수준보다 대체로 낮아야 할 이자율이 보통 매우 높았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조합의 공동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높고 또 모든 참가자에게 균등한 이 이윤율은 해당한 조합 즉 이 경우에는 개별적 국민의 범위 안에만 작용하였다. 베니스 인, 제노바 인, 한자 상인, 네델란드 인은 국민별로 그리고 아마도 처음에는 또한 개별적 판매시장별로 특수한 이윤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개별적 조합들의 이 서로 다른 이윤율은 상반되는 방도로 즉 경쟁에 의하여 균등화되었다. 우선 동일한 국민의 여러 시장의 이윤율이 균등화되었다. 가령 알렉산드리아에서 키프러스, 콘스탄티노플이나 또는 트레비존드에서보다도 베니스 인의 상품에 대하여 더 많은 이윤이 난 경우에는 베니스 인은 자본의 일부를 다른 시장들과의 유통에서 끌어내어 보다 많은 자본을 알렉산드리아로 돌렸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상품이나 또는 비슷한 상품을 수출하는 개별적 국민들 사이에 이윤율이 차츰 균등화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경우에 그 중 어떤 국민들은 영락하여 무대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부단히 정치적 사변들로 해서 중단되곤 하였다. 예컨대 동방과의 전체 무역은 몽고인과 터어키 인의 침입으로 해서 중지되었는데 1492년 이래의 위대한 지리적——상업적 발견은¹¹³ 그 무역의 쇠퇴를 촉진하고 뒤이어 그 무역을 완전히 쇠퇴케

하였을 따름이다.

이에 뒤따라 판매시장이 갑자기 확장되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로에 변혁이 일어난 것은 처음에는 무역을 해나가는 방식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인도 및 아메리카와의 무역도 역시 처음에는 주로 조합들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조합들의 뒤에 비교적 큰 국민들이 서게 되었다. 근동나라들과 무역을 진행하던 카탈로니아인 대신에 아메리카무역에서는 연합된 스페인 전체가 나타났으며 그와 나란히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네델란드나 포르투갈과 같은 작은 나라들도 어쨌든 선행한 시기의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상업국민이었던 베니스 인보다 작거나 약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16세기와 17세기의 떠돌아다니는 상인, 상업모험가의 방패로 되었는데 이 때문에 자기 조합원들을 무기로도 보호하던 조합과 조합에 따르는 비용은 더욱더 쓸데없는 부담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개개인의 손에 재부가 훨씬 더 빨리 축적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얼마 안가서 개별적 상인들은 이전에는 회사 전체가 대던 자금만큼 기업에 돈을 댈 수 있었다. 무역회사는 그것이 아직도 존속한 경우에는 대개 무장단체로 되어 모국의 보호와 비호하에 새로 발견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독점적으로 착취하였다. 그런데 주로 국가에 의하여 새로운 지역들에 식민지가 많이 설치되면 될수록 조합이 하던 무역은 더욱더 개별적 상인들이 하는 무역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이윤율의 균등화는 점점 더 순전한 경쟁상의 문제로 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상업자본의 이윤율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산업자본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것만큼 상업자본과 고리대자본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은 아직도 주로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노동은 자본에 잉여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 노력자들의 수중에 있었다. 그들이 자기 생산물의 일부를 공짜로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다만 공납의 형태로 봉건영주에게 양도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상업자본은 적어도 처음에는 다만 국내생산물의 외국 구매자나 또는 외국 생산물의 국내 구매자로부터만 자체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겨우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가서야——따라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근동무역의 쇠퇴와 함께——외국의 경쟁과 판매의 곤란으로 해서 수출상품의 수공업적 생산자들은 수출상인에게 상품을 가치 이하로 양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개별적 생산자들 사이의 국내 소매거래에서는 상품이 평균하여 그 가치대로 팔리지만 대외무역에서는 위에서 든 이유로 해서 가치대로 팔리지 않는 것이 통례라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의 형편과는 정반대인데 오늘날은 국제무역과 도매상업에서는 생산가격이 의의를 가지지만 도시의 소매상업에서는 가격형성이 전혀 다른 이윤율에 의하여 조절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지금 소고기는 런던의 도매상인으로부터 런던의 소비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 값이 시카고의 도매상인으로부터 런던의 도매상인에게 가는 도중(운임도 포함하여)에서보다도 더 많이 덧붙는다.

가격형성에서 이러한 변혁을 점차로 일으키게 한 것은 산업자본이었다. 산업자본은 이미 중세기에 바로 항해업, 광업, 방직공업이라는 세 분야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와 한자동맹의 연해공화국들이 운영하던 규모에서의 항해업에는 해원 즉 임금노동자(그의 고용조건은 이윤의 일부를 받는 조합적 형태에 의하여 은폐될 수 있었다)가 없어서는 안되었으며 당시의 갈레선에도 노 젓는 임금노동자나 노예가 없어서는 안되었다. 처음에는 조합에 뭉친 노력자들이 운영하던 광업기업소들이 거의 도처에서 임금노동자의 힘으로 생산을 진행하는 주식회사로 전화하였다. 방직공업에서는 상인이 직포업의 소장주들에게 실을 대주고 자기의 부담으로 고정임금을 주고 그 실을 직물로 가공하게 하여, 간단히 말하면 상인이 단순한 구매자로부터 이른바 선대업자로 됨으로써 그들을 직접 자기에게 봉사케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잉여가치형성의 첫 싹을 보게 된다. 광업조합은 폐쇄적인 독점단체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제쳐놓아도 될 것이다. 항해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윤이 적어도 국내의 보통 이윤에다 선박의 보험료, 마별비 등을 덧붙인 것과 같아야만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방직공업에서 직접 자본가의 부담으로 생산된 상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수공업자의 부담으로 생산된 같은 종류의 상품과 경쟁하게 한 선대업자의 사정은 어떠하였는가?

상업자본의 이윤율은 미리 주어져 있었다. 그것은 역시 적어도 해당 지방에서는 이미 평균율에 근사하게 균등화되어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상인을 움직여 선대업자라는 추가적인 역할을 맡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단 하나 즉 다른 사람과 같은 판매가격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바로 이것을 상인은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소장주들을 부림으로써 생산자는 자기의 완성품밖에 아무 것도 팔지 못한다는, 생산에서의 인습적인 한계를 깨버렸다. 상업자본가는 아직 당분간 자기의 생산도구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미 더 이상 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노력자의 노동력을 사들였다. 그리하여 그는 직포공에게 규칙적인 취업을 보장하여 주는 반면에 직포공의 임금을 낮추어 지출된 노동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선대업자는 지금까지 받던 상업이윤을 넘는 잉여가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추가적인 자본을 대서 실 등을 사가지고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직포공의 손에 맡겨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전에는 생산물을 사들이는 순간에 비로소 값을 다 치루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첫째로, 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에도 직포공에게 주는 전불금으로서 자본의 추가지출을 하였는데 직포공은 통례로 채무노예상태 때문에 새로운 생산조건들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상과 같은 것을 제쳐놓더라도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다.

가령 우리의 상인이 30,000두카트, 세켄, 파운드 스텔링 또는 그 밖의 화폐단위의 자본을 가지고 수출업을 경영하였다고 하자. 그 중 10,000이 국내상품을 사는 데 지출되었고 20,000이 해외시장에서 사용된다고 하자. 자본이 2년에 1번 회전한다고 하면 한 해 동안의 회전액은 15,000이다. 그런데 가령 우리의 상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천을 짜게 하며 선대업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얼마만한 자본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겠는가? 그가 짜는 천 한 필의 생산기간은 평균 두 달——이것은 확실히 너무 긴 기간이지만——이라고 하자. 그리고 또한 그는 모든 것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불해야만 된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에 그는 직포공에게 2개월분의 실을 대줄 만한 자본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그의 한 해 동안의 회전액이 15,000이므로 2개월 동안에 그가 사들이는

직물의 대금은 2,500이다. 그 중 2,000은 실의 가치를 표시하고 500은 직포공의 임금을 표시한다고 하면 우리의 상인에게는 2,000이라는 추가 자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가령 그가 새로운 방법에 의해 직포공에게서 얻어내는 잉여가치가 직물의 가치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그러면 잉여가치율은 25%라는 확실히 적은 것으로 된다——하자($2,000c+500v+125m; m'=125/500=25\%$; $p'=125/2,500=5\%$). 이런 조건에서 15,000이라는 한 해 회전액을 가진 우리의 상인은 750이라는 초과이윤을 얻으며 따라서 지출된 추가자본 전체를 $2\frac{2}{3}$ 년이면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판매 및 그와 함께 자기의 회전을 촉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의 자본으로부터 보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따라서 전과 같은 기간 안에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자기 잉여가치의 적은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선사할 것이며 자기의 경쟁자보다 늦게 팔 것이다. 경쟁자들도 역시 차츰 선대업자로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경우에 초과이윤은 모든 사람의 증가된 자본에 대하여 보통 이윤이나 심지어는 보통이윤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이윤율의 균등은 국내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외국의 구매자들에게 양도됨으로써——아마 다른 수준에서이기는 하지만——다시금 회복된다.

산업이 자본에 복종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의 한 발자국은 공장제 수공업이 도입된 것이었다. 공장제 수공업도 역시 17세기와 18세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상품의 수출상이었던——독일에서는 1850년까지 거의 어디서나 그러하였고 곳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그러하지만——그 업주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경쟁자인 수공업자보다 낮은 값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된다. 즉 수공업공장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차지하는 잉여가치는 크나 또는 그 잉여가치를 나누어가는 수출상인에게 새로운 생산방법이 일반화되고 다시금 이윤이 균등화될 때까지 자기 경쟁자들보다 낮은 값으로 팔 수 있게 한다. 이미 있던 상업이윤율은 그것이 지방적으로 균등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연히 산업 초과잉여가치가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이다.

공장제 수공업이 생산물이 늦어진 탓으로 급격히 변형하였다면 대공업

은 더구나 그리한데 이 대공업은 생산의 부단한 변혁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비를 더욱더 낮추며 종전의 모든 생산양식을 무자비하게 제거한다. 대공업이야말로 이러한 방법으로 자본을 위하여 국내시장을 종국적으로 정복하며 자급자족하는 농민가족의 소규모생산과 자연경제를 끝장내며 소규모생산자들 사이의 직접적 교환을 배제하며 전국민을 자본에 봉사케 한다. 대공업은 또한 서로 다른 상공업 부문들의 이윤율을 하나의 일반적인 이윤율로 균등화하며 끝으로 지금까지 자본이 한 부문으로부터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의 대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이 균등화과정에 공업에다 그에 어울리는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여 준다. 이와 함께 전체 교환과정을 놓고 볼 때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한다. 따라서 이 전화는 당사자들의 의식이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경쟁이 일반적 율을 넘는 이윤율 일반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맨 먼저 차지하는 자인 산업가들로부터 평균수준을 넘는 잉여가치를 다시 빼앗는다는 데에는 이론상으로 아무런 곤란한 점도 없다. 그러나 실천상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초과잉여가치 즉 가변자본이 많고 불변자본이 적은 따라서 자본의 구성이 낮은 부문들은 바로 그 본성으로 보아 자본주의적 생산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늦고 가장 덜하기 때문이다. 농업이 우선 그렇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가격을 상품의 가치 이상으로 올리는 일——이것은 자본구성이 높은 부문의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자라는 잉여가치를 평균이윤율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하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매우 곤란하게 보이나 실천상으로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빨리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상품은 그것이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고 자본주의적 상업에 들어오는 경우에 자본주의 이전의 방법으로 생산된, 따라서 값이 비싼 같은 종류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어떠한 환상이나 사물을 억지로 맞추는 틀 또는 척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희랍신화에 나오는 도적 프로크루스테스가 사람을 잡아오면 자기 침대에 눕혀 보고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찢르고 짧으면 잡아 늘였다는 전설에서 나왔다. 편집부.

의 상품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자는 심지어 잉여가치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자기 지방의 보통 이윤율—이것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기 훨씬 이전에 즉 산업이윤율이 가능하게 되기 훨씬 이전에 상업자본의 기능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원래는 잉여가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II. 증권거래소

1) 증권거래소가 자본주의적 생산 일반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은 제3권, 제5편, 특히 [제27]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1865년 이래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는 증권거래소에다 오늘날 매우 중대한 그리고 더욱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더욱더 발전하는 과정에 공업생산이나 농업생산 할 것 없이 생산 전체를 그리고 교통수단이나 교환기능 할 것 없이 유통 전체를 증권거래업자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증권거래소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 되고 있다.

2) 1865년에 증권거래소는 아직도 자본주의체제에서 부차적 요소였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대부분은 국가증권이었으며 그 양도 비교적 적었다. 그 밖에 주식은행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륙과 아메리카에서는 우세하였으나 영국에서는 이제야 겨우 귀족의 사립은행을 합쳐 버리려는 참이었으며 양적으로 아직 비교적 보잘 것 없었다. 칠도주도 오늘에 비하면 아직 비교적 미약하게 보급되어 있었다. 직접 주식형태를 취하는 산업기업체들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아직 적었으며 그것은 대부분 독일, 오스트리아, 아메리카 등과 같은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에 주로 많았다. 그 당시에는 주인의 눈이 아직 미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증권거래소는 아직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축적된 자본을 서로 빼앗는 장소였으며 노동자들에게는 자본주의경제의 전반적인 퇴폐적 영향의 새로운 증거로서만 그리고 칼빈 파(Calvinist)의 교조의 실증으로서만 직접적인 관심사로 되었다. 이 교조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신의 예정 다시 말하면 우연이 축복과 저주를, 재부(즉 호사와 권력)와 빈곤(즉 궁핍과 예속)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3)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1866년의 공황 이래 축적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더구나 어느 한 공업국에서도 적어도 영국에서는

생산의 확대가 축적이 늘어나는 데 발을 맞추지 못할 만큼, 그리고 개별적 자본가의 축적이 그 자신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충분히 이용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빨리 진행되었다. 이미 1845년에 영국의 면공업에서〔그리하였으며 그리고〕 철도사기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축적과 함께 금리생활자 즉 기업을 해나가는 데 한결같이 요구되는 긴장에 싹증난 사람들 그리고 환락만을 바라거나 또는 회사의 지배인이나 감사역으로 편한 일만을 하려는 사람의 수도 늘어났다. 그리고 세째로, 이와같이 떠돌고 있는 대량의 화폐자본을 쉽사리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금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던 모든 곳에 유한책임회사를 위한 새로운 합법적 형태들이 생겼으며 종전에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던 주주들의 의무가 어느 정도 줄었다(1890년의 독일에서의 주식회사, 응모의 40%!).

4) 이로부터 산업이 주식기업으로 차츰 전화한다. 한 부분 한 부분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우선 철도업에서 지금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그 이전에는 광업에서——그것이 아직 주식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에는 화학공업, 또한 기계제작공장, 대륙에서는 또한 방직공업, 영국에서는 아직 일부지방들 예컨대 오직 랭카셔에서(방직업은 올담, 직조업은 번리 등, 재봉업조합, 그러나 이것은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번 공황시에는 이 조합들이 해체되어 다시〔개별적〕 주인의 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양조업(몇 해 전에 아메리카의 양조업은 영국자본의 손에 들어갔다. 이어서 기네스, 배스, 알소프), 그 다음에는(유나이티드 알칼리와 같은) 공동관리부를 가지는 대기업을 창조하는 트러스트들, 보통의 개인상회는 더욱더 하나의 기업체를 준비하는 예비단체에 불과하며 후에 이 기업체는 매우 커져 이에 기초하여 주식회사가 창설될 것이다.

상업도 그렇게 되고 있다. 리프 상회, 파슨 상회, 몰레이 상회, 모리슨 상회, 딜론 상회——이 모든 상회가 주식회사로 되었다. 소매상점들도 그러한 변화를 입고 있는데 그것도 백화점식의 조합이라는 형태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도 역시 은행과 그 밖의 신용기관이 그렇게 되고 있다. 새로

운 것들은 모두가 유한책임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등과 같은 낡은 은행들까지도 7명의 개인(주주)들을 가지고 주식회사로 개편되고 있다.

5) 농업분야에서도 같다. 굉장히 확장된 은행들 특히 독일에서는 (온갖 관료주의적 명칭하에) 점점 더 저당권의 소유자로 되고 있다. 그것들의 주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최고소유권이 증권거래소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가 채권자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하다. 이 경우에는 초원의 경작과 관련된 농업혁명이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토지가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증권거래소의 손에 들어가는 시기를 예견할 수 있다.

6) 그리고 대외투자는 모두 주식으로 진행된다. 영국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아메리카의 철도, 북부철도 및 남부철도(주식표를 참조), 골드베르거 등에서 그러하다.

7) 그 다음에는 식민. 이것은 오늘날 단지 증권거래소에 복무하고 있을 뿐이다. 증권거래소의 이익을 위하여 구라파 열강은 몇 해 전에 아프리카를 분할하였으며 프랑스 인들은 튀니지와 통킹을 정복하였다. 아프리카는 직접 회사들에 임대되었다(니제르, 남 아프리카, 독일령 서남 아프리카와 동 아프리카). 매소날랜드와 네이틀은 증권거래소를 위하여 로즈가 점유하였다.

*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 편집부.

부록

..

- 주
- 인명색인
- 문헌색인
- 내용색인

주

- 1 A. 스미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2부, 제4장, 428~429페이지, - 582.
- 2 「매일소식」(The Daily News) - 영국의 자유주의 신문, 산업 부르조아지의 기관지, 이 이름으로 1846년부터 1930년까지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 585.
- 3 위탁판매(원어는 consignatio, 문자 그대로는 수표, 서면상 확인이라는 뜻) - 상품을 위탁하여 외국에 파는 한 종류, 여기에서는 수출업자(위탁하는 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상품을 팔기 위하여 외국상사(위탁을 받은 자)의 창고에 상품을 보낸다. - 607.
- 4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 경제와 정치 문제를 취급한 영국의 주간잡지, 1843년부터 런던에서 발간, 대산업 부르조아지의 기관지이다. - 614.
- 5 림바드 거리 - 씨티(런던의 금융중심지)의 한 거리, 여기에는 수많은 대은행이 있다. 런던의 화폐시장이라는 뜻과 같다. - 615.
- 6 민심 거리 - 런던의 한 거리, 식민지 상품들의 도매상업의 중심지이다. - 615.
- 7 은행제한법(Bank Restriction Act) - 1797년에 영국의회가 채택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은행권의 강제통용력을 제정하고 금과 은행권의 교환을 폐기하였다. 1819년에 금과 은행권의 교환을 회복하는 법이 채택되었다. 실제적인 교환은 1821년에 가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 656.
- 8 맑스는 데이빗슨의 어음 대사기사건의 법정심리를 두고 말한다. 이 사건은 랭, S. 의 책 「쿨, 데이빗슨 및 고든의 대금융사기의 새 충서」(제5판, 런던, [1869년])에 서술되어 있다.
배심정 - 형법과 민법을 다 알아보는 영국 고등법원 판사들의 정기적인 순회법정이다. - 663.
- 9 버밍검 학파, 또는 소실링파(little shilling men) - 19세기 전반기에 형성된 경제학의 특수한 학파이다. 그 지지파들은 관념적 화폐측정단위설을 선전하였으며 따라서 화폐를 계산명칭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버밍검 학파의 대표자들인 토마스와 매티어스 애트우드 형제 및 스푸너 등은 영국의 화폐 단위의 금포함량을 낮추자는, 소실링이란 명칭으로 알려진 안을 제기하였다. 여기로부터 이

학파 자체의 명칭도 생겨났다. 또한 소실립파는 유통하고 있는 화폐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시책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기네 학파의 주장을 실현하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림으로써 산업을 활기차게 하며 나라의 전반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화폐 가치인하는 가치가 떨어진 화폐에 의하여 국채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할 따름이었으며 즉 온갖 신용을 기본적으로 장악한 국고와 대기업주에게 일정한 이득을 주었을 따름이다. 맑스는 자기의 저서『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이 학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이전집, 제13권, 조문판, 97~99페이지를 보라). — 667.

- 10 동인도회사 — 1600년부터 1858년까지 있는 영국의 상사로서 인도와 중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서의 영국의 약탈적인 식민지정책의 도구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이 상사는 육·해군을 가진 대무력으로 전변되었다. 이 상사의 기치 밑에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은 인도를 정복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이 상사는 인도와의 무역을 독점하였으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인도에서의 1857~1859년의 민족해방봉기로 하여 영국 당국자들은 자기네의 식민지 통치형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이 상사를 청산하고 인도를 영국의 영지로 선포하였다. — 669.
- 11 하이네의 풍자시『논쟁』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시에는 천주교의 카푸친 승려와 학식 있는 유대인 사부 사이의 중세의 논쟁이 묘사되고 있다. 후자는 이 논쟁과 정에서 유대인의 종교책『타우스베스 온토프』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전자는『타우스베스 온토프』를 욕설하였다. 그리하여 극도로 격분한 후자는 이렇게 외쳤다. 즉 “『타우스베스 온토프』가 쓸모없다면 무엇이 쓸모있단 말인가? 제발 살려다오!” — 669.
- 12 1851년에 시작된 중국의 반봉건적 민족해방운동을 말한다. 태평봉기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운동은 봉건제도와 외래 약탈자를 반대한 다년간의 완강한 중국인민의 투쟁의 시초로 되었다. 태평봉기는 중국의 봉건영주들의 지지를 받은 영국, 미국, 프랑스의 무력에 의하여 1864년에 좌절되었다. — 686.
- 13 주 6을 보라. — 697.
- 14 맑스는 여기에서 성서의 말을 바꾸어 말하고 있다. 성서, 마가복음, 제16장, 16절을 보라. — 737.
- 15 대체로 유물론자이며 무신론자인 고대 회랍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무수한 세계들이 있는데 이 세계들은 그 자체의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하며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신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들 밖에, 세계들 사이에 존재하므로 우주의 발전과 인간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745.

16 공설전당포(Monts-de-piété)는 소고리대를 반대하기 위하여 14, 15, 16세기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창설되었다. 그 발기자들은 공설전당포가 재산을 담보로 크지 않은 신용을 빈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자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고리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748.

17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두고 말한다. H. 챔벌린, 「토지소유자의 전반적 복리를 도모하며 토지의 가치를 더 높이며 기업과 상업에도 적지 않는 이득을 주기 위하여 담보가 있는 신용은행을 창설할 데 대한 액세스 거리의 휴 챔벌린 박사의 제안」. 런던, 1695년.

J. 브리스크, 「대귀족과 소귀족에게 부당하며 국민의 상업을 파괴하는, 백만, 추첨, 잉글랜드 은행 조례에 의하여 얻어낸 최근의 기금에 대한 개요, 또한 소귀족의 세금을 면제하며 그들의 한 해 소득을 늘리며 왕국의 모든 신민을 부유하게 하는 유리한 조건에서 여왕폐하의 국립토지은행에 의하여 화폐를 보장하는 방도에 대한 제안」. 런던, 제3판, 1696년. - 748.

18 맑스는 잘못 쓰고 있다. 토마스 만리는 런던에서 1668년에 발간된 익명저서인 「오해를 받는 화폐이자」의 저자는 아니었다. - 750.

19 영국의 금융경제학자인 존 로를 암시한 것이다. 그는 국가가 담보 없는 은행권을 유통시킴으로써 나라의 부를 늘릴 수 있는 듯한 전혀 무근거한 사상을 실지로 실현하려 하면서 1716년에 프랑스에 사립은행을 창립하였는데 이 은행은 1718년에는 국립은행으로 되었다. 또한 로 은행은 신용권을 난발함으로써 유통에서 주화를 끌어냈다. 그 결과 증권투기와 투기가 전례없이 발전하여 1720년에 국립은행과 로 체계 자체는 여지없이 파산당하였다. - 751.

20 맑스는 소재자 「은행신용 또는 농촌귀족과 런던 상인 사이의 담화형식으로 된 은행신용의 유익성과 담보성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J. 프란시스의 「잉글랜드 은행의 역사」(제3판, 제1권, 런던, 1848년, 39~40페이지)에 들어 있다. - 752.

21 베레르 형제가 1852년에 창설한 프랑스의 대주식회사인 동산신용총회사(Société générale du Crédit Mobilier)를 두고 말한다. 동산신용회사의 기본목적은 신용의 중개와 회사의 창립(산업 및 기타 기업소의 창립)이었다. 이 회사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스페인, 러시아의 철도부설에 관여하였다. 회사의 주 되는 소득원천은 주식거래소의 투기였다. 동산신용회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소들의 유가증권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자기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여 얻은 자금으로 여러 회사의 재산의 가치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주식들

을 죄다 사들였다. 그리하여 똑같은 하나의 실제적 소유가 의제자본을 두 배로 만들었다. 동산신용회사는 나폴레옹 3세의 정부와 민착되어 있었고 그 비호를 받았다. 1867년에 회사는 파산되었으며 1871년에 청산되었다. 19세기 50년대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업체로서의 동산신용회사의 출현은 주식투기와 투기가 비상히 횡행하였던 반동시기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동산신용회사의 모범을 따라 이와 비슷한 기업체들이 그 밖의 중앙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 창설되었다. 맑스는 동산신용회사의 진상을 자신의 여러 논설에서 해명하였다(이 전집, 제12권, 조문판, 49~68, 246~259, 349~353페이지 등). — 753.

- 22 프루동은 무상신용설을 저서 『신용의 무보상성. F. 바스띠아 씨와 프루동 씨 간의 논쟁』(파리, 1850년)에서 전개하였다. — 756.
- 23 라이프찌히 시장에서 세 기한에 걸쳐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에서의 100굴덴의 공채를 말한다. 라이프찌히에서는 해마다 세 번씩 시장이 열린다. 즉 신년 시장, 부활제 시장(봄), 미카엘 제 시장(가을)이 열린다. — 760.
- 24 A. 스미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런던, 1776년, 182~202페이지. 또한 K.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모스크바, 1957년, 355~357페이지 참조. — 766.
- 25 J. W. 존스턴, 『북 아메리카의 농촌경리, 경제 및 사회 문제에 관한 수기』, 제1권, 에딘버러와 런던, 1851년. — 769.
- 26 J. 앤더슨, 『영국의 곡물 값이 현재 오르게 된 사정의 공정한 연구』, 런던, 1801년, 35~36, 38페이지(또한 K.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모스크바, 1957년, 137~138페이지를 보라). H. C. 케어리, 『과거, 현재 및 미래』, 필라델피아, 1848년, 129~131페이지(또한 K.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모스크바, 1957년, 595페이지). — 771.
- 27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태어난다」(Frugēs consumere nati) — 호라티우스, 『시집』, 제1부. — 772.
- 28 제임스 앤더슨의 지대론에 대하여는 K.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모스크바, 1957년, 107~109, 114~118, 137~142페이지를 보라. — 772.
- 29 템플 바(Temple Bar) — 런던의 역사적 기념물인데 스트랜드 거리와 폴리트 거리 사이에 있는 석문이다. 이 석문은 시티와 웨스트민스터를 연결하고 있다. — 774.
- 30 웨스트엔드 — 런던의 우아한 지구인데 여기에 귀족과 대부르주아지의 저택들이 집중되어 있다. — 774.

- 31 괴물 - 성서에 나오는 바다의 큰 괴물 (Leviathan) 이다. - 774.
- 32 프랑스 국민회의 재정위원회에 제출된 프루동의 제의들 반박한 1848년 7월 26일의 띠에르의 연설을 말한다. 연설은 「국민회의 보고집」(제2권, 파리, 1849년, 666~671페이지)에 발표되었다. 띠에르의 이 연설에 대해서는 또한 K. 맑스의 논설 「프루동에 대하여」를 보라(이 전집, 제16권, 논문판, 29페이지를 보라). - 777.
- 33 토지소유자와 차지인 사이의 투쟁은 1853년 하원에서 차지권법안을 채택함으로써 끝났다. 이 법안에는 차지기한이 끝나면 차지인은 토지를 개량한 데 대하여 화폐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K. 맑스의 논설 「인도문제 - 아일랜드 차지권」(이 전집, 제9권, 조문판, 177~183페이지를 보라)을 보라. - 779.
- 34 곡물법은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국에서 실시되었다. 1815년에 채택된 곡물법은 영국 자체의 곡물가격이 1쿼터 당 80실링 이하로 될 때까지 곡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1822년에 이 법은 약간 변경되었으며 1828년에는 비교적적인 비율이 설정되어 국내시장에서 곡물가격이 떨어지면 곡물의 수입관세가 올랐으며 반대로 곡물가격이 오르면 수입관세는 떨어졌다. 자유무역의 구호 밑에 곡물법을 반대하여 투쟁한 산업 부르주아지는 1846년에 곡물법을 폐기케 하였다. - 780.
- 35 프랑스 공화국과 나폴레옹 제국을 반대하여 1793년부터 1815년까지 영국에서 진행된 전쟁을 말한다. - 780
- 36 「농업과 곡물법에 관한 세 현상논문」(반곡물법동맹에서 발간, 맨체스터 - 런던, 1842년)을 말한다. 이 책에는 J. 호프, R. 그레그, A. 모제의 세 논문이 들어 있는데 이것들은 반곡물법동맹의 표창을 받았다. - 780.
- 37 다음의 청서들을 두고 말한다. 「왕국의 곡물법과 관련된 청원서에 대한 특별위원회보고, 증언록, 부록 첨부」(1814년 7월 26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알곡과 곡물법에 관한 보고 : 알곡의 생산, 무역, 소비와 관련된 형편과 또한 이 분야의 모든 법을 연구할 전권을 받은 상원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보고」(1814년 11월 23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청서(Blue Books) - 영국의회의 자료집과 외무성의 외교문건의 총칭. 청서란 이름은 이 표지가 청색인 데서 나온 것인데 이 청서는 17세기부터 영국에서 발간되었으며 영국의 경제사와 외교사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공식자료다. - 781.
- 38 빈민구제법은 16세기 이후 영국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법에 근거하여 각 교구에서는 빈민을 위한 특별세를 징수하였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교구 구민들은 그 세금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빈민구제창구에서 부조를 받았다. - 781.

39 1814~1815년에 있는, 임금수준문제를 연구한 상원심사위원회를 말한다. - 782.

40 공예협회(Society of Arts) - 1754년 런던에서 창설된 부르조아 계몽 및 자선협회. 협회는 공예와 상업을 장려하며, 빈민에게 직업을 주고 상업을 확대하며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것을 장려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요란하게 떠들었다. 협회는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의 중매자의 역할을 하려 하였다. 맑스는 이 협회를 사기협회라고 하였다. - 782.

41 사회과학장려전국연맹대회를 말한다.

사회과학장려전국연맹(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cience) - 1857년에 창설된 부르조아 계몽자선협회. 많은 의회의원들이 그 성원이었다. 협회는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며 그것을 실지로 써먹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내세웠다. - 782.

42 맑스는 여기에서 잘못 쓰고 있다. 즉 위에서는 존 첼머스 모튼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존 로카트 모튼의 책을 인용하고 있다. - 783.

43 고등과학기관인 프랑스 연구소를 말한다. 이 연구소는 몇 개의 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795년 이후 존재하고 있다. - 784.

44 몇몇 작물 예컨대 콩을 심으면 지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기정의 사실인데 그것은 식물의 뿌리계통에서 발전하며 질소를 고정시키는 이른바 뿌리류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 박테리아의 특수한 역할은 맑스 서거 후 과학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 785.

45 이 전집, 제23권, 논문판, 686~709페이지를 보라. - 786.

46 「새별」(The Morning Star) - 영국의 일간신문. 자유무역론자들의 기관지, 1856년부터 1869년까지 런던에서 발간되었다. - 787.

47 P. E. 도브, 「정치학 원리」, 에딘버러, 1854년, 264, 273페이지. - 787.

48 P. E. 도브, 「정치학 원리」, 에딘버러, 1854년, 279페이지. - 794.

49 이 전집, 제13권, 조문판, 51~53페이지와 제23권, 논문판, 98페이지를 보라. - 794.

50 맑스는 이곳에서와 또 그 밖의 몇 군데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술어(Produktionskosten; 생산비)를 생산가격이란 뜻에서 사용하고 있다. - 810.

51 주 34를 보라. - 816.

52 F. W. 뉴만, 「정치경제학 강의」, 런던, 1851년, 158페이지. - 816.

53 슈토르흐, 「정치경제학 독본, 또는 국민의 번영을 규정하는 원칙의 설명」,

- 제2권, 샤프트 — 페페르부르크, 1815년, 78~79페이지를 보라(이에 대해서는 또한 K. 맑스, 『임여가치학설사』, 제2부, 모스크바, 1957년, 92, 287페이지를 보라). — 817.
- 54 맑스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두고 말한다. [E. 웨스트], 『토지에 대한 자본의 적용에 관한 논술. 곡물수입을 아무리 제한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의견첨부, 옥스포드 대학의 한 학우의 저서』(런던, 1815년), 맬더스, 『실천적 적용의 견지에서 본 정치경제학 원리』, 저자 자신이 적지 않게 보충하였고 저자의 전략이 들어 있는 제2판(런던, 1836년), 맬더스, 『지대의 본성과 창성 및 그것을 통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런던, 1815년),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제3판, 런던, 1821년, 제2장). — 818.
- 55 맑스는 G. 옴다이크의 책 『정치경제학 개론』(뉴욕, 1851년)을 두고 말하고 있다. — 829.
- 56 이 말은 맬더스의 책 『인구원리에 관한 논술』(런던, 1798년)에 이야기되고 있다. — 831.
- 57 J. 리버히, 『농업과 생리학에 적용된 화학』(제7판, 브라운슈바이히, 1862년)을 보라. — 917.
- 58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제2장. — 931.
- 59 맑스는 1824~1837년에 파리에서 발간된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다음의 책을 두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M. 동발, 『로빌 농업연감, 또는 농업, 그 경제 및 농업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 935.
- 60 R. 존스, 『부의 분배와 조세의 원천에 관한 연구』, 제1부, 지대, 런던, 1831년, 227페이지. 이에 대해서는 또한 K. 맑스, 『임여가치학설사』, 제3부, 모스크바, 1961년, 377~390페이지를 보라. — 935.
- 61 G. 램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에딘버러, 1836년, 278~279페이지)을 보라. — 943.
- 62 [E. C. 웨이크필드], 『영국과 미국 두 국민의 사회정치적 형편의 비교』(제1권, 런던, 1833년, 214~215페이지)를 보라. — 945.
- 63 파세, 『지대』, 『정치경제학사전』에 실림. 제2권, 파리, 1854년, 515페이지. — 945.
- 64 울치기법에 대해서는 이 전집, 제23권, 논문판, 736~739페이지를 보라. — 946.
- 65 포토시 — 볼리비아의 남쪽에 있는 도시이다. 1545년에 풍부한 은광매장지가 발견된 곳에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이 1547년에 이 도시를 세웠다. 이 광산의 착취가 스페인 지배계급을 부유하게 만드는 원천의 하나였다. — 949.
- 66 맑스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두고 말한다. 랭, S. 『국민의 빈궁, 그 원인 및

그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런던, 1844년), F. W. 뉴만, 「정치경제학 강의」(런던, 1851년), - 949.

- 67 다음과 같은 책을 말한다. 로드베르투스, 「폰 키르흐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 제3신: 리카아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과 새로운 지대론의 논거」(베를린, 1851년), 로드베르투스의 지대론에 대한 상세한 비판적 분석은 맑스의 저서 「잉여가치학설사」(제2부, 모스크바, 1957년, 3~106, 142~154페이지)에 주어져 있다. - 955.

68 K.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사」를 말한다. - 955.

- 69 헤겔, 「요약된 철학백과사전」, 제1판, 논리학, 전집, 제6권, 베를린, 1840년, 404페이지, - 956.

- 70 맑스는 방금 출판된 존스의 책 「부의 분배에 관한 연구」에 대한 평론을 이 잡지에 수표 없이 실은 것을 말한다. 「에딘버러 평론」(제54권, 1831년 8월~12월, 94~95페이지)을 보라.

「에딘버러 평론, 또는 비판잡지」(The Edinburgh Review, or Critical Journal) - 영국의 부르조아 문예정치잡지로서 1802년부터 1929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19세기 20~30년대에 개간잡지로 발간되었으며 위그당의 기관지였다.

쏘호 광장 - 런던의 쏘호에 있는 우아한 구역. - 958.

- 71 파씨, 「지대」, 「정치경제학사전」에 실림, 제2권, 파리, 1854년, 511페이지, - 960.

- 72 페티는 자기의 저서 「조세와 공물에 대한 논술」(런던, 1667년, 23~24페이지)에서 지대를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다. 맑스는 페티의 견해를 「잉여가치학설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이 전집, 제26권, 제1부, 163~165, 356~366페이지를 보라).

이와 유사한 캔틸론의 견해는 그의 저서 「상업 일반의 본성에 대한 연구」(「정치논설」, 제3권, 암스테르담, 1756년)에 들어 있다. - 961.

- 73 K. 맑스, 「잉여가치학설사(「자본론」, 제4권)」(이 전집, 제26권, 논문판, 제1부, 12~39, 305~346, 383~385페이지)를 보라. - 961.

- 74 이 전집, 제13권, 조문판, 176~177페이지를 보라. - 961.

- 75 J. 스튜어트, 「정치경제학원리 연구」, 제1권, 더블린, 1770년, 306페이지, - 963.

- 76 E. 데르, 「중농학파의 학설에 대한 머릿글, 「중농학파, E. 데르의 머릿글과 주해 첨부」에 수록, 제1부, 파리, 1846년, 파씨, 「지대」, 「정치경제학사전」에 실림, 제2권, 파리, 1854년, 511페이지, - 963.

- 77 A. 스미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제1권 런던, 1776년, 64페이지)를 보라. - 964.

- 78 랑스는 1836~1860년의 10분의 1세를 바꿀 데 대한 조례(Tithe Commutation Acts)를 두고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교회의 10분의 1세를 현물로 지불하는 것이 폐기되고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화폐지불이 도입되었다. - 965.
- 79 K. 아른트, 「자연에 일치하고 독점정신과 공산주의에는 대치된 정치경제학, 이와 관련된 문헌일람」, 하나우, 1845년, 461~462페이지. - 967.
- 80 [N. 령게] 「민법이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제1~2권, 런던, 1767년. 이에 대해서는 또한 이 전집, 제26권, 논문판, 제1부, 347~352페이지를 보라. - 968.
- 81 J. 뢰저, 「오스나브뤼크 역사」(제1부, 베를린과 슈테틴, 1780년)를 보라. - 968.
- 82 주 67을 보라. - 980.
- 83 E. 뷰레, 「정치경제학 교과서」, 브뤼셀, 1842년, R. 또끄빌, 「낡은 제도와 혁명」, 파리, 1856년, 시스몽디,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또는 부와 인구의 관계에 관하여」, 제2판, 제1권, 파리, 1827년. - 982.
- 84 T. 투크, W. 뉴마치, 「1848년부터 1856년까지의 9년간의 가격사와 유통형편, 17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의 가격사에 대한 저작의 제5권과 제6권의 두 권에 수록」, 제6권, 런던, 1857년, 29~30페이지. - 986.
- 85 랑스는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말한다. L. 무니에, 「공식 문건에 근거한 프랑스의 농촌경리, 류비송의 이견 첨부」(파리, 1846년), M. 류비송,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기구에 대하여」(신판, 파리, 1837년). - 987.
- 86 [J. 매씨],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논술, 이 문제에 대한 윌리엄 페티 경과 로크 씨의 견해의 고찰」(런던, 1750년, 23~24페이지)을 보라. - 990.
- 87 흑백단(Bandes Noires) - 19세기에 프랑스에 생겨난 투기협회로서 대영지를 사가지고는 그것을 작은 땅땡기로 다시 팔곤 하였다. 그것은 작은 땅땡기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큰 땅을 파는 경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 991.
- 88 M. 류비송,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기구에 대하여」, 신판, 파리, 1837년. - 991.
- 89 F. W. 뉴만, 「정치경제학 강의」(런던, 1851년, 180~181페이지)를 보라. - 991.
- 90 L. 무니에, 「공식 문건에 근거한 프랑스의 농촌경리, 류비송의 의견 첨부」(파리, 1846년)를 보라. - 991.
- 91 J. 리비히, 「농업과 생리학에 적용된 화학」(제7판, 브라운슈바이히, 1862년)을 보라. - 993.
- 92 천연적이며 조잡한 덩어리(Rudis indigestaque moles) - 오비디우스, 「변태」, 제1부, 7. - 998.
- 93 동맹에서의 세째 것 - 월러의 발라드 「보충」에서 나오는 말. 폭군인 디오니시우

- 스가 자기를 두 충실한 벗들의 동맹에 받아 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 - 998
- 94 이 전집, 제23권, 노문판, 545~552페이지를 보라. - 1002.
- 95 W. 로셔, 「인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 기본」(정정 보충된 제3판, 슈투트가르트와 아우그스부르크, 1858년)을 보라. - 1011.
- 96 A. 스미드,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런던, 1776년, 63페이지, 임금, 이윤, 지대를 가치의 원천으로서 보는 스미드의 견해를 맑스는 「자본론」, 제2권(이 전집, 제24권, 조문판, 400~431페이지를 보라)과 「잉여가치학설사」(이 전집, 제26권, 노문판, 제1부, 68~79페이지를 보라)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 1011.
- 97 이 전집, 제24권, 조문판, 440페이지를 보라. - 1023.
- 98 G. B. 세이, 「정치경제학 개론」, 제4판, 제2권, 파리, 1819년. - 1026.
- 99 T. 투크, 「통화원리의 연구」(제2판, 런던, 1844년, 36페이지)를 보라. - 1028.
- 100 P. J. 프루동, 「소유란 무엇인가? 또는 법과 권력의 원리에 대한 연구」, 파리, 1841년, 201~202페이지. - 1028.
- 101 A. 케틀레, 「인간과 그 기능의 발전, 또는 사회적 면모의 연구」(제1~2권, 파리, 1835년)를 보라. - 1050.
- 102 맑스는 다음과 같은 저서를 두고 말하는 것 같다. 「경쟁과 협동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현상논문」, 런던, 1834년 - 1076.
- 103 이 저서는 「자본론」, 제3권이 출판된 후 엥겔스가 쓴 것이다. 엥겔스는 1895년 5월 21일자 카우츠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 논설로 된 「자본론」, 제3권에 대한 보충을 잡지 「신시대」에 실을 의향이라는 것을 알렸다. 첫 논설인 「가치법칙과 이윤율」을 쓰게 된 동기는 마치 「자본론」 제1권과 제3권 사이에 모순이 있는 듯이 부르조아적 경제문헌에서 떠돌아댄 것과 관련된다. 이 논설은 엥겔스의 서거 후 곧 독일사회민주당의 기관지인 「신시대」에 발표되었다. 둘째 논설은 엥겔스가 이 논설에서 고찰하려 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따라 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요약안이었다. 수고의 제목은 「증권거래소, 「자본론」 제3권에 대한 보충적인 의견」이었다.

「신시대」(Die Neue Zeit) - 독일사회민주당의 정치이론잡지로서 1883년부터 1890년 10월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월간잡지로 발간되고 1890년 10월부터 1923년 가을까지는 주간잡지로 발간되었다. 잡지의 편집자는 1883년 이후 K. 카우츠키였고 1917년 10월부터 1923년 가을까지는 G. 쿠노우였다. 1885년~1894년 사이에 엥겔스는 잡지에 수많은 논설을 발표하였으며 잡지가 맑스주의에서 이탈한 데 대하여 자주 비판하였다. 엥겔스가 서거한 90년대 후반기부터

는 잡지에 수정주의자들의 논설이 체계적으로 실리기 시작하였다. 잡지는 제1차세계대전 시기에 중앙파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실지로 사회배외주의자들을 지지하였다. - 1079.

104 「신과학, 문학 및 예술 문집」(Nuova Antologia di scienze, lettere ed arti) -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경향의 문학예술 및 평론잡지로서 1866년부터 1878년까지는 '플로렌스'에 한 달에 한 번씩, 1878년부터 1943년까지는 로마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출판되었다. - 1084.

105 둘까마라 - 도니체티의 가극 「사랑의 음료」의 등장인물, 사기꾼과 무식장이의 형상. - 1084.

106 평론(La Rassegna) - 이탈리아의 부르조아적 경향의 반월간잡지로서 1892년부터 1895년까지 나폴리에서 발간되었다.

「사회개혁」(La Riforma Sociale) - 이탈리아의 부르조아적 자유주의 경향의 월간잡지로서 1894년부터 투린과 로마에서 발간되고 있다. - 1086.

107 하이네, 로마제로의 맺는 말. - 1087.

108 스가나헬 - 폴리에르의 희극 「동 주앙」의 등장인물, 동 주앙의 종북, 교활하고 비겁한 사기꾼의 전형. - 1087.

109 엥겔스는 점쟁이 발람에 대한 성서의 전설을 두고 말한다. 발람은 모아 비트 왕인 발라크의 초청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발람은 신의에 의하여 저주할 대신에 찬양하였다. 엥겔스는 로리아의 무원칙성과 이중성을 야유하고 있다. - 1087.

110 「사회입법 및 통계문헌집」(Archiv für soziale Gesetzgebung und Statistik) - 독일의 정치경제잡지로서 이 이름으로 1888년부터 1903년까지 한 해에 네 번 뒤빙겐에서 발간되었으며 그 후에는 사회민주당원인 G. 브라운의 편집하에 베를린에서 발간되었다. - 1086.

111 「사회정치 중앙신문」(Sozialpolitisches Centralblatt) - 독일의 사회개량주의적 경향의 주간잡지로서 이 이름으로 사회민주당원인 G. 브라운의 편집하에 1892년에서 1895년 사이에 베를린에서 발간되었다. - 1088.

112 엥겔스는 1895년 3월 1일자, 슈미트의 편지를 말한다.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엥겔스는 역시 1895년 3월 12일자 슈미트에게 보낸 회답에서 하였다. - 1088.

113 쿠바, 가이피, 바감 제도, 북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의 남극단을 돌아 인도로 가는 바닷길과 끝으로 남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을 두고 말한다. - 1097.

인명색인

ㄱ

가드너 Gardner, Robert — 19세기
중엽 맨체스터의 면공업 공장주 —
495, 601, 602.

가리발디 Garibaldi (1807~1882) —
이탈리아의 혁명가, 민주주의자, 이
탈리아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 — 33.

거니 Gurney, Samuel (1786~1856)
— 영국의 대은행가 — 494, 498, 503,
509, 651, 652, 668, 675.

괴테 Goethe (1749~1832) — 독일의
대작가이며 사상가 — 470.

그레그 Greg, Robert Hyde (1795~18
75) — 영국의 대공장주, 자유당원 —
133, 134.

그레이 Grey, Sir George (1799~1882)
— 영국의 국가활동가, 위그당원.
내무대신 (1846~1852, 1855~1858,
1861~1866) 이며 식민지 대신 (1854~
1855) — 114.

글린 Glyn, George Grenfell (1824~1
887) — 영국의 은행가, 자유당원, 의
회의원, 재정장관 (1868~1873) — 67
4.

길바트 Gilbart, James William (1794
~1863) — 영국의 은행가이며 경제
학자, 은행업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406, 432, 485~488, 669, 675.

760.

까글리오스트로 Cagliostro, Alessan
dro (본명은 Giuseppe Balsamo) (174
3~1795) — 이탈리아의 모험가 — 10
85.

코클렝 Coquelin, Charles (1803~185
2) —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
며 자유무역의 지지자 — 41.

콩트 Comte, Francois-Charles-Loui
s (1782~1837) — 프랑스의 자유주의
정론가, 속류경제학자 — 769.

ㄴ

나폴레옹 1세 Napoleon I, Bonaparte
(1769~1821) — 프랑스의 황제 (180
4~1814, 1815) — 753.

네이스미드 Nasmyth, James (1808
~1890) — 영국의 기사, 증기망치의
발명가 — 122.

노만 Norman, George Warde (1793
~1882)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
자, 통화와 조세에 대한 책들을 씀.
통화원리학파의 지지자, 잉글랜드
은행의 한 중역 (1821~1872) — 505~
508, 519, 682, 685.

노스 North, Sir Dudley (1641~1691)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의 첫 대표자의 한 사람
— 336, 761, 775.

뉴마치 Newmarch, William (1820~1882)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통계가 — 619, 647, 651, 669, 671, 672, 693, 694, 704, 705, 709, 710, 712, 718~727.

뉴만 Newman, Francis William (1805~1897) — 영국의 어문학자이며 정론가, 부르조아 급진파, 종교,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741, 816.

니브 Neave, Sheffield — 1858년에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 — 587, 648.

ㄷ

단테 Dante Alighieri (1265~1321) — 이탈리아의 대시인 — 33.

데르 Daire, Louis-Fracsois-Eugene (1798~1847) —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정치경제학의 저작들을 발행함 — 963.

데비넌트 Davenant, Charles (1656~1714) —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통계학자, 중상주의자 — 819.

데이빗슨 Davidson, Daniel Mitchell — 영국의 상인, 1854년에 그의 사기적 거래업무가 폭로되자 영국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 663.

도니체티 Donizetti, Gaetano (1797~1848) —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 33, 1084.

도브 Dove, Patrick, Edward (1815~

1873) — 영국의 부르조아 철학자이며 경제학자 — 787, 794.

동발 Dombasle, Christophe-Joseph-Alexandre Mathieu de (1777~1843) — 프랑스의 유명한 농학자 — 935, 991.

듀로 드 라 말 Dureau de la Malle, Adolphe-Jules-Cesar-August (1777~1857) — 프랑스의 시인이며 역사가 — 129.

디즈레일리 Disraeli Benjamin, 비콘즈빌드 백작 (1804~1881) — 영국의 국가활동가이며 작가, 토리당 지도자의 한 사람, 19세기 후반기에 보수당의 지도자, 채정대신 (1852, 1858~1859, 1866~1868), 내각수상 (1868, 1874~1880) — 504.

또끄빌 Tocqueville, Alexis Cl'erele de (1805~1859) — 프랑스의 부르조아 역사가이며 정치활동가, 정통 왕조파이며 입헌군주제의 지지자 — 982.

띠에르 Thiers, Louis-Adolphe (1797~1877) — 프랑스의 부르조아 역사가이며 국가활동가, 내각수상 (1836, 1840), 공화국 대통령 (1871~1873), 파리콤문의 도살자 — 777.

ㄹ

라베르뉴 Lavergne, Louis-Gabriel-L'eonce-Guilhaud de (1809~1880)

— 프랑스의 부르조아 정치활동가이며 경제학자, 농업경제에 대한 일련의 책을 씀 — 784, 785.

라이트 Wright, Charles — 19세기 중엽의 영국 은행가 — 649, 653.

래드클리프 Radcliffe, John Netten (1826~1844) — 영국의 전염병 의사, 전염병 협회의 명예고문 (1862~1867)이며 회장 (1875~1877), 주민의 건강을 조사하기 위한 추밀원의 한 검찰관 (1869~1883) — 121.

램제이 Ramsay, Sir George (1800~1871)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마지막 대표자의 한 사람 — 52, 59, 336, 433, 453, 454, 943.

러셀 Russel, Lord John (1792~1878) — 영국의 국가활동가, 위그당의 지도자, 내각수상 (1846~1852, 1865~1866) — 503.

레덴 Reden, Friedrich Wilhelm Otto Ludwig, Freiherr von (1804~1857) — 독일의 통계학자 — 576.

레드그레이브 Redgrave, Alexander — 영국의 공장감독관 — 125, 164, 166.

렉시스 Lexis, Wilhelm (1837~1914) — 독일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통계학자, 속류 정치경제학의 대표자 — 22, 23.

렐 Laing, Samuel (1810~1897) — 영

국의 정치활동가이며 정론가, 영국 철도회사에서 일련의 고위급 행정지위를 차지함. 의회의원, 자유당원 — 949.

렐게 Linguet, Simon-Nicolas-Henri (1736~1794) — 프랑스의 변호사, 정론가, 역사가, 경제학자, 봉건절대주의 입장에서 중농주의자들과 부르조아 자유주의를 비판함. 그러나 부르조아적 자유와 소유에 대한 일련의 심오한 비판을 가함 — 107, 968.

로 Law, John of Lauriston (1671~1729)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재정가, 프랑스의 재정대신 (1719~1720), 완전히 파산된, 지폐발행의 무기활동으로 이름남 — 751.

로드베르투스-야게포브 Rodbertus Jagetzow, Johann Karl (1805~1875) — 독일의 속류 경제학자이며 정치활동가, 부르조아화한 프러시아 옹커 귀족의 반동적 사상을 설교 — 20, 172, 955, 980, 1042.

로드웰 Rodwell, William — 19세기 중엽 영국의 지방은행가 — 614.

로리아 Loria, Achille (1857~1943) — 이탈리아의 부르조아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 속류 정치경제학의 대표자, 맑스주의의 위조자 — 29~33, 1083~1086, 1088, 1094.

로셔 Roscher, Wilhelm Georg Friedrich (1817~1894) — 독일의 속류경제

학자, 라이프찌히 종합대학 교수, 이른바 정치경제학의 역사파의 창건자 - 272, 368, 388, 475, 1011.

로이 Roy, Henry - 영국의 의사이며 경제학자 - 432, 436.

로이드 Loyd, Samuel Jones Overstone Barrow (1796~1883) - 영국의 은행가, 부르조아 경제학자, 통화원리학파의 지지자 - 508~519, 521~527, 599, 628, 634~637, 639~641, 670, 680, 682, 685, 687, 689, 692, 698, 701, 702, 712.

로즈 Rhodes, Cecil John (1853~1902) - 영국의 정치활동가, 제국주의의 변호자, 영국의 식민지 약탈의 주되는 조직자. 한 사람 - 1106.

로크 Locke, John (1632~1704) - 걸출한 영국의 이원론 철학자, 감각론자 부르조아 경제학자, 명목화폐설과 금속화폐 사이에서 동요 - 398, 422, 430, 431, 434, 437, 450, 775.

로트실드 Rothschild, James, baron de (1792~1868) - 파리에 있는 로스차일드 은행일가의 우두머리 - 579.

루이14세 (1638~1715) - 프랑스의 왕 (1643~1715) - 129.

루자크 Luzac, Elie (1723~1796) 네델란드의 철학자, 법률가이며 경제학자 - 381.

루터 Luther, Martin (1483~1546) - 종교개혁의 저명한 활동가, 독일에

서의 신교(루터교)의 창건자, 독일 시민계층의 사상가, 1525년 농민전쟁시기에 공작들의 편에 서서 봉기한 농민과 도시빈민을 반대해 나섬 - 396, 416, 470, 471, 746, 1096.

류비송 Rubichon, Maurice (1766~1849) - 프랑스의 부르조아 속류 경제학자 - 760, 987, 991.

리담 Leatham, William Henry (1815~1889) - 영국의 은행가이며 정치활동가, 급진파, 의회의원 - 479.

리비히 Liebig, Justus Freiherr von (1803~1873) - 독일의 탁월한 학자, 농화학의 한 창시자 - 917, 946, 956, 993.

리스터 Lister, James (1802년 경에 출생) - 영국의 은행가, 리버풀 연합은행 총재 - 497.

리스트 List, Friedrich (1789~1846) - 독일의 부르조아 속류 경제학자, 극단한 보호관세제를 설교 - 1077.

리치 Ritchie, Charles Thomson - 19세기 말의 영국은행가 - 673.

리카아도 Ricardo, David (1772~1823)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걸출한 대표자 - 20, 29, 51, 60, 84, 133, 141, 218, 222, 223, 239, 243~245, 271, 287, 288, 293~295, 301, 312, 313, 388, 389, 522, 679~682, 807, 808, 818, 832, 841, 843, 919, 931, 948, 998, 1026.

1042.

□

마고 Mago(기원 전 550년 경~500년)
— 카르타겐의 통수, 카르타겐 강국
의 한 창건자, 농촌경리에 대한 28권
의 전집의 저자, 희랍어와 라틴어로
번역됨 — 460.

마론 Maron H. — 농업문제에 대한
소책자를 씀, 이 소책자는 1859년에
오펜론에서 독문으로 발간됨 — 987.

마우러 Maurer, Georg Ludwig(1790
~1872) — 독일의 저명한 부르조아
역사가, 고대와 중세 독일의 사회제
도를 연구함, 중세에 농촌공동체의
역사연구에 크게 기여함 — 216.

마이네르 Meynert Theodor Herman-
n(1833~1892) — 오스트리아의 의
사, 신경병리학자이며 정신병 의사
— 14.

만리 Manley, Thomas(1628~1690)
— 영국의 작가이며 부르조아 경제학
자, 중상주의자 — 750.

맑스 Marx, Karl(전기 자료) — 11~3
5, 171, 216, 360, 464, 521, 531,
918, 1081, 1083, 1090.

매씨 Massie, Joseph(1784년에 사망)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의 대표자 — 398, 422,
430, 431, 434, 437, 450, 990.

매콜리 Macaulay, Thomas Babigt-

on(1800~1859) — 영국의 부르조아
역사가이며 경제학자, 위그당원, 의
회의원 — 751.

맥도넬 MacDonnell, John — 영국의
은행가, 19세기 중엽 아일랜드 은행
이사 — 650.

맥컬로크 MacCulloch, John Ramsar-
y(1789~1864)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리카아도의 경제학설을
비속화함, 자본주의의 열렬한 변호
자 — 84, 218, 271, 288.

멜더스 Malthus, Thomas Robert(17
66~1834) — 영국의 목사, 경제학자,
부르조아화한 토지귀족의 사상가,
자본주의의 변호자, 인간 증오의 인
구론을 설교 — 49, 52, 59, 62, 207,
231, 239, 473, 803, 818, 831.

머레이 Murray, Robert — 19세기 중
엽의 영국은행가 — 650.

멩거 Menger, Karl(1840~1921) —
오스트리아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오스트리아 정치경제학파의 주 되는
대표자의 한 사람 — 22.

모르간 Morgan, Lewis Henry(1818
~1881) — 미국의 걸출한 학자, 민속
학자, 고고학자, 원시사회의 역사가,
자연생장적 유물론자 — 216.

모리스 Morris, James — 1848에 잉
글랜드 은행의 이사 — 503, 550,
579, 584, 631, 708.

모튼 Morton, John Lockhart — 19세

기 중엽의 영국농학자, 농업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784, 836.
 모튼 Morton, John Chalmers (1821~1888) - 영국의 농학자, 농업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782.
 몰리에르 Moliere, Jean Battiste (본성은 뽀칼렌) (1622~1673) - 프랑스의 대희곡작가 - 33, 1087.

몸젠 Mommsen, Theodor (1817~1903) - 독일의 저명한 부르조아 역사가, 고대 로마사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392, 460, 964.

뮌저 Möser, Justus (1720~1794) - 독일의 역사가이며 정론가, 독일의 보수적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대표함 - 968.

무니에 Mounier, L. - 19세기 중엽의 프랑스 역사가 - 987, 991.

무어 Moore, Samuel (1830년 경~1912년) - 영국의 법률가, 제1국제당 성원, 아벨링과 함께 「자본론」 제1권과 「공산당 선언」을 영어로 번역, 맑스와 엥겔스의 벗 - 16.

뮐러 Müller, Adam Heinrich, Ritter von Nitterdorf (1779~1829) - 독일의 정론가이며 경제학자, 봉건귀족의 이해관계를 표현한 이른바 낭만파의 대표자, A. 스미드의 경제학설을 반대함 - 427, 474, 475.

미라보 Mirabeau, Victor Riqueti, marquis de (1715~1789) - 프랑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농주의자 - 931.

밀 Mill, John Stuart (1806~1873)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객관주의 철학자, 고전 정치경제학의 비호자 - 465, 475, 641, 691, 715, 1070.

나

바베지 Babbage, Charles (1792~1871) - 영국의 수학자이며 역학자, 부르조아 경제학자 - 130, 140.

바스티아 Bastiat, Fr'ed'eric (1801~1850) - 프랑스의 속류 경제학자, 부르조아 사회에서의 계급적 이익의 조화론을 설교 - 187, 413.

발자크 Balzac, Honore de (1799~1850) - 프랑스의 사실주의 대작가 - 53.

뱅싸르 Vincard, Pierre-Denis (1820~1882) - 프랑스의 노동자-정론가, 1848년 혁명의 참가자, 협동조합운동의 적극적 참가자, 노동계급의 형편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제1국제당 성원 - 963.

버날 오스본 Bernal Osborne, Ralph (1808~1877) - 영국의 정치활동가, 자유당원, 의회의원, 해군 차관 (1852~1858) - 169.

베리 Verri Pietro (1728~1797) - 이탈리아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농

주의 학설을 처음으로 비판한 한 사람 - 336.

베링 Baring - 영국의 재정가와 은행가의 가정 - 662, 663.

베쎄머 Bessemer Sir Henry (1813~1898) - 영국의 기사이며 화학자, 발명가, 선철을 강철로 만드는 새로운 경제적인 방법을 내놓음 - 92.

베이커 Baker, Robert - 영국의 판리, 19세기 50~60년대에 공장감독관 - 112, 115, 150, 151, 154, 156.
 베인즈 Baynes, John - 영국의 도시 블랙번의 시 자치체 성원, 1857년에 목화거래에 대하여 두 강의를 하고 그것을 발표함 - 151, 152.

벡커 Bekker Immanuel (1785~1871) - 독일의 언어학자, 고대 저자들의 작품들을 많이 출판(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파네스 등의 작품들) - 460.

벤티크 Bentinck, Lord George (1802~1848) - 영국의 정치활동가, 위그당원, 의회의원, 보호관세론자 - 503.

벨 Bell, G.M. - 19세기 전반기의 스코틀랜드 은행의 이사, 은행과 통화 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677.

벨러스 Bellers John (1654~1725) - 영국의 경제학자, 부의 창조에서 노동이 의의를 강조함, 수많은 사회개

량의 공상적 안을 작성함 - 344.

보존키트 Bosanquet, James Whatman (1804~1877) - 영국의 은행가이며 경제학자, 경제적 서들과 함께 또한 성서에 대한 여러 책을 씀 - 444, 480.

뷔쉬 Büsch, Johann Georg (1728~1800) - 독일의 경제학자, 기본상 중상주의 견해를 신봉함 - 762.

뷰레 Buret, Antoine-Eugene (1810~1842년) 프랑스의 소부르조아 사회주의자 - 982.

브라운 Brown, William (1784~1864) - 영국의 상인, 은행가, 자유무역자 - 699.

브라운 Braun, Heinrich (1854~1927) - 독일사회민주당원, 개량주의자, 기자, 잡지 「신시대」의 한 창간자, 잡지 「사회입법과 통계문헌집」 및 그 밖의 일련의 출판물의 편집자, 국회대의원 - 1086, 1088.

브라이트 Bright, John (1811~1889) - 영국의 공장주, 부르조아 정치활동가, 자유무역론자의 한 지도자이며 반곡물법동맹의 한 창건자, 60년대 초부터 자유당 좌파의 지도자, 자유당 내각에서 역대 대신의 자리를 차지함 - 786.

브리스코 Briscoe, John (17세기 말) - 영국의 기업주, 고리대에서 해방될 수단으로 본 토지은행의 창립안을

제기함, 의회의원 - 748.

비데르만 Biedermann, Karl (1812~1901) - 독일의 부르조아 역사가이며 정론가, 처음에는 온건한 자유당원, 60년대 이후 국민자유당, 「독일종합신문」의 편집자 (1863~1879) - 98.
비쎈링 Vissering, Simon (1818~1888) - 네덜란드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통계학자, 속류 정치경제학의 대표자 - 380, 382.

비켄즈필드 백작 - 디즈레일리, 벤자민을 보라.

페레르 또는 페레이라 Péreire, Jacob-Émile (1800~1875) - 프랑스의 은행가, 20~30년대에 생시몽파에 가담, 제2제국 시기에는 보나파르트파, 입법원 대의원, 1852년에 동생이자인 페레이르와 함께 동산신포 주식은행을 창립 - 536, 753.

人

사이먼 Simon, Sir John (1816~1904) - 영국의 의사, 추밀원의 의학감찰관, 「주민의 건강」란 보고서를 편집 - 115, 118, 120.

생시몽 Saint-Simon, Claude-Henri de Rouvroy, comte de (1760~1825) - 프랑스의 대공상적 사회주의자 - 752, 753.

세르불리에 Cherbuliez, Antoine-Eli see (1797~1869) - 스위스의 경제학

자, 시스몽디의 추종자, 시스몽디의 이론을 리카아도의 이론과 절충함 - 196.

세이 Say, Jean-Baptiste (1767~1832) - 프랑스의 부르조아 속류 경제학자, 생산의 세 요소의 변호론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함 - 336, 1026, 1033.

쇼우 Shaw, George Bernard (1856~1950) - 영국의 걸출한 극작가이며 정론가, 1884년 이후 페이비안 협회 성원 - 22.

쉐베 Chev , Charles Francois (1813~1875) - 프랑스의 소부르조아 정론가이며 사회학자 - 414.

슐러 Schiller, Friedrich (1759~1805) - 독일의 대작가 - 998.

슈미트 Schmidt, Conrad (1863~1932) -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철학자, 활동 초기에는 맑스의 경제학설에 동의하다가 후에는 맑스주의에 대한 부르조아적 편에 가담, 수정주의의 사상적 원천의 하나로 된 여러 저작을 씀 - 23~26, 29, 31, 35, 1088.

슈토르흐 Storch Heinrich Friedrich von (Andrej Karlowitsch) (1766~1835) - 러시아의 경제학자, 통계학자, 역사가, 페제르부르크 과학원 성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아류 - 222, 817, 1011, 1033, 1038.

스미드 Smith, Adam (1723~1790)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정치경제학의 절충한 대표자의 한 사람 — 177, 231, 232, 239, 259, 272, 288, 388, 393, 395, 458, 473, 582, 584, 766, 925, 943, 944, 948, 949, 950, 951, 964, 1011, 1021, 1026, 1027, 1031.

스미드 Smith, Edward (1818년 경~1874년) — 영국의 의사. 노동자구억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추밀원의 대표이며 심의원, 빈민구제위원회 위원 — 117, 118.

스튜어트 Stuart, James (1712~1780)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중상주의의 마지막 대표자의 한 사람, 화폐수량설을 반대함 — 278, 394, 963.

스티벨링 Stiebeling, George — 미국의 통계학자이며 소부르조아 정론가. 출신은 독일인. 제1국제당 미국 지부들의 중앙위원회 위원. 후에 분파활동으로 하여 국제당에서 제명됨. 북미주의 사회민주노동당 성원. 일련의 경제논설을 씀 — 34, 35.

시니어 Senior, Nassau William (1790~1864) — 영국의 속류 부르조아 경제학자, 자본주의의 변호자, 노동일의 단축을 반대함 — 46, 59.

시스몽디 Sismondi, Jean-Charles-Léonard Simonde de (1773~1842) — 스위스의 경제학자, 자본주의

에 대한 소부르조아 비판가, 경제적 낭만주의의 저명한 대표자 — 590, 982.

○

아르키메데스 Archimedes (기원 전 287년 경~212년) — 고대회랍의 대수학자이며 역학자 — 1083.

아른트 Arnd, Karl (1788~1877) — 독일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속류 정치경제학의 대표자 — 435, 967.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기원 전 384~322) — 고대의 대사상가. 철학에서는 유물론과 관념론 사이에서 중요, 노예소유자계급의 사상가, 경제학 견해에서 자연적인 노예소유자경제를 옹호함. 처음으로 가치형태를 분석함 — 460, 1086.

아버스노트 Arbuthnot, John (1802~1865) — 영국 재정성의 관리. 통화와 신용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통화주의 학파의 지지자 — 96.

알렉산더 Alexander, Nathaniel — 영국의 상인, 19세기 전반기에 인도와 거래한 상사 사장 — 498, 685.

앙팡땡 Enfantin, Barthélemy-Prospér (1796~1864) —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생시몽의 친근한 제자의 한 사람 — 752, 756, 757.

애슐리 Ashley, Anthony Cooper, Shaftesbury Earl of Lord (1801~188

5) — 영국의 정치활동가, 40년대 의회에서 토리당의 자선가 집단을 지도, 1847년 이후 위그 당원 — 781.

애트우드 Attwood, Matthias (1799~1851) — 영국의 은행가이며 경제학자, 소실링지파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버밍검 학파의 대표자 — 696.

애트우드 Attwood, Thomas (1783~1856) — 영국의 은행가, 정치활동가, 경제학자, 소실링지파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버밍검 학파의 대표자 — 667, 696.

앤 Anne (1665~1714) — 영국의 여왕 (1702~1714) — 759.

앤더슨 Anderson, James (1739~1808년)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차액지대이론을 윤곽적으로 완성 — 398, 771, 772.

앤더슨 Anderson, James Andrew — 영국의 은행가, 19세기 중엽 스코틀랜드 은행 이사 — 650, 651.

에피쿠로스 Epikuros (기원 전 341~270년 경) — 고대 회랍의 탁월한 유물론 철학자, 무신론자 — 394, 745.

엔겔스 Engels, Friedrich (1796~1860) — F. 엔겔스의 아버지 — 579.
엔겔스 Engels, Friedrich (1820~1895년) — 13~35, 66, 76, 89~98, 136, 148, 150, 154, 171, 188, 205, 216, 249, 250, 314~316, 360, 399, 400, 431, 438, 463, 464, 480, 488~492,

502, 503, 519~521, 527, 531~534, 553~555, 579, 582, 585~586, 604, 605, 620, 639, 648, 652, 653, 673, 674, 688~692, 701, 702, 709, 713~715, 727, 728, 753, 831, 868, 877~895, 911, 918, 950, 997, 1002, 1081~1106.

오데르만 Odermann, Karl Gustav (1815~1904) — 독일의 교육자, 상업에 대한 많은 교과서를 씀 — 374.

오드 Ord, William Miller (1834~1902) — 영국의 의사 — 119, 120.

오버스톤 Overstone — 로이드를 보라

오비디우스 Ovidius (기원 전 43~기원 17년 경) — 탁월한 로마 시인 — 998.

오웬 Owen, Robert (1771~1858) — 영국의 대공상적 사회주의자 — 753.

오지에 Augier, Marie — 19세기 중엽의 프랑스 기자, 경제문제에 대한 논설들을 씀 — 740, 761.

오코너 O'Connor, Charles (1804~1884) — 미국의 법률가이며 정치활동가, 민주주의자 — 461.

옵다이크 Opdyke, George (1805~1880) — 미국의 기업가, 부르조아 경제학자 — 435, 829.

와일리 Wylie, Alexander Henry — 19세기 중엽 영국의 상인 — 639, 686~688.

우드 Wood, Sir Charles (1800~1885) — 영국의 국가활동가, 위그 당원, 1846~1852년에 재정대신, 인도담당 감찰위원회 의장 (1852~1855), 1855~1858년에 해군대신, 인도담당대신 (1859~1866), 옥새보관판서 (1870~1874) — 687, 723~725, 727.

울프 Woolf, Arthur (1766~1837) — 영국의 기사이며 발명가 — 123, 124.
월튼 Walton, Alfred A. (1816에 출생) — 영국 민주주의운동의 활동가, 건축가, 제1국제당 총무위원회 위원 (1867~1870), 영국 토지소유사에 대한 책들을 씀 — 773, 774.

월프 Wolf, Julius (1862~1937) — 독일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속류 정치 경제학의 대표자 — 28, 29, 33.

웨겔린 Weguelin, Thomas — 영국의 상업가, 자유당원, 의회의원, 1857년에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 — 546, 613, 618, 619, 640, 651, 711, 720.
웨스트 West, Sir Edward (1782~1828) — 영국의 경제학자,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의 한 대표자, 지대문제를 연구 — 294, 818.

웨이크필드 Wakefield, Edward Gibbon (1796~1862) — 영국의 국가활동가, 부르조아적인 식민주의이론을 내놓은 경제학자 — 931, 945.

웰제르 — 15~16세기 독일의 대상업 - 고리대가분 — 1096.

윌슨 Wilson, James (1805~1860)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정치 활동가,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창간자이며 편집자, 1853~1858년에 재정대신, 자유무역론자, 수량화폐설을 반대 — 537, 546, 659, 660, 670, 672, 682, 700, 717~722, 725~728.
윌슨 패튼 Wilson-Patten, John (1802~1892) — 영국의 정치활동가, 토리 당원, 후에 보수주의자, 의회의원 — 114.

유어 Ure, Andrew (1778~1857) — 영국의 화학자, 속류 경제학자, 공업 경제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103, 130, 462.

ㄸ

제본스 Jevons, William Stanley (1835~1882)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며 철학자, 속류 정치경제학의 수학파의 대표자 — 22.

제임스 1세 James I (1566~1625) — 영국의 왕 (1603~1625) — 759.

좀바르트 Sombart, Werner (1863~1941) — 독일의 부르조아 속류 경제학자, 활동 초기에 강당 사회주의자, 후에 독일제국주의의 사상가, 생애의 마지막에 팻쇼편으로 넘어가 히틀러 제도를 찬양함 — 1087, 1088.

조지 3세 George III (1738~1820) — 영국의 왕 (1760~1820) — 473.

존스 Jones, Richard (1790~1855)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그의 저서들은 고전정치경제학파의 몰락과 붕괴를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그는 일련의 정치경제학 문제에서 리카아도를 능가함 — 319, 935, 958.

존스톤 Johnston, James Finlay Weir (1796~1855) — 영국의 농화학자 — 769, 830, 832.

지멘스 Siemens, Friedrich (1826~1904) — 독일의 기사, 영국에서 생활, 자기 동생인 빌헬름 지멘스와 협력하여 1856년에 재생 용해로를 설계하였는데 그것은 후에 마르틴 식 강철 생산과정에 적용됨 — 92.

질크리스트 Gilchrist, Percy — 영국의 화학자, 토마스와 함께 새로운 강철생산법을 완성함 — 92.

즈빌헨바르트 Zwilchenbart, R. — 19세기 전반기의 스위스 상인 — 579.

ㄸ

차일드 Child, Sir Josiah (1630~1699) — 영국의 중상주의 경제학자, 은행가, 상인 — 474, 750, 751.

찰스 2세 Charles II (1630~1685) — 영국의 왕 (1660~1685) — 759.

채프만 Chapman, David Barclay — 19세기 상반기 오버랜드, 거니 상회의 대표 — 521, 631, 651~654.

첼머스 Chalmers, Thomas (1780~18

47) — 영국의 신교 신학자, 부르조아 경제학자, 맬더스의 추종자 — 298, 536.

첼벌린 Chamberlen 또는 Chamberlayne, Hugh (1630~1720) — 영국의 의사이며 경제학자, 17세기 말 고리대에서 구원되는 수단으로 토지은행의 설립안을 들고 나옴 — 748.

ㄷ

카드웰 Cardwell, Edward, Viscount (1813~1886) — 영국의 국가활동가, 처음에는 토리 당원, 후에는 필리파의 한 지도자, 그 후 자유당원, 상업대신 (1852~1855), 아일랜드 담당장관 (1859~1861), 식민지대신 (1864~1866), 육군대신 (1868~1874) — 687.

카토 Cato, Marcus Portius (der Altere) (기원 전 234~149) — 로마의 정치활동가이며 작가, 귀족의 특권을 옹호해 나섬, 대토지소유자. — 396, 459, 964.

칼 대제 Karl der Große (742년 경~814) — 프랑크 왕 (768~800)이며 황제 (800~814) — 743, 745, 963.

칸틸론 Cantillon, Richard (1680~1734) — 영국의 경제학자, 중농주의의 선행자, 상인 — 960.

캠벨 Campbell, John Baron (1799~1861) — 영국의 국가활동가이며 법률가, 왕립재판소 책임판사 (1850~1

859), 사법대신(1859~1861) - 113.
 캡스 Capps, Edward - 19세기 중엽
 건설분야의 영국인 기업가 - 699,
 950.

커티스 Curtis, Timothy Abraham -
 영국 은행의 중역회의 한 성원이며
 19세기 40년대의 동인도회사 사장 -
 466.

케네디 Kennedy, Primrose William
 - 영국의 은행가, 19세기 중엽 스코
 틀랜드 은행이사 - 649, 700.

케어리 Carey, Henry Charles (1793
 ~1879) - 미국의 부르조아 속류 경
 제학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반동
 적인 제국적 이익의 조화론의 저자
 - 141, 187, 475, 741, 771, 775,
 950.

케언즈 Cairnes, John Elliot (1823~1
 875)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이
 며 정론가, 미국 남부 주의 노예소유
 제를 반대해 나섬 - 459.

케일리 Cayley - 영국의 경제학자,
 소실링지지파라는 버밍검 학파의 대
 표자, 1847년의 상업공황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상원비밀위원회 위원,
 1857년에 은행입법 특별위원회 위원
 - 517, 667.

케틀레 Quetelet, Lambert-Adolphe-
 Jacques (1796~1874) - 벨기에의 부
 르조아 통계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 1050.

코베트 Corbet, Thomas - 19세기의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 203,
 209, 222, 252, 368.

코튼 Cotton, William (1786~1866) -
 영국의 상인, 영국은행 총재(1844~
 1845), 영국은행의 중역회의 한 성원
 (1821~1865) - 504.

쿠스토디 Custodi, Pietro (1771~184
 2) -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16세기
 말~19세기 초까지의 이탈리아 경제
 학자들의 저서들을 출판 - 336.

클레이 Clay, Sir William (1791~1869)
 - 영국의 정치활동가이며 경제학자,
 통화원리학파의 지지자 - 682.

키니어 Kinnear, John G. - 1847년
 런던에서 발간된 저서『공황과 통화』
 를 씀 - 538, 650.

키셀바흐 Kiesselbach, Wilhelm - 19
 세기 후반기의 독일의 역사가이며 사
 회학자 - 392.

킨케이드 Kincaid, Sir John (1787~1
 862) - 영국의 관리, 50년대에는 스
 코틀랜드의 공장과 감옥의 감독관 -
 113.

E

터너 Turner, Charles - 영국의 상인,
 19세기 전반기 인도와 거래를 한 리
 버풀 상회 사장 - 495, 503, 602.

터케트 Tuckett, John Debell (1864년
 에 사망) - 1846년 런던에서 발행된,

영문으로 된 두 권의 책 「과거와 현재의 근로주만의 형편역사」를 씀 — 748.

테렌시우스(푸블리우스 테렌티우스 아페루스) (기원 전 185년 경~159년)
— 저명한 로마의 희극작가 — 271.
토렌스 Torrens, Robert (1780~1864)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통화
원리학파의 지지자 — 51, 52, 59,
133, 424, 682.

투크 Tooke, Thomas (1774~1858)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고전
정치경제학파에 가담, 리카아도의
화폐설을 비판, 다부작인 「가격사」
를 씀 — 425, 432, 443, 444, 445,
481, 484, 505, 533, 537~542, 546,
549, 550, 558, 599, 649, 668, 682,
692, 707, 712, 986, 1028.

툰 Thun, Alphons (1853~1885) — 독
일의 부르조아 역사가 — 1095.

튀르고 Turgot, Anne-Robert-Jac-
ques, baron de l'Aulne (1727~1781)
—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국가활동
가, 중농주의학파의 걸출한 대표자,
재정총감 (1774~1776) — 775.

트웰스 Twells, John — 19세기 중엽
의 영국 은행가 — 628, 629,
696~697.

II

파씨 Passy, Hippolyte-Philibert (179

3~1880) — 프랑스의 부르조아 속류
경제학자이며 정치활동가, 제2공화
국시기에는 재정대신 — 945, 958,
960, 963, 969.

파이어만 Fireman, Peter (1863년생)
— 미국의 화학자, 러시아에서 출생
하여 독일에서 생활, 평균이윤율에
대한 논문을 씀 — 26, 27, 29, 35.
팔머 Palmer, John Horsley (1779~1
858) — 영국의 재정가, 1811년 이후
잉글랜드 은행의 한 중역, 1830~183
2년에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 후에
재정기관들에서 여러 직책을 차지함
— 693~695, 708.

팔머스톤 Palmerston, Henry John
Temple Viscount (1784~1865) — 영
국의 국가활동가, 활동 초기에는 토
리당원, 1830년 이후 위그당 우파에
의거한 이 당 지도자의 한 사람, 외
무대신 (1830~1834, 1835~1841,
1846~1851), 내무대신 (1852~1855),
내각수상 (1855~1858, 1859~186
5) — 113, 779.

패터슨 Paterson, William (1658~171
9) — 잉글랜드 은행의 창설자 — 751.
페어베언 Faibaim, Sir William (1789
~1874) — 영국의 공장주, 기사이며
발명가 — 114.

페티 Petty, Sir William (1623~1687)
— 영국의 걸출한 경제학자이며 통계
가, 영국의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

학의 시조 - 422, 430, 431, 435, 437, 450, 576, 819, 960, 961.

펙펙르 Pecqueur, Constantin (1801~1887) - 프랑스의 경제학자, 공상적 사회주의자 - 757.

펠러 Feller, Friedrich Ernst (1800~1859) - 독일의 언어학자, 일련의 사전을 편찬 - 374.

포르가드 Forcade, Eugene (1820~1869) - 프랑스의 부르조아 정론가, 속류 경제학자 - 1029~1030.

포셋 Fawcett, Henry (1833~1884)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추종자, 정치활동가, 위그 당원 - 782.

포페 Poppe, Johann Heinrich Moritz (1776~1854) - 독일의 학자, 기술사에 대한 여러 저서를 씀 - 401.

푸거 - 15~17세기의 독일의 대 상업 - 고리대 일가 - 1096.

푸리에 Fourier, Francois-Marie-Charles (1772~1837) - 프랑스의 대공상적 사회주의자 - 753, 932.

플라톤 Fullarton, John (1780~1849) - 영국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통화와 신용문제들에 대한 저서들을 씀, 수량화폐설을 반대 - 485, 537, 544~553, 558, 559, 573, 682.

프라이스 Price, Richard (1723~1791) - 영국의 정론가, 경제학자, 윤리철학자, 부르조아 급진파 - 471~47

4, 476.

프란시스 Francis, John (1810~1866) - 영국의 은행관리, 속류 경제학자, 은행업사에 대한 저서들을 씀 - 749, 751.

프루동 Proudhon, Pierre-Joseph (1809~1865) - 프랑스의 정론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소부르조아 사상가, 무정부주의의 시조들 중의 한 사람 - 53, 413~416, 425, 756, 777, 1029, 1030.

프리드리히 2세 Friedrich II (1194~1250) - 시실리의 왕, 이른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1220~1250) - 744.
플리니우스 Plinius, (Gaius Plinius Secundus) (기원 전 23~79) - 로마의 자연과학자, 37권으로 된 『자연사』 이 저작 - 129.

피스 Pease, Joseph - 지방의 은행업자 - 484, 504.

피트 Pitt, William (1759~1806) - 영국의 국가활동가, 토리당의 한 지도자, 내각수상 (1783~1801, 1804~1806) - 471.

핀다로스 Pindaros (기원 전 522~422) - 고대 회랍의 시인, 송가를 씀 - 462.

필 Peel, Sir Robert (1788~1850) - 영국의 국가활동가, 그의 이름을 따서 필파라고 불리운 토리당 온건파의 지도자, 내무대신 (1822~1827, 18

28~1830), 내각수상(1834~1835, 1841~1846), 자유당의 지지 밑에 곡물법을 폐가함(1846) — 680, 682.
 필라투스 Pilatus, Pontius (37 경에 사망) — 로마의 유대 총독(26~36) — 1027.
 필린 — 16세기 독일의 상업일가 — 1096.

ㅎ

하드캐슬 Hardcastle, Daniel — 『은행과 은행업자』라는 책을 씀. 1842년 런던에서 발행 — 676, 761.
 하이네 Heine, Heinrich (1797~1856) — 독일의 혁명적인 대시인 — 669, 1085, 1087.
 하이드 Heyd, Wilhelm (1823~1906) — 독일의 부르조아 역사가, 중세기 상업사에 대한 책을 씀 — 1095, 1096.
 해링톤 Harrington, James (1611~1677) — 영국의 정론가, 새 귀족의 사상가 — 1086.
 해밀톤 Hamilton, Robert (1743~1829) —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물리학자이며 수학자 — 472.
 헵바드 Hubbard, John Gellibrand (1805~1889) — 영국의 정치활동가, 보수당원, 의회의원(1859~1868, 1874~1887), 잉글랜드 은행의 한 중역 — 502, 656, 674, 682~685, 716,

731.

헤겔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770~1831) — 독일 고전철학의 걸출한 대표자, 객관적 관념론자, 관념론적 변증법을 가장 전면적으로 완성함, 독일 부르조아지의 사상가 — 24, 62, 766, 956.

헤렌슈반드 Herrenschwand, Jean (1728~1812) — 스위스의 부르조아 경제학자 — 964.

헨더슨 Henderson — 19세기 후반기에 블랙번 빈민구제위원회의 회장 — 165.

헨리 8세 Henry VIII (1491~1547) — 영국의 왕(1509~1547) — 759.

호너 Horner, Leonard (1785~1864) — 영국의 지질학자이며 사회활동가, 공장감독관(1833~1856),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해 나섬 — 112, 113, 114, 122, 152, 156.

호라티우스 Horatius (기원 전 65~8), — 로마의 탁월한 시인 — 244, 772.

호지스킨 Hodgskin, Thomas (1787~1869) —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정론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상적 사회주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함, 사회주의적인 결론을 얻으려고 리카야도의 이론을 이용함 — 465, 476.

호지슨 Hodgson, Adam — 영국의 은행가, 19세기 40년대 리버풀 주식

은행 중역 - 494, 495, 600, 601.
 회흐슈테터 - 16세기 독일의 상업일
 가 - 1096.

힐만 Hullmann, Karl Dietrich (1765~
 1846) - 독일의 부르쥔아 역사가, 중
 세사에 대한 일련의 저서를 씀 - 379,
 382, 743, 744.

흄 Hume, David (1711~1776) - 영

국의 철학자, 주관적 관념론자, 불가
 지론자, 부르쥔아 역사가이며 경제
 학자, 중상주의를 반대함, 화폐수량
 설의 초기 대표자의 한 사람 - 450,
 680.

히르슈 포겔 - 16세기 독일의 상업
 일가 - 1096.

문 헌 색 인*

- 「경쟁과 협동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현상논문」, 런던, 1834년(A prize essay on the comparative merit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London, 1834). - 1076.
- [그레그, A. H.] 「공장문제, 공장노동자의 건강과 도덕에 미치는 그 영향문제. <10시간노동법안>, 영국과 기타 나라 공업에 미치는 그 영향」, 런던, 1837년((Greg, R. H.) The factory question, considered in relation to its effects on the health and morals of those employed in factories. And the <ten hours bill>, in relation to its effects upon the manufactures of England,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London, 1837) - 133.
- 길바트, J. W. 「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런던, 1834년(Gilbart, J. W.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banking. London, 1834). - 406, 485, 488, 760.
- 길바트, J. W. 「1839년 화폐시장에서의 곤궁의 원인 연구」, 런던, 1840년(Gilbart, J. W. An inquiry into the causes of the pressure on the money market during the year 1839. London, 1840). - 668, 669, 674, 675.
- 길바트, J. W. 「은행업에 관한 실무론」, 제5판, 전2권, 제1권, 런던, 1849년(Gilbart, J. W. A practical treatise on banking. Fifth edition. In two volumes, Vol. I, London, 1849) - 432.
- 콩트, Ch. 「소유론」, 제I ~ II 권, 파리, 1834년(Comte, Ch. Traité de la propriété. Tomes I ~ II, 파리, 1834). - 768.
- [노스, D] 「상업에 관한 논술, 주로는 이자, 화폐주조, 주화의 손실, 화폐량의 증대 문제의 논술」, 런던, 1691년((North, D.) Discourses upon trade: principally directed to the cases of the interest, coinage, clipping, increase of money. London, 1691). - 761.
- 농촌경리와 곡물법에 관한 훌륭한 세 논술」, 전국 반곡물법동맹이 발표, 맨체스터 - 런던, 1842년(The three prize essays on agriculture and the corn law. Published by the National Anti-Corn-Law League, Manchester-London, 1842). - 780.
- 뉴만, F. W. 「정치경제학 강의」, 런던, 1851년(Newman, F. W.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London 1851). - 741, 816, 949, 991.
- 뉴만, S. Ph. 「정치경제학 원리」, 앤더버와 뉴욕, 1835년(Newman, S. Ph. Element-

s of political economy. Andover and New York, 1835) — 336.

데르, E. 「중농학파의 학설에 대한 머릿글」, 「중농학파, E. 데르의 머릿글과 주해 첨부」에 수록, 제1부, 파리, 1846년(Daire, E. Introduction sur la doctrine des physiocrates. In : Physiocrate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commentaires par E. Daire, Première partie, Paris, 1846). — 963.

도브, P. E. 「정치학 원리」, 에딘버러, 1854년(Dove, P. E. The Elements of political science, Edinburgh, 1854). — 787, 793.

동발, M. 「로빌농업연감, 또는 농업, 그 경제 및 농업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파리, 1824~1837년(Dombasle, M. Annales agricoles de Roville, ou Mélanges d'agriculture économie rurale et de législation agricole, Paris, 1824~1837). — 935.

듀로 드 라 말, A. J. 「로마 사람들의 정치경제학」, 제1권, 파리, 1840년(Dureau de La Malle, A. J. Economie politique des Romains, Tome I Paris, 1840) — 129.

띠에르, A. (Thiers, A). 「1848년 7월 26일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 국민회의 의사록에 수록, 제2권, 파리, 1849년. — 777.

라베르뉴, L. de.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농촌경제」, 프랑스어에서 번역, 에딘버러와 런던, 1855년(Lavergne, L. de. The rural economy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Translated from the French, Edinburgh and London, 1855). — 984.

램제이, G.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69년(Ramsay, G. An essay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Edinburgh, 1836) — 52, 336, 432, 433, 454, 943.

레덴, F. W. von. 「구라파 열강의 문화, 영토, 주민의 비교통계」, 1848년 (Reden, F. W. von, Vergleichende Kultur-Statistik der Gebiets-und Bevölkerungsverhältnisse der Groß Staaten Europa's Berlin, 1848) — 576.

렉시스, W. 「자본에 대한 맑스의 이론」, 잡지 「국민경제와 통계 연지」에 발표, 속편, 제11권, 1885년(Lexis, W. Die Marx'sche Kapitaltheorie. In :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neue Folge, Band XI, 1855) — 22.

렉시스, W. 「본위화폐 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잡지 「독일제국의 입법, 행정 및 국가경제 연지」에 발표, 제5판, 제1분책, 1881년(Lexis, W. Kritische Erörterungen über die Währungsfrage. In : 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m Deutschen Reich), Jahrgand V. Heft I. 1881) — 23.

- 렐, S. 「국민의 빈궁, 그 원인 및 그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런던, 1844년 (Laing, S. National distress : its causes and remedies, London, 1844). - 949.
- 렐, S. 「콜, 데이빗슨 및 고든의 대금용사기의 새 총서」. 정정보충된 제5판, 런던 [1869년] (Laing, S. A new series of the great city frauds of Cole, Davidson & Gordon, corrected and enlarged, Fifth edition, London[1869]), - 663.
- [렐게, N.] 「민법이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제1~2권. 런던, 1767년 ((Linguet, N.) *Théorie des loix civiles, ou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société*, Tomes I ~ II, Londres, 1767). - 108, 968.
- 로드베르투스, J. K. 「폰 키르흐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 제3신 : 리카아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과 새로운 지대론의 논거」. 베를린, 1851 (Rodbertus, J. K. *Soziale Briefe an von Kirchmann, Dritter Brief : Widerlegung der Ricarddschen Lehre von der Grundrente und Begründung einer neuen Rententheorie*, Berlin, 1851). - 172, 956, 979.
- 로리아, A. 「맑스의 가치법칙에 기초한 콘라드 슈미트 박사의 평균이윤율」. 슈투트가르트, 1889년. 잡지 「국민경제 및 통계 연지」에 발표, 속편, 제20권, 1890년 (Loria, A. *Die Durchschnittsprofitrate auf Grundlage des Marxschem Wertgesetzes*, Von Dr. Conrad Schmidt, Stuttgart, 1889. In :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Neue Folge, Band XX*, 1890) - 32.
- 로리아, A. 「칼 맑스」 잡지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새 선문집」에 발표, 제2편, 제38권, 제7호, 1883년 4월 1일 (Loria, A. Karl Marx. In : *Nuova antologia di scienze, letter ed arti*, seconda serie, Vol. XXXVII, No 7, 1 Aprile 1883.) - 29.
- 로리아, A. 「정치구조에 대한 경제이론」 토리노, 1886년 (Loria, A. *Lateoria economica della costituzione politica*, Torino, 1886). - 29, 30.
- 로리아, A. 「칼 맑스의 사후 저작」, 잡지 「신과학, 문학 및 예술 문집」에 실림, 제55권, 제3호, 1895년 2월 1일 (Loria, A. *Lopera postuma di Carlo Marx*, In *Nuova Antologia di scienze, lettere ed arti*, terza serie, vol. LV, N. 3, 1 Febraio 1895). - 1083, 1084.
- 로셔, W. 「인민경제체계」, 제1권 : 「국민경제학기본」, 정정보충된 제3판, 슈투트가르트와 아우그스부르크, 1858년 (Roscher, W. *System der Volkswirtschaft*, Band I, Die Grundlagender Nationalökonomie, Dritte, vermehrte und verbesserte Auflage, Stuttgart und Augsburg, 1858) - 272, 368, 1011.

- 로이, H. 『환자시세론, 1844년의 은행법』, 런던, 1864년(Roy, H. The theory of the exchanges, The bank charter act of 1844, London, 1864) - 432, 436, 476.
- 루자크, E. 『네덜란드의 부』, 제3부, 라이덴, 1782년(Luzac, E. Hollands rijkdom, Deel III, Leyden, 1782) - 381.
- 루터, M.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도록 승려들에게 주는 지시』, 비템베르그, 1540년(Luther, M. An die Pfarrherrn wider den Wucher zu predigen, Vermanung, Wittenberg, 1540), - 416, 470, 471, 760.
- 루터, M. 같은 책, 『명예박사 마틴 루터 씨의 저서 제6부』에 수록, 비템베르그, 1589년(Idem, In : Der sechste Teil der Bucher des ehrnwürdigen Herrn Doctoris Martini Lutheri, Wittenberg, 1589), - 761, 762.
- 루터, M. 『상거래와 고리대에 대하여』, 『명예박사 마틴 루터 씨의 저서, 제7부』에 수록, 비템베르그, 1589년(Luther, M. Von Kauffshandlung und Wucher, In : Der sechste Teilder Bücher des ehrnwürdigen Herrn Doctoris Martini Lutheri, Wittenberg, 1589) - 396.
- 류비송, M. 『프랑스와 영국의 사회기구에 대하여』, 신판, 파리, 1837년(Rubichon, M. Du mecanisme de la société en France et en Angleterre, Nouvelle edition, Paris, 1837), - 783, 987, 991.
- 리담, W. 『통화에 관한 편지집』, 정정보충된 제2판, 런던, 1840년(Leatham, W. Letters on the currency, Second edition, with corrections and additions, London, 1840) - 479.
- 리비히, J. 『농업과 생리학에 적용된 화학』, 전2부, 제7판, 제1부 : 식물이 자라는 화학적 과정, 브라운슈바이히, 1862년(Liebig, J. Die Chemie in ihrer Anwendung auf agricultur und Physiologie, In zwei Theilen, Siebent Auflage, Theil 1 : Der chemische Proceß der Ernährung der vegetabilien, Braunschweig, 1862), - 916, 992.
- 리스트, F. 『농지제도, 영세경리 및 국외 이주』, 슈투트가르트와 튀빙겐, 1842년(List, F. Die Acker verfassung die Zwerggwrtschaft und die Auswanderung, Stuttgart und Tübingen, 1842), - 1077.
- 리카야도, D.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taxation, Third edition, London, 1821), - 133, 141, 218, 222, 287, 807, 808, 818, 931, 950, 998, 1026, 1042.
- 마론, H. 『조방인가 집약인가? 농업생산에 관한 장』, 오펠른, 1859년(Maron, H. Ob Bauer oder Grundbesitzer? Ueber die Verhältnisse der Landwirthschaft, Opladen, 1859), - 1077.

- H. Extensiv oder Intensiv? Ein Kapitel aus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slehre, Opeln, 1859). — 987.
- 마우러, G. L. 『독일의 공동체 구조의 역사』. 에를랑겐, 1856년(Maurer, G. L. Geschichte der Markenverfassung in Deutschland, Erlangen, 1856). — 216.
- 마우러, G. L. 『공동체, 농가, 촌락 및 도시의 구조와 사회권력의 역사에 대한 서문』. 뮌헨, 1854년(Maurer, G. L. Einleitung zur Geschichte der Mark-, Hof-, Dorf- und Stadt- Verfassung und der öffentlichen Gewalt, München, 1854). — 216.
- 마우러, G. L. 『독일의 농촌구조의 역사』. 1~2권, 에를랑겐, 1865~1866년(Maurer, G. L. Geschichte der Dorfverfassung in Deutschland, Bde I - II, Erlangen, 1865~1866). — 216.
- 마우러, G. L. 『독일의 도시구조의 역사』. 1~4권, 에를랑겐, 1869 ~1871(Maurer, G. L. Geschichte der Städteverfassung in Deutschland, Bde I ~ IV, Erlangen, 1869~1871). — 216.
- 마우러, G. L. 『독일의 장원, 개인농가 및 농가구조의 역사』. 1~4권, 에를랑겐, 1862~1863년(Maurer, G. L. Geschichte der Fronhöfe, der Bauernhöfe und der Hofverfassung in Deutschland, Bde I ~ IV, Erlangen, 1862~1863). — 216.
- 맑스, K.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1권, 제1부 : 자본의 생산과정, 재검토한 제4판, 함부르그, 1890년(Marx, K.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r, Band, Buch I : Der Produktionsprocess des Kapitals Vierte, durchgesehene Auflage, Hamburg, 1890) — 601, 645~648, 712, 739, 748, 767, 768, 781, 786, 794, 930, 973, 1000, 1001, 1021, 1039, 1071, 1093.
- 맑스, K.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2부 : 자본의 유통과정』엔겔스의 편집하에 출판, 함부르그, 1885년(Marx, K.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Zweiter Band, Buch II : Der Cirkulationsprocess des Kapitals, Herausgegeben von F. Engels, Hamburg, 1885) — 593, 656, 657, 699, 950, 1012, 1021, 1023, 1030.
- 맑스, K. 『정치경제학 비판』. 제1권, 베를린, 1859(Marx, K.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s Heft, Berlin, 1859). — 679, 682, 696, 756, 794, 962.
- 맑스, K. 『철학의 빈곤』. 프루동 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 파리 — 브뤼셀, 1847년(Marx, K. Misère de la philosophie, Réponse à la philosophie de la misère de M. Proudhon, Paris — Bruxelles, 1847) — 756, 771.

맑스, K.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1권, 제1부 : 자본의 생산과정, 보충판 제3판, 함부르그, 1883년(Marx, K. Das Kapital :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r Band, Buch I : Der Produktions process des Kapitals, Dritte, vermehrte Auflage, Hamburg, 1883). - 181.

맑스, K. 같은 책, 검토한 제4판, 함부르그, 1890년(Idem, Vierte, durchgesehene Auflage : Hamburg, 1890). - 15, 19, 20, 25, 28, 40, 42, 43, 47, 51, 53, 55, 59, 65, 66, 67, 96, 101, 106, 108, 109, 115, 116, 119, 163, 177, 180, 197, 200, 221, 268, 271, 278, 281, 290, 316, 369, 380, 382, 379, 541, 552, 559.

맑스, K. 「자본론」, 파리, 1872~1875년(Marx, K. Le Capital, Paris, 1872~1875). - 30.

맑스, K. 「자본론」 :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판적 분석」, F. 엥겔스의 편집하에 출판, 1~2권, 런던, 1887년(Marx, K. Capital : a critical analysis of capitalist production, Ed. by F. Engels, Vol. I ~ II, London, 1887). - 14, 17

맑스 K.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2권, 제2부 : 자본의 유통과정, F. 엥겔스의 편집하에 출판, 함부르그 1885년(Marx, K.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Zweiter Band, Buch II : Der Cirkulationsprocess des Kapitals, Herausgegeben von F. Engels, Hamburg, 1885). - 14, 16, 20, 21, 25, 30, 31, 40, 58, 65, 66, 91~93, 95~97, 144, 200, 323, 325, 339, 346, 360, 366, 369, 409, 540, 544.

맑스, K. 「정치경제학 비판」, 제1분책, 베를린, 1859년(Marx, K. 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s Heft, Berlin, 1859). - 221, 222, 379, 543, 551.

[매씨, J.]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 원인에 관한 논술. 이 문제에 대한 윌리엄 페티 경과 로크 씨의 견해의 고찰」, 런던, 1750년([Massie, J.] An essay on the governing causes of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 wherein the sentiments of Sir William Petty and Mr. Locke on that head, are considered, London, 1750). - 397, 422, 430, 431, 433, 434, 437, 450, 990.

매콜리, Th. B. 「제임스 2세 즉위 이후의 영국역사」, 제4권, 런던, 1855년(Macaulay, Th. B. The history of England from the accession of James the Second, Vol. IV, London, 1855). - 951.

맬더스, Th. R.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런던, 1827년(Malthus, Th. R.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London, 1827). - 49.

멜더스, Th. R. 같은 책, 신판, 존 케이즈노브의 서문, 주해 및 보충 첨부, 런던, 1853년 (Idem, A new edition, with a preface, notes, and supplementary remarks by John Cazenove, London, 1853), - 52.

멜더스, Th. R. 같은 책, 저자 자신의 원고와 저자의 박력으로 상당히 보충된 제2판, 런던, 1836년 (Idem, 2nd edition with considerable additions from the author's own manuscript and an original memoir, London, 1836) - 49, 207, 239.

멜더스, Th. R. 「실천적 적용의 견지에서 본 정치경제학 원리」, 저자 자신이 적지 않게 보충하였고 저자의 약전이 들어 있는 제2판, 런던, 1836년 (Malthus, Th. R.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onsidered with a view to their practical application, 2nd edition with considerable additions from the autuor's own manuscript and an original memoir, London, 1836), - 231, 818.

멜더스, Th. R. 「지대의 본성과 장성 및 그것을 통제하는 원리에 관한 연구」, 런던, 1815년 (Malthus, Th. R.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progress of rent, and the principles by which it is regulated, London, 1815), - 818.

[멜더스, Th. R.] 「인구원리에 관한 논술」, 런던, 1798년 ((Malthus, Th. R.,)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1798) - 473, 831.

모르간, L. H. 「고대사회, 또는 야만에서 미개를 거쳐 문명에 이르는 인류의 진화와정에 관한 연구」, 런던, 1877년 (Morgan, L. H. Ancient society or Researches in the lines of human progress from savagery, through barbarism to civilization, London, 1877), - 216.

모튼, J. L. 「소유지의 원천 : 농촌경리의 개선과 토지소유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논술」, 런던, 1858년 (Morton, J. L. The Resources of estates : being a treatise on the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general management of landed property, London, 1858), - 783, 836.

모튼, J. Ch. 「농업에 사용되는 힘」, 「공예협회잡지」에 실림, 제7권, 1859년 12월 9일 (Morton, J. Ch. On the forces used in agriculture, In :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ts』, Vol. VII, December 9, 1859), - 782.

몸젠, Th. 「로마사」, 제2판, 베를린, 1856년 (Mommsen, Th. Römische Geschichte, Zweite Auflage, Berlin, 1856), - 392, 964.

뫼저, J. 「오스나브뤼크 역사」, 제1부, 베를린과 슈테틴, 1780년 (Möser, J. Osnabrückische Geschichte, Theil 1, Berlin und Stettin, 1780) - 968.

무니에, L. 「공식 문건에 근거한 프랑스의 농촌경리, 류비송의 의견첨부」, 제1~2

- 권 파리, 1846년(Mounier, L. De l'agriculture en France, d'après les documents officiels, avec des remarques par Rubichon, Tomes 1~2. Paris, 1846). - 987, 990.
- 뮐러, A. H. 「국가관리술의 기본」. 제3부, 베를린, 1809년(Müller, A. H. Die Elemente der Staatskunst, Theil III, Berlin, 1809). - 427, 474, 475.
- 밀, J. St. 「정치경제학상의 약간의 미해결문제」. 런던, 1844년(Mill, J. St.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44). - 1070.
- 밀, J. St. 「정치경제학 원리 및 사회철학에의 그 일부의 적용」. 제2판, 제1권, 런던, 1849년(Mill, J. S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Second edition, Vol. I, London, 1849) - 465, 476.
- 바베지, Ch. 「기계와 공장제 생산의 경제에 관하여」. 런던, 1832년(Babbage, Ch. On the economy of machinery and manufactures, London, 1832). - 130, 140.
- 바스티아, F. 「신용의 무보상성. F. 바스티아 씨와 프루동 씨간의 논쟁」. 파리, 1850년(Bastiat, Fr. Gratuité du crédit, Discussion entre M. Fr. Bastiat et M. Proudhon, Paris, 1850). - 413~416, 756.
- 뱅사르, P. 「프랑스의 노동과 근로자의 역사」. 제1~2권, 파리, 1845~1846년(Vinard, P. Histoire du travail et des travailleurs en France, Tomes I~II, Paris, 1845~1846). - 963.
- 베리, P. 「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 「이탈리아 정치경제학의 고전가들」. 현대편, 제15권, 밀라노, 1804년(Verri, P. Meditazioni sulla economia politica, In :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Parte moderna, Tome XV, Milano, 1804). - 336.
- 벨, J. M. 「주식은행의 철학」. 런던, 1840년(Bell, G. M. The philosophy of joint stock banking, London, 1840). - 677.
- 벨러스, J. 「빈민, 공업, 상업, 식민 및 비도덕에 관한 논문집」. 런던, 1699년(Bellers, J. Essays about the poor, manufactures, trade, plantations, and immorality, London, 1699). - 344.
- 보존키트, J. W. 「금속, 지폐 및 신용통화와 그 수량 및 가치의 통제수단」. 런던, 1842년(Bosanquet, J. W. Metallic, paper, and credit currency, and the means of regulating their quantity and value, London, 1842). - 444, 480.
- 뵈쉬, J. G. 「여러 가지 거래의 이론적 및 실무적 해설」. 제2권, 제3판, 함부르크,

1808년 (Büsch, J. G. Theoretisch-praktische Darstellung der Handlung in ihren mannichfaltigen Geschäften, Band II, 3. Ausgabe, Hamburg, 1808). - 762

뷰레, E. 『정치경제학 교과서』, 브뤼셀, 1842년 (Buret, E. Cours d'économie politique, Bruxelles, 1842). - 982

브리스코, J. 『대귀족과 소귀족에게 부당하며 국민의 상업을 파괴하는 백만, 추점, 잉글랜드 은행 조례에 의하여 얻이낸 최근의 기금에 대한 개요, 또한 소귀족의 세금을 면제하며 그들의 한 해 소득을 높이며 왕국의 모든 신민을 부유하게 하는 유리한 조건에서 여왕폐하의 국립토지은행에 의하여 화폐를 보장하는 방도에 대한 제안』, 제3판, 런던, 1696년 (Briscoe, J. A discourse on the late funds of the million-act, lottery-act, and Bank of England, Shewing, that they are injurious to the nobility and gentry, and ruinous to the trade of nation, Together with proposals for the supplying their majesties with money on easy terms, exempting the nobility, gentry &c from taxes, enlarging their yearly estates, and enriching all the subjects in the Kingdom, by a national landbank, The third edition, London, 1696). - 966

비세링, S. 『국민경제 실무수첩』, 제1부, 암스테르담, 1860~1861년 (Vissering, S. Handboek van praktische Staathuishoudkunde, Deel I, Amsterdam, 1860~1861). - 380~382

생시몽, H. 『신기독교』, 파리, 1825년 (Saint-Simon, H. Nouveau christianisme, Paris, 1825). - 752

『생시몽파의 종교』 - [앙팡맹, B. P.] 『생시몽파의 종교, 정치경제학과 종교』를 보라.

『생시몽 학설』, 서술, 첫 해, 1828~1829년, 제3판, 파리, 1831년 (Doctrines de Saint-Simon, Exposition, Première année, 1828~1829, Troisième édition, Paris, 1831). - 753

세르불리에, A. 『부와 빈곤, 사회적 부의 현대적 분배의 원인과 결과의 설명』, 파리, 1841년 (Cherbuliez, A. Richesse ou pauvreté, Exposition des causes et des effets de la distribution actuelle des richesses sociales, Paris, 1841). - 196

세이, J. B. 『정치경제학 개론』, 제4판, 제2권, 파리, 1819년 (Say, J. B.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Quatrième édition, Tome II, Paris, 1819). - 336, 1026

슈미트, C. 『자본론 제3권』, 잡지 『사회정치중앙신문』에 실림, 1895년 2월 25일 (Sc

- hmidt, C. Der dritte Band des 「Kapital」. In : 「Sozialpolitisches Centralblatt」. 25 Februar, 1895). — 1088.
- 슈미트, C. 「값스의 가치법칙에 기초한 평균이윤율」. 슈투트가르트, 1889년 (Schmidt, C. Die Durchschnittsprofitrate auf Grundlage des Marx'schen Werthgesetzes, Stuttgart, 1889). — 23~25.
- 슈미트, J. 「값스의 가치법칙에 기초한 평균이윤율」. 잡지 「신 라인 신문」, 제3, 4호에 발표, 1892~1893년 (Schmidt, C. Die Durchschnittsprofitrate und das Marx'sche Werthgesetz, In : Neue Zeit, No 3, 4, 1892~1893). — 25.
- 슈토르흐, H. 「국민소득의 본성에 관한 고찰」. 파리, 1824년 (Storch, H. Considérations sur la nature de revenu national, Paris, 1824). — 1033, 1034, 1039.
- 슈토르흐, H. 「정치경제학 독본, 또는 국민의 번영을 규정하는 원칙의 설명」. 제1~2권, 산크트-페테르부르크, 1815년 (Storch, H. Cours d'économie politique, ou Exposition des principes qui déterminent la prospérité des nations, Tomes I ~ II, St. Petersburg, 1815). — 222, 817, 1011, 1033.
- 스미드, A. 「제 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 제1권. 런던, 1776년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Vol. 1, London, 1776). — 177, 393, 583, 766, 943, 949~952.
- 스튜어트, J. 「정치경제학 원리연구」. 전3권, 제1권. 더블린, 1770년 (Steuart, J.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economy. In three volumes, Vol. I, Dublin, 1770). — 963.
- 스튜어트, J. 「정치경제학 원리연구」. 「제임스 스튜어트 경 전집」에 수록, 그의 아들 제임스 스튜어트 장군 편찬, 전6권, 제1권, 런던, 1805년 (Steuart, J.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economy In : The works of Sir James Steuart collected by General Sir James Steuart, his son, In six volumes, Vol. I, London, 1805). — 278, 394.
- 스튜어트, J. 「정치경제학 원리연구」. 제4권, 파리, 1789년 (Steuat, J. Recherche des principes de l'écono my politique, Tome IV, Paris, 1789). — 437.
- 스티벨링, G. C. 「가치법칙과 이윤율」. 뉴욕[1890년] (Stiebeling, G. C. Das wertsgesetz und die profit-Rate, New York[1890] — 34.
- 스티벨링 씨의 논설 「임금과 노동의 착취에 미치는 자본의 집적의 영향」(잡지 「신시대」, 3, 1887호에 실림) (Bemerkung zu dem Aufsatz des Herrn Stiebeling : Ueber den Einfluß der Verdichtung des Kapitals auf den Lohn

- und die Ausbeutung der Arbeit). In : Neue Zeit, No 3, 1887). - 35.
- 시스몽디, J.C.L. 시몽드 de, 『정치경제학의 새 원리, 또는 부와 인구와의 관계에 관하여』, 제2판, 1~2권, 파리, 1827년(Sismondi, J. C. L. Simonde de, Nouve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ou De la richesse dans ses rapports avec la population, Seconde edition, Tomes I ~ II, Paris, 1827). - 589, 590.
- 아른트, K, 『자연에 일치하고 독점정신과 공산주의에는 대치된 정치경제학, 이와 관련된 문헌일람』, 하나우, 1845년(Die natrugemässe Volkswirthschaft, gegenüber dem Monopolien geiste und dem Communismus, mit einem Rückblicke auf die einschlagende Literatur, Hanay, 1845). - 435, 967.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전8권),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집』, 백크 편찬, 제10권(옥스포드, 1837년)에 수록(De republica libri VIII. In : Aristotelis opera ex recensione I. Bekkeri, Tomus X, Oxonii, 1837). - 460.
- [양팡뽕, B. P.] 『생시몽과의 종교, 정치경제학과 정치』, 파리, 1831년((Enfantin, B. P.) Religion saint-simonienne, Economie politique et politique, Paris, 1831). - 752, 756, 757.
- 앤더슨, A, 『초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업사의 연대기적 서술』, 제2권, 런던, 1764년(Anderson, A, An Historical and chronological deduction of the origin of commerce, from the earliest accounts to the present time., Vol. II, London, 1764). - 398.
- 앤더슨, J, 『영국 곡물 값이 현재 오르게 된 사정의 공정한 연구』, 런던, 1801년(Anderson, J, A calm investigation of the circumstances that have led to the present scarcity of grain in Britain, London, 1801). - 771.
- 엔겔스, F, 『발행자의 머리말』, 맑스의 『자본론』에 수록,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판적 분석, 제1권, 런던, 1887년(Engels, F, Editor's preface, In : K. Marx, Capital : a critical analysis of capitalist production, Vol. I, London, 1887). - 604.
- 엔겔스, F, 『영국노동계급의 형편』,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자료에 근거함, 라이프찌히, 1845년(Engels, F,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Nach eigener Anschauung und authentischen Quellen, Leipzig, 1845). - 950
- 『영국의 이자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상업애호가가 씀, 런던, 1697년(Some thoughts of the interest of England, By a lover of commerce, London, 1697). - 755.

오지에, M. 「공공신용과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에 대하여」(Augier, M. Du crédit public et de son histoire depuis les temps anciens jusqu'à nos jours, Paris, 1842). - 739, 740, 761.

「오해를 받은 화폐이자, 또는 이자율의 저하가 국민의 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6%가 우리 왕국의 현실태에 일치하는 율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논술」. 런던, 1668년 (Interest of money mistaken, or a treatise, proving, that the abatement of interest is the effect and not the cause of the riches of a nation, and that six percent is a proportionable interest to the present condition of this kingdom, London, 1668). - 750.

옵다이크, G. A. 「정치경제학 개론」. 뉴욕, 1851년 (Opdyke, G.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New York, 1851). - 435, 828.

월튼, A. A. 「노르만디의 정복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영국과 아일랜드의 토지소유의 역사. 연합왕국 국민에게 드림」. 런던, 1865년 (Walton, A. A. History of the landed tenures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from the Norman conquest to the present time, dedicated to the people of the United Kingdom, London, 1865). - 772, 773.

윌프, J. 「랴스의 평균이윤율의 수수께끼」. 잡지 「국민경제 및 통계연지」에 발표, 제3권, 제2권, 1891년 (Wolf, J. Das Ratsel der Durchschnittsprofitrate bei Marx. In: Jahrdli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dritte Folge, Band II, 1891) - 28, 29.

윌프, J.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제도」. 슈투트가르트, 1892년 (Wolf, J. Sozialismus und kapitalistische Gesellschaftsordnung. Stuttgart, 1892). - 34.

웨스트, E. 「토지에 대한 자본의 적용에 관한 논술. 곡물수입을 아무리 제한하여도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의견 첨부. 옥스포드 대학의 한 학우의 저서」. 런던, 1815년 ((West, E.) Essay on the application of capital to land, with observations shewing the impolicy of any grest restriction of the importation of corn, By a fellow of University college of Oxford, London, 1815). - 294, 812.

[웨이크필드, E. G.] 「영국과 미국. 두 국민의 사회정치적 형편의 비교」. 전2권, 런던, 1833년 ((Wakefield, E. G.) England and America. A comparis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state of both nations. In two volumes. London, 1833) - 945.

유어, A. 「공장철학. 또는 공업경제학」. 저자의 지도하에서 번역, 제1권, 파리, 1836년 (Ure, A. Philosophi des manufactures, ou Economie industrielle. Traduit

sous les yeux de l'auteur, Tome I, Paris, 1836.) - 462.

유어, A. 「공장철학, 또는 대영제국 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상업적 경제학」.
제2판, 런던, 1835년(Ure, A. The Philosophy of manufactures : or, an
exposition of the scientific, moral, and commercial economy of the factory
system of Great Britain, Second edition, London, 1835). - 103, 129.

「은행신용 또는 농촌귀족과 런던 상인 사이의 담화형식으로 된 은행신용의 유익성
과 담보성의 연구」(Bank Credit: or the usefulness and security of the bank
of credit examined, in a dialogue between a country gentleman and a London
merchant). - 752.

「정치경제학 특히 가치 및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술어에 대한 몇 가지 논쟁에
대한 소견」(Observations on certain verbal disputes in political economy,
particularly relating to value, and to demand and supply, London,
1821). - 222, 223, 231~332.

쾨바르트, W. 「칼 맑스의 경제학 체계의 비판」, 잡지 『사회입법 및 통계문헌집』에
수록, 제7권, 1894년(Sombart, W. Zur Kritik der ökonomischen Systems
von Karl Marx, In : 「Archiv für soziale Gesetzgebung und Statistik」, Band
VIII, 1894). - 1087.

존스, R 「부의 분배와 조세의 원천에 관한 연구」, 제1부 : 지대, 런던, 1831년(J-
ohnes, R. An essay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on the sources of
taxation, Part I : Rent, London, 1831). - 935.

존스, R 「1833년 2월 27일 런던의 왕립대학에서 한 정치경제학 서론 강의」.
임금에 관한 강의 요강 첨부, 런던, 1833년(Jones, R. An introductory lecture
of political economy, delivered at king's college, London, 27th February,
1833. To which is added a syllabus of a course of lectures on the wages
of labor, London, 1833). - 319.

존스톤, J. F. W. 「북아메리카의 농촌경제, 경제 및 사회 문제에 관한 수기」, 제1권.
에든버러와 런던, 1851년(Johnston, J. F. W. Notes on North America
agricultural, economical, and social, Vol. I, Edinburgh and London,
1851). - 968, 829~832.

차일드, J. 「상업과 그리고 화폐이자가 떨어지는 데서 생기는 이득에 관한 연구.
토마스 쿨페퍼가 쓴 고리대를 반대한 잘못된 연구 첨부」, 영문번역판, 암스테르
담과 베를린, 1754년(Child, J. Traités sur le commerce et sur les avantages
qui résultent de la réduction de l'intérêt de l'argent avec un petit traite

contre l'usure, par Thomas Culpeper, Traduits de l'Anglois, Amserdam et Berlin, 1754). - 474, 750, 751.

첼머스, Th. 『사회의 도덕적 상태 및 도덕적 전망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제2판, 글라스고, 1832년(Chalmers, Th. On political economy in connexion with the moral state and moral prospects of society, Second edition, Glasgow, 1832). - 298, 299, 535.

첼벌린, H. 『토지소유자의 전반적 복리를 도모하며 토지의 가치를 더 높이며 기업과 상업에도 적지 않는 이득을 주기 위하여 담보가 있는 신용은행을 창설할 때 대한 액세스 거리의 휴 챔벌린 박사의 제안』. {런던}, 1695년(Chamberlayne, H. A proposal by Dr. Hugh Chamberlayne, in Essex Street, for a bank of secure current credit to be founded upon land, in order to the general good of landed men, to the great increase of the value of land, and the no less benefit of trade and commerce, {London}, 1695). - 748.

『최근 멜더스씨가 주장한 수요의 본성과 소비의 필요성과 관계되며 또한 세금과 비생산적 소비자의 부양이 부의 장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짓고 있는 원리의 연구』. 런던, 1821년(An inquiry into those principles, respecting the nature of demand and the necessity of consumption, lately advocated by Mr. Malthus, from which it is concluded, that taxation and the maintenance of unproductive consumers can be conducive to the progress of wealth, London, 1821). - 235, 803.

[칸틸론, R] 『상업 일반의 본성에 대한 연구』. 정치논술. 제3권, 암스테르담, 1756년([Cantillon, R.]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 In : Discours politiques, Tome III, Amsterdam, 1756). - 960.

케어리, H. Ch. 『과거, 현재 및 미래』. 필라델피아, 1848년(Carey H. Ch.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Philadelphia, 1848). - 476, 771.

케어리, H. Ch. 『사회과학의 원리』. 제3권, 필라델피아, 1859년(Carey, H. Ch. Principles of social science, Vol. III, Philadelphia, 1859). - 475.

케언즈, J. E. 『노예제도 : 그 성격, 경로 및 전망, 미국 충돌에 기인한 논쟁의 실지내용을 설명하려는 시도』. 런던, 1802년(Cairnes, J. E. The slave power : its character, career, and probable designs : being an attempt to explain the real issues involved in the American contest, London, 1862). - 459.

케틀레, A. 『인간과 그 기능의 발전 또는 사회적 면모의 연구』. 제1~2권. 파리, 1835년(Quetlet, A. Sur l'homme et le développement de ses facultés, ou

- Essai de physique sociale, Tomes I ~ II, Paris, 1835). - 1050.
- 코베트, Th.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또는 상업과 투기의 원리에 관한 해설」. 런던, 1841년(Corbet, Th. An Inquiry into the causes and modes of the wealth of individuals; or the principles of trade and speculation explained, London, 1841). - 203, 209, 222, 252, 368.
- 키니어, J.G. 「공황과 통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은행제도의 비교」. 런던, 1847년(Kinnear, J.G. The crisis and the currency: with a comparison between the English and Scotch systems of banking, London, 1847). - 537, 650.
- 키셀바흐, W. 「중세기 세계무역의 경로와 구라파 사회생활의 발전」. 슈투트가르트, 1860년(Kieselbach, W. Der gang des Welthandels und die Entwicklung des europäischen Völkerlebens im mittelalter, Stuttgart, 1860). - 392.
- 터케트, J.D. 「과거와 현재의 근로자들의 형편에 대한 역사」. 농촌경리, 공업, 상업의 발전 포함. 전2권, 제1권, 런던, 1846년(Tuckett, J.D. A History of the past and present state of the labouring population, including the progress of agriculture, manufactures, and commerce, In two volumes, Vol. I, London, 1846) - 748.
- 토렌스, R. 「부의 생산에 관한 논술」. 런던, 1821년(Torrens, R. An Essay on the production of wealth, London, 1821). - 51, 52, 133.
- 토렌스, R. 「상업대부에 영향을 주는, 1844년 은행법의 운용에 대하여」. 제2판, 런던, 1847년(Torrens, R. On the operation of the bank charter act of 1844, as it affects commercial credit, Second edition, London, 1847) - 424.
- 토크빌, A. 「낡은 제도와 혁명」. 파리, 1856년(Tocqueville, A.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Paris, 1856). - 982.
- 「통화론, 스코틀랜드 국민에게 보내는 영국 은행가의 편지」. 에딘버러, 1845년(The Currency theory reviewed; in a letter to the scottish people, By a banker in England, Edinburgh, 1845). - 487, 501, 529, 584, 643.
- 투크, Th. 「통화원리의 연구. 통화와 가격의 연관 및 은행업무로부터의 은행권 발행의 분리의 합리성」. 제2판, 런던, 1844년(Tooke, Th. An inquiry into the currency principle: the connection of the currency with prices, and the expediency of a separation of issue from banking, Second edition, London, 1844). - 424, 480~482, 484, 533, 537.
- 투크, Th. 「1793년부터 1837년까지의 가격사와 유통형편」. 제2권, 런던, 1838년(Tooke, Th. A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from

1793 to 1837. Vol. II. London, 1838). - 443.

투크, Th. 「1839년부터 1847년까지의 가격사와 유통형편」. 런던, 1848년(Tooke, Th. A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from 1839 to 1847 inclusive, London, 1848). - 432.

투크, Th. 「가격사와 유통형편」. 제1~4권. 런던, 1838~1857년(Tooke, Th. A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Vol. I~IV, London, 1838~1857). - 599.

투크, Th.; 뉴마치, W. 「1848년부터 1856년까지의 9년간의 가격사와 유통형편. 17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의 가격사에 대한 저작의 제5권과 제6권의 두 권에 수록」. 제6권. 런던, 1857년(Tooke, Th.; Newmarch, W. A History of prices, and of the state of the circulation, during the nine years 1848~1856. In two volumes; forming the fifth and sixth volumes of the History of prices from 1792 to the present time. Vol. VI, London, 1857). - 986.

툰, A. 「니더라임의 공업과 공업노동자」. 제2부. 라이프찌히, 1879년(Thun, A. Die Industrie am Niederrhein und ihre Arbeiter. Theil II, Leipzig, 1879). - 1095.

파씨, H. 「지대」, 「정치경제학사전」에 실림. 제2권. 파리, 1854년(Passy, H. Rente du sol. In: Dictionnaire de l'économie politique. Tome I, Paris, 1854). - 945, 960, 963.

파이어만, P. 「맑스의 가치설에 대한 비판」. 잡지 『국민경제 및 통계연지』에 발표. 제3편. 제3권, 1892년(Firemann, P. Kritik der Marx'schen Werttheorie. In: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dritte Folge, Band III, 1892). - 26.

[페티, W.] 「조세와 공물에 대한 논술」. 런던, 1667년([Petty, W.] A treatise of taxes & contributions, London, 1667). - 960.

펙뵈르, C. 「사회 및 정치경제학의 새 이론, 또는 사회구조에 관한 연구」. 파리, 1842년(Pecqueur, C. Théorie nouvelle d'économie sociale et politique, ou Étudessur l'organisation des sociétés, Paris, 1842). - 757.

펠러, F.E. 오더만, C.G. 「상인적 산술의 전체」. 제7판. 라이프찌히, 1859년(Feller, F. E. und Odermann, C. G. Das Ganze der kaufmannischen Arithmetik, Siebente Auflage, Leipzig, 1859). - 374.

포르가드, E. 「사회주의 전쟁」. II,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정치경제」, 「신구대 특평론」에 실림. 새 총서. 제24권. 파리, 1848년(Forcade, E. La guerre du

- socialisme, II, L'economie politique révolutionnaire et sociale, In : Revue des deux Mondes, nouvelle série, Tome XXIV, Paris, 1848), - 1029, 1030.
- 포페, I. H. M. 「과학이 발생한 때로부터 18세기 말까지의 기술사」, 제1권 피팅겐, 1807년(Poppe, I. H. M. Geschichte der Technologie seit der Wiederherstellung der Wissenschaften bis an Ende des achtzehnten Jahrhundertz, Band I, Göttingen, 1807), - 401
- 폴라톤, J. 「통화의 조절, 장차 영국 은행과 국내의 기타 은행들의 은행권 발생사업을 엄격히 규정된 범위에 국한시킬 때 의거하는 제 원칙의 분석」, 수정보충된 제2판, 런던, 1845년(Fullarton, J. On the regulation of currencies; being an examination of the principles, on which it is proposed to restrict, within certain fixed limits, the future issues on credit of the Bank of England, and of the other banking establishments throughout the country, Second edition, London, 1845), - 485, 545, 547, 550~552, 558.
- 프라이스, R. 「국채문제에 대하여 공중에게 호소함」, 런던, 1772년(Price, R. An Appeal to the public, on the subject of the national debt, London, 1772), - 471.
- 프라이스, R. 「상속지불, 과부와 연로자에 대한 연금보장안, 생명보험 가치계산방법, 국채에 대한 고찰」, 제2판, 런던, 1772년(Price, R. Observations on reversionary payments; on schemes for providing annuities for widows and for persons in old age;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s of assurances on lives; and on the national debt, Second edition, London, 1772), - 472.
- 프란시스, J. 「잉글랜드 은행의 역사, 그 시대와 전통」, 제3판, 제1권, 런던, 1848년(Francis, J. History of the Bank of England, its times and tradition, Third edition, Vol. I, London, 1848), - 748~751.
- 프루동, P. J. 「소유란 무엇인가? 또는 법과 권력의 원리에 대한 연구」, 파리, 1841년(Proudhon, P. J. Qu'est-ce que la propriété? ou Recherches sur le principe du droit et du gouvernement, Paris, 1841), - 1029.
- 프루동, P. J. 「신용의 무보상성」- 바스티아, F. 「신용의 무보상성, F. 바스티아 씨와 프루동 씨간의 논쟁」을 보라(Proudhon, P. J. Gratuité du crédit-Bastiat, Fr. Gratuité du crédit, Discussion entre M. Fr. Bastiat et M. Proudhon),
- 하드캐슬, D. 「은행과 은행업자」, 제2판, 런던, 1843년(Hardcastle, D. Banks and Bankers, Second edition, London, 1843) - 675, 761.
- 하이드, W. 「중세기의 근동무역사」, 제3권, 슈투트가르트, 1879년(Heyd, W.

- Geschichte des Levantehandels im mittelalter, Band II, Stuttgart, 1879). - 1096, 1097
- 해밀톤, R. 「대영국의 국채의 발생과 장성, 청산 및 현상태와 통세에 대한 연구」. 보충된 제2판, 에딘버러, 1841년(Hamilton, R. An inquiry concerning the rise and progress, the redemption and present state, and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debt of Great Britain, Second edition, enlarged, Edinburgh, 1814). - 471.
- 헵바드, J.G. 「통화의 나라」. 런던, 1843년(Hubbard, J. G. The currency and the country. London, 1843). - 501, 502.
- 헤겔, G.W.F. 「법철학 원리」. 전집, 제2판, 제8권, 베를린, 1840년(Hegel, G. W. F.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Werke, Zweite Auflage, Band VII, Berlin, 1840). - 767.
- 헤겔, G.W.F. 「요약된 철학백과사전」. 제1부, 논리학, 전집, 제4권, 베를린, 1840년(Hegel, G. W. F. Encyclopa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Theil I, Die Logik, Werke, Band VI, Berlin, 1840). - 957.
- [호지스킨, Th.] 「자본의 요구에 대한 노동의 옹호, 또는 자본의 비생산성의 증명, 임금노동자들 간의 현재의 조합에 관한 의견 첨부」. 한 노동자의 저작. 런던, 1825년((Hodgskin, Th.) Labour defended against the claims of capital; or, the Unproductiveness of capital proved.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combinations amongst journeymen, By a labourer, London, 1825). - 465, 476.
- 힐만, K.D. 「중세의 도시들」. 제1~2부, 본, 1826~1827년(Hüllmann, K. D. Städtewesen des Mittelalters, Theile I ~ II, Bonn, 1826~1827). - 380~382
- 힐만, K.D. 「중세기의 도시제도」. 제2부, 본, 1827년(Hüllmann, K. D. Städtewesen des Mittelalters, Theile II, Bonn, 1827). - 743, 744.
- 흄, D. 「이자에 관하여」(1752년). 흄 데이비드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논문집」. 신판, 전2권에 수록, 제1권은 도덕, 정치, 문학을 개괄, 런던, 1764년(Hume, D. of interest(1752). In : Hume, David, Essays and treatises on several subjects, A new edition, In two volumes, Vol I, containing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London, 1764). - 450.

의회보고와 기타 공식문건

- 「고한제도에 관한 상원특별위원회 제1차 보고 위원회 회의록, 증언록, 부록 첨부」
1888년 8월 11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First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 on the sweating system; together with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minutes of evidence, and appendix.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II August 1888). — 400.
- 「공중위생」, 주밀원 의무감독과의 제6차 보고, 부록 첨부, 1863년 런던, 1864년 (Public Health, Sixth Report of the medical officer of the Privy Council. With appendix, 1863, London, 1864). — 116, 122.
- 「광산과 탄광에서의 아동노동조건 조사위원회 성원들의 제1차 보고」, 1841년 4월 21일 (First Report of the children's employment commissioners in mines and collieries, 21 April, 1841). — 111.
- 「내무대신에게 제출한 공장감독관의 보고」. (Reports of the inspectors of factories to Her Majesty's Principal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148, 149.
- 1845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46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ber, 1845, London, 1846). — 152.
- 1846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47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46, London, 1847). — 152, 153.
- 1847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48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47, London, 1848). — 154, 155.
- 1848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49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48, London, 1849). — 100, 155.
- 1849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49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0th April 1849, London, 1849). — 155.
- 1849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0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49, London, 1850). — 155.
- 1850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0년 (for the half year ending

- 30th April, 1850, London, 1850). — 136, 156.
- 1850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1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50, London, 1851). — 150, 156.
 - 1851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1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0th April, 1851, London, 1851). — 150.
 - 1852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2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52, London, 1852). — 122~125.
 - 1853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3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April, 1853, London, 1853). — 156.
 - 1853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4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53, London, 1854). — 156.
 - 1854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4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April, 1854, London, 1854). — 156.
 - 1855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6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55, London, 1856). — 112, 113.
 - 1858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8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58, London, 1858). — 99, 152, 153.
 - 1859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59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0th April, 1859, London, 1859). — 156, 157.
 - 1859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0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59, London, 1860). — 157.
 - 1860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0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April, 1860, London, 1860). — 157.
 - 1860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0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60, London, 1860). — 157.
 - 1861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1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April, 1861, London, 1861). — 114, 156, 160.
 - 1861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2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61, London, 1862). — 159, 160.
 - 1862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2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0th April, 1862, London, 1862). — 114, 160.
 - 1862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3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62, London, 1863). — 100, 127, 159~161.

- 1863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3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0th April, 1863, London, 1863). - 162.
- 1863년 10월 31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4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1st October, 1863, London, 1864). - 112, 125~128, 136, 159~169.
- 1864년 4월 30일 이전 반년간의 보고, 런던, 1864년 (for the half year ending 30th April, 1864, London, 1864). - 159, 166.
- 「매분기 말에 위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어 그것을 국채를 줄이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한 조례 (조지 3세, 제26년, 제31장)」 An Act for vesting certain sums in commissioners, at the end of every quarter of a year, to be by them applied to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debt (anno 26 Georgii III, Regis, cap. 31) - 474.
- 「상업계급에게 닥쳐온 빈궁의 원인 및 은행권 발행의 통제법이 빈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상원비밀위원회의 보고, 증언록, 부록 첨부」. 1848년 7월 28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1857년에 재인쇄 (Report from the secret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 appointed to inquire into the causes of the distress which has for some time prevailed among the commercial classes, and how far it has been affected by the laws for regulating the issue of bank notes payable on demand. Together with the minutes of evidence, and an appendix.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28 July, 1848. Reprinted, 1857). - 18, 20, 489, 494, 497, 498, 509, 631, 648~653, 667~669, 674, 685~688, 692~695, 699~701, 707.
- 「상업위기에 대한 비밀위원회 제1차 보고, 증언록 첨부」. 1848년 6월 8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First report from the secret committee on commercial distress; with the minutes of evidence.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8 June, 1848). - 18, 20, 484, 485, 491, 492~495, 502~504, 550, 579, 584, 599~601.
- 「알곡과 곡물법에 관한 보고 : 알곡의 생산, 무역, 소비와 관련된 형편과 또한 이 분야의 모든 법을 연구할 전권을 받은 상원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보고」. 1814년 11월 23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Reports respecting grain, and the corn laws : viz : First and second reports from the Lords Committees, appointed to enquire into the state of the growth, commerce, and consumption of grain, and all laws relating thereto.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23 November, 1814). - 781.

「여왕폐하의 내무대신에게 제출한 공장감독관의 보고」(Reports of the inspectors of factories to Her Majesty's Principal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 779.

「왕국의 곡물법과 관련된 청원서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 증언록, 부록 첨부」, 1814년 7월 26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petitions relating to the corn laws of this Kingdom : together with minutes of evidence, and an appendix of accounts.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26, July 1814). - 781.

「은행법 특별위원회 보고, 위원회 회의록, 증언록, 부록, 색인 첨부」, 1857년 7월 30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n bank acts : together with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minutes of evidence, appendix and index.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30 July, 1857). - 18, 20, 406, 434, 498, 505, 508, 509, 511, 519, 521~527, 545, 546, 599, 609, 612, 613, 618, 629~631, 640, 641, 643, 645, 647, 648, 650~653, 659~669, 671~673, 682~685, 690~692, 695~698, 702, 704, 705, 708~713, 716, 717, 719~728, 950.

「은행법 특별위원회 보고, 위원회 회의록, 증언록, 부록, 색인 첨부」, 1858년 7월 1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Report from the select committee of the bank acts : together with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minutes of evidence, appendix and index.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1 July, 1858). - 18, 20, 435, 587, 599, 613~615, 617, 645~648, 703.

「탄광에서의 사고」, 1861년 5월 3일자 하원의 질문에 의해 제출된 보고, 1862년 2월 6일자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발표 (Coal mine accidents. Abstract of return to an address of the Honourable the House of Commons, dated 3 May 1861. Ordered by the House of Commons, to be printed, 6 February, 1862). - 111.

정기간행물

-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새 선문집」(Nuova antologia di scienze, lettere ed arti), 로마, 제2편, 제38권, 제7호, 1883년 4월 1일, - 29.
-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새 선문집」(Nuova antologia di scienze, lettere ed arti), 로마, 제3편, 제55권, 제3호, 1895년 2월 1일, - 1083, 1084.
- 「국민경제 및 통계 연지」(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예나, - 속편, 제11권, 1885년, - 21.
- 속편, 제20권, 1890년, - 31.
- 제3편, 제2권, 1891년, - 28, 29.
- 제3편, 제3권, 1892년, - 26, 27.
- 「뉴욕매일연단」(New-York Daily Tribune), 1859년 12월 20일 - 461.
- 「독일제국의 입법, 행정 및 국민경제 연지」(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m Deutschen Reich), 라이프찌히, 제5판, 제1분책, 1881년, - 23.
- 「독일제국의 입법, 행정 및 국민경제 슈올러 연지」- 「독일제국의 입법, 행정 및 국민경제 연지」를 보라.
- 「매일소식」(The Daily News), 런던, 1889년 12월 10일, - 438.
- 「매일소식」(The Daily News), 런던, 1892년 12월 15일, - 584, 585.
- 「맨체스터 가디언」(The Manchester Guardian), 1847년 11월 24일, - 491.
- 「사회개량」(La Riforma sociale), 투린 및 로마, 1895년 2월 25일, - 1085, 1086.
- 「사회입법 및 통계문헌집」(Archiv für soziale Gesetzgebung und Statistik), 베를린, 제7권, 1894년, - 1088.
- 「사회정치중앙신문」(Sozialpolitisches Centralblatt), 베를린, 1895년 2월 25일, - 48
1.
- 「신구대륙평론」(Revue des deux Mondes), 파리, 1848년, 새 총서, 제26권, - 1029, 1030.
- 「신구대륙평론」(Revue des deux Mondes), 파리, 제4편, 제31권, 1842년 - 1079.
- 「신시대」(Die Neue Zeit), 슈투트가르트, 1895~1896년, 제 I 권, 제1호, - 34.

- 「신시대」(Die Neue Zeit), 슈투트가르트, 제3호, 1887년. — 26.
 — 제3호, 4호, 1892~1893년 —
- 「샛별」(The Morning Star), 런던, 1865년 12월 14일. — 786.
- 「에딘버러 평론, 또는 평론잡지」(The Edinburgh Review, or Critical Journal), 제65권, 1831년 8월~12월. — 958.
- 「예술협회잡지」(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ts), 런던, 제7권, 1859년, 12월 9일. —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런던, 제2~5권, 1844~1847년. — 682.
 — 제 3권, 1845년 3월 15일. — 530.
 — 제 5권, 1847년 5월 22일. — 727~732.
 — 제 5권, 1847년 8월 21일. — 732~733.
 — 제 5권, 1847년 10월 23일. — 700.
 — 제 5권, 1847년 11월 20일. — 533.
 — 제 5권, 1847년 12월 11일. — 712.
 — 제 8권, 1850년 11월 30일. — 736.
 — 제 9권, 1851년 1월 11일. — 735.
 — 제 9권, 1851년 7월 19일. — 1055, 1057.
 — 제11권, 1853년 1월 22일. — 429.
- 「콘라드 연지」-「국민경제 및 통계 연지」를 보라.
- 「타임즈」(The Times), 런던. — 533.
- 「평론」(La Rassegna), 나폴리, 1895년, 제1호. — 1085.

문예작품

- 괴테, 『파우스트』. - 470.
몰리에르, 『동 주앙』. - 35.
발자크, 『농민』. - 53.
성서 - 736, 1086, 1087.
쉴러, 『보충』. - 998.
오비디우스, 『변태』. - 998.
푸블리우스 테렌티우스, 『안드로스의 처녀』. - 272.
하이네, 『논쟁』.
호라티우스, 『시집』. - 244.

내 용 색 인

7

가격 Preis

- 정의 — 215~218, 233, 272, 345, 369, 424, 425, 794, 805, 1001, 1002.
- 가격과 생산비 — 51.
- 독점가격 — 205, 932, 938, 939, 944, 947, 948, 952, 984, 989, 1018, 1044, 1050~1051.
- 그 변동을 제약하는 원인들 — 215~220, 229~235, 272~274, 276~279, 367~369, 373~376, 730~731.
- 원료가격의 변동이 이윤율에 주는 영향 — 131~136, 138~140, 145, 148~150.
- 농산물 가격 — 938, 980.

또한 시장가격, 생산가격을 보라.

가내공업 Hausindustrie — 963, 968, 972, 974, 986.

가변자본 variable Kapital

- 정의 — 45, 47, 144, 179~183, 198, 358, 657, 1018, 1024~1027, 1041, 1045~1046.
- 가변자본과 가치창조과정 — 42~45, 46, 47, 68, 69, 854, 856.
- 유동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가변자본 — 45, 46, 135.
-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 46~47, 55~56, 93, 141~144, 181~183,

208~209, 286, 299~300, 1046.

—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율 — 57, 141~144.

— 그 임금과 풀러나오기 — 141~144.

— 농업에서의 가변자본 — 792.

가설 Hypothese — 1022, 1088.

가치 Wert — 302, 960, 998, 999.

- 정의와 표현 — 40~41, 42~44, 56~66, 110, 174, 185~187, 191, 193, 202, 205~206, 209, 214~224, 227~228, 233, 239, 251, 314, 374, 453~454, 475, 791, 794, 797~800, 802, 820, 855, 932~934, 1000~1002, 1013, 1015, 1018~1019, 1022~1032, 1036~1042, 1046~1049, 1050~1051, 1057~1066, 1073, 1074, 1092~1094.

— 한해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 — 1019~1026.

— 가치에 의한 상품판매를 규정하는 조건들 — 213, 214~220, 227, 232~234, 236, 790, 791, 1089~1094, 1098, 1099.

— 가치와 평균이윤율 — 190, 1088~1102.

— 노동생산성의 변동에 따르는 그 크기의 변동 — 203, 204, 208~209, 231, 234, 247~248, 272~274.

276~279, 285, 307~308, 319, 368,
369, 799, 804, 805, 960, 1013,
1018, 1046.

— 공산주의하에서의 가치 — 820,
1039.

— 가치에 대한 부르조아 이론의 비판
— 21~25, 27~35, 58~59.

184~185, 205~206, 208~209,
231~232, 239, 918~919.

1000~1003, 1011, 1026~1032,
1039, 1046, 1051~1053.

1057~1060, 1063~1066,

1083~1084, 1085~1088, 1094.

— 거짓 사회적 가치 — 822.

또한 가치법칙, 교환가치, 시장가
치, 가격을 보라.

가치법칙 Wertgesetz — 23, 24, 190,

196, 211, 213, 215~219, 227, 233,

250, 374, 790~791, 802, 1031~1032,

1051, 1072~1073, 1086~1095.

감독과 관리의 노동 Arbeit der
Oberaufsicht und Leitung — 171,
458.

강제 Zwang — 591, 962.

개념 Begriff — 26, 178, 252, 324.

개인소비 individuelle Konsumtion —
소비를 보라.

개인적 소비품 individuelle
Konsumtion

— 생활필수품 — 106, 132, 141, 198,
218, 228, 244~245, 285, 286~287,

300, 308, 311, 745, 787~790, 801,

816, 962, 963, 1006, 1019, 1025,

1031, 1037, 1047, 1057.

— 사치품 — 132, 286, 380.

— 소비품 생산부류 — 1021~1023,
1034.

건설(일반적 명제) Aufbau — 940,
949~951, 957~958.

경쟁 Konkurrenz

— 일반적 명제들 — 25, 50~51, 58,
147, 171, 190, 211, 213, 224,

233~238, 250~253, 271~273, 278,

285, 305~308, 309, 316, 317~319,

368, 375, 376, 426~428, 434,

438~439, 531~532, 802, 855, 936,

937, 1012~1014, 1051~1052, 1054

~1055, 1065.

— 그 종류 — 219~220, 234~235, 250,
305~306, 368, 369, 1065.

—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 147~149,
287, 397, 604, 894, 961~962, 1065.

— 경쟁과 독점 — 147~149, 234~235,
237, 272, 288, 531~532, 605.

경제공황 ökonomische Krisen

— 일반적 특징 — 146, 272, 294,
301~303, 305~308, 311, 315, 320,

365~366, 432, 535, 544, 557~560,

578~579, 597~600, 603~610, 621,

633, 637~639, 653, 666, 680,

689~690, 702, 707, 714, 730~731,

732.

— 그 원인 — 301~313, 317~318, 320,
597~599, 609, 626.

— 개별적 사례 — 151, 153~154,
489~499, 502, 505, 509~514, 533.

599, 600, 601~604, 607~608, 619,
652~656, 664~666, 681, 688~691,
703, 707~709.

— 부르조아 이론의 비판 — 635~637,
688~690.

또한 과잉생산, 산업주기를 보라.

경제법칙 ökonomische Gesetze

— 적대적 구성체에서 그것이 실현되
는 성격 — 198~199, 296~297,
310, 421~422, 431~433, 435~436,
494~497, 533~534.

— 공산주의하에서의 경제법칙 — 310
~311, 1003~1004.

경제적 사회구성체 ökonomische Gesellschaftsformation — 또한 생산양 식을 보라

계급 Klassen — 19, 235, 747,
769~771, 893, 1077~1078.

고대 세계 Antike — 396~397, 739,
743, 768, 890, 963~964, 985, 1016.
또한 로마(고대)를 보라.

고리대자본 Wucherkapital

— 일반적 특징 — 52, 53, 260~262,
739~762, 779, 1016, 1092.
— 생산발전에서의 그 역할 — 740,
742~743, 758~759.
— 고리대자본을 반대하는 투쟁 — 47
0~471, 743, 746~747, 748~753,
775.

고정자본 fixes Kapital

— 정의 — 45~46, 187~188,
771~772.
— 유동자본과의 차이 — 45~46, 62,

96~97, 134~135, 601~602.

— 불변자본 구성부분으로서의 고정
자본 — 99~100, 103, 138,
140~141, 145~146, 189, 313~317,
1020.

— 그 마모 — 45~46, 103, 134, 135,
140~141, 145, 273~274, 317, 319,
412, 758, 958, 966.

— 고정자본과 생산비 — 45~46,
48~49, 59, 62, 313~316, 966.

— 그 재생산 — 99~101, 140~141,
306~308.

—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따르는 그 가
치변동 — 103, 135, 140~141,
313~314.

— 그 대부 — 412, 758.

— 농업의 고정자본 — 771~775, 950,
958.

— 고정자본과 생산물의 가치 — 134~
135, 313~316, 319, 346~347.

— 고정자본과 이윤율 — 187~189,
273~274, 313~317, 319~320,
346~347.

고정자본의 감가상각 Amortisation

des fixen Kapitals — 103, 135,
140~141, 145, 273~274, 289,
314~315, 319, 412, 723, 758, 966.

공급 Angebot — 수요와 공급을 보라.

공동체 Gemeinwesen, Gemeinde

— 일반적 특징 — 216, 768, 982, 1016,
1090.
— 여러 나라의 공동체 — 398~399,
894, 963~964, 968, 982, 983, 1069.

1094~1097.

공산주의 (경제적 사회구성체) Kommunismus

— 1003~1004

— 물질적 전제조건 — 112, 312, 318, 530~536, 755~756, 1003

— 생산력 — 310~311, 534, 1003~1004

— 생산관계 — 953, 1003

— 생산 — 129, 147, 149, 227, 310, 315, 318, 534, 637, 820, 1003, 1004, 1033~1035, 1038~1039, 1067.

— 분배 — 1004, 1033~1034

— 농촌경리 — 149~150, 820, 952~954

— 노동 — 106, 315, 1002~1004, 1033~1035, 1039, 1067.

— 소비 — 1033~1035, 1067.

— 공산주의하에서의 실제적 자유 — 1003~1004

공상적 사회주의 utopisher**Sozialismus** — 752~753, 756~757, 932**공장 Fabrik** — 기업(자본주의적)을 보라.**공장입법 Fabrikgesetzgebung**

— 112~115, 117~118, 134

공장제 수공업 Manufaktur

— 399~402, 1001

공조 Tribut

— 744, 968, 976~980, 989~990

과잉생산 Überproduktion

— 그 일반적 특징 — 303~313

— 절대적 과잉생산 — 303~305,

398~310,

— 상대적 과잉생산 — 146, 225, 309~310, 606, 833

— 과잉생산과 상대적 과잉인구 — 308~310.

— 과잉생산과 신용 — 535~536.

또한 산업주기, 경제공황을 보라.

과잉생산공황 Überproduktion-Krisen — 경제공황을 보라.**과잉인구 Übervölkerung** — 상대적 과잉인구를 보라.**과학 Wissenschaft** — 104, 126, 320, 374**관리자 Geschäftsführer** — 458~466, 535~536

— 관리자와 감독비 및 관리비 — 458~466, 535~536

광업 Bergbau — 78, 131, 145, 934, 949, 951, 1095, 1099**교통수단 Kommunikationsmittel**

— 92, 103, 252, 346~347, 371, 372, 492~493, 809, 894, 1097~1098

교환 Austausch

— 정의 — 340, 413~415

—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화되는 필수 조건으로서의 교환 — 216, 794, 1090~1094

— 교환과 화폐의 발생 — 379, 382~383, 1091~1094

— 상품생산자들 사이의 사회적 연계의 유일한 형태로서의 교환 — 226~227, 297, 713~714

- 상품의 가치에 의한 그 교환 — 213, 215~220, 227, 233~234, 236, 790, 1089~1095, 1098, 1099.
- 자본의 생산물로서의 상품교환 — 214, 215, 275~276, 1089.
-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 사이의 교환 — 656~658, 1021~1024.
- 교환가치 Tauschwert — 105, 221, 301, 319~320, 336~337, 636~637, 791~792, 803~805, 1001.
- 교환은행 Wechselbank — 379~383.
- 구체적 노동 Konkrete Arbeit — 43, 45, 46, 1009.
- 국가 Staat — 383, 459, 532~533, 894.
 -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의 잉여생산물의 점유자로서의 국가 — 395.
 - 국가와 농업관계 — 820, 968~969, 972~973.
- 국가신용 Staatskredit — 648.
- 국가유가증권 Staatswertpapiere — 483, 491~492, 556, 577, 580, 589~590, 619~621, 734~735, 988~989.
- 국제노동운동 Internationale Arbeiterbewegung — 14~16.
- 국제노동자협회 Internationale Arbeiterassoziation — 15.
- 국제당 Internationale partiei — 국제노동자협회를 보라.
- 국채 Staatsschulden — 472~474, 573~578, 579, 589, 590, 650, 651, 654, 655.
- 귀금속 Edelmetalle — 금(과 은)을 보라.
- 귀족 Aristokratie — 392, 533, 630, 676~677, 779, 282.
- 균형 — 지불균형, 무역균형을 보라.
- 극빈상태 — 228.
- 근동지방 — 1096, 1099.
- 금(과 은) Gold (und Silber)
 - 일반적 명제 — 307, 523~527, 550, 555, 704, 705, 710, 713, 819, 1052.
 - 화폐로서의 금(과 은) — 172~173, 379~384, 549~551, 559~560, 627, 685~686, 705~706, 712~713, 716, 736, 754, 997.
 - 금 채굴의 원천 — 620, 657, 703.
 - 그 유입과 유출 — 380~381, 549~553, 555, 557~560, 609, 618, 620, 637~639, 666, 686, 689, 695, 703~712, 713~715, 728~730, 735.
- 금리생활자 Rentier — 630, 1106.
- 기계 Maschine
 - 일반적 특징 — 101~103, 122~125, 130, 132.
 - 그 가치의 재생산 — 100~101, 130, 135, 140~141, 145, 319.
 - 그 도덕적 마모 — 103, 140, 141, 315~316.
 - 자본주의 조건하에서의 그 적용한계 — 140, 315~316, 319.
 - 그 상대적 과잉생산 — 146.
 - 기계와 노동의 집약화 — 140, 282.
 - 또한 고정자본의 감가상각을 보라.

기계제작 Maschinenfabrikation

— 104, 105, 125, 1105

기술 Technik — 92, 129~130, 140,

150, 180, 604, 607, 802

기업 (자본주의적) Textilindustrie

— 96~98, 101, 112, 183~184, 192,
266, 285, 290, 316, 354, 358,
360~361, 926~927, 1045

기업이익 Unternehmensgewinn

— 정의 — 290~291, 294, 446~451,
453~455, 465, 612, 631,
1004~1005, 1041— 기업이익과 이자 — 443~457, 464,
632~633, 997, 1004, 1005

— 기업이익과 관리비 — 458~466

— 자본가의 견해 — 454, 455,
457~459, 464

L

네덜란드 Holland — 380~381, 398,

750, 1095~1096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Hollän-
disch-Ostindische Kompanie.

— 368, 394

노동 Arbeit

— 일반적 명제 — 237, 455, 458~459,
460~463, 998~999, 1001~1003,
1006~1007, 1009, 1010, 1019,
1034~1035, 1072~1074, 1076,
1091

—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의 이중적

성격 — 42~43, 107~108, 1009,
1019, 1030— 가치의 주자로서의 노동 — 42~44,
56, 59, 60, 110, 185, 202, 203,
209, 221~222, 226~228, 203, 314,
454, 712, 794~795, 799, 855, 1013,
1019, 1036~1042, 1047~1049,
1057, 1091~1093— 자본주의하에서의 그 사회화 — 10
1~108, 115, 129~130, 320,
458~459, 460~464, 998, 1039,
1073~1074, 1076— 생산부문 사이의 그 분배 — 104,
213, 236~237, 790~791— 전 사회의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
56, 184~185, 214, 227, 786~787,
790~791, 1018~1019— 기능노동 — 177, 348~349,
359~360

— 일반노동 — 130

— 농업노동과 공업노동 — 786, 790,
1001— 상업노동 — 348~349, 351, 352,
354~359, 361— 공산주의하에서의 노동 — 106,
315, 1002~1004, 1033~1035, 1039,
1067또한 임금노동, 노동생산성, 노동
력,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를
보라.노동강도 Arbeitsintensität — 100,
140, 238, 265~266, 281~282

노동계급 Arbeiterklasse

- 그 발생과 존재조건 — 40~41, 54, 59, 101~121, 215, 219, 228, 237, 239, 249, 264~266, 301~302, 303, 307~308, 317, 351, 359~360, 399~400, 455, 598, 758, 787, 789~790, 800, 949~950, 1005, 1007~1008, 1072, 1077.
- 공산주의에서의 그 재생산 — 228, 300, 301, 790, 968.
- 그 소득 — 540, 1005, 1006, 1010, 1017, 1024~1027, 1031~1032, 1041, 1042, 1047~1048, 1051, 1057, 1061, 1069, 1070, 1077.
- 노동계급과 경제공황 — 597~598, 또한 임금, 임금노동, 잉여가치, 농업노동자,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를 보라.

노동계급의 빈궁화 Verelendung der Arbeiterklasse — 111~121,

- 160~169, 228, 359~360, 745~746, 770, 780~783.
- 또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상대적 과잉인구,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를 보라.

노동력 Arbeitskraft

-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 22~23, 59, 421, 456, 633~634, 1005~1006, 1024~1025, 1072.
- 그 가치(가격) — 22~23, 42~44, 50, 59, 106, 141, 198, 247, 351, 359, 426, 456, 465, 530, 575~576, 633~634, 912, 1006~1007,

1018~1019, 1048, 1058~1061,

- 그 사용가치 — 42~45, 359, 421, 456, 461, 468.
- 그 재생산 — 132, 141, 228, 260~261, 299, 300, 301, 789, 1005.
-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의 발전 — 264~266, 268~270, 283, 286, 298~303, 307~310, 317, 359~360.

노동생산력 Produktivkraft der Arbeit — 노동생산성을 보라.

노동생산성 Arbeitsproduktivität

- 일반적 명제 — 66~67, 73~76, 91~92, 100, 102~104, 107, 108, 134~135, 144, 200~201, 238~239, 247, 261~262, 268~270, 299~303, 313~314, 318~320, 476, 594~595, 799~800, 917, 962~963, 1003.
- 그 변동이 상품의 가치(가격)에 주는 영향 — 203, 204, 209~210, 230~231, 234, 247~248, 257~259, 272~274, 276~279, 285, 308~309, 314~316, 317~319, 368, 369, 797, 804, 805, 960, 1013, 1018, 1046, 1073.
- 그 변동이 임금과 이윤에 주는 영향 — 66~67, 260~264, 266~267, 277~279, 286, 290, 298~302, 311~314, 316~320, 789~790, 1036~1037, 1044~1045.
- 노동의 생산성과 자본의 가치감소 — 285, 296~297, 298, 299~302, 304~306, 308, 475~476.
- 그 수준을 규정하는 조건 — 67,

78, 153~155, 281~283, 296~297,
313~315, 801~802, 855, 934~935,
1001.

— 자본축적의 요인으로서의 노동생
산성 — 105~106, 257~259,
264~266, 299~302, 312~313,
319~320, 475~476.

— 노동생산성과 자연력 — 313,
797~804, 917~918, 942~943,
962~963, 970.

— 그 제고의 방도 — 314~315, 1073.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의의 — 23
8~239, 316~318, 1003.

—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
— 315, 1003~1004.

노동수단 Arbeitsmittel — 46, 49, 55,
60, 309, 1009.

노동수단의 도덕적 마모 moralis-
scher Verschleiß des
Arbeitsmittels — 103, 140, 141,
315~316.

노동운동 Arbeiterbewegung — 노동
자들의 계급투쟁, 국제노동운동을 보
라.

노동의 착취도 Exploitationsgrad der
Arbeit — 잉여가치율,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를 보라.

노동일 Arbeitstag

— 그 구성부분 — 1018~1019.

— 그 한계 — 1048~1049.

— 그 길이와 이윤율 — 67~68, 84,
99, 297~298.

— 노동일과 노동의 착취 — 238,

261~262, 265~267, 281~283.

— 노동자들의 노동일 단축투쟁 — 13
4, 160, 1014

— 공산주의에서의 노동일 — 1004.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Klassenkampf
der Arbeiter — 20, 238.

— 노동일 감소를 위한 노동자들의 계
급투쟁 — 134, 160, 1011~1012.

— 노동자들의 계급투쟁과 임금 — 16
0~161, 949~950.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노동조건에서
의 절약 ökonomie Sparsamkeit
— 59, 105, 109~110, 111~112, 207.

노동자예비군 Reservearmee — 상대
적 과잉인구를 보라.

노예제도 Sklaverei

— 일반적 명제 — 43, 216, 389,
395~397, 459~461, 576, 740,
741~743, 745, 777~778, 789, 982,
987~988, 1003.

— 생산관계 — 390, 952, 968~969,
1016, 1073.

농노제도 Leibeigenschaft

— 그 일반적 명제를 — 216, 389, 768,
789~790, 967~968, 971, 1016,
1073, 1090, 1095.

— 잉여노동형태의 특성 — 965~980,
1016.

또한 봉건제도를 보라.

농민, 농민계급 Bauer, Bauern-
stand — 261, 401, 740~742,
745~747, 839, 894, 974, 978~993,
1022, 1066, 1067, 1089~1093, 1094.

농업 Agrikultur

- 그 일반적 명제 - 76, 78, 126~129, 141, 144, 145, 149, 317, 765, 766, 768, 773, 787~788, 792, 807~810, 815, 817~818, 829~833, 838, 842, 882, 942~943, 947~948
- 자본주의 이전의 농업 - 237, 787, 837, 963~964, 985~987,
- 자본주의적 농업 - 74, 141, 282, 317, 765, 766, 768~770, 775~776, 792, 805, 808, 828~830, 832~833, 838~839, 857, 934~935, 938~942, 946~948, 950, 957~958, 987~988, 1102
- 자본주의적 농업의 모순 - 149, 772, 991~993,
또한 농촌경리를 보라,

농업노동자 Agrikulturarbeiter - 770, 787~788, 977~978,

- 그의 임금 - 780~786, 930,

농촌 Landgemeinde

- 농촌과 도시 - 808~809, 979, 1077,

농촌경리 Landbau

- 일반적 명제 - 76~78, 547, 593, 770, 783~786, 831~832, 963~964, 980~981, 984, 1075, 1106
- 자본주의적 농촌경리 - 763, 770, 838~839, 942~943, 976~981, 1075~1076,
- 공산주의하에서의 농촌경리 - 149, 820, 952~953,
또한 농업을 보라,

농화학 - 809, 945,

ㄷ

단순재생산 einfache Reproduktion

- 재생산을 보라,

대공업 große Industrie - 76~78,

- 97~98, 101~102, 109, 284, 308~402, 441, 958, 986, 1101~1102,

대부 Leih

- 정의 - 411~412, 413, 415~417, 519,
- 그 형태 - 408, 409, 412, 418~420, 482~483, 488, 519, 520, 552~557, 591~592, 612, 614~615, 627~628, 643, 655~666, 657~658, 668~669, 718, 752, 758,
또한 대부자본을 보라,

대부이자 Leihzins

- 정의 - 261, 406, 409, 411, 412, 414, 420, 423, 425~429, 435~436, 443, 446~453, 456, 457, 468, 515, 741,
- 그 운동 - 426, 429~431, 439, 630~632, 731~732, 776~777,
- 그 역사 - 261, 440, 450, 741, 744~745, 990,
- 그 몰신승배 - 448, 457~458, 468,
- 대부이자에 대한 부르조아적 정의의 비판 - 427, 433~436, 450, 451, 453, 454, 775,
또한 이자율을 보라,

대부자본 Leihkapital

— 정의 — 290, 409, 411, 424, 427, 438, 439, 450, 590~592, 614, 617, 629, 746~747.

— 본질 — 412~428, 433, 445, 454, 456~457, 466~470, 747, 749~750, 755~756.

— 그 일반적인 공식 — 408~409.

— 그 원천 — 482~484, 620~622.

— 그 운동 — 408~409, 411, 412, 416~420, 470, 612, 615~619.

— 대부자본과 실재자본 — 589~593, 594~596, 604, 610~612, 617, 620~621, 623, 639~640, 728~729, 730.

— 대부자본과 유통수단 — 616~619, 643.

— 그 역사 — 450, 481~483, 741.

— 그 물질승배 — 424, 467~476.

— 대부자본에 대한 부르조아적 정의의 비판 — 413~416, 425, 444, 450, 452, 471~476, 573~574, 757~758, 759.

또한 신용, 고리대자본, 대부를 보라.

대부자본의 축적 *Akkumulation des zinstragendes Kapital.*

— 일반적 특징 — 501~527, 589~591, 603~604, 615~616, 619~623, 626.

— 원천 — 620~622, 623~626.

— 대부자본의 축적과 실재자본의 축적 — 589~591, 599~601, 603~604, 611~612, 620~621, 623~625.

대외무역 *Außenhandel* — 286~290, 389, 638, 708~709, 820, 1008~1009.
또한 세계무역을 보라.

대토지소유자 *Großgrundbesitz*

— 일반적 특징 — 766~768, 769~774, 777~780, 793, 802~803, 820, 867~868, 894~895, 896, 925, 931, 937, 949~952, 998, 1004~1006, 1009, 1014, 1075.

— 대토지소유자와 농장주 — 771, 772, 774~775, 778, 836, 839, 895, 907, 922, 925~927, 929~930, 977~980.

—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에서의 그 역할 — 772, 774~776, 803, 1004.

도시 *Stadt*

— 도시와 농촌 — 808~809, 979, 1077.

— 도시와 상업 — 392, 395, 397.

독점 *Monopol* — 216~217, 237, 1050~1051.

— 공업에서의 독점 — 147~148, 234~235, 237, 239, 272, 288, 367, 368, 375, 531~532, 605.

— 토지소유의 독점 — 768, 770, 778~779, 788~789, 793, 803, 924, 927, 932, 937~938, 949, 961, 1050, 1051.

또한 카르텔, 트러스트를 보라.

독점지대 — 1017~1018.

독일 *Deutschlant* — 106, 148, 154, 400, 546, 985, 1091, 1104~1106.

동업조합제도 Zünfwesen — 216,
399, 401, 979, 1016, 1090, 1094~1096
동인도회사 Ostindische
Kompanie — 669, 719, 723, 750.

ㄱ

러시아 Rußland — 19, 157, 399, 648,
894, 1093.
— 러시아와 자본주의의 발전 — 399.
로마(고대) Rom — 397, 512,
739~741, 743, 745, 746, 963~964,
976.
루마니아 Rumänien — 982.

ㄴ

마르크(독일의 공동체) Mark — 768,
1095~1096.
맬더스 주의 Malthusianismus — 473,
831.
모순 Widerspruch

-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 —
147~148, 294, 297, 301~302, 303,
310~311, 316~318, 320, 534~535,
1076.
-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회적
형태 사이의 모순 — 311, 318, 320,
425~426, 534, 714~715, 998,
1002~1003.
-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 — 225~2
27, 296~297, 309~312, 596~597,
598.

— 토지의 사적 소유와 합리적 농업
사이의 모순 — 149~150, 772,
991~993.

물신숭배 Fetischismus

- 상품의 물신숭배 — 637, 756, 1011,
1073.
- 자본의 물신숭배 — 59~60, 63,
318, 456~458, 468~469, 997, 998,
1008~1009, 1072.
- 이자를 낳는 자본의 물신숭배 — 42
4, 457~458, 467~477.

미국 Amerika

- 일반적 특징 — 92, 98, 136,
157~159, 461.
- 산업 — 147, 532.
- 농촌경리와 농업관계 — 771, 782,
829~832, 945, 983.
- 화폐제도와 상업 — 608~609, 704,
725~727, 1098, 1105.

ㄷ

바빌론 Babylonien — 1094.
반영 Abbilder — 26.
발명 Erfindungen — 92, 129~130,
140, 230, 283, 287, 316, 801.
배당금 Dividende — 290, 317, 531,
734~735, 1004.
버밍검 학파 Birmingham-man
— 667, 696.
법 Recht — 364, 463, 590, 768.
법칙(철학 범주로서의) Gesetze — 2
83, 283, 289.

베니스 Venidig — 382, 393.

변증법 Dialektik

- 모순 — 147~149, 229~230, 268~270, 294, 297, 301~303, 309~312, 316~318, 320, 532~536, 713~715, 956, 991~992, 998, 1000~1003, 1072, 1075~1076.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 40, 301~303, 1013, 1024~1025.
- 양의 질로의 이행 — 205, 313, 435~437, 445~453.
- 부정의 부정 — 534, 535.
- 가능성과 현실성 — 969~970.
- 필연성과 우연성 — 226~227, 1012, 1013.
- 원인과 결과 — 173~174, 213, 265~266, 287, 298~299, 512, 633~634, 999, 1002, 1059, 1062.
- 내용과 형식 — 40, 57~61, 109, 239, 251, 407, 970~972, 1000~1001, 1008, 1009, 1014~1015, 1037~1038.
- 본질과 현상 — 43~44, 57, 58, 107~108, 204~206, 209, 229~230, 251, 272, 273, 277~279, 374, 434~435, 575~576, 605~606, 828~829, 855, 954~955, 1000~1001, 1011~1015, 1034~1035, 1057~1058, 1060~1061, 1093~1094.

보조자재 Hilfsstoffe — 105, 128, 132~135, 138, 144~145, 266, 273, 301, 314, 934~935, 1019, 1092~1093.

보험기금 — 1003, 1033, 1034, 1035, 1036, 1067, 1074, 1075.

보험업 Assekuranzwesen — 252~253.

보험회사 Versicherungsgesellschaft — 1033~1034.

보호무역주의 Protektionssystem — 133, 148, 532, 605, 780, 962.

복본위제 Bimetallismus — 23, 383.

봉건제도 Feudalismus

- 일반적 특징 — 216, 300, 305~306, 399, 743~746, 765, 768, 789, 961, 966~968, 977~978, 979~980, 982~983, 1067, 1090~1091, 1094~1095.
 - 생산관계 — 390, 967~974, 1016, 1073.
 - 도시와 농촌 사이의 관계 — 979~980.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로의 이행 — 397~402, 961~962, 974~985, 1098~1103.
- 또한 농노제도를 보라.

부(사회적) Reichtum

- 자본주의하에서의 그 적대적 성격 — 425, 534, 713~715, 1015.
- 부와 노동생산성 — 855~856, 1003.

부기계산 Buchführung — 347, 379, 1039.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

bürgerliche Klassische politische Ökonomie

- 일반적 특징 — 294, 388~389.

955~956, 960~962, 1015,

1021~1022, 1026~1027,

— A. 스미드 이론의 평가와 비판 — 1

77, 231, 239, 272, 288, 388~389,

393, 395~397, 458~459, 765~766,

925, 943~944, 949, 964, 1011,

1021, 1026~1028, 1031~1032,

— D. 리카아도 이론의 평가와 비판

— 60, 83, 133, 141, 218, 222~223,

239, 244~245, 288, 293~296,

300~302, 312~313, 388~389,

679~680, 931~932, 948,

1026~1027, 1042,

— 부르조아 고전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속류 정치경제학으로의 이행 —

963, 1026, 1028~1029,

부르조아 속류 정치경제학

bürgerliche vulgarpolitische
Ökonomie

— 일반적 특징 — 47, 239, 278~279,

451~452, 463, 469, 576, 960~964,

965~967, 970~971, 1015~1016,

1030~1031,

— 그 개별적 명제와 이론의 비판 — 2

0~24, 28~35, 51~54, 207,

230~232, 239, 297~299, 310,

335~337, 368, 387~388, 465, 469,

506~515, 521~527, 544~553,

575~576, 626, 687~689, 741, 775,

962~964, 979~980, 1008,

1026~1027, 1028~1031, 1042,

1057, 1083~1089, 1094~1095,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에서의 은행학

파 — 537~560, 682,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에서의 화폐학

파 — 505~508, 542, 550, 551,

680~682, 684~690, 700~702,

부르조아 Bürgerliche — 자본가들 보
라,

부역 Zwangsar- beit — 966~974,

부역지대 Arbeits- rente — 966~972,

981~982,

부채 Schuld — 582~583,

분배 Verteilung — 1069~1071,

1075~1076,

— 분배방식을 규정하는 조건들 — 29

6~297, 311, 1006, 1070~1076,

— 잉여가치의 분배 — 57~58, 276,

959, 1004~1006, 1020, 1031~1032,

—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분배 — 1004,

1033~1035, 1067~1070,

분업 Arbeitsteilung

— 사회적 분업 — 104, 226, 320~324,

328~329, 332, 337, 349~351,

355~356, 378~379, 387, 397, 790,

793, 800~801, 1078,

— 농업과 공업 사이의 분업 — 397~3

98, 787~788, 790, 793, 809,

963~964,

— 상업에서의 분업 — 353~354, 356,

358~360, 378~379,

분익소작제 Metärievertrag — 831,

불변자본 fixes Kapital

— 정의 — 60, 107~108, 138~139,

180~182, 314,

— 가변자본과의 차이 — 42~43,

44~45, 46, 68

— 불변자본과 가치창조과정 — 42~4

3, 44, 45~46, 55~56, 68, 99,

102~103, 191, 257~259,

1019~1021, 1041, 1046,

—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의 그 분

할 — 99~100, 132, 134, 138, 140,

145~146, 189, 262~263, 313~314,

948, 1020,

— 불변자본과 이윤율 — 77~79, 285,

308~309,

— 그 재생산 — 366, 593~594,

1022~1023, 1027, 1031, 1034, 1036,

— 그 율매입과 풀려나오기 — 144.

불상사(생산에서의) Unfälle —

111~122,

불합리한 것과 합리적인 것

Rationalismus und Irrational-

ismus — 120, 776, 805, 956~957,

1000~1002, 1007, 1015, 1057,

1060~1061,

빈민구제법 Armengesetz — 781.

人

사용가치 Gebrauchswert —

— 정의 — 221, 224, 226, 264~265,

319~320, 336~337, 421~422, 606,

790~792, 804~805, 1000, 1001,

1016,

—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서의 사용

가치 — 300~301, 319~320,

336~337, 804~806,

—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의 사용

가치 — 406~413, 420~422, 425,

468,

— 사용가치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 236, 714,

사회 Gesellschaft — 303,

— 그 경제구조와 정치구조 — 743,

747, 969, 1002,

— 경제적 사회구성체 — 952~953,

999,

또는 생산양식을 보라.

사회적 분업 — 분업을 보라.

사회적 자본(일반적 특징) gesellschaftliche

Kapital — 196~197,

202~204, 267~268, 309, 323, 336,

341, 657, 1017, 1021~1022, 1071,

사회적(한 해) 생산물 gesellschaftliche

Produkt — 196~199,

1005~1006, 1017,

— 가치에 의한 그 구분 — 1019~1021,

1022~1026,

— 현물형태에 의한 그 구분 — 1022,

1023, 1025~1026, 1034,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gesellschaftlich

notwendige Arbeitszeit — 110,

174, 221~222, 226~227, 234,

303~305, 318, 347, 790~791, 794,

798, 802, 1038, 1074, 1091~1093,

사회주의 Sozialismus — 공산주의를

보라.

사회주의 혁명 sozialistische

Revolution — 318, 953

산업자본 industrieller Kapital.

- 일반적 특징 — 344~345, 347~349, 351~361, 364, 388~389, 621.
- 그 발생 — 1099~1102
- 그 형태 — 323~331, 335~337, 346, 360, 365, 367, 368, 387, 393, 409~412, 510, 573, 606~607, 617~619, 621~624
- 그 회전 — 333~334, 363, 364, 366, 370, 374, 375.

산업주기 industrieller Zyklus

- 일반적 특징 — 147, 153~158, 307~308, 370, 431~432, 542~547, 597~600, 603~612, 619, 621~622, 626, 631~633, 635~637, 652~655, 704, 708~710, 713~714, 728~732, 1016, 1059.

또는 과잉생산, 경제공황을 보라.

상대적 과잉인구 relative Über-

- rvölkerung — 265, 268~269, 270, 286, 297, 301~304, 307~309, 317, 319, 782

상대적 잉여가치 Relative Mehr-

- rwert — 100, 265, 281~283, 289, 301, 319, 1012, 1073.

상부구조 Überbau — 토대와 상부 구조를 보라.

상품 Ware

- 일반적 명제 — 215~216, 221, 227, 232~233, 390, 394, 408~410, 420~422, 745, 1011, 1041, 1071~1073.
- 그 이중적 성격 — 221, 224, 233,

- 336~337, 421, 790~793, 804~805,
-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화되는 조건 — 216, 300, 391, 394, 397, 401, 792~794, 1071~1072, 1090~1094,
- 자본의 산물로서의 상품 — 213~214, 215, 235, 275~276, 506~507, 539~541, 1037~1038, 1072, 1073, 1089.

상품생산 Warenproduktion

- 단순 상품생산 — 214~216, 315, 746, 1091~1094, 1096,
-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 220, 371~372, 792~793, 1071~1074, 1093~1094, 1102,
- 봉건제도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에서의 그 역할 — 397~402, 977~980, 1099~1103.

상품유통 Warenzirkulation

- 단순 상품유통 — 213~216, 235, 327, 329, 378, 389~394, 541~542, 1091~1093,
- 자본주의적 상품유통 — 235, 372, 383, 387, 393, 409~411,
- 상품유통과 화폐유통 — 383, 389, 392~393, 395, 410.

상품 — 상업자본 — 상업(상인)자본을 보라.

상품자본 Warenkapital

- 정의 — 139, 323~325, 326~327, 330, 409~410, 573, 606~607, 610, 1041,
- 그 유통 — 323~330, 332, 339, 358,
- 상품자본과 상업자본 — 323~328,

331.

상업 Handel

- 정의 — 390, 392, 401~402, 594~595,
- 중개상업 — 393~395,
- 도매상업 — 346~348, 365, 533, 540~541, 647, 652, 669, 748, 1098~1099,
- 소매상업 — 365, 372, 383, 538~541, 542~543, 1098~1099,
- 화폐거래 — 380~385,
- 상업과 생산발전 — 390, 395~399, 401~402,
- 상업과 지리적 대발견 — 397~398, 또한 대외무역을 보라,

상업가격 Handelskosten — 345~346, 368~369, 372~373, 374,

상업균형 Handelsbilanz — 607~608, 638, 706~707, 734~735, 962,

상업신용 Handelskredit

- 일반적 특징 — 482~483, 502~507, 598, 604, 611, 612, 617~618, 624, 631~632, 639, 643, 729,
- 그 도구 — 592~596,
- 그 한계 — 594,
-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에서의 그 역할 — 594~599, 603~625,

상업이윤 Handelsgewinn

- 정의 — 340, 343~346, 367, 370~373, 375~376, 467,
- 그 원천 — 339~343, 351~352,
- 상업이윤과 산업이윤 — 343~346, 349~350...

— 상인의 소득원천으로서의 상업이윤 — 348~350,

— 상업이윤과 임금 — 348~352, 359,

상업(상인)자본 Handelskapital

- 정의 — 250~251, 272, 323~327, 330~332, 335~337, 345~346, 357~358, 378~379, 384~385, 391~395, 739,
- 그 기능 — 325~340, 352~353, 356~357, 360, 378, 387, 389~391, 394, 401~402, 408, 467,
- 그 회전 — 322~334, 344~345, 363~367, 370~376,
- 상업자본과 산업자본 — 323~337, 344~345, 349, 351~352, 354, 357~358, 371,
- 상업자본과 유통비 — 323~324, 340~342, 345~349, 350~351, 353~361, 367,
- 그 이윤 — 340, 342~346, 348~350, 351~352, 355~359, 370~373, 375, 394,
- 재생산과정에서의 그 역할 — 34, 331~332, 336~337, 349~365, 1100~1103,
- 그 집적과 집중 — 353~354, 356,
- 그 보상 — 355~357,
- 상업자본과 신용 — 596~598,
- 그 역사 — 345, 346, 369, 372, 389, 391~402, 739, 744, 745, 748~750, 757~758, 759~760, 1094~1099,
- 상업자본에 대한 부르주아적 정의의 비판 — 336, 387~389,

또한 화폐 — 상업자본을 보라.
상인자본 Kaufmannskapital — 상업
자본을 보라.

상인조합 Kaufmannsgewerksch-
aft — 1095~1096.

생산 Produktion

- 일반적 명제 — 55~59, 129, 202,
234, 311~313, 388, 392~393, 531,
789~790, 1002~1004, 1013, 1016,
1069~1070.
 -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 — 355~356,
366, 593~594, 656~658, 1021
~1022, 1023~1024, 1069 ~1070.
- 또한 재생산을 보라.

생산가격 Produktionspreis

- 정의 — 193~195, 196~198,
200~203, 211~212, 217~219,
235~237, 239, 241, 248, 250, 344,
797~798, 810, 924, 927~928, 935,
936, 1013, 1038~1039, 1049, 1050,
1061, 1074~1075.
-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2
03, 218, 241~253, 798~799, 1058.
- 생산가격과 상품가치 — 196~197,
198, 200~202, 211~212, 216, 218,
219, 236, 239, 248~251, 797~798,
932~938, 1049.
- 생산가격과 시장가격 — 217~219,
239, 251, 426, 439, 797, 929~930,
939~940, 1059~1060, 1063~1064.
- 생산가격과 상업이윤 — 367~368.
-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견해 — 23
9.

또한 가치법칙을 보라.

생산과 소비의 폐물 Abfälle der
Produktion und Konsumtion

- 그 이용 — 102, 126~129, 146~147.
- 생산관계 Produktionsverhältnisse
- 일반적 특징 — 968~969, 1002,
1070~1071, 1074~1075.
 - 그 역사적 성격 — 952, 1070,
1075~1076.
 - 생산력 성격에서 생산관계의 적응
의 법칙 — 969, 1003, 1075, 1076.
 -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모순 — 14
7~149, 294, 296~297, 301~302,
303, 1075~1076.
 - 착취자적 생산양식의 생산관계 — 4
60~462, 967~972, 1015~1016.
 - 노예사회의 생산관계 — 390,
952~953, 968~969, 1016, 1073.
 - 봉건제도의 생산관계 — 390,
967~974, 1016, 1073.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 55, 59,
62~63, 107~108, 147~149, 235,
296~297, 318, 320, 425~427, 453,
455, 457, 461~462, 466, 468, 477,
740, 765~766, 991~992, 997~998,
1002, 1011, 1062, 1070~1074, 1077.
 - 공산주의 사회의 생산관계 — 952~
953, 1003.
 - 그 재생산 — 968, 971~972, 1002,
1024~1026, 1062, 1071.
 - 생산관계와 분배관계 — 1069~1076,
또한 소유를 보라.
- 생산기간 Produktionszeit — 91~92,

333, 364, 1012.

생산력 Produktionskraft — 59, 109, 281, 294, 299, 301~302, 303, 310~312, 317, 320, 534~536, 1003~1004, 1012, 1072, 1073, 1075~1076.

생산물지대 Produktenrente — 789, 965~966, 971~976, 981~982.

생산비 Produktionskosten

— 정의 — 40~47, 50~52, 56, 58, 62, 189~190, 195~196, 200~202, 208~209, 1060~1061.

— 그 구성부분 — 40~46, 59, 62.

— 그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42~44, 45~47, 61, 190, 798~799, 801~802.

— 생산비와 상품가격 — 50~51.

— 부르조아 이론의 비판 — 53~54.

생산수단 Produktionsmittel

— 일반적 특징 — 54, 101, 105, 107~108, 302~303, 306~307, 308~309, 311, 534~535, 758, 837~838, 997~998, 1008~1011, 1037, 1074.

— 불변자본 또는 고정자본의 물질적 형태로서의 생산수단 — 44~45, 99, 103, 108, 285, 1041~1042.

— 생산수단과 가치창조과정 — 42~46, 49, 60~61.

— 생산수단 생산의 부류 — 1021~1023.

생산양식 Produktionsweise — 389, 397, 461~462, 534~536, 775,

963~964, 968, 971~972, 999, 1002, 1004, 1070, 1073, 1075~1076.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공산주의, 경제적 사회구성체, 원시사회, 노예제도, 봉건제도를 보라.

생산의 집적 Akkumulation der Produktion — 101, 115~116, 293, 320, 530, 958, 1071~1077.

— 노동자의 집적 — 105, 265~266, 530.

생산자본 produktive Kapital — 340, 352, 364, 387.

생산적 노동 produktive Arbeit — 358~359, 459.

생산조건에서의 절약 Ersparnis an den Produktionsbedingungen — 59, 78, 99~110, 122~130, 253, 447, 838, 854~856, 1047.

세계무역 Welthandel — 92, 133, 215, 379~380.

또한 대외무역을 보라.

세계시장 Weltmarkt — 380, 382~384, — 그 형성 — 320, 397~398, 604~605, 830~831.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로서의 세계시장 — 136, 302~303, 440, 619~620, 1016.

—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 147~149, 287, 397, 604~605, 894, 961~962, 1065~1066.

— 세계시장에서의 패권쟁탈전 — 401~402, 604~605, 또한 세계무역을 보라.

소득 Einkommen

- 일반적 명제 — 137~138, 235, 541~542, 621~622, 999, 1005~1008, 1015~1027, 1029~1036, 1041, 1047, 1052, 1057~1058, 1069.
- 총소득 — 1025~1027
- 순소득(국민소득) — 1025~1027.
- 개별적 노동자와 노동계급의 소득 — 540~541, 622, 1005~1006, 1010, 1018, 1024~1027, 1031, 1041, 1042, 1046~1047, 1050~1051, 1057, 1061, 1069, 1070, 1075~1076.
- 개별적 자본가와 자본가계급의 소득 — 297~298, 366, 541~542, 591, 621~622, 1005~1006, 1008, 1025~1026, 1041, 1069, 1074, 1077.
- 토지소유자의 소득 — 622, 1005~1006, 1025~1026, 1041, 1069, 1077.
- 비생산적 계급의 소득 — 607.
- 축적фон드와 소비фон드 — 235, 238, 621, 1019~1020, 1033~1034.
- 소득에 대한 부르조아적 정의의 비판 — 997~999, 1026~1028, 1031~1032, 1042.

소부르조아 사회주의

- Kleinbürgerlicher Sozialismus — 756.

소비 Konsumtion

- 일반적 명제 — 234, 295~296, 309~312, 364~366, 541~542, 593~594, 596~597, 714, 816.

- 자본주의하에서의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 — 226~227, 297, 309~312, 596~598.
- 생산적 소비 — 129, 227~229, 364, 365, 421, 1021~1023, 1034~1036, 1067, 1069.
- 개인적(사적) 소비 — 227~228, 364~366, 816, 1021~1022, 1034~1036, 1069.
- 노동자와 노동계급의 소비 — 28, 298, 1047.
- 비생산적 계급의 소비 — 607, 621~622.
-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에서의 소비 — 1016, 1069~1070.
- 공산주의하에서의 소비 — 1034~1035, 1067.

- 소생산자, 소생산 Kleinproduzenten, Kleinproduktion — 216, 220, 389, 399~401, 740~742, 744~747, 765~766, 768, 779, 789~790, 838, 855, 953~954, 967, 968, 972~975, 985~987, 989~991, 1089~1091, 1101~1102.

소유 Eigentum

- 사적 소유 — 320, 530, 754~756, 999.
- 공산주의에서의 소유 — 953. 또한 토지소유를 보라.

- 소외 Entfremdung (사회경제적 의미) — 107~108, 318, 457~458, 531, 742, 1000~1001, 1008, 1015.

소토지소유 Kleines Grundeigentum

— 또한 영세농민경리를 보라.

속류 사회주의 Vulgarsozialismus — 22, 465.

수공업적 생산 die handwerkliche Produktion — 216, 399~402, 986~987, 1090~1093, 1094.

수요와 공급 Nachfrage und Angebot

— 일반적 명제 — 217, 220~221, 224~236, 310, 1051, 1085.

— 수요와 공급 및 시장가치(시장가격) — 216~233, 368, 426, 439, 685, 923.

—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와 공급 — 227~231.

—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에 대한 수요와 공급 — 227~228.

— 대부자본의 수요와 공급 — 438, 508~519, 526~527, 633~636, 655~656, 689~690, 709~710.

— 수요와 공급 및 사회의 총소득의 분배 — 235.

— 수요와 공급 및 상품자본 — 633~636.

수입 Revenue — 대외무역을 보라.

수출 Export — 대외무역을 보라.

수탈 Expropriation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발점이며 목적으로서의 직접적 생산자들의 수탈 — 265~266, 293, 298~299, 302~303, 534, 741~742, 759~760, 766~768, 779~780, 808, 962, 976~977, 1005, 1071.

— 수탈과 주식회사 — 534.

스위스 Schweiz — 985.

스코틀랜드 Schottland — 154, 488, 546, 649, 650, 695, 699.

스페인 Spanien — 1096, 1098.

시장 Markt(일반적 명제) — 134, 297, 310, 323~324, 402, 531, 594~595, 792~793, 833, 1102.

시장가격 Marktpreis — 218~225, 229~231, 233, 235, 239, 251, 368, 426, 439, 685, 798~800, 819, 923, 959~960, 1059~1060, 1062~1064.

시장가치 Marktwert — 216~233, 235, 239, 820, 998, 1007.

식민주의자들 Kolonisten — 789, 832~833, 855.

식민제도 Kolonialsystem — 287~288, 394, 397, 398, 723~724, 725, 734~735, 808, 830, 837, 930~932, 945~946, 974~975, 985, 1098~1099, 1106.

신용 Kredit

— 일반적 명제들 — 303~304, 307~308, 320, 334, 433, 442, 479, 481~483, 529, 533, 535~536, 542~544, 605~607, 614~616, 641, 657~658, 672~673, 714, 747~748, 755, 756, 854, 1075.

—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그 역할 — 529~536, 592, 596~598, 605, 606, 617~618, 620~621, 643, 656~657.

—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은행업자들의 견해 — 480~482, 501~527.

609, 612~616, 628~632, 633~636,
639~641, 646~655, 657~677.
신용은행제도 Kreditsystem — 237,
303~304, 365, 482~483, 535, 550,
676~677, 711, 737, 754~756.
신용조합 Kreditassoziationen — 748
신용화폐 Kreditgeld — 479, 483~484,
517~518, 539~540, 541, 636~638,
665, 751, 755~756.
또는 은행권과 어음을 보라.
실업 Arbeitslosigkeit — 상대적 과잉
인구를 보라.
실천 Praxis — 이론과 실천을 보라.
10분의 1세 Zehnten der Kirche
— 964~965.
18세기 말의 산업혁명 industrielle
Revolution — 92.
18세기 말의 프랑스 부르조아 혁명
französischer bürgerlicher
Revolution — 976.

○

아동노동 Kinderarbeit — 111, 112,
114, 117, 119, 282.
아르헨티나 Argentinien — 894.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페루, 미국을
보라.
아시아 Asien — 187, 397~398,
638~639, 685~686, 695, 703~704,
717~724, 968~969.
— 아시아의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
식 — 398~399, 743.

— 아시아의 사적 토지소유 — 767~76
8, 968~969.
또한 인도, 중국, 일본을 보라.
아일랜드 Irland — 126, 127, 147, 154,
156, 653, 779, 782, 990.
아프리카 Afrika
— 구라파 열강에 의한 그 분할 — 110
6.
또한 이집트를 보라.
어음 Wechsel
— 정의 — 334~335, 442, 479, 516,
540~541, 554, 579~581, 592, 643,
669~670.
— 어음할인 — 384, 483, 515~520,
554, 579~581, 592.
— 헛 어음 — 520, 669~670.
— 어음의 유통법칙 — 592~595,
605~606, 609, 670~673.
— 어음사기 — 515, 599, 606,
614~615, 662, 663.
어음업무 Wechselgeschäft — 380
~383.
어음할인 Wechseldiskont — 384
~385, 483, 515~520, 554, 579~581,
592~593.
여성노동 Frauenarbeit — 116~121,
282.
역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Logisches und Historisches
— 25~27, 295, 345~346, 402,
1088~1089.
연구방법 (K. 맑스의 「자본론」에서
의) Forschungsmethode

- 논리적 일관성과 연구의 방법론적
수법 — 25~28, 39~40, 131,
137~138, 177~178, 190, 191,
193~194, 205~206, 212~213,
228~230, 245, 260, 261, 275~276,
285, 325, 340~343, 345~346,
366~367, 402~405, 429, 765~766,
1016~1018, 1049.
- 공산주의자와 부르조아 경제학자
들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 — 133,
206~208, 209, 239, 293, 295, 766,
959~960, 1042.
- 또한 추상, 변증법을 보라.

영국 England

- 일반적 특징 — 19, 380, 1077.
- 산업 — 126~128, 133~134,
149~159, 399~400, 463, 464,
488~493, 510, 532, 599~600,
602~603, 607~610, 618~619,
717~718, 721, 755.
- 산업독점 — 126~127, 490, 605,
620.
- 농촌경리와 농업관계 — 772~774,
776, 779~786, 808, 809~810,
818~819, 836, 842~843, 873~874,
945~946, 960, 977~978, 979~980,
985~986, 1067.
-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의 고전
적 나라 — 838~839.
- 화폐 및 은행제도 — 471~474,
483~486, 490~502, 539~540,
606~609, 619~621, 631~632,
647~648, 671, 690, 704, 708~709,

- 710~711, 718~722, 734~737,
751~752, 1097~1098, 1104~1106.
- 대외무역 — 147, 398~399,
488~499, 503~504, 509, 591,
601~602, 607~609, 618~620,
717~720, 725~726, 734~737, 816,
1097~1098.
- 자본의 수출 — 591, 607~608, 658,
717~725, 732~735.
- 도시 — 392, 631.
- 근로자의 형편 — 111~122,
159~169, 213, 780, 786.

- 식민주의제도 — 398, 723~726,
734~735, 974~975.
- 입법 — 114, 133, 134, 213, 392,
471~474, 780~781, 816, 842, 894,
946, 965.

영국의 곡물법 Korngesetze — 133,
134, 392, 780, 785~786, 816,
842~843, 893~894.

영세농 경리 — 838, 983~993.

또한 소토지소유를 보라.

예금(은행) Depositenbank — 580
~582.

예비(상품의) Vorbereitung — 139,
226.

예비금(사회적) Reservefonds
— 381, 383, 482~483, 551~552,
705~706, 1067.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en — 620,
703, 719, 734, 782.

운하 Kanal

— 수에즈 운하 — 492, 605.

원료 Rohmaterial

- 일반적 특징 - 102, 132, 133, 171, 266, 313, 314, 787~788, 948
- 원료가격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 131~136, 138~140, 145, 148~149,
- 그 재생산 - 145~149,
- 재생산과정에서의 그 역할 - 104~106, 144~147, 148~149, 745,

원시공산주의 Urkommunismus

- 894, 1016, 1069, 1090, 1097,

원시사회 Urgemeinschaft - 216,

- 389, 787, 838, 993, 1004, 1034~1036, 1090,

위탁판매 Kommissions verkauf

- 155, 489~490, 607~608,

유가증권 Wertpapiere

- 정의 - 482~483, 520, 542~543, 547~548, 554, 556~557, 577~581, 591, 631, 987~988,
- 구성부분 - 573~574, 575~580, 589,
- 증권거래소에서의 그 시세 - 307~308, 432, 543, 577~579, 590~591, 610,
- 공황시기의 유가증권 - 307~308, 533, 621, 652~653,
- 유가증권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 543~544,
- 또한 주식, 국가유가증권을 보라,

유동자본 flussige Kapital

- 정의 - 45~46, 96, 187~188, 313, 314, 346~347, 412,

- 고정자본과 그 차이 - 45~46, 62, 96, 134~135,

-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가변자본 - 45, 46, 135,

- 유동자본과 불변자본 - 100, 132, 134, 138, 145~146, 189, 313~314, 948, 1020,

유물사관 materialistische Geschichtsauffassung (일반적 명제와 개별적 실례) - 303, 313, 318, 534~536,

- 969, 1002~1004, 1070, 1075~1076, 1085,

유통 Umlauf

- 일반적 특징 - 55, 57~60, 302~303, 364, 374, 383, 392~393, 409~410, 412, 468, 530, 540~543, 935, 1012, 1013, 1072,

- 재생산과정의 한 국면으로서의 유통 - 40, 296, 293~294, 327, 335~337, 339, 340, 346, 347~348, 387, 388, 393, 759~760, 1013,

- 유통에서 잉여가치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외관 - 51, 58, 171, 1012, 1014,

- 유통과 상품의 가치 - 335~340, 또한 유통기간을 보라,

유통기간 Zirkulationsperiode - 58, 91, 92,

- 유통기간과 잉여가치의 생산 - 58, 91, 93, 337, 340, 347~348, 364, 370, 1012,

유통비 Zirkulationskosten - 323 ~324, 340~341, 345~349, 350~351,

353~361, 366~367, 377~379, 399,
529~530.

유통수단의 절약 Ersparnis des
zirkulierenden Mediums — 529

~531, 627, 643~645, 647, 671~673.

유통자본 umlaufende Kapital
— 323~324, 331, 387, 388.

은 — 금 (과 은) 을 보라.

은행 Banken

— 일반적 특징과 의의 — 365,

482~487, 521, 548, 555~557,

573~574, 620~621, 637~638, 658,

672~673, 676~677, 712, 755~756.

— 그 자금 — 482~483, 556~557,

573~574, 575~587, 598~599,

672~673, 753~755.

— 그 예비금 — 525~527, 580~581,

584~586, 616, 654~655, 694~695,

704~707, 711, 712.

— 그 이용 — 483, 655~656.

— 은행업의 역사 — 380~383,

748~752.

— 개별적 실례 — 380, 464, 603~604,

621~622, 646~651, 673~676,

689~690, 694~695, 699~701,

749~750, 757.

또한 잉글랜드 은행을 보라.

은행권 Banknoten

— 정의 — 483~485, 517, 690, 691.

— 은행권의 유통법칙 — 539~541,

552~559, 586~587, 643~656,

667~671, 689~691, 706~707.

은행 신용대부 기한의 제한법 — 656

~657, 675~676, 690~691.

은행업자 Banken — 374, 444,

482~484, 519, 573, 591, 624,

628~631, 672~673, 676~677.

은행업자의 신용 Kredit der

Banken — 479, 592, 597~598,

611~612, 624~625.

은행자본 Kreditkapital — 은행, 대부
자본을 보라.

의식 Bewußtsein — 40, 239, 272,
1011, 1093.

의제자본 fiktive Kapital — 491~499,

574, 575, 581, 584~585, 589~591,

610, 627, 671~672.

이론과 실천 Theorie und

Praxis — 189, 190, 206, 207,

213~214, 229~230, 458~460, 778,

956, 1062, 1065~1066, 1093,

1101~1102.

이윤 Profit

— 정의 — 27, 47~48, 52, 56, 57, 59,

62~65, 260, 263~264, 296, 351,

370, 405~406, 431, 464~465,

620~621, 672~673, 783, 812~813,

855, 937~938, 967~968, 976~977,

997, 1004, 1013, 1014, 1017, 1018,

1024~1025, 1034~1035, 1037

~1038, 1041, 1049, 1057,

1073~1074, 1075.

— 그 원천 — 56, 203~208, 252~253,

340~341, 855.

— 그 양 — 263~271, 273~274,

276~278, 283, 296~301, 304, 305.

313.

—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 92, 99, 178~179, 187~188,
207~209, 238, 250, 370, 633~634,
729, 730~731, 801.

— 그 분배 — 238, 426, 429~431, 436,
1051.

— 이윤과 잉여가치 — 49~50, 56, 57,
59, 61~65, 184~185, 197~199,
204~206, 211~212, 219, 238, 253,
259~260, 266, 283, 1013, 1049.

— 그 한계 — 1049.

— 산업이윤 — 294~296, 341~342,
343~346, 348, 355~356, 430,
446~447.

— 화폐상인의 이윤 — 384~385.

— 주식회사의 이윤 — 530~531.

— 이윤에 대한 부르조아적 이론의 비
판 — 51~52, 206, 258~260,
277~279, 342, 368, 960~961,
1055~1057.

— 이윤의 발생에 대한 자본가들의 소
견 — 48, 51, 52, 171~172, 206,
207~208, 253, 458, 855~866,
1014, 1037~1038.

또한 이윤율, 잉여가치, 상업이윤
을 보라.

이윤율 Profitrate

— 정의 — 56~57, 60~66, 91, 95~96,
134, 140, 185~186, 198~199,
204~205, 214~215, 258~259,
274~276, 294, 299, 312, 435~436,
1013, 1049.

— 한 해 이윤율 — 95, 96.

—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3
3~34, 57, 66~109, 131~134, 138,
139, 142~143, 171~174, 184,
185~190, 192, 194, 204~207, 238,
244, 250, 258, 259, 261, 262,
273~276, 281, 284~287, 298, 299,
305~306, 358, 427, 431, 442, 447,
633~634, 912, 955~956, 1013,
1017, 1047, 1065.

— 자본 발전의 출발점으로서의 이윤
율 — 57, 1096~1099, 1102, 1103.

—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극 — 294,
311~313.

— 나라별 이윤율 — 178, 186~187,
260~261.

또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의
법칙을 보라.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의 법칙 Gesetz des tendenziellen Falls der Profitrate

— 맑스에 의한 이 법칙의 발견 — 25,
258~260.

— 그 본질 — 35, 257~260, 261~264,
265~274, 277, 278~279, 282, 283,
293, 294, 297~298, 299~301,
303~304, 316~319, 476, 776~777.

— 경향으로서의 법칙의 작용을 규정
하는 요인들 — 258~259, 273,
281~291, 299~303, 316, 317.

— 그 모순 — 294, 300~303, 311.

— 이 법칙과 경쟁싸움 — 305~306,
309, 318~319.

-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그 의의 - 259~260, 270, 272, 311 ~313,
- 이 법칙과 부르조아 정치경제학 - 259~260, 270, 272, 312, 313,

이자 Zins - 대부이자를 보라.

이자율 Zinsrate

- 일반적 특징 - 422, 427 ~431, 433~434, 451~453, 469, 507~508, 617, 633~634, 635, 655~656, 776~777,
- 산업주기의 여러 단계에서의 이자율 - 431, 432, 511, 512, 599 ~600, 603~604, 612, 620~622, 631~632, 633, 694~695, 708~710, 728~731,
- 평균이자율 - 199~200, 433 ~439, 440, 631~632,
- 시장이자율 - 438~440, 672 ~673, 695,
- 그 크기를 규정하는 요인들 - 440, 507~512, 631~636,
- 개별적 실태들 - 432, 433, 438, 510~512, 621~622, 631~633, 694~695, 744~745,
- 또한 대부이자를 보라.

이집트 Ägypten - 1094,

이탈리아 Italien - 33, 401, 365, 1096, 1099,

인간 Mensch - 998~999, 1004,

인구 Bevölkerung - 265, 297, 311, 320, 476, 782, 792, 946, 983,

인도 Indien - 92, 147, 148, 398 ~399, 1098,

- 인도의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 - 261, 964, 968, 1069,

- 인도에서의 영국의 통치 - 399, 491 ~493, 495~499, 509, 685~686, 717~725, 734,

일반적 등가물 allgemeine Äquivalent - 394, 558~559, 560, 637, 712~713, 1052~1053, 1093~1094,

또한 화폐, 금(과 은)을 보라.

일반적 이윤율 allgemeine Profitrate

- 평균이윤율을 보라.

일본 Japan - 126,

임금 Arbeitslohn

- 노동력의 가치(임금)의 전화된 형태로서의 임금 - 43~44, 45, 50, 59, 141, 198, 351, 426~427, 465, 530, 575~576, 912, 967, 1005~1008, 1018, 1019, 1024~1025, 1045 ~1048, 1051, 1057, 1061,
- 노동자의 소득형태로서의 임금 - 1005~1006, 1024, 1025, 1031, 1041~1042, 1047~1048, 1051, 1057, 1061, 1070,
- 실질임금 - 1051,
- 그 형태 - 106, 162,
- 임금과 잉여가치율 및 이윤율 - 67 ~68, 83~84, 219, 244, 285, 304~305, 633~634, 1047~1049, 1058, 1059,
- 임금과 생산가격 - 241~245, 1058~1059,
- 임금이 오르내리는 원인 - 141,

- 198~203, 245, 247, 307~308, 801,
814, 843, 912,
— 임금을 올리기 위한 투쟁 — 160,
949~950,
— 임금이 떨어지는 경향 — 359~360,
임금노동 Lohnarbeit — 236, 317, 351,
352, 354~355, 358~360, 399~401,
454~455, 461, 808, 977, 999,
1006~1010, 1024~1026, 1072, 1074,
1077, 1099,
잉글랜드 은행 Bank von England
— 일반적 자료 — 547~549, 551~557,
584~587, 640~641, 655, 661~662,
671~672, 673~676, 688~696, 749,
751~752, 755,
— 그 은행권의 유통 — 490~491,
526~527, 544~549, 552~553, 555,
558, 644~654, 699, 703,
— 그 이윤 — 671~672, 675~676,
— 그 할인율 — 489, 490, 491, 639,
715~716,
— 그 예비금 — 489, 490~491,
525~527, 613, 620, 640~641, 650,
666, 700, 705~706,
잉여가치 Mehrwert
— 정의 — 23, 47, 56, 62, 69, 101,
184~185, 202, 251, 295~296,
299~300, 789, 1001, 1002,
1005~1008, 1017~1019, 1024
~1025, 1030~1031, 1041,
— 그 기원 — 47~49, 54~58, 61, 69,
101, 109, 182~183, 184~185, 209,
251, 295~296, 336~337, 352, 456,
789~790, 791, 793~794, 959,
1037~1038, 1047~1049, 1073
~1074,
— 자본주의의 규정적 목적으로서의
그 생산 — 238, 295~296,
304~305, 1073, 1074~1075,
— 그 양 — 53, 67, 185~186,
198~199, 205, 265~269, 271~272,
281~284, 294~296, 369, 370,
— 그 형태 — 57, 59, 65, 220~221,
791, 1017, 1021~1022, 1031~1032,
1034~1035, 1037~1038, 1041,
1050~1051,
— 그 실현 — 57, 58, 295~297, 311,
1012,
— 그 분배 — 57, 58, 276, 959,
1004~1006, 1019~1020, 1031
~1032,
—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58, 67~68, 91, 93, 105~106,
109, 141, 144, 174, 238, 250, 286,
299~300, 336~337, 358~359, 369,
370, 799~801, 1045~1046,
1048~1049,
— 잉여가치와 이윤 — 49~50, 56, 57,
59, 61~65, 184~185, 197~199,
204~206, 211~212, 219, 238, 253,
260, 266~267, 283, 1013, 1049,
— 그 발생과 분배에 대한 부르조아
이론의 비판 — 49, 51~54, 59, 62,
171, 205~206, 1037~1038, 1056,
또한 절대적 잉여가치, 초과 잉여
가치, 잉여가치율, 상대적 잉여가

치, 이윤을 보라.

잉여가치율 Rate des Mehrwert

- 정의 — 56~57, 65, 95~96, 213, 257, 260~263, 283~284, 299~300, 369.
- 한 해 잉여가치율 — 95~97.
-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 281~284.
-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62~63, 66~69, 73~74, 79~81, 83~86, 88~89, 106, 141~144, 187, 238, 241, 244, 257~259, 261~262, 265~267, 281~284, 289~293, 369.
- 또한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를 보라.

잉여노동 Mehrarbeit

- 일반적 명제 — 56, 59, 184~185, 257, 261~262, 263~266, 299~300, 788, 855, 965~980, 1002~1006, 1017~1019, 1035~1036, 1041, 1048~1049, 1069~1070.
- 그 자연적 토대 — 786~789.
- 잉여노동과 필요노동 — 56, 214, 299~300, 786~788, 790~791, 1017~1019.
- 그 한계 — 969~970.
- 공산주의하에서의 잉여노동 — 1002~1003.

잉여생산물 Mehrprodukt — 23, 395, 857, 962~963, 1002, 1004, 1025, 1035~1036.

入

자본 Kapital

- 일반적 정의 — 60, 63, 235~236, 299, 300~301, 308~309, 312, 318, 320, 409, 411, 423, 425, 444~445, 455, 459, 467, 530~531, 626~628, 755, 997~999, 1001, 1003, 1005, 1007~1010, 1014, 1051~1052, 1070~1071, 1077.
- 자본의 일반적 공식과 그 모순 — 54, 325, 384~385, 417~418, 419, 467~468, 1000~1001, 1014.
- 그 운동의 목적으로서의 가치증대 — 55, 294, 302~303, 309, 425, 446, 452, 467, 468, 1005~1006, 1011, 1014, 1073, 1075.
- 그 순환 — 414~417, 419, 1024~1025, 1072.
-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의 그 유동 — 236, 237, 250~252, 438~439, 756, 935~937, 947~948, 1061, 1074~1075, 1101~1103.
- 생산분야에서의 그 형태들 — 41~42, 49, 138, 393, 405, 410, 440~441.
- 유통분야에서의 그 형태들 — 138, 330~331, 377, 387, 392~393, 405, 409~413, 441~442, 1012.
- 자본의 얽매임과 풀려나오기 — 76~77, 78, 141~144, 179, 624~625.
- 그 가치의 변동 — 137~141.

173~174, 285, 296~297, 298,
299~303, 304~306, 308~309,
475~476.

— 소유 — 자본으로부터 기능 — 자본
의 분리 — 446~456, 530~531.

— 그 운동과 모순 — 40, 63, 137,
141~144, 268~270, 285, 297~298,
305~311, 316, 317, 410, 411,
415~419, 425~427, 441, 625,
755~756, 1012~1013, 1073.

— 자본에 대한 부르주아적 정의의 비
판 — 24, 452, 506~527, 533~534,
626, 997, 1001, 1052~1055.

자본가 Kapitalist

— 일반적 특징 — 55~56, 104,
107~109, 195~196, 239, 252,
298~299, 305~307, 312, 318, 320,
325, 406~407, 455, 462~464, 747,
793, 832~833, 923, 1002, 1006,
1012, 1026~1027, 1042, 1045, 1063,
1064, 1072, 1073, 1077.

— 자본의 인격화로서의 자본가 — 59,
253, 318, 342, 348~349, 446~447,
454~455, 1002, 1009, 1011, 1072,
1073.

— 그의 행위의 규정적 목적 — 55,
57, 204, 205, 227~228, 238, 290,
296, 324, 455.

— 산업자본가 — 290, 324~325, 342,
348, 443~451, 455, 457,
462~465, 833, 949.

— 상업자본가 — 325, 326, 334, 342,
348, 351, 443.

— 화폐자본가 — 290, 443~448,
450~451, 455, 463~464, 591, 630,
670, 672, 676.

— 그의 소득과 개인적 소비 — 366,
541~542, 591, 622, 1005, 1006,
1008, 1025, 1041, 1063, 1074, 1077.

— 자본가와 노동자의 착취 — 55, 56,
107~112, 237~239, 252, 295~297,
303~304, 311, 406, 455, 461, 463,
741, 1002, 1004, 1013, 1014, 1024.

— 잉여가치와 이윤의 발생에 대한 그
의 견해 — 48, 51, 52, 55~56, 58,
59, 171~172, 206, 208, 251~253,
342, 455, 458, 855, 1006, 1007,
1011, 1014, 1015, 1030, 1035, 1038,
1060~1065.

자본에의 노동의 실제적 예측 — 237,
286.

자본에의 노동의 형식적 복종 — 261,
286, 960.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

Ausbeutung der Arbeitskraft
durch das Kapital — 55, 56,
107~121, 177~178, 208, 215,
237~239, 252, 266~267, 268,
281~283, 289~291, 296~297,
300~301, 303~309, 311, 406, 455,
461~463, 741, 949, 950, 1002, 1004,
1005, 1007, 1008, 1013, 1014, 1025.
— 노동력의 착취도에서의 나라별 차
이 — 178, 287~288.

또한 잉여가치율을 보라.

자본의 가치구성 Wertzusamm-

- ensetzung der Kapitals — 181, 258, 259, 304, 305, 940~942.
- 자본의 기술적 구성 technische Zusammensetzung des Kapitals — 60~61, 78, 144, 180~182, 184, 189, 191, 201, 247, 935, 940~943.
- 자본의 선대 Kapital vorschuß
- 본질과 목적 — 23, 45~49, 55, 235, 238, 1019, 1023~1025, 1046.
 - 새 기업을 조직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선대자본 — 110, 265~266, 303~304, 316, 625, 873, 1045.
 - 가변자본의 선대의 특성 — 42~45, 46, 47, 55~56, 656~658, 855, 1024~1026.
 - 불변자본의 선대의 특성 — 42~44, 45~46, 55~56, 99, 855.
 - 선대자본의 일반적 회전 — 91, 99.
 - 자본의 선대와 신용 — 412, 413, 624.
- 자본의 수출 Export des Kapitals — 309, 310, 380, 550, 551~552, 591, 658, 716~725, 728~729, 732, 733, 734, 1104.
- 자본의 순환 Zirkulation des Kapitals — 414~417, 419, 1016, 1072.
- 자본의 시초축적 die ursprüngliche Akkumulation des Kapitals — 299, 591, 767, 768, 1071.
- 자본의 유기적 구성 organische Zusammensetzung des Kapitals
- 일반적 특징 — 67, 88~89, 97~98, 173~174, 179~182, 184~187, 189~192, 200~201, 211, 236, 258, 259, 289, 302, 792, 934, 935, 940, 941, 942, 956.
 - 농촌경리에서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 — 935, 940~942, 947.
- 자본의 집적 Konzentration des Kapitals — 110, 264, 265, 293, 298~299, 303, 318, 353~354, 356, 433, 438, 463~464, 530, 551, 621, 643, 644, 740, 802, 838.
- 자본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 — 293, 298~299, 353, 534, 676, 677.
 - 또한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집중을 보라.
- 자본의 집중 Zentralisation des Kapitals — 293, 298~299, 353, 534.
- 은행자본의 집중화 — 433, 438, 463~464, 551, 578, 620~621, 643, 644, 676~677.
 - 또한 자본의 집적을 보라.
- 자본의 축적 Akkumulation des Kapitals
- 일반적 명제들 — 264~266, 272, 295~298, 301~303, 317, 319~320, 475, 513, 514, 589, 618, 622, 623~625, 627, 628, 1003, 1020, 1027, 1034~1037, 1074, 1103.
 - 자본의 축적과 노동생산성의 장성 — 106, 258~259, 264~266, 300~302, 312~313, 319~320, 475~476.

- 자본의 축적과 상대적 과잉인구 - 265, 301, 302, 309, 319.
-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집적 및 집중 - 265, 266, 293, 298~299, 318
- 자본의 축적과 이윤율의 저하 - 272, 293, 309, 317, 319.
- 그 한계 - 476, 624, 625.
- 또한 자본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을 보라.

자본의 회전 Umschlag des Kapitals

- 이윤율에 미치는 그 영향 - 66, 91~98, 178, 179, 187~189, 274~275.
- 산업자본의 회전 - 333~334, 363, 364, 366, 370, 374, 375.
- 상인자본의 회전 - 275, 332~334, 345, 363~367, 370~376.
- 자본의 회전과 잉여가치 - 91, 93
- 자본의 회전과 상업이윤 - 375~376.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들 - 261,

- 372, 391, 394~396, 398~399, 638, 740, 743, 837, 963~964, 1016, 1069, 1073~1074.
- 또한 원시사회, 노예제도, 봉건제도를 보라.

자본주의적 생산법칙 Gesetze der Kapitalistischen Produktion - 297.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이 일반적 법칙이 지배적 경향으로서만 실현된다. - 190, 198, 213~214, 229~230, 284, 288~289, 426~427, 438, 1072.

- 공장주, 상인, 은행업자에게는 이 법칙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 59~60, 171~172, 272~273, 373~375, 455, 465, 1008, 1017, 1057, 1058.
- 또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가치법칙,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의 법칙,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경제법칙을 보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e

- 일반적 특징 - 39, 40, 43~44, 52, 55, 107~112, 126, 136, 147, 148, 198, 213~214, 220, 235~237, 258~259, 260, 265, 275~276, 296, 298~299, 300, 302, 311~312, 317~320, 371~372, 390, 391, 393, 413, 459, 465, 479, 576, 637, 742, 755, 758, 765, 766, 792, 820, 837, 922, 966, 991, 992, 997~999, 1002, 1011, 1015, 1030, 1037, 1039, 1063, 1070~1075, 1077.
- 그 규정적 목적 - 55, 236, 294, 296, 302, 303, 304~305, 309, 310, 312~313, 534, 598, 768, 977, 1072, 1073.
- 그 출발점과 전제 - 55, 213, 236, 237, 388, 392, 397~399, 401~402, 410, 425~427, 453, 456, 534, 741~743, 767~769, 837, 838, 962, 976~978, 1005, 1075.
- 생산관계 - 55, 59, 62~63, 107~108, 147, 148, 235, 290, 318.

- 320, 425~426, 453, 455, 457,
461~462, 467~468, 477, 740, 766,
991, 997~998, 1002, 1011, 1062,
1070~1074, 1077.
- 생산, 분배 및 유통법칙 — 107,
109, 110, 145~147, 179, 189~190,
196~197, 234, 235, 258, 263~266,
267, 268, 270, 272, 277, 296~297,
307, 308, 311~319, 372, 741, 765,
838.
- 농촌경리 — 149, 463, 765, 766,
768~771, 774~775, 792, 808, 828,
829, 832, 838, 839, 857, 925, 930,
939~940, 942~943, 963~964,
976~980, 991~998, 1005,
1075~1076.
- 그 발전의 역사와 경향 — 258~259,
287, 288, 290, 294, 298~299, 302,
310~312, 319~320, 345~346, 389,
391, 392, 397~402, 591, 740, 743,
744, 837, 964, 976~977, 979~980,
1077, 1096~1101.
- 그 적대와 모순 — 109, 111~112,
146~149, 226~227, 264~266,
268~270, 287, 294, 296~297,
301~303, 309~313, 316~318, 320,
425~426, 461~463, 531~536, 637,
638, 713, 714, 768~772, 991~998,
1000~1003, 1073.
- 그 역사적, 과도적 성격 — 294,
302~303, 310~313, 317, 318, 625,
766, 774~775, 998, 1002, 1070,
1076.

-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의 견해 비판
— 294, 296, 310, 312~313, 460,
461, 463~465, 576, 741, 747,
752~753, 758, 766, 774~775,
963~965, 997~999, 1029, 1030,
1039, 1057, 1058, 1066~1070,
— 생산의 사회적 경영에로의 이행의
필요성 — 112, 147, 294, 312, 318,
530~536, 756~757.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

- Anarchie der kapitalistische
Produktion — 226~227, 234~235,
298~299, 310, 313, 638, 713, 1016,
1063, 1064, 1072~1074, 1091,
또한 경제공황을 보라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allgemeines Gesetz der Kapitalistischen Akkumulation

- 258, 265, 266, 268~269, 297.

자본주의하에서의 토지의 국유화 — 820, 924~925.

자연경제 Naturwirtschaft — 372, 389, 391, 392, 396~397, 399.

자연과학 Naturwissenschaft — 104, 320.

자유무역주의 Freihandelismus — 33, 자유와 필연 Freiheit und Pinzel — 1002~1004.

재생산 Reproduktion

- 정의와 기본특성 — 56, 100~101,
106, 140~141, 145~148, 225~227,
302~303, 307, 308, 336, 345, 364.

365, 370, 387, 412~415, 513,
530~531, 593, 966, 968, 1003,
1020~1021.
—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 366,
1021~1028, 1030~1031, 1034,
1036, 1045, 1071.
— 단순재생산 — 227~228, 1020,
1023, 1024, 1037.
— 확대재생산 — 227~228, 589,
1026~1027, 1034, 1036, 1037, 1074.
— 재생산과 사회적 자본의 두 부류
— 656~657, 405~407.
— 생산관계의 재생산 — 968, 971,
972, 1002, 1024~1025, 1062, 1071.
— 노동력과 노동계급의 재생산 — 13
2, 141, 228, 300, 301, 789, 968,
1018, 1019.
— 화폐 및 화폐유통의 역할 — 307~3
08, 335~336, 469, 541~544, 623,
624, 657, 658, 1024~1025.
— 부르조아 재생산 이론의 비판 — 37
4.
저당 Hypot — 556, 574, 983, 984.
전쟁 Krieg
— 미국의 국내전쟁 — 136, 157.
— 크림 전쟁 — 157, 513, 725.
— 나폴레옹 전쟁 — 513.
— 아편전쟁 — 489, 686.
— 전쟁과 고리대 — 745.
— 전쟁과 국가의 군사비 — 736.
전당포 Pfandhaus — 400, 553, 747,
748.
절대적 잉여가치 absoluter

Mehrwert — 99, 109, 140, 281~283,
289, 308.
절대지대 absolute Grundrente
— 정의 — 935, 938, 940, 947, 984,
1018, 1050.
— 그 형성 — 921~948.
— 광업에서의 절대지대 — 948.
정당성 Richtigkeit — 407.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Geistesarbeit
und Muskelarbeit — 92, 104, 129
~130.
정의 Gerechtigkeit — 26.
정치경제학 politische Ökonomie
— 그 역사 — 402.
— K. 맑스가 정치경제학에서 이룩한
변혁 — 25, 206, 258~260, 374.
—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 185,
402.
—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의 일반적 특
징 — 133, 206~208, 209, 239,
258~260, 270~273, 281, 293, 294,
310~311, 323, 374~375, 387~388,
460, 949.
또한 부르조아 속류 정치경제학,
K. 맑스의 『자본론』, 부르조아 고
전 정치경제학, 중상주의, 중농주
의를 보라.
제노바 Genua — 393, 748, 749,
1095~1096, 1097.
조림 Holzzucht — 768, 943~944.
조제 Herausarbeiten — 100, 744,
746, 808, 894, 933, 962.
종교 Religion — 298, 737, 746.

주기 Zyklus — 산업주기를 보라.

주식 Aktien

- 일반적 명제 — 303~304, 306~308, 316, 556~557, 573~574, 577~580, 610.
- 그 종류 — 581.

주식자본 Aktienkapital

- 정의 — 530.
- 주식자본과 평균이윤율 — 290, 316.
-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의 — 530~536.

주식회사 Aktiengesellschaft

- 일반적 특징과 의의 — 320, 445, 463~466, 530~536, 1103.
- 주식회사와 평균이윤율 — 290~291, 316, 531.
- 개별적 실례 — 464, 532, 1103~1104.

주화 Münze — 379~380, 537~542,

644, 645.

중국 China — 126, 398, 399, 490, 686,

709, 719.

중농주의파 Physiokrat — 752, 775,

930, 961~964.

중상주의 Merkantilismus — 402, 962,

963.

중세기 Mittelalter — 397~399, 401,

747, 759~762, 964, 974, 979, 1016, 1089, 1090, 1092, 1097~1098.

증권거래소 Börse — 440, 534, 590,

591, 610, 630, 1104~1106.

지대 Rente, Grundrente

— 정의 — 295, 770, 771, 777~779, 786, 788~789, 791~794, 797, 836, 891~892, 944~945, 947~948, 959, 960, 974~975, 976~977, 985, 1000, 1005, 1017~1018, 1025~1026, 1041, 1057, 1075.

— 형성 — 797~804.

— 본질 — 770, 772, 774~779, 791~793, 892~893, 895~897, 937, 938~939, 940, 949~950, 959, 1001, 1004~1005, 1014~1015, 1017, 1024~1025, 1062, 1064, 1076.

— 그 율 — 294~295, 375~376, 820~821, 826~827, 846, 953~954, 956~957.

— 그것을 변동시키는 요인들 — 771~775, 777~778, 781~784, 794~795, 836, 964~965, 978~979.

— 자본주의 이전의 그 형태들 — 744, 789, 959~960, 964~966, 989~990.

— 그 자본주의적 형태들 — 789~790, 793~794, 939~940, 941, 947~954, 955~956.

— 임금과 차지료 — 836, 929~931, 946~947, 793~795.

— 부르주아 지대론의 평가와 비판 — 222~223, 294, 758, 765~766, 772~778, 786~789, 918~919, 943~944, 948~950, 952~953, 959~963, 964~967.

또한 절대지대, 화폐지대, 차액지대, 부역지대, 생산물지대를 보라.

지리화적인 대발견 — 397~398.

1097~ 1098,
지불균형 Zahlungsbilanz - 549, 607,
608, 638, 706, 708~709, 734~736,
지질학 Geologie - 935,

天

차액지대 Differentialrente

- 정의 - 804, 896, 918, 921, 924,
929, 935, 944~945, 1007, 1017,
1050.
- 형성 - 797~807, 817, 895~896,
906, 929~930, 939~940, 949.
- 원천 - 918~919, 929~930.
- 가장 나쁜 경작지에서의 차액지대
- 909~918
- 차액지대와 자본주의하에서의 토
지의 국유화 - 820, 924~926.
- 차액지대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학
자들의 견해 - 807~808, 817, 818,
824, 832, 841, 843, 916, 918~919,
931~932.
- 또한 차액지대 I 과 II를 보라.

차액지대 I

- 그 형성조건 - 808~810, 817, 818,
827, 835, 837, 851, 874, 882, 895,
896, 944~945, 983.
- 그 오르내리는 원인 - 810~828,
841, 845, 851, 879.
- 차액지대 I 과 차액지대 II - 837
~841, 844, 845, 847, 856, 873,
882, 896~907.

차액지대 II

- 그 형성조건 - 828, 835~848, 872,
882, 895~898, 939~940.
- 차액지대 II와 차액지대 I - 873
~841, 844, 845, 847, 856, 874,
882, 896~907.
- 불변적 생산가격에서의 차액지대
II - 849~857, 884~887, 892, 894,
903, 916.
- 생산가격이 떨어지는 조건에서의
차액지대 II - 858~876, 884,
887~888, 892~894.
- 생산가격이 오르는 조건에서의 차
액지대 II - 877~885, 888~893,
903~906.

차지 Pacht

- 차지계약기한 - 172~174, 780,
836, 872, 873, 926, 929~930,
951~952.
- 차지료 - 778~780, 929~930, 933,
950, 1062.
- 차지와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자 - 771, 772, 774, 775.
- 차지와 지대 - 836, 929~931, 946.

차지농업가, 차지농업 Pächter

- 일반적 특징 - 126~127, 765, 770,
779~780, 839, 923, 924, 929~930,
976~980.
- 토지에 투하된 자본 - 771~772,
774~775, 778, 779, 839, 873, 874,
926, 929~930.
-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 - 771~
772, 774~775, 778, 836, 900, 907,
922, 924~926, 929~930, 978~979.

- 개별적 나라에서의 발전 — 779~78
6. 963~964.
- 채권자와 채무자 *Glaubiger und Schuldner* — 422~423, 429, 440~441, 448, 454, 481~483, 589, 591, 626~629, 640, 770.
- 1844년의 은행법 — 490, 510, 526, 586~587, 606, 617, 634~635, 637, 641, 654, 656, 665, 676, 680, 682~683, 688~692, 695~697, 699~703.
- 철도 *Eisenbahn* — 92, 158, 316, 372, 489, 510, 1105.
- 체신수단 — 92, 372, 492.
- 초과이익 *Überprofit*
— 정의 — 800~802, 836.
— 형성 — 23, 32~33, 238~240, 287, 311~312, 318, 797~807, 835~837, 839~846, 896, 921, 935~937.
— 그것의 지대로의 전화 — 239~240, 375~376, 803~807, 843, 870, 873~874, 893, 895~896, 924, 937, 949, 960, 978.
— 산업에서의 초과이익 — 66~67, 238~239, 375~376, 798~802.
— 그것이 오르내리는 원인 — 849~857.
- 초과잉여가치 *Übermehrwert* — 217, 278, 283, 937, 960, 1018, 1102.
- 총생산물 *Gesamtprodukt* — 사회적 (한 해) 생산물을 보라.
- 총소득 *Gesamtgewinn* — 소득을 보라.

총이익 *Gesamtprofit*

- 이자와 기업이익으로의 그 분할 — 436~437, 445~452, 456, 731.

추상 *Abstraktion*

- 연구방법으로서의 추상 — 179, 224, 229~230, 259~260, 323~325, 778, 1010, 1020, 1023, 1037, 1038, 1059~1060, 1093.

추상적 노동 *Abstrakte Arbeit* — 1020.

- 축산업 *Viehzucht* — 388, 836, 837, 942~943, 980~981, 1092.

ㄱ

카르텔 *Kartell* — 148, 532, 604, 605.

K. 맑스의 「자본론」

- 그 창작의 역사 — 15, 16, 19, 1081, 1104.
- 제1권의 연구대상과 개별적 명제들 — 15, 16, 17, 19, 20, 25, 27, 28, 30, 40, 41~44, 47, 51, 53~55, 58, 66, 67, 96, 101, 106, 108, 109, 115, 117, 118~119, 163, 177, 180, 181, 197~198, 200, 221, 268~269, 271~272, 278~279, 281, 298~299, 316, 369, 380, 382, 479, 541~542, 551, 559, 601, 645~648, 712, 739, 748, 768, 781, 786, 794, 930~931, 972~973, 1001~1002, 1011, 1020, 1038, 1039, 1071, 1095.
- 제2권의 연구대상과 개별적 명제들 — 21, 25, 30, 31, 40, 58, 66,

91~94, 95~97, 144, 200, 323, 325,
330, 346, 360, 366, 370, 400, 540,
544, 593~594, 656, 657, 699, 950,
1012, 1021~1024, 1030.

- 제3권의 연구대상 — 16~20, 40,
1081, 1085, 1088~1091
- 제4권의 내용의 특징과 개별적 명
제들 — 20, 62, 195~196, 206, 222,
244, 258~259, 272, 273, 394, 450,
958, 963.
- 랍스의 가치론과 잉여가치론의 의
의 — 21~25, 27~35.
-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에 대한 F.
엥겔스의 가필 — 14~35, 66, 76,
88~98, 136~147, 148, 151, 155,
171, 189, 205, 216, 274, 275,
314~316, 360, 399, 400, 431, 438,
463, 464, 480, 488~493, 503, 504,
519~521, 527~528, 531~533,
552~555, 579, 581, 586, 587,
604~605, 619~620, 639, 648, 652,
653, 674, 679~682, 688~692,
700~702, 708~709, 713~716,
727~728, 754, 831~832, 868~869,
877~895, 911, 917, 950, 997, 1002,
1079~1106.

E

토대와 상부구조 Basis und
Aufbau — 969, 971, 1002.

또한 국가, 생산관계를 보라.

토양 비옥도 감퇴법칙 — 818, 832,

916.

토양의 비옥도 Fruchtbarkeit des
Boden

- 자연적 비옥도 — 771, 789,
808~810, 817, 830~831, 842, 894,
917, 918, 998.
- 인공적 비옥도 — 771, 772, 785,
809~810, 815, 818, 837, 842, 843,
874, 894, 917~918, 945~946.
- 토양의 비옥도와 토양의 피폐 — 77
1, 838, 877, 958, 966, 991~993,
또한 토지를 보라.

토지 Erde

- 일반적 명제 — 307, 766, 768~770,
792, 802, 803, 805, 806, 819, 822,
827~833, 836~837, 846, 894, 895,
917, 918, 924, 930, 931, 944~945,
950, 952, 958, 959, 982, 984,
991~992, 998~1000, 1005, 1006,
1008, 1010.
- 토지와 자본 — 771~772, 828~829,
832~833, 837~838, 842, 843, 847,
857, 917, 918, 925, 959, 980,
998~1000.
또한 토양의 비옥도를 보라.

토지가격 Preis des Erde

- 정의 — 772, 778, 788, 792, 806,
828, 952~953, 980~981, 984,
986~990.
- 그 변동 — 775~777, 782~784, 793,
828, 953~958, 989.
- 그 크기를 규정하는 요인들 — 779,
990~991.

- 소농경리의 조건에서의 토지가격 — 986, 987, 989, 992.

토지소유 Grundeigentum

- 일반적 특징 — 767~770, 779, 788, 789, 793, 794, 805, 806, 907, 924~927, 929, 931~932, 937, 938, 939~940, 949~950, 952~953, 956, 961, 984, 990, 999, 1004, 1005, 1008~1009, 1014, 1050, 1075.
- 그 형태들 — 765, 766, 768, 788, 789, 945~946, 952~953, 969, 976, 981~988, 989~993, 999.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에서의 그 역할 — 774, 775, 991~993, 1005, 1031~1033, 1071.
- 토지소유와 자본주의하에서의 토지국유화 — 820, 924~927.
- 토지소유와 합리적인 농업 — 772, 991~993.
-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견해 — 767~770, 772~774, 776~777.

통계학 Statistik — 290.

통일 Einheit

-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 — 40, 58~59, 296~297, 413~468, 1013.

투기 Spekulation — 153~154,

- 250~251, 294, 303, 365, 374, 486~490, 509, 511, 530, 533, 593, 606, 634~635, 828~829.

트러스트 Trust — 148, 532, 581, 604, 1105~1006.

II

파나마 Panama — 534.

판매와 구매 Verkauf und

- Einkauf — 220~221, 233, 235, 325, 327~329, 339, 346~348, 353, 366, 390, 410, 412, 415~417, 420~421, 442.

페루 Peru — 1069.

페비안 파 Fabianists — 22.

평균이윤 Durchschnittsprofit

- 정의 — 24, 194~196, 205~206, 208, 211~212, 218, 235, 252, 440, 449, 464, 945~946, 947~948, 959, 960, 1004~1005, 1013~1014, 1017, 1049~1052, 1061.
- 그 형성 — 190, 193~194, 195, 205, 236, 250~251, 342~344, 978~979.
- 그 크기를 규정하는 요인들 — 199~200, 208, 219, 237~238, 800~801, 1058.

평균이윤율 Durchschnittsprofitrate

- 정의 — 194~195, 211, 212, 252, 266, 286, 343~344, 370, 405, 438~440, 935~936.
- 그 형성 — 178, 190~213, 251~252, 286, 318, 342~347, 1004, 1049, 1055, 1058.
- 그 크기를 규정하는 요인들 — 51, 178, 199~200, 203~204, 206~208, 211, 212, 237, 247, 258, 287, 305~306, 370, 371, 438, 800~801.

1058,

- 평균이윤율과 착취도 — 204, 237,
- 경향으로서의 평균이윤율 — 211~212, 438,
- 상인자본의 평균이윤율 — 370~371,

포르투갈 Portugal — 1098,

프랑스 Frankreich — 400, 533, 753,

757, 783~785, 945, 976, 985, 1098,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 — 노동계급을 보라,

프루동 주의 Proudhonismus — 53, 413~416, 425, 756,

필요노동 notwendige Arbeit — 257, 300, 787~788, 789~791, 1005, 1018~1019,

ㅎ

함해 Schiffahrt — 92, 372, 492, 1099,

현금제도 Kreditsystem — 550, 664, 712, 737, 962,

협동 Zusammenarbeit — 101, 104~105, 115, 129~130, 320, 463, 465, 742,

협동적 공장 — 108, 462~465, 534~535,

화폐 Geld

- 정의 — 233, 394, 405, 406, 425, 426, 469, 549, 558~560, 636~637, 712~713, 744~745, 754~756, 799, 956, 1011, 1042, 1052~1053, 1093,
- 그 역사 — 378~379, 382~383, 1091~1095,

— 금속화폐 — 539~542, 618, 627, 638, 705~707, 1093,

— 신용화폐 — 479, 483, 484, 517~518, 636~638, 664~665, 751,

— 계산화폐 — 766,

— 세계화폐 — 379~381, 396~397, 549~550, 559, 638, 664~665, 744,

— 가치척도로서의 화폐 — 394, 549, 627, 1093~1094,

—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 — 335~336, 382~385, 442, 537~542, 558~559, 600~601, 744,

—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 — 233~234, 334, 364, 378, 383~384, 394, 405~406, 537~541, 551~552, 582~583, 644, 669~670,

— 화폐퇴장수단으로서의 화폐 — 378, 381, 383, 394~395, 549, 551, 703, 736~739, 745,

—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 307, 328, 334, 336~337, 364, 378~379, 382, 383, 442, 479, 537~542, 557, 558~559, 600, 643, 712, 744, 746,

— 그 유통법칙 — 364, 539~542, 645, 648,

— 유통에서의 그 양 — 382~385, 525, 537~539, 541~547, 557~558, 582~584, 616~618, 627, 643~644,

— 상품 — 자본으로서의 화폐 — 405~414, 420~426, 440~442, 453, 468, 507~508, 533, 537~539, 540~541, 559~560, 582~584, 627, 740,

-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 392, 405~406, 425, 453, 558~559, 743~745,
- 부의 절대적 형태로서의 화폐 — 304, 744, 1093,
- 화폐와 재생산과정 — 307~308, 335, ~336, 469, 623~624, 656~658, 1024~1025,
- 화폐와 화폐유통의 부르조아 이론의 비판 — 537~560, 679,
- 화폐공황 Geldkrise** — 605~606, 636~638, 653, 664~665, 746,
- 화폐 Geld** — 상업자본
 - 정의 — 377~381, 384~385, 481~482,
 - 그 역사 — 379, 385, 739,
 - 그 이윤 — 384, 385,
 - 화폐 — 상업자본과 화폐퇴장 — 381, 383, 395,
- 화폐시장 Geldmarkt** — 438~439, 440~441, 605~606, 630~631, 654~655, 721~722,
- 화폐유통 Geldumlauf** — 383~385, 389, 392~393, 395, 529, 537~560, 654~657, 704, 706~707, 1024~1025,
- 화폐자본 (산업자본의 한 부분으로서의) Geldkapital** — 345~346, 377, 387, 510, 573, 606~607, 624,
- 화폐지대 Geldgrendrente** — 744, 793, 975~978, 981~982,
- 화학 Chemie** — 53, 92, 126, 128, 935
- 확대재생산 erweiterte Reproduktion** — 재생산을 보라,
- 환자시세 (환율) Wechselkurs**
 - 정의 — 382~383, 695, 706~707, 714~715, 717~718,
 - 그 변동을 규정하는 요인들 — 715~728, 732, 734~737,
 - 환자시세에 대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과 은행업자들의 소견 — 715~737,
- 회전기간 Umschlagsperiode**
 - 91~93, 95, 179, 187~190, 198, 333, 364, 373, 374, 427,

자본론 제Ⅲ권(2)

백의신서 15

인쇄일 : 1990년 4 월 30 일

발행인 : 1990년 5 월 10 일

펴낸이 : 이 상 돈

펴낸곳 : 돌설 白 衣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1-12

전화 : 965-7187

등록 : 서울 제 5-145호 (88. 6. 25.)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500원